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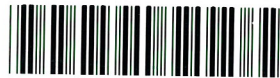
11-1541000-000060-13

어촌 · 어항발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총괄편)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6793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어 촌 · 어 항 발 전 기 본 계 획
최 종 보 고 서
[총 괄 편]

2008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2006년 3월 9일자로 귀부와 계약체결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와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완료하고 그 성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08년 3월

(특)한국어촌어항협회

회 장 배 평 암

주 연구 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남대학교

(주)제이스기술단

<요 약>

I.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 어촌·어항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
-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향 제시 필요
- 2005.12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발전잠재력이 높은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근거 마련

2. 계획의 성격

- 어촌·어항분야에 대한 종합계획
 - 어촌·어항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어촌·어항법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

3. 추진경위

- '06. 3 : 어촌·어항 기초자료조사 착수
- '06. 11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06. 12 : 어촌어항 기초자료조사 완료
- '07. 2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07. 7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07. 10 : 1차 공청회 개최
- '07. 12 : 2차 공청회 개최
- '08. 3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II. 개발여건분석

1. 국외 여건변화

- 국제동향이 수산자원관리 강화와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로 급변
 - UN 해양법 협약 : 조업구역 축소 →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 수산자원관리 강화 : 과잉어획노력량 감소 정책
 - 2006년까지 연근해어선 5,114척 감척
 - WTO/DDA 협상 : 무역이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금지 → 수산업 위축 불가피
 - FTA 협상 : 수입수산물 관세인하 → 국내 경쟁력 열위 업종 및 품종피해 불가피
-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

2. 국내 여건변화

- 수산업 분야
 - 연근해 어획량 지속적 감소와 양식어업 생산량의 점진적 증가
 - '86년) 연근해 어획량 170만톤 → '07년) 115만톤
 - '07년에 양식어업이 139만톤으로 연근해보다 24만톤이 많음
 - 연근해어업 경영여건(수익성) 악화
 - 총자본이익율 감소 '80년) 25% → '05년) 10%
 -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식 고조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90년) 36.2kg → '06년) 54.2kg
- 어촌 분야
 - 타산업과의 어가소득 격차확대 및 양극화 심화
 - '06년 어가소득은 30백만원으로 도시가계소득의 72.6%¹⁾임
 - 교육, 의료, 복지, 문화부문에서 격차

1) 도시소득 : 41백만원, 어촌소득 30백만원

-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정주기반 약화
 - '90년) 어가인구 496천명 → '06년) 211천명 → '07년) 201천명
 - '90년) 고령화(60대 이상) 10.8% → '06년) 30.3% → '07년) 32.1%
- 최근 생산(1차산업), 가공(2차산업), 체험관광 등 각종 서비스(3차 산업)을 통합한 6차산업 추진으로 다양한 소득원 창출이 기대
 - ⇒ 전남 보성군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녹차를 이용한 6차산업 효과 거양
 - ※ 녹차밭에서 녹차 생산 → 2차 제품가공 → 녹차체험관광, 녹차해수탕 등 다양한 체험관광서비스 제공
- 다원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서 어촌 재발견 → 어촌을 국민의 휴양, 교류, 체험, 학습의 장으로서 인식
 - 어촌체험마을 방문 관광객 '01년)172천명 → '07년)5,119천명
 - 어촌체험마을 관광소득 '01년)8억원 → '07년)523억원

□ 어항 분야

- 국가어항 항내수질, 항내퇴적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어항정비 및 어항환경개선 요구 증대
 - 2006년까지 104개 국가어항 중 시설 및 시공 중인 시설물은 649개소임. 구조물의 시설년도가 20년 이상인 '95년 이전에 시설된 구조물이 노후된 상태로 볼 수 있음.
 - ※ '95년 이전에 기 시설물은 170개소로 약 26%를 차지
- 주로 어업인 위주로 이용되던 어항이 교통, 관광, 정보 등의 다기능화에 따라 전 국민으로 이용확대 추세
- 도시민의 휴식 및 관광활동 장소, 어업인 편의시설 및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종합기능 수행 요망
- 해양환경변화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어항개발 요구 점증

□ 관광 분야

- 주5일 근무제 정착, 교통망 확충,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과 해양지향의 관광패턴 붐으로 바다, 해수욕장, 갯벌, 특산수산물 및 관광어항 등 어촌의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민관광 : '05년)381백만명 → '13년)622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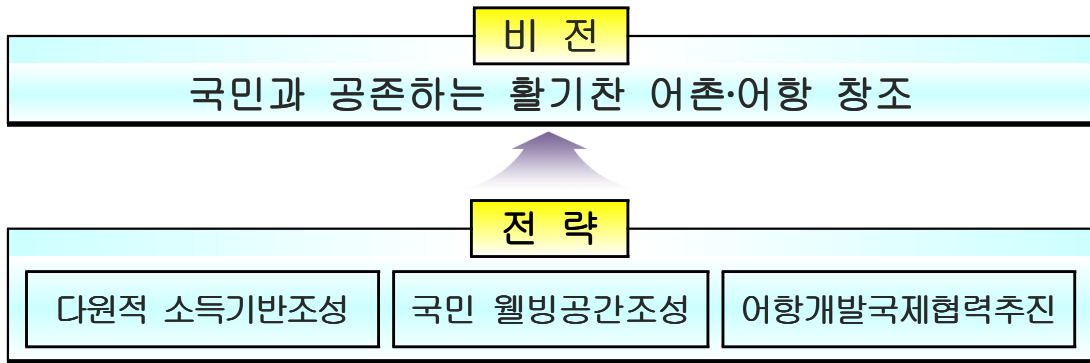
- 어촌관광 : '05년) 95백만명 → '13년)167백만명
- 유어낚시, 요트 등 선진국형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로 해안 및 내수면을 찾는 인구 급증 전망
- 해양레저기구의 규모 '04년) 6,372척 → '13년)28,302척

3. 정책 패러다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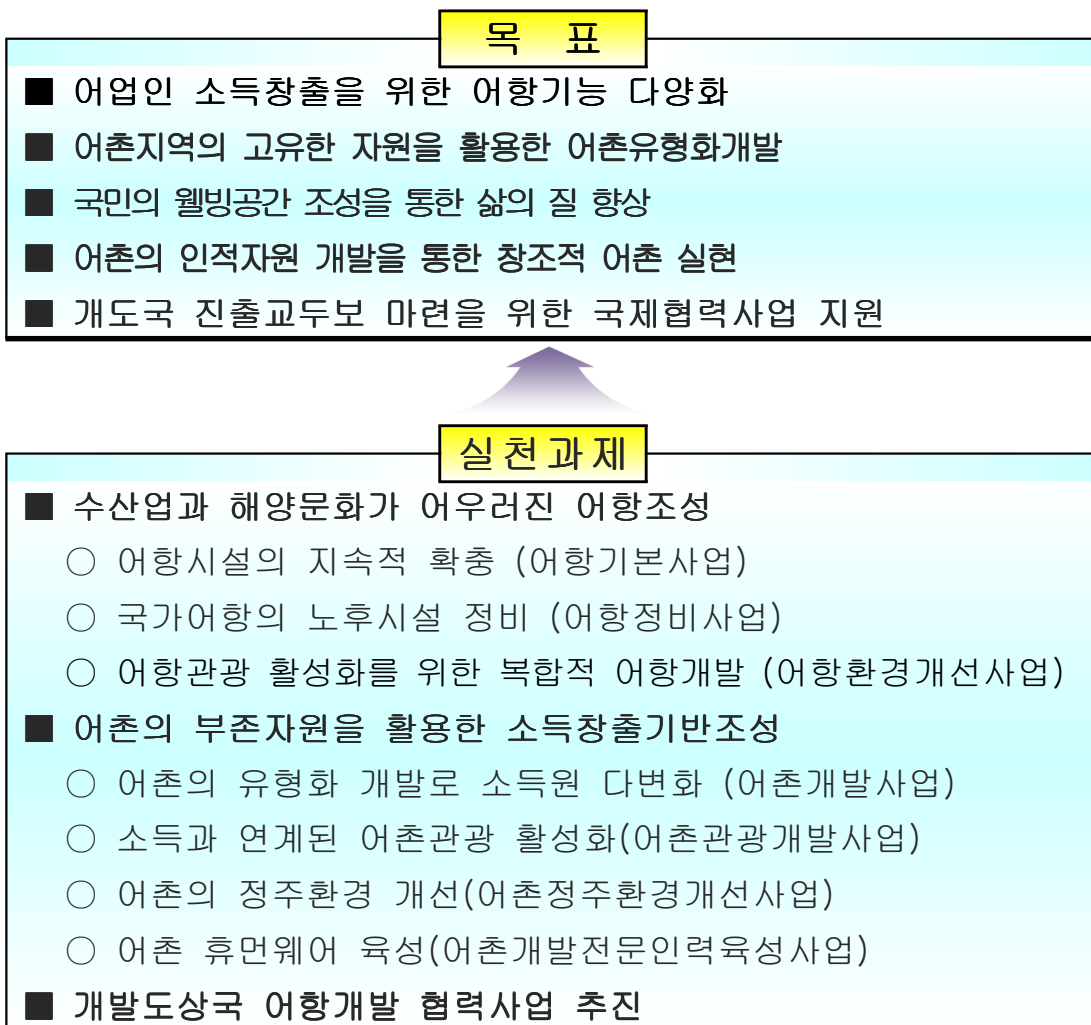
| 구분 | 기존정책 | 패러다임 변화 |
|----------|----------|-----------------------------|
| 수산정책 범위 | 수산업 중심 | 수산업·수산자원·가공산업·어업인·어촌의 통합 정책 |
| 지원방식 | 균형적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
| 수산업방향 | 생산중심 | 소비자 안전·품질·소비 및 수출 중심 |
| 어촌·어항 공간 | 가치중심 | 생산+정주+소비+휴양공간으로 통합 |
| 개발방향 | 어업인·어촌중심 | 어업인·소비자·국민에게 열린 어촌·어항 공간 |
| 개발범위 | 국내중심 |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확대 |

Ⅲ. 어촌·어항개발 정책방향

1. 비전과 전략



2. 새로운 정책방향



IV.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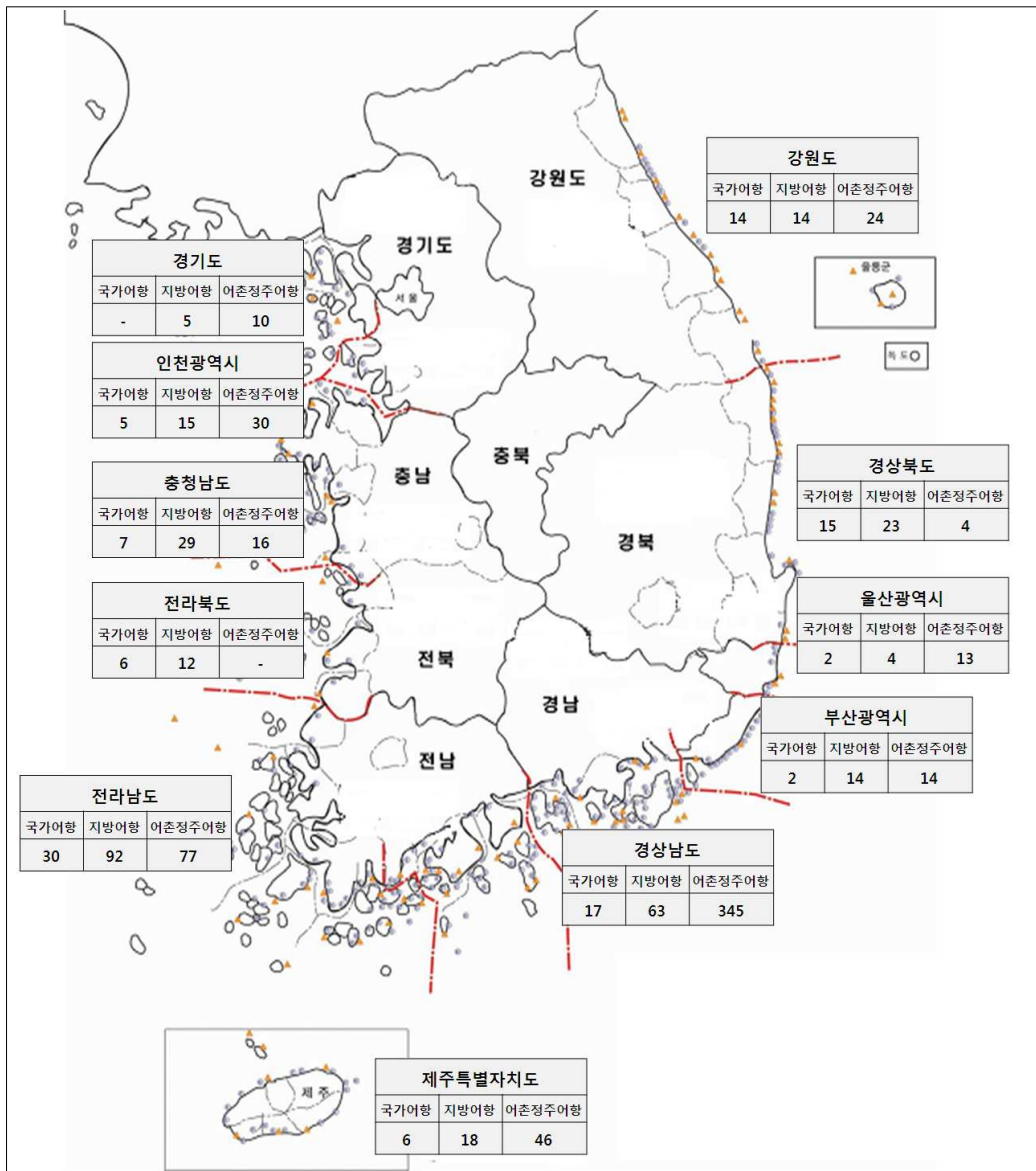
1.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어항 조성

가. 일반 현황

□ 어항의 종류 및 지정현황

- 어촌어항법에 의거 지정된 어항은 국가어항 104개소, 지방어항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579개소 등 972개항이며, 이외에 비지정 소규모포구 1,334개소가 전국 연안에 분포

어항 지정현황



<어항의 종류 및 현황>

| 구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
| 정의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
| 지정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광역시장,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 관리권자 | 광역시장, 시장·군수 | 광역시장, 시장·군수 | 시장, 군수, 구청장 |
| 지원조건 | 국고 100% | 국고 80% 지방비 20% | 지방비 100% |
| 지정/ 완공항수 | 104개 항/90개 항 | 289개 항/134개 항 | 579개 항/133개 항 |
| 총사업비/ '07까지 투자액 | 33,308억원/ 23,595억원 | 19,849억원/ 9,934억원 | 13,791억원/ 7,860억원 |

□ 어항의 기능

○ 기본적 기능

-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어업활동 지원기지
 - 산지(어항)에서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
 - ⇒ 선도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 항내 수면을 고급어류의 일시 축양장으로 활용
 - ⇒ 출하시기 조절 및 고가 판매 가능

○ 부수적 기능

-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
 - 도서·벽지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정보의 기지
 -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기지
- 해양관광 및 문화공간 제공

- 바다와 관련된 문화·레저활동(낚시배, 요트, 유람선 등) 및 음식점, 휴게·숙박시설, 주차공간 등 제공
- 기르는 어업 등 자원관리형 재배어항 역할
 - 중요생산 및 중간육성장, 활어일시보관장소 등으로 어업자원 보호육성

□ 어항개발사업의 종류

- 어항 개발사업은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²⁾하여 추진
- 국가어항은 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재정 여건상 기본사업 위주로 추진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 | |
|-----------------|---|
| 어항기본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방파제, 물양장, 호안, 정박지 등 |
| 어항정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기존 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 보수·보강·확장 |
| 어항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 공동작업장, 창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화장실, 해수소통구 등 어항기능시설 및 환경시설 |

나. 어항개발규모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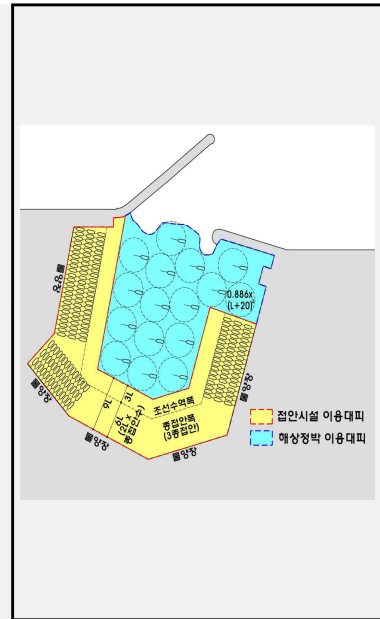
□ 어항 수요 검토

- 전국 총어선은 86,113척(2006년 기준)에서 어선감척실적 및 계획을 반영하여 목표연도인 2013년에 80,370척으로 무동력, 원양,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수용대상어선 76,313척 중 60,260척이 기존의 국가어항(54%), 지방어항(19.3%), 무역항 및 연안항(26.7%)에 수용 가능함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수용가능 어선척수>

| 구 분 | 계 | 국가어항 (104개항) | 지방어항 (287개항) | 항 만 (40개항) |
|------------|---------|------------------|--------------------|--------------------|
| 계 | 60,260척 | 32,541척 (54%) | 11,628척 (19.3%) | 16,091척 (26.7%) |
| 접안시설 이용 | 51,159척 | 27,202척 | 7,866척 | 16,091척 |
| 동 해 | 7,701척 | 4,147척 | 1,372척 | 2,039척 |
| 서 해 | 14,779척 | 7,800척 | 2,159척 | 4,820척 |
| 남 해 | 28,679척 | 15,255척 | 4,335척 | 9,089척 |
| 해상정박 이용 | 9,101척 | 5,339척 | 3,762척 | - |
| 동 해 | 470척 | 265척 | 205척 | - |
| 서 해 | 3,273척 | 1,949척 | 1,324척 | - |
| 남 해 | 5,358척 | 3,125척 | 2,233척 | - |



- 수용대상어선 76,313척 중 수용가능어선 60,260척을 제외한 나머지 16,053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어항 30개 추가지정 필요

<국가어항 개발 필요항수(2013년 기준)>

| 구분 | 어선추정 결과 | 수용대상 어선척수 | 수용가능 어선척수 | 안전수용률 (%) | 수용필요 척수 | 항당수용 가능척수 | 국가어항 개발항수 |
|----|------------|--------------|--------------|--------------|------------|--------------|--------------|
| 전국 | 80,370 | 76,313 | 60,260 | 79.0 | 16,053 | | 30 |
| 부산 | 4,089 | 3,847 | 2,290 | 59.5 | 1,557 | 213~568 | 3 |
| 인천 | 2,538 | 2,506 | 2,046 | 81.6 | 460 | 246~339 | 2 |
| 울산 | 1,015 | 796 | 425 | 53.4 | 371 | 395~549 | 1 |
| 경기 | 2,498 | 1,317 | 259 | 19.7 | 1,058 | 339~396 | 2 |
| 강원 | 3,380 | 3,153 | 3,153 | 100 | - | 359~470 | - |
| 충남 | 6,181 | 5,998 | 5,200 | 86.7 | 798 | 339~396 | 2 |
| 전북 | 4,294 | 5,214 | 3,394 | 80.5 | 820 | 250~396 | 2 |
| 전남 | 32,130 | 30,995 | 23,132 | 74.6 | 7,863 | 246~568 | 13 |
| 경북 | 3,998 | 4,059 | 4,059 | 100 | - | 395~430 | - |
| 경남 | 16,717 | 16,223 | 13,097 | 80.7 | 3,126 | 409~568 | 5 |
| 제주 | 3,063 | 3,205 | 3,205 | 100 | - | 444 | - |

□ 어항별 필요항수 산정

- 국가어항 수요 검토결과 필요항수 30개 추가지정 시 현재 104개항에서 134개항으로 확대
 - 단기(2009~2013년) 6개 지정, 장기(2014~2023) 24개 지정
 - 추가수요 30개항은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을 항종변경
- 지방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에 따라 현재 289개에서 260개로 축소
- 어촌정주어항은 1개항을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하여 현재 579개에서 578개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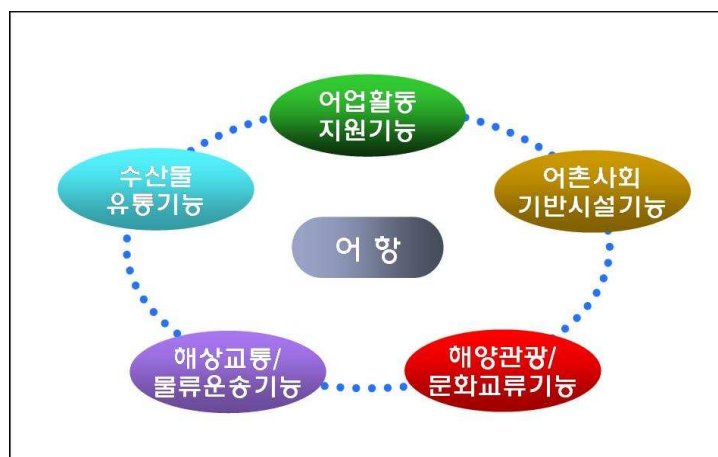
<어항별 필요항 수>

| 구분 | 필요항수 | 기지정항수 ('06년기준) | 지정 및 해제 | | |
|--------|------|----------------|---------|------|-------|
| | | | 계 | 단기 | 장기 |
| 국가어항 | 134 | 104 | 30 | 6 | 24 |
| 지방어항 | 260 | 289 | (-)29 | (-)5 | (-)24 |
| 어촌정주어항 | 578 | 579 | (-)1 |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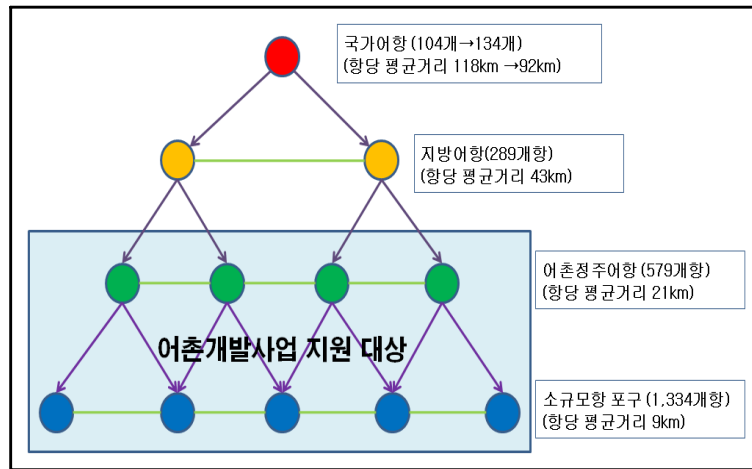
다. 어촌·어항 연계개발

- 어항의 기능은 어업활동 지원기능, 수산물유통기능,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 해상교통 및 물류운송기능, 해양관광 및 도시와의 문화교류 기능 등으로 구분
- 어항기능 중에서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 해양관광 및 도시와의 문화교류 기능 등이 직·간접적으로 어촌과 연계 개발되고 있음.

<어항의 기능>



- 어촌개발사업(1단계 160개권역) : 어항시설 47%, 해안시설 19%, 편익시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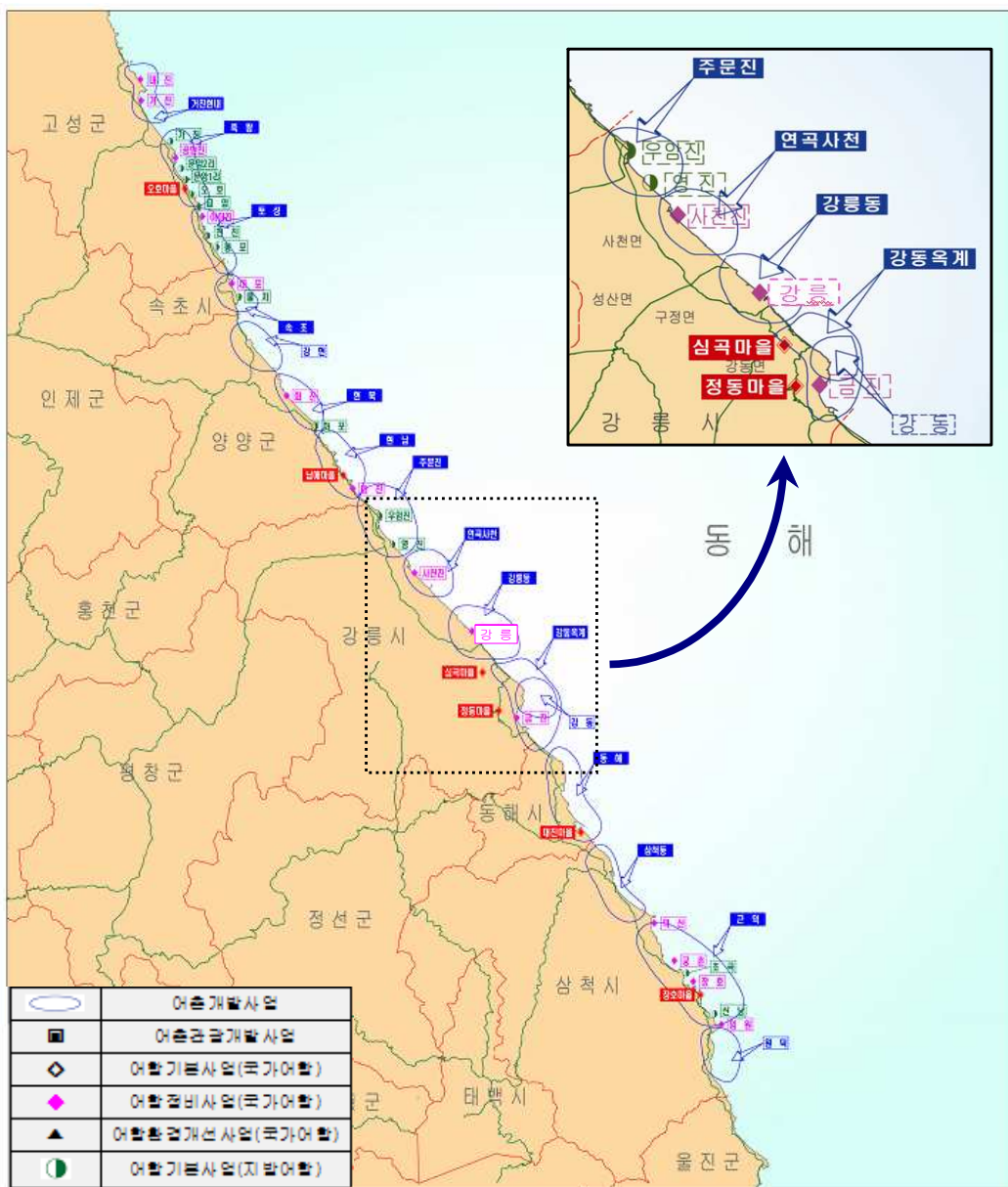
- 지정어항 24개(국가어항 13개, 지방어항 8개, 어촌정주어항 3개소)를 선정하여 교통, 관광, 유통, 해양레저 등의 다기능어항을 어촌과 연계개발 추진 중임.

<어항별 연계개발 현황>

| 항 종 | 항 명 | 사업비(항당) |
|--------|---|-------------------------|
| 국가어항 |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마량항, 양포항, 맥전포항, 모슬포항(7개항) | 어촌 : 50억원 어항 : 100억원 |
| | 대변항, 대포항, 흥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6개항) | 어항 : 500억원 *어촌부문 포함 |
| 지방어항 | 대항항, 전국항, 무창포항, 야미도항, 방축항, 전촌항, 학림항, 법환항(8개항) | 어촌 : 60억원 |
| 어촌정주어항 | 초지항, 대송항, 대진항(3개항) | 어촌 : 60억원 |

- 국가어항 배후부지에 어촌의 생산기반 및 정주기반시설 등 어항기능시설 지원 추진
-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어촌개발사업 지원대상 중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어항시설 지원

<어촌·어항 연계 개발 예시(강원도 강릉)>



라.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1) 어항시설의 지속적 확충(어항기본사업)

○ 현황

- 외해로부터 파도를 막아주는 외곽시설(방파제 등)과 어선이 항내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물양장 등) 및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등) 등의 항별 기본사업 추진

| 구분 | 지정항수 | | | |
|--------|------|----------|--------|------|
| | 계 | '07까지 완공 | '08 완공 | 미완공항 |
| 국가어항 | 104 | 90(87%) | 2 | 12 |
| 지방어항 | 289 | 134(46%) | 11 | 144 |
| 어촌정주어항 | 579 | 133(23%) | 9 | 437 |

※ ()내는 완공율임

○ 문제점

- 지정어항의 기본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어선안전수용율은 79%에 불과하며, 어항개발규모 산정결과 국가어항 30개의 추가지정이 필요
- 지방어항은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국가어항에 비해 투자가 미흡하여 완공율 저조
- 어촌정주어항은 현재까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완공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

○ 실천방안

국가어항

- 기 지정된 104개항 중 미완공 12개항을 2012년까지 조기 완공 달성

| 구분 | 계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미완공항 (항수) | 12 | 1 | 1 | 1 | 5 | 1 | 2 | 1 |

- 국가어항 지정 필요항수 30개항 중 시·군·구별로 어선안전수용율이 100% 미만이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6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7년까지 사업 완공

| 시도별 | 계 | 부산 | 경기 | 충남 | 전남 | 경남 |
|-------|-----|----|----|----|----|--------|
| 신규지정항 | 6개항 | 천성 | 궁평 | 장고 | 이목 | 노량, 남포 |

- 30개항 중 '08년 지정대상 6개항을 제외한 24개항에 대해서는 총수방식³⁾을 도입하여 2012년에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를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시·도 | 항수 | 국가어항 지정 기준 부합항('07년말 기준) |
|-----|----|---|
| 계 | 24 | |
| 부산 | 2 | 민락(수영구), 명지(강서구) |
| 인천 | 1 | 진두(옹진군) |
| 충남 | 6 | 고대도(보령시), 호도(보령시), 삼시도(보령시), 백사장(태안군), 영목(태안군), 장고(당진군) |
| 전북 | 2 | 선유도(군산시), 개야도(군산시) |
| 전남 | 4 | 법성(영광군), 재원(신안군), 수대(신안군), 웅곡(신안군) |
| 경남 | 4 | 견유(통영시), 진촌(통영시), 장목(거제시), 단항(남해군) |
| 기타 | 5 | 추후 재산정 |

지방어항

- 지방어항의 경우 신규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을 제고
 - 완공율 : ('07년) 46% → ('13년) 70% → ('23년) 100%
- 지방어항 완공율 제고를 위해 총수방식 적용배제

어촌정주어항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비지원(국비 80%, 지방비 20%) 검토
 - 완공율 : ('07년) 23% → ('13년) 33% → ('23년) 75%
 -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제고를 위해 총수방식 적용배제
 - ※ 어촌정주어항의 국비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어촌정주어항을 조기 개발 하도록 정책방향 유도

3)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항을 해제한 항수만큼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항으로 대체하여 개발하는 방식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항 기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2개항 완공 - 6개항 추가지정 및 사업착수 ◦ 지방어항 완공율 70% 달성 ◦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33% 달성 ※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2012년, 5억), 24개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항 완공 - 추가지정 24개항 사업 착수 ◦ 지방어항 : 완공율 100% 달성 ◦ 어촌정주어항 : 75% 완공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 구 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 계획 |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계 | 28,843 | 6,864 | 1,489 | 1,495 | 1,406 | 1,116 | 1,358 | 21,979 | |
| 국가 어항 | 완공 항수 | 42 | 12 | 2 | 5 | 3 | 2 | 6개 공사착수 | 30 |
| | 사업비 | 10,871 | 2,171 | 662 | 617 | 471 | 121 | 300 | 8,700 |
| 지방 어항 | 완공 항수 | 144 | 52 | 9 | 10 | 10 | 11 | 12 | 92 |
| | 사업비 | 12,832 | 3,375 | 587 | 628 | 672 | 719 | 769 | 9,457 |
| 어촌 정주 어항 | 완공 항수 | 218 | 57 | 10 | 11 | 11 | 12 | 13 | 161 |
| | 사업비 | 5,140 | 1,318 | 240 | 250 | 263 | 276 | 289 | 3,822 |

- ※ 1. 지방어항의 경우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합계임
- 2. 추가지정이 필요한 30개항에 대한 추진계획

6개 항은

- '08년 : 지정고시
- '09~'11년 :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6개×5억원=30억원)
- '12~'13년 : 6개 공사착수(6개×50억원 = 300억원)
- '14~'18년 : 공사완공(6개×250억원 = 1,500억원)

24개 항은

- '12년 : 타당성조사용역
- '14년부터 : 단계적으로 개발 착수(24개×300억원=7,200억원)

2) 노후어항의 기능제고(어항정비사업)

가) 어항시설물 정비

○ 현황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 중 44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중

(단위 : 항수)

| 시도별 | 계 | 인천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정비대상 국가어항 | 44 | 3 | 4 | 5 | 4 | 14 | 8 | 3 | 3 |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방지시설 및 노후 시설 보강사업에 한해 투자

○ 문제점

- 2006년까지 104개 국가어항 중 기 시설 및 시공 중인 구조물 649개 중 '95년 이전에 시설된 구조물은 170개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항 구조물의 내구년도를 20~30년⁴⁾으로 볼 때 이들 구조물은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임

(단위 : 개소, %)

| 시설 완료 연도 | 계 | 동해 | 남해 | 서해 | 비율 |
|------------|------------|------------|------------|------------|------------|
| 1995년 이전 | 170 | 52 | 66 | 52 | 26 |
| 1995~2005년 | 412 | 103 | 219 | 90 | 64 |
| 2005년 이후 | 67 | 14 | 31 | 22 | 10 |
| 합 계 | 649 | 169 | 316 | 164 | 100 |

○ 실천방안

-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44개항 중 24개항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0개항은 2023년까지 완료

4) 근거 : 일본토목학회 및 콘크리트 공학협회에서 제시한 내구수명 규정

- 정비대상어항 중 개발잠재력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된 3개어항(어유정항, 대포항, 사천진항)의 리모델링을 2013년까지 완료
- 잔여 55개항(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5개항 제외)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상태 확인 관리, 정비가 시급한 어항에 대해 정비계획에 반영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항정비사업 | ◦국가어항 24개항 정비사업 완료 (리모델링 3개항 포함) | ◦국가어항 20개항 완공 · 리모델링 계속 추진 |

※ 안전점검결과 정비가 시급한 어항은 정비계획에 별도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 구 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 계획 |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어항 정비 사업 | 항 수 | 44 | 24 | 2 | 7 | 3 | 5 | 7 | 20 |
| | 사업비 | 17,573 | 3,962 | 391 | 551 | 766 | 1,095 | 1,159 | 13,611 |

※ 항수는 정비사업 완료 항수임

나) 해수면 상승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 현황

- 1976년에서 2006년까지 31년간 38개 어항의 피해사례 분석결과 태풍 등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방파제에 집중되며, 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항이 약 70%로 반복 피해사례가 많음
- 최근 해수면 상승 및 잦은 대형태풍 내습으로 시설물 피해가 커짐에 따라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전해역 심해설계파」를 재산정한 결과 파고가 최대 3m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 발표

<최근 5년간 국가어항 피해현황>

(단위 : 개항, 백만원)

| 권역 |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
| | 피해항수 | 피해액 | 피해항수 | 피해액 | 피해항수 | 피해액 | 피해항수 | 피해액 | 피해항수 | 피해액 |
| 부산 | - | - | 1 | 1,370 | 1 | 9,855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1 | 10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1 | 300 | 1 | 129 | - | - | 1 | 400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1 | 98 | - | - | - | - | - | - |
| 전남 | - | - | 3 | 3,172 | 1 | 377 | - | - | - | - |
| 경북 | - | - | 3 | 1,434 | 2 | 1,056 | 1 | 72 | 4 | 413 |
| 경남 | - | - | 2 | 61 | 7 | 2,674 | - | - | - | - |
| 제주 | - | - | 1 | 30 | 2 | 297 | - | - | - | - |
| 계 | - | - | 13 | 6,475 | 14 | 14,388 | 1 | 72 | 5 | 813 |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2005년 「나비」의 영향

- 2005년 이후 재산정한 심해설계파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항은 5개항(경북 4개항, 경남 1개항)임.

○ 문제점

- 과거 어항구조물 설계에 적용된 심해 설계파는 '88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5년 재산정 발표된 「전해역 심해설계파」 결과,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방안이 요구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없을 경우 대형태풍 내습으로 인한 구조물 피해확산 및 어선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

○ 실천방안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5개항의 정비사업 추진(2013년까지 1개항 완료)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남해안(44개항)을 우선검토, 동해안(29개항), 서해안(26개항) 순으로 정비계획 수립
-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설계파 상향 조정에 따른 기존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및 보강계획 기준 수립에 대한 용역(한국해양연구원, '06~'10)이 추진 중에 있음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항정비사업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기 수립 5개항 정비사업 계속 추진 (1개항 완료) - 사업비 : 965억원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2011~2013년, 30억원)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기 수립된 잔여 4개항 정비사업 완료 - 사업비 : 874억원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 추정사업비 : 약550억원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 구 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 중장기 계획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어항 정비사업 | 항 수 | 16 | 1 | (3) | (4) | (5) | (5) | 1(4) | 15 |
| | 사업비 | 2,419 | 995 | 80 | 140 | 215 | 236 | 324 | 1,424 |

※ 항수는 정비사업 완료 항수임

다) 항내 매몰 토사(준설토) 처리 문제

○ 현황

- 해양환경관리법 상 어항건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는 해양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의 처리를 위한 공사비 증가요인 발생
- 104개 국가어항에 기 계획되어 있는 준설토사는 약 3,128만^m로써 2008년까지 2,805만^m를 준설퇴하고, 잔여 준설퇴량이 323만^m(준설퇴비용 390억원)이 남아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매몰현상으로 인해 준설퇴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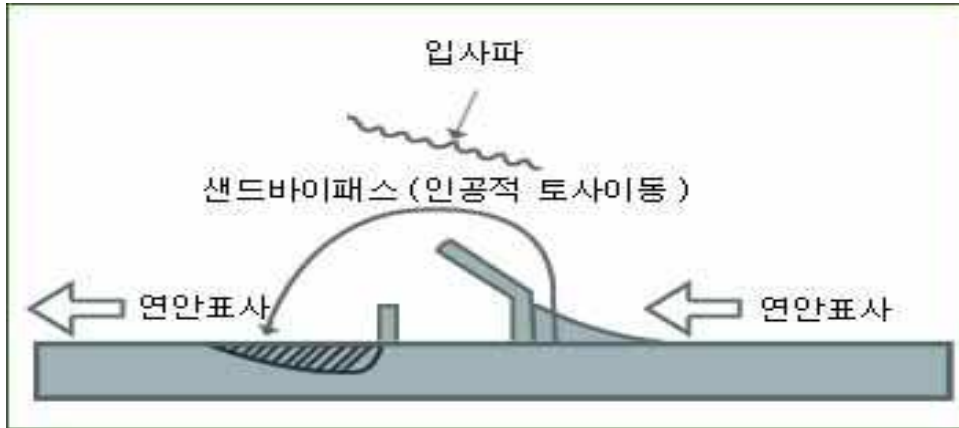
○ 문제점

- 과거에 준설퇴 처리는 항내 준설퇴투기장 조성 또는 공해상에 허가를 받아 투기하여 왔으나, 최근 보존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준설퇴투기장 조성 및 외해투기에 어려움
- 어항공사 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준설퇴사의 처리를 위한 막대한 국비 투자로 국고낭비 우려
- 준설퇴 투기장 조성 및 외해 투기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외부지역 준설퇴사 반입 금지 등),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 ※ 최근 구,해양수산부에서 준설퇴사의 유용 기준마련을 위해 「준설퇴사 처리 및 유효활용 기준수립(2007.6)」 용역을 추진하여, 양질의 준설퇴사 활용기준 및 유효활용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무산

○ 실천방안

- 어항개발이 지역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준설퇴 처리(해상투기, 투기장 조성, 준설퇴 유용 등)에 따른 문제는 어항 및 공유수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어항 지정·개발 추진
- 해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은 유용, 서남해안은 항별 투기장 또는 공동 투기장 확보

<준설토 유용(양빈공법)에 의한 침식·매몰대책>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항정비 사업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124만 ^m , 150억원)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199만 ^m , 240억원) |

※ 사업비는 “가) 어항시설물정비” 사업에 포함
 ※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준설은 별도 계획에 반영

3) 어항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어항개발(어항환경개선사업)

가) 다기능 어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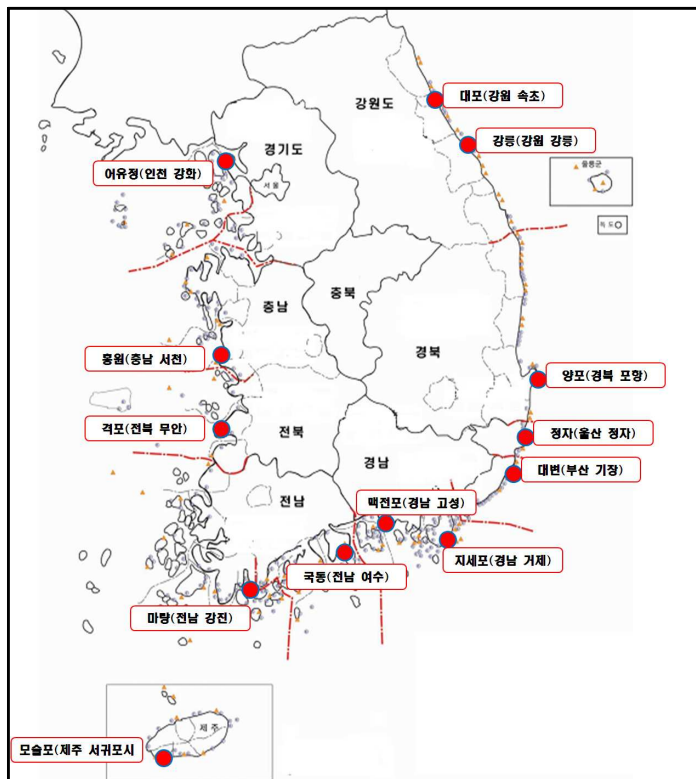
○ 현황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과거 어항기능이 단순 수산물 생산중심 기능에서 어촌관광, 해양레저, 해상교통 등 복합다기능어항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 2004년 기지정된 국가어항 중 다기능어항 13개소를 선정 2013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

<다기능어항 지정항수>

(단위 : 항수)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3 | 1 | 1 | 1 | - | 2 | 1 | 1 | 2 | 1 | 2 | 1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어항에 수산업 기능뿐 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관광어항을 부각시킨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

을이고 있음.

⇒ 설치시설 : 관광레저용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관광객편의시설, 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소득 시설,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어촌어항법 제18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항관광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어항기능의 다변화를 위해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선정,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어항 개발 미흡
- 13개 다기능어항의 시설계획이 친수공간 위주의 시설로써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개발 미흡
- 2013년 기 선정된 다기능어항 완공 후 사업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어 연차적 확대개발방안 수립이 필요
- 어촌의 직접소득사업과 직결되는 회센터·숙박시설 등 소득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곤란

○ 실천방안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 다기능어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2014년부터 2차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
 - ※ 2004년 다기능어항 선정 시 개발 후보항으로 예정된 5개항(감포항, 녹동항, 미조항, 안흥항, 삼길포항)은 2차 다기능어항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 2차 다기능어항 계획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항 개발 개념 도입(낚시공원형, 관광레저형, 체험여가형, 가공유통형, 자원조성형 등)
- 또한 노후어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수산업 중심기능 뿐만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생활거점기능 등 다양한 기능어항으로 계획 시행

- 어촌의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민의 수익사업 참여 유도 등 민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예시1) 국내사례

- 경북 영덕군 강구항의 경우 항 인근에 볼거리로서는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등 유명하며, 먹거리는 영덕대게 및 풍부한 수산물, 인근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쉴거리 제공과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7번 국도 교통망이 연계되어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어항 풍경의 테마의 관광어항으로 개발 가능

(예시2) 국외사례

- 일본 타루미어항의 경우 수산물 가공, 요리, 판매시설 등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고 별도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생산, 대규모의 김양식업을 통해 어장, 어항, 어촌, 관광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본 마루야마 어항은 어항 인근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어항 개발

< 아울렛매장 시설 및 낚시공원 >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 단기계획 완료 단계에서(2012년) 사후평가를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다기능어항사업 확대 추진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항, 억원)

| 구 분 |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다가능 어항개 발사업 | 항 수 | 9 | 9 | 1 | 4 | 1 | 2 | 1 |
| | 사업비 | 1,278 | 1,278 | 332 | 400 | 258 | 188 | 100 |

※ 13개항 중 4개항은 '08년까지 사업 완료

나) 어항기능시설 확충

○ 현황

- 어항이용 및 활용이 어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 어업인 편의시설 및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개발 필요성 제기
-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관광기능시설과 어항정화시설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항에 정의되어 있으나, 과거의 어항에 대한 관점이 단순 수산물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어항기본시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
- 최근 어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관광레저, 체험활동 등 다양한 기능에 이미지를 요구함에 따라 어항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증진하고,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이 필요
- 서·남해안 지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어선의 용이한 접·이안 및 양육을 위하여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잔교 시설이 절실한 실정임

※ 어항환경개선시설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광장·조경시설, 다목적체육시설, 공연장 등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 해역 | 항수 | 부잔교 설치 항수 | 부잔교 설치어항(개수) |
|-----|----|---------------|--|
| 서해안 | 28 | 7개항 (11개) | 안흥(1), 외연도항(1), 흥원항(3), 격포항(2), 연도항(전북)(1), 위도항(2), 서망항(1), |
| 남해안 | 38 | 17개항 (22개) | 마량항(1), 득암항(1), 청산도항(1), 녹동항(2), 풍남항(1), 여호항(1), 발포항(1), 시산항(1), 국동항(1), 낭도항(1), 안도항(1), 초도항(2), 연도항(전남)(1), 구조라항(2), 원전항(3), 호두항(1), 매물도항(1) |

○ 문제점

-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능편익시설이 미비
- 그 동안 어항기본시설 위주의 투자로 인해 어업인의 작업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기능시설 지원 미비
- 서·남해안 지역 어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어선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부잔교 시설 미비
- 현재까지 부잔교 시설은 전체 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 어항별로 지역주민 건의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부잔교 설치 또는 이용자 단체인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주로 설치

○ 실천방안

- 어항의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능 목적의 어항 환경개선사업 도입
 - 해수소통구 설치 등 항내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시설 확충
 - ※ 해수소통구 설치현황 : 기계획 35개항, 장래계획 59개항
 -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야적장, 기자재 창고, 어구건조장,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등) 확충
 - 현대적 생활중심지·복합공간으로의 개발(공원, 광장, 체육시설 등)
- 어항의 기능제고 및 환경개선으로 어항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구보관창고 등 4개 기능시설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매년 14개 공익성격의 기능시설 확충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

- 고, 14개 기능시설 완료 후 수익시설에 대한 지원 검토
- 2009년부터 부잔교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부잔교 시설 설치
 - ※ 2007년 현재 부잔교 설치 대상항으로 조사된 남해안 13개항, 서해안 20개항에 시설 계획 반영
- 서·남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정비계획 수립시 부잔교 등 소형어선 접·이안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반영

<어항기능시설 종류 및 우선순위>

| 우선 순위 | 해 당 시 설 물 | 비 고 |
|-------|---|-------|
| I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 공공 이용 |
| II | 광장·조경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 | 문화시설 |

※ 지역특성 및 어항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항기능시설 확충 | ◦ 5개 시설 완료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 ◦ 잔여 9개 시설 완료 ◦ 완료후 수익시설로 사업 확대 |

※ 항별 이용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가능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 중장기 계획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어항기능 시설확충 | 사업비 | 16,890 | 2,281 | 41 | 63 | 373 | 807 | 997 | 14,609 |

마. 어항 투자 계획

□ 어항의 투자규모는 우리나라의 '08년 경제성장율에 맞춰 연 증가율을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편성("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구)기획예산처(2007.4))

(단위 : 억원)

| 구 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 계획 | | |
|--------|---------------------------------|---------|--------|-------|-------|-------|-------|-----------|----------|--------------------------------|
| | | 소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 사업비 | 67,003 | 15,380 | 2,333 | 2,649 | 3,018 | 3,442 | 3,938 | 51,623 | | |
| 어항기본사업 | 계 | 28,843 | 6,864 | 1,489 | 1,495 | 1,406 | 1,116 | 1,358 | 21,979 | |
| | 국가 | 완공 | 42 | 12 | 2 | 5 | 3 | 2 | 6개 착수 | 30 |
| | | 사업비 | 10,871 | 2,171 | 662 | 617 | 471 | 121 | 300 | 8,700 |
| | 지방 | 완공 | 144 | 52 | 9 | 10 | 10 | 11 | 12 | 92 |
| | | 사업비 | 12,832 | 3,375 | 587 | 628 | 672 | 719 | 769 | 9,457 |
| | 정주 | 완공 | 218 | 57 | 10 | 11 | 11 | 12 | 13 | 161 |
| | | 사업비 | 5,140 | 1,318 | 240 | 250 | 263 | 276 | 289 | 3,822 |
| | 계 | 19,992 | 4,957 | 471 | 691 | 981 | 1,331 | 1,483 | 15,035 | |
| 어항정비사업 | 국가 | 완공 | 44 | 24 | 2 | 7 | 3 | 5 | 7 | 20 |
| | | 사업비 | 17,573 | 3,962 | 391 | 551 | 766 | 1,095 | 1,159 | 13,611 |
| | 설계 파고 증가 | 완공 | 16 | 1 | (3) | (4) | (5) | (5) | 1(4) | 15 |
| | | 사업비 | 2,419 | 995 | 80 | 140 | 215 | 236 | 324 | 1,424 |
| 계 | 18,168 | 3,559 | 373 | 463 | 631 | 995 | 1,097 | 14,609 | | |
| 환경개선사업 | 다 기 능 개 선 사 업 | 완공 | | 9 | 1 | 4 | 1 | 2 | 1 | |
| | | 사업비 | 1,278 | 1,278 | 332 | 400 | 258 | 188 | 100 | 추가지정 여부 결정 ⁵⁾ |
| | 기능시설 | 16,890 | 2,281 | 41 | 63 | 373 | 807 | 997 | 14,609 | |

※ 2008년 예산 : 2,590억원(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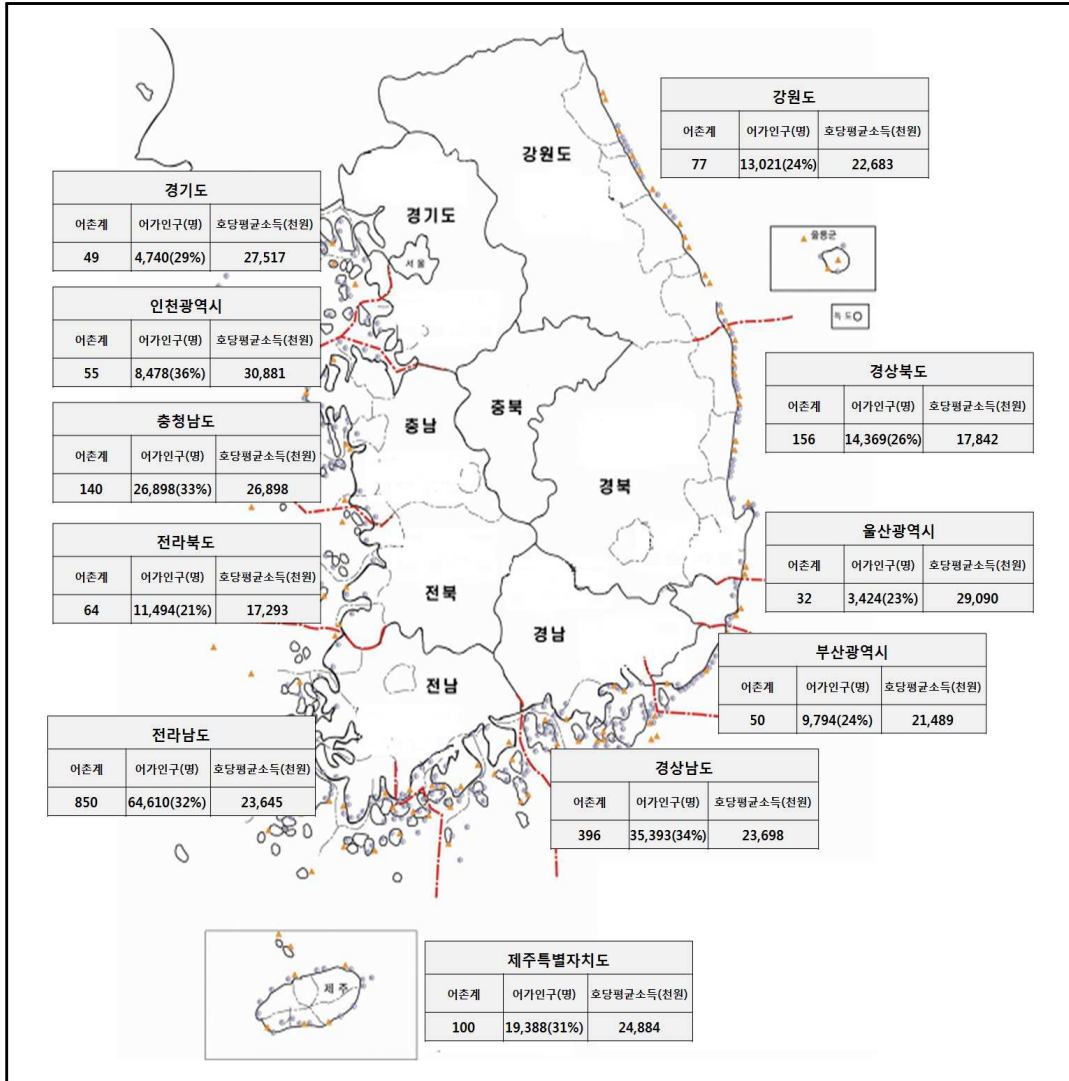
5) 사전('08), 사후('12)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지정 여부 결정

2.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조성

가. 일반 현황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어촌계는 1,969개(이하, '06년 기준), 어가수는 163,747호, 어가인구는 211,610명이며,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은 약 30백만원이고, 전국 어가인구 중 60세이상 인구는 30.3%를 차지

<전국 어촌계 현황>



※ 어가인구 ()는 60세이상 어가인구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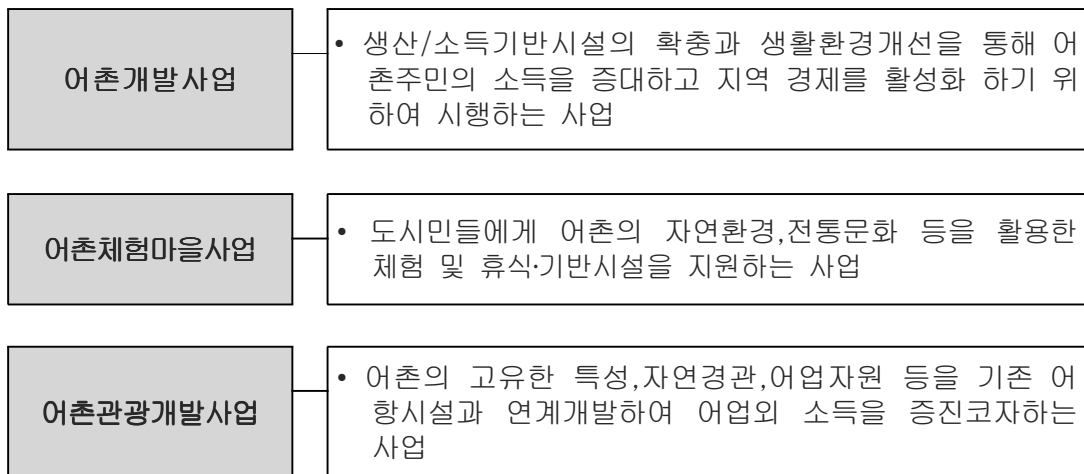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촌개발사업 232권역[(1단계:160개권역 ('94~'06년), 2단계:72개권역('07~'13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112개소('01~'13년), 어촌관광개발사업 18개소('04~'13년)임.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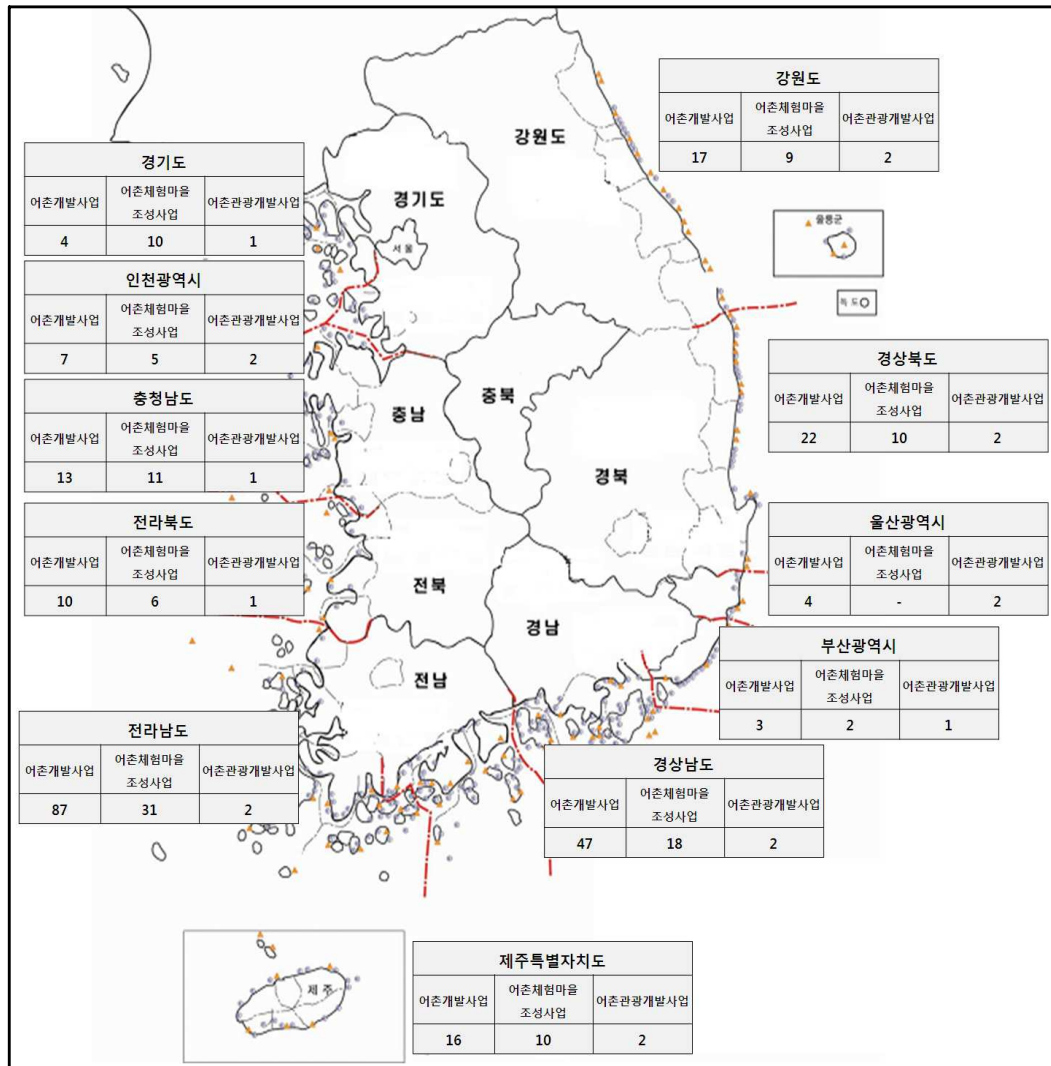
| 구분 | 어촌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 | 어촌관광개발사업 |
|-----------------------|------------------------------------|----------------------------------|-----------------------|
| 사업목적 | 수산업 소득기반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체험 중심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 증대 |
| 사업기간 | '94~'13 | '01~'13 | '04~'13 |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사업규모 | 총 230개권역 | 112개소 | 총 18개소 |
| 재원 | 균특회계 | 균특회계 | 균특회계 |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 국고 50% 지방비 50% |
| 총사업비/ '07까지 투자액 | 8,795억원/ 5,622억원 | 723억원/ 578억원 | 1,018억원/ 309억원 |

※ 어촌개발사업 230개소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2개소(영광대신, 남해지족)는 미포함

□ 사업내용은 어촌어항법제6조에 의거 어업인의 정주환경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어촌의 부족한 생산/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등을 지원함.



<어촌관련개발사업 현황>



나.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1) 어촌의 유형화 개발로 소득원 다변화(어촌개발사업)

○ 현황

- 어촌의 소득증대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4년~'13년까지 230개 권역 (8,795억원)을 대상으로 추진
- 1단계 160개 권역(5,545억원)은 당초 '06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08년 완료
- 2단계 70개 권역(3,250억원)은 '13년까지 완료 예정

<어촌개발사업 현황>

(단위 : 권역수(완공권역수))

| 구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어촌개발사업 | 230 (160) | 3 (2) | 7 (6) | 4 (3) | 4 (2) | 17 (13) | 13 (10) | 10 (7) | 87 (57) | 22 (15) | 47 (32) | 16 (13) |

※ 160개 완공권역에는 '08완공예정 8개 권역 포함

○ 문제점

- 그 동안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 및 지역안배 분산투자로 사업효과 미흡
- 정주·생산기반시설에 집중됨으로써, 지역특화 개발 미흡
- 광범위한 지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내 사업비(35억)를 일률적으로 분산 투자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특화개발 곤란
-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미흡
- 정형화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별 창의적인 어촌개발 미흡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절차 사전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 실천방안

- 지자체에서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사업추진체계 개편

- 지역별 관광 부존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2단계 70개권역중 61개권역(중(40억이하)·대(50억이하))에 대해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학습형 등 4개 유형으로 테마를 설정, 2013년까지 완료.
- ⇒ 자연·경관자원, 생태·어업자원, 지역특산물·먹거리자원, 역사·문화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유형(테마)을 설정, 고소득 어촌공간으로 조성
- 어촌지역 특성화 개발을 위해 사업비도 차등 지원방식으로 개편
- ⇒ 일률적 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지역 특성화에 따른 차등지원

<권역분류 기준 및 사업비 규모>

| 구분 | 대권역 | 중권역 | 소권역 |
|--------|----------------------------|------------------------------|----------------------------|
| 분류기준 | 어촌계 7개이상 어촌계원 420명이상 | 어촌계 5~6개 어촌계원 200~420명 | 어촌계 4개이하 어촌계원 200명이하 |
| 사업비 규모 | 50억이하 | 40억이하 | 30억이하 |
| 권역 규모 | 46개권역 | 15개권역 | 9개권역 |

<어촌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 자원성 | 접근성 | 도시근교 | 연안촌락 | 낙후어촌 |
|---------------------|---------------|-----------------|--------------------|------------------|
| 어촌교류형 (28) | 전통어업/ 생태마을 | 삼척원덕 | 홍성홍성 외 9개권역 | 부안위도 외 5개권역 |
| | 어촌문화 마을 | 포항칠포 외 1개권역 | 서산지곡 외 6개권역 | 제주대정서부 외 1개권역 |
| 수산물유통 판매형 (9) | 향도특산물 마을 | 마산마산만 외 2개권역 | 강원북부내수 면 외 3개권역 | 완도신지 외 1개권역 |
| 어촌관광 레저형 (20) | 해양레저 마을 | 부산장안 외 7개권역 | 거제서부 외 8개권역 | 신안장산 |
| | 혼합형 관광마을 | 제주구좌서부 | 통영용남광도 | - |
| 어촌문화 학습형 (4) | 테마교육 마을 | 화성서신 외 1개권역 | - | - |
| | 무공해 마을 | - | - | 통영비진도 외 1개권역 |
| 계(61) | | 17개권역 | 31개권역 | 13개권역 |

※ 70개소권역 중 소권역 9개권역을 제외한 61개권역을 유형화

- 1, 2단계 230개 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비사업 추진
 - ⇒ 1단계 160개 권역에 대해 선정 우선 배정하되, 어촌계의 사업 추진력 및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2012년 : 3단계 어촌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시행(140개 권역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 : 용역비 3억원
- 3단계 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2014~)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개 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따른 테마설정 추진 - 테마설정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 권역별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 개발을 위해 차등지원(50, 40억원) - 총소요예산 : 2,785억원 ◦ 3단계 어촌개발사업 방안 수립(2012년, 3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어촌개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권역에 대한 정비사업(1, 2단계 230개 권역 중 14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 - 소요예산 : 7,000억원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 구 분 | 총 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 계획 |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어촌개발사업 | 지원 권역수 | 210 | 70 | 26(14) | 11(10) | 12(12) | 11(15) | 10(20) | 140 |
| | 사업비 | 9,785 | 2,785 | 258 | 396 | 453 | 472 | 1,206 | 7,000 |
| | 국비 | 6,850 | 1,950 | 181 | 277 | 317 | 331 | 844 | 4,900 |
| | 지방비 | 2,447 | 697 | 65 | 99 | 113 | 118 | 302 | 1,750 |
| | 자담 | 488 | 138 | 12 | 20 | 23 | 23 | 60 | 350 |
| 용역비 | | 3 | - | - | - | 3 | - | | |

- ※ 70개 지원권역은 유형화 61개 권역 및 정주환경기반 9개 권역임
- ※ '09년도 26개 권역은 이미 착수 시행중인 15개 권역이 포함된 개수임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유형별 어촌개발 세부추진사항

어촌교류형

- 개발목표
 - 바다 및 연안자원을 이용 도시/어촌 교류공간 거점 형성
 - 연안생태, 어촌문화·역사, 산업에 대한 체험관광 기회 확대
 - 어촌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종합프로그램화 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제공
- 사업내용
 - 어업인들의 전통적인 어업과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조성(전통어업/어촌생활 → 죽방렴, 독살, 개매기 등 전통어업, 풍어제 등 지역축제)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활용,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류형 특화마을 조성(특화마을 → 미술, 시, 작곡, 영화, 사진 등)



<도시·어촌교류>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 구 분 | | 단 기 계 획 | | | | |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어촌 교류형 | 권역수 | 28 | 7 | 5 | 5 | 6 | 5 |
| | 투자비 | 1,158 | 64 | 97 | 168 | 149 | 680 |

○ 기대효과

- 도시민에게 어촌 체험기회를 통해 건강한 휴식과 여가문화 조성
- 도시/어촌간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어업인과의 소통기회 확대

수산물 유통·판매형

○ 개발목표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이 연계된 생산클러스터를 관광 상품화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선상에서 관련 산업과의 공동발전 추구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지로 개발
 - 도시근교 → 특산물판매센터, 수산물직판장, 씨프런트 아케이드, 종합쇼핑센터
 - 연안촌락/낙후어촌 → 산지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냉동·냉장 및 건조장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일본의 수산물판매센터>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 구 분 | | 단 기 계 획 | | | | |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수산물유통 판매형 | 권역수 | 9 | 5 | 1 | 2 | 1 | (4) |
| | 투자비 | 352 | 62 | 40 | 75 | 48 | 127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기대효과

- 향토특산물을 어촌마을의 대표적 브랜드로 개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어촌에 벤처기업 유치로 어업인들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득증대 기여
- 방문객과 현지인, 방문객과 방문객 사이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가능
- 단순 생산판매를 2·3차 산업과 연계함에 따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가능

어촌관광·레저형

○ 개발목표

- 어촌 친수공간 조성, 관광어촌어항 개발, 어촌 경관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한 레저 관광어촌의 창조적 개발 추진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 개발

○ 사업내용

-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의 흐름, 어류 등 역동적인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동호인 또는 젊은 층 등이 휴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마을(공간)을 조성(해양레저마을 → 해수욕장, 피서리나 등을 활용한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지, 스킨스쿠버 관련시설, 어촌낚시별장 조성 등)
- 어촌의 지리적 잠재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혼합형관광마을 → 체류형 어촌관광유스호스텔, 어촌체험/관광펜션단지, 해수온천탕, 야영장, 캠핑장 등)



<해양레저 시설>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 구 분 | | 단 기 계 획 | | | | |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어촌관광 레저형 | 권역수 | 20 | 13 | 2 | 2 | 1 | 2 |
| | 투자비 | 749 | 98 | 190 | 114 | 167 | 180 |

○ 기대효과

- 어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간 공존으로 상호 상충관계 최소화(스킨스쿠버/마을 어장 간 상충, 낚시와 가두리양식장 상충 등)
- 어촌관광과 해양스포츠를 접목한 탐방객 유치로 지역개발 및 소득 증대 기여
- 젊은 층에게 해양레포츠를 통해 어촌이 휴식, 여가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 마련

어촌문화학습형

○ 개발목표

-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촌 지역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등의 훼손이 심각
-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가치관 변화로 도시민들의 건전한 관광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학습 마을 육성

○ 사업내용

- 지리적으로 도시인접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의 경우 각종 생태자원 및 전통 문화를 테마화하여 도시민들이 학습(관람)할 수 있는 기반 마련(테마교육마을 → 수족관, 해양생물 자연사박물관, 수산과학전시관, 어촌문화 박물관, 해군 시설 견학(함정 승선체험 등)
- 낙도촌락형 어촌의 경우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휴양 및 건강음식문화마을로 조성 (무공해 건강음식문화마을 →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시설을 조성 무공해 식품 생산지로 개발, 요양시설, 낙도 극기훈련장, 낙도 기숙학원 등)



<어촌민속전시관>

○ 투자계획

(단위 : 권역, 억원)

| 구 분 | | 단 기 계 획 | | | | |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어촌문화 학습형 | 권역수 | 4 | - | 1 | (1) | 1 | 2 |
| | 투자비 | 180 | - | 5 | 20 | 19 | 136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민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동질감 고취
- 도시민에게 일상을 탈피, 어촌의 전통문화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촌(섬)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건강장수 식품 공급 가능
-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학습장소, 요양시설로서 역할

2)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어촌관광개발사업)

○ 현황

- 국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어촌은 그동안 생산적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가족 단위 휴식과 체험관광(레저활동) 공간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체험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코자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
- 어촌체험마을은 총 112개소 중 '07년까지 87개소 지원
- 어촌관광개발은 총 18개소로 '07년까지 10개소 지원

○ 문제점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종합안내소, 안내판, 소공원, 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에 소규모로 집중되면서 사업효과 극대화가 곤란하고,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시연(試演), 운영기법,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 보다는 하드웨어 지원중심에 치중
- 어업인들의 관리운영능력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운영 미흡

○ 실천방안

- 계획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 32개소를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완료함으로써 대중이 참여·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경관감상 위주의 정적개념에서 어업·생태·해양레포츠 체험 등 동적관광개념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창출로의 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 및 향후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방안 마련(2010년, 5억)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17개소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1개소), 강원(1개소), 충남(4개소), 전북(2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제주(4개소)를 지원 - 개소당 사업규모 : 5억원이상 - 총소요예산 : 85억원 ◦ 어촌관광형 15개소 사업 완료(2011년)후 신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규모 : 50~60억원 - 총소요예산 : 1,248억원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0, 5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총소요예산 : 4,560억원 ※ 단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별 | 총계 | 단 기 계 획 | | | | | | | 중장기 계획 |
|----------|-----|---------|-------|-------|--------|------|------|------|--------|
| | | 소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사업수 | 108 | 32 | 9(12) | 10(10) | 5(4) | 4(5) | 4(5) | 76 |
| | 사업비 | 5,893 | 1,333 | 186 | 263 | 291 | 292 | 301 | 4,560 |
| | 용역비 | 5 | 5 | - | 5 | - | - | - | |

※ ()는 계속사업수임

3) 어촌 정주환경 개선(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현황(문제점)

- 어업인력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도 심각한 수준임
 -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0세 이상 노년층 비중은 13.5% 이나, 어촌지역의 경우 3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82.2%)은 국내 전체 가구(94.0%)에 비해 낮음
 - 상수도 공급율은 51.3%로 국내 전체 가구의 공급율 89.3%에 비해 매우 낮음

○ 실천방안

- 고령화·공동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 낙후 및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및 건강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시범 사업 추진
 -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10년, 3억원)
 - 정주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실시 (2012~2013)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하여 계속여부 결정 (2013년, 3억원)

<정주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

| 사업 부문 | 사 업 내 용 |
|----------|--|
| 소프트웨어 지원 | ▷ 일거리, 마을의 자랑거리 주제화 발굴 ▷ 지역특산물 제품의 다양화, 차별화, 고품질화 - 포장/디자인 개선 등 ▷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 마을 이미지, 로고활용 ▷ 건강검진 - 보건소 협조 등 (마을 내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 ▷ 마을간 건강프로그램 교류행사 개최 ▷ 노인회 활동 활성화 - 도·어촌 교류, 지역문화 전승활동, 어린이 체험활동 강사로 활동 |
| 하드웨어 지원 | ▷ 건강마을 환경조성 - 산책로, 휴식공간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주택의 신축 및 개량 등 ▷ 빈집철거 및 정비, 담장정비, 마을 진입로 정비, 색채사업 등 |

※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추진방향은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10, 3억원) ◦9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총소요예산 : 270억원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3, 3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개 어촌계 대상 사업추진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총소요예산 : 3,090억원 ※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별 | 총 계 | 단 기 계 획 | | | | | | | 중장기 계획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정주환경 개선사업 | 사업수 | 112 | 9 | - | - | 3 | 3 | 3 | 103 |
| | 사업비 | 3,360 | 270 | - | - | 90 | 90 | 90 | 3,090 |
| 용역비 | 6 | 6 | - | 3 | - | - | 3 | | |

※ ()는 계속사업수임

4) 어촌휴먼웨어 육성(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 현황(문제점)

- 어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젊은 인력 부족으로 어촌지역 개발의지 실종
- 또한 어업인들의 경쟁적 조업 유발에 따른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어촌관광 및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에 한계가 있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수산자원 관리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히 요구됨.

○ 실천방안

- 어촌관광활성화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함으로써 어촌을 기초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성
- 지역개발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어촌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전문인력(어촌관광 전문인력)을 대상 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육성
-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
| 어촌개발사업인력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 - 연 60명 교육(34시간) - 매년 지원 규모 : 50백만원 - 총소요예산 : 250백만원 |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 연 120명 교육(80시간) - 소요예산 : 85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 매년 16개 마을 지원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 소요예산 : 2,400백만원 ◦ 총 소요예산 : 4,650백만원 |
| 자율관리어업전문 인력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각 수산사무소마다 민간전문가 1명이 매년 5~10개 공동체를 집중 관리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워크숍, 전문가워크숍 등 소요경비 지원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 어촌지역 개발리더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60명 교육(2박3일 3회, 1박2일 1회, 해외연수) - 매년 지원 규모 : 80백만원 - 총소요예산 : 400백만원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별 | 단 기 계 획 | | | | | |
|------------------|---------|------|------|------|------|------|
|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총 계 | 70.5 | 12.1 | 12.8 | 13.3 | 15.8 | 16.5 |
|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2.5 | 0.5 | 0.5 | 0.5 | 0.5 | 0.5 |
| 어촌관광전문 인력 육성 | 46.5 | 8.5 | 8.5 | 8.5 | 10.5 | 10.5 |
| 자율관리어업 전문인력육성 | 17.5 | 2.3 | 3.0 | 3.5 | 4.0 | 4.7 |
| 어촌지역개발 리더 육성 | 4.0 | 0.8 | 0.8 | 0.8 | 0.8 | 0.8 |

주) 전액 국비지원

주요 추진 사업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사업 목적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계획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구축 및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
 -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효적인 사업추진 가능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250백만원 (매년 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내용
 -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
 - 교육은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어촌개발정책, 해양수산 일반, 관련법률, 서비스관리, 정보화 교육)등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회 3박 4일에 걸쳐 34시간 집중교육 실시
 - 대상인원 : 300여명
- 기대 효과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

어촌관광전문인력 육성

- 사업 목적
 - 어촌지역 고유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광어촌마을 운영 자립능력 향상
 - 외부전문가 컨설팅, 사무장지원 등을 통해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6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사업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대상 : 600명) : 대상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 체험마을 컨설팅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사무장 지원

- 기대효과
 - 지역별 특화된 어촌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어촌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어촌인력 일자리 창출.
 - 전문적인 관광 마인드가 부족하여 어촌이 가지고 있는 미개발 관광자원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컨설팅)을 받아 상품화함에 따라 도시민들에게 체험공간 제공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자율관리어업 전문인력 육성

○ 사업 목적

-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을 유발하여 자원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해 어촌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관리체계 구축 도모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75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사업
 -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지원(대상 : 30명) : 수산사무소별 매칭 컨설턴트 확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대상 : 1,300개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수산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 기대효과

-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어업인의 의식개혁 확산에 따른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사회 발전 도모
- 법규준수 등 수동적 자원보호에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관리와 불법어업 감소로 어가소득 증대 도모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 사업 목적

- 어촌지역단위의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리더에게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켜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매년 8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는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마을이장 대상(대상인원 : 160여명)
 - 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육성 교육과정을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어촌지역개발리더 리더십육성과정은 총 4개 학습단위별 세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리더 동기화 : 어촌환경 분석, 리더의 역할 등
 - 실천리더 양성 : 성공사례 분석, 어촌발전 이해
 - 혁신리더 양성 : 교육자의 어촌 분석, 미래 비전 구상
 - 워크숍 : 토론 및 어촌개발 비전 발표

○ 기대 효과

- 지역주민 스스로 정책 대안을 기획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여 어촌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갈등을 해소

다. 어촌 투자 계획

- 어촌의 투자규모는 어선 감척 및 FTA협상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감안,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원동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 확대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을 통하여 품격있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이 필요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 계 | 단 기 계 획 | | | | | 중장기 계획 | | | |
|------------------|-----------------------------------|--------------|--------------|--------------|------------|------------|--------------|---------------|--------------|--------------|
| | | 소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14~23 | | |
| 사업비 | 19,122 | 4,472 | 456 | 680 | 847 | 873 | 1,616 | 14,650 | | |
| 어 촌 부 문 | 어촌 개발 사업 | 계 | 9,788 | 2,788 | 258 | 396 | 453 | 475 | 1,206 | 7,000 |
| | | 사업수 | 206 | 66 | 14(12) | 10(14) | 12(20) | 9(18) | 9(20) | 140 |
| | | 사업비 | 9,785 | 2,785 | 258 | 396 | 453 | 472 | 1,206 | 7,000 |
| | | 용역비 | 3 | 3 | - | - | - | 3 | - | |
| | 어촌 관광 개발 사업 | 계 | 5,898 | 1,338 | 186 | 268 | 291 | 292 | 301 | 4,560 |
| | | 사업수 | 108 | 32 | 10(8) | 9(10) | 5(4) | 4(5) | 4(5) | 76 |
| | | 사업비 | 5,893 | 1,333 | 186 | 263 | 291 | 292 | 301 | 4,560 |
| | | 용역비 | 5 | 5 | - | 5 | - | - | - | |
| | 어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 계 | 3,366 | 276 | - | 3 | 90 | 90 | 93 | 3,090 |
| | | 사업수 | 112 | 9 | - | - | 3 | 3 | 3 | 103 |
| | | 사업비 | 3,360 | 270 | - | - | 90 | 90 | 90 | 3,090 |
| | | 용역비 | 6 | 6 | - | 3 | - | - | 3 | |
| | 어촌개발 / 자율관리 전문인력 육성사업 | 계 | 70 | 70 | 12 | 13 | 13 | 16 | 16 | - |
| 어촌개발 사업비 | | 2.5 | 2.5 | 0.5 | 0.5 | 0.5 | 0.5 | 0.5 | - | |
| 어촌관광 사업비 | | 46.5 | 46.5 | 8.5 | 8.5 | 8.5 | 10.5 | 10.5 | - | |
| 자율관리 사업비 | | 17.5 | 17.5 | 2.3 | 3.0 | 3.5 | 4.0 | 4.7 | - | |
| 어촌리더 사업비 | | 4.0 | 0.8 | 0.8 | 0.8 | 0.8 | 0.8 | 0.8 | - | |

※ 상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이며, ()는 계속사업수임

3.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가. 현황

-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 및 해외 진출 원양어선의 어장확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외지원사업을 추진
 - 국토해양부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이퐁신항과 아프리카 앙골라에 어업항구개발 협력지원사업을 추진 중
 - 원양어선의 해역별 조업 동향을 보면 태평양 226척, 대서양 129척, 인도양 32척이 조업 중에 있음.
- 해외개발 협력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에 대한 무상지원, 수산기반시설인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등에 대한 유상지원사업, 기술개발공유 및 인적교류활성화 등이 이에 속함.
- 지원대상시설은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재해방지시설, 침식방지시설, 복합어항시설, 관광어항시설 등임.
- 사업지원방식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EDCF)사업으로 구별됨.
 - 무상지원사업 : KOICA
 - 개발도상국의 전국단위-권역별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지원
 - 유상차관사업 : EDCF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을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EDCF차관을 제공하여 시설확충에 기여
 - 방파제, 항로준설, 접안시설 등에 대한 EDCF 차관사업

나. 개발도상국 어항개발지원

- 사업 목적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

□ 사업 내용

- 2009년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
 - 해외 어항개발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대상지 조사, 해외 협력사업 추진체계 분석 등
- 2009년 해외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단 구성·운영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 (국제기구과, 원양산업과 등) 사업단 구성
- 2010년 협력지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2011년 지원대상국과의 MOU 추진
- 2012년부터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

□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지원을 통한 상생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어항개발 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상호신뢰 구축
- 어항시설은 경제성장기반의 인프라 시설로서 개발도상국의 협력의지가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사업 참여 추진

□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지원 대상국 조사 및 선정 ◦ 2개소 어항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사비 350억원 (설계, 감리비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준공 ◦ 4개소 신규 추진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 계획 | |
|-----------------------|------|---------|------|------|------|------|------|-----------|-------|
| | | 소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사업수 | 6 | (2) | - | - | - | 2 | (2) | 4(2) |
| | 사업비 | 2,100 | 323 | 3 | 10 | 10 | 100 | 200 | 1,777 |

주) ()는 계속사업수임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표>

| 구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재난구호사업 등 무상원조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SOC,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위생 사업 등에 대해 유상원조(차관) 형태로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지원희망국) 정부 중점 추진 사업 기술력이 우위에 있고,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EDCF 차관사업 등 후속사업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효과가 큰 지역·국가·분야를 집중 지원 SOC시설은 구축성 원조지원이 가능한 비수익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지원 → 장래수익성사업에 국내기업 진출 여건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절차 | <table border="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력사업 발굴</td> <td>개발도상국 ↔ 개별부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력사업 선정 신청</td> <td>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력사업 확정</td> <td>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력사업 추진</td> <td>개별부처</td> </tr> </table> | 절차 | 비교 | 협력사업 발굴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협력사업 선정 신청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 | ▼ | | 협력사업 확정 | 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협력사업 추진 | 개별부처 | <table border="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관사업 발굴</td> <td>개발도상국 ↔ 개별부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관사업 선정 신청</td> <td>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관사업 확정</td> <td>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관사업 추진</td> <td>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td> </tr> </table> | 절차 | 비교 | 차관사업 발굴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차관사업 선정 신청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 ▼ | | 차관사업 확정 | 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차관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 |
| 절차 |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사업 발굴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사업 선정 신청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사업 확정 | 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력사업 추진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차 |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관사업 발굴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관사업 선정 신청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관사업 확정 | 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관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경제적 효과분석

1. 투자계획

- 어촌·어항개발 사업 투자비는 단기 20,175억원, 중장기 68,050억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88,225억원임
- 어항개발부문은 단기 15,380억원, 중장기 51,623억원 투자
- 어촌개발부문은 단기 4,472억원, 중장기 14,650억원 투자
- 국제지원부문은 단기 323억원, 중장기 1,777억원 투자

(단위 : 억원)

| 구 분 | 총 계 | 단 기 계 획 | | | | | | 중장기계획 | |
|------------------|---------------------|---------------|---------------|--------------|--------------|--------------|--------------|---------------|---------------|
| | | 소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14~'23 | |
| 계 | 88,225 | 20,175 | 2,792 | 3,339 | 3,875 | 4,415 | 5,754 | 68,050 | |
| 어 항 부 문 | 소 계 | 67,003 | 15,380 | 2,333 | 2,649 | 3,018 | 3,442 | 3,938 | 51,623 |
| | 어항 기본사업 | 28,843 | 6,864 | 1,489 | 1,495 | 1,406 | 1,116 | 1,358 | 21,979 |
| | 어항 정비사업 | 19,992 | 4,957 | 471 | 691 | 981 | 1,331 | 1,483 | 15,035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18,168 | 3,559 | 373 | 463 | 631 | 995 | 1,097 | 14,609 |
| 어 촌 부 문 | 소 계 | 19,122 | 4,472 | 456 | 680 | 847 | 873 | 1,616 | 14,650 |
| | 어촌 개발사업 | 9,788 | 2,788 | 258 | 396 | 453 | 475 | 1,206 | 7,000 |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5,898 | 1,338 | 186 | 268 | 291 | 292 | 301 | 4,560 |
| | 어촌정주 환경 개선사업 | 3,366 | 276 | - | 3 | 90 | 90 | 93 | 3,090 |
| | 어촌인력 육성사업 | 70 | 70 | 12 | 13 | 13 | 16 | 16 | - |
| 국 제 부 문 | 소 계 | 2,100 | 323 | 3 | 10 | 10 | 100 | 200 | 1,777 |
| |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 2,100 | 323 | 3 | 10 | 10 | 100 | 200 | 1,777 |

※ 상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금액

2. 경제적 효과 분석

□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 전망

○ 어가인구

- 211,610명('06년) → 160,061명('13년) → 106,119명('23년)

○ 어가소득

- 30백만원('06년) → 42백만원('13년) → 65백만원('23년)

□ 생산유발효과

○ 단기 5년 동안 5조 2천억원, 중장기 14조 7천억원의 파급효과 발생하여 투자 대비 2.8배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8로 어촌·어항개발사업에 10천원을 투자할 경우 9,800원의 생산 유발

□ 고용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단기 32천명, 중장기 125천명의 신규고용효과 발생

| 구 분 | 현재 (1966~2008)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
| 투자예산 | 5조 1,598억원 | 2조 175억원 | 6조 8,050억원 |
| 생산효과 | 14조 6,545억원 | 5조 1,468억원 | 14조 7,191억원 |
| 신규고용 | 92,388명 | 32,550명 | 125,000명 |
| 어업소득 | 3,000만원 | 4,151만원 | 6,502만원 |

주) 생산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포함

§ 목 차 §

| | | |
|-------|------------------|----|
| 제 1 편 | 계획의 개요 | 1 |
| 제 1 장 | 계획수립의 개요 | 3 |
| 1.1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
| 1.1.1 | 배경 | 3 |
| 1.1.2 | 목적 | 4 |
| 1.2 | 법적근거 및 성격 | 4 |
| 1.2.1 | 법적근거 | 4 |
| 1.2.2 | 계획의 성격 | 4 |
| 1.3 | 계획수립 범위 | 5 |
| 1.3.1 | 공간적 범위 | 5 |
| 1.3.2 | 시간적 범위 | 5 |
| 1.3.3 | 내용적 범위 | 6 |
| 1.4 | 추진경위 및 체계 | 6 |
| 1.4.1 | 기본계획 추진경위 | 6 |
| 1.4.2 | 계획수립 체계 | 7 |
| 제 2 편 |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9 |
| 제 1 장 | 어촌·어항 현황 및 여건분석 | 11 |
| 1.1 | 대내외 여건변화 | 11 |
| 1.1.1 | 대외적 여건변화 | 11 |
| 1.1.2 | 대내적 여건변화 | 14 |
| 1.1.3 | 어촌·어항의 정책 변화 | 24 |
| 1.2 | 어촌·어항 현황 및 문제점 | 37 |
| 1.2.1 | 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 | 37 |
| 1.2.2 | 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 69 |

| | |
|-----------------------------------|------------|
| 1.3 어촌·어항 여건분석 | 79 |
| 1.3.1 어항의 여건분석 | 79 |
| 1.3.2 어촌의 여건분석 | 105 |
| 1.3.3 개발단위 설정 | 120 |
| 1.4 선진 사례조사 | 121 |
| 1.4.1 일본 수산업 현황 | 121 |
| 1.4.2 일본의 어촌·어항 개발현황 | 122 |
| 1.4.3 일본의 수산정책 | 124 |
| 1.4.4 어항어장정비법과 어촌·어항법의 비교 | 127 |
| 1.4.5 일본의 어항·어장·어촌 정비 사례 | 133 |
| 1.4.6 일본의 어촌 유형화 | 144 |
| 1.4.7 국내 현실을 감안한 개발 방향 | 154 |
| 1.5 어촌·어항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 155 |
| 1.5.1 어항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155 |
| 1.5.2 어촌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171 |
| 1.6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 182 |
| 1.6.1 관계법령 | 182 |
| 1.6.2 관련계획 검토 | 183 |
| 1.7 SWOT 분석 | 197 |
| 1.7.1 분석의 종합 | 197 |
| 1.7.2 어항부문 SWOT분석 | 197 |
| 1.7.3 어촌부문 SWOT분석 | 199 |
| 1.8 어촌·어항개발의 수요 검토 | 201 |
| 1.8.1 어항의 개발 수요 검토 | 201 |
| 1.8.2 어촌의 유형화·특성화 검토 | 206 |
| | |
| 제 2 장 제도개선 방안 | 219 |
| 2.1 어항개발 관련부문 | 219 |
| 2.1.1 어항개발부문 | 219 |
| 2.1.2 어항정비부문 | 220 |

| | |
|-------------------------------------|------------|
| 2.1.3 어항관리부문 | 221 |
| 2.1.4 어항환경개선부문 | 222 |
| 2.2 어촌개발 부문 | 223 |
| 2.2.1 법·제도 개선방안 | 223 |
| 2.2.2 사업체계 개선방안 | 225 |
| 2.2.3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 226 |
| 2.3 정책 페러다임 부문 | 228 |
| | |
| 제 3 장 어촌·어항발전 비전과 정책방향 | 229 |
| 3.1 비전 및 정책목표 | 229 |
| 3.2 중장기 정책전략 및 실천과제 | 232 |
| 3.2.1 부문별 정책전략 | 232 |
| 3.2.2 실천과제별 기본방향 | 240 |
| 3.2.3 단계별 추진계획 | 244 |
| | |
| 제 3 편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247 |
| | |
| 제 1 장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249 |
| 1.1 어항발전 기본계획 | 249 |
| 1.1.1 일반 현황 | 249 |
| 1.1.2 어항개발 현황 및 문제점 | 252 |
| 1.1.3 어항개발 추진실적 | 261 |
| 1.1.4 어항개발 추진계획 | 262 |
| 1.1.5 어항개발 투자계획 총괄 | 286 |
| 1.2 어촌발전 기본계획 | 290 |
| 1.2.1 일반 현황 | 290 |
| 1.2.2 어촌개발 현황 및 문제점 | 293 |
| 1.2.3 어촌개발 추진실적 | 299 |
| 1.2.4 어촌개발 추진계획 | 305 |
| 1.2.5 어촌개발 추진계획 총괄 | 326 |

| | |
|---|------------|
| 1.3 해외 어항사업 기본계획 | 331 |
| 1.3.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331 |
| 제 4 편 효과분석 및 결론 | 337 |
| 제 1 장 경제적 효과 분석 | 339 |
| 1.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 339 |
| 1.1.1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 339 |
| 1.1.2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의 구성 | 340 |
| 1.1.3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지역 및 산업분류 | 342 |
| 1.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 343 |
| 1.2.1 어촌·어항기본산업을 위한 산업분류 | 343 |
| 1.2.2 분석 모형 | 343 |
| 1.3 단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345 |
| 1.3.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45 |
| 1.3.2 단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50 |
| 1.3.3 단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55 |
| 1.4 중장기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0 |
| 1.4.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0 |
| 1.4.2 중장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3 |
| 1.4.3 중장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6 |
| 1.5 2008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9 |
| 1.5.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 369 |
| 제 2 장 종합 평가 및 건의 | 372 |
| 2.1 어촌·어항개발 투자계획 | 372 |
| 2.1.1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372 |
| 2.1.2 어항개발 투자계획 | 372 |
| 2.1.3 어촌개발 투자계획 | 374 |
| 2.2 경제적 효과 분석 | 375 |

| | | |
|--------|-----------------------------|-----|
| 2.3 |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의 향후 전망 | 375 |
| 2.4 | 제도개선 건의 | 375 |
| 2.4.1 | 「어촌종합개발사업」 명칭의 개선 | 375 |
| 2.4.2 |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 376 |
| | | |
| 제 5 편 | 시도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요약) | 377 |
| 제 1 장 | 부산광역시 | 379 |
| 제 2 장 | 인천광역시 | 394 |
| 제 3 장 | 울산광역시 | 410 |
| 제 4 장 | 경 기 도 | 424 |
| 제 5 장 | 강 원 도 | 438 |
| 제 6 장 | 충 청 남 도 | 454 |
| 제 7 장 | 전 라 북 도 | 471 |
| 제 8 장 | 전 라 남 도 | 486 |
| 제 9 장 | 경 상 북 도 | 506 |
| 제 10 장 | 경 상 남 도 | 521 |
| 제 11 장 | 제 주 도 | 542 |

<별본>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부산광역시)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울산광역시)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경 기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강 원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충 청 남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전 라 북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전 라 남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경 상 북 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 (제 주 도)

§ 표 목 차 §

| | |
|--|----|
| <표 1.1> 공간적 범위 | 5 |
|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 11 |
| <표 2.2> 연근해어업 감척실적 및 계획 | 12 |
| <표 2.3> 총인구와 어업인구의 변화 추이 | 14 |
| <표 2.4> 어업종사자 ·연령별 구성 | 15 |
| <표 2.5> 어 가 소 득 | 16 |
| <표 2.6>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 16 |
| <표 2.7> 업종별 수산물 생산 | 17 |
| <표 2.8>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섭취량 | 19 |
| <표 2.9> 어선세력 변화 추이 | 20 |
| <표 2.10>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실적 | 21 |
| <표 2.11> 관광형태의 변화 | 22 |
| <표 2.1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 23 |
| <표 2.13> 년도별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운영실적 | 23 |
| <표 2.14> 어항개발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 26 |
| <표 2.15> 연도별 어선척수와 동력화율의 추이 | 27 |
| <표 2.16> 2000년대 어항투자실적 | 31 |
| <표 2.17>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내용과 법적근거 | 35 |
| <표 2.18> 국가어항 지정기준 | 37 |
| <표 2.19> 지방어항 지정기준 | 38 |
| <표 2.20> 시도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현황(2007년 12월 기준) | 38 |
| <표 2.21> 해역별 어항 분포 | 40 |
| <표 2.22> 시·군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분포 현황(2007. 12. 기준) | 41 |
| <표 2.23> 어항의 지정권자 및 예산체계 | 43 |
| <표 2.24> 어항개발사업의 내용 | 44 |
| <표 2.25> 국가어항 개발현황 | 45 |

| | |
|---|----|
| <표 2.26> 지방어항 개발현황 | 46 |
| <표 2.27>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현황 | 48 |
| <표 2.28> 소규모포구 시도별 항수 및 개발현황 | 49 |
| <표 2.29> 어항개발율(2007년 12월 기준) | 49 |
| <표 2.30> 어항 시설 | 50 |
| <표 2.31> 항종별 기본시설 현황 (2007년 말 기준) | 51 |
| <표 2.32> 국가어항 기능시설 현황 (2007년 4월 기준) | 51 |
| <표 2.33> 시·도별 국가어항의 어항편익시설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 52 |
| <표 2.34>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 53 |
| <표 2.35>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율 | 53 |
| <표 2.36> 국가어항 투자현황 | 55 |
| <표 2.37> 지방어항 투자현황 | 56 |
| <표 2.38> 어촌정주어항 투자현황 | 57 |
| <표 2.39> 소규모포구 투자현황 | 58 |
| <표 2.40> 국가어항 방파제 피해발생현황(1990~2005) | 61 |
| <표 2.41> 국가어항 이용에 따른 순위(2006년 말 기준) | 62 |
| <표 2.42> 어항의 지정권자와 어항관리청 | 64 |
| <표 2.43> 태·폭풍으로 인한 어선피해현황(2000 ~ 2005) | 65 |
| <표 2.44> 연도별 어업 및 농업 인력변화 추이 | 69 |
| <표 2.45>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변화 추이 | 70 |
| <표 2.46>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 70 |
| <표 2.47>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 71 |
| <표 2.48>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및 구성비 추이 | 72 |
| <표 2.49> 연도별 어가부채 추이 | 74 |
| <표 2.50> 농어촌의 주거시설 현황 | 75 |
| <표 2.51> 농어촌의 거처형태 | 75 |
| <표 2.52> 농어촌의 정보화 현황 | 76 |
| <표 2.53>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현황 | 76 |
| <표 2.54> 농어촌의 난방시설 현황 | 77 |
| <표 2.55> 항종별 이용 세력권 어촌계 분류유형별 현황 | 80 |

| | |
|--|-----|
| <표 2.56> 어항별 연계개발 현황 | 87 |
| <표 2.57>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 90 |
| <표 2.58> 해역별 인문·사회적 조건 비교 | 95 |
| <표 2.59> 해역별 어항 개발방안 | 96 |
| <표 2.60> 국가어항 관광여건 | 96 |
| <표 2.61> 국가어항의 분류 | 101 |
| <표 2.62> 지방어항의 분류 | 102 |
| <표 2.63> 어항의 개발 방안 | 103 |
| <표 2.64> 어촌사회 지표에 대한 추세 전망(2007~2023년) | 106 |
| <표 2.65>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 109 |
| <표 2.66> 1단계 160권역('94 - '08년) 사업종류별 지원(계획) 현황 | 110 |
| <표 2.67>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110 |
| <표 2.68>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추진실적 및 계획 | 111 |
| <표 2.69> 어촌관광모델사업 시도별 지원계획 | 111 |
| <표 2.70>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투자실적(1998년 ~ 2006년) | 112 |
| <표 2.71>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산업연관 효과 | 113 |
| <표 2.7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 114 |
| <표 2.73> 어촌체험 우수마을 현황 및 사례 | 115 |
| <표 2.7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 117 |
| <표 2.75> 개발단위의 비교·검토 | 120 |
| <표 2.76> 일본의 어항지정 현황 | 121 |
| <표 2.77> 일본의 수산정책 | 124 |
| <표 2.78> 일본의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경위 | 125 |
| <표 2.79> 일본의 어항정비 현황 | 126 |
| <표 2.80> 한국과 일본의 수산관계 법령 비교 | 127 |
| <표 2.81> 어협체험 등의 이용상황(2003년 실적) | 142 |
| <표 2.82>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낮은 시정촌과 그 특징 | 149 |
| <표 2.83>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높은 시정촌과 그 특징 | 151 |
| <표 2.84> 일본 어촌유형별 활성화 방향과 레크리에이션 진행 가능성 | 153 |
| <표 2.85> 응답자의 특성 | 155 |

| | |
|---|-----|
| <표 2.86> 어항개발사업의 효과(5점 만점) | 156 |
| <표 2.87> 국가어항 지정기준 미달항에 대한 대책 | 158 |
| <표 2.88> 바람직한 국가어항의 투자방법 | 159 |
| <표 2.89> 바람직한 지방어항의 투자방법 | 159 |
| <표 2.90> 지방어항 완공율 저조에 따른 수정계획 필요성 여부 | 160 |
| <표 2.91> 어항의 기능시설별 중요도(5점 척도) | 160 |
| <표 2.92> 어항개발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한 의견 | 161 |
| <표 2.93> 어항개발사업 민자유치의 대상범위 (찬성자만 응답) | 161 |
| <표 2.94>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여부(찬성자만 응답) | 162 |
| <표 2.95> 민자유치시 사업성 보장의 필요성(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 163 |
| <표 2.96> 민자유치시 어민들의 양보의사 확보 필요성 (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 | 163 |
| <표 2.97> 어항 편익시설의 중요성(5점 척도) | 164 |
| <표 2.98> 다기능어항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 164 |
| <표 2.99> 다기능어항의 개발방향별 중요도(5점 척도) | 165 |
| <표 2.100> 현행 어항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 166 |
| <표 2.101> 국가어항 수익사업 활성화로 어항관리비용에 충당하는데 대한 의견 | 166 |
| <표 2.102> 어항관리책임의 바람직한 기관 | 167 |
| <표 2.103> 완공항 정비의 문제점별 인식도 | 167 |
| <표 2.104> 어항의 바람직한 정비 및 재개발방향 | 168 |
| <표 2.105> 어항 환경개선과제별 중요도 | 168 |
| <표 2.106>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항 환경설비 확충에 대한 의견 | 169 |
| <표 2.107>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5점 척도) | 170 |
| <표 2.108> 표본 특성 | 171 |
| <표 2.109> 어촌개발 관련사업들이 어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 173 |
| <표 2.110>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 175 |
| <표 2.111>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 사업비 규모 | 175 |
| <표 2.1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 176 |
| <표 2.11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 176 |
| <표 2.114> 어촌관광모델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 177 |
| <표 2.115> 어촌관광모델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 177 |

| | |
|---|-----|
| <표 2.116>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유 | 178 |
| <표 2.117> 어촌개발 관련사업과 여타 수산사업과의 연계성 | 179 |
| <표 2.118> 어촌개발 관련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181 |
| <표 2.119> 향후 어촌개발 정책에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 | 181 |
| <표 2.120> 어촌·어항 관련법령 | 182 |
| <표 2.121> 관광권역별 개발전략 | 194 |
| <표 2.122> 어항의 SWOT 분석 | 198 |
| <표 2.123> 어촌의 SWOT 분석 | 200 |
| <표 2.124> 어항 추가개발수요 비교검토(지정항 완공시) | 201 |
| <표 2.125>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 | 203 |
| <표 2.126> 어선의 안전수용율 | 204 |
| <표 2.127> 국가어항 개발 필요항수 | 205 |
| <표 2.128> 어항별 필요항 수 | 205 |
| <표 2.129> 소득원과 접근성에 따른 어촌분류 | 206 |
| <표 2.130> 접근성과 자원을 고려한 어촌소득원 개발의 특성화 방향 | 208 |
| <표 2.131> 'The spectrum of marine recreation opportunities' | 212 |
| <표 2.132> 선정된 연도별 시행 권역 | 217 |
| <표 2.133> 어촌종합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분류 | 218 |
| <표 2.134> 어촌개발사업 세부 사업내용 | 226 |
| <표 2.135> 사업별 개발 기본방향 | 240 |
| <표 2.13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 244 |
| <표 3.1> 어항의 종류 및 현황 | 250 |
| <표 3.2> 어항개발사업 종류<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 251 |
| <표 3.3> 어항기본시설사업 추진 현황 | 252 |
| <표 3.4>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 | 252 |
| <표 3.5> 개정 설계파 적용 정비계획 수립항 | 254 |
| <표 3.6> 최근 5년간 국가어항 피해현황 | 254 |
| <표 3.7> 국가어항 준설 발생량 | 255 |
| <표 3.8> 다기능어항 지정항수 | 257 |
| <표 3.9>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 258 |

| | |
|---|-----|
| <표 3.10>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 259 |
| <표 3.11> 어항개발 투자실적 | 261 |
| <표 3.12> 국가어항 미완공 현황 | 262 |
| <표 3.13> 계속투자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 262 |
| <표 3.14> 안전수용율 및 시설소요규모(2013년 기준) | 263 |
| <표 3.15> 어항별 필요 항수 | 264 |
| <표 3.16> 신규지정 대상항 현황(6개항) | 264 |
| <표 3.17> 신규지정 24개항 선정 현황 | 264 |
| <표 3.18>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 265 |
| <표 3.19>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266 |
| <표 3.20>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 266 |
| <표 3.21>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267 |
| <표 3.22>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 268 |
| <표 3.23>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269 |
| <표 3.24>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대상항 | 269 |
| <표 3.25>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단기 투자계획 | 270 |
| <표 3.26> 국가어항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단기 투자계획 | 272 |
| <표 3.27>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273 |
| <표 3.28> 어항환경개선사업 종류 | 274 |
| <표 3.29> 다기능어항사업 단기 투자계획 | 280 |
| <표 3.30> 어항기능시설 현황 및 계획 | 281 |
| <표 3.31> 어항기능시설 종류 | 282 |
| <표 3.32> 어항정화시설 확충 단기 투자계획 | 284 |
| <표 3.33> 어항정화시설 확충 중장기 투자계획 | 285 |
| <표 3.34> 어항정비사업 우선순위 | 287 |
| <표 3.35> 어항기능시설 투자우선순위 | 287 |
| <표 3.36> 어항개발 단기 투자계획 총괄 | 288 |
| <표 3.37> 어항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총괄 | 289 |
| <표 3.38>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 291 |
| <표 3.39> 어촌관련개발사업 시도별 현황 | 292 |

| | |
|---|-----|
| <표 3.40> 어촌개발사업 현황 | 294 |
| <표 3.41> 어촌관광형 내용 | 297 |
| <표 3.42> 최근 6년간 어촌개발(총괄) 투자실적 | 299 |
| <표 3.43> 어촌개발사업 년차별 투자실적(총괄) | 300 |
| <표 3.44> 어촌개발사업 시도별 투자실적 | 301 |
| <표 3.45> 어촌개발사업 완공 권역의 지원 현황 | 301 |
| <표 3.46> 어촌체험마을형 년차별 투자실적 | 302 |
| <표 3.47>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수 | 303 |
| <표 3.48> 어촌체험마을 시도별 투자실적 | 303 |
| <표 3.49> 어촌관광형 년도별 투자실적 | 304 |
| <표 3.50> 어촌관광형 시도별 투자실적 | 304 |
| <표 3.51> 권역분류 기준 및 사업비 규모 | 306 |
| <표 3.52> 어촌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 306 |
| <표 3.53> 어촌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 309 |
| <표 3.54> 어촌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 310 |
| <표 3.55> 어촌교류형 단기투자계획 | 311 |
| <표 3.56> 수산물 유통·판매형 단기투자계획 | 312 |
| <표 3.57> 어촌관광·레저형 단기투자계획 | 314 |
| <표 3.58> 어촌문화학습형 단기투자계획 | 315 |
| <표 3.59> 어촌관광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 317 |
| <표 3.60> 어촌관광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 318 |
| <표 3.61>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 | 319 |
| <표 3.62> 시도별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 | 320 |
| <표 3.63> 정주환경개선사업 단기투자계획 | 320 |
| <표 3.64> 정주환경개선사업 중장기투자계획 | 321 |
| <표 3.65> 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단기투자계획 | 325 |
| <표 3.6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326 |
| <표 3.6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328 |
| <표 3.6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330 |
| <표 3.69>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 | 331 |

| | |
|---|-----|
| <표 3.70>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단기투자계획 | 334 |
| <표 3.7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 335 |
| <표 4.1> 2지역 2산업 모델의 IRIO 구조의 예시 | 340 |
| <표 4.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 작성대상 지역 구분 | 342 |
| <표 4.3> 어촌·어항기본사업의 지역간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 343 |
| <표 4.4> 권역별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 345 |
| <표 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 346 |
| <표 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 347 |
| <표 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 347 |
| <표 4.8>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47 |
| <표 4.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48 |
| <표 4.1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49 |
| <표 4.1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49 |
| <표 4.12> 권역별 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 350 |
| <표 4.13> 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 351 |
| <표 4.14>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 352 |
| <표 4.15>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 352 |
| <표 4.16>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52 |
| <표 4.17>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53 |
| <표 4.18>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54 |
| <표 4.19>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54 |
| <표 4.20> 권역별 어촌관련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 355 |
| <표 4.21> 어촌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 356 |
| <표 4.2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 357 |
| <표 4.23>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 357 |
| <표 4.24>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57 |
| <표 4.25>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58 |
| <표 4.26>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59 |
| <표 4.27>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59 |
| <표 4.2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 360 |

| | |
|--|-----|
| <표 4.2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60 |
| <표 4.3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61 |
| <표 4.3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2 |
| <표 4.3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2 |
| <표 4.33>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 363 |
| <표 4.34>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63 |
| <표 4.35>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64 |
| <표 4.36>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5 |
| <표 4.37>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5 |
| <표 4.3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 366 |
| <표 4.39>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66 |
| <표 4.40>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67 |
| <표 4.41> 어촌관련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8 |
| <표 4.4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68 |
| <표 4.43> 권역별 투자 실적 | 369 |
| <표 4.44>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369 |
| <표 4.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370 |
| <표 4.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71 |
| <표 4.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371 |
| <표 4.4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372 |
| <표 4.49> 어항개발 단기투자 계획 | 373 |
| <표 4.50> 어항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 373 |
| <표 4.51> 어촌개발 단기투자 계획 | 374 |
| <표 4.52> 어촌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 374 |
| <표 5.1> 어촌계 현황 | 380 |
| <표 5.2> 유형별 어촌계 현황 | 381 |
| <표 5.3> 어선세력 현황 | 382 |
| <표 5.4> 국가어항 현황 | 383 |
| <표 5.5> 국가어항 투자실적 | 383 |
| <표 5.6> 지방어항 현황 | 383 |

| | |
|----------------------------------|-----|
| <표 5.7> 지방어항 투자실적 | 384 |
| <표 5.8> 어촌정주어항 현황 | 385 |
| <표 5.9>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385 |
| <표 5.10>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385 |
| <표 5.11>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 386 |
| <표 5.12>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386 |
| <표 5.13>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388 |
| <표 5.14>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389 |
| <표 5.15>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389 |
| <표 5.1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390 |
| <표 5.1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391 |
| <표 5.1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391 |
| <표 5.19>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392 |
| <표 5.20> 어촌계 현황 | 395 |
| <표 5.21> 유형별 어촌계 현황 | 396 |
| <표 5.22> 어선세력 현황 | 397 |
| <표 5.23> 국가어항 현황 | 398 |
| <표 5.24> 국가어항 투자실적 | 398 |
| <표 5.25> 지방어항 현황 | 399 |
| <표 5.26> 지방어항 투자실적 | 399 |
| <표 5.27> 어촌정주어항 현황 | 400 |
| <표 5.28>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00 |
| <표 5.2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01 |
| <표 5.30>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 401 |
| <표 5.31>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402 |
| <표 5.3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04 |
| <표 5.3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05 |
| <표 5.3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05 |
| <표 5.3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06 |
| <표 5.3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07 |

| | |
|----------------------------------|-----|
| <표 5.3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07 |
| <표 5.3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08 |
| <표 5.39> 어촌계 현황 | 411 |
| <표 5.40>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12 |
| <표 5.41> 어선세력 현황 | 413 |
| <표 5.42> 국가어항 현황 | 414 |
| <표 5.43> 국가어항 투자실적 | 414 |
| <표 5.44> 지방어항 현황 | 414 |
| <표 5.45> 지방어항 투자실적 | 415 |
| <표 5.46> 어촌정주어항 현황 | 415 |
| <표 5.4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15 |
| <표 5.4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16 |
| <표 5.49>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416 |
| <표 5.5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18 |
| <표 5.5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19 |
| <표 5.5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19 |
| <표 5.5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20 |
| <표 5.5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21 |
| <표 5.5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21 |
| <표 5.5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22 |
| <표 5.57> 어촌계 현황 | 425 |
| <표 5.58>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26 |
| <표 5.59> 어선세력 현황 | 427 |
| <표 5.60> 지방어항 현황 | 428 |
| <표 5.61> 지방어항 투자실적 | 428 |
| <표 5.62> 어촌정주어항 현황 | 429 |
| <표 5.63>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29 |
| <표 5.6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29 |
| <표 5.65>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 430 |
| <표 5.66>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430 |

| | |
|----------------------------------|-----|
| <표 5.67>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31 |
| <표 5.68>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32 |
| <표 5.69>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33 |
| <표 5.70>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34 |
| <표 5.71>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35 |
| <표 5.72>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35 |
| <표 5.73>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36 |
| <표 5.74> 어촌계 현황 | 439 |
| <표 5.75>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40 |
| <표 5.76> 어선세력 현황 | 441 |
| <표 5.77> 국가어항 현황 | 442 |
| <표 5.78> 국가어항 투자실적 | 442 |
| <표 5.79> 지방어항 현황 | 443 |
| <표 5.80> 지방어항 투자실적 | 443 |
| <표 5.81> 어촌정주어항 현황 | 444 |
| <표 5.82>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44 |
| <표 5.83>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45 |
| <표 5.84> 어촌체험마을사업 투자실적 | 445 |
| <표 5.8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446 |
| <표 5.86>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48 |
| <표 5.87>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49 |
| <표 5.88>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49 |
| <표 5.89>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50 |
| <표 5.90>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51 |
| <표 5.91>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51 |
| <표 5.92>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52 |
| <표 5.93> 어촌계 현황 | 455 |
| <표 5.94>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56 |
| <표 5.95> 어선세력 현황 | 457 |
| <표 5.96> 국가어항 현황 | 458 |

| | |
|------------------------------------|-----|
| <표 5.97> 국가어항 투자실적 | 458 |
| <표 5.98> 지방어항 현황 | 459 |
| <표 5.99> 지방어항 투자실적 | 460 |
| <표 5.100> 어촌정주어항 현황 | 461 |
| <표 5.101>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61 |
| <표 5.102>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62 |
| <표 5.103> 어촌체험마을 투자실적 | 462 |
| <표 5.104> 어촌관광활성화사업 투자실적 | 463 |
| <표 5.105>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65 |
| <표 5.106>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66 |
| <표 5.107>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67 |
| <표 5.108>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67 |
| <표 5.109>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68 |
| <표 5.110>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68 |
| <표 5.111>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69 |
| <표 5.112> 어촌계 현황 | 472 |
| <표 5.113>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73 |
| <표 5.114> 어선세력 현황 | 474 |
| <표 5.115> 국가어항 현황 | 475 |
| <표 5.116> 국가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 475 |
| <표 5.117> 지방어항 현황 | 476 |
| <표 5.118> 지방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 476 |
| <표 5.11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77 |
| <표 5.120> 어촌체험마을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478 |
| <표 5.121>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478 |
| <표 5.12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80 |
| <표 5.12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481 |
| <표 5.12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481 |
| <표 5.12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82 |
| <표 5.12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483 |

| | |
|-----------------------------------|-----|
| <표 5.12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483 |
| <표 5.12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484 |
| <표 5.129> 어촌계 현황 | 487 |
| <표 5.130> 유형별 어촌계 현황 | 488 |
| <표 5.131> 어선세력 현황 | 489 |
| <표 5.132> 국가어항 현황 | 490 |
| <표 5.133> 국가어항 투자실적 | 491 |
| <표 5.134> 지방어항 현황 | 492 |
| <표 5.135> 지방어항 투자실적 | 493 |
| <표 5.136> 어촌정주어항 현황 | 495 |
| <표 5.13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496 |
| <표 5.13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496 |
| <표 5.139> 어촌체험마을 투자실적 | 497 |
| <표 5.140>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 497 |
| <표 5.141>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499 |
| <표 5.142>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500 |
| <표 5.143>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501 |
| <표 5.144>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02 |
| <표 5.145>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503 |
| <표 5.146>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503 |
| <표 5.147>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504 |
| <표 5.148> 어촌계 현황 | 507 |
| <표 5.149> 유형별 어촌계 현황 | 508 |
| <표 5.150> 어선세력 현황 | 509 |
| <표 5.151> 국가어항 현황 | 510 |
| <표 5.152> 국가어항 투자실적 | 510 |
| <표 5.153> 지방어항 현황 | 511 |
| <표 5.154> 지방어항 투자실적 | 511 |
| <표 5.155> 어촌정주어항 현황 | 512 |
| <표 5.156>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512 |

| | |
|-------------------------------------|-----|
| <표 5.157>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 512 |
| <표 5.15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 513 |
| <표 5.159>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 513 |
| <표 5.16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15 |
| <표 5.16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516 |
| <표 5.16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517 |
| <표 5.16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17 |
| <표 5.16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518 |
| <표 5.16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519 |
| <표 5.16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519 |
| <표 5.167> 어촌계 현황 | 522 |
| <표 5.168> 유형별 어촌계 현황 | 523 |
| <표 5.169> 어선세력 현황 | 524 |
| <표 5.170> 국가어항 현황 | 525 |
| <표 5.171> 국가어항 투자실적 | 525 |
| <표 5.172> 지방어항 현황 | 526 |
| <표 5.173> 지방어항 투자실적 | 527 |
| <표 5.174> 어촌정주어항 현황 | 529 |
| <표 5.175>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 532 |
| <표 5.176>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532 |
| <표 5.17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533 |
| <표 5.178>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533 |
| <표 5.179>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35 |
| <표 5.180>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536 |
| <표 5.181>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537 |
| <표 5.182>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38 |
| <표 5.183>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539 |
| <표 5.184>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539 |
| <표 5.185>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540 |
| <표 5.186> 어촌계 현황 | 543 |

| | |
|-----------------------------------|-----|
| <표 5.187> 유형별 어촌계 현황 | 543 |
| <표 5.188> 어선세력 현황 | 544 |
| <표 5.189> 국가어항 현황 | 545 |
| <표 5.190> 국가어항 투자실적 | 545 |
| <표 5.191> 지방어항 현황 | 546 |
| <표 5.192> 지방어항 투자실적 | 546 |
| <표 5.193> 어촌정주어항 현황 | 547 |
| <표 5.194> 어촌정주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 547 |
| <표 5.195>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548 |
| <표 5.196>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 548 |
| <표 5.197>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 549 |
| <표 5.198>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51 |
| <표 5.199>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 552 |
| <표 5.200>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 553 |
| <표 5.201>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553 |
| <표 5.202>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 554 |
| <표 5.203>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 554 |
| <표 5.204>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 555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2.1> 주요 국가별 수산물 생산추이 동향 | 12 |
| <그림 2.2> 어업종사자 연령별 추이(2006년) | 15 |
| <그림 2.3> 어가, 농가 및 도시간의 소득 격차 추이 | 16 |
| <그림 2.4> 년도별 어업 생산 추이 | 17 |
| <그림 2.5> 연근해어업의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변화 | 18 |
| <그림 2.6> 근해어업의 평균 총자본이익률 변화 | 18 |
| <그림 2.7> 어업생산량 변화추이 | 27 |
| <그림 2.8> 수산물 수출량 추이 | 29 |
| <그림 2.9>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분포도 | 39 |
| <그림 2.10> 시·도별 국가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 55 |
| <그림 2.11> 시·도별 지방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 56 |
| <그림 2.12>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 57 |
| <그림 2.13> 시·도별 소규모포구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 58 |
| <그림 2.14>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의 변화 추이 | 71 |
| <그림 2.15> 어가소득의 상대적 비교 | 73 |
| <그림 2.16> 어가경제잉여의 연도별 추이 비교 | 74 |
| <그림 2.17> 어항의 기능 | 85 |
| <그림 2.18> 어촌·어항개발의 연계 | 86 |
| <그림 2.19> 어촌·어항 연계 개발 예시(강원도 강릉)> | 88 |
| <그림 2.20>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 93 |
| <그림 2.21> 어업가구의 장기 추세 전망 | 107 |
| <그림 2.22> 어가인구의 장기 추세 전망 | 107 |
| <그림 2.23> 어가소득의 장기 추세 전망 | 107 |
| <그림 2.24>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의 장기 추세 전망 | 108 |
| <그림 2.25> 위생관리형 어장의 효과 | 134 |
| <그림 2.26> 카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 136 |

| | |
|---|-----|
| <그림 2.27> 카네우라 어항 | 138 |
| <그림 2.28> 후쿠오카현 닛쇼지구 | 140 |
| <그림 2.29> 어협 직판시설 | 141 |
| <그림 2.30> 사업효과 | 141 |
| <그림 2.31> 정기선 이발착 시설 | 143 |
| <그림 2.32> 사업효과 | 143 |
| <그림 2.33> 국가어항 신규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 157 |
| <그림 2.34> 국가어항 신규지정의 필요성 | 157 |
| <그림 2.35> 국가어항 신규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158 |
| <그림 2.36> 어항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의 장점 | 162 |
| <그림 2.37> 향후 어항정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 170 |
| <그림 2.38> 어촌개발관련 인식부문 | 172 |
| <그림 2.39>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개발 사업의 중점사항 | 174 |
| <그림 2.40> 향후 중점 어촌개발 사업방식 | 174 |
| <그림 2.41>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사업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 178 |
| <그림 2.42>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단위 | 179 |
| <그림 2.43> 어촌계 직접 소득지원사업 필요성 | 180 |
| <그림 2.44> 어촌개발을 위해 발굴해야 할 사업 | 180 |
| <그림 2.45> 수정계획의 기본틀 | 184 |
| <그림 2.46> 수용대상 어선척수 | 203 |
| <그림 2.47> 도시·어촌교류 | 209 |
| <그림 2.48> 일본의 수산물판매센터 | 211 |
| <그림 2.49> 해양레저 시설 | 213 |
| <그림 2.50> 어촌민속전시관 | 214 |
| <그림 2.51> 어촌의 공간적 개념도 개선방안 | 224 |
| <그림 2.52> 어촌개발 사업체계 | 225 |
| <그림 2.53> 유형화·특성화 어촌개발 | 235 |
| <그림 2.54>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 236 |
| <그림 2.55> 낙후·고령화된 어촌의 생활복지 개선 | 237 |
| <그림 2.56> 어촌의 휴먼웨어 육성 | 238 |

| | |
|--|-----|
| <그림 3.1> 지정어항 시도별 현황 | 249 |
| <그림 3.2> 다기능어항 시도별 현황 | 257 |
| <그림 3.3> 어항개발 투자실적 추이 | 261 |
| <그림 3.4> 계속투자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63 |
| <그림 3.5>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67 |
| <그림 3.6>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68 |
| <그림 3.7> 국가어항 어항정비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71 |
| <그림 3.8> 국가어항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72 |
| <그림 3.9> 준설토 유용(양빈공법)에 의한 침식·매몰대책 | 273 |
| <그림 3.10> 아울렛매장 시설 및 낚시공원 | 279 |
| <그림 3.11> 다기능어항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80 |
| <그림 3.12> 어항정화시설 확충 단기 투자계획 추이 | 284 |
| <그림 3.13> 어항개발 투자계획 추이 | 289 |
| <그림 3.14> 전국 어촌계 현황 | 290 |
| <그림 3.15> 어촌관련개발사업 시도별 분포 현황 | 292 |
| <그림 3.16> 최근 5년간 어촌개발(총괄) 투자실적 추이 | 299 |
| <그림 3.17> 시도별 단기투자액 | 329 |
| <그림 3.18> 시도별 중장기 투자액 | 330 |
| <그림 3.19>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단기 투자액 | 334 |
| <그림 3.20>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액 | 335 |
| <그림 5.1> 공간적 범위 | 379 |
| <그림 5.2> 부산광역시 계획 현황도 | 393 |
| <그림 5.3> 공간적 범위 | 394 |
| <그림 5.4> 인천광역시 계획 현황도 | 409 |
| <그림 5.5> 공간적 범위 | 410 |
| <그림 5.6> 울산광역시 계획 현황도 | 423 |
| <그림 5.7> 공간적 범위 | 424 |
| <그림 5.8> 경기도 계획 현황도 | 437 |
| <그림 5.9> 공간적 범위 | 438 |
| <그림 5.10> 강원도 계획 현황도 | 453 |

| | |
|-----------------------------|-----|
| <그림 5.11> 공간적 범위 | 454 |
| <그림 5.12> 충청남도 계획 현황도 | 470 |
| <그림 5.13> 공간적 범위 | 471 |
| <그림 5.14> 전라북도 계획 현황도 | 485 |
| <그림 5.15> 공간적 범위 | 486 |
| <그림 5.16> 전라남도 계획 현황도 | 505 |
| <그림 5.17> 공간적 범위 | 506 |
| <그림 5.18> 경상북도 계획 현황도 | 520 |
| <그림 5.19> 공간적 범위 | 521 |
| <그림 5.20> 경상남도 계획 현황도 | 541 |
| <그림 5.21> 공간적 범위 | 542 |
| <그림 5.22> 제주도 계획 현황도 | 556 |

제 1 편 계획의 개요

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 1 장 계획수립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1)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

- 그 동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어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소득,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및 문화 등의 측면에서 정주성(定住性)이 열악함
- 어업종사자 및 어촌인구가 감소하는 이어이촌(離漁離村)현상 및 이로 인한 어촌 공동화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등 어촌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 수산업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수요의 다변화

- 한편 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어항은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수산물 생산 감소 및 어선감축 사업에 의한 어선 감소 등으로 어항개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 특히 그 동안 분산투자 방식의 어항건설은 어항개발의 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어선의 안전성 확보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어항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한 실정임

3) 관광수요의 변화와 휴식공간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최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우리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1인당 소득 20,000달러 시대를 앞두고 휴양·휴식·휴게·관광활동의 활성화, 도로망 정비로 연안·어촌지역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어촌·어항은 더 이상 어업인만의 거주공간과 수산업만의 어항공간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어업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으로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새로운 어촌·어항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4)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요구

- 어촌·어항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에 근거하여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

1.1.2 목적

-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촌·어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법적근거 및 성격

1.2.1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제4조
 -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계획의 성격

- 어촌·어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항개발사업 및 어촌관련 개발사업의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총괄 집대성
 - 본 계획에 따라 어촌·어항 개발에 단계적 실천계획 제시
 - 어항개발에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 도모
 - 어항관광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창출형 선진어항으로 발전 기대
 - 어촌개발에 획일적 차원에서 유형·특화로의 전환을 통한 어촌 경제력 활성화 추구
- 어촌·어항개발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본 계획은 어촌·어항개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어촌·어항 개발에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 제시

1.3 계획수립 범위

1.3.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연안 시군구 86개, 읍면동 468개, 어촌계 1,969개, 어촌마을 3,952개, 국가어항 104개항, 지방어항 289개항, 어촌정주어항 579개항, 소규모포구 1,334개항 등

<표 1.88> 공간적 범위

(단위 : 개소)

| 구 | 분 | 개 소 | 비 고 |
|--------|-------------|-------|------------------|
| 시 | 군 구 | 86 | 어촌계 가입기준 |
| 읍 | 면 동 | 468 | 어촌계 가입기준, 행정구분기준 |
| 어 | 촌 계 | 1,969 | 어촌계분류평정 참고 |
| 어 | 촌 마을 | 3,952 | 어촌계에 속한 자연마을 |
| 어 항 | 국 가 어 항 | 104 | |
| | 지 방 어 항 | 289 | |
| | 어 촌 정 주 어 항 | 579 | |
| | 소 규 모 포 구 | 1,334 | |
| | 계 | 2,306 | |

※ 시군구 현황 : 연안시군구(76개소) + 내수면(10개소)

※ 개소수는 지정해제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1.3.2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1단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 2단계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 3단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3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조사 분석
 - 일반현황 등 현지어건조사
 - 어항현황,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조사
 -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 기초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분석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어항법 시행령4조)
 - 어촌·어항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한 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사항

1.4 추진경위 및 체계

1.4.1 기본계획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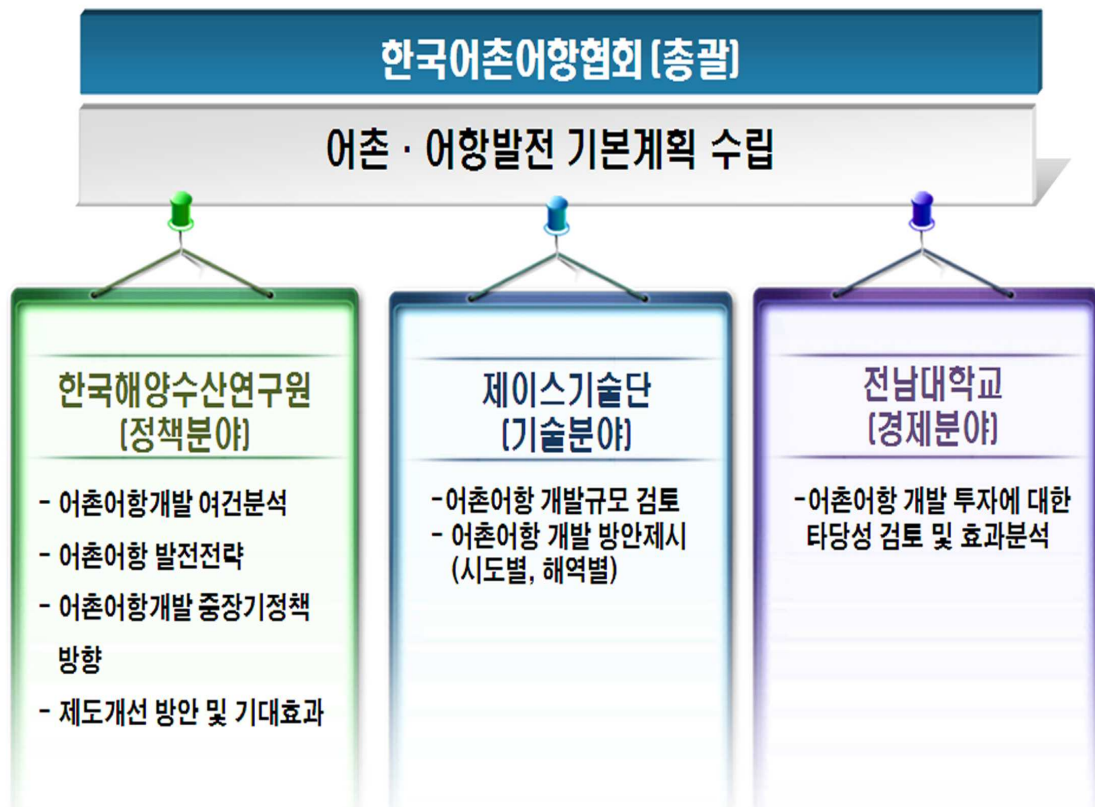
- 2006년 3월 9일 : 계약체결 및 1차 과업착수
- 2006년 4월 10일 : 기초자료조사 착수(현지조사, 설문조사 등)
- 2006년 10월 31일 : 기초조사 완료(전국 86개 시군구 등)
- 2006년 11월 3일 : 설문조사 완료(대상 : 전국 1,981개소 어촌계)
- 2006년 11월 20일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6년 12월 1일 : 선진국 어촌·어항개발 사례조사(일본 동경, 북해도, 큐슈)
- 2006년 12월 29일 : 1차년도 준공(기초조사 부문)
- 2007년 2월 1일 : 2차 과업착수
- 2007년 7월 26~27일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2007년 10월 8일 : 시도 통합 1차 공청회
- 2007년 11월 28일 : 중간 보고회
- 2007년 12월 5일~21일 : 시도 2차 공청회
- 2008년 3월 25일 : 최종 보고회

1.4.2 계획수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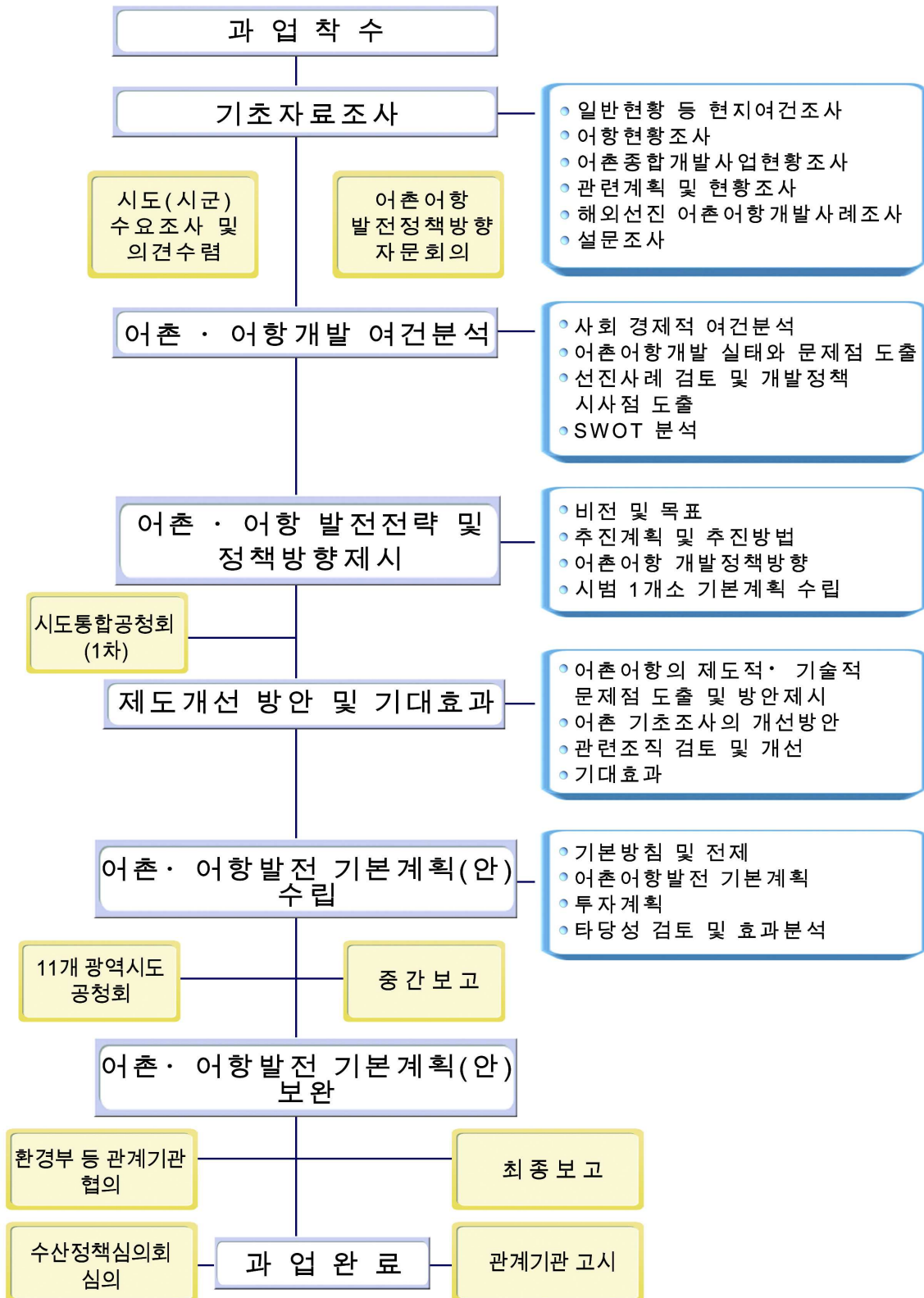
1) 과업기간

- 2006년 3월 9일 ~ 2006년 12월 29일 : 기초자료조사
- 2007년 2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안)수립

2) 수행체계



3) 수행 흐름도



제 2 편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장 어촌·어항 현황 및 여건분석

2장 제도개선 방안

3장 어촌·어항발전 비전과 정책방향

제 1 장 어촌·어항 현황 및 여건분석

1.1 대내외 여건변화

1.1.1 대외적 여건변화

1) 수산물 생산 동향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5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수산식물 제외)은 141,403천 톤으로, 2004년도의 140,475천 톤보다 72천 톤(0.7%)이 증가
-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전년의 1,981천 톤보다 94천 톤(4.7%)이 증가한 2,075천 톤을 생산,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47%를 차지하여 세계 15위
- 세계 양식생산량은 48,150천 톤(수산식물 제외)으로 세계 수산물생산의 34.1%를 차지하였고, 연간 4백만 톤 이상 생산되는 양식어종은 참굴과 백련어로서, 참굴의 2005년 생산량은 4,497천 톤으로 세계 양식 생산량의 9.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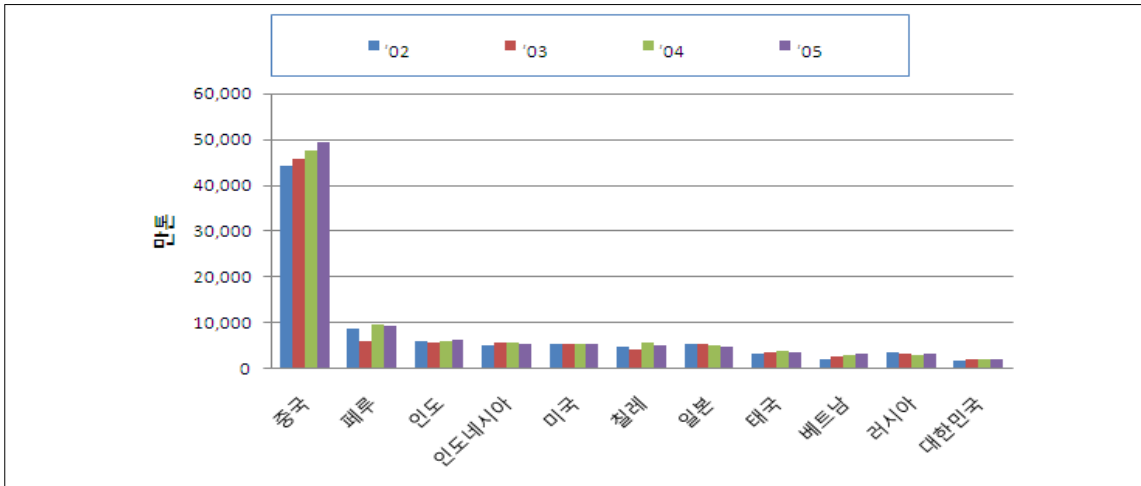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 '02 | '03 | '04 | '05 | '05/'04 | |
|-----|-------|---------|---------|---------|---------|-------|
| 순위 | 합 계 | 132,989 | 132,524 | 140,475 | 141,403 | 100.7 |
| 1 | 중국 | 44,320 | 45,648 | 47,507 | 49,467 | 104.1 |
| 2 | 페루 | 8,775 | 6,103 | 9,635 | 9,416 | 97.7 |
| 3 | 인도 | 5,963 | 5,904 | 6,088 | 6,319 | 103.8 |
| 4 | 인도네시아 | 5,271 | 5,672 | 5,856 | 5,578 | 95.3 |
| 5 | 미국 | 5,419 | 5,483 | 5,566 | 5,361 | 96.3 |
| 6 | 칠레 | 4,817 | 4,185 | 5,610 | 5,029 | 89.6 |
| 7 | 일본 | 5,435 | 5,456 | 5,178 | 4,819 | 93.1 |
| 8 | 태국 | 3,334 | 3,590 | 4,018 | 3,743 | 93.2 |
| 9 | 베트남 | 2,027 | 2,604 | 3,078 | 3,367 | 109.4 |
| 10 | 러시아 | 3,566 | 3,390 | 3,051 | 3,306 | 108.4 |
| ∴ | ∴ | ∴ | ∴ | ∴ | ∴ | ∴ |
| 15 | 대한민국 | 1,966 | 2,035 | 1,981 | 2,075 | 104.7 |
| 비율 | 한국/세계 | 1.48% | 1.53% | 1.41% | 1.47% | |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Summary tables

주 : 수산식물 제외



<그림 2.1> 주요 국가별 수산물 생산추이 동향

2) UN해양법 협약 및 FAO 동향

-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중·일 3국간에도 많은 조정을 거쳐 한·중,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동북아 수역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정착됨
- 이러한 UN해양법 협약 이후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자원남획에 따른 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일반감척과 특별감척)으로 2006년까지 5,114척의 연근해어선을 구조조정 하였음

<표 2.2> 연근해어업 감척실적 및 계획

| 구 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 계 |
|-----|---------|-------|-------|-------|-------|--------|
| 척 수 | 5,114 | 2,075 | 2,125 | 425 | 425 | 10,164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또한 1995년 FAO가 ‘책임있는 어업’ 규범을 채택한 이후, 국제환경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과잉어획을 근절하기 위하여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과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해 TAC 제도가 도입되고, 수산자원회복계획 등이 실시되는 등 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

3) WTO/DDA 협상진전

- WTO/DDA 협상에 따라 무역이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부분 수산업의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협상에 따르면, 모든 수산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6개 조항의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조항⁶⁾으로서 향후에도 수산보조금으로서 허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허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조항에는 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수산보조금, 연구사업 지원, 수산자원증대를 위한 보조금, 선박과 선원의 안전 증진을 위한 보조금, 어선감척프로그램,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어항 시설 및 내륙가공시설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어항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수산보조금의 축소와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 EU, 스페인 등 대표적인 FFG(Fish Friend Group)에서도 지원 사업⁷⁾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금지보조금의 예외조항 6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WTO/DDA 협상 등 대외적인 수산업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어촌·어항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동시다발적 FTA 협상의 진전

-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타결을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06. 3), 한-EFTA FTA('06. 9)가 발효되었고,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
 - 향후 한미FTA로 인해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급증으로 예상되어 원양어업의 타격이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 일본, 멕시코, 인도, 캐나다, EU(유럽연합)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등 거래 경제권과의 FTA 협상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수입 수산물의 관세인하는 국내의 경쟁력 열위 업종 및 품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제도개편 및 경쟁력 있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어촌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보조금과 상계조치를 위한 협정(SCM) 부속서 8

7) 이광남 외 4인,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전략 수립, 한국수산회, 2004.

-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더불어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의 한계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등을 강조하여 비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무역규제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1.1.2 대내적 여건변화

1) 수산업 여건 변화

(1) 어가인구 변화

- 총인구는 2006말 현재 48,297천명이었으며, 어가인구는 212천명, 어업인구는 77천명이었음. 또한 어가인구와 어업인구의 대비 결과는 약 3천명당 1천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는. 1980년 이전부터 1.62%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가인구 및 어업인구는 연평균 7.14%와 2.84%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어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표 2.3> 총인구와 어업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 1980 | 1990 | 1995 | 2000 | 2005 | 2006 |
|---------|--------|--------|--------|--------|--------|--------|
| 총인구(A) | 38,124 | 42,869 | 45,093 | 47,008 | 48,138 | 48,297 |
| 어가인구(B) | 725 | 496 | 347 | 251 | 221 | 211 |
| 어업인구(C) | 134 | 122 | 104 | 82 | 80 | 77 |
| A/B | 52.6 | 86.4 | 130 | 187.3 | 217.8 | 227.8 |
| B/C | 5.4 | 4.1 | 3.3 | 3.1 | 2.8 | 2.7 |

자료 :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20076)

(2) 어가인구의 연령별 변화

- 어업종사자는 2005년도에 비해 1.9% 감소된 128,048명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6.5%, 50대가 31.7%, 40대가 22.8%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은 고령화 추세에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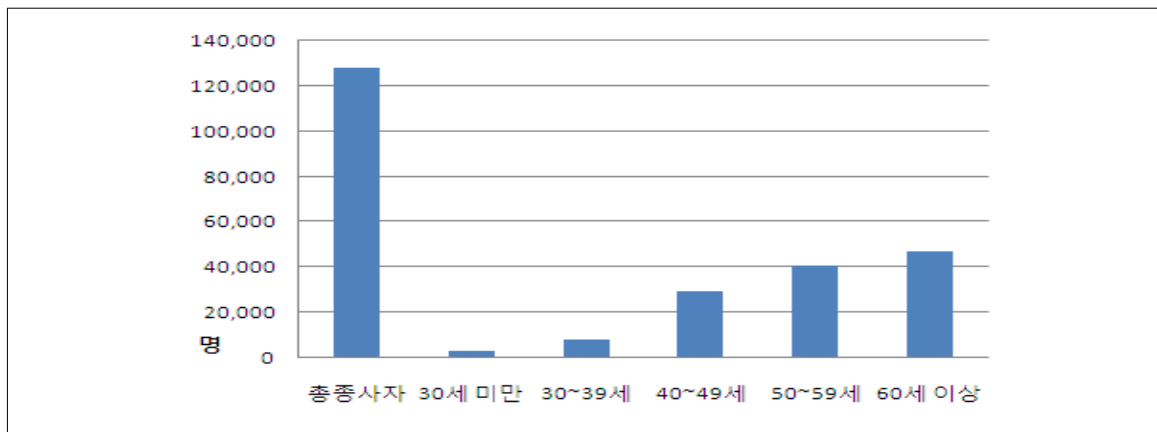
<표 2.4> 어업종사자·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 구 분 | | '02 | '03 | '04 | '05 | '06 | '06/'05 |
|-------------|--------|------------------|------------------|------------------|------------------|------------------|------------|
| 총 사 자 | | 127,694 | 125,023 | 122,384 | 130,589 | 128,048 | 98.1 |
| 연 령 별 | 30세 미만 | 3,817 (3.0) | 3,854 (3.1) | 3,313 (2.7) | 2,456 (1.9) | 3,044 (2.4) | 123.9 - |
| | 30~39세 | 13,067 (10.2) | 11,600 (9.3) | 10,490 (8.6) | 9,684 (7.4) | 8,396 (6.6) | 86.7 - |
| | 40~49세 | 35,401 (27.7) | 33,974 (27.2) | 32,097 (26.2) | 31,067 (23.8) | 29,250 (22.8) | 94.2 - |
| | 50~59세 | 37,994 (29.8) | 36,916 (29.5) | 37,171 (30.4) | 40,084 (30.7) | 40,580 (31.7) | 101.2 - |
| | 60세 이상 | 37,414 (29.3) | 38,680 (30.9) | 39,312 (32.1) | 47,298 (36.2) | 46,778 (36.5) | 98.9 - |

자료 :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2006)

주 : ()내는 구성비임



<그림 2.2> 어업종사자 연령별 추이(2006년)

(3) 어가소득의 변화

- 2006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006천원으로 전년(28,028천원)에 비해 7.1%(1,978천원) 증가하였고, 전년에 비해 어업소득은 2.7% 감소한 반면, 어업 외 소득은 10.2% 증가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38.7%로 전년에 비해 3.9% 감소하였음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2.8%, 도시가계 소득의 72.6%)

<표 2.5> 어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 '02 | '03 | '04 | '05 | '06 | '06/'05 |
|--------|--------|--------|--------|--------|--------|---------|
| 어가소득 | 21,590 | 23,916 | 26,159 | 28,028 | 30,006 | 107.1 |
| 농가소득 | 24,475 | 26,878 | 29,001 | 30,503 | 32,303 | 105.9 |
| 도시가계소득 | 33,509 | 35,280 | 37,360 | 39,010 | 41,321 | 10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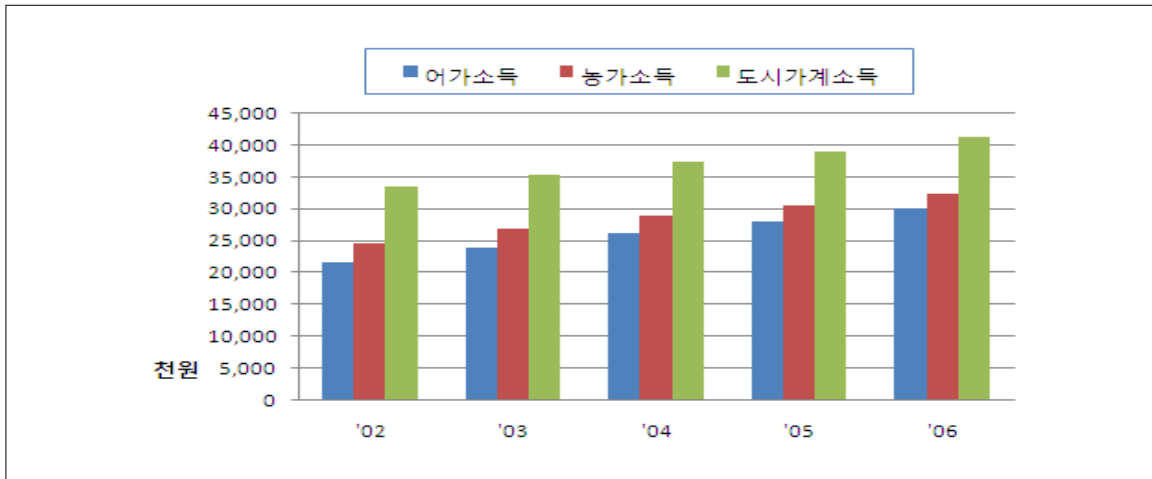
자료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2006)

<표 2.6>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단위 : 천원, %)

| 구 분 | '02 | '03 | '04 | '05 | '06 | '06/'05 |
|----------|-------|--------|--------|--------|--------|---------|
| 어업소득(A) | 9,060 | 10,741 | 11,959 | 11,950 | 11,603 | 97.3 |
| 어업외소득(B) | 7,944 | 8,619 | 9,168 | 9,399 | 10,361 | 110.2 |
| A/B | 114 | 125 | 130 | 127 | 112 | |

자료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2006)



<그림 2.3> 어가, 농가 및 도시간의 소득 격차 추이

(4) 어업 생산 측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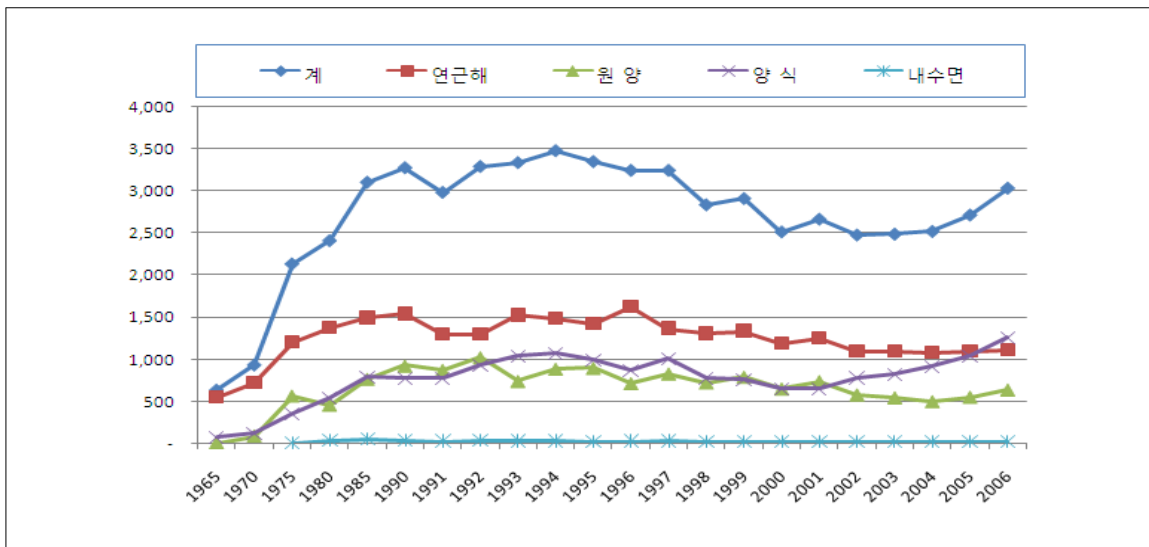
- 국내의 수산업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2.8%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에서는 연평균 2.14% 증가하고 있어 2006년에는 처음으로 어선어업 보다 양식어업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음
- 2006년도 어업 총생산량은 3,032천톤으로 전년 2,714천톤 대비 11.7% 증가 하였음

<표 2.7> 업종별 수산물 생산

(단위 :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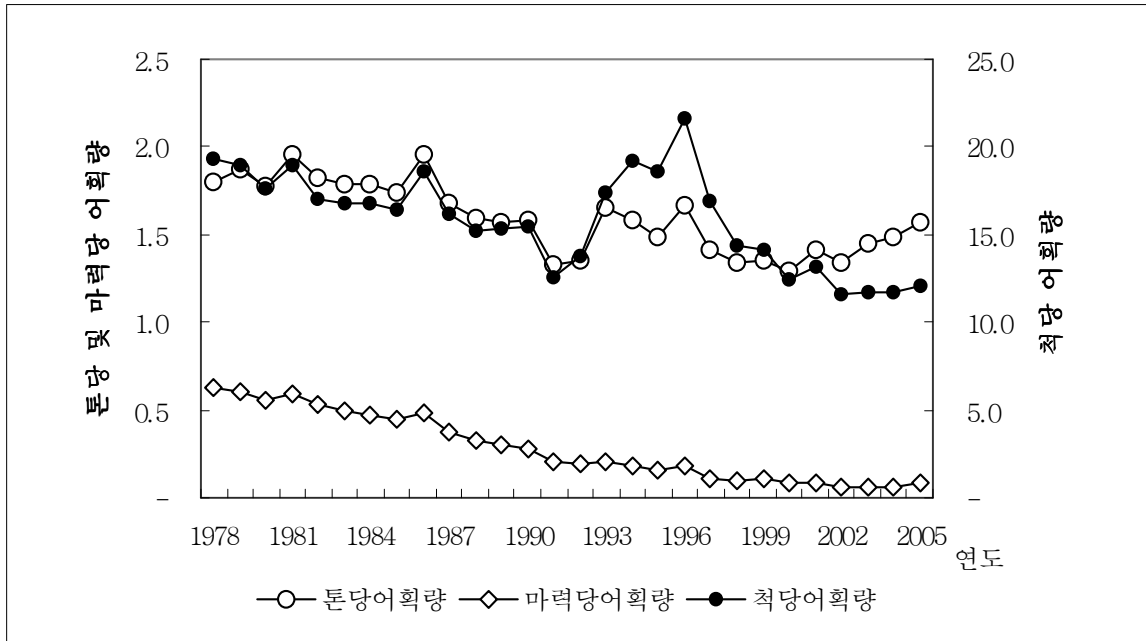
| 연도별 | 계 | 연근해 | 원양 | 양식 | 내수면 |
|------|-------|-------|-----|-------|-----|
| 1965 | 637 | 554 | 9 | 74 | - |
| 1970 | 935 | 726 | 90 | 119 | - |
| 1975 | 2,135 | 1,208 | 566 | 351 | 9 |
| 1980 | 2,410 | 1,372 | 458 | 541 | 39 |
| 1985 | 3,103 | 1,495 | 767 | 788 | 53 |
| 1990 | 3,275 | 1,542 | 925 | 773 | 35 |
| 1995 | 3,347 | 1,425 | 897 | 997 | 29 |
| 2000 | 2,514 | 1,189 | 651 | 653 | 21 |
| 2005 | 2,714 | 1,097 | 552 | 1,041 | 24 |
| 2006 | 3,032 | 1,109 | 639 | 1,259 | 25 |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구)해양수산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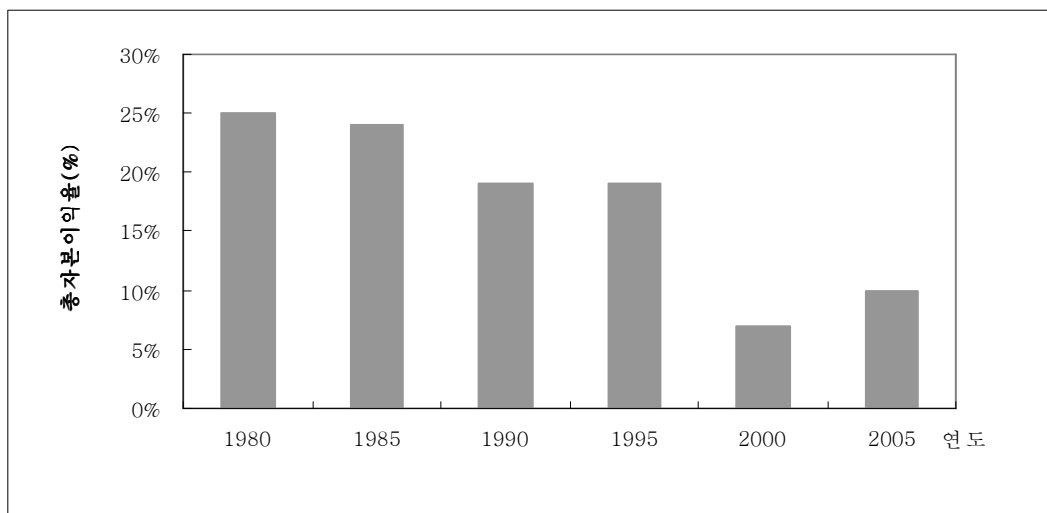
<그림 2.4> 년도별 어업 생산 추이

-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량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1,000만 톤 수준에 달했던 연근해 어업자원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현재 약 79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은 어획강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후의 어업자원량 수준은 더욱 저하되어 약 39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2.5> 연근해어업의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변화

- 근해어업의 연근해 어획량 감소와 시장가격 정체로 인해 어업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경향에 있는 반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과 최근 어로장비와 어선 기관의 최신화 및 대규모화로 인한 고정비, 수리비 등 어업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업종별로 경영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근해어업의 수익성 지표로서 평균 총자본이익률의 경우, 아래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 평균 25%대 수준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10% 이하로 급감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그림 2.6> 근해어업의 평균 총자본이익률 변화

- 최근 기후의 변화는 국내 수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어종의 어획지역에 큰 변동을 가져오고 있음
 - 특히,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⁸⁾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멸치, 병어, 고등어의 생산량이 전체 어획량의 56.6%를 차지하면서 이들 자원의 분포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수온도의 상승에 따라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줄고, 그 자리에 난류성 어종이 대신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5) 어업 소비 측면의 변화

-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70년 17.3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48.03kg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 수산물을 통한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은 7.7g으로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10.4%였으나 2005년에는 18.89g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납땀계 수입사건 및 내수면양식어류의 말라카이트그린 사태 등에 의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어 감

<표 2.8>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섭취량

(단위: %, kg, g)

| 구 분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 | | | |
|------------|-------------|----------------|-------------|-------------|------------|
| | | 육류 | 수산물 | 식물성 | 계 |
| 1970 | 17.30 | 4.40(6.0) | 7.70(10.4) | 61.80(83.6) | 73.90(100) |
| 1980 | 27.00 | 9.49(12.3) | 10.66(13.9) | 53.21(71.8) | 76.86(100) |
| 1990 | 36.20 | 17.25(19.5) | 13.88(17.9) | 56.19(63.4) | 88.57(100) |
| 2000 | 36.73 | 26.27(26.8) | 14.92(13.2) | 52.66(53.8) | 97.87(100) |
| 2005 | 48.03 | 26.37(26.7) | 18.89(19.1) | 53.53(54.2) | 98.79(100) |
| 연평균 성장률 | 3.0 | 3.2 | 2.6 | -0.4 | 0.8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8)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7. 8

(6) 공익적 기능 부각

- 수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에 의한 환경보전 기능, 국민 생명 및 재산보호 기능, 물질순환 기능 등을 결합생산하고 있으므로 최근 이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물질순환기능은 138,179억원, 환경보전기능은 276,466억원,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기능은 11,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⁹⁾

(7) 어선 등록 현황

- 2006년 말 어선등록 현황은 86.1천척에 674천 톤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4.6천척(5.1%)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27천 톤(3.9%)이 감소
-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83.3천척으로 96.8%, 톤수는 671천 톤으로 99.6%를 차지
-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6.7%로서 전체 톤수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1.1%,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2%, 64.5%를 차지

<표 2.9> 어선세력 변화 추이

(단위 : 척, 천톤)

| 구 분 | | 1980 | 1990 | 1995 | 2000 | 2005 | 2006 |
|------|----|--------|--------|--------|--------|--------|--------|
| 합계 | 척수 | 77,600 | 99,700 | 76,800 | 95,900 | 90,700 | 86,100 |
| | 톤수 | 771 | 977 | 95.9 | 923 | 701 | 674 |
| 동력선 | 척수 | 51,100 | 79,400 | 71,000 | 89,300 | 87,500 | 83,300 |
| | 톤수 | 740 | 955 | 951 | 918 | 698 | 671 |
| 무동력선 | 척수 | 26,500 | 20,300 | 5,800 | 6,600 | 3,200 | 2,700 |
| | 톤수 | 30 | 22 | 8.0 | 5.1 | 2.9 | 2.4 |

자료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구)해양수산부, 2007)

9)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업·어 다원적 기능 국민인식 제고, 2006. 1

(8) 어선 감척 현황

- UN해양법 협약 이후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조업구역의 축소, 자원 남획에 따른 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진행 ⇒ 199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5,114척의 연근해어선을 구조조정(연안어선 3,172척(62%), 근해어선 1,942척(38%))
- 해양수산주요통계(해양수산부,2007)에 따르면 향후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2004~2008년 동안 6,300척(연안어선의 10%) 감척계획, 근해어선은 WTO/FTA 등 국내외적이 어업 여건 및 수산자원을 고려하여 2007~2010년에 약 1,000여 척(근해어선의 30%)을 감척할 계획임

<표 2.10>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실적

(단위 : 척)

| 년 도 | 2005년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비고 |
|-----|---------|-------|-------|-------|------|------|----|
| 계 | 3,865 | 1,249 | 2,070 | 2,125 | 425 | 425 | |
| 연안 | 1,923 | 1,249 | 2,000 | 2,000 | - | - | |
| 근해 | 1,942 | - | 70 | 125 | 425 | 425 | |

자료 : (구)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7)

2) 관광패턴 및 수요의 변화

- 국내 관광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관광 수요는 2005년 381,555(천명)에서 2013년 622,047(천명)으로 확대되어 연평균 6.3%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연안교통망의 확충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관광패턴의 변화(내륙지향 ⇒ 해양지향)로 바다, 해수욕장, 갯벌, 지역수산물 및 관광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어촌관광 인구는 2005년 95,389(천명)에서 167,195(천명)으로 확대되어 연평균 8.4%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¹⁰⁾

10)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지역관광활성화 방안연구, 2006.

- 또한, 최근에는 유어낚시, 요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해안 및 내수면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관광패턴을 살펴보면, 단순한 경관감상에서 체험추구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다의 수산자원, 어촌의 문화자원, 자연경관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자연밀착형 관광, 모험추구형 관광, 체험형 관광, 건강·미용 추구형 관광 등으로 관광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한 어촌지역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1> 관광형태의 변화

| 관광형태 | 특 징 |
|--------------|---|
| 자연 밀착형 관광 | ·도시화, 여가취향의 변화 등으로 자연자원 관광지 선호 추세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자연체험의 욕구 상승 ·자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의 관광 도입(생태관광, 녹색관광) |
| 모험 추구형 관광 | ·“극적인(Extreme)” 관광지로의 여행과 같은 모험관광 출현 ·젊은층 및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관광시장 형성(모험, 즐거움과 교육적 내용이 잘 조화된 단체관광 상품선호) ·신종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확산(래프팅, 트레킹, 암벽타기 등) |
| 체험형 관광 |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실제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행태 출현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상품이 개발되는 추세 |
| 건강·미용 추구형 관광 | ·성장지향 경제속에서 건강과 미용을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 형성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젊음 유지 및 건강욕구 고조 |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2002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촌체험마을의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방문객수와 관광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방문객수 145%증가, 체험시설 이용객 수 213%증가, 관광소득이 128% 증가하였음

<표 2.1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 분 | 마을수 (누계) | 방문객 | | 체험시설이용 | | 관광소득 | |
|-------|-------------|-------|-------------|--------|-------------|--------|-------------|
| | | 인원수 | 전년대비 증가율 | 인원수 | 전년대비 증가율 | 금액 | 전년대비 증가율 |
| 2001년 | 9 | 172 | - | 10 | - | 750 | - |
| 2006년 | 59 | 3,521 | - | 731 | - | 40,801 | - |
| 2007년 | 59 | 5,119 | 145% | 1,556 | 213% | 52,361 | 128%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내부자료

<표 2.13> 년도별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운영실적

(단위 : 백명, 십만원)

| 구 분 | | 완도 | 삼척 | 거제 | 안산 | 영덕 | 거제 |
|-------|------|-----|-------|-------|-----|-----|-------|
| 2002년 | 방문객수 | 208 | 1,914 | | | | |
| | 수입 | 133 | 547 | | | | |
| 2003년 | 방문객수 | 367 | 1,654 | 92 | | | |
| | 수입 | 235 | 3,084 | 65 | | | |
| 2004년 | 방문객수 | 385 | 1,481 | 900 | | | |
| | 수입 | 151 | 2,877 | 637 | | | |
| 2005년 | 방문객수 | 859 | 1,684 | 1,127 | | | 2,394 |
| | 수입 | 286 | 3,002 | 887 | | | 1,238 |
| 2006년 | 방문객수 | 343 | 1,828 | 1,195 | 517 | 944 | 2,436 |
| | 수입 | 73 | 3,350 | 945 | 561 | 543 | 1,162 |

자료 : 각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내부자료

- 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1998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에 개발을 완료한 어촌민속전시관 및 울산 고래박물관에 방문객 현황 및 수입현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촌민속전시관의 현재까지 총 방문객수는 153만명이며, 고래박물관의 관람객수

는 48만명임.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람수입은 총 1,738백만원이며, 고래박물관의 관람수입은 240백만원임

- 현재까지 삼척어촌민속전시관이 방문객수 및 관람수입 등이 타전시관에 비하여 많으며, 장생포 고래박물관의 경우 개관 2년만에 48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입장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3 어촌·어항의 정책 변화

1) 어항의 정책

(1) 어항 이용·기능의 다변화

- 과거의 어항은 주로 어업지원시설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국내 수산업의 쇠퇴와 수산물수입개방 및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5일제 근무의 정착 등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이용범위와 기능이 다변화하고 있음

①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 어항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선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대피시설인 동시에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수품 및 어선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 또한 어항은 생산된 어획물이 위판되는 장소로서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인 동시에 어항의 배후부지는 어획물의 보관·처리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됨. 어항내 일정수면을 활어의 일시 축양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항의 배후부지에 활어일시보관시설을 건립하여 고급어종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어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근래에 수산물의 식품안정성을 고려한 위생적인 수산물유통·가공시스템의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항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② 어촌생활중심지

- 어항은 마을회관, 진료시설, 상업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위치한 어촌의 생활중심지로서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도서·벽지에서는 생활물자의 운반, 정기항로의 선착장 등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임
- 지금까지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생활·복지여건은 낙후된

채 기본시설 위주의 어항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및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추진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항은 앞으로 어촌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③ 어촌관광·해양레저의 중심기지

-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과 자연(친환경)지향의 성향이 증대되면서 해양성 휴양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여기에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어촌관광과 해양레저의 수요가 증가함. 어항은 어촌의 관문이자 어업활동 및 생활의 중심지로서 어촌관광·해양레저에 있어서도 그 중심기지의 역할을 수행함
- 종래의 어촌관광·해양레저는 주로 경관감상과 먹거리 관광 및 바다낚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어촌에서의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촌체험관광이 등장하여 매년 참여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쿠버다이빙, 요트·보트타기 등 선진국형 레저활동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신선한 수산물을 경관이 좋은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항은 수산물 식당가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특성을 살린 지역특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어항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
- 따라서 국민의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어항의 양적 증대 및 이러한 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시설의 질적 강화가 동시에 요구됨

(2) 어항개발 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는 자연적 지형조건을 이용한 포구와 어항이 발달하였으나 현대적인 어항의 개념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음. 초기의 어항은 수산물의 집산, 운송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대 정어리, 명태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2개 지정어항을 비롯한 주요어항의 개발이 시작됨. 광복이후 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어항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어항개발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① 여명기(1950~1960년대)

- 이 시기는 어항개발의 여명기로서, 한국전쟁이후 피해시설의 수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선척수와 어업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어항시설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 시기에는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항만개발은 해무청과 건설부에서 추진하였으며, 농림부는 수산업법 제 69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정부보조금에 의한 소규모어항 개발을 담당함

<표 2.14>어항개발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 발전단계 | 어 항 개 발 정 책 | 어항담당 행정조직 |
|----------------------------|--|---|
| 여명기 1950 ~1960년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쟁 후 피해시설 수리에 역점 •50년대는 정부재정 취약하여 어항건설실적 미약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으로 어항투자 확대 •수산청 발족(1966)과 어항법 제정(19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무청 수산국 (1955) •농림부 수산국 어선어항과(1961) •수산청 시설국 시설과(1966) |
| 도입기 197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법에 의한 어항개발시작으로 정부지정항(1·3종)에 대한 본격개발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어항투자 증가 •긴급대피항의 개념 도입 •여수 어항사무소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 (1970) |
| 도약기 198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시설의 양적 확대 •소규모포구에 대한 개발비 주민부담(20%)을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설립(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를 어항과와 시설과로 양분 (1984) |
| 발전기 199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어항사무소를 남해 어항사무소로 확대개편 및 동·서해 어항사무소 신설 •어항법 개정(1993)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어항투자 대폭 증가 •해양수산부 발족(1996) 및 지방해양수산청 신설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1997) |
| 성숙기 200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법 개정(2001)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 •어촌·어항법 제정(2005) •농림수산물식품부 발족(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관실 어항과(2008) |

※자료 : 한국어항사(한국어촌·어항협회),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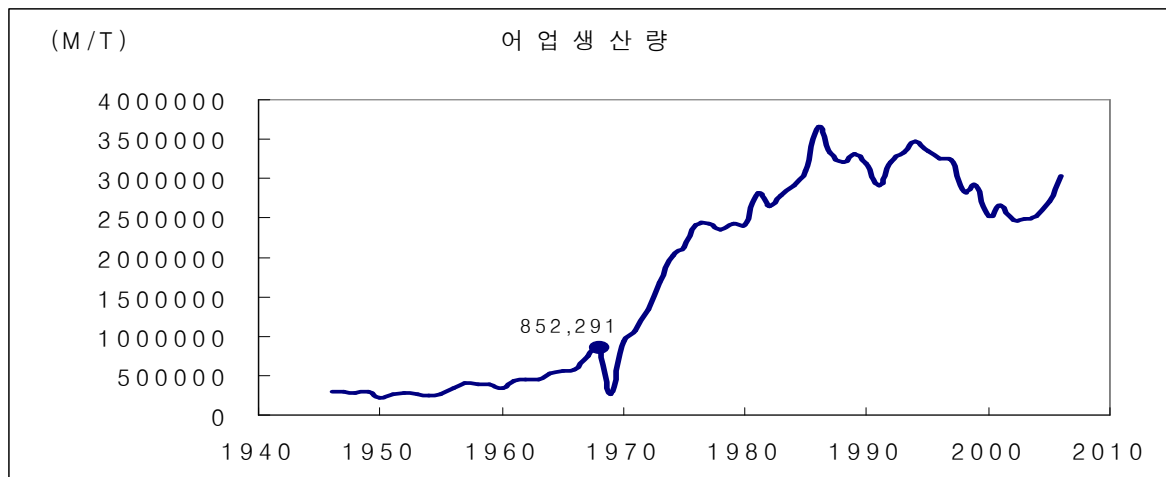
- 1955년 총 39,520척이던 어선세력은 1970년 68,400척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동력선의 비율도 10.5%에서 20.6%로 상승하는 등 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함. 5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어업생산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0년대 초반에 50만 톤을 넘어섰으며 1968년에는 85만 톤의 생산고를 올리는 등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획물을 취급할 어항시설의

수요가 증가함.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예산의 제약하에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950년에서 1961년 사이의 기간동안 총예산 1억 9,308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0,973m, 선착장 6,346m, 물양장 및 잔교 1,146m를 시설함¹¹⁾

<표 2.15> 연도별 어선척수와 동력화율의 추이

| 년도 | 어선척수 | 톤수 | 척당톤수 | 동력화율(%) |
|------|--------|---------|------|---------|
| 1955 | 39,520 | 175,580 | 4.4 | 10.5 |
| 1960 | 34,438 | 107,017 | 3.1 | 12.5 |
| 1965 | 51,052 | 203,163 | 4.0 | 14.9 |
| 1970 | 68,400 | 358,000 | 3.2 | 20.6 |
| 1975 | 67,700 | 648,000 | 9.6 | 29.1 |
| 1980 | 77,600 | 771,000 | 9.9 | 63.7 |
| 1985 | 90,900 | 858,000 | 9.4 | 79.0 |
| 1990 | 99,700 | 997,000 | 10.0 | 80.9 |
| 1995 | 76,800 | 959,000 | 12.5 | 92.0 |
| 2000 | 95,890 | 923,099 | 9.6 | 93.1 |
| 2005 | 90,735 | 700,810 | 7.7 | 96.5 |

※자료 : 수산기본통계자료, 해양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2.7> 어업생산량 변화추이

-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어항수축부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제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동안 총 3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파제 15,021m, 물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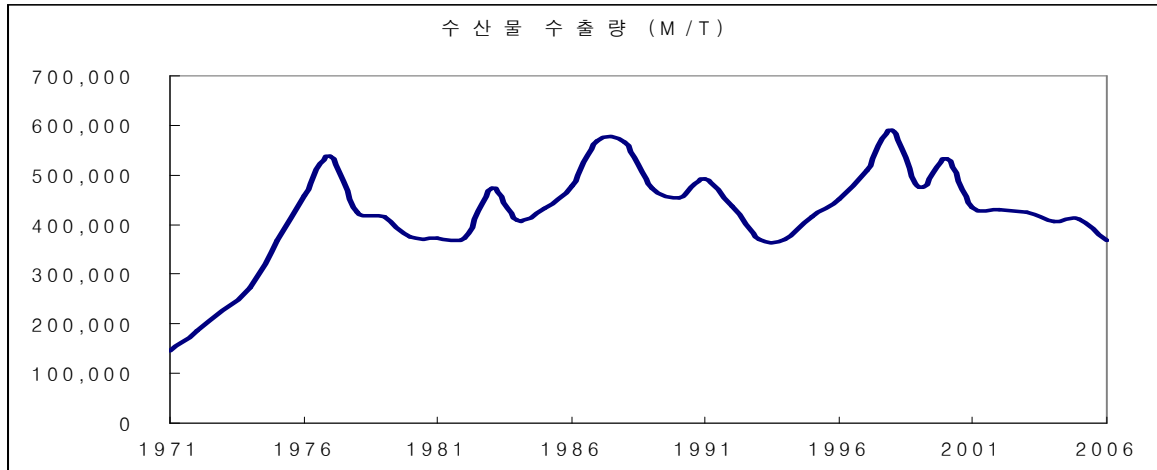
11) 손정식(1996), 「한국어항사」

5,029m를 축조하였으며, 어항기능시설에 2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급유시설 53개소, 급수시설 28개소, 공동창고 41개소 등 122개소를 시설함

-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하여 수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수산시설의 확장 및 관리, 어선 및 어항에 관한 사무관장을 담당하게 되고 1969년 어항의 시설, 수축 및 관리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 어항법이 제정됨. 1967년 항만법의 제정과 더불어 어항법의 제정으로 항만과 어항의 개념이 분리되었으며, 신설된 어항법은 어항시설의 개념에 기본시설 이외에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 및 선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기능시설까지 추가함

② 도입기(1970년대)

- 1969년 제정된 어항법에 따라 1, 2, 3종의 법정어항을 지정함. 1, 3종 어항은 현재 국가어항에 해당하는데 1971년 1종 어항 37개소, 제3종어항 25개소가 지정됨.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함
- 이 시기에는 어업생산량이 급증하고 수산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어항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 이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3·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동안 총 5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파제 39,853m, 물양장 6,510m를 축조함
- 또한 긴급 대피항의 개념이 도입되어 울릉도 저동항, 소흑산도항 및 서거차항의 우선개발이 시행됨. 1977-1981년간 연근해어업 진흥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1·3종 어항(정부지정항)에 대한 개발은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제2종항(도지정항) 및 소규모 어항은 자원 부족으로 개발이 부진하였음
- 1979년 여수 어항사무소를 신설하여 IBRD 차관사업인 여수 국동 어항종합단지의 관리를 담당케 함. 이후 여수 어항사무소는 동·서·남해 어항사무소의 모태가 됨



<그림 2.8> 수산물 수출량 추이

③ 도약기(1980년대)

- 이시기는 어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때로서 어항개발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제5·6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총 4,087억원을 투입하여 1·3종어항의 방파제 및 물양장 41,835m, 2종어항의 방파제 및 물양장 13,754m를 시설함
- 소규모 어항에 대한 개발비의 주민 부담을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하여 소규모어항의 개발을 촉진함. 즉 과거 국고 50%, 지방비 30% 및 지역주민 자부담 20%이던 소규모포구에 대한 개발지원비율을 국고 50%, 지방비 50%로 변경함으로써 소규모포구에 대한 개발도 본격화되기 시작함
- 1987년 6월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발족, 순수 민간단체로서 어항개발의 촉진과 어항기술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대국민 어항인식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

④ 발전기(1990년대)

- 1991년 여수 어항사무소를 남해 어항사무소로 확대 개편하고 동해 및 서해 어항사무소를 신설하여 어항행정의 일원화 달성. 각 어항사무소는 관리과와 공사과로 이루어지는데 관리과는 일반행정업무의 처리,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설계심사 및 검사와 어항청소선 운영 등 일반적인 어항의 관리를, 공사과는 어항공사의 설계 및 공사집행, 어항광사의 시공, 감독, 어항시설의 피해복구 등 어항공사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항관리체제를 구축함

-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어항 개발이 활발히 계속됨. 1·3종 어항의 완공율이 증가함에 따라¹²⁾ 기본시설 위주의 어항개발과 어항내 해수 오염 등이 어항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1993년에는 24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어항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시도함. 주요 내용은 어항시설의 범위에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외에 복지시설을 새로 추가하여 어항내 진료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등 어민 후생시설과 낚시터, 유어선,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오·폐물의 투기, 무단사용 및 점용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을 정하여 어항관리가 시작됨. 또한 어항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지정권자에 의한 어항개발규정을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어항시설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어항개발에 있어서의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1993년 12월 15일 UR(우루과이 라운드)협정 체결 이후 농특세 재원을 신설하여 1994년 787억원이던 어항투자예산이 1995년 1,505억원, 1996년 1,665억원(총 수산예산의 22.6%)으로 증가함
- 항종별로는 1990년까지는 제1·3종 어항에 대한 투자나 제2종 어항에 투자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해 왔으나 1991년 이후 제2종 어항에 대한 투자의 증가가 큰 폭으로 늘어남
- 1993년 개정된 어항법에 한국어항협회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규정(어항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을 통해 따라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됨(1994.02). 이후 정부예산지원 하에 한반도 주변해역의 파고계 관리운영 업무 및 어항청소선 운영 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
- 19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하여 수산청, 해운항만청 및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청에서 분산 수행되던 해양업무를 통합. 이에 따라 어항 어항사무소 폐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에서 어항행정 및 관리의 업무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항건설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

12) 1971년 법정어항의 지정이 시작된 이후 1989년 이전까지 총 30개의 1·3종어항 (현재의 국가어항)이 완공되었고 1990년대(1990~1999)에는 32개의 국가어항이 완공됨

⑤ 성숙기(2000년대)

- 국민생활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주민복지,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어항개발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됨. 이에 따라 2001년 어항법을 개정하여 어업인 위주의 어항이용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난지정 억제를 위하여 어항의 지정·해제 시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둠
- 급증하는 어촌관광 수요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으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0월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13개소의 다기능어항 개발대상지를 선정함
- 2005년 5월 어항법을 폐지하는 대신 어촌·어항법을 신규 제정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법에 체계화하고 어항개발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동 법은 매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계획적인 어촌·어항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동법은 어항시설사용수익권을 물권으로 규정하여 어항의 민자유치를 뒷받침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어항투자금액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 어촌정주어항에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여 왔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포함된 일부 어촌정주어항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6> 2000년대 어항투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국가어항 | 1,368 | 1,425 | 1,452 | 1,792 | 1,514 | 1,545 | 1,401 | 1,471 | 1,708 |
| 지방어항 | 364 | 455 | 500 | 548 | 548 | 441 | 535 | 645 | 643 |
| 어촌정주어항 | - | - | - | - | - | 254 | 209 | 335 | 342 |
| 계 | 1,732 | 1,880 | 1,952 | 2,340 | 2,062 | 2,240 | 2,145 | 2,451 | 2,693 |

(3) 전망

- 향후 어항개발정책은 우리나라 어촌과 수산업이 처한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어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어촌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국민의 휴양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각 분야별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음

① 기본시설 확충으로 어선 안전수용을 상승

- 2007년말 현재 국가어항의 완공율은 84.6%로 높은 편이나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어항은 각각 39%, 23%에 머물고 있어 미완공 지정어항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어항개발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임. 전액 국비지원으로 건설되는 국가어항은 이미 지정된 104개항 이외에 추가적인 신규지정이 있을 계획이며, 지방어항에 대한 국비지원액 증가로 완공시점을 앞당길 것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② 어항정비사업 확대

- 국가어항의 완공율이 높아짐에 따라 완공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한 국가어항의 정비가 강화될 것임. 국가어항정비는 기본시설의 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수산물판매, 처리, 가공, 보관기능 및 관광 등 종합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임. 지방어항은 완공위주의 기본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되, 완공항에 대한 시설 안전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정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③ 어항의 환경관리 강화

- 육상기인 오·폐수의 항내 유입과 해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항내수질이 악화된 항이 있으며, 어항구역 내 토사의 매몰이 진행 중인 어항이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어항의 이용이 다변화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어항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증함. 특히 어항 내 또는 주변 수역에 중요생산 및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육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필수적임

④ 어촌과 연계한 어항의 개발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위해 어촌의 생활중심지인 어항은 어촌개발 지

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문화·복지 시설 및 유통·가공 등 소득기반 시설 등의 지원을 동시 추진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상호발전 도모하는 등 어촌과 연계한 어항의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⑤ 어항관리의 강화

- 어항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완비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현재 104개 국가어항은 완공단계에 있으나 어항의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어항정책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어항의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어촌의 정책

(1) 단계별 어촌정책의 변화

- 1단계(1950-1970년대) → 절대적 낙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시기
 - 어촌을 농촌의 일부로 인식하고 사업추진
 - 시·도, 시·군, 읍·면 행정리 단위의 하향식 추진방식
 - 하향식, 획일적 추진방식의 한계점은 있었으나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
- 2단계(1980-1990년대 초)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 + 행자부 독자적인 낙후지역 개발 시도
 - 어촌에 대한 정책 부재
 -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읍과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시도(제도와 예산집행이 정착하지 못함)
 - 80년대 중·후반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시도 하였으나 행자부(당시 내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에 이름
- 3단계(1990년대)
 - WTO체제 출범 등 시장개방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

- 농어촌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어촌은 여전히 농촌의 일부로 간주
- 농림부(당시 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면단위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등에 관심
- 다양한 부처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관련 사업들을 추진
- '94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편성과 함께 어촌종합개발사업 본격 시행으로 어촌을 공간적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4단계(2000년대 중반)

- 참여정부 정책의 새로운 기조(지역균형발전 - 지역만 들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삶의질향상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어촌개발 및 어업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시기
-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보다는 「삶의질향상기본계획」의 큰 틀속에서 종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부처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단계의 추진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

◦ 5단계(2000년대 중반 - 현재)

- WTO/DDA 및 FTA에 대비한 새로운 어촌발전(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
- 어촌·어항법 제정에 따라 어촌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중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수산업·어촌종합대책(2007 수정), 미래 국가해양전략(2007. 5) 등과 연계하여 제시
-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어촌관광활성화, 수산경영 안전장치 확충 등으로 어촌을 수산업 생산은 물론 비즈니스 및 정주의 복합공간으로 개발

(2) 어촌정책의 검토 및 종합

- 과거부터 어촌은 농촌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어촌정책의 목표나 정책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지난 어촌정책의 흐름은 농업정책과 연계해서 살펴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평가와 반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함

<표 2.17>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내용과 법적근거

| 구분 | 근거법령 | 주요내용 | 비고 |
|-----|---------------------------------------|--|--------------------------------|
| 1단계 | 새마을운동 대통령지시 (1970. 4. 20) |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정비, 소득증대, 정신계발, 복지환경사업 등 종합적인 접근 시도 | - 생활환경개선 - 소득증대 - 생산기반정비 |
| | 국토이용관리법 (1972. 12. 30) |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취락지구 정비 |
| 2단계 | 도서개발촉진법 (1986. 12. 31) | 도서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 도서개발사업 |
| | 오지개발촉진법 (1988. 12. 31)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오지개발사업 |
| 3단계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1991. 12. 14) |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 |
| | 농어촌도로정비법 (1991. 12. 14)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농어촌도로 개설·확장·포장·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농어촌도로 (면도, 농도, 리도) 정비 |
| | 지역균형발전및지방 중소기업육성법 (1994. 1. 11) | 건설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 개발촉진지구 |
| | 농어촌정비법 (1994. 12. 22) |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 |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
|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1993. 12. 29) | 낡고 험악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
| 4단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 1. 16) |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농어촌과 산촌개발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 |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특별법 (2004. 3. 5)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틀 마련 | 농산어촌복지증 진 및 지역개 발 기본계획 |
| 5단계 | 어촌·어항법 (2005. 5. 31)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 |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

※자료 : 이동필 외,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을 토대로 재작성 함

① 어촌정책의 대상 및 목표

- 어촌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촌관련 사업인 어촌종합 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사업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촌정책의 대상과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은 공간적 범주에서 불일치함
 -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시행한 결과 어촌의 특성을 도출하지 못함(읍·면 단위의 조사로는 어촌의 특성을 도출할 수 없음)
 - 어촌정책의 범위설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정책이 어촌의 기초생활환경,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소득원개발 등 종합적인 지역발전의 영역까지를 정책목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함

②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물리적 인프라 확충(정비)에 중점

- 1990년대 여러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은 예산집행에 따른 실적 파악이 용이한 물량 위주의 사업으로 변모

③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행정에 따른 지방특색 반영 미흡

-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쉽, 지방의 창의성과 특성 등이 발휘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중앙정부가 작성한 사업지침을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일률적, 획일적, 몰개성적 어촌의 모습)

④ 지역주민 운영·관리 미흡

- 지역주민(어업인)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의 수혜자일 뿐 그 기획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함(지역주민이 주체로써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의지 미흡)

⑤ 사후 모니터링(평가) 결여

- 사업완료 후 본래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평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2 어촌·어항 현황 및 문제점

1.2.1 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

1) 어항 현황

(1) 어항의 종류 및 지정현황

- 어항은 크게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뉘며, 법정항은 어촌·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에 의거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등이며, 이외의 소규모포구는 비법정항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어항이라 함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함. 어촌·어항법은 현지어선 척수, 현지어선 총톤수, 연간 외래어선 이용척수, 수산물 위판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횟수 등 5개 기준항목을 설정하여 이중 3가지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국가어항의 지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¹³⁾. 1971년 47개항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2007년 현재 104개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

<표 2.18> 국가어항 지정기준

| 구 분 |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
| 현지 어선 | 척수 | 70척 이상 | | |
| | 총톤수 | 450톤 이상 | 280톤 이상 | 360톤 이상 |
| 외래어선이용(연간) | | 100척 이상 | | |
| 위 판 고 | | 연간 2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 |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 |

※ 도서인 경우에는 기준항목의 50% 이상을 충족

-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함. 어촌·어항법은 현지어선 척수, 현지어선 총톤수,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횟수 등 3개 기준항목을 설정하여 이중 2가지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¹⁴⁾. 1972년도에 255개 어항을 최

13) 국가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14) 지방어항의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지어선의 척수 또는 총톤수 기준 중 1개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초로 지정하여 2006년까지 504개항이 지정되었으나 217개항을 해제하여 2007년 현재 289개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됨

<표 2.19> 지방어항 지정기준

| 구 분 |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
| 현지 어선 | 척수 | 30척 이상 | | |
| | 총톤수 | 90톤 이상 | 70톤 이상 | 80톤 이상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 | |

※ 도서인 경우에는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

-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말함. 어촌어항법은 “현지어선 척수가 20척 이상일 것”을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2007년 현재 579개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됨.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기준은 현지어선 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임(단, 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 비법정항은 법정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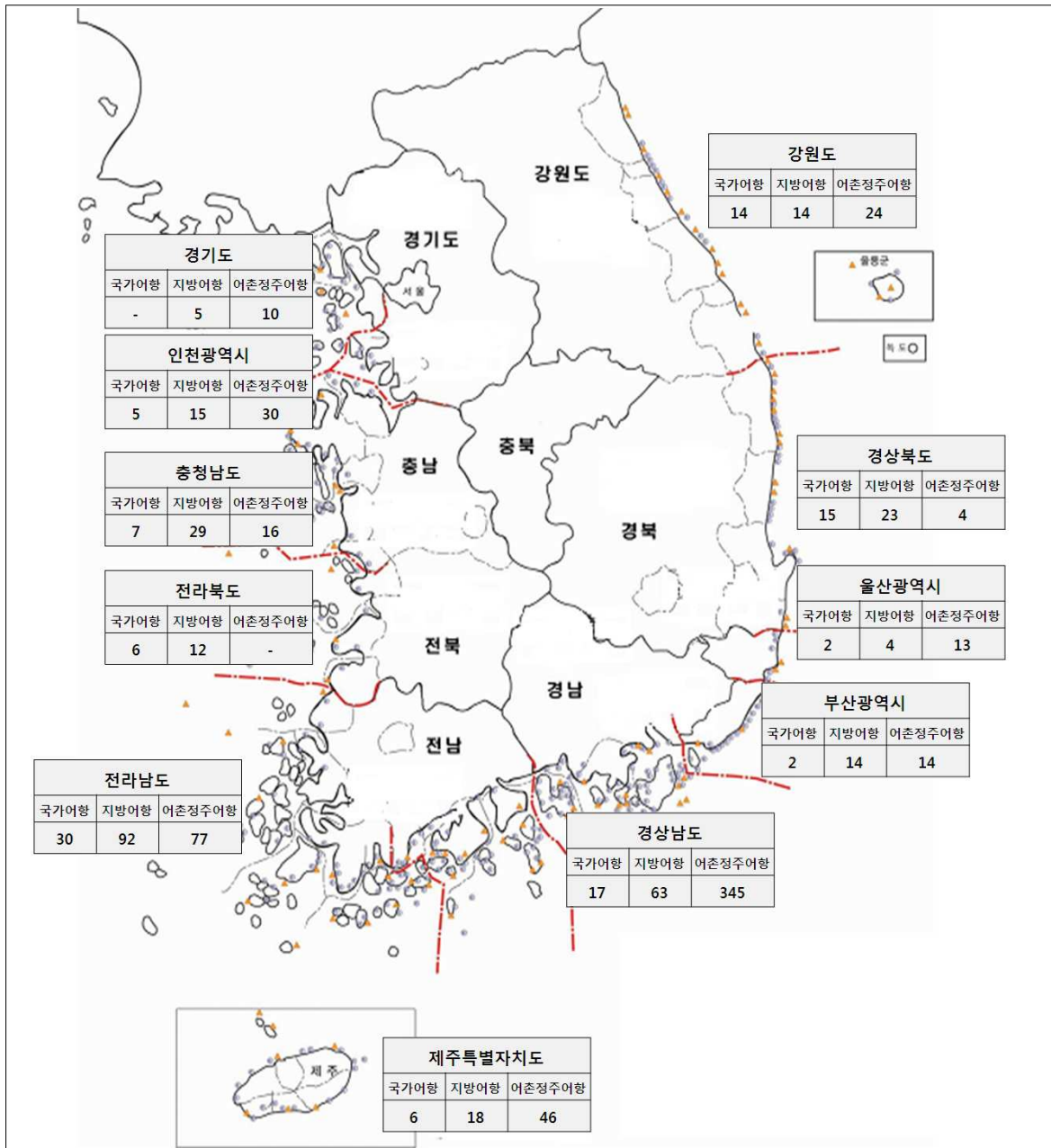
<표 2.20> 시도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현황(2007년 12월 기준)

(단위 : 개항)

| 시도 | 합계 | 법정어항 | | | | 비법정항 | | |
|----|-------|------|------|------|--------|-------|-----|-----|
| | | 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
| | | | | | | 계 | 육지 | 도서 |
| 합계 | 2,306 | 972 | 104 | 289 | 579 | 1,334 | 534 | 800 |
| 부산 | 52 | 30 | 2 | 14 | 14 | 22 | 19 | 3 |
| 인천 | 85 | 50 | 5 | 15 | 30 | 35 | 4 | 31 |
| 울산 | 28 | 19 | 2 | 4 | 13 | 9 | 9 | - |
| 경기 | 33 | 15 | - | 5 | 10 | 18 | 16 | 2 |
| 강원 | 59 | 52 | 14 | 14 | 24 | 7 | 7 | - |
| 충남 | 94 | 52 | 7 | 29 | 16 | 42 | 25 | 17 |
| 전북 | 42 | 18 | 6 | 12 | - | 24 | 5 | 19 |
| 전남 | 1,111 | 199 | 30 | 92 | 77 | 912 | 267 | 645 |
| 경북 | 133 | 42 | 15 | 23 | 4 | 91 | 83 | 8 |
| 경남 | 570 | 425 | 17 | 63 | 345 | 145 | 82 | 63 |
| 제주 | 99 | 70 | 6 | 18 | 46 | 29 | 17 | 12 |

(2) 항종별 분포 및 밀도

- 국가어항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 각각 30개항, 17개항이 입지하여 약 45%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경북 15개항, 강원 14개항, 충남 7개항, 전북과 제주 각각 6개항씩, 인천 5개항, 부산과 울산이 각각 2개항씩임



<그림 2.9>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분포도

- 지방어항 역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에 각각 92개항, 63개항이 입지하여 약 54%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충남 29개항, 경북 23개항, 제주 18개항, 인천 15개항, 부산과 강원 각각 14개항씩, 전북 12개항, 경기 5개항, 울산이 4개항임
- 어촌정주어항은 경남지역에 345개항이 입지하여 약 60%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전남 77개항, 제주 46개항, 인천 30개항, 강원 24개항, 충남 16개항, 부산 14개항, 울산 13개항, 경기 10개항, 경북 4개항이 입지함
- 비법정어항인 소규모포구의 경우 68%인 912개항이 전남지역에 입지하며, 경남, 경북지역이 각각 145개항, 91개항이고, 나머지 시·도에는 50개항 이하임
- 2007년 해양조사원의 발표¹⁵⁾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선길이는 12,320km이므로, 국가어항은 해안길이 약 118.5km, 지방어항은 약 42.9km, 어촌정주어항은 약 23.6km마다 1개항씩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해안선길이 약 13.5km 마다 법정어항이 1개항씩 있는 것임. 또한 소규모포구까지 합한다면, 약 3.3km 마다 어항이 1개항씩 분포하고 있음
- 한편, 해역별 어항분포를 보면 모든 항종에서 남해안이 가장 많고, 동해안에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음

<표 2.21> 해역별 어항 분포

| 구분 | 합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 동해안 | 235 | 32 | 48 | 41 | 114 |
| 서해안 | 649 | 27 | 85 | 67 | 470 |
| 남해안 | 1,422 | 45 | 156 | 471 | 750 |
| 계 | 2,306 | 104 | 289 | 579 | 1,334 |

- 시·군별 어항분포를 보면 어항이 위치하는 시·군은 모두 66개임. 항종별로 국가어항이 위치하는 시·군은 41개이며, 이중 완도군이 7개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수시와 거제시가 각각 6개항임. 지방어항이 위치하는 시·군은 53개이며, 이중 완도군이 20개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거제시로 18개항임. 어촌정주어항이 위치하는 시·군은 41개, 소규모 항포구가 위치하는 시·군은 56개임

15) 국립해양조사원은 2001~2006년까지 해안선측량조사를 실시하고, 측량되지 않은 곳은 전자해도를 통한 해안선 길이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2007년에 발표함

<표 2.22> 시·군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분포 현황(2007. 12. 기준)

| 시·도 | 시·군·구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 정주어항 | 소규모 항포구 | 계 |
|-----------|-------|------|------|------------|------------|----|
| 부산 광역시 | 사하구 | 1 | - | - | 4 | 5 |
| | 강서구 | - | 3 | 12 | 3 | 18 |
| | 남구 | - | - | - | 1 | 1 |
| | 사상구 | - | - | - | 1 | 1 |
| | 서구 | - | - | - | 1 | 1 |
| | 수영구 | - | 1 | - | 1 | 2 |
| | 영도구 | - | - | - | 2 | 2 |
| | 해운대구 | - | 3 | - | 2 | 5 |
| | 기장군 | 1 | 7 | 2 | 7 | 17 |
| | 소계 | 2 | 14 | 14 | 22 | 52 |
| 인천 광역시 | 중구 | - | 2 | 4 | - | 6 |
| | 서구 | - | - | 1 | - | 1 |
| | 강화군 | 1 | 6 | 7 | 19 | 33 |
| | 옹진군 | 4 | 7 | 18 | 16 | 45 |
| | 소계 | 5 | 15 | 30 | 35 | 85 |
| 울산 광역시 | 북구 | 1 | 1 | 8 | - | 10 |
| | 동구 | 1 | 1 | - | 7 | 9 |
| | 울주군 | - | 2 | 5 | 2 | 9 |
| | 소계 | 2 | 4 | 13 | 9 | 28 |
| 경기도 | 화성시 | - | 2 | 8 | 1 | 11 |
| | 안산시 | - | 2 | - | 12 | 14 |
| | 김포시 | - | 1 | 2 | - | 3 |
| | 평택시 | - | - | - | 1 | 1 |
| | 시흥시 | - | - | - | 4 | 4 |
| | 소계 | - | 5 | 10 | 18 | 33 |
| 강원도 | 속초시 | 1 | - | 2 | - | 3 |
| | 강릉시 | 3 | 2 | 3 | 3 | 11 |
| | 삼척시 | 4 | 3 | 9 | - | 16 |
| | 동해시 | - | - | 3 | - | 3 |
| | 고성군 | 4 | 7 | 2 | 1 | 14 |
| | 양양군 | 2 | 2 | 5 | 3 | 12 |
| | 소계 | 14 | 14 | 24 | 7 | 59 |

(계속)

| 시·도 | 시·군·구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 정주어항 | 소규모 항포구 | 계 |
|------|-------|------|------|------------|------------|-------|
| 충청남도 | 보령시 | 2 | 8 | 2 | 13 | 25 |
| | 서산시 | 1 | 1 | - | 5 | 7 |
| | 서천군 | 1 | 2 | - | 4 | 7 |
| | 홍성군 | 1 | 3 | - | 2 | 6 |
| | 태안군 | 2 | 12 | 14 | 14 | 42 |
| | 당진군 | - | 3 | - | 4 | 7 |
| | 소계 | 7 | 29 | 16 | 42 | 94 |
| 전라북도 | 군산시 | 3 | 5 | - | 10 | 18 |
| | 고창군 | 1 | 1 | - | 1 | 3 |
| | 부안군 | 2 | 6 | - | 13 | 21 |
| | 소계 | 6 | 12 | - | 24 | 42 |
| 전라남도 | 광양시 | - | - | - | 10 | 10 |
| | 목포시 | - | - | - | 8 | 8 |
| | 순천시 | - | 1 | 4 | 2 | 7 |
| | 여수시 | 6 | 12 | 51 | 127 | 196 |
| | 강진군 | 1 | 1 | - | 22 | 24 |
| | 고흥군 | 5 | 17 | - | 124 | 146 |
| | 무안군 | - | 2 | 10 | 17 | 29 |
| | 보성군 | - | 3 | 11 | 6 | 20 |
| | 신안군 | 4 | 13 | - | 207 | 224 |
| | 영광군 | 2 | 2 | - | 18 | 22 |
| | 완도군 | 7 | 20 | - | 204 | 231 |
| | 장흥군 | 1 | 5 | - | 27 | 33 |
| | 진도군 | 3 | 7 | - | 97 | 107 |
| | 함평군 | - | - | 1 | 4 | 5 |
| | 해남군 | 1 | 9 | - | 39 | 49 |
| | 소계 | 30 | 92 | 77 | 912 | 1,111 |
| 경상북도 | 포항시 | 2 | 8 | - | 45 | 55 |
| | 경주시 | 2 | 3 | - | 7 | 12 |
| | 영덕군 | 4 | 6 | - | 19 | 29 |
| | 울릉군 | 3 | 3 | - | 8 | 14 |
| | 울진군 | 4 | 3 | 4 | 12 | 23 |
| | 소계 | 15 | 23 | 4 | 91 | 133 |

(계속)

| 시·도 | 시·군·구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 정주어항 | 소규모 항포구 | 계 |
|------|-------|------|------|------------|------------|-------|
| 경상남도 | 거제시 | 6 | 18 | 83 | 11 | 118 |
| | 마산시 | 2 | 3 | - | 27 | 32 |
| | 진해시 | - | 1 | 6 | 8 | 15 |
| | 통영시 | 5 | 16 | 49 | 97 | 167 |
| | 사천시 | 1 | 4 | 40 | - | 45 |
| | 고성군 | 1 | 4 | 61 | 2 | 68 |
| | 남해군 | 2 | 14 | 95 | - | 111 |
| | 하동군 | - | 3 | 11 | - | 14 |
| | 소계 | 17 | 63 | 345 | 145 | 570 |
| 제주도 | 서귀포시 | 3 | 9 | 10 | 18 | 40 |
| | 제주시 | 3 | 9 | 36 | 11 | 59 |
| | 소계 | 6 | 18 | 46 | 29 | 99 |
| 총 | 계 | 104 | 289 | 579 | 1,334 | 2,306 |

2) 어항 개발 실태와 문제점

(1) 어항 개발사업의 개요

- 어항의 개발은 어항의 지정권자가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함으로써 착수됨
- 어항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일단 어항이 지정되면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2.23> 어항의 지정권자 및 예산체계

| 구 | 분 | 지정권자 | 예산지원율 |
|--------|---|-----------|-----------------|
| 국가어항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전액국비 |
| 지방어항 | | 시·도지사 | 국비 80%, 지방비 20% |
| 어촌정주어항 | | 시장·군수·구청장 | 전액지방비 |
| 소규모포구 | | 지정대상이 아님 | 전액지방비 |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2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어촌·어항법제19조제1항)
- "어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함(어촌·어항법제2조제6항)

<표 2.24> 어항개발사업의 내용

| 구 분 | 내 용 |
|----------|--|
|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

- 어항개발사업은 어항의 지정권자가 어항개발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시행하며, 어항개발계획에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동법 제20조),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동법 제19조제4항)
- 어항개발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일 공사대금이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또한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기본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함

(2) 어항 개발현황

① 항종별 개발현황

(i) 국가어항

-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1966년 수산청이 발족되고, 1969년 어항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 어항법 이전에는 항만과 어항의 건설이 분리되지 않았으나, 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어항의 개발을 당시 수산청(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게 됨. 1971년도 최초로 현재 국가어항인 제1종 어항 37개항, 제3종 어항 25개항 등이 지정됨. 이후 1·3종 어항은 지정해제를 반복하여 현재 104개의 국가어항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표 2.25> 국가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

| 시·도 별 | 계 | 완공 율 | 완공항 | | 개발중인항 | |
|----------|-----|---------|-----|--|-------|---------------------|
| | | | 항수 | 항명 | 항수 | 항명 |
| 합계 | 104 | 86.5 | 90 | | 14 | |
| 부산시 | 2 | 100.0 | 2 | 다대포, 대변 | - | - |
| 인천시 | 5 | 80.0 | 4 | 어유정, 장봉, 덕적도, 울도 | 1 | 선진포 |
| 울산시 | 2 | 100.0 | 2 | 정자, 방어진 | - | - |
| 강원도 | 14 | 92.8 | 13 | 대진, 거진, 공현진, 아야진, 대포, 남애, 사천진, 금진, 덕산, 장호, 임원, 수산, 강릉 | 1 | 궁촌 |
| 충남도 | 7 | 71.4 | 5 | 안흥, 오천, 외연도, 흥원, 모항 | 2 | 남당, 삼길포 |
| 전북도 | 6 | 83.3 | 5 | 연도, 위도, 어청도, 격포, 말도 | 1 | 구시포 |
| 전남도 | 30 | 86.6 | 26 | 국동, 돌산, 전장포, 서거차, 안도, 녹동, 발포, 시산, 어란진, 풍남, 계마, 청산도, 안마, 원평, 서망, 마량, 소안, 사동, 수품, 여서, 득암, 낭도, 초도, 여호, 소흑산도 | 5 | 우이도, 보옥, 회진, 연도, 도장 |
| 경북도 | 15 | 93.3 | 14 | 죽변, 대진, 강구, 구계, 대보, 양포, 감포, 읍천, 저동, 사동, 축산, 현포, 오산, 구산 | 1 | 남양 |
| 경남도 | 17 | 88.2 | 15 | 광암, 외포, 맥전포, 능포, 신수, 매물도, 능양, 미조, 지세포, 삼덕, 옥지, 구조라, 물건, 다대다포, 원전 | 2 | 호두, 대포 |
| 제주도 | 6 | 83.3 | 5 | 신양, 모슬포, 위미, 도두, 김녕 | 1 | 하효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2007년말 기준으로 104개 국가어항 중 90개의 어항이 완공되었으며(완공율 86.5%), 현재 개발중인 어항은 14개항임(2012년 100% 완공예정). 국가어항의 완공율은 충남과 인천은 다소 낮은 반면, 울산과 부산은 100%의 완공율을 보이거나, 이 외의 지역은 시·도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계획 중인 104개 국가어항을 완공하더라도 어선 안전수용율이 79%에 불과하여¹⁶⁾ 서·남해에 국가어항 추가지정이 필요함

(ii) 지방어항

-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어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2005년부터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전환하여 2007년말 기준으로 289개 지방어항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 2007년말 현재 134개의 지방어항이 완공되었으며(완공율 46.3%), 현재 개발 중인 어항은 155개항임. 지역별로는 부산의 완공율이 가장 높은 71.4%이며, 인천, 경기 각각 60%, 제주 53.6%인데 비해 나머지 지역은 50% 이하의 완공율을 보임. 특히 전북지역의 지방어항 완공율은 25.0%로 매우 저조하여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지방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

| 시·도 별 | 계 | 완공 율 | 완공항 | | 개발중인항 | |
|----------|-----|---------|--------|---|--------|----------------------------|
| | | | 항 수 | 항 명 | 항 수 | 항 명 |
| 합계 | 289 | 46.3 | 134 | | 155 | |
| 부산시 | 14 | 71.4 | 10 | 송정, 민락, 학리, 월내, 동백, 이호, 두호, 우동, 청사포, 칠암 | 4 | 대항, 신암, 천성, 눌차 |
| 인천시 | 15 | 60.0 | 9 | 대무의, 광명, 선두, 주문, 후포, 정포, 소연평, 답동,진두 | 6 | 창후, 장곶, 진리, 자월1리, 두무진, 옥죽포 |
| 울산시 | 4 | 75.0 | 3 | 나사, 신암, 주전 | 1 | 당사 |

16) 지정항 완공시 해역별 안전수용율은 서해 81%, 남해 79%, 동해 96%

(계속)

(단위 : 개항, %)

| 시·도 별 | 계 | 완공 율 | 완공항 | | 개발중인항 | |
|----------|----|---------|--------|---|--------|--|
| | | | 항 수 | 항명 | 항 수 | 항명 |
| 경기도 | 5 | 60.0 | 3 | 풍도, 제부, 대명 | 2 | 탄도, 전곡 |
| 강원도 | 14 | 28.6 | 4 | 호산, 물치, 봉포, 신남, | 10 | 동산, 초곡, 가진, 영진, 오호, 천진, 우암진, 문암2리, 문암1리, 교암 |
| 충남도 | 29 | 58.6 | 17 | 장고도, 어사, 궁리, 천리포, 백사장, 영목, 고대도, 무창포, 몽산포, 효자도, 만리포, 판교, 호도, 삼시도, 여은돌, 학암포, 원산도 | 12 | 녹도, 채석포, 가의도, 통개, 성구미, 간월도, 방포, 마검포, 송석, 월하, 난지도, 장고항 |
| 전북도 | 12 | 25.0 | 3 | 비안도, 동호, 곰소 | 9 | 선유도, 상왕등도, 개야도, 방축도, 무녀도, 궁항, 식도, 송포, 성천 |
| 전남도 | 92 | 34.8 | 32 | 원동, 화도, 장환, 법성, 해동, 성등포, 동봉, 명천, 어불, 우두, 울포, 내동, 죽도, 덕흥, 이진목, 화전, 방축, 굴포, 계동, 의성, 미라, 영산, 검산, 장수, 동백, 송평, 죽포, 하동, 재원, 도리포, 징의, 수문, | 60 | 서성, 사리, 용호, 호령, 금진, 월양, 관호, 상진, 설도, 사초, 장용, 우학, 송도, 덕우, 횡간, 화포, 창유, 영전, 신흥, 수대, 소우이도, 성두, 연소, 초평, 염포, 모서, 서도, 진산, 용동, 가교, 동고, 망석, 함구미, 우수영, 용암, 대통, 대영, 벌포, 금능, 봉남, 소율, 심리, 사구미, 장두, 세포, 다수, 덕촌, 손죽, 남성, 울포, 하태, 이목, 오천, 송호, 금사, 학가, 톱머리, 충도, 만재, 추포 |
| 경북도 | 23 | 34.8 | 8 | 통구미, 천부, 직산, 경정, 발산, 모포, 전촌, 백석, 가곡 | 15 | 노물, 지경, 태하, 기성, 삼정, 병곡, 이가리, 방석, 부경, 창포, 골장, 나정, 대보, 죽천 |
| 경남도 | 63 | 44.4 | 28 | 내항, 둔지, 성포, 견유, 죽림, 선소, 장작지, 남포, 시방, 이수도, 장포, 진동, 적량, 이운, 하포, 학림, 포교, 당동, 은점, 냉천, 서상, 노량, 당저, 하청, 송포, 옥계, 유교, 녹도 | 35 | 대포, 중항, 쌍근, 연화, 유호, 연명, 울포, 동갈화, 곤리, 중평, 평림, 도장포, 예포, 동호, 당항, 한내, 항촌, 거제, 연대, 곡용포, 관포, 시락, 항도, 물안, 농소, 원천, 수월, 지족, 장목, 진촌, 유포, 수치, 광천, 낙지포, 술상 |
| 제주도 | 18 | 53.6 | 10 | 조천, 대포, 우도, 신양, 가파, 세화, 종달, 표선, 사계, 신창 | 8 | 강정, 화북, 하귀1리, 귀덕1리, 고산, 신천, 태흥2리, 법환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iii) 어촌정주어항

- 2007년말 기준으로 전라북도를 제외한 10개 시·도 579개 어촌정주어항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133개의 어항이 완공되어 22.9%의 완공율을 보임. 미완공된 어항 중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97개항,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항은 349개항임

<표 2.27>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현황

(단위 : 개항)

| 시·도별 | 계 | 완공항 | 완공율 | 개발중인항 | |
|------|-----|-----|-------|-------------|--------------|
| | | | | 개발계획 수립항 | 개발계획 미수립항 |
| 합계 | 579 | 133 | 22.9% | 97 | 349 |
| 부산 | 14 | 1 | 7.1% | 0 | 13 |
| 인천 | 30 | 10 | 33.3% | 1 | 19 |
| 울산 | 13 | 3 | 23.0% | 2 | 8 |
| 경기 | 10 | 4 | 40.0% | 4 | 2 |
| 강원 | 24 | 6 | 25.0% | 8 | 10 |
| 충청 | 16 | 0 | 0.0% | 16 | 0 |
| 전북 | 0 | 0 | - | 0 | 0 |
| 전남 | 77 | 1 | 1.3% | 11 | 65 |
| 경북 | 4 | 0 | 0.0% | 4 | 0 |
| 경남 | 345 | 108 | 31.3% | 5 | 232 |
| 제주 | 46 | 0 | 0.0% | 46 | 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iv) 소규모포구

- 비법정항인 소규모포구는 현재 1,334개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개발 중임. 이중 68.3%인 912개항이 전남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남, 경북지역이 각각 145개항, 91개항이고, 나머지 시·도에는 50개항 이하임. 이중 447개항이 완공되어 33.5%의 완공율을 보임.

<표 2.28> 소규모포구 시도별 항수 및 개발현황

(단위 : 개항)

| 시·도 | 계획항수 | 완공항수 | 완공율 |
|-----|-------|------|--------|
| 합계 | 1,334 | 447 | 33.5% |
| 부산시 | 22 | 19 | 86.4% |
| 인천시 | 35 | 28 | 80.0% |
| 울산시 | 9 | 9 | 100.0% |
| 경기 | 18 | 15 | 83.3% |
| 강원 | 7 | 1 | 16.7% |
| 충남 | 42 | 9 | 14.2% |
| 전북 | 24 | 1 | 4.2% |
| 전남 | 912 | 259 | 28.4% |
| 경북 | 91 | 26 | 28.6% |
| 경남 | 145 | 79 | 54.4% |
| 제주 | 29 | 1 | 3.4%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29> 어항개발율(2007년 12월 기준)

(단위 : 개항)

| 항 종 | | 지정항 | 완공항 | 완공율(%) |
|----------|--------|-------|-----|--------|
| 법정 어항 | 계 | 972 | 357 | 36.7% |
| | 국가어항 | 104 | 90 | 86.5% |
| | 지방어항 | 289 | 134 | 46.3% |
| | 어촌정주어항 | 579 | 133 | 22.9% |
| 소규모포구 | | 1,334 | 447 | 33.5% |

② 어항시설의 개발현황

-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그리고 어항구역 밖에 있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함(어촌·어항법제2조제5항)

<표 2.30> 어항 시설

| 시 설 | 내 용 |
|----------------------------|---|
| 1. 기본시설 | (1)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홍벽 등 외곽시설 (2)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3) 항로·정박지·선회장 등 수역시설 |
| 2. 기능시설 | (1)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heliport) 등 수송시설 (2) 항로표지,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4)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引水) 또는 배수(排水)하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7)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도수(導水)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중요생산시설, 중요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
| 3. 어항편익시설 |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
| 4. 1~3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 |

<표 2.31> 항종별 기본시설 현황 (2007년 말 기준)

(단위 : 미터)

| 구 분 | 시설계획(전체계획) | | | | 2007년까지 시설현황 | | | |
|------------|------------|--------|---------|--------|--------------------|-------------------|--------------------|-------------------|
| | 계류시설 | | 외곽시설 | | 계류시설 | | 외곽시설 | |
| | 계 | 물양장 | 계 | 방파제 | 계 | 물양장 | 계 | 방파제 |
| 국가어항 | 58,223 | 49,932 | 79,357 | 56,719 | 56,000 (96.2%) | 48,213 (96.6%) | 76,869 (96.9%) | 55,281 (97.5%) |
| 지방어항 | 74,051 | 50,275 | 109,039 | 80,964 | 48,773 (65.9%) | 30,678 (61.0%) | 73,927 (67.8%) | 56,733 (70.1%) |
| 어촌 정주어항 | 112,357 | 43,209 | 103,075 | 46,208 | 86,346 (76.8%) | 28,815 (66.7%) | 69,926 (67.8%) | 30,906 (66.9%) |
| 소규모 항포구 | 185,328 | 70,322 | 206,181 | 73,753 | 131,599 (71.0%) | 40,962 (58.2%) | 132,088 (64.1%) | 44,714 (60.6%) |

※ 시·도 보고서 참조

- 2007년 4월 현재 국가어항 지역내에 건설된 어항기능시설은 총 519개이며, 이들 시설은 485,354㎡의 면적을 차지함

<표 2.32> 국가어항 기능시설 현황 (2007년 4월 기준)

| 구 분 | 내 용 | 개항 | 면적(㎡) |
|--------------------|---------------------|---------|---------|
| 기 능 시 설 | 도로 | 17 | 110,236 |
| | 주차장 | 28 | 54,099 |
| | 가로등(조명시설) | 119 | 250 |
| | 어선건조·어구수리시설 | 33 | 36,651 |
| | 공동작업장·탈의장 | 17 | 6,865 |
| | 어구·어업용 창고 | 22 | 28,706 |
| | 급수시설 | 8 | 1,164 |
| | 급빙시설 | 4 | 2,495 |
| | 급유시설 | 37 | 22,464 |
| | 폐유보관시설 | 7 | 373 |
| | 수산물시장 | 1 | 3,100 |
| | 수산물(활·선어)위판장 | 63 | 72,127 |
| | 수산물판매·직판장(횃집제외) | 24 | 35,962 |
| | 수산물집하장 | 8 | 5,097 |
| | 활어보관시설 | 7 | 8,159 |
| | 하역기계시설 | 14 | 674 |
| | 제빙·냉동·냉장시설 | 26 | 49,621 |
| | 수산물 종합처리시설(가공·유통포함) | 29 | 32,805 |
| | 어업용 통신시설·전력시설 | 4 | 2,329 |
| | 어항관리, 중도매인 등 사무실 | 34 | 7,690 |
| 환경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 등) | 17 | 4,487 | |
| 기능시설 합계 | 519 | 485,354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에 비하여 어항편익시설의 조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조사에 의하면 국가어항의 경우, 지서·신고소·파출소 등 치안관련 관공서와 어촌계회관 등 비상업시설의 조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 등 복지시설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의 조성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관광객을 위한 어항편익시설은 현재 여객선(유람선)대합실과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있으며, 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의 조성은 미미함

<표 2.33> 시·도별 국가어항의 어항편익시설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 어항편익시설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보건진료소 | 3 | 0 | 0 | 0 | 0 | 0 | 0 | 1 | 0 | 2 | 0 |
| 지서, 신고소, 파출소 등 | 73 | 2 | 0 | 1 | 13 | 9 | 4 | 20 | 11 | 7 | 6 |
| 관광, 복지, 어민, 어촌계회관(비상업시설) | 27 | 0 | 0 | 2 | 3 | 0 | 1 | 10 | 4 | 4 | 3 |
| 전시장 등 문화시설 | 4 | 0 | 0 | 0 | 1 | 0 | 1 | 0 | 0 | 2 | 0 |
| 광장, 조경시설 등 환경정비시설 | 9 | 0 | 0 | 5 | 1 | 1 | 0 | 0 | 0 | 1 | 1 |
| 여객선(유람선)대합실 | 26 | 1 | 0 | 1 | 3 | 6 | 3 | 9 | 0 | 1 | 2 |
| 회센터, 횃집 | 8 | 0 | 1 | 0 | 5 | 0 | 0 | 0 | 2 | 0 | 0 |
| 관광, 복지, 어민, 어촌계회관(상업시설) | 17 | 0 | 0 | 1 | 5 | 0 | 1 | 6 | 2 | 0 | 2 |
| 숙박, 휴양, 오락시설 등 | 10 | 0 | 0 | 0 | 2 | 1 | 0 | 2 | 0 | 0 | 5 |
| 공공화장실 | 28 | 0 | 0 | 0 | 12 | 4 | 1 | 3 | 4 | 2 | 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③ 배후부지 개발현황

- 국가어항의 경우 배후부지는 2007년 4월 현재 계획면적 5,922,849㎡ 중 3,677,693㎡가 조성되어 계획대비 62.1%의 조성율을 나타냄. 현재까지 조성된 배후부지 면적에서 기본시설에 할당된 부지는 1,062,371㎡이고, 기능시설에 할당된 부지는 1,746,406㎡이며, 어항편익시설에 할당된 부지는 868,951㎡임

- 항별 계획면적 대비 조성면적을 보면 100% 조성한 항은 16개항, 80%이상 100%미만 조성한 항은 52개항, 60%이상 80%미만 조성한 항은 10개항, 40%이상 60%미만 조성한 항은 5개항, 40%이하 조성된 항은 21개항임

<표 2.34>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 구 분 | | 내 용 | 면적(㎡) |
|------------------|-----------|----------------------------|-----------|
| 등 기 면 적 | 기본시설 | 물량장, 선양장 등 | 1,062,371 |
| | 기능시설 | 도로 | 471,939 |
| | | 주차장 | 182,293 |
| | | 위판장 | 120,681 |
| | | 급유·급수·어업용 창고 | 147,091 |
| | | 제빙·냉동·처리가공 | 135,009 |
| | | 수산물판매장 | 135,274 |
| | | 어선건조·수리장 | 46,486 |
| | | 어구보수·건조·야적장 | 418,717 |
| | | 어항정화시설 ¹⁾ | 15,567 |
| | | 해양수산물관련 공공시설 ²⁾ | 73,349 |
| | | 계 | 1,746,406 |
| | 어항편익시설 | 문화복지시설 | 116,970 |
| | | 어촌관광레저시설 | 127,408 |
| | | 광장녹지시설 | 299,666 |
| | | 여객편의시설 | 18,843 |
| | | 기타 / 유보지 | 306,028 |
| | | 계 | 868,951 |
| | 조성면적 (합계) | | |
| 계획면적 | | | 5,922,849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1) 오·폐수처리시설, 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2) 어항관리시설, 해양관측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표 2.35>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율

| 배후부지 조성율 | 항 수 |
|----------------|-----|
| 100% | 16 |
| 80%이상 ~ 100%미만 | 52 |
| 60%이상 ~ 80%미만 | 10 |
| 40%이상 ~ 60%미만 | 5 |
| 20%이상 ~ 40%미만 | 3 |
| 20%미만 | 18 |

④ 다기능 어항 개발현황

- 기존의 어항은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의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국내외를 둘러싼 수산업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관광, 교통, 수산물 유통·가공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의 필요하게 됨
- 다기능 어항이라는 명칭은 아직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산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수산 인프라시설이 구축되거나, 마리나 등 선진국형 해양레저시설을 갖추며,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 즉, 다기능 어항은 광의적 개념으로 어업활동과 함께 교통, 유통, 가공, 관광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을 말함
- 현재 다기능어항의 개발은 어촌지역의 소득 다양화 및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된 어촌관광 진흥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2004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가지 형태의 개발모델을 제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조사를 거쳐, 13개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¹⁷⁾ 공사는 2007년에 착수하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임
- 다기능어항의 시설투자계획에는 기존의 국가어항 개발계획과 달리 정부투자부문 외에 민간투자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부문도 기본시설외에 친수공간 및 조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민간투자부문은 수익사업을 위한 기능시설과 어항편익시설로서 수산물저장·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을 포함함

⑤ 항종별 투자현황

(i) 국가어항

- 국가어항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3조 3,730억원에 달하는데, 2006년 말 현재 2조 1,448억원이 투자되어 63.6%의 투자율을 보임. 2007년에는 1,398억원이, 2008년 이후에는 1조 883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임
- 시·도별 국가어항 투자율은 부산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4.2%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충남과 전북, 경남은 60%이하의 투자율

17) 대표항의 경우 어촌관광종합대책의 수립 이전에 속초시와 민간투자자간의 MOU체결이 이루어져 2003년 개발착수함

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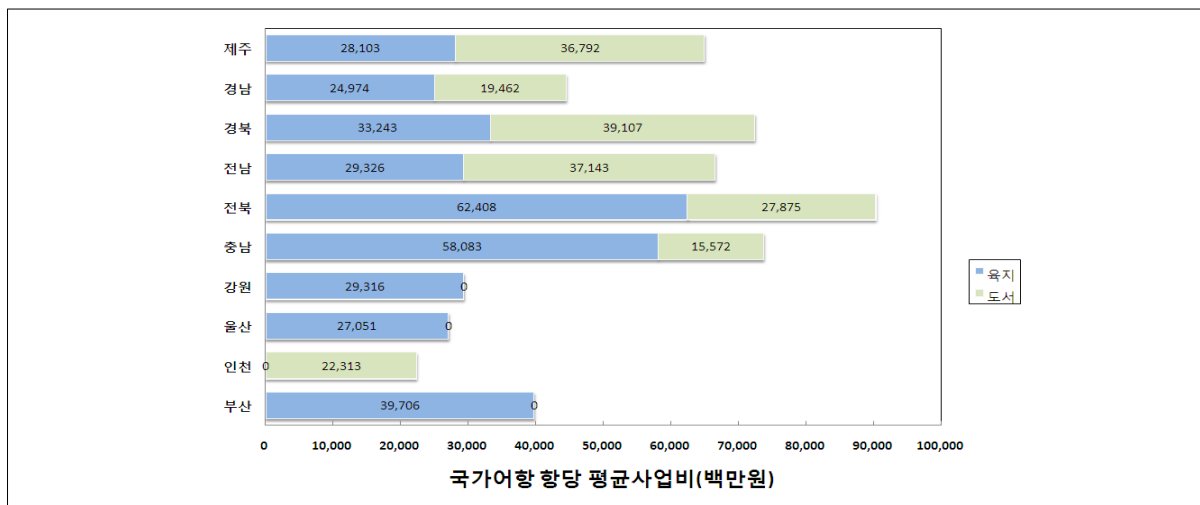
- 국가어항의 항당 평균 사업비는 321억원임. 지역별로는 충남이 434억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반면, 가장 낮은 울산의 경우 179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6> 국가어항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 총사업비 (A) | '06까지 투자 (B) | 잔여 사업비 (A-B) | 총사업비 대비 투자율 (B/A) | '07계획 |
|-----|-----------|--------------|--------------|-------------------|---------|
| 계 | 3,373,016 | 2,144,804 | 1,228,212 | 63.6% | 132,655 |
| 부산 | 79,411 | 67,875 | 11,536 | 83.5% | - |
| 인천 | 111,636 | 49,917 | 61,719 | 44.7% | 9,500 |
| 울산 | 35,875 | 24,931 | 10,944 | 69.5% | 3,510 |
| 강원 | 361,094 | 229,634 | 131,460 | 63.6% | 25,238 |
| 충남 | 303,852 | 159,818 | 144,034 | 52.6% | 15,073 |
| 전북 | 238,518 | 135,446 | 103,135 | 56.8% | 18,700 |
| 전남 | 1,050,528 | 705,747 | 344,781 | 67.2% | 27,022 |
| 경북 | 516,236 | 348,720 | 167,516 | 67.6% | 12,519 |
| 경남 | 498,495 | 291,165 | 207,330 | 58.4% | 13,093 |
| 제주 | 177,308 | 131,551 | 45,757 | 74.2% | 5,0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2.10> 시·도별 국가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ii) 지방어항

- 지방어항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1조 9,545억원에 달하는데, 2006년 말 현재 8,957억 원이 투자되어 43.8%의 투자율을 보임. 2007년에는 514억 원이, 2008년 이후에는 1조 47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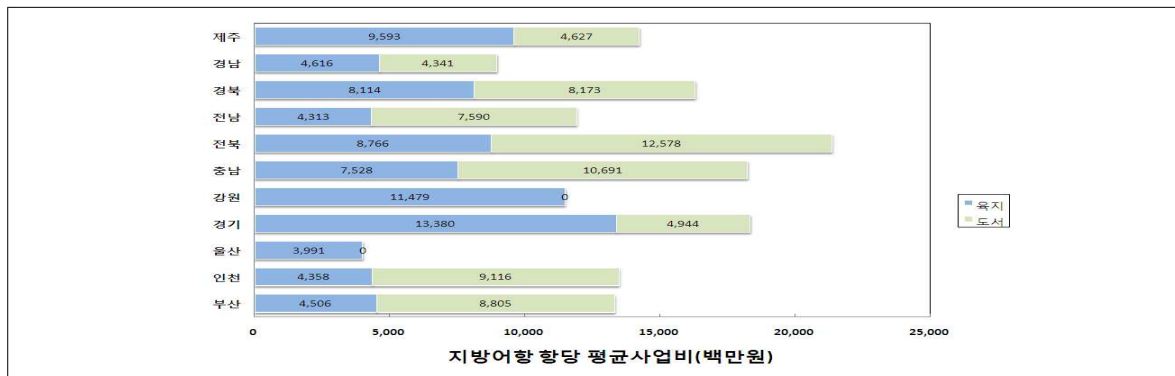
<표 2.37> 지방어항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 총사업비 (A) | '06까지 투자 (B) | 잔여 사업비 (A-B) | 총사업비 대비 투자율 (B/A) | '07계획 |
|-----|-----------|--------------|--------------|-------------------|--------|
| 계 | 1,954,570 | 895,710 | 1,058,860 | 43.8% | 51,460 |
| 부산 | 75,982 | 51,437 | 24,545 | 67.7% | 900 |
| 인천 | 108,191 | 46,982 | 61,209 | 43.4% | 750 |
| 울산 | 15,964 | 11,508 | 4,456 | 72.1% | 1,700 |
| 경기 | 63,031 | 43,549 | 19,482 | 69.1% | 9,909 |
| 강원 | 160,704 | 76,334 | 84,370 | 47.5% | 5,000 |
| 충남 | 246,783 | 104,013 | 142,770 | 42.1% | 9,200 |
| 전북 | 114,340 | 37,675 | 76,665 | 32.9% | 4,551 |
| 전남 | 547,573 | 178,105 | 369,468 | 32.5% | - |
| 경북 | 175,600 | 106,872 | 68,728 | 60.9% | 3,250 |
| 경남 | 283,657 | 160,913 | 122,744 | 56.7% | 10,200 |
| 제주 | 162,745 | 78,322 | 84,423 | 48.1% | 6,0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시·도별 지방어항 투자율은 울산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가 69.1%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전남과 전북은 40%이하의 투자율을 나타냄
- 지방어항의 해당 평균 사업비는 68억원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6억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반면, 가장 낮은 울산의 경우 40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모두 해당 평균 사업비가 가장 낮게 책정됨



<그림 2.11> 시·도별 지방어항 해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iii) 어촌정주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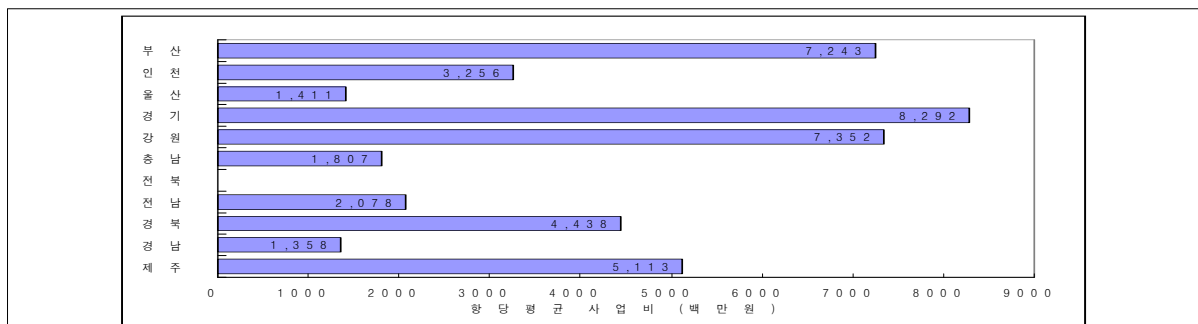
-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1조 2,380억원에 달하는데, 2006년말 현재 6,605억 원 투자되어 53.4%의 투자율을 보임. 2007년에는 335억원이, 2008년 이후에는 5,440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임
-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투자율은 울산이 82.1%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71.4%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부산, 충남, 제주는 30%이하의 투자율을 나타냄. 다음 [그림]은 시·도별 지방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를 비교함
- 어촌정주어항의 항당 평균 사업비는 23억 7천만 원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반면, 가장 낮은 경남의 경우 1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에 이어 어촌정주어항의 항당 평균 사업비도 매우 낮은 수준임

<표 2.38> 어촌정주어항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 총사업비 (A) | '06까지 투자 (B) | 잔여 사업비 (A-B) | 총사업비 대비 투자율 (B/A) | '07계획 |
|-----|-----------|--------------|--------------|-------------------|--------|
| 계 | 1,238,070 | 660,513 | 577,557 | 53.4% | 33,543 |
| 부산 | 101,405 | 24,301 | 77,104 | 24.0% | 666 |
| 인천 | 91,179 | 60,161 | 31,018 | 66.0% | 1,500 |
| 울산 | 18,337 | 15,056 | 3,281 | 82.1% | 500 |
| 경기 | 82,922 | 44,681 | 38,241 | 53.9% | 1,700 |
| 강원 | 139,681 | 85,142 | 54,539 | 61.0% | 13,667 |
| 충남 | 28,912 | 3,000 | 25,912 | 10.4% | 2,900 |
| 전북 | - | - | - | - | - |
| 전남 | 54,034 | 19,783 | 34,251 | 36.6% | - |
| 경북 | 17,752 | 11,535 | 6,217 | 63.0% | 1,400 |
| 경남 | 468,635 | 334,509 | 134,126 | 71.4% | 8,303 |
| 제주 | 235,213 | 62,345 | 172,868 | 26.5% | 2,907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2.12>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항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iv) 소규모포구

- 비법정항인 소규모포구에 대한 총투자예정 금액은 1조 4,215억원에 달하는데, 2006년말 현재 7,528억원이 투자되어 53.0%의 투자율을 보임. 2007년에는 604억원이, 2008년 이후에는 6,082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임
- 시·도별 소규모포구 투자율은 부산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68.5%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경기도는 30%이하의 투자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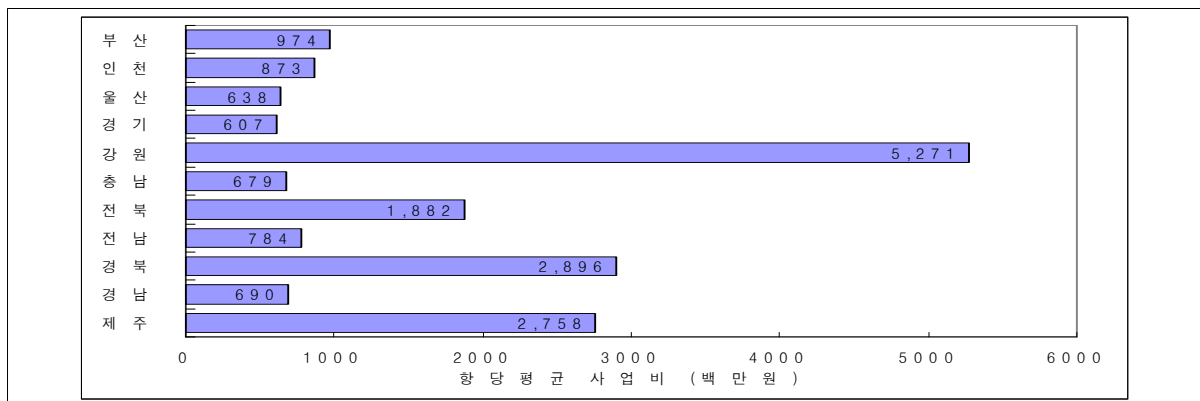
<표 2.39> 소규모포구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 총사업비 (A) | '06까지 투자 (B) | 잔여 사업비 (A-B) | 총사업비 대비 투자율 (B/A) | '07계획 |
|-----|-----------|--------------|--------------|-------------------|--------|
| 계 | 1,421,537 | 752,806 | 668,731 | 53.0% | 60,449 |
| 부산 | 21,426 | 16,725 | 4,701 | 78.1% | - |
| 인천 | 29,698 | 16,901 | 12,797 | 56.9% | - |
| 울산 | 3,192 | 2,051 | 1,141 | 64.3% | - |
| 경기 | 10,927 | 3,227 | 7,700 | 29.5% | 7,250 |
| 강원 | 63,256 | 30,319 | 32,937 | 47.9% | 669 |
| 충남 | 28,503 | 14,833 | 13,670 | 52.0% | 810 |
| 전북 | 48,926 | 33,525 | 15,401 | 68.5% | 2,920 |
| 전남 | 754,637 | 401,631 | 353,006 | 53.2% | 30,158 |
| 경북 | 280,924 | 128,305 | 152,619 | 43.7% | 11,372 |
| 경남 | 100,065 | 73,320 | 26,745 | 73.3% | 2,610 |
| 제주 | 79,983 | 31,969 | 48,014 | 40.0% | 4,66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소규모포구의 해당 평균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임. 지역별로는 강원도 52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반면, 가장 낮은 경기도의 경우 6억원으로 책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경남과 울산지역의 소규모포구 해당평균 사업비도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2.13> 시·도별 소규모포구 해당 평균 사업비('06 기준)

(3) 어항개발사업의 문제점

① 예산부족

- 어항투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국가어항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어항의 경우 기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며, 지방어항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기본시설 완공율이 39%에 머물고 있어 현재와 같은 투자(년 428억원) 지원시 전체 지방어항 완공에 21년 소요(2026년 완공)될 것으로 판단됨

② 사전·사후평가 미흡

- 기획예산처는 19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오고 있으나,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전례는 없음. 104개 국가어항 중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어항은 18개 항임¹⁸⁾
- 어항이 완공된 후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어항이 계획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용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항만의 경우 「농림수산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은 항만건설과장이 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중간 및 사후평가에 관한 책임이 국토해양부 항만건설과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어항개발의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음

③ 어항개발의 장기화

- 지금까지 분산투자방식을 취하여 옴에 따라 개발착수시점으로부터 완료시점까지 최장 35년이 소요되는 등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국가어항의 경우 2006년말 현재까지 완공된 82개항 중 완공 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5개항(거진, 임원, 죽변, 강구, 감포)을 제외한 77개항의 평균 공사기간은 12.9년임. 이처럼 어항개발이 장기화됨에 따른 편익의 감소, 공사비 증가, 태풍 등 피해로 인한 중복공사비의 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18) 대변, 안목, 어청도, 소흑산도, 여서, 현포, 안흥, 흥원, 격포, 구시포, 보옥, 풍남, 국동, 초도, 죽변, 감포, 지세포, 미조 등 18개 항

- 완공항과 공사중인 항의 피해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완공항의 태풍피해 발생 시 평균 방파제 피해액은 310백만원인데 비해 공사중인 항의 태풍피해 발생 시 평균 방파제 피해액은 2,849백만원으로 나타나 개발공사중인 어항의 태풍피해액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됨. 특히, 공사중인 어항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예외적으로 큰 피해건수가 2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제외하더라도 공사중인 어항의 태풍피해 발생 시 평균 방파제 피해액은 792백만원인데 이는 완공항 피해액의 2배를 넘는 수치임
- 그 동안 분산투자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제약과 지역간 균형개발 등이 그 원인이었으나, 「200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국가어항건설사업>」에서 어항의 집중투자시 B/C비율이 0.882로 분산투자시 B/C비율 0.695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어항개발방식을 집중투자방법을 채택하도록 결정함
- 지방어항의 경우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중투자방법을 적용하여 어항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투자방법을 변경함

<표 2.40> 국가어항 방파제 피해발생현황(1990~2005)

| 항 명 | 피해일시 | 피해원인 | 복구비(백만원) | 피해당시 완공여부 |
|------|---------|----------|----------|-----------|
| 감포 | 1991.7 | 태풍(캐를린) | 530 | 공사중 |
| 말도 | 1993.6 | 폭풍 | 196 | 공사중 |
| 물건 | 1993.7 | 태풍(페이) | 394 | 공사중 |
| 외포 | 1993.7 | 태풍(페이) | 82 | 완공 |
| 모항 | 1997.1 | 폭풍 | 516 | 공사중 |
| 대변 | 1997.8 | 태풍(티나) | 660 | 공사중 |
| 양포 | 1998.1 | 폭풍 | 782 | 완공 |
| 연도 | 1999.8 | 태풍(올가) | 300 | 완공 |
| 소흑산도 | 2000.8 | 태풍(프라피룬) | 17,200 | 공사중 |
| 연도 | 2000.8 | 태풍(프라피룬) | 77 | 완공 |
| 하효 | 2000.8 | 태풍(프라피룬) | 27 | 공사중 |
| 소흑산도 | 2002.7 | 태풍(라마순) | 504 | 공사중 |
| 시산 | 2002.8 | 태풍(루사) | 70 | 완공 |
| 대변 | 2002.8 | 태풍(루사) | 1,146 | 공사중 |
| 임원 | 2002.8 | 태풍(루사) | 500 | 완공 |
| 위도 | 2002.8 | 태풍(루사) | 67 | 완공 |
| 여서 | 2002.8 | 태풍(루사) | 3,850 | 공사중 |
| 감포 | 2002.8 | 태풍(루사) | 144 | 완공 |
| 도두 | 2002.8 | 태풍(루사) | 56 | 완공 |
| 대변 | 2003.9 | 태풍(매미) | 15,242 | 공사중 |
| 구조라 | 2003.9 | 태풍(매미) | 600 | 공사중 |
| 매물도 | 2003.9 | 태풍(매미) | 130 | 공사중 |
| 다대포 | 2003.9 | 태풍(매미) | 300 | 완공 |
| 지세포 | 2003.9 | 태풍(매미) | 40 | 공사중 |
| 물건 | 2003.9 | 태풍(매미) | 700 | 완공 |
| 여서 | 2003.9 | 태풍(매미) | 377 | 완공 |
| 감포 | 2003.9 | 태풍(매미) | 593 | 완공 |
| 모슬포 | 2003.9 | 태풍(매미) | 139 | 완공 |
| 남양 | 2004.7 | 태풍(민들레) | 1,700 | 공사중 |
| 감포 | 2004.8 | 태풍(메기) | 500 | 완공 |
| 임원 | 2003.9 | 태풍(나비) | 637 | 완공 |
| 강구 | 2003.9 | 태풍(나비) | 100 | 완공 |
| 강구 | 2003.12 | 너울피해 | 435 | 완공 |

3) 어항 이용·관리 실태와 문제점

(1) 어항 이용 실태

① 국가어항

- 국가어항의 경우 국가(구 해양수산부)가 직접 개발하여 왔으므로 대부분 시설이 양호한 편임. 주요 수산업 거점에 설치된 육지어항의 경우 대부분 어선 세력이 커서 시설 이용률이 크며, 전반적으로 항세가 큰 편임
- 도서에 위치한 국가어항의 경우 기존의 어항계획시 대피기능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나 기상예보의 발달과 선박의 동력발달 등으로 대부분 육지항으로 대피를 함으로써 외래어선 이용세력이 감소하는 실정(경북 저동항 소관 어촌계에 의하면 태풍풍시 포항 내륙항으로 대피)으로 대피어항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어선의 동력 증가로 기동력의 향상과 일기 불순시(태·폭풍) 예보 시스템의 발달로 연근해 조업 어선들이 도서항보다는 배후시설 및 위락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육지항으로 피항하는 실정임. ⇒ 척당 마력수는 '90년에 비해 약 53% 증가됨
- 국가어항의 현지어선 이용척수는 항당 평균 154척이며, 현지어선과 외래어선(연간 외래어선)을 단순히 합한 항당 평균 이용어선척수는 305척임
- 여객선 및 유·도선의 운항횟수가 없는 항이 72개 항이고, 3회 이하인 항이 21개 항, 4~6회 5개 항이며, 10회 이상인 항도 7개 항임. 10회 이상인 항 중 5개 항은 전남에 위치(마량, 도장, 소안, 보옥, 녹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항은 경남에 위치하고 있음(삼덕, 옥지)

<표 2.41> 국가어항 이용에 따른 순위(2006년 말 기준)

| 어항순위 | 현지어선 | | 연간 외래어선(척) | 위판고 (천톤) | 여객선 및 유도선 일일운항횟수 |
|------|---------------|-----------------|---------------|-------------|---------------------------------|
| | 척수(척) | 총톤수(톤) | | | |
| 1 | 국동 (1,292) | 다대포 (15,768) | 죽변 (2,151) | 녹동 (359) | 마량(10회 이상) |
| 2 | 청산도 (883) | 모슬포 (9,375) | 강포 (1,799) | 낭도 (230) | 도장, 소안, 보옥, 녹동, 삼덕, 옥지 각 10회 |
| 3 | 다대포 (864) | 국동 (6,202) | 축산 (889) | 내발 (200) | |
| 4 | 녹동 (754) | 옥지 (3,870) | 방어진 (796) | 초도 (165) | |
| 5 | 옥지 (600) | 위미 (2,960) | 강구 (778) | 연도 (141)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 어선어업에 의한 어획물 위판고는 104개 국가어항 평균 15,442톤임. 위판고 0인 항이 17개 항이며, 위판고 100톤 이하인 항도 19개 항에 달하는 반면, 위판고가 가장 큰 녹동항은 359,000톤에 달해 항별 편차가 매우 큼. 지역별로는 전남이 항당 평균 43,685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산으로 항당 평균 21,666톤임. 어선어업에 의한 어획물 위판고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항당 평균 470톤임

② 지방어항

- 지방어항은 원래 해당지방의 현지어선을 수용하는 작은 세력권의 어항개발로 휴게 및 출어를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왔으나, 일부 어항에서는 위판기능도 담당하는 등 자생적으로 세력이 커진 항도 있음
- 지방어항의 경우 현재 많은 어항이 개발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투자가 적고, 이로 인한 투자기간이 길어서 태풍에 의한 손실 등의 비용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어항의 현지어선 이용척수는 항당 평균 51척이며, 현지어선과 외래어선(연간 외래어선)을 단순히 합한 항당 평균 이용어선척수는 60척임

③ 어촌정주어항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세력권이 작아서 위판과 대피시 인근의 국가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남·서해안 소규모어항의 경우 대부분 방파제 겸 선착장을 휴게 및 출어부두로 이용하고 있는 등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투자가 열악하므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해 인근 항을 이용함으로써 비용과 인력의 손실이 많은 편임
- 어촌정주어항의 현지어선 이용척수는 항당 평균 31척이며, 현지어선과 외래어선(연간 외래어선)을 단순히 합한 항당 평균 이용어선척수는 25척임

(2) 어항 관리 실태

- 2001년 1월 개정된 어항법은 어항관리청을 국가어항은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어항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제4조), 관리청이 어항의 명칭, 종류, 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토

록 하여(제6조제1항) 어항의 지정권자와 어항관리청이 동일하였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의 관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여 실질적인 어항의 관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음. 2005년 5월 31일 신규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어촌·어항법¹⁹⁾에서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의 관리를 관할 광역시장, 시장·군수에 이양하여 어항의 지정권자와 어항관리청이 구분됨

<표 2.42> 어항의 지정권자와 어항관리청

| 구 분 | 지정권자 | 어항관리청 |
|--------|-----------|-------------|
| 국가어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광역시장, 시장·군수 |
| 지방어항 | 시·도지사 | 광역시장, 시장·군수 |
|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현재 어항관리청은 어촌·어항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 어항관리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어항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어촌·어항법은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함(동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39조)을 규정하고 있음.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임(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또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음(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 규정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점·사용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어항시설의 이용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액은 매우 낮은 수준임

19) 2005년 11월 1일 발효

(3) 어항 이용상 문제점

① 어선 계류·대피시설의 부족

- 2006년말 현재 국가 전체의 어선안전수용율은 66.6%²⁰⁾ 수준으로 기상악화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빈번함. 현재 개발중인 104개 국가어항이 모두 완공되어도 어선안전수용율은 7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폭풍시 어선의 피항공간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3> 태·폭풍으로 인한 어선피해현황(2000 ~ 2005)

(단위 : 척, 백만원)

| 시·도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2005 | |
|-----|-------|-------|------|-----|------|--------|-------|--------|------|-----|------|-----|
| | 척수 | 피해액 | 척수 | 피해액 | 척수 | 피해액 | 척수 | 피해액 | 척수 | 피해액 | 척수 | 피해액 |
| 계 | 1,147 | 7,546 | 53 | 999 | 851 | 10,187 | 5,831 | 34,785 | 31 | 581 | 63 | 848 |
| 부산 | 15 | 90 | | | 14 | 141 | 896 | 10,643 | | | 9 | 129 |
| 인천 | 27 | 735 | | | | | | | | | | |
| 울산 | 7 | 10 | | | 2 | 41 | 49 | 128 | 7 | 67 | 9 | 73 |
| 강원 | 1 | 8 | 2 | 4 | 43 | 772 | 3 | 4 | | | 2 | 6 |
| 경기 | 66 | 330 | 8 | 6 | 36 | 171 | | | 2 | 12 | | |
| 충북 | 1 | 0.4 | | | 8 | 12 | | | 10 | 20 | | |
| 충남 | 82 | 951 | | | 15 | 180 | | | | | 1 | 6 |
| 전북 | 217 | 1,543 | | | 44 | 555 | 2 | 16 | | | | |
| 전남 | 518 | 3,162 | 41 | 266 | 260 | 2,456 | 272 | 1,330 | 12 | 133 | | |
| 경북 | 5 | 4 | | | 5 | 77 | 72 | 133 | | 40 | 34 | 431 |
| 경남 | 181 | 642 | | | 315 | 3,023 | 4,480 | 22,144 | | 301 | 8 | 202 |
| 제주 | 27 | 71 | 2 | 722 | 109 | 2,757 | 57 | 388 | | 8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과

- 태풍으로 인한 어선의 피해는 년도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000년 태풍 ‘프라피룬’,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이 연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어선의 피해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년도에도 태풍으로 인한 어선의

20) 2006년 현재 총 등록 어선수는 85,613척임. 이중 수용대상 어선수는 80,395척인데, 2006년말 현재 기준으로 국가어항은 38,289척, 지방어항은 9,719척, 항만은 18,374척을 수용할 수 있어 총 66,382척의 수용능력을 확보함

피해는 크지 않았음(100척 이하). 즉, 2000년 풍속 75kt의 태풍 ‘프라피룬’이 내습한 전남북 지역, 2002년 풍속 80kt의 태풍 ‘루사’가 내습한 남해안 지역, 2003년에는 풍속 105kt의 태풍 ‘매미’가 내습한 부산·경남 지역에 어선의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풍속이 가장 쎄 ‘매미’의 어선피해건수가 월등히 많음. 또한 지역별로는 어선의 안전수용율이 100%인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강원과 경북지역의 피해건수가 적은 반면 안전수용율이 낮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해안 지역의 피해건수가 빈번함. 따라서 어항의 수를 늘려 어선의 안전한 대피장소를 마련함으로써 태풍발생시 어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기능시설·편익시설의 부족

-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함. 또한 동법은 어항의 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본시설의 건설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나마 국가어항 63.6%, 지방어항 43.8%의 투자율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어항의 기능시설과 편익시설 중 도로, 주차장, 위생시설, 광장·공원 등 공공의 이용을 위한 시설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이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비용부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 한편, 사적 이익활동을 위한 어항의 기능시설과 편익시설²¹⁾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예산투자범위 밖의 영역이므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어항의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어항시설의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법·제도는 다음 두 가지로 대별됨
 - “어촌·어항법” 제23조 제2항 : 비지정권자는 어항개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어항개발 사업허가를 받아 시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차목: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정의

21) 여기에는 수산물생산·유통·가공에 관련된 시설과 유료낚시터, 마리나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 및 해산물식당가 등이 포함됨

- 이처럼, 어항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기능시설과 어항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한 실정임

③ 어항 배후부지 개발 및 이용의 부진

- 어항의 배후부지는 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이 입지하는 장소인 동시에 어항관리의 측면에서는 임대수입 창출을 통하여 어항의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키므로, 어항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일부 국가어항은 배후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며, 배후부지가 조성된 항의 경우에도 그 이용은 부진한 수준임. 어항의 배후부지 임대수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부 어항의 경우 배후부지를 임대하여 충분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임대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이용자의 낮은 의식수준

- 어항의 이용자인 어업인들이 어항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항이용의 질서가 없어 어항구역내 민간시설의 무단점유, 어구의 방치 등으로 인하여 어항부지의 이용에 문제가 됨. 어항이용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4) 어항 관리상 문제점

① 해수면상승·대형태풍발생에 의한 피해증가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으나 어항시설은 과거 기상에 의거한 설계파고를 적용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어항의 재해피해액은 26,306백만원임. 이 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21,822백만원이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2,660백만원이며, 대설로 인한 피해는 1,824백만원임
- 1976년에서 2006년까지 31년간 38개 어항의 피해사례를 분석해보면 태풍 등에 의한 어항시설물 피해의 대부분은 방파제(사면 피복재 및 사석 유실)에 집중되며, 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항이 전체발생횟수의 약 70%로 반복 피해사례가 많았음.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계파고에 대한 내습파고의 비율은

70%에서 250%이며, 설계파고에 대한 내습파고비가 100%~140%에서 피해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어항 시설 피해의 원인은 설계파고에 있다고 볼 수 있음(설계파고 이하의 파고에 의한 피해사례도 전체 발생횟수의 27%에 해당됨)

② 어항환경관리의 문제

-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해역수질기준)에 의하면 어항구역은 선박의 정박에 이용되는 수질인 III등급을 유지하여야 함. 현재 어항구역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어항구역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으나, 일부 어항의 경우 육상기인 오·폐수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어항구역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어획물의 잔해 등에 의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 어항을 단순한 어선의 정박장 및 어획물의 양륙장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중요육성 및 양식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관광어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정박에 이용되는 수질인 III등급이 아니라 I등급의 수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어항내 수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항내 수질개선은 어항을 근거지로 생활하는 어민들에게 쾌적한 생산·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다시 찾고 싶은 어항을 만들기 위함임. 따라서, 어항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어항의 지정기준 미달항에 대한 대책

- 어항 지정 당시에는 지정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후 어선수와 위판고가 급감하여 현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07년 현재 개발중인 104개 국가어항 중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항은 62개항에 불과함²²⁾
- 어촌·어항법 부칙 제3조(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22) 현지어선 척수 및 총톤수, 위판고, 여객선 운항횟수는 2006년 한국어촌·어항협회 시행조사자료 참고, 외래어선 척수는 2006년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번 지정된 어항의 항종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당시와 비해 여건이 크게 변한 항의 추가개발·정비 및 항종변경의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항의 활용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항의 기능수행정도를 분석한 후 개발 및 정비 추진 또는 항종변경 판단, 추진해야 함

1.2.2 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1) 어촌 현황

(1) 어업인력 실태

- 2006년 현재 어업가구는 77,001가구, 어가인구는 211,610명이며, 1970년~2006년의 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소율을 살펴보면 어업가구는 1.8%, 어가인구는 4.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농업의 경우 동 기간 동안 농업가구는 1.9% 감소하여 어업가구 감소율보다 약간 높았으며, 농가인구는 4.0% 감소하여 어가인구 감소율과 동일하였음
- 최근의 농업가구 및 농가인구는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보다 약 15~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연도별 어업 및 농업 인력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 분 | 어업 | | 농업 | | 비고 | |
|------------|---------|---------|-----------|------------|------|------|
| | 어업가구(A) | 어가인구(B) | 농업가구(C) | 농가인구(D) | C/A | D/B |
| 1970년 | 149,107 | 912,612 | 2,483,318 | 14,421,730 | 16.7 | 13.8 |
| 1980년 | 134,109 | 725,314 | 2,155,073 | 10,826,748 | 16.1 | 14.9 |
| 1990년 | 121,525 | 496,089 | 1,767,033 | 6,661,322 | 14.5 | 13.4 |
| 2000년 | 81,571 | 251,349 | 1,383,468 | 4,031,065 | 17.0 | 16.0 |
| 2005년 | 79,942 | 221,132 | 1,272,908 | 3,433,573 | 13.9 | 13.5 |
| 2006년 | 77,001 | 211,610 | 1,245,083 | 3,304,173 | 16.2 | 13.6 |
| 연평균 증감률(%) | -1.8 | -4.0 | -1.9 | -4.0 | - | -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어업형태별 가구 및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77,001가구의 어업가구 가운데 68.8%인 53,012가구가 어로어업, 31.2%인 23,989가구가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한편, 어가인구 211,610명 중에서는 어로어업에 147,527명(69.7%), 양식어업에 64,083명(30.3%)이 종사하고 있음
- 1970년~200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어선어업가구는 1.9%, 양식어업가구는 1.7%씩 감소하였음. 동 기간 동안 어선어업인구는 3.9%, 양식어업인구는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어업인력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표 2.45>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 어업가구 | | | 어가인구 | | |
|------------|---------|---------|--------|---------|---------|---------|
| | 총계 | 어로어업 | 양식어업 | 총계 | 어로어업 | 양식어업 |
| 1970년 | 149,107 | 104,070 | 45,037 | 912,612 | 618,748 | 293,864 |
| 1980년 | 134,109 | 78,207 | 55,902 | 725,314 | 414,813 | 310,501 |
| 1990년 | 121,525 | 71,798 | 49,727 | 496,089 | 293,099 | 202,990 |
| 2000년 | 251,349 | 176,090 | 75,259 | 251,349 | 176,090 | 75,259 |
| 2005년 | 221,132 | 156,946 | 64,186 | 221,132 | 156,946 | 64,186 |
| 2006년 | 77,001 | 53,012 | 23,989 | 211,610 | 147,527 | 64,083 |
| 연평균 증감률(%) | -1.8 | -1.9 | -1.7 | -4.0 | -3.9 | -4.1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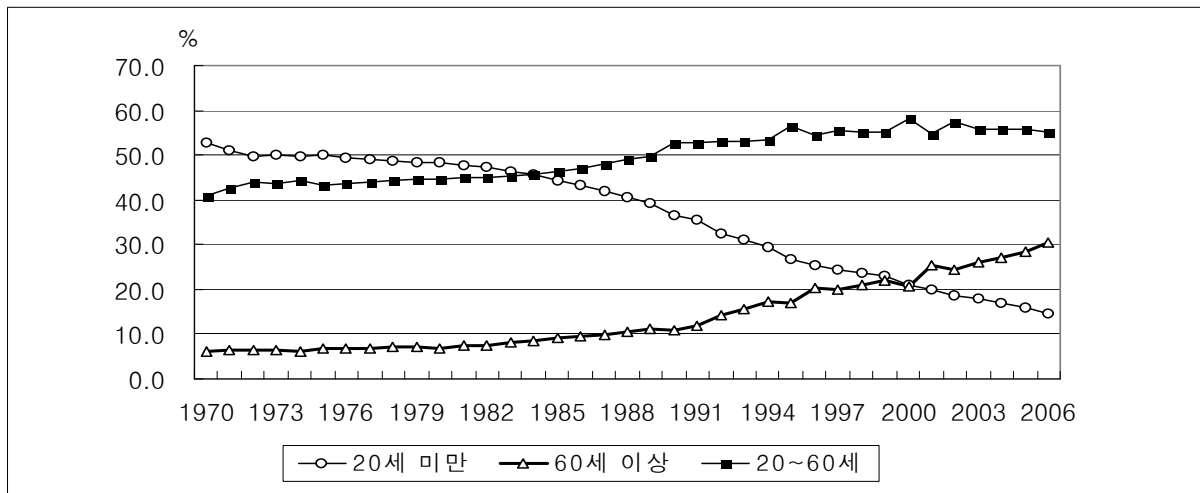
<표 2.46>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 구분 | 어업 | | | | 농업 | | | |
|------------|--------------|---------------|---------------|--------------|-----------------|-----------------|-----------------|-----------------|
| | 합계 | 20세미만 | 20~59세 | 60세이상 | 합계 | 20세미만 | 20~59세 | 60세이상 |
| 1970 | 913 (100) | 482 (52.8) | 374 (41.0) | 57 (6.2) | 14,422 (100) | 7,768 (53.9) | 5,511 (38.2) | 1,143 (7.9) |
| 1980 | 725 (100) | 352 (48.5) | 324 (44.6) | 50 (6.8) | 16,169 (100) | 9,827 (60.8) | 4,775 (29.5) | 1,567 (9.7) |
| 1990 | 496 (100) | 181 (36.5) | 261 (52.7) | 54 (10.8) | 6,661 (100) | 2,105 (31.6) | 3,370 (50.6) | 1,187 (17.8) |
| 2000 | 251 (100) | 53 (21.1) | 146 (58.2) | 52 (20.8) | 4,031 (100) | 721 (17.9) | 1,977 (49.1) | 1,333 (33.1) |
| 2005 | 221 (100) | 35 (13.8) | 124 (53.9) | 62 (28.3) | 3,434 (100) | 493 (14.4) | 1,590 (46.3) | 1,351 (39.3) |
| 연평균 증감률(%) | -4.0 | -7.2 | -3.1 | 0.3 | -4.0 | -7.6 | -3.5 | 0.5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1970년 60세 이상의 어가인구는 56,635명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6.2%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노령자의 지속적 증가로 2005년 현재 전체 어가인구의 28.3%인 총 62,497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세 미만의 어가인구는 1970년 전체의 52.8%에 달했으나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3.8%에 불과한 실정임
- 한편, 농업의 노령화 추세는 어업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의 농업부문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9.3%이며, 1970년~2005년의 기간 동안 6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0.5%로 어업의 0.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4>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의 변화 추이

<표 2.47>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 분 | 남자 | 여자 | 계 |
|------------|---------|---------|---------|
| 1970 | 465,529 | 447,083 | 912,612 |
| 1980 | 371,287 | 354,027 | 725,314 |
| 1990 | 248,839 | 247,250 | 496,089 |
| 2000 | 126,775 | 124,574 | 251,349 |
| 2005 | 110,658 | 110,474 | 221,132 |
| 2006 | 106,340 | 105,270 | 211,610 |
| 연평균 증감률(%) | -4.0% | -3.9% | -4.0% |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2006년 현재 어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남자 비율이 전체의 50.3%인 106,340명, 여자 비율은 49.7%인 105,270명으로 남녀의 구성비는 각각 절반 정도로 비슷하며, 연도별로도 구성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1970년 대비 성별 어가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4.0%, 여자는 3.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어가경제 실태

- 2006년 현재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30,006천원이며, 이중 어업소득이 11,603천원(38.7%), 어업외소득 10,361천원(34.5), 이전수입 및 비경상소득 8,043천원(26.8%)로 나타남
- 1980년은 어업소득이 어가소득의 67.5%를 차지하였으나,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1980년~2006년 동안 어가소득은 연평균 9.9%, 어업소득은 7.5%, 어업외소득 10.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8>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원, %)

| 구 분 |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소득 | 이전수입 및 비경상소득 |
|-----------|---------------|--------------|--------------|--------------|
| 1980년 | 2,596(100.0) | 1,752(67.5) | 844(32.5) | - |
| 1990년 | 10,023(100.0) | 5,217(52.1) | 3,192(31.8) | 1,614(16.1) |
| 2000년 | 18,875(100.0) | 10,078(53.4) | 5,313(28.1) | 3,484(18.5) |
| 2005년 | 28,028(100.0) | 11,950(42.6) | 9,399(33.5) | 6,679(23.8) |
| 2006년 | 30,006(100.0) | 11,603(38.7) | 10,361(34.5) | 8,043(26.8) |
| 연평균증감률(%) | 9.9 | 7.5 | 10.1 |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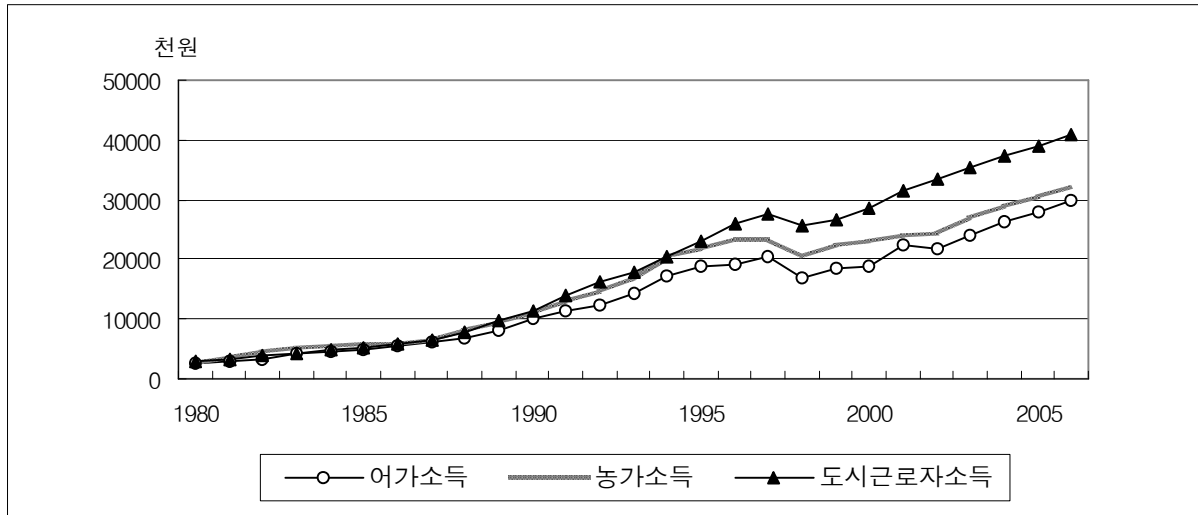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주 : 이전수입 및 비경상소득은 1990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임

-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업생산량의 감소, 수입수산물의 유입 및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타 산업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1980년~2006년의 기간 동안 어가소득은 연평균 9.9%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연평균 10.0%,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연평균 10.8%씩 증가하여 어

가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았음

- 동 기간 동안 어가소득이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높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가소득이 타 부문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부터 부문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5> 어가소득의 상대적 비교

- 한편, 어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6년 현재 가구당 어가부채는 3,442만원 수준으로 1985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1.7%씩 증가해왔음
 - 2006년 양식업 가구의 어가부채는 4,862만원으로 어선비사용가구의 2.7배, 동력선사용가구의 1.4배, 그리고 전 가구 평균의 1.4배에 달함
 - 1985년~2006년의 기간 동안 양식업 가구의 어가부채는 연평균 14.4%씩 증가하였으며, 어선비사용가구는 12.6%, 동력선사용가구는 7.1%씩 증가함
-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어가경제잉여²³⁾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 기간 동안 농가경제잉여는 연평균 9.0%씩 증가하여 어가경제잉여의 증가폭보다는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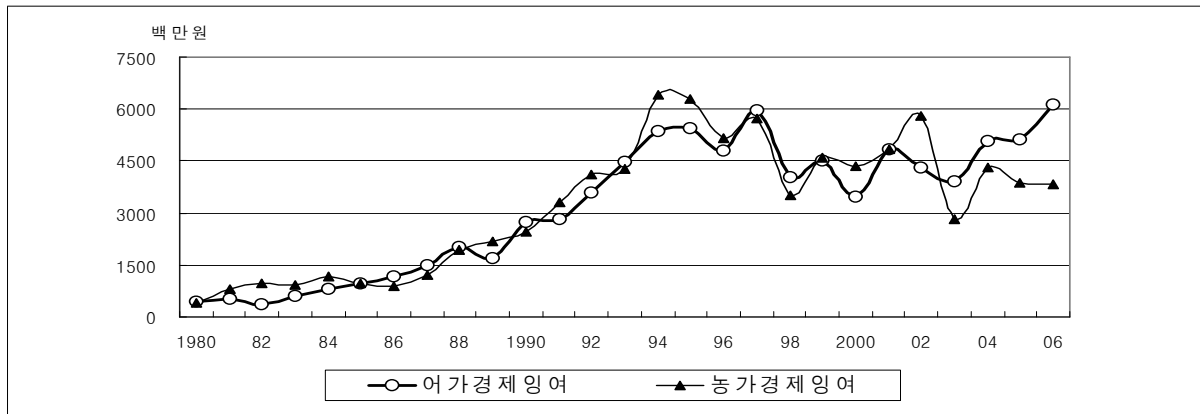
23) 어가경제잉여란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의 소비지출(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연간 어업생산활동 및 어업외소득 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를 말하며, 어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표 2.49> 연도별 어가부채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전가구 | 어선비사용가구 | 동력선사용가구 | 양식업가구 |
|---------------|--------|---------|---------|--------|
| 1980 | 564 | - | - | - |
| 1985 | 3,378 | 1,492 | 8,060 | 2,886 |
| 1990 | 5,925 | 2,293 | 6,410 | 7,629 |
| 1995 | 11,033 | 4,589 | 12,621 | 10,878 |
| 2000 | 13,635 | 5,595 | 15,301 | 19,747 |
| 2005 | 34,531 | 16,447 | 35,850 | 47,290 |
| 2006 | 34,422 | 17,959 | 33,911 | 48,616 |
| 연평균 증감률(%) | 11.7 | 12.6 | 7.1 | 14.4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그림 2.16> 어가경제잉여의 연도별 추이 비교

- 1980년~2006년 동안 전체 평균은 어가경제잉여가 3,207백만 원으로 농가경제잉여(3,227백만원)보다 작았음
- 두 지표 모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추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어가경제잉여는 2004년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3) 정주환경 실태

- 어촌은 농촌과 도시에 비해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에서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 의료 등 기초시설도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어촌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2005년 농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의 주거시설 현황, 거처형태, 정보화 현황, 자동차 보유현황, 난방시설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① 주거시설

- 통계청의 「농어업총조사」에서 주거시설 현황은 입식부엌, 상수도, 수세식 화장실, 온수시설로 세분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 농어촌지역의 낙후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상수도 보급률로 우리나라 전체가구 평균이 89.3%인데 반해 어촌지역은 51.3%, 농촌지역 34.3%로 나타남
 - 또한 수세식 화장실의 비율 역시 전체가구의 평균이 94.0%인데 반해 어촌지역 82.2%, 농촌지역 73.5%로 낮게 나타남

<표 2.50> 농어촌의 주거시설 현황

(단위 : 천 가구, %)

| 구분 | 계 | | 입식부엌 | | 상수도 | | 수세식화장실 | | 온수시설 | |
|------|-------------|----------------|--------------|-----------------|--------------|---------------|--------------|---------------|--------------|-----------------|
|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 2000 | 82 (100) | 1,383 (100) | 75 (91.5) | 1,240 (89.6) | 33 (40.4) | 310 (22.4) | 51 (62.3) | 723 (52.2) | - (-) | |
| 2005 | 80 (100) | 1,273 (100) | 77 (96.8) | 1,220 (93.8) | 41 (51.3) | 437 (34.3) | 66 (82.2) | 935 (73.5) | 74 (93.0) | 1,141 (89.6) |
| 증감 | △2 | △110 | 2 | △20 | 8 | 127 | 15 | 212 | 74 | 1,141 |

※자료 : 통계청, 농어업총조사, 2003.

주 : 1) 2000년은 온수시설 미조사

② 거처형태

- 어촌지역의 거처형태는 농촌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 어촌지역의 단독주택 비율이 2000년 94.6%에서 91.4%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2.9%에서 4.5%로 늘어남

<표 2.51> 농어촌의 거처형태

(단위 : 천가구, %)

| 구분 | 계 | | 단독주택 | | 아파트 | | 기타주택 | | 주택이외의 거처 | |
|------|-------------|----------------|--------------|-----------------|------------|-------------|------------|-------------|------------|-------------|
|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 2000 | 82 (100) | 1,383 (100) | 77 (94.6) | 1,333 (96.4) | 2 (2.9) | 21 (1.5) | 1 (1.5) | 9 (0.7) | 1 (1.0) | 21 (1.5) |
| 2005 | 80 (100) | 1,273 (100) | 73 (91.4) | 1,174 (92.2) | 4 (4.5) | 61 (4.8) | 3 (3.8) | 27 (2.2) | 0 (0.3) | 11 (0.9) |
| 증감 | △2 | △110 | △4 | △159 | 2 | 40 | 2 | 18 | △1 | △10 |

※자료 : 통계청, 농어업총조사, 2003.

③ 정보화현황

- 어촌지역의 PC보유율은 34.4%로 농촌지역 37%에 비해 낮았으며, 컴퓨터를 농어업에 활용정도 역시 어촌 7.8%, 농촌 10.6%로 나타나 어촌의 정보화가 낙후되어 있음
 - PC의 활용용도를 살펴보면 어업 및 농업 모두 정보수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산물 및 수산물의 판매를 위한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2> 농어촌의 정보화 현황

(단위 : 천 가구, %)

| 구분 | 가구수 | | PC 보유 | | 농어업 활용 | | 어업 활용용도 | | | 농업 활용용도 | | |
|------|---------------|------------------|--------------|---------------|------------|---------------|------------|------------|------------|--------------|------------|-------------|
|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정보수집 | 수산물 판매 | 기타 | 정보수집 | 수산물 판매 | 기타 |
| 2000 | 82 (100.0) | 1,383 (100.0) | 18 (21.7) | 333 (24.1) | 2 (2.3) | 50 (3.6) | 1 (1.3) | 0 (0.0) | 1 (0.9) | 37 (2.7) | 2 (0.1) | 12 (0.8) |
| 2005 | 80 (100.0) | 1,273 (100.0) | 28 (34.4) | 470 (37.0) | 6 (7.8) | 135 (10.6) | 5 (3.9) | 1 (0.8) | 1 (1.7) | 120 (9.5) | 7 (0.6) | 14 (1.1) |
| 증감 | △2 | △110 | 10 | 137 | 4 | 85 | 4 | 1 | - | 83 | 5 | 2 |

※자료 : 통계청, 농어업총조사, 2003.

④ 자동차 보유

- 어촌지역의 자동차 보유율은 50.6%로 2000년의 38.4%에 비해 12.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은 동 기간 41.4%에서 51.9%로 증가하여 어촌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승용차 보급률은 2000년 22.1%에서 2005년 26.8%로 높아졌으며, 화물차 및 기타 차량도 2000년 20.0%에서 2005년 27.7%로 높아졌음

<표 2.53>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현황

(단위 : 천 가구, %)

| 구분 | 계 | | 자동차 보유 | | | | | | | |
|------|-------------|----------------|--------------|---------------|--------------|---------------|------------|-------------|--------------|---------------|
| | | | 소계1) | | 승용차 | | 승합차2) | | 화물 및 기타 | |
|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 2000 | 82 (100) | 1,383 (100) | 31 (38.4) | 573 (41.4) | 18 (22.1) | 356 (23.7) | - | - | 16 (20.0) | 285 (20.6) |
| 2005 | 80 (100) | 1,273 (100) | 40 (50.6) | 661 (51.9) | 21 (26.8) | 390 (30.6) | 2 (3.0) | 39 (3.0) | 22 (27.7) | 340 (26.7) |
| 증감 | △2 | △110 | 9 | 88 | 3 | 34 | 2 | 39 | 6 | 55 |

※자료 : 통계청, 농어업총조사, 2003.

- 주 : 1) 2종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어가가 있어 소계와 일치하지 않음
- 2) 2000년은 승용·승합차로 통합조사

⑤ 난방시설

- 어촌지역의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 81.2%, 전기보일러 9.9%, 도시가스보일러 2.8%순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 71.0%, 전기보일러 13.4%, 도시가스보일러 3.8%로 나타나 어촌지역의 기름보일러 사용이 농촌 및 우리나라 전체 가구(23.7%)보다 높았음
- 한편, 도시가스보일러의 전체가구 평균이 50.6%인데 반해 어촌지역은 2.8%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54> 농어촌의 난방시설 현황

(단위 : 천 가구, %)

| 구분 | 계 | | 기름보일러 | | 전기보일러 | | 도시가스보일러 | | 기타 | |
|------|-------------|----------------|--------------|-------------|------------|---------------|------------|-------------|------------|---------------|
|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어촌 | 농촌 |
| 2005 | 80 (100) | 1,273 (100) | 65 (81.2) | 904 (71) | 8 (9.9) | 171 (13.4) | 2 (2.8) | 48 (3.8) | 5 (6.1) | 150 (11.7) |

※자료 : 통계청, 농어업총조사, 2003.

2) 어촌의 사회·구조적 문제점

- 어업인력의 감소
 - 수산업의 장기침체와 청장년층의 어업노동기피로 1980년 이후부터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및 어가수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어업인력의 주요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어가인구는 어업종사자 및 어가수의 감소율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어촌의 고령화
 - 전체 어가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8%에서 2006년 현재 30.3%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의 어가인구 비중은 동 기간 중 71.7%에서 30.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 이에 따라 어촌사회의 활력 및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어촌의 성장·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심화
 - 어가소득은 1980년 2,596천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2,809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6년 현재 어가소득은 30,006천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40,869천원으로 격차가 확대(동 기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어가소득은 9.9%,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10.8%씩 증가하였음)

- 어촌사회의 양극화 심화
 - 도시와 어촌의 소득격차 확대와 더불어 어촌 내의 양극화도 심각함. 양식어업의 확대는 어가의 어업소득에서 차이를 가져와 잡는 어업(어선비사용·어선사용) 어가의 어업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양식어가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양식어업 내에서도 고위험·고수익의 양식과 상대적으로 저수익의 양식어가들이 혼재하여 이들의 소득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어촌정주기반 및 생활환경의 낙후성
 -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어항 중심의 개발로 인해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이 열악함
 - 어촌은 농촌 및 도시에 비해 도로, 교통 등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 의료 등 기초시설의 경우 도시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음

1.3 어촌·어항 여건분석

1.3.1 어항의 여건분석

1) 어항과 어촌과의 관계 분석

(1) 항종별 어촌과의 관계 검토

① 어촌·어항의 정의

-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② 어항과 어촌과의 관계

- 우리나라의 어항은 수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중심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오늘날 관광레포츠 등 여가활동 기능이 추가되면서 수산업 외적인 기능도 함께 수행해오고 있음
- 국가어항 방문객은 긴 여행시간과 높은 여행비용, 그리고 기타어항 방문객의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부족과 낙후를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어항관광활성화사업 및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위해 접근성의 개선과 다양한 관광 테마를 갖는 시설의 도입 및 개발을 통하여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항종별 어촌계 어업형태별·임지유형별 투자특성 및 발전수준

- 항종별 어항 이용 세력권을 두고 있는 어촌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969개소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별 및 입지, 발전 수준별로 분석

- 수협중앙회에서는 주된 어업형태에 따라 어촌계의 종사유형을 어선어업형, 양식어업형, 복합어업형으로 구분
- 지리적 유형에 따라 어촌계의 입지유형을 도시근교형, 연안촌락형, 취약지구형으로 구분
- 사업의 규모, 자기자본의 규모, 사업 총이익 등 기본요건과 사회 평점에 따라 어촌계의 발전수준을 복지형, 자립형, 성장형으로 구분
- 항종별 종사유형을 비교한 결과 국가어항을 세력권으로 하는 어촌계에서는 어선어업형이 35%, 양식어업형 34%, 복합어업형이 31%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항종에서는 양식어업형이 우세함
- 항종별 입지유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항만 및 연안항을 거점으로 하는 어촌계는 도시근교형이었으나,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거점으로 한 어촌계는 도시근교형 보다는 연안촌락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 여건상 도시지역과의 교류에 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지장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즉 수요가 높은 도시근교와 관광지 인근이나 도로 접근성이 좋은 연안어촌에 어항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어촌계 발전수준을 항종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국가어항을 세력권으로 한 어촌계에서는 타 항종에 비하여 경제력이 높은 복지형 어촌계가 다소 높은 비율이었으나, 경제력이 낮은 어촌계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항의 관광 편익시설 및 어항의 기능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55> 항종별 이용 세력권 어촌계 분류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 | | 계 | | 국가어항 | | 지방어항 | | 기타 (항만, 어촌정주어항 등) | | 비고 |
|-----|----------|-------|-------|-----|------|-----|------|-----|----------------------|-----|----|
| | |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
| 총괄 | 종사 유형 | 어선어업형 | 529 | 27% | 141 | 35% | 245 | 23% | 143 | 30% | |
| | | 양식어업형 | 837 | 43% | 138 | 34% | 493 | 45% | 206 | 43% | |
| | | 복합어업형 | 603 | 31% | 123 | 31% | 348 | 32% | 132 | 27% | |
| | 입지 유형 | 도시근교형 | 341 | 17% | 74 | 18% | 133 | 12% | 134 | 28% | |
| | | 연안촌락형 | 1,318 | 67% | 252 | 63% | 790 | 73% | 276 | 57% | |
| | | 취약지구형 | 310 | 16% | 76 | 19% | 163 | 15% | 71 | 15% | |
| | 발전 수준 | 복 지 형 | 207 | 11% | 60 | 15% | 98 | 9% | 49 | 10% | |
| | | 자 립 형 | 632 | 32% | 118 | 29% | 388 | 36% | 126 | 26% | |
| | | 성 장 형 | 1,130 | 57% | 224 | 56% | 600 | 55% | 306 | 64% | |

자료 : 어촌계현황, 수협중앙회, 2006. 12. 31

(계속)

(단위 : 개소, %)

| 구 분 | | | 계 | | 국가어항 | | 지방어항 | | 기타 (항만, 어촌정주어항 등) | | 비고 |
|-------|------|-------|-----|------|------|------|------|------|----------------------|------|----|
| | |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
| 부산광역시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27 | 54% | 8 | 67% | 13 | 41% | 6 | 100% | |
| | | 양식어업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복합어업형 | 23 | 46% | 4 | 33% | 19 | 59% | 0 | 0%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44 | 88% | 12 | 100% | 26 | 81% | 6 | 100% | |
| | | 연안촌락형 | 6 | 12% | 0 | 0% | 6 | 19% | 0 | 0% | |
| | | 취약지구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자 립 형 | 1 | 2% | 0 | 0% | 1 | 3% | 0 | 0% | |
| | | 성 장 형 | 49 | 98% | 12 | 100% | 31 | 97% | 6 | 100% | |
| 인천광역시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14 | 25% | 2 | 29% | 7 | 32% | 5 | 19% | |
| | | 양식어업형 | 29 | 53% | 3 | 43% | 11 | 50% | 15 | 58% | |
| | | 복합어업형 | 12 | 22% | 2 | 29% | 4 | 18% | 6 | 23%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10 | 18% | 0 | 0% | 6 | 27% | 4 | 15% | |
| | | 연안촌락형 | 18 | 33% | 1 | 14% | 7 | 32% | 10 | 38% | |
| | | 취약지구형 | 27 | 49% | 6 | 86% | 9 | 41% | 12 | 46%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6 | 11% | 1 | 14% | 1 | 5% | 4 | 15% | |
| | | 자 립 형 | 26 | 47% | 1 | 14% | 10 | 45% | 15 | 58% | |
| | | 성 장 형 | 23 | 42% | 5 | 71% | 11 | 50% | 7 | 27% | |
| 울산광역시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22 | 69% | 4 | 50% | 11 | 65% | 7 | 100% | |
| | | 양식어업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복합어업형 | 10 | 31% | 4 | 50% | 6 | 35% | 0 | 0%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32 | 100% | 8 | 100% | 17 | 100% | 7 | 100% | |
| | | 연안촌락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취약지구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9 | 28% | 3 | 38% | 6 | 35% | 0 | 0% | |
| | | 자 립 형 | 10 | 31% | 3 | 38% | 5 | 29% | 2 | 29% | |
| | | 성 장 형 | 13 | 41% | 2 | 25% | 6 | 35% | 5 | 71% | |

자료 : 어촌계현황, 수협중앙회, 2006. 12. 31

(계속)

(단위 : 개소, %)

| 구 분 | | | 계 | | 국가어항 | | 지방어항 | | 기타 (항만,어촌정 주어항 등) | | 비고 |
|----------|----------|-------|-----|-----|------|-----|------|------|-------------------------|-----|----|
| | |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
| 경기 도 | 종사 유형 | 어선어업형 | 16 | 33% | 0 | 0% | 5 | 22% | 11 | 42% | |
| | | 양식어업형 | 11 | 22% | 0 | 0% | 1 | 4% | 10 | 38% | |
| | | 복합어업형 | 22 | 45% | 0 | 0% | 17 | 74% | 5 | 19% | |
| | 입지 유형 | 도시근교형 | 20 | 41% | 0 | 0% | 2 | 9% | 18 | 69% | |
| | | 연안촌락형 | 26 | 53% | 0 | 0% | 18 | 78% | 8 | 31% | |
| | | 취약지구형 | 3 | 6% | 0 | 0% | 3 | 13% | 0 | 0% | |
| | 발전 수준 | 복 지 형 | 8 | 16% | 0 | 0% | 7 | 30% | 1 | 4% | |
| | | 자 립 형 | 7 | 14% | 0 | 0% | 3 | 13% | 4 | 15% | |
| | | 성 장 형 | 34 | 69% | 0 | 0% | 13 | 57% | 21 | 81% | |
| 강원 도 | 종사 유형 | 어선어업형 | 69 | 90% | 30 | 94% | 24 | 100% | 15 | 71% | |
| | | 양식어업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복합어업형 | 8 | 10% | 2 | 6% | 0 | 0% | 6 | 29% | |
| | 입지 유형 | 도시근교형 | 29 | 38% | 10 | 31% | 2 | 8% | 17 | 81% | |
| | | 연안촌락형 | 48 | 62% | 22 | 69% | 22 | 92% | 4 | 19% | |
| | | 취약지구형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발전 수준 | 복 지 형 | 21 | 27% | 13 | 41% | 3 | 13% | 5 | 24% | |
| | | 자 립 형 | 23 | 30% | 7 | 22% | 11 | 46% | 5 | 24% | |
| | | 성 장 형 | 33 | 43% | 12 | 38% | 10 | 42% | 11 | 52% | |
| 충청 남도 | 종사 유형 | 어선어업형 | 27 | 19% | 7 | 29% | 10 | 14% | 10 | 23% | |
| | | 양식어업형 | 72 | 51% | 12 | 50% | 31 | 42% | 29 | 67% | |
| | | 복합어업형 | 41 | 29% | 5 | 21% | 32 | 44% | 4 | 9% | |
| | 입지 유형 | 도시근교형 | 7 | 5% | 0 | 0% | 1 | 1% | 6 | 14% | |
| | | 연안촌락형 | 117 | 84% | 22 | 92% | 60 | 82% | 35 | 81% | |
| | | 취약지구형 | 16 | 11% | 2 | 8% | 12 | 16% | 2 | 5% | |
| | 발전 수준 | 복 지 형 | 16 | 11% | 5 | 21% | 7 | 10% | 4 | 9% | |
| | | 자 립 형 | 42 | 30% | 7 | 29% | 27 | 37% | 8 | 19% | |
| | | 성 장 형 | 82 | 59% | 12 | 50% | 39 | 53% | 31 | 72% | |

자료 : 어촌계현황, 수협중앙회, 2006. 12. 31

(계속)

(단위 : 개소, %)

| 구 분 | | | 계 | | 국가어항 | | 지방어항 | | 기타 (항만, 어촌정주어항 등) | | 비고 |
|------|------|-------|-----|-----|------|-----|------|-----|----------------------|------|----|
| | |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
| 전라북도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33 | 52% | 8 | 47% | 7 | 24% | 18 | 100% | |
| | | 양식어업형 | 10 | 16% | 2 | 12% | 8 | 28% | 0 | 0% | |
| | | 복합어업형 | 21 | 33% | 7 | 41% | 14 | 48% | 0 | 0%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5 | 8% | 0 | 0% | 1 | 3% | 4 | 22% | |
| | | 연안촌락형 | 38 | 59% | 9 | 53% | 16 | 55% | 13 | 72% | |
| | | 취약지구형 | 21 | 33% | 8 | 47% | 12 | 41% | 1 | 6%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2 | 3% | 2 | 12% | 0 | 0% | 0 | 0% | |
| | | 자 립 형 | 17 | 27% | 6 | 35% | 11 | 38% | 0 | 0% | |
| | | 성 장 형 | 45 | 70% | 9 | 53% | 18 | 62% | 18 | 100% | |
| 전라남도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67 | 8% | 14 | 12% | 21 | 4% | 32 | 13% | |
| | | 양식어업형 | 579 | 68% | 75 | 63% | 363 | 74% | 141 | 59% | |
| | | 복합어업형 | 204 | 24% | 31 | 26% | 108 | 22% | 65 | 27%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76 | 9% | 10 | 8% | 26 | 5% | 40 | 17% | |
| | | 연안촌락형 | 608 | 72% | 75 | 63% | 385 | 78% | 148 | 62% | |
| | | 취약지구형 | 166 | 20% | 35 | 29% | 81 | 16% | 50 | 21%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81 | 10% | 16 | 13% | 42 | 9% | 23 | 10% | |
| | | 자 립 형 | 225 | 26% | 31 | 26% | 144 | 29% | 50 | 21% | |
| | | 성 장 형 | 544 | 64% | 73 | 61% | 306 | 62% | 165 | 69% | |
| 경상북도 | 종사유형 | 어선어업형 | 89 | 57% | 24 | 42% | 46 | 69% | 19 | 59% | |
| | | 양식어업형 | 9 | 6% | 3 | 5% | 3 | 4% | 3 | 9% | |
| | | 복합어업형 | 58 | 37% | 30 | 53% | 18 | 27% | 10 | 31%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20 | 13% | 8 | 14% | 3 | 4% | 9 | 28% | |
| | | 연안촌락형 | 130 | 83% | 46 | 81% | 61 | 91% | 23 | 72% | |
| | | 취약지구형 | 6 | 4% | 3 | 5% | 3 | 4% | 0 | 0%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12 | 8% | 7 | 12% | 5 | 7% | 0 | 0% | |
| | | 자 립 형 | 88 | 56% | 30 | 53% | 43 | 64% | 15 | 47% | |
| | | 성 장 형 | 56 | 36% | 20 | 35% | 19 | 28% | 17 | 53% | |

자료 : 어촌계현황, 수협중앙회, 2006. 12. 31

(계속)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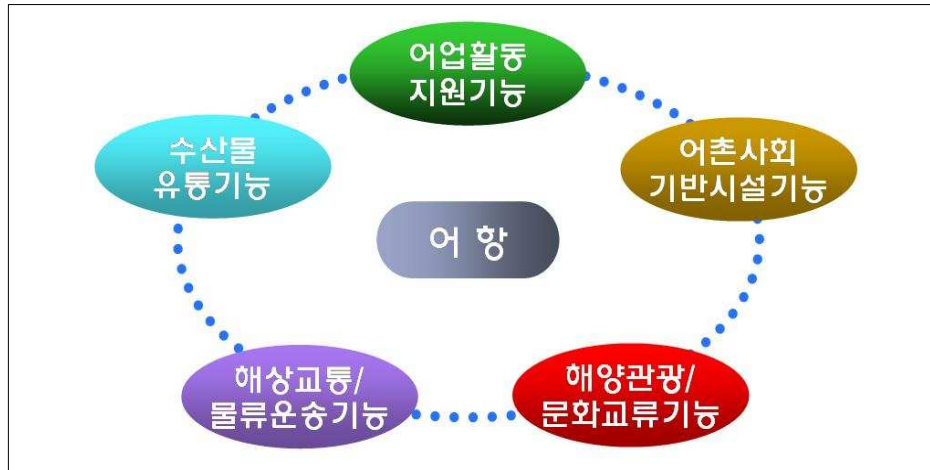
| 구 분 | | | 계 | | 국가어항 | | 지방어항 | | 기타 (항만, 어촌정주어항 등) | | 비고 |
|------|------|-------|-----|-----|------|-----|------|-----|----------------------|-----|----|
| | |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어촌계 | 비율 | |
| 경상남도 | 중사유형 | 어선어업형 | 162 | 41% | 44 | 44% | 101 | 40% | 17 | 40% | |
| | | 양식어업형 | 66 | 17% | 21 | 21% | 42 | 17% | 3 | 7% | |
| | | 복합어업형 | 168 | 42% | 36 | 36% | 109 | 43% | 23 | 53%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62 | 16% | 17 | 17% | 29 | 12% | 16 | 37% | |
| | | 연안촌락형 | 269 | 68% | 63 | 62% | 184 | 73% | 22 | 51% | |
| | | 취약지구형 | 65 | 16% | 21 | 21% | 39 | 15% | 5 | 12%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38 | 10% | 10 | 10% | 20 | 8% | 8 | 19% | |
| | | 자 립 형 | 125 | 32% | 19 | 19% | 91 | 36% | 15 | 35% | |
| | | 성 장 형 | 233 | 59% | 72 | 71% | 141 | 56% | 20 | 47% | |
| 제주도 | 중사유형 | 어선어업형 | 3 | 3% | 0 | 0% | 0 | 0% | 3 | 14% | |
| | | 양식어업형 | 61 | 61% | 22 | 92% | 34 | 62% | 5 | 24% | |
| | | 복합어업형 | 36 | 36% | 2 | 8% | 21 | 38% | 13 | 62% | |
| | 입지유형 | 도시근교형 | 36 | 36% | 9 | 38% | 20 | 36% | 7 | 33% | |
| | | 연안촌락형 | 58 | 58% | 14 | 58% | 31 | 56% | 13 | 62% | |
| | | 취약지구형 | 6 | 6% | 1 | 4% | 4 | 7% | 1 | 5% | |
| | 발전수준 | 복 지 형 | 14 | 14% | 3 | 13% | 7 | 13% | 4 | 19% | |
| | | 자 립 형 | 68 | 68% | 14 | 58% | 42 | 76% | 12 | 57% | |
| | | 성 장 형 | 18 | 18% | 7 | 29% | 6 | 11% | 5 | 24% | |

자료 : 어촌계현황, 수협중앙회, 2006. 12. 31

(2) 어촌·어항 개발의 연계성

① 어촌·어항의 연계 기능

- 어항의 기능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어업활동 지원기능, 수산물유통기능,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 해상교통 및 물류운송기능, 해양관광 및 도시와의 문화교류 기능 등 크게 5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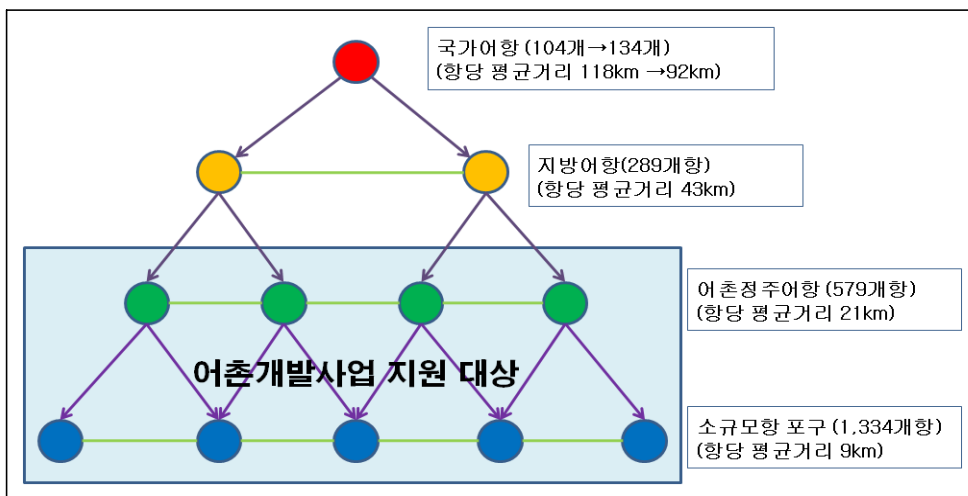
<그림 2.17> 어항의 기능

- 어업활동 지원기능은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어획물의 양륙장,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를 포함한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기능은 수산물의 하역 및 시장 거래,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수산가공업 기지의 기능임
- 어촌 사회 기반시설 기능은 지역사회 어업인들의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말하며 해상교통 및 물류운송기능은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및 물자와 정보의 수송기능임
- 해양관광 및 도시와 어촌의 문화교류 기능은 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능으로서 어항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 제공과 더불어 어촌문화의 체험공간의 기능을 말한다.
- 한편 어항시설은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어항 편의시설로 구분된다. 기본시설은 어항의 기능 중에서 어업활동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방파제와 선박계류시설, 수역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능시설은 수산물 유통기능, 해상운송/물류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
- 어항편의시설은 어촌사회 기반시설 기능과 해양관광/문화교류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로 어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시설과 더불어 해양관광활동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 휴게시설임
- 어항의 기능과 시설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어항은 단순히 어업활동을 위한 어선의 정박 및 대피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조성 또한 방파제, 계류시설에서 벗어나 문화시설, 관광활동 지원 시설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 어촌사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어촌과 어항의 개발방향은 수산업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음
- 즉, 어항의 개발은 수산업 중심기능 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기능 어항’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어촌과 도시의 교류가 증가하고, 어촌의 기능이 다양화되면 될수록 수산물 생산기반시설로서 어항이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항은 어촌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와 어촌의 주요한 교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어업인의 감소에 따른 어선의 감소는 어항의 다기능화를 촉진시킬 것임

② 어촌·어항의 연계 개발

- 어촌개발사업 1단계 160개권역의 사업종류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생산기반시설 66.2%, 소득기반시설 28.4%, 생활·복지시설 3.4% 순으로 나타남
- 사업종류별 투자실적을 재분류하면 어항시설 47%, 해안시설 19%, 편의시설 34%로 나타남
 - 생산기반시설의 어항시설(전체 사업비의 47.1%)은 소규모포구의 방파제, 물량장 등 어촌의 생산기반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 어촌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포구를 주로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인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에도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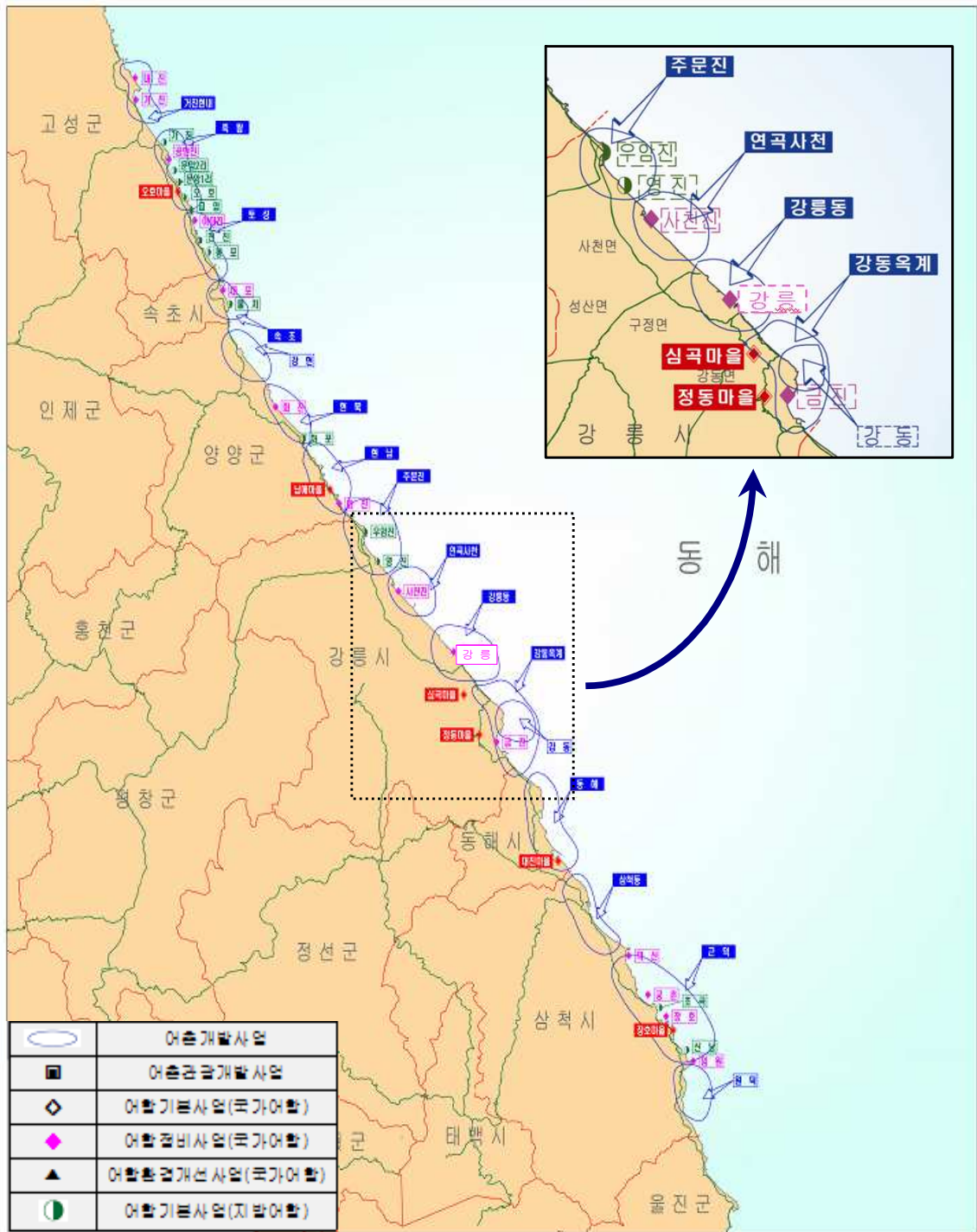
<그림 2.18> 어촌·어항개발의 연계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어항관광개발사업인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및 어촌관광개발사업도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단순한 수산기능의 어항에서 어촌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음

<표 2.56> 어항별 연계개발 현황

| 항 종 | 항 명 | 사업비(항당) |
|--------|---|-------------------------|
| 국가어항 | 어유정항, 정자항, 강릉항, 마량항, 양포항, 맥전포항, 모슬포항(7개항) | 어촌 : 50억원 어항 : 100억원 |
| | 대변항, 대포항, 흥원항, 격포항, 국동항, 지세포항(6개항) | 어항 : 500억원 *어촌부문 포함 |
| 지방어항 | 대항항, 전국항, 무창포항, 야미도항, 방축항, 전촌항, 학림항, 법환항(8개항) | 어촌 : 60억원 |
| 어촌정주어항 | 초지항, 대송항, 대진항(3개항) | 어촌 : 60억원 |

- 국가어항 배후부지에 어촌의 생산기반 및 정주기반시설 등 어항기능시설 지원 추진
- 어촌과 어항의 연계개발을 위해 어촌개발사업 지원대상 중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포구에 대한 어항시설 지원



<그림 2.19> 어촌·어항 연계 개발 예시(강원도 강릉)

2) 항종별, 도서·육지별 기존 개발방향 검토

(1) 어항개발 변천

- 1969년 제정된 어항법에 따라 1, 2, 3종의 법정어항을 지정함. 1, 3종 어항은 현재 국가어항에 해당하며, 1971년 1종 어항 37개소, 제3종어항 25개소가 지정됨.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함
- 또한 긴급 대피항의 개념이 도입되어 울릉도 저동항, 소흑산도항 및 서거차항의 우선 개발이 시행됨
-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어항 개발이 활발히 계속됨. 1·3종어항의 완공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시설 위주의 어항개발과 어항내 해수오염 등이 어항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00년대부터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주민복지,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어항개발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됨

(2) 어항개발 정책 방향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어항개발정책방향 전환('04)
 - 기존어항에 대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에 따라 국가어항 신규지정 유보, 완공위주 사업 추진
- 어업여건의 변화와 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어촌·어항개발제도 혁신 및 정책개발 추진('04~'05)
 - “어항 수요 및 지정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신규어항개발 수요 예측 및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항지정기준 제시
 -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정으로 합리적인 어항지정 기준 마련('05. 12)
 - 어업여건의 변화를 감안,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기능어항(6개소) 및 어촌·어항복합공간(7개소), 어촌관광단지(11개소)에 대한 개발 추진
- 완공된 어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05)
 -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
 - 매년 2회의 안전점검(정밀조사 포함) 실시, 어항정비계획 반영
- 어항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수의계약방법을 장기계속공사로 전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01.11.22)

- 계약방법 전환으로 수의비율이 '01년 91%에서 '06년 15%로 급감
- 해역별 개발 방향
 - 동해 : 관광 명승지 및 해수욕장과 연계한 위락,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특화 체류형 어항
 - 남해 : 양식어항, 해상관광어항
 - 서해 : 가족단위의 주말여행객들을 위한 휴식, 문화, 어촌체험 공간으로 개발

(3)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방향 전환

- 도서국가어항의 경우 기존의 어항계획시 대피기능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나 기상예보의 발달과 선박의 동력발달 등으로 대부분 육지항으로 대피를 함으로써 외래어선 이용세력이 감소하는 실정(경북 저동항 소관 어촌계에 의하면 태폭풍시 포함 육지항으로 대피)으로 대피어항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표 2.57>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 구분 | '80 | '90 | '00 | '05 |
|-------------|------|------|------|-----|
| 척당톤수(톤/척) | 14.5 | 12.0 | 10.3 | 8.0 |
| 척당마력수(마력/척) | 48 | 69 | 152 | 148 |

※ 자료: 수산업 연차보고서((구)해양수산부, 2007)

- 어선의 동력 증가로 기동력의 향상과 일기 불순시(태·폭풍) 예보 시스템의 발달로 연근해 조업 어선들이 육지에 소재한 항으로 피항 ⇒ 척당 마력수는 '90년에 비해 약 53% 증가

(4) 향후 어항개발 방향

- 향후 어항개발은 광역적인 계획에 의해 해당항의 기능을 설정하고, 도서 어항의 경우, 대피기능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어업인과 관광객 이용시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정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육지 국가어항

- 대도시 주변의 어항은 도시민의 친수공간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어선 동력 발달 등 낙도 대피 지양으로 어선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정비계획 시 어선의 이용도를 고려한 항세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며, 이에 국가어항의 추가지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해양관광 및 유어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항에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② 도서 국가어항

- 대피어항 기능 위주 개발에서 낙도관광 증가추세로 관광·여객 기능 부각할 필요가 있음

③ 지방어항

- 현재 많은 어항에서 관광유통 등의 다기능시설이 계획되고 있으나, 현재 완공률이 46%로 저조한 상태이므로 추가지정을 제한하고 기존 항에 대한 기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완공률의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지역별 관광·여객 기능이 활발해지고 있어 지정권자는 여건변화에 맞추어 어항의 기능 제고를 위한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도서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항 완공률의 제고 및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 및 관광여건에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④ 어촌정주어항

-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항의 기본시설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어촌의 정주 목적 어항에서 레포츠활동 및 수산체험의 어항으로 변모를 추구가 필요함
- 어항의 완공률이 23.0%로 저조하여 완공률의 제고를 위하여 어항기본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3) 어항의 입지적 특성 분석

(1) 해역별 입지특성 분석

① 동해안

- 동해안의 어항 대부분은 해수욕장 또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으로 어항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부지 조성이 필요함
- 동해안은 심해파랑의 영향이 해안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파랑 차폐를 위한 외곽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표사이동에 의한 항내 매몰 등의 문제가 있음

② 서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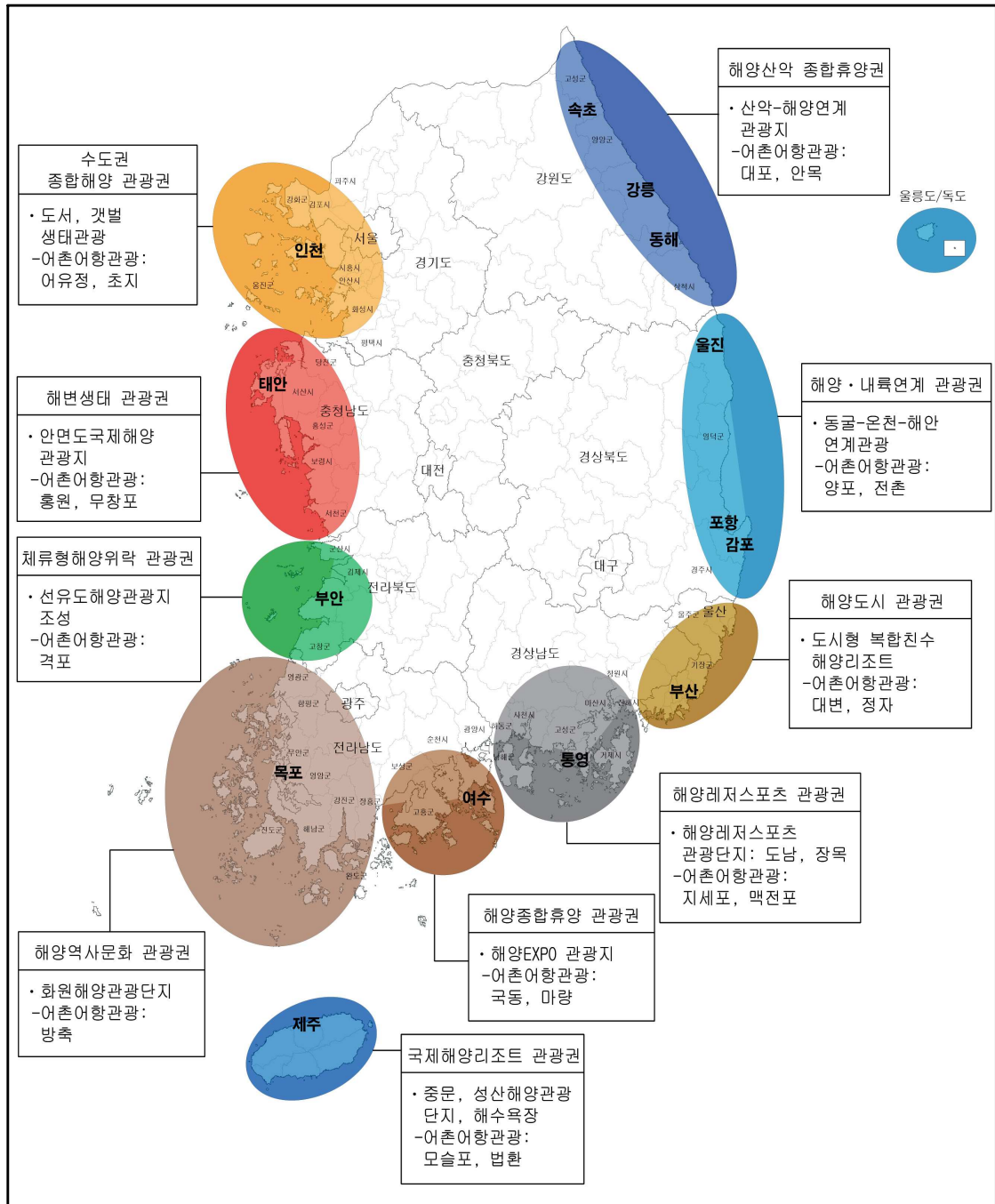
- 서해안은 조차가 크고 간사지가 발달되어 양식어업(패류)이 발달되었으나 연약지반이 많아 계류시설 공사비의 비중이 큼
- 또한 조차로 인한 어선의 접안이 어려워 부잔교나 경사식 물양장의 설치가 요구되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늘어나는 관광객을 고려한 친수성 공간 조성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

③ 남해안

- 남해안은 청정해역과 아름다운 해안을 지니고 있어 양식어업(가두리, 해조류), 유어선 어업이 발달된 곳이며,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은 좋지 않으나, 해양레저를 위한 양호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수질악화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소통구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양식장은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토균형 및 관광개발에 대한 여건 분석

- 제2차 관광 개발계획,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해양관광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관광권역을 검토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2.20>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3) 입지적 특성에 따른 개발여건 분석

① 지역여건에 대한 개발여건

(i) 동해안

-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산정 용역보고서(구 해양수산부, 2005)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계류시설 충족률은 116%, 안전수용률은 173%이며, 2010년 지정항 완공시 계류시설 충족률은 167%이며, 안전수용률은 225%임(개발실태 기준)
- 동해는 양적인 어항 개발보다는 질적인 어항의 개발이 필요
- 관광 명승지 및 해수욕장과 연계한 위락,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 특화체류형 어촌·어항 개발 필요

(ii) 서해안

- 2004년 현재 계류시설 충족률은 71%, 안전수용률은 54%이며, 2010년 지정항 완공시 계류시설 충족률은 107%, 안전수용률은 79%임(개발실태 기준)
- 서해는 양적인 어항 개발과 질적인 어항의 개발이 병합 필요하나,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류시설 충족률이 100%이상이므로 양적인 개발보다 질적인 개발이 우선으로 하되, 기존 어항의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양적인 개발도 구상함
- 가족단위의 주말여행객들을 위한 휴식, 문화, 어촌체험 공간으로 개발함

(iii) 남해안

- 2004년 현재 계류시설 충족률은 66%, 안전수용률은 64%이며, 2010년 지정항 완공시 계류시설 충족률은 106%, 안전수용률은 87%임(개발실태 기준)
- 남해는 양적인 어항 개발과 질적인 어항의 개발이 병합 필요하나,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류시설 충족률이 100%이상이므로 양적인 개발보다 질적인 개발을 우선으로 하되, 기존 어항의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양적인 개발도 구상
- 양식어항, 해상관광어항 개발 필요

② 인문·사회적 조건에 대한 개발여건

- 동·서·남해는 어항의 현황 및 자연적 조건도 상이하지만 각 해역이 갖고 있는 인문·사회적 여건도 각기 상이함
- 우선 어항주변과 관광자원의 수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교통여건, 환경적인 제약조건, 사회적인 인프라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58> 해역별 인문·사회적 조건 비교

| 분 류 | 동 해 | 서 해 | 남 해 |
|-----------|--|---|--|
| 관광자원 | ◦동해안은 배후에 설악산 및 오대산국립공원 인근의 해수욕장 등의 천혜의 관광 자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일부 지역별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만 동·남해에 비하여 소규모임 | ◦한려해상공원, 다도해 등 관광자원이 풍부함 |
| 수도권과의 접근성 | ◦최근 고속도로 개선으로 3시간대로 승용차 접근이 가능하며, 동해 북부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으나, 동해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열악함 | ◦서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함 ◦목포근방은 승용차로는 불편하나 최근 KTX 개통으로 다소 개선됨 | ◦KTX 개통으로 일부 호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떨어짐 |
| 환경적 제약조건 | ◦매몰 및 침식이 항구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개발계획 필요 ◦해안선이 급하고 내습파랑이 큼 | ◦조차가 심하여 시설물 계획이 제약됨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고려해야 함 | ◦다도해 지역으로 내습파랑이 차폐되어 개발시 유리 |

③ 해역별 개발여건

- 어항의 현황, 자연조건, 인문·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각 해역별 개발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9> 해역별 어항 개발방안

| 구분 | 동 해 | 서 해 | 남 해 |
|----------|--|---|--|
| 어항기반시설측면 | ◦어항계획시 외곽시설 등 해수유통 및 어장보호 고려 | ◦해수교환 친수 부유식 방파제 계획 | ◦해수교환 친수 부유식 방파제 계획 |
| 관광수요의한 | ◦북부지역은 배후관광시설을 고려한 다기능어촌·어항 개발 ◦중부지역은 낙후어촌을 위한 어촌관광 개발 ◦남부지역은 부산과 울산도심을 배후권으로 하는 첨단관광아이템을 수용하는 복합다기능어촌·어항 개발 | ◦북부지역은 수도권과의 연계로 인한 다기능어촌 어항 개발 ◦중부지역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관광 아이템을 수용하는 복합다기능어촌·어항 개발 ◦남부지역은 도서연안을 관광자원화한 어촌관광 개발 | ◦동부지역은 해양스포츠 및 체험 관광의 강화를 위해 체류형 해양 리조트 휴양타운 조성 ◦서부지역은 다도해 해양관광전진 기지 조성, 해양문화시설과 해양 친수공간 확보 |
| 휴양수요의한 |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휴양 수요에 대비한 시설 계획 |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휴양 수요에 대비한 시설 계획 |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휴양 수요에 대비한 시설 계획 |
| 복지수요의한 | ◦대도시인근의 노인문제 수요를 대비한 시설계획 | ◦대도시인근의 노인문제 수요를 대비한 시설계획 | ◦대도시인근의 노인문제 수요를 대비한 시설계획 |

4) 관광여건 검토·분석

<표 2.60> 국가어항 관광여건

| 시·도 | 항명 | 관 광 여 건 | |
|-----|-----|----------------------------|-------------------|
| | | 관 광 테 마 | 주 변 관 광 지 |
| 부 산 | 대 변 | 멀치와 미역이 유명한 대형어항(미역양식장 유명) | 용궁사, BEXCO, 해운대 등 |
| | 다대포 | 부산의 멋과 맛을 담은 어항 | 다대포해수욕장, 태종대 등 |
| 인 천 | 어유정 | 산, 바다, 갯벌의 조화가 담긴 어항 | 보문사, 강화 석모도 등 |
| | 장 봉 | 천연해수욕장에서 즐기는 갯벌체험(갯벌체험) | 웅암해수욕장, 구봉산 등 |
| | 덕적도 | 갈대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낭만의 관광지 | 서포리해수욕장, 소야도 등 |
| 천 | 울 도 | 너무 멀어 울고, 인심 좋아 울고 가는 곳 | 굴업도 등 |
| | 선진포 | 발자국이 남지않는 백사장 | 농어해수욕장, 사탄동해수욕장 등 |

(계속)

| 시·도 | 항명 | 관 광 여 건 | |
|-----|--------------------|--------------------------------|---------------------|
| | | 관 광 테 마 | 주 변 관 광 지 |
| 울산 | 정 자 | 근심은 비우고 인심은 담아가는 정겨운 어항 | 선바위, 반구대 등 |
| | 방어진 | 방파제 낚시 유명 | 고래박물관 등 |
| 강원 | 대 진 | 통일전망대 가는 길목의 수채화 같은 어항 | 화진포, 금강산, 해금강 등 |
| | 거 진 | 명태축제로 활력이 넘치는 동해의 관광명소 | 건봉사, 화진포호, 해양박물관 등 |
| | 공현진 | 동해안의 대표적 수상스포츠 천국(스쿠버, 윈드서핑 등) | 송지호, 백도, 진부령 계곡 등 |
| | 아야진 | 일출과 월출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 | 청간정, 천학정, 도원계곡 등 |
| | 대 포 | 연간 100만명이 찾는 관광어항(수산물 웰빙체험) | 영랑호, 영금정, 속초해수욕장 등 |
| | 수 산 | 연어축제로 유명한 낚시꾼들의 집결지 | 하조대, 남대천, 선사유적지 등 |
| | 남 애 | 해돋이가 일품인 강원도 3대 미항 | 문성폭포, 여성전 계곡 등 |
| | 사천진 | 강원도에서 유령하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곳 | 경포대 해수욕장, 구룡폭포 등 |
| | 안 목 | 봄철 황어잡이 재미(바다낚시 유명) | 선교장, 오죽헌, 참소리박물관 등 |
| | 금 진 | 해안절벽, 바다, 도로가 3박자를 이룬 천연항 | 통일공원, 정동진역, 옥계굴 등 |
| | 덕 산 | 새천년 해안유원지에서 해맞이 축제(민박촌 유명) | 죽서루, 새천년 해안도로 등 |
| | 궁 촌 | 자연산 어종이 풍부한 어항 | 환선굴, 어촌민속박물관 등 |
| | 장 호 | 해안선이 절경인 동양의 나폴리(어촌체험마을) | 해신당공원, 장호해수욕장 등 |
| | 임 원 | 전국 제일의 돛 낚시로 유명한 곳 | 덕풍계곡, 임원해수욕장 등 |
| 충남 | 삼길포 | 동해 최대 대호방조제가 있는 미항 | 해미읍성, 가야산 등 |
| | 모 항 | '만리포 사랑'의 무대 | 만리포해수욕장, 신두사구 등 |
| | 안 흥 | 서해안 최고의 일출, 일몰 감상지 | 가의도, 안흥성 등 |
| | 남 당 | 전국 최대규모의 대하축제 | 한용운 생가 등 |
| | 오 천 | 서해 제일봉 오서산에서 내려다보는 바다경치 | 명대계곡, 도미부인 사당 등 |
| | 외연도 | 바다 안개속 신비의 어항 | 외연도 상록수림, 외연도 명금 등 |
| 전북 | 흥 원 | 갯벌체험, 전어축제 등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어항 | 춘장대해수욕장, 동백나무 숲 등 |
| | 어청도 | 항우의 장수 '전횡'의 낯이 어린 섬 | 치등묘제, 어청도 등대 등 |
| | 연 도 | 서해 바다 한가운데 핀 섬 연도 | 개야도 등 |
| | 말 도 | 고군산도 서쪽 끝, 바다 갈매기의 서식처 | 방축도 등 |
| | 격 포 | 채석강과 적벽강이 주는 자연의 경이로움 | 채석강, 적벽강, 격포해수욕장 등 |
| | 위 도 | 홍길동전에 나오는 울도국의 실제 모델 | 위도해수욕장, 위도 관아 등 |
| 전남 | 구시포 | 학습과 피서를 겸한 관광 명소 | 고인돌 공원, 구시포해수욕장 등 |
| | 계 마 | 영광굴비와 해안도로가 유명 | 백수해안관광도로, 가마미해수욕장 등 |
| | 안 마 | 각양각색의 섬이 만들어내는 개성만점의 경관 | 송이도, 칠산도 갈매기섬 등 |
| 전장포 | 긴 백사장이 있는 사막지형의 어항 | 대광해수욕장, 화산고인돌 등 | |

(계속)

| 시·도 | 항명 | 관광여건 | | |
|-----|------|-------------------------------|-----------------------------|-----------------|
| | | 관광테마 | 주변관광지 | |
| 전 | 원평 | 십리에 펼쳐진 대리석 원료 | 명사십리해수욕장 등 | |
| | 소흑산도 | 감성돔 낚시가 유명한 어항 | 가거도8경, 흥도 등 | |
| | 우이도 | 모래언덕에서 보는 다도해 절경 | 시목해수욕장, 모래언덕 등 | |
| | 수품 |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 | 남진미술관, 진도 신비의 바닷길 등 | |
| | 서망 | 섬을 배경으로 지는 노을이 장관 | 남도석성, 주지도, 양덕도 등 | |
| | 서거차 | 관매8경과 관호8경이 만든 낙조가 절경 | 다리여, 하늘다리 등 | |
| | 어란진 | 땅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절경 | 두륜산, 송호해수욕장 등 | |
| | 마량 | 바다낚시가 유명 | 다산초당, 월출산 등 | |
| | 회진 | 낚시, 등산이 동시에 가능한 어항 | 수인산성, 천관사, 부용산 등 | |
| | 득암 | 약초 먹고사는 염소들의 천국 | 가사해수욕장 등 | |
| | 사동 | 해당화공원과 상록수림이 그림같은 어항 | 금일해수욕장, 거북섬 등 | |
| | 도장 | 해당화가 피어나는 해안 기암괴석이 절경 | 월송리 해송림, 금단8경 등 | |
| | 청산도 |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로 유명한 푸른 섬 | 지리해수욕장, 서편제 촬영지 등 | |
| | 소안 | 용맹과 기개를 간직한 평화로운 어항 | 맹선리 상록수림 등 | |
| | 보옥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절로 읊어지는 풍광 | 윤선도 유적지, 예송리해수욕장 등 | |
| | 여서 | 천혜의 해식애를 간직한 아름다운 섬 | 신흥해수욕장 등 | |
| | 남 | 녹동 | 소록도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요충지 | 무열사, 쌍총사, 소록도 등 |
| | | 풍남 | 남해안에서 다섯 손가락안에 꼽히는 유명한 낚시터 | 천등산, 비자림 등 |
| 여호 | | 바다를 바라보며 산행하는 맛이 일품인 곳 | 용바위, 남열해수욕장 등 | |
| 내발 | | 남해의 전경을 한눈에 보는 마복산의 절경이 유명한 곳 | 총무사, 마복산 등 | |
| 시산 | | 해안 거북바위가 절경(배낚시 유명) | 거북바위, 익금해수욕장 등 | |
| 국동 | | 오동도와 돌산대교가 유명한 여수를 대표하는 어항 | 오동도, 돌산대교, 경도 등 | |
| 낭도 | | 매년 2월, 일곱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 | 낭도해수욕장, 공룡화석지 등 | |
| 돌산 | | 남해를 내려보는 해안사찰이 유명함 | 향일암, 방죽포해수욕장 등 | |
| 안도 | | 대한민국 최대 감성돔 산란처 | 금오도, 안도해수욕장 등 | |
| 연도 | | 갯바위 낚시가 유명 | 소리도 등대, 연도 등 | |
| 초도 | | 바다 옆에서 소, 염소를 방목하는 이국적인 어항 | 거문도 등대, 거문도 관백정 등 | |
| 경북 | | 죽변 | 자연용출 온천이 있는 관광어항 | 덕구온천, 덕구 계곡 등 |
| | 오산 | 아름다운 바다풍경, 스쿠버 дай버들의 천국 | 성류굴, 불영사 계곡 등 | |
| | 사동 | 일출의 설렘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곳 | 기성망양해수욕장, 백암온천 등 | |
| | 구산 | 소나무 사이로 부는 해풍, 천혜의 여름 피서지 | 향암미술관, 구산해수욕장 등 | |
| | 대진 | 서정이 흐르는 어촌체험마을 | 괴시리 전통마을, 유금사 등 | |
| | 축산 | 대게원조마을이 유명한 무궁해 수산물 천지 | 대게원조마을, 영덕조각공원 등 | |

(계속)

| 시·도 | 항명 | 관 광 여 건 | | |
|-----|-----|-------------------------------|----------------------------|------------------|
| | | 관 광 테 마 | 주 변 관 광 지 | |
| 전 | 어란진 | 땅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절경 | 두륜산, 송호해수욕장 등 | |
| | 마량 | 바다낚시가 유명 | 다산초당, 월출산 등 | |
| | 회진 | 낚시, 등산이 동시에 가능한 어항 | 수인산성, 천관사, 부용산 등 | |
| | 득암 | 약초 먹고사는 염소들의 천국 | 가사해수욕장 등 | |
| | 사동 | 해당화공원과 상록수림이 그림같은 어항 | 금일해수욕장, 거북섬 등 | |
| | 도장 | 해당화가 피어나는 해안 기암괴석이 절경 | 월송리 해송림, 금단8경 등 | |
| | 청산도 |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로 유명한 푸른 섬 | 지리해수욕장, 서편제 촬영지 등 | |
| | 소안 | 용맹과 기개를 간직한 평화로운 어항 | 맹선리 상록수림 등 | |
| | 보옥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절로 읊어지는 풍광 | 윤선도 유적지, 예송리해수욕장 등 | |
| | 여서 | 천혜의 해식애를 간직한 아름다운 섬 | 신흥해수욕장 등 | |
| | 녹동 | 소록도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요충지 | 무열사, 쌍충사, 소록도 등 | |
| | 풍남 | 남해안에서 다섯 손가락안에 꼽히는 유명한 낚시터 | 천등산, 비자림 등 | |
| | 여호 | 바다를 바라보며 산행하는 맛이 일품인 곳 | 용바위, 남열해수욕장 등 | |
| | 내발 | 남해의 전경을 한눈에 보는 마복산의 절경이 유명한 곳 | 충무사, 마복산 등 | |
| | 시산 | 해안 거북바위가 절경(배낚시 유명) | 거북바위, 익금해수욕장 등 | |
| | 남 | 국동 | 오동도와 돌산대교가 유명한 여수를 대표하는 어항 | 오동도, 돌산대교, 경도 등 |
| 낭도 | | 매년 2월, 일곱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 | 낭도해수욕장, 공룡화석지 등 | |
| 돌산 | | 남해를 내려보는 해안사찰이 유명함 | 향일암, 방죽포해수욕장 등 | |
| 안도 | | 대한민국 최대 감성돔 산란처 | 금오도, 안도해수욕장 등 | |
| 연도 | | 갯바위 낚시가 유명 | 소리도 등대, 연도 등 | |
| 초도 | | 바다 옆에서 소, 염소를 방목하는 이국적인 어항 | 거문도 등대, 거문도 관백정 등 | |
| 경북 | | 죽변 | 자연용출 온천이 있는 관광어항 | 덕구온천, 덕구 계곡 등 |
| | | 오산 | 아름다운 바다풍경, 스쿠버 дай버들의 천국 | 성류굴, 불영사 계곡 등 |
| | | 사동 | 일출의 설렘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곳 | 기성망양해수욕장, 백암온천 등 |
| | | 구산 | 소나무 사이로 부는 해풍, 천혜의 여름 피서지 | 향암미술관, 구산해수욕장 등 |
| | 대진 | 서정이 흐르는 어촌체험마을 | 괴시리 전통마을, 유금사 등 | |
| | 죽산 | 대게원조마을이 유명한 무궁해 수산물 천지 | 대게원조마을, 영덕조각공원 등 | |
| | 강구 |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어항 풍경 |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등 | |
| | 구계 | 깊은 수심과 다양한 어종으로 강태공들의 낚시천국 | 경보화석박물관, 팔각산 등 | |
| | 대보 |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 호미곶 등대박물관 등 | |

(계속)

| 시·도 | 항명 | 관 광 여 건 | |
|-----|--------------------------|--------------------------------|----------------------|
| | | 관 광 테 마 | 주 변 관 광 지 |
| 경북 | 강 구 |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어항 풍경 |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등 |
| | 구 계 | 깊은 수심과 다양한 어종으로 강태공들의 낚시천국 | 경보화석박물관, 팔각산 등 |
| | 대 보 |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 호미곶 등대박물관 등 |
| | 양 포 | 문화적 관광지가 많은 일출의 명소 | 오어사, 일월지, 장기읍성 등 |
| | 감 포 | 문무대왕릉이 있는 동해 남부의 중심어항(민박촌 유명) | 감은사지 3층석탑 등 |
| | 읍 천 | 신라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경주 인근의 미항 | 서출지, 불국사, 석굴암 등 |
| | 현 포 | 우리나라 유일의 지하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어항 | 송곳산, 나리분지 등 |
| | 저 동 | 세계문화관광명소로 부상할 독도 수호 전진기지 | 독도박물관, 봉래폭포 등 |
| | 남 양 | 해변의 검은 조약돌로 유명한 동해의 흑진주 | 비파산, 거북바위, 사자바위 등 |
| 경남 | 외 포 | 길고 큰 몽돌조약돌이 멋스러운 해변 | 대금산, 민속자료관 등 |
| | 능 포 | 한려수도를 따라 펼쳐진 산과 바다가 장관인 미항 | 계룡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
| | 지세포 | 어부의 하루를 엿보는 체험어항 | 북병산, 옥녀봉, 반곡서원 등 |
| | 구조라 | 서이말 등대가 발길을 끄는 거제의 미항 | 구조라해수욕장, 자연예술랜드 등 |
| | 다대다포 | 가리산을 등지고 해금강, 한려해상공원을 바라보는 관광지 | 가리산, 해금강,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
| | 대 포 | 고급어종이 풍부한 바다의 보물창고 | 명사해수욕장, 대소병대도 등 |
| | 광 양 | 낚시와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 광양해수욕장, 공룡발자국화석 등 |
| | 원 전 | 연륙교의 장관이 볼거리 | 월영대, 저도연륙도 등 |
| | 맥전포 | 멸치가 많이 잡히며, 해변의 기암절벽이 절경 | 문수암, 연화산 도립공원 등 |
| | 삼 덕 | 다도해의 낙조를 감상하기 좋은 곳 | 통영대교, 달아공원 등 |
| | 능 양 | 멸치, 굴 등 해산물이 풍부한 관광지 | 사랑도, 대항해수욕장 등 |
| | 육 지 | 거북모양의 조용한 어항 | 연화사, 덕동해수욕장 등 |
| | 호 두 | 8자모양의 아름다운 섬(바다낚시 유명) | 제승당, 봉암해수욕장 등 |
| | 매물도 | 해안, 암벽, 등대, 질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 | 홍도, 등대섬 등 |
| | 신 수 |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죽방렴으로 고기잡은 항 | 실안 해안도로, 항공우주박물관 등 |
| 물 건 | 방조어부림이 멋을 더하는 어항 | 남해대교, 망운산 등 | |
| 미 조 | 화전문화제로 유명한 전국 제일의 수산물 산지 | 송정해수욕장, 보리암 등 | |
| 제주 | 김 녕 | 이국적 미로공원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곳 | 미로공원, 만장굴 등 |
| | 도 두 | 해안드라이브와 자전거 하이킹에 좋은 어항 | 한라산, 용두암 등 |
| | 신 양 | 일본까지 소문난 바다낚시터(갯바위낚시 유명) | 추자도, 최영장군 사당 등 |
| | 하 효 | 남국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청정어항 | 여미지식물원 쇠소깍, 정방폭포 등 |
| | 모슬포 |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가 보이는 어항 | 용머리해안, 마라도 등 |
| | 위 미 | 바다와 제주의 미가 만나는 아름다운 어항 |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

5) 어항의 분류 및 기능·역할의 재정립

(1) 어항의 분류

- 현재 어항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분류하면 우선 순수어항, 대피어항 관광기능을 겸한 어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도서지역에 위치한 어항의 경우 과거 3종 어항으로 어항지정기준에 의하면 도서에 위치하여 기상악화시 대피항의 기능을 하는 어항이므로 기능상 분류 시 도서 소재의 어항은 대피항으로 분류
-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정된 어항은 관광기능을 겸하는 어항으로 분류함

<표 2.61> 국가어항의 분류

| 시·도 | 순수어항 | 대피어항 | 관광어항 | 비 고 |
|-----|---|--|------------|-----|
| 부산 | 다대포항 | | 대변항 | |
| 인천 | - |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선진포항 | 어유정항 | |
| 울산 | 방어진항 | - | 정자항 | |
| 강원 | 대진항, 거진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대포항, 수산항, 남애항, 사천진항, 안목항, 금진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 - | 안목항, 대포항 | |
| 충남 | 삼길포항, 모항항, 안흥항, 남당항, 오천항 | 외연도항 | 홍원항 | |
| 전북 | 구시포항 | 어청도항, 연도항, 말도항, 위도항 | 격포항 | |
| 전남 | 계마항, 전장포항, 수품항, 서망항, 어란진항, 회진항, 녹동항, 풍남항, 여호항, 내발항, 돌산항 | 안마항, 원평항, 소흑산도항, 우이도항, 서거차항, 득암항, 사동항, 도장항, 청산도항, 소안항, 보옥항, 여서항, 시산항, 낭도항, 안도항, 연도항, 초도항 | 마량항, 국동항 | |
| 경북 |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 대진항, 축산항, 강구항, 구계항, 대보항, 감포항, 읍천항 | 현포항, 저동항, 남양항 | 양포항 | |
| 경남 | 외포항, 능포항, 지세포항,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대포항, 광암항, 원전항, 맥전포항, 삼덕항, 물건항, 미조항 | 능양항, 옥지항, 호두항, 매물도항, 신수항 | 맥전포항, 지세포항 | |
| 제주 | 김녕항, 도두항, 하효항, 위미항 | 신양항 | 모슬포항 | |

<표 2.62> 지방어항의 분류

| 시·도 | 순수어항 | 대피어항 | 관광어항 | 비 고 |
|-----|---|---|------|-----|
| 부산 | 송정항, 우동항, 청사포항, 민락항, 칠암항, 학리항, 동백항, 이동항, 월내항, 신암항, 두호항 | 천성항, 눌차항 | 대항항 | |
| 인천 | 선두항, 창후항, 후포항, 정포항, 진두항, 자월항 | 광명항, 대무의항, 장곶항, 주문항, 진리항, 두무진항, 옥죽포항, 답동항, 소연평항 | - | |
| 울산 | 당사항, 주전항, 나사항, 신암항 | - | - | |
| 경기 | 제부항, 탄도항, 대명항 | 풍도항 | 전곡항 | |
| 강원 | 가진항, 오호항, 문암1항, 문암2항, 교암항, 천진항, 봉포항, 물치항, 동산항, 우암진항, 영진항, 초곡항, 신남항, 호산항 | - | - | |
| 충남 | 송석항, 월하성항, 간월도항, 백사장항, 방포항, 몽산포항, 마검포항, 학암포항, 천리포항, 만리포항, 여은돌항, 통개항, 채석포항, 영목항, 성구미항, 장고항, 어사항, 궁리항, 판교항 | 녹도항, 호도항, 고대도항, 삼시도항, 장고도항, 효자도항, 원산도항, 가의도항, 난지도항 | 무창포항 | |
| 전북 | 곰소항, 궁항항, 동호항 | 개야도항, 비안도항, 선유항, 방축도항, 무녀도항, 상왕등도항, 식도항 | - | |
| 전남 | 설도항, 범성항, 송도항, 벌포항, 용호항, 초평항, 굴포항, 송호항, 내동항, 영전항, 사구미항, 학가항, 송평항, 징의항, 우수영항, 도리포항, 톱머리항, 사초항, 망석항, 원동항, 수문항, 장환항, 이진목항, 덕촌항, 옹암항, 금능항, 울포항, 상진항, 동봉항, 장수항, 잠두항, 남성항, 용동항, 대통항, 하동항, 염포항, 봉남항, 대영항, 덕흥항, 금사항, 계동항, 죽포항, 소울항, 성두항, 세포항, 화포항 | 하태항, 영산항, 심리항, 사리항, 만재항, 다수항, 소우이도항, 화도항, 수대항, 재원항, 검산항, 추포항, 관호항, 창유항, 성등포항, 어불항, 월양항, 동고항, 가교항, 해동항, 장용항, 우두항, 서성항, 화전항, 동백항, 충도항, 덕우항, 울포항, 모서항, 신흥항, 진산항, 미라항, 방축도항, 이목항, 금진항, 연소항, 명천항, 오천항, 죽도항, 횡간항, 우학항, 함구미항, 손죽항, 의성항, 서도항, 호령항 | - | |

(계속)

| 시·도 | 순수어항 | 대피어항 | 관광어항 | 비 고 |
|-----|---|--|------|-----|
| 경북 | 가곡항, 나정항, 발산항, 모포항, 삼정항, 대보항, 방석항, 지경항, 죽천항, 이가리항, 백석항, 병곡항, 부경항, 경정항, 노물항, 장포항, 직산항, 골장항, 기성항 | 천부항, 태하항, 통구미항 | 전촌항 | |
| 경남 | 수치항, 옥계항, 진동항, 시락항, 늑도항, 대포항, 중항항, 낙지포항, 평림항, 이운항, 연명항, 수월항, 예포항, 장목항, 시방항, 유호항, 관포항, 농소항, 성포항, 한내항, 물안항, 송포항, 하청항, 도장포항, 쌍근항, 울포항, 동호항, 거제항, 죽림항, 남포항, 당항항, 포교항, 당동항, 은점항, 지족항, 원천항, 서상항, 유포항, 향촌항, 동갈화항, 선소항, 장포항, 당저항, 적량항, 냉천항, 항도항, 광천항, 노량항, 중평항, 솔상항 | 진촌항, 돈지항, 연화항, 연대항, 곤리항, 견유항, 장작지항, 곡용포항, 내항항, 하포항, 이수도항, 유교항 | 학림항 | |
| 제주 | 화북항, 하귀1리항, 귀덕1리항, 고산항, 조천항, 세화항, 종달항, 신창항, 대포항, 사계항, 표선항, 신양항, 강정항, 태흥2리항, 신천항 | 우도항, 가파항 | 법환항 | |

◦ 기능별로 분류된 어항의 개발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3> 어항의 개발 방안

| 유 형 | 개 발 방 안 |
|-------------|--|
| 순수어항 | ◦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조기에 완공 |
| 대피어항 | ◦ 순수어항과 같이 조기에 완공토록하고 어항시설물 보강계획 수립 ◦ 현재 어선의 성능제고 및 기상조기 예보시스템의 제고로 대피어항의 기능이 약화된 실정임 |
| 관광기능을 겸한 어항 | ◦ 관광, 휴양, 복지 등의 종합 미래어항으로 검토 → 어항에 환경개선사업 도입 필요(다기능어항, 어항정화시설 및 관광시설 등) |

(2) 항종별 어항 기능·역할의 재정립

- 향후 어항개발은 광역적인 계획에 의해 해당항의 기능을 설정하고, 도서 어항의 경우, 대피기능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어업인과 관광객의 이용시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육지소재 국가어항

- 대도시 주변의 어항은 도시민의 친수공간으로 부각
- 어선 동력 발달 등 낙도 대피 지양으로 어선이용 증가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해양관광 및 유어 인구가 크게 증가

② 도서소재 국가어항

- 대피어항 기능 위주 개발에서 낙도관광 증가추세로 관광·여객 기능 부각
- 소비지와 멀어서 위판 및 유통기능 축소

③ 지방어항

- 현지어선의 이용 및 휴게·출어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많은 어항에서 관광유통 등의 다기능시설이 계획되고 있음
- 지역별 관광·여객 기능이 활발한 어항에 관광유통 등의 다기능시설이 계획되고 있음

④ 어촌정주어항

-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항의 기본시설 지원
- 어촌의 정주 목적 어항에서 레포츠활동 및 수산체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변모를 추구

1.3.2 어촌의 여건분석

1) 향후 어촌사회 전망

(1) 어촌사회 지표의 장기 추세 전망

-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60세 이상 노령인구, 어가소득 등과 같이 장기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어촌사회 지표를 중심으로 과거의 통계 추세를 이용, 2023년까지의 중장기 전망치를 도출하였음
- 특정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지표들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2023년까지의 장기 추세를 전망하였음
 - 어업가구 : 1970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 -1.8% 적용
 - 어가인구 : 1970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 -4.0% 적용
 - 어업종사가구원 : 1970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 -2.4% 적용
 - 어가소득 : 최근 10년(1996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 4.7% 적용
 - 60대 이상 어가인구 비율 : 1970년~2006년의 연평균 증감률 4.5% 적용
- 어업가구는 2006년 현재 77,001가구이나 2010년 71,550가구로 현재보다 7.1% 감소, 2023년에는 56,360가구로 26.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가인구는 2006년 현재 211,610명이나 지금까지의 감소추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0년에는 179,891명, 2023년에는 106,119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어업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2006년 현재 어가소득은 30,006천원으로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9.9%에 육박함. 그러나 지난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유입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영향으로 동 증가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7%를 적용하여 장기 추세를 살펴보았음
 - 2006년의 어가소득은 30,006천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35,994천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023천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물가상승률 등의 실질임금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임금의 증가이므로 현재의 어가소득 자체가 2배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전체 어가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에 대한 장기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06년 현재 전체 어가인구의 30.3% 수준이던 노령인구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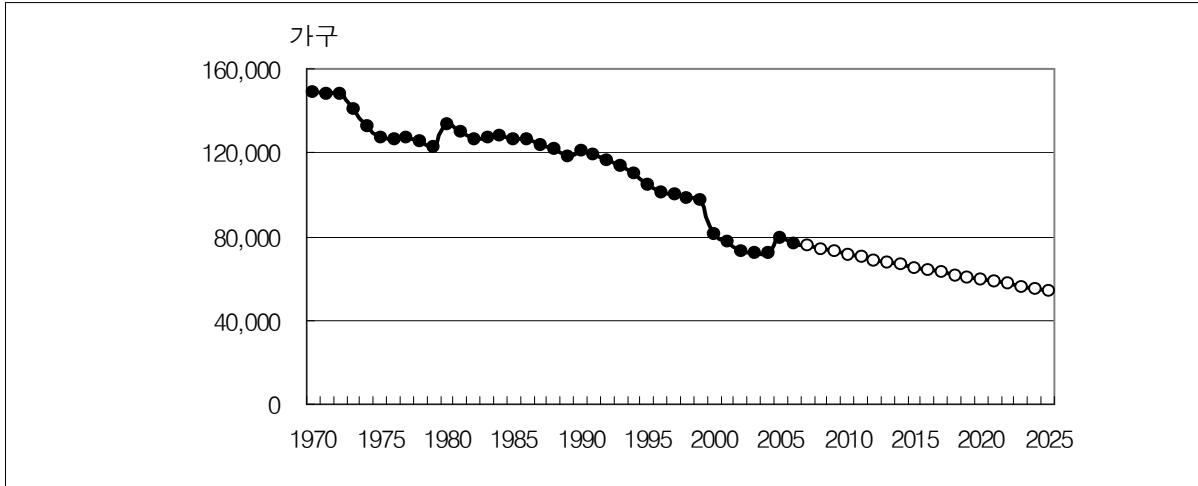
2010년 36.1%, 2023년 64.0%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따라서 어촌사회의 노령화가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표 2.64> 어촌사회 지표에 대한 추세 전망(2007~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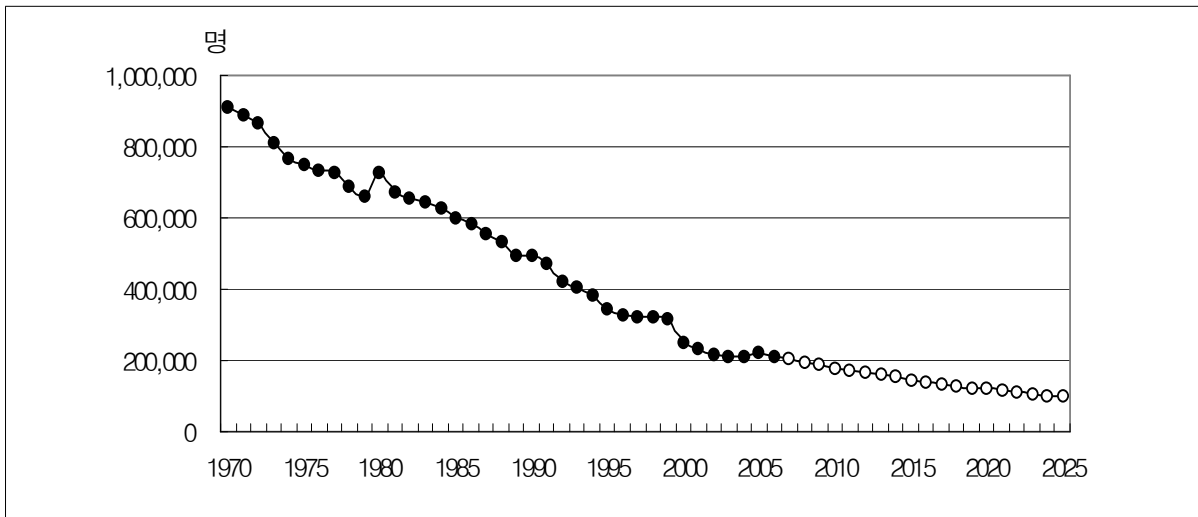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천원, %)

| 구분 | 어업가구 | 어가인구 | 어가소득 | 60대 이상 어가인구 비율 |
|----------|---------|---------|--------|-------------------|
| 1970년 | 149,107 | 912,612 | - | 6.2 |
| 1980년 | 134,109 | 725,314 | 2,596 | 6.8 |
| 1990년 | 121,525 | 496,089 | 10,023 | 10.8 |
| 2000년 | 81,571 | 251,349 | 18,875 | 20.8 |
| 2005년 | 79,942 | 221,132 | 28,028 | 28.3 |
| 2006년(A) | 77,001 | 211,610 | 30,006 | 30.3 |
| 2007년 | 75,600 | 203,191 | 31,403 | 31.6 |
| 2010년(B) | 71,550 | 179,891 | 35,994 | 36.1 |
| 2013년 | 67,785 | 160,061 | 41,509 | 41.4 |
| 2015년 | 65,275 | 146,841 | 45,187 | 44.9 |
| 2020년 | 59,550 | 119,864 | 56,728 | 56.0 |
| 2023년(C) | 56,360 | 106,119 | 65,023 | 64.0 |
| B/A(%) | -7.1 | -13.0 | 20.0 | 19.1 |
| C/A(%) | -26.8 | -49.9 | 116.7 | 1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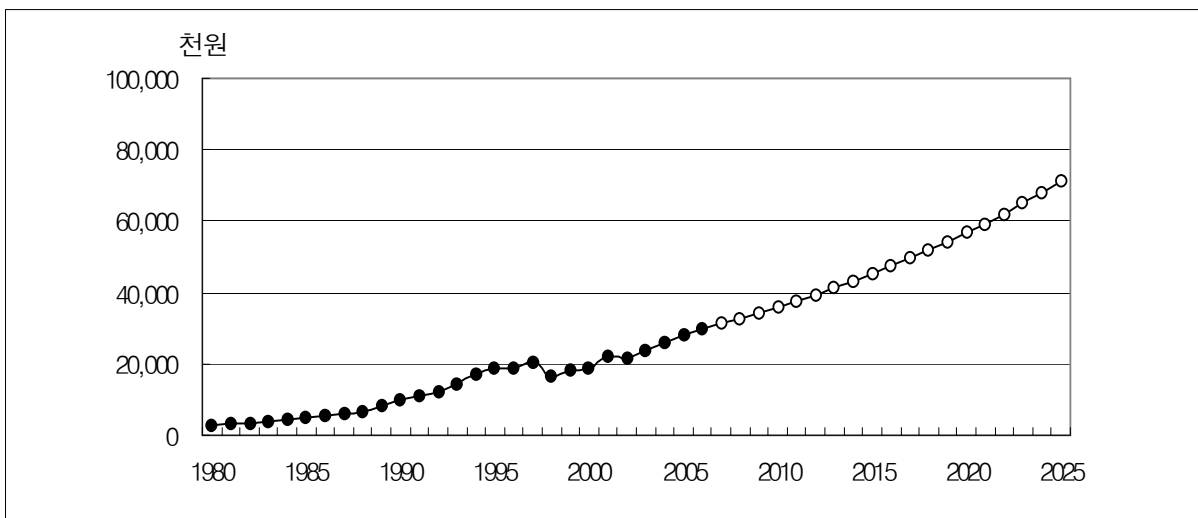
※주) 1970년~2006년까지 통계자료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2023년까지의 추세를 전망함. 이상의 결과는 해당 지표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한 것이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계량모형의 구축을 통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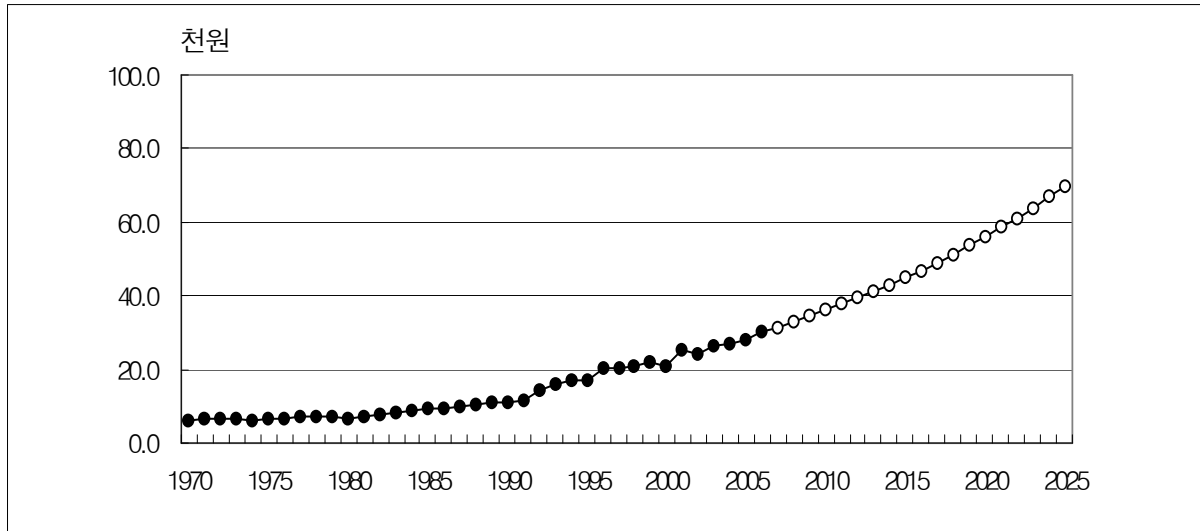
<그림 2.21> 어업가구의 장기 추세 전망



<그림 2.22> 어가인구의 장기 추세 전망



<그림 2.23> 어가소득의 장기 추세 전망



<그림 2.24>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의 장기 추세 전망

(2) 종합전망

- 향후 어업인력의 감소 및 어촌의 노령화가 향후 어촌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정부에서 어업인 복지확충 및 어촌개발 등 어촌사회의 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경우 그 감소폭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 한편, 어촌사회의 노령화는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 증가추세를 확인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소한의 어촌사회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어촌에 청장년층 신규인력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어촌에 정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 5일제의 정착으로 인해 어촌관광 및 해양레포츠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촌지역에 부존해 있는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적 휴양공간과 어업외 소득원으로서 연안/내수면 워터프론트 종합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는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 레저관광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수산부문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 할 수 있음

- 생계형 어업 및 상업형 어업 간, 그리고 어촌계 내부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농촌 및 도시와의 소득격차 심화,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어촌사회에서 어가간의 양극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생계형 어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함
- 향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자가 어촌관광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어촌지역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의 정주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 어촌관련 사업실태 분석

(1) 어촌종합개발사업

- 05년까지 완공된 권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권역별 평균 어촌계수는 6.6개소로 나타났으며, 어촌계 평균 투자비는 4.9억 원으로 분석되었음
 - 어촌종합개발사업 1단계는 권역별로 생산기반 SOC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분산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음

<표 2.65>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억원)

| 구 분 | 계 | 1단계 투자실적 ('94년 ~ '05년) | 2단계 시범사업 수립중 ('06년 ~ '07년) | 2단계 투자계획 ('08년 ~ '13년) |
|---------------|-------|----------------------------|--------------------------------|----------------------------|
| 권역수 (어촌계수) | 225 | 152 (996) | 20(8개 잔여권역 포함) | 53 (미정) |
| 사업비 | 8,795 | 4,878 | - | - |

- 사업종류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생산기반시설 66.2%, 소득기반시설 28.4%, 생활·복지시설 3.4% 순으로 나타났음
 - 생산기반시설의 어항시설(전체 사업비의 47.1%)은 소규모포구의 방파제, 물량장 등 어촌의 생산기반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표 2.66> 1단계 160권역('94 - '08년) 사업종류별 지원(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계 | 점유율(%) |
|---------|------------|---------|--------|
| 합 계 | | 554,425 | 100 |
| 생산기반시설 | 소 계 | 366,972 | 66.2 |
| | 어항시설 | 260,901 | 47.1 |
| | 해안시설(도로포함) | 106,071 | 19.1 |
| 소득기반시설 | 소 계 | 157,256 | 28.4 |
| | 육상수산시설 | 78,454 | 14.1 |
| | 유통시설 | 12,396 | 22.3 |
| | 어촌관광시설 | 66,406 | 12.0 |
| 생활·복지시설 | 소 계 | 30,197 | 3.4 |
| | 생활환경개선 | 8,625 | 1.5 |
| | 어민복지시설 | 21,572 | 3.9 |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은 총 112개소 가운데 2006년까지 76개소 497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내년에도 11개소를 지원중이며,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 개소당 5억원 규모로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지원

<표 2.67>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기 시 행 | | | | | | | '07년 | '08 이후 | |
|-----|------|-------------|-------|-------|-------|-------|--------|-----------|--------|--------|--------|
| | | '01시 범사업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6 까지 | | | |
| 사업량 | 112 | 9 | 8 | 11 | 12 | 18 | 18 | 76 | 11 | 25 | |
| 사업비 | 계 | 70,322 | 9,422 | 4,000 | 5,500 | 6,000 | 11,000 | 13,800 | 49,722 | 8,100 | 12,500 |
| | 보 조 | 35,161 | 4,711 | 2,000 | 2,750 | 3,000 | 5,500 | 6,900 | 24,861 | 4,050 | 6,250 |
| | 지방비 | 31,645 | 4,240 | 1,800 | 2,475 | 2,700 | 4,950 | 6,210 | 22,375 | 3,645 | 5,625 |
| | 자부담 | 3,516 | 471 | 200 | 275 | 300 | 550 | 690 | 2,486 | 405 | 625 |

<표 2.68>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 구 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006까지 | 76 | 2 | 4 | 0 | 8 | 6 | 7 | 4 | 20 | 7 | 12 | 6 |
| 2007계획 | 11 | | | | | 1 | | | 6 | | 4 | |
| 장래조성계획 | 25 | - | 1 | - | 2 | 2 | 4 | 2 | 5 | 3 | 2 | 4 |
| 합 계 | 112 | 2 | 5 | 0 | 10 | 9 | 11 | 6 | 31 | 10 | 18 | 10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생산기반 SOC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벗어나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외 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해 권역당 50억원 및 60억원, 18개소(시도별)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 권역당 지원규모 : 50억원 및 60억원
 - 총사업 개소 : 18개소(시도별)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지원내용 :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민박시설,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갯벌, 어업, 조류 등), 낚시터(잔교),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담수생태공원, 휴양림, 해안산책로, 해안자전거도로, 주차장, 조형물 등

<표 2.69> 어촌관광모델사업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억원)

| 구 분 | | 합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어촌 관광 모델 사업 | 사업수 | 18 | 1 | 2 | 2 | 1 | 2 | 1 | 1 | 2 | 2 | 2 | 2 |
| | 사업비 | 1,019 | 60 | 110 | 110 | 60 | 110 | 62 | 60 | 110 | 110 | 110 | 117 |

(4) 어촌민속전시관

-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계자원화로

어업외 소득을 도모하고, 어촌지역에 산재한 고유민속과 전통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함으로써 어촌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를 위하여 1998년~2006년까지 총사업비 686억원(국고보조 243억원, 지방비 및 자담 443억원)을 투자하여 어촌민속전시관 7개소와 울산 고래박물관 등 2개소 개발 완료

- 지원규모 : 고래박물관 등 (울산) 119억원, 어촌민속전시관 개소당 60억원 중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되, 초과 금액은 사업자 부담.
- 총 사업개소 : 9개소
- 사업기간 : 1998년 - 2008년
- 지원내용 : 전시실, 영상관, 체험실, 휴식시설 부대시설 등

<표 2.70>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투자실적(1998년 ~ 2006년)

(단위: 개소, 억원)

| 구 분 | | 계 | 완도 | 삼척 | 거제 | 안산 | 영덕 | 부산 | 제주 | 울산 |
|-----------------------|-----|-----|----|----|----|----|----|----|-----|-----|
|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 사업수 | 9 | 1 | 1 | 1 | 1 | 1 | 1 | 1 | 2 |
| | 사업비 | 686 | 65 | 60 | 89 | 86 | 69 | 73 | 125 | 119 |

3) 어촌관련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1) 어촌관련 사업의 효과

① 어촌종합개발사업

- 낙후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어가의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
 - 어선계류 : 어선의 생산성 향상, 태풍시 선박 등 재산보호
 - 해안도로 : 물자 수송능률 향상, 어장접근도 향상
 - 소득시설 : 어업 및 어업외소득 향상에 기여
- 기존 행정기관중심에서 어촌계주민 다수의 의견과 수요를 고려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토대구축, 행정기관과 주민간 일체감 조성 및 지역사회 귀속감 제고
- 타부문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어촌숙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음
 - 선양장, 공동작업장, 어업인대기소, 어장진입로, 탈의실 등
- 1단계에서 총 5,545억원을 투자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 2.71>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산업연관 효과

(단위: 백만원)

| 투자금액 | 생산파급효과 | 고용파급효과 | 소득파급효과 | 부가가치파급효과 |
|---------|-----------|--------|---------|----------|
| 554,530 | 1,106,585 | 11,524 | 235,546 | 463,409 |

②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경제적 효과 및 영향

- 기존 어촌관광개발사업(숙박, 횃집 등)이 외지자본의 상업적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체험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
- 어촌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어촌관광 관련 소득 증대
- 자연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이용·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 유도
- 어촌관광 기반시설 투자로 지역경제에 간접파급효과 유발

◦ 사회적 효과 및 영향

-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업·생태·해양레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어촌지역과 교류확대
- 도시민의 어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해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업의 시행을 통한 어촌마을 주민들의 협동심 제고
- 마을 주민들의 자기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애항심 고양
- 어촌의 생태 및 경관을 보전하고 사적, 문화재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등산로, 간이주차장, 수변산책로, 해수욕장 및 야영장 등 어촌관광기반시설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의식 제고

◦ 관광적 기대효과

- 기존의 빈약한 테마들을 개선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바다낚시, 해수욕 위주에서의 관광 주제의 다양성 제고
- 기존 테마인 해안산책·휴양체험, 자연경관 감상, 어업체험, 수산물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
- 따라서 현재의 당일형에서 1박 2일 및 그 이상의 장기 체제형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패턴으로 개선시킴

<표 2.7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 | 2006년 (A) | 2007년 (B) | 전년대비 C=B-A | 증가율 (C/A*100) | 2007년 마을당 평균 | |
|-------------|----------|--------------|--------------|---------------|------------------|-----------------|-----|
| 마을 수 | | 59 | 59 | 0 | | | |
| 방문객수 | | 3,521 | 5,119 | 1,598 | 45 | 87 | |
| 체험시설 이용객수 | | 731 | 1,556 | 825 | 113 | 26 | |
| 관광 소득 | 합계 | 40,801 | 52,361 | 11,560 | 28 | 887 | |
| | 체험 소득 | 소계 | 7,904 | 13,767 | 5,863 | 74 | 233 |
| |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 | 4,372 | | | 74 |
| | | 민박 | | 2,800 | | | 47 |
| | | 식사비 | | 3,384 | | | 57 |
| | | 특산물판매 | | 3,211 | | | 55 |
| | 간접소득 | 32,897 | 38,594 | 5,697 | 17 | 654 | |

◦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분석

- 2007년 어촌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59개마을 방문객수는 약 512만 명이며, 약 30%인 156만명이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한 관광소득은 524억원이며, 직접 체험소득이 약 26%인 138억원이며, 간접소득은 약 74%인 386억원으로 나타남

◦ 2007년도 마을평균 실적 분석

- 마을당 평균 87천명이 방문하여 26천명이 어촌체험을 실시하여 마을당 평균 887백만원의 관광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마을 평균 관광소득 중 체험소득이 약 26%인 233백만원(체험프로그램 이용료 74, 민박 47, 식사비 57, 특산물판매 등 55)을 차지하고, 간접소득은 약 74%인 654백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2006년) 대비 2007년 실적 분석

- 2007년은 전년대비 방문객수가 약 45%증가 하였으며, 체험시설 이용객수는 1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한 관광소득은 약 28%증가 하였으며, 그 중 체험소득이 74% 증가하고, 간접소득은 약16%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3> 어촌체험 우수마을 현황 및 사례

| 마을명 | 우수마을 현황 및 사례 |
|------|---|
| 송계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일 준공일 : 2004.12.10/2005. 8. 5 ◦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50, 자담 -) ◦ 체험시설 : 안내소, 이벤트광장, 솟대광장, 주차장 등 ◦ 체험프로그램 : 해맞이,송어축제,조개캐기,낙지잡기,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고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운영능력 탁월 ◦ 한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낙시, 낙지잡이, 조개잡이, 해수욕 등)을 즐길 수 있어 체험객들의 만족도 제고 ◦ 지역주민 전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 공동체의식 탁월 <p>※ 체험객/체험소득 : '04) 1.5천명/15백만원 → '06) 5.2천명/97백만원</p> |
| 문항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일 준공일 : 2003. 5. 7/2005. 5.19 ◦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25, 자담25) ◦ 체험시설 : 안내소,갯벌진입로,체험바지선,주차장,세족장 등 ◦ 체험프로그램 : 썩잡이,낙지잡기,굴채취,굴까기,체험요리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프로그램과 마을민박간의 연계시스템을 잘 운영 ◦ '썩잡이'이라는 프로그램을 특화상품으로 개발 ◦ 운영초기 주민간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 모두 역할분담을 잘해냄 ◦ 마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p>※ 체험객/체험소득 : '04) 5천명/40백만원 → '06) 47천명/165백만원</p> |
| 하전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일 준공일 : 2003. 6. 5/2003.11.29 ◦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25, 자담25) ◦ 체험시설 : 안내소, 갯벌체험학습장, 세족장, 주차장 등 ◦ 체험프로그램 : 조개캐기,갯벌택시,정치망,갯벌축구,달리기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어촌마을 조성 ◦ 체험프로그램(갯벌)이 명확하고 체험객 만족도가 탁월 ◦ 안내소와 체험장까지의 접근성 애로점을 “갯벌택시”, “갯벌버스”라는 이동수단으로 극복(발상전환 탁월) ◦ 마케팅 개념을 도입, 고객관계관리 활동 탁월 <p>※ 체험객/체험소득 : '04) 16천명/80백만원 → '06) 31천명/210백만원</p> |

(계속)

| 마을명 | 우수마을 현황 및 사례 |
|---------|---|
| 월하성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일 준공일 : 2003. 7.29/2004. 4.27 ◦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50, 자담 -) ◦ 체험시설 : 안내소, 진입로확포장, 가로등, 등 ◦ 체험프로그램 : 맛,바지락,낙시,골뱅이채취,햇불달밤축제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조개’잡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을 특화 ◦ 마을이름을 살린 ‘달밤 햇불축제’, ‘자하 젓 잡아 체험’ 등 새로운 아이템 개발노력 ◦ 조직구성이 잘되어 있음(청년회, 선주회, 부녀회 협력체계 갖춤) ◦ 체험마을 운영 수익금으로 마을 내 상수도 시설 설치 ※ 체험객(해수욕객 포함)/체험소득 : ‘04) 30천명/40백만원 → ‘06) 75천명/ 140백만원 |
| 대진1리 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일 준공일 : 2002. 6.25/2002.12.23 ◦ 사업비 : 850백만원(국비425, 지방비425, 자담 -) ◦ 체험시설 : 생태체험장,해양레포츠기반시설,종합안내소 등 ◦ 체험프로그램 : 스쿠버,수상스키,낙시,제트스키,멍게체험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포츠(스킨스쿠버 중심)특화 프로그램 운영 탁월 ◦ 스킨스쿠버 체험객과 어촌주민간 갈등관리 성공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운영이 잘됨(고래볼 및 대진해수욕장, 송천강 재첩잡이, 멍게양식장 등) ◦ 1사1촌 자매결연 운영이 우수(삼부토건) ※ 체험객(해수욕객 포함)/체험소득 : ‘04) 80천명/100백만원 → ‘06) 90천명/200백만원 |

③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어촌관광모델사업은 현재 사업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계획 및 집행과정, 운영 관리에 있어서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기에는 이룸

④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건립사업

- 어촌의 사라져가는 풍물과 볼거리를 수집, 소장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민에게는 관광을 통한 교육기능을 겸비하여 앞으로 다양한 유·무형의 풍물을 수집 보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체험학습장으로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전시관이 건립되면 관광수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나아가 창조적인 예술과 문화형성이 가능함. 또한 학술연구 및 학습의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함. 자연과 인류의 기원과 변천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그 나라 자연의 근본과 특

- 징 및 개성을 밝히는 길이므로, 국민의 문화적 긍지와 자존심의 기반이 됨
- 오늘날 환경오염과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의 수집, 보존은 자연에 대한 각종 기초연구의 요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양체로서의 생태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음
 - 자연사 표본의 보존,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전시제작과 교육에 활용될 때 국민의 과학화는 물론 생명존중과 환경의식의 함양을 달성할 수 있음. 이러한 목표의 전시와 교육을 첨단기법을 사용, 생동감 있게 제작, 운영할 때 초·중등학생들의 여가가 교육적이며 창의적으로 선택될 것이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2) 어촌관련 사업추진의 문제점

① 어촌종합개발사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한계
 - 기본계획수립시 지역의 개발잠재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어촌의 특성상 지역의 숙원사업에 치중하여 계획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음
 - 2001년도부터 민박, 횃집센터 등 직접적인 소득지원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생산기반 SOC 확충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사업의 실효성과 효과 저하)
- 사업집행의 지연
 - 토지구제,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표 2.7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

| 시도 | 소계 | 경영형태 | | 직영률 |
|----|----|------|----|-----|
| | | 직영 | 임대 | |
| 합계 | 89 | 27 | 65 | 30 |
| 인천 | 1 | 0 | 1 | 0 |
| 경기 | 2 | 2 | 0 | 100 |
| 강원 | 23 | 2 | 21 | 9 |
| 충남 | 7 | 5 | 2 | 71 |
| 전북 | 7 | 2 | 5 | 29 |
| 전남 | 20 | 5 | 15 | 25 |
| 경북 | 8 | 3 | 5 | 38 |
| 경남 | 16 | 4 | 15 | 25 |
| 제주 | 5 | 4 | 1 | 80 |

- 어업인(지역주민)의 책임의식 부족
 -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촌계장과 일부 임원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어촌계원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책임의식 부족
-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부족
 - 소득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전체 소득지원사업의 70%정도가 위탁 운영되고 있음

②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사업의 완결성 부족
 - 어촌체험마을은 개소당 5억 원 규모로 종합안내소, 안내판, 소공원, 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다는 관광기반사업 중심의 계획
 - 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시연(試演) 그리고 운영조직, 홍보 측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반사업에 치중된 계획이 이루어짐
- 소규모 분산지원으로 차별화·특성화 부족
 - 동일한 지역내에서 유사한 테마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선정(어촌체험마을의 고유한 테마 부재 및 경쟁력 약화)
- 사업관리
 - 기본계획, 실시계획, 사업완료에 이르는 모니터링과 관리 매뉴얼 부재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미흡, 성공지역에 대한 재투자 부족
 - 현재의 어업여건과 비교가 성과관리가 부족(단순히 방문객 집계와 입장수익만 관리)
 - 체험마을별로 발생하는 어업외소득과 어업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
- 어업인의 관리운영
 -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실질적 운영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얻지 못함(연간 1회 교육)
 - 어업인 교육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 프로그램 부족

③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계획 및 집행과정, 운영관리에 있어서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기에는 이룸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되, 해당지역의 관련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타 사업과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도 기존의 분산, 소규모 투자를 벗어나 집중투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④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건립사업

- 전체적 전시관 운영상 필요한 예산지원 부족
 -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시관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시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전시관의 운영상태가 좋지 못하는 악순환이 진행
- 각 전시관의 특색 있는 운영프로그램 및 전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각 전시관 및 해당 지자체의 전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적인 관광테마 조성이 필요
 - 각 전시관의 해당 어촌지역의 특색 있는 어촌문화를 발굴하고 어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1.3.3 개발단위 설정

- 어촌·어항과 연계하는 개발계획의 경우 종래의 개발단위는 어항의 세력권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설정과 유사하게 동·리·면을 개발단위로 설정해 왔음
- 본 계획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항의 세력권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을 개발단위로 설정할 경우 그 수가 너무 과도해질 우려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수산관련 개발계획도 대부분이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개발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표 2.75> 개발단위의 비교·검토

| 구분 | 동·리·면 단위 | 어항 세력권 단위 | 시·군·구 단위 |
|--------|--|---|---------------------------|
| 공간적 규모 | ◦ 수 km | ◦ 20~30km | ◦ 30~40km |
| 운영·관리 | ◦ 기존 어촌어항관련 계획 수준 | ◦ 규모가 시·군 단위로 운영, 관리가 어려움 | ◦ 규모가 시·군 단위로 운영, 관리가 어려움 |
| 계획 구상 | ◦ 계획구상은 단조로울 수 있으며, 지협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계획구상은 다소 다양하게 구상 할 수 있으며, 지역 권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 | ◦ 계획구상은 다소 다양하게 구상 할 수 있음 |
| 채택안 | | | ○ |

1.4 선진 사례조사

1.4.1 일본 수산업 현황

1) 수산업 동향

- 2005년 기준 수산물생산량은 약 3.8천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600천톤 정도 감소
 - 11,121천톤('80)→11,052천톤('90)→6,384천톤('00)→5,765천톤('05)
 - ※ 한국 : 2,410천톤('80)→3,275천톤('90)→2,514천톤('00)→2,714천톤('05)
- 2004년 기준 어선 척수는 24만척으로 전년도 대비 약 5백척 정도 감소 추세임
 - 322천척('80)→303천척('90)→258천척('00)→240천척('04)
 - ※ 한국 : 78천척('80)→100천척('90)→96천척('00)→91천척('05)
- 어항 투자규모는 수산예산의 53.5%로 절반이상의 예산이 어항에 투자되고 있음
 - 일본('06년) : 920억엔(수산예산 1,719억엔의 53.5%)
 - ※ 한국('06년) : 1,747억원(수산예산 8,526억원의 20.5%)

2) 어항 지정 현황

- 일본은 현재(2006. 4.기준) 전국에 2,920개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제3종어항은 어업의 거점으로 13개항이 지정되어 있음

<표 2.76> 일본의 어항지정 현황

| 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특정 제3종 | 제4종 |
|-------|-------|-----|-----|--------|-----|
| 2,920 | 2,210 | 495 | 101 | 13 | 101 |

- ※ 지정현황 : 2,733항('60)→2,781항('80)→2,931항('00)→2,920항('06)
- ※ 한국의 지정현황은 법정어항 913개항, 비법정어항 1,393개항이 존치

1.4.2 일본의 어촌·어항 개발현황

1) 최근 어촌·어항 개발동향

- 일본수산정책은 2001년 수산기본법 재정과 어항어장정비법 개정을 계기로 전환, 수산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수산물의 안정공급(자급률향상)에 두고 있으며 1975년 수준의 자원회복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자원회복, 가격경쟁력 강화,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 어업인 대책, 어업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품질위생향상, 유통개선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수입량이 줄어들면 자급률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에서의 수산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어장정비, 어항개발, 어촌진흥사업이 종전에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어항어촌 활성화 대책, 어항정비사업 등으로 연계 실시함으로써 종합적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함
- 일본은 향후 10년간 어업인수가 반감될 것으로 (22만→11만) 예측하고 이에 따른 어촌침체에 대비, 도시민과 학생의 어촌체험, 학습 등으로 교류를 촉진하는 등 어촌진흥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어항정비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가고 있음
 - 1단계 : 종래 어항시설은 자연조건 제어라고 하는 기술적 과제가 중심
 - 2단계 : 어업기능 다양화에 따른 시설 대응
 - 3단계 : 사회적 요청에 따른 어항기능 다양화, 고도화
- 어항 정비·개발이 3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영향, 주민합의, 정보공개 등 사회적인 시스템까지 고려하고 있음
- 어항어장정비사업도 수산물 자급률향상, 어촌진흥이라는 수산기본정책에 맞춰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수산업구조개혁, 소비자·국민의 관점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어촌·어항·어장 사업 추진 현황

- 어항에 있어서 특구제도의 창설 - 특정 어항시설운영 고도화추진사업
- 지역수산 종합위생관리대책 추진사업

- 안전·안심 브랜드 기반정비사업
- 수산계 부산물활용 추진모델사업
- 자연조화·활용형 어항어장 만들기 추진사업
- 자원회복지원 기반정비사업
- 풍요로운 바다숲 만들기 사업
- 풍요로운 바다와 산림을 육성하는 종합대책
- 어항교류광장 정비사업
- 어촌공간 정비사업 : 자연과 풍토의 고향 어촌 만들기
- 여성 “활기넘치는” 어촌만들기
- 재해에 강한 어항어촌만들기사업
- 방재거점 어항정비사업
- 신 마리노베이션 구상의 책정
-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추진
- 어촌 리프레쉬(refresh) 운동
- 순환형 사회에 대응한 어촌만들기 사업

1.4.3 일본의 수산정책

- 1973년 기존의 「연안어업 등 진흥법」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2001년 이후의 수산기본법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에 대한 수산물 안정공급과 어업지역의 활성화 등 국민적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구축하여, 장래 지향해야 할 수산업·어업지역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함

<표 2.77> 일본의 수산정책

| 구분 | 연안어업 등 진흥법(1973년) | 수산기본법(2001년) |
|-------|--|---|
| 정책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자의 생산성 향상 ◦ 종사자의 생활수준을 타산업과 균형 ◦ 연안어업의 진흥 ◦ 종사자의 지위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확보 ◦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 시책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중소어업을 한정적으로 시책 대상으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부문에 가공·유통까지를 포함한 수산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함 |
| 중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등의 근대화·합리화를 위한 시책이 중심 ◦ 근대화·합리화, 어획량의 증대에 의한 어가소득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 자원관리체제의 확립 ◦ 감척, 휴어 등 자원회복 조치의 계획적 실시와 경영안정 대책 ◦ 중추적 어업자의 협업촉진 등 담당자의 육성·확보 ◦ 가공·유통의 합리화, 적정한 표시 등 소비자 대책의 실시 ◦ 어업지역의 활성화 ◦ 기반정비의 일체적·계획적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 |
| 정책 수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서 정책 이념, 시책 방향 규정 ◦ 구체적 시책은 개별법 또는 예산에 의해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시책의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 |

1)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경위

<표 2.78> 일본의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경위

| 구 분 | 계획기간 | 계 획 과 제 | 실시항수 | 총사업비 (억엔) | 개선안 충족률 |
|----------------------------|-------------------------|---|--|--------------|----------------------------------|
| 제1차 | 1951년~ | 전후부흥 | 수축 450항 | 121 | |
| 제2차 | 1955년~ | 전후부흥 | 수축 604항 | 393 | |
| 제3차 | 1963년~ 1970년 (8년) | 1.원양어업근거지의 정비 2.근해어업근거지의 정비 3.연안어업근거지의 정비 4.피난항의 정비 | 수축 380항 개수 약450항 | 922 | 1970년 30% 1960년 16.2% |
| 제4차 | 1969년~ 1973년 (5년) | 1.국민식량으로서 수산물 생산 확보 2.어획물의 유통개선 3.지역사회의 기반강화 | 수축 370항 개수 약550항 | 1,610 | 1973년 48.4% 1966년 21.8% |
| 제5차 | 1973년~ 1977년 (5년) | 1.유통체계의 강화 2.생산활동의 원활화 3.밝은 어촌의 건설 | 수축 420항 개수 약665항 | 3,408 | 1977년 50% 1969년 24% |
| 제6차 | 1977년~ 1982년 (6년) | 1.국민식량으로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근대적이고 매력있는 수산업의 확립 3.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 | 수축 450항 개수 약820항 | 9,944 | 1982년 50% 1974년 32% |
| 제7차 | 1982년~ 1987년 (6년) | 1.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매력있는 어업의 확립 3.어촌사회의 기반정비 | 수축 480항 개수 약870항 | 14,362 | 1987년 50% 1979년 34% |
| 제8차 | 1988년~ 1993년 (6년) | 1.일본 주변수역의 효과적 이용 2.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유통가공체제의 확립 3.활력있는 어촌의 형성 | 수축 490항 개수 약920항 | 19,618 | 1993년 50% 1985년 38% |
| 제9차 | 1994년~ 2001년 (8년) | 1.일본 주변수역의 고도이용 2.소비자 요구와 일치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3.만남으로서의 어항공간창출 4.쾌적하고 활력 있는 어항어촌 형성 3.아름다운 해변환경보전과 창조 | 수축 480항 개수 약720항 | 31,949 | 2001년 58% 1991년 48% |
| 어항 어장 정비 장기 계획 | 2002년~ 2006년 (5년) | 다음 페이지 참조 | ※현 정비계획은 양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위생관리, 취로환경개선 등 질적인 관점으로 전환 | | |

2)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개요

(1) 기본개념

-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함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정비
-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 창조
- 수산업진흥을 중심축으로 한 양호한 생활환경형성을 목표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2) 지향목표(목표연도 : 2011년)

- 1975년대 초반의 어장환경이나 연안어업의 생산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통하여 연안지역의 어장환경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어업생산량을 37만 톤까지 증산시킴. 또한 생산유통기능 고도화를 실현함
- 어업취락배수처리 실시 어촌의 인구비율을 소도시(60%) 수준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수산물의 품질, 위생관리의 기초가 되는 어항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달성함

(3) 2004년도 말 진척상황

- 어업생산량 증산 : 약6만톤(추정치)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누계
- 어촌의 처리인구비율 : 약 35%

<표 2.79> 일본의 어항정비 현황

| 사 업 량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 수산동식물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해야할 거점지 중에서 750지구를 정비함 | 604지구 (80.5%) | 623지구 (83.1%) | 638지구 (83.1%) |
| 생산유통의 효율화 및 품질 위생관리 강화를 도모해야할 곳 중 350지구를 정비함 | 318지구 (90.0%) | 323지구 (92.3%) | 326지구 (93.1%) |
| 5,000ha의 조장·간석 조성에 상응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로이 보전, 창조함 | 892ha (17.8%) | 2,282ha (43.6%) | 3,441ha (68.8%) |
|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430지구에서 실시함 | 295지구 (68.6%) | 318지구 (74.0%) | 344지구 (80.0%) |

※ 지구(地區)수는 누적착공지구 수. ()는 진척율

1.4.4 어항어장정비법과 어촌·어항법의 비교

<표 2.80> 한국과 일본의 수산관계 법령 비교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혁 | <p>어항법은 어항의 지정과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69년 5월 19일 법률 제2106호로 공포되었다. 그 후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8호로 전문개정 되었고 95년, 96년, 97년, 99년, 2001년 7차례에 걸쳐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어항법 제정 36년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품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을 개정하게 되었다.</p> | <p>어항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어업의 생산기반인 어항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1950년 4월 8일 중의원 본회의 가결, 4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 5월 2일 법률 제 13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 왔으나 어항법 제정 50년이 지난 2001년 정기국회(제151회 국회)에서 수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변화에 비추어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어항 및 어장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정을 시행하여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되었다.</p> <p>이 개정안은 2001년 5월 29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어 같은 날 전 회원 일치로 채택, 같은 달 31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 같은 해 6월 21일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재결, 같은 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6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본 법률 시행일은 2002년 4월 1일이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 | <p>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어촌·어항법 제1조 (목적)]</p> | <p>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에 의한 수산물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어항의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여 풍부하고 살기 좋은 어촌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항의 정의와 종류 및 어항지정기준 | <p>“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써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항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 항</p> <p>다.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p> <p>[어촌·어항법 제2조 (정의)3]</p> <p>어항의 정의와 종류 및 어항지정기준</p> <p>지정기준</p> <p>(1) 국가어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동해안</th> <th>서해안</th> <th>남해안</th> </tr> </thead> <tbody> <tr> <td>현저 척수</td> <td>70척 이상</td> <td>70척 이상</td> <td>70척 이상</td> </tr> <tr> <td>어선 총톤수</td> <td>450톤 이상</td> <td>280톤 이상</td> <td>360톤 이상</td> </tr> <tr> <td>외래어선이 용(연간)</td> <td>100척 이상</td> <td>100척 이상</td> <td>100척 이상</td> </tr> <tr> <td>위 판 고</td> <td colspan="3">연간 2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td> </tr> <tr> <td>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td> <td colspan="3">「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td> </tr> </tbody> </table> <p>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p> <p>(2) 지방어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동해안</th> <th>서해안</th> <th>남해안</th> </tr> </thead> <tbody> <tr> <td>현저 척수</td> <td>30척 이상</td> <td>30척 이상</td> <td>30척 이상</td> </tr> <tr> <td>어선 총톤수</td> <td>90톤 이상</td> <td>70톤 이상</td> <td>80톤 이상</td> </tr> <tr> <td>외래어선이 용(연간)</td> <td>100척 이상</td> <td>100척 이상</td> <td>100척 이상</td> </tr> <tr> <td>위 판 고</td> <td colspan="3">연간 1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td> </tr> <tr> <td>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td> <td colspan="3">「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td> </tr> </tbody> </table> <p>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됨.</p> <p>(3) 어촌정주어항</p> <p>1. 현저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사·도지사 및 협의한 경우에는 현저척수 10척 이상)</p> | 구분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현저 척수 | 70척 이상 | 70척 이상 | 70척 이상 | 어선 총톤수 | 450톤 이상 | 280톤 이상 | 360톤 이상 | 외래어선이 용(연간)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위 판 고 | 연간 2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 | 구분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현저 척수 | 30척 이상 | 30척 이상 | 30척 이상 | 어선 총톤수 | 90톤 이상 | 70톤 이상 | 80톤 이상 | 외래어선이 용(연간)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위 판 고 | 연간 1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 | | <p>“어항”이라는 것은 천연 혹은 인공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지 및 시설의 종합체로 제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지정된 것이다.</p> <p>가. 제1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지방어업을 주로 하는 것</p> <p>나. 제2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제1종 어항보다 넓으며, 제3종 어항에 속하지 않는 것</p> <p>다. 제3종 어항 : 그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것</p> <p>라. 제4종 어항 : 낙도 기타 주변지역에서 어장 개발 혹은 어선의 피난 상 특히 필요한 것</p> <p>마. 특정 제3종 어항 : 제3종 어항 중 수산업의 진흥 상 특히 중요한 어항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총 13개항</p> <p>바. 이중 지정항 일부 어항어장정비법이 적용되는 항만</p> <p>지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별</th> <th>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 3 종</td> <td>①현저어선</td> <td>140척 이상 또는 2,400톤 이상인 것.</td> </tr> <tr> <td>②이용어선</td> <td>70척 이상 또는 1,600톤 이상인 것 여러 도도부현의 이용어선이 사용할 것.</td> </tr> <tr> <td>③연간어회고</td> <td>5,000톤 이상인 것.</td> </tr> <tr> <td>④시설</td> <td>(1) 점안설비(안벽 또는 물양장으로 한정) (2) 임항도로(폭3.5m이상) 또는 임항철도 (3) 하역소 (4) 어선수리장 (5) 급수 시설 (6) 급유시설 (7) 제빙시설 (8) 냉동시설 (9) 방파시설이 있는 것.</td> </tr> <tr> <td rowspan="3">제 2 종</td> <td>①현저어선</td> <td>50척 이상 또는 500톤 이상인 것.</td> </tr> <tr> <td>②이용어선</td> <td>25척 이상 또는 250톤 이상인 것.</td> </tr> <tr> <td>③연간어회고</td> <td>1,125톤 이상인 것.</td> </tr> <tr> <td>제 1 종</td> <td>제2종, 제3종 및 제4종 어항 이외의 것.</td> </tr> <tr> <td>제 4 종</td> <td>제4종 어항에 대해서는 선정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개개의 특별한 후보지마다 어장개발 또는 어선의 조난 혹은 피난상황 등을 검토하여 재량으로 결정한다.</td> </tr> <tr> <td>특 제 3 종 어항</td> <td>(1) 최근 3년간에 연간 어회고의 평균이 5만톤 이상인 것. (2) 최근 3년간 연간 입항하는 동력어선의 평균톤수가 25만톤 이상인 것. (3) 대형어선이 접안 가능한 수심 4미터 이상의 인벽의 연장(정비계획의 계획 연장을 포함한다.)이 150미터 이상인 것.</td> </tr> </tbody> </table> | 종별 | 사항 | 제 3 종 | ①현저어선 | 140척 이상 또는 2,400톤 이상인 것. | ②이용어선 | 70척 이상 또는 1,600톤 이상인 것 여러 도도부현의 이용어선이 사용할 것. | ③연간어회고 | 5,000톤 이상인 것. | ④시설 | (1) 점안설비(안벽 또는 물양장으로 한정) (2) 임항도로(폭3.5m이상) 또는 임항철도 (3) 하역소 (4) 어선수리장 (5) 급수 시설 (6) 급유시설 (7) 제빙시설 (8) 냉동시설 (9) 방파시설이 있는 것. | 제 2 종 | ①현저어선 | 50척 이상 또는 500톤 이상인 것. | ②이용어선 | 25척 이상 또는 250톤 이상인 것. | ③연간어회고 | 1,125톤 이상인 것. | 제 1 종 | 제2종, 제3종 및 제4종 어항 이외의 것. | 제 4 종 | 제4종 어항에 대해서는 선정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개개의 특별한 후보지마다 어장개발 또는 어선의 조난 혹은 피난상황 등을 검토하여 재량으로 결정한다. | 특 제 3 종 어항 | (1) 최근 3년간에 연간 어회고의 평균이 5만톤 이상인 것. (2) 최근 3년간 연간 입항하는 동력어선의 평균톤수가 25만톤 이상인 것. (3) 대형어선이 접안 가능한 수심 4미터 이상의 인벽의 연장(정비계획의 계획 연장을 포함한다.)이 150미터 이상인 것. |
| 구분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저 척수 | 70척 이상 | 70척 이상 | 7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선 총톤수 | 450톤 이상 | 280톤 이상 | 36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래어선이 용(연간)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판 고 | 연간 2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동해안 | 서해안 | 남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저 척수 | 30척 이상 | 30척 이상 | 3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선 총톤수 | 90톤 이상 | 70톤 이상 | 80톤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래어선이 용(연간)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100척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판 고 | 연간 100톤 이상(어선이용 어업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별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종 | ①현저어선 | 140척 이상 또는 2,40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이용어선 | 70척 이상 또는 1,600톤 이상인 것 여러 도도부현의 이용어선이 사용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연간어회고 | 5,00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시설 | (1) 점안설비(안벽 또는 물양장으로 한정) (2) 임항도로(폭3.5m이상) 또는 임항철도 (3) 하역소 (4) 어선수리장 (5) 급수 시설 (6) 급유시설 (7) 제빙시설 (8) 냉동시설 (9) 방파시설이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종 | ①현저어선 | 50척 이상 또는 50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이용어선 | 25척 이상 또는 25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연간어회고 | 1,125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 종 | 제2종, 제3종 및 제4종 어항 이외의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4 종 | 제4종 어항에 대해서는 선정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개개의 특별한 후보지마다 어장개발 또는 어선의 조난 혹은 피난상황 등을 검토하여 재량으로 결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제 3 종 어항 | (1) 최근 3년간에 연간 어회고의 평균이 5만톤 이상인 것. (2) 최근 3년간 연간 입항하는 동력어선의 평균톤수가 25만톤 이상인 것. (3) 대형어선이 접안 가능한 수심 4미터 이상의 인벽의 연장(정비계획의 계획 연장을 포함한다.)이 150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사업의 의의 | <p>· "어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p> <p>[어촌·어항법 제2조 (정의) 6]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조장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p> <p>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방법·시설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 2002.01.04] "어장정화·정비법"이라 함은 어장정화·정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p> <p>[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001. 1.29]</p> | <p>· 「어항어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은 ①에 열거한 사업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것 혹은 ①, 혹은 ②에 열거한 사업으로 지방공공단체 혹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① 어항시설의 신축 등 어항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및 이들 사업이외의 사업으로 어항에서의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 ② 어초설치, 수산 동식물 증식 및 양식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어장 보전사업</p> |
| 기본방침 |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조사결과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어촌·어항법 제3조 (기초조사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한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어장관리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의 보전 및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방안 3.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001. 1.29]</p> | <p>·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침(이하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서는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어항어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설과 관련사항, 어항어장정비사업 추진시 고려해야할 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p> |

(계속)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수산정책 심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정책심의회의 조사권한,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 및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과 관련된 심의는 공개하는 등에 관한 규정 |
|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공공단체가 어항어장정비사업 중 중요한 것으로 여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며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에서는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에 따라 목적,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 효과와 관련 사항 등을 정한다. ③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관계어항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정 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고,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안을 해당 공고일로부터 20일간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자유열람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수산업협동조합이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어항어장정비 사업계획을 규정한 후,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가 특정 어항어장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계획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과 관련된 폐지 및 정지 절차규정에 대해 정비특정 어항어장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정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거나 혹은 그 시행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한 취지 그 이유 등을 시행정지의 경우에는 시행을 정지한 취지 그 이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계속)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어항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5조 (어항관리청) 어항관리청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제35조 (어항관리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어항에서 그 소재지가 하나의 시정촌(市村町)....소재지의 시정촌(市村町) 제2종 ~ 제4종 어항에서 그 소재지가 하나의 시도부현(都道府縣).....소재지의 시도부현(都道府縣) 상기 이외의 어항...농림수산대신이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시로 지정하는 하나의 지방공공단체 상기 ①-③외에 어항 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 협의로 하나의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선정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어항관리자의직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어촌·어항법 제35조 (어항관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관리자는 어항관리규정을 정해 적절한 어항의 유지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작성을 시행한다. |
| 어항관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①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어항관리협의회는 어항관리규정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어촌·어항법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관리자는 어항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회를 둘 수 있다. 어항관리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 어항관리규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6조 (어항관리규정) ①어항관리청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촌·어항법 제36조 (어항관리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관리자는 어항시설의 유지, 보전 및 운영 기타 유지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것을 공시함과 동시에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한다. |
| 이용 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어촌·어항법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항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 어항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9년 5월 19일 제정된 어항법에는 “제22조 (어항대장)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으나, 1993년 6월 11일 전문개정된 어항법부터 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어항법 1969.3.19 제22조 (어항대장) 및 【어항법 1993.6.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관리자는 관리할 어항에 대한 어항대장 작성이 필요하다. |
| 어항시설 처분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시설의 환경 변경, 소재장소 변경, 양도, 임대, 수거 기타 처분 시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

(계속)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어항시설 처분제한 | <p>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당해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비치하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p>【어촌·어항법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양여),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p> | |
| 어항시설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④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⑦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항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어항관계자 이외의 자가 기본시설인 어항시설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이들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이용방법 및 요율을 정하여 어항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계속)

| 항목 | 어촌·어항법 | 어항·어장·정비법 |
|--------------|---|--|
| 어항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지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3. 어항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지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①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어항관리청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어촌·어항법 제45조 (금지행위), 제46조 (원상회복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구역내의 수역, 공공 공지에서서의 공작물 건설, 개량, 토사 채취, 토지굴착, 성토, 오수방류, 오물방지, 수면·토지 점유를 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어항구역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는 어항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또한 어항구역(어항관리자가 지정한 구역)내에서 함부로 선박, 자동차 등의 방치 등을 금지하다. |
| 감독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준용한다. <p>【어촌·어항법 제43조 (변상금의 징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관리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작물을 건설한 자등에 대해 개축, 이전 혹은 제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또한 방치정 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자에 의한 대리 집행이 가능하다. |
| 간주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의 구역 밖에 있더라도 시정촌(市町村)장 혹은 시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얻으며,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어항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
| 무이자대부 (보조금형) | - | ▫ 어항어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무이자 대부. |
| (수익 회수형) | - | ▫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특정정비사업과 관련한 무이자 대부. |

1.4.5 일본의 어항·어장·어촌 정비 사례

1) 「지역HACCP」와 연대한 위생관리형 어장 만들기 : 홋카이도 시베츠 어장

(1)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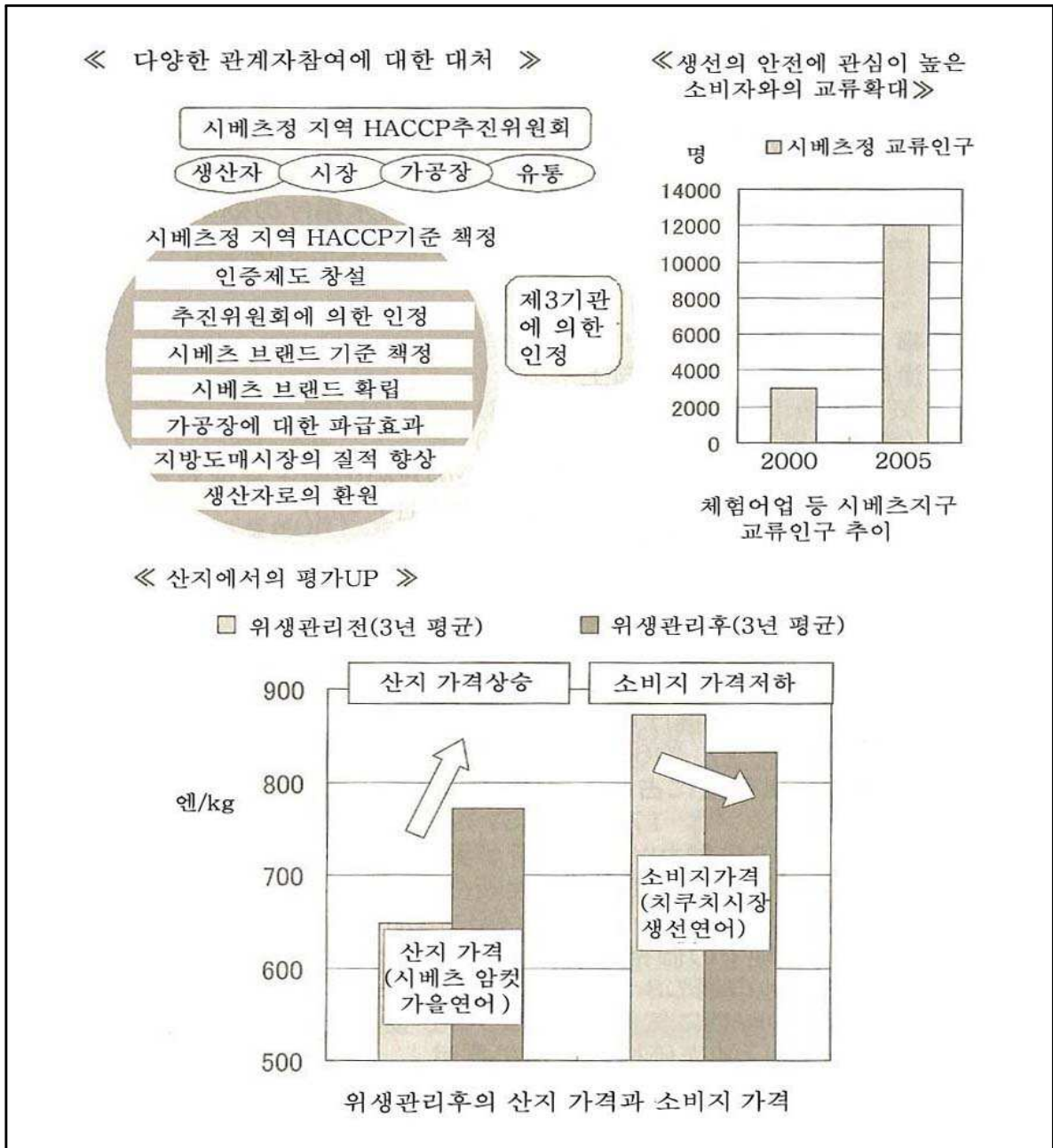
- O-157 식중독사건의 과장된 피해로 지방의 주요 수산가공품인 절인 생선류 판매량과 가격이 저조
- => 주요 품목인 연어, 가리비 등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대처강화 도모

(2) 사업·대처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 공급 기지를 목적으로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의 위생관리시스템구축
- 지역 HACCP의 대처(소프트 대책)
 - 시베츠 지역의 수산업계(생산, 육양, 가공, 유통)가 일원화되어 「지역 HACCP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생관리실시
- 시베츠지구 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하드 지원)(2002년~2007년)
 - (위생관리형계류시설, 청정해수도입시설, 배수처리시설, 도로 등 정비)

(3) 사업효과

- 취급수산물의 선도유지
 - 어획에서 육양·유통에 이르기까지 8℃이하의 어체 온도 실현
- 국내시장에서 천연 가을연어 침투
 - 많은 양판점이 시베츠 어항의 가을연어 수량시찰
 - 국내양판점 등이 국내천연물을 많이 다루는 계기가 됨
- 위생관리(HACCP대응)로 인한 산지가격향상
 - 소비지시장의 거래가격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위생관리대책으로 시베츠의 가을 연어 산지거래가격이 상승
 - 중국으로 가을연어 수출(선도가 좋아 품질을 높게 평가)
(중국으로의 수출량 28만 톤(2004년) -> 70만 톤(2005년))
 - 어업체험 등 도시어촌교류의 활성화 : 위생관리대처를 계기로 지역의 가을 연어 등을 이용해 소비자 와 어업관계자의 교류가 활발해짐



<그림 2.25> 위생관리형 어장의 효과

2) 「해업²⁴⁾」 진흥을 위한 다른 현과의 어업 연합, 지역주민과 연대 : 카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1) 과제

- 일본유수의 참치 양륙항으로 발전하였으나 원양어업저조 등으로 양륙량, 양륙 금액도 감소. 어항이용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활로의 개척이 필요

24) 수산업 기능 및 다목적 해상 레포츠를 통합한 어업 진흥을 위한 정책 용어임

- 근린도시권의 조건을 살려 활어 등의 출하거점지로서 정비
- 재해 발생시에도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는 산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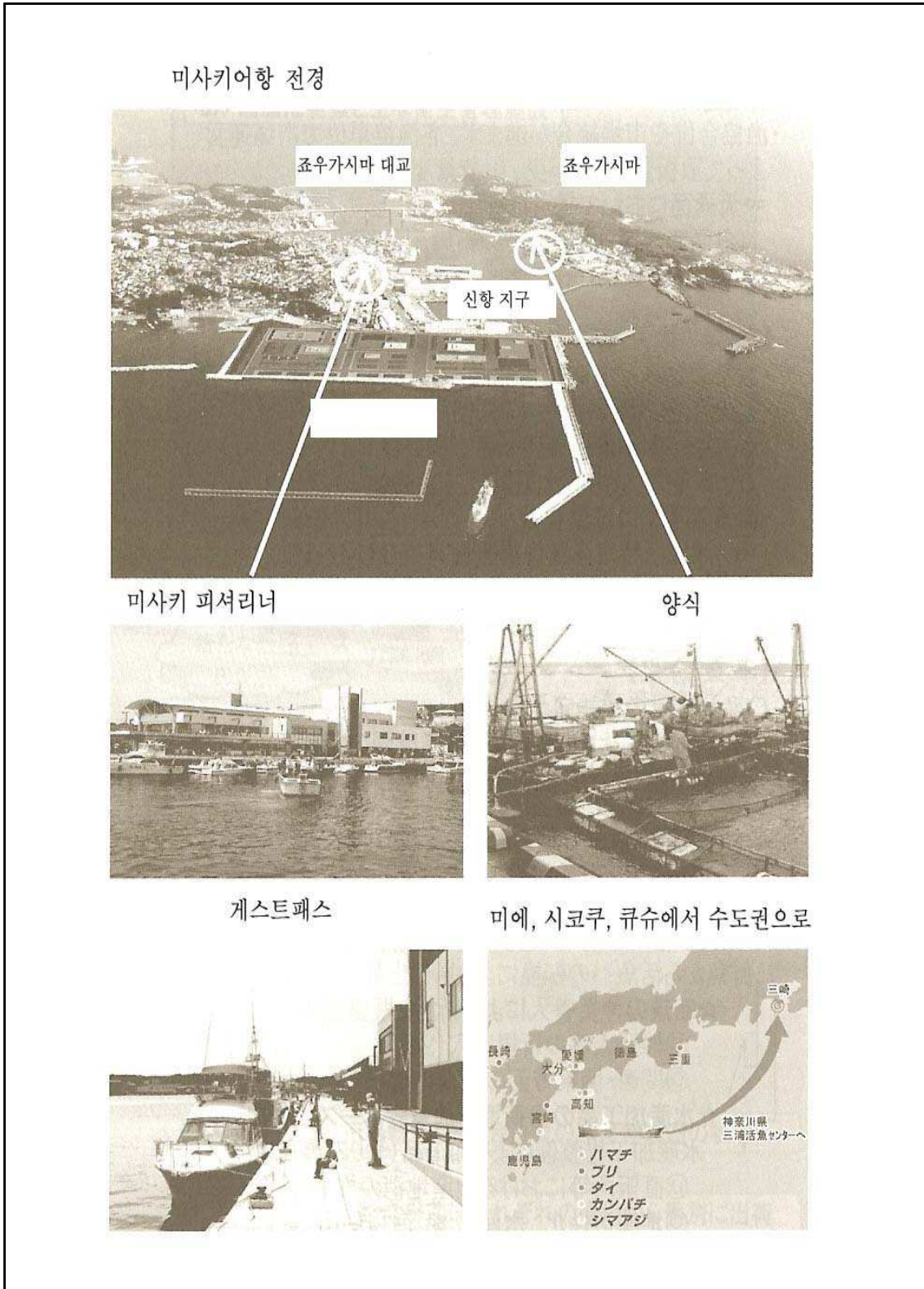
(2) 사업·대처

- 도시형 다목적어항으로서의 수산업진흥
 - 양식수면확보를 통한 다른 현의 어련(漁連)과의 연대로 출하거점화, 가공유통시설 집약화, 위생관리의 선진적 대처
- 수산업진흥에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업진흥에 대한 대처
 - 수산가공단지 유치, 레저보트 이용 시의 계류시설정비, 어항용지활용으로 「우라리(裏流)」, 「하마유우(어협 식당)」 등의 지역진흥을 도모
- 시설내진화로 방재기능 확보, 죠가시마의 고립화방지
 - 내진강화안벽정비, 임향도로 교각의 내진화

(3) 사업효과

- 수도권 소비지에 대한 4가지 조건 등으로 유통요구에 대응가능
 - 정량 : 다른 현의 어련(미에, 시코쿠, 큐슈)과의 연대로 참돔, 잿방어, 새끼방어로 이루어진 양식 삼종세트로 정량출하 실현
 - 정질 : 보기 좋고 맛있을 때에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시간조정 실현
 - 정가 : 반입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일정한 가격으로 출하가 가능
 - 정시 : 일부 양식 활어의 수도권으로의 출하 시 수주 후 약 3시간에 판매처 반입이 가능
 - 수도권, 동 일본에서 미에, 시코쿠, 큐슈로부터의 양식 활어가 보급됨
활어반입량(전용운반선) 13,700t/회 ->29,700t/년 (2011년 목표)
- 모델 시프트(modal shift) 수송비용 감축, CO2배출량 삭감
 - 수송량은 화물10t트럭 1t/회 -> 활어운반선 40t/회
(40회 왕복분에 해당, 수송비용은 트럭수송의 1/20이하로 감축)
 - 배출량은 트럭 172g-CO₂/tkm -> 선박 38g-CO₂/tkm(1/4이하로)
- 해업진흥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
 - 「우라리(裏流)」 레저 보트로 교류거점은 이용객 100만 명/년
 - 「활어센터」 90~120명 고용(지방고용이 약90%)

- 자재구입, 수송, 시설이용 등으로 경제파급효과



<그림 2.26> 카나가와현 미사키 어항

3) 어항의 종합적 기능정비~자연조화형 어항과의 일원화정비 : 아키타현 카네우라어항

(1) 과제

- 어초와 증식장정비로 생산량은 안정되었으나 생선가격저하로 양륙금액 신장저조가 문제시 됨
- => 소비자요구가 높은 전복, 게, 넙치 등의 자원증대를 위한 대처가 필요(수산생물의 양호한 생식환경의 장을 어항, 어장에서 일원화하여 정비, 어업육성과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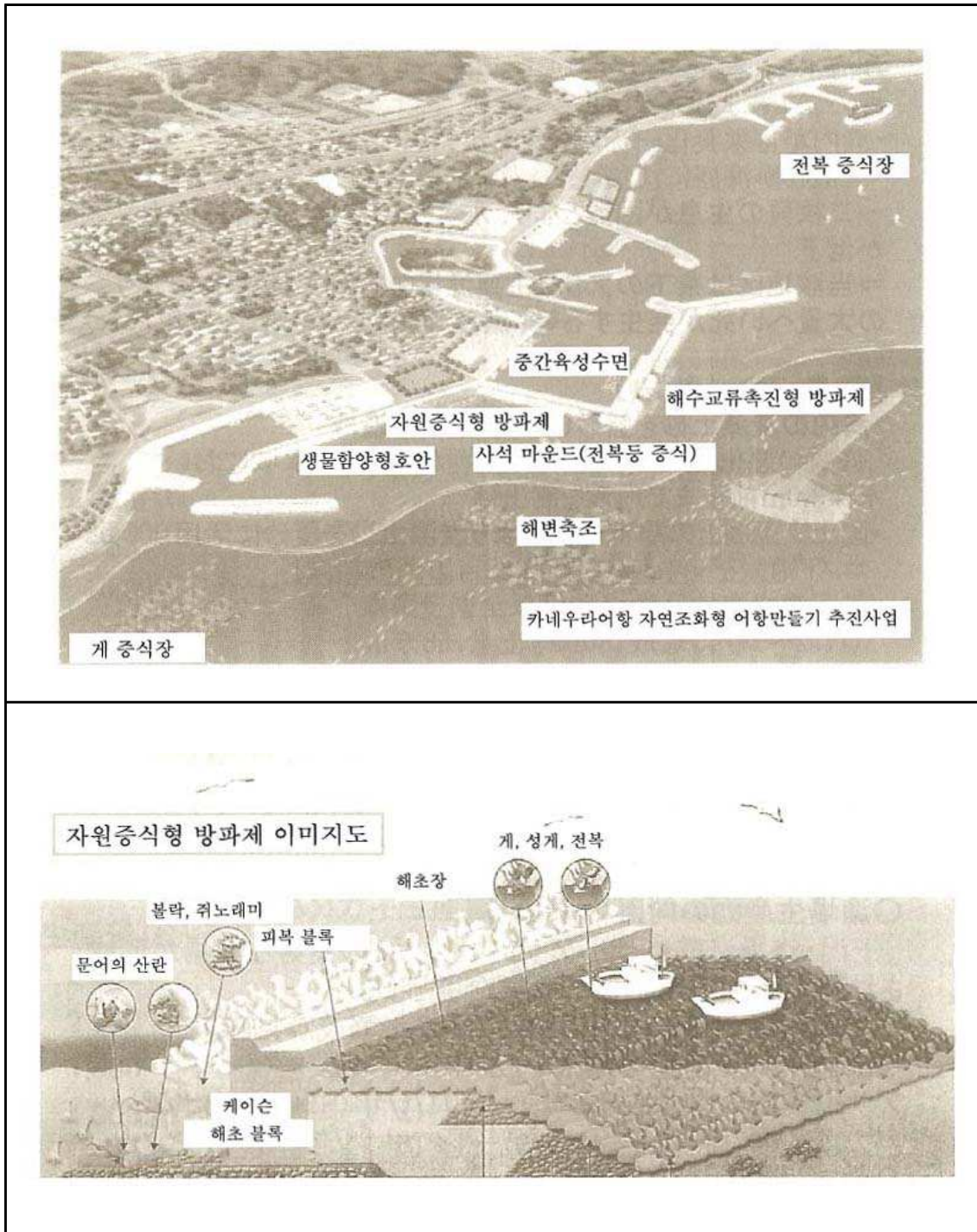
(2) 사업·대처

- 자연 조화형 어장 만들기
 - 항내의 평온함 확보와 수질향상을 양립
 - (해수교류와 조장조성(마운드부 활용)이 가능한 방파제)
 - 어항의 수역을 어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어장정비와 연대)
- 어업육성과 연대
 - 박지에서의 양식·중간육성
 - 항내에서의 해양자원 등의 증식
 - 어항의 시설정비(투석 마운드 등)와 방류사업과의 연대
- 카네우라 지구의 수산물공급기반정비사업
 - (2002년~2011년, 자연조화형 어항 만들기를 위한 시설정비)

(3) 사업효과

- 항내의 수질향상
 - COD2.8mg/L(1995년) -> 1.4mg/L(2004년)
 - ※ 환경기반유형 B -> 유형 A로
 - DO6.3mg/L(구항 내) -> 6.8mg/L(신항 내)
 - ※ 환경기반유형 B로의 향상
- 해양자원 증식
 - 전복: 10t/년 -> 12t/년, 석굴 : 124t/년 -> 154t/년으로
- 중간육성효과 참돔 : 20만 마리 중간육성으로 자원증가
- 치어방류 연대
 - 조장증대로 전복의 양식장확대와 어획량증대

- 참돔 등의 방류어종 보육원으로서의 역할
- 지역진흥에 대한 대처
 - 어획증가에 따라 가공품 개발 · 판매(가자미 가공품을 지방, 수도권에서 판매), 하타하타 축제 등과 같은 지역 이벤트, 관광, 도시교류와의 연대



<그림 2.27> 카네우라 어항

4) 생산자 스스로 시행하는 판매에 대한 대처 :후쿠오카현 닛소지구

(1)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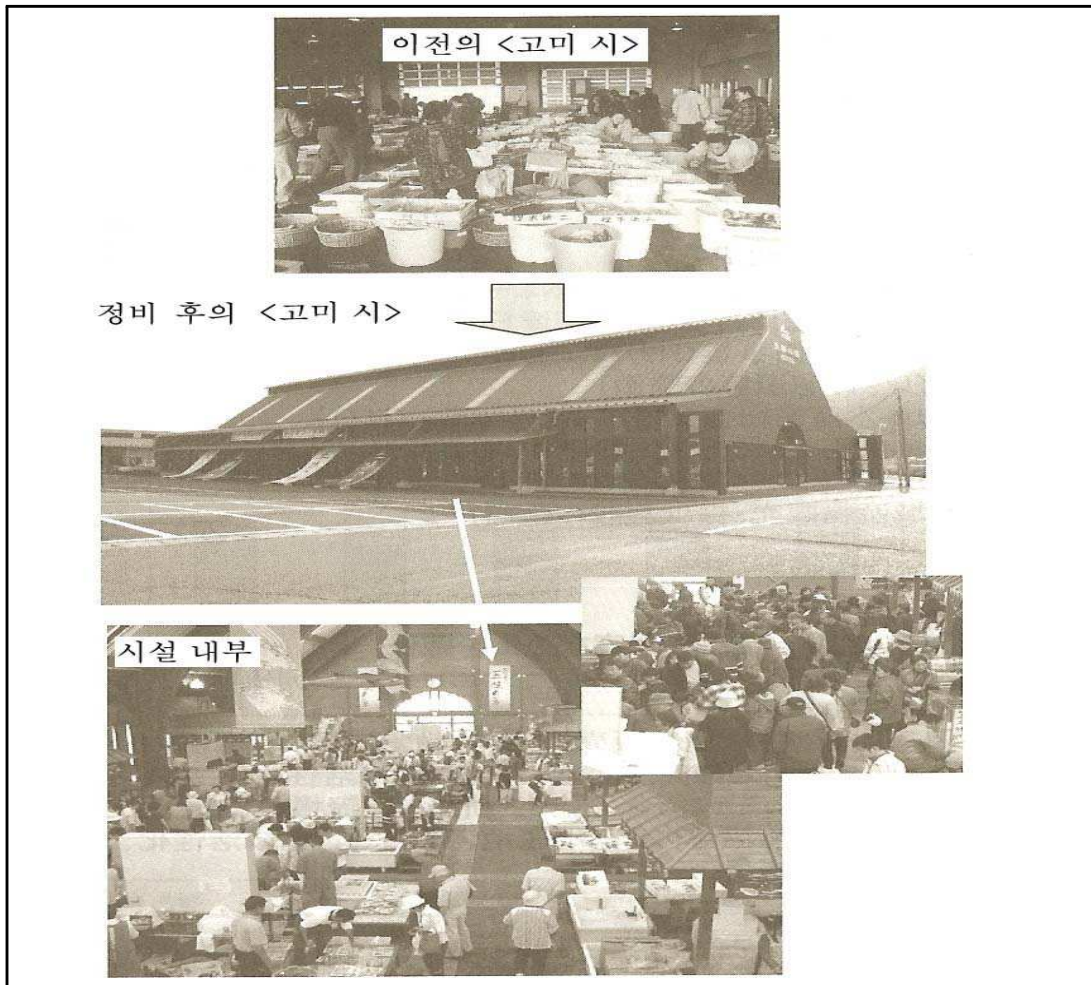
- 경매로 팔고 남은 소량의 다품종 생선을 버리지 않고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좁은 하역소를 이용하여 1955년부터 「고미시」를 개시
 - 현은 원래부터 외지에서 관광객이 방문하여
 - 그날 양륙된 선어만을 판매하므로 물건이 불충분
 - 하역된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 ·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며 비위생적인 인상을 줌
- => 직판시설로서의 기능 확충
- => 안심과 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위생관리의 고도화

(2) 사업

- 지구의 기간산지인 어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진흥과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물판매 · 제공시설을 정비
- 판매종사자의 증강, 가공품판매, 택배코너설치로 기능향상
- 신 어촌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2004년)
 - 활어수조정비, 매장 · 저질 개선, 세면장 · 방문객용 화장실 설치

(3) 사업효과

- 판매력과 위생관리체제가 향상되어 시설에서의 판매액 증가
 - (어가경영유지 · 안정화, 판매액 약1억2천만엔 향상)
- 도시주민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관광객 등은 연간 30만 명
 - 약 60%는 칸사이를 중심으로 한 현 이외로부터의 관광객
 - 신선하고 맛이 좋은 산지의 확실한 어패류를 싼 가격으로 구입가능
 - 요리방법과 양륙장소 등의 정보 입수가능 : 어부와 직접적인 대면판매
 - 어패류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터칭 그룹으로 아이들도 즐길 수 있음
 -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소유시키시 미관지구의 뒤를 잇는 현 내 제2위 지역



<그림 2.28> 후쿠오카현 닛쇼지구

5) 어획고에 좌우되지 않는 관광어항에 대한 대처 : 고우치현 쿠보츠지구

(1)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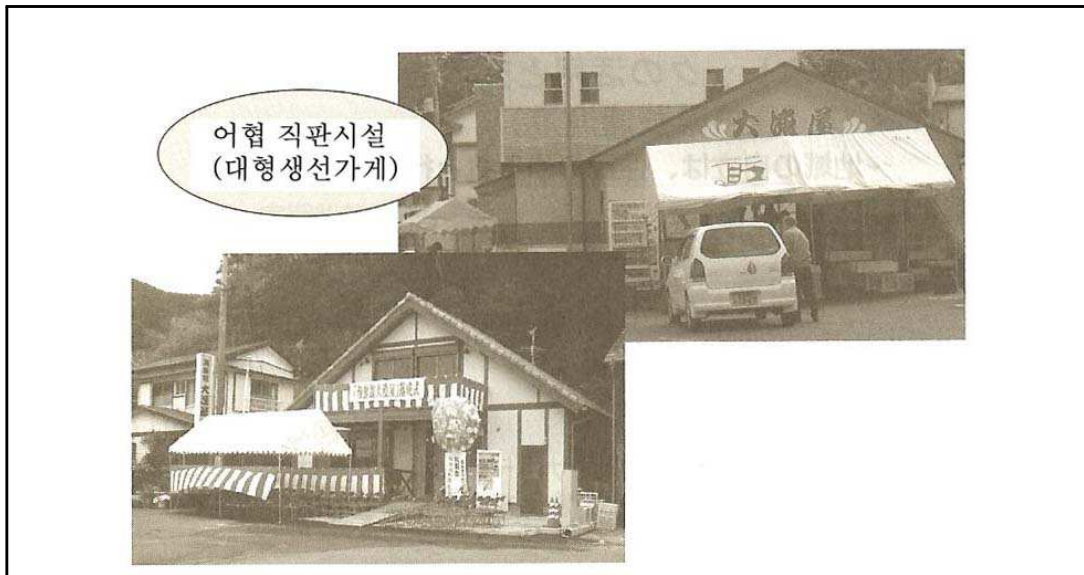
- 어업자의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가 현저한 가운데 어업경영은 어획고에 좌우되어 불안정
=> 어가경영안정을 위해 관광어업 도입
=> 어업자의 재정개선과 도시주민과의 교류거점 확보

(2) 사업·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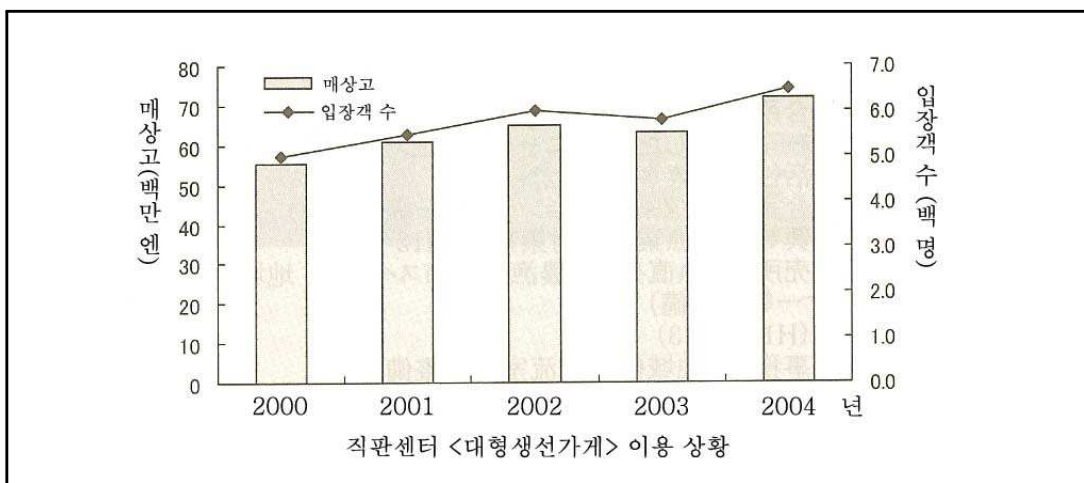
- 쿠보츠 어협이 관광정치망, 웨일왓칭(whale watching), 고기잡이어선, 바다의 날 축제, 쿠보츠항 축제, 쿠보츠 일요아침시장 등 개시
 - 어항환경정비사업(1997) : 화장실, 휴게실 등 정비
 - 고우치현 수산업 종합지원사업(1999) : 어협직판센터 「대형어류마트」 정비
 -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2005) : 지역산물 판매·제공 시설 정비

(3) 사업효과

- 어협의 직판시설로 착실한 매상확보
 - 「대형어류마트」의 판매고 55백만엔(2000년) => 72백만엔(2004년)
- 고용기회 창출
 - 2005년 개업한 지역산물판매·제공시설로 새로운 고용 6명
 - 지구 밖과의 교류가 번성해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짐
 - 지역커뮤니티강화(새로운 교류의장 출현)
 - 직판시설 등으로 산지소비추진, 지역 활성화, 수산업진흥



<그림 2.29> 어협 직판시설



<그림 2.30> 사업효과

<표 2.81> 어협체험 등의 이용상황(2003년 실적)

| 내 용 | 이용자수 | 집객 지역 | 비고 |
|----------------------|---------|---------|------|
| 관광정치망 | 255명 | 현내, 도시부 | 적요 |
| 웨일왓칭(whale watching) | 56명 | 현내, 도시부 | 적요 |
| 쿠보츠항구축제 | 800명 | 지방, 현내 | 연 1회 |
| 어협직판센터 | 51,000명 | 지방, 현내 | 통상연도 |

6) 기존 스탁활용과 교류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 시마네현 히시우라 어항

(1) 과제

- 인간(교류), 물건(지역자원 발굴), 돈(외화획득), 정보(네트워크) 등의 거점 미정비
=> 정기선 이발착시설과 병합된 복합시설정비를 검토
(농림수산업과 관광업을 종합한 교류사업 혹은 농어촌 체재형 여가활용 전개)
- => 여객선의 거점화를 도모하며 대기실기능을 충실히 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구매·음식 서포트 기능과 일원화
(교류인구확대,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로 지역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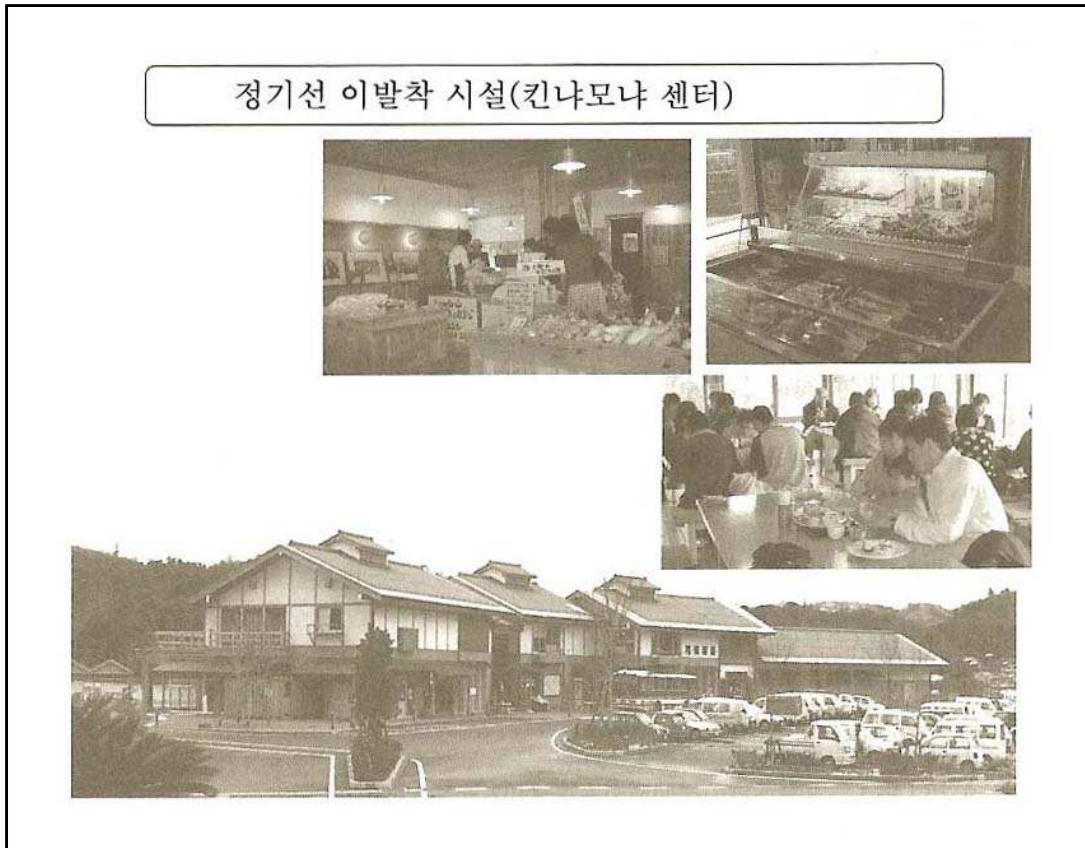
(2) 사업·대처

- 어항의 기존스톡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거점으로서 각종 시설을 함께 설비한 정기선 이발착 시설을 정비
 - 정기선대기실, 선어직판장, 지역식재 제공, 인포메이션센터를 함께 설비한 「킨야모야센터」정비
 - 어장어촌활성화 대책사업(2000~2001) : 정기선대기실, 인포메이션센터 등의 정비
 - 신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특별대책사업(2000~2001) : 특산품 판매소, 선어직매장, 농어민 아침시장 스페이스, 지역식재 제공 코너 등 정비
 - 단독사업(2000~2001) : 향로관리사무소, 지역전승교류실 등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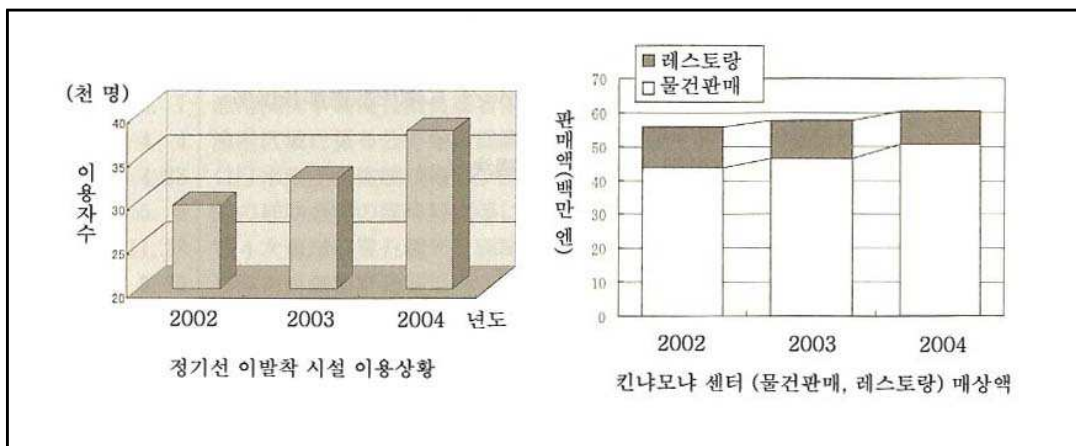
(3) 사업효과

- 마을인구(2,514명)의 10배를 넘는 연간이용자수
 - 본격적인 시설이용이 시작된 이후 시설이용자수 증가

- 2002년 2.95만 명 -> 2004년 3.81만 명
- 농수산물, 특산물, 레스토랑 등의 매상증가
- 2002년 56백만 엔 -> 2004년 60백만 엔
- 「킨야몬야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지소비추진, 지역 활성화, 수산업진흥



<그림 2.31> 정기선 이발착 시설



<그림 2.32> 사업효과

1.4.6 일본의 어촌 유형화

1) 어업 특성에 근거한 유형 : 어촌의 기본적 산업 기반인 어업에 관점

(1) 적정·안정형 어촌

- 일정한 어업조건과 자원상황 하에서 자원량과 취업자 또는 소득과의 관계가 적정한 균형을 갖는 가운데 튼튼하고 안정된 어업이 영위되는 어촌임. 활동적인 혁신성 등은 볼 수 없지만, 어업의존도는 비교적 높으며 동시에 의욕도 넘치고, 어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함. 일반적으로 타 산업의 입지와 도시민의 방문 등이 흔하지 않는 변두리형 어촌인 경향이 많음. 흔히 말하는 ‘어촌다운 어촌’이 많으며, 이러한 ‘어촌다움’에 주목한 유어와 어가 민박 등의 활성화 노력 등을 볼 수 있음

(2) 특정어업 특화형 어촌

- 어떤 특화한 어업에 의존해서 성립하고 있는 어촌을 의미함. 특정어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음. 한편, 반대로 특정어업의 대상이 되는 자원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만큼 어업경영상의 여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음
- 전자의 사례로서는 홋카이도의 가리비 양식과 연어·송어 정치망 지대, 큐슈·시고쿠 지방의 어류양식 지대, 사가현의 김 양식 지대, 혹은 우량한 어선어업 지대 등이 있음. 이들은 일정의 특화된 우량어업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어업소득이 가능한 동시에 유통 및 가공업이라는 주변관련 산업에도 효과를 미쳐, 젊은 후계자의 정착율도 비교적 높음
- 한편, 후자의 사례로서는 자원상황이 악화 정체하고 있는 일본해(동해)의 정치망 지대와 세토내해의 소형기선저인망 및 선인망 지대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후계자 부족이 문제로 대두됨
- 일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어업에 의존한 어촌은 주변, 도시근교 등의 입지 조건과는 다르게 젊은 어업후계자들이 정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의존하고 있던 특화어업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어항 어촌에서 젊은 어업자의 지역 외 유출이 많은 것은 주변 및 도시근교의 어항 어촌으로 집약됨. 이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약속된다면 적어도 어업 후계자의 정착 의향

은 지리적인 조건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음. 만약 장래의 생활설계에 불안이 많은 어업밖에 없으며 그곳에 취업기회가 적은 변두리 지역이라면, 직장을 구해 도시부 등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음. 게다가 도시근교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다양한 취업기회에 흡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어촌에서는 특화된 어업의 대상어획물 등을 활용한 활성화 사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남

(3) 주변 관련산업 의존형 어촌

- 이 유형은 도시와 공업지대, 관광거점 등의 근교에 위치하고 어업이외의 다양한 취업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 사업 의존도가 높고, 흔히 말하는 겸업어업경영이 많이 나타나는 어촌임. 젊은 어업자의 정착률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도시근교 어촌의 경우에 도시부의 다양한 고용기회에 흡수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것은 도시 자체의 매력과 다양한 고용기회의 매력이 흡인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를 시작으로 하는 연안부의 각 종 개발에 동반해서 어업 자체가 축소 내지는 소실되어 어업만으로는 자립적인 어가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어촌의 경우, 어업인 및 젊은 어업후계자의 수는 일관해서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도시부 혹은 공업 및 관광 등이 입지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 시 또는 군의 인구 자체는 증가 경향에 있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도 많음. 즉, 지역 자체의 활력은 유지고 있지만, 어업자체는 축소경향을 지역의 신선하고 맛있는 어패류와 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거점적인 소비시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어촌이 전국적인 어업생산거점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도시의 다양한 매력과 우수한 관광자원의 하나로서 ‘어업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 유형의 어촌에서는 주변 도시의 인구와 그 관광수요 등에 대응한 관광·이벤트 관련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음

(4) 어업 조건불리형 어촌

- 이 유형은 어업이 산업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어장조건과 자원조건이 열악한 수준에 있어 어업소득을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어촌임

- 최근 청정 수역 확보가 곤란한 지형적 입지 조건 때문에 증·양식어업 등의 안정적인 ‘기르는어업’의 정착이 곤란한 지역, 자원량의 한계와 어획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내해(內海)·내만(內灣)지역, 낙도 및 육상교통조건이 나쁜 반도 등에서 어획물의 출하·유통 등의 면에 문제가 많은 어촌이 바로 이 유형임
- 일반적으로 어업조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아 어업취업자 및 그 후계자에 한하지 않고 지역의 차세대 를 담당할 젊은 계층의 지역외 유출이 현저하고, 지역사회의 붕괴마저 위협하 는 경우가 많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운영의 혁신성과 원동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활성화에 관한 추진력도 미약함
- 그러나 어촌의 역할과 의의 중 많게는 이러한 조건불리지역 입지의 어촌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활성화의 의의와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수산관련기술의 비약적인 진보(외해 양식수면 의 창출, 육상양식 및 운송기술의 비약적인 진보, 증·양식관련의 중요생산을 시작으로 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기술 개발 등)는 불리한 조건 하에 놓인 수산진흥을 일정 정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향해서 조건불리지역의 정주조건 개선에 기여해 가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 지리적·입지특성에 근거한 유형 : 기본적인 지리적·입지특성에 관점

(1) 도시 및 도시 근교 입지형 어촌

- 도시 내 혹은 도시근교 입지형 어촌의 특징은 ‘어업특성에 근거한 유형’으로 보면 ‘주변 관련산업 의존형 어촌’이 상당하며, ‘사회특성에 근거한 유형’의 관점에서 보면 ‘혼주화(混住化)형 어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양 자의 특성이 중복되어 표출되고 있음. 즉,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 유형의 어촌 및 도시형 어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다양하고 매력적인 취업기회의 집적에 의한 젊은 어업후계자의 어업이탈
 - 도시 임해부의 각 종 개발에 의한 어업기반인 어장의 축소·소멸 및 오염
 - 비어업자와의 혼주(混住)가 진행되어 어업생산시설 등이 도시형 생활환경의 방해요인으로서 나타남과 동시에 과거의 어촌 공동체사회의 붕괴를 야기

- 도시화에 생산기반인 어항과 관련시설이 흡수되어 도시정비와 생활환경 형성의 면에서 의혹을 갖게 하는 시설로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있음
- 어업진흥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들 요인에서 대표되는 도시 압력에 의한 어장과 자원의 상실이라는 상황은 전술한 ‘어업조건 불리지역형 어촌’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한편에서는 도시인구, 소비력 및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집적은 어업의 진흥 면에서 커다란 잠재력임. 즉, 어업의 최종 목적인 어획물의 소비라는 점에서 보면, 도시 입지의 어업은 이미 생산지=대소비지라는 구도로서 성립하고 있음. 이러한 유리한 점도 많은데, 수도권에 어협에 의한 시민 개방형의 수산물 직판사업과 수산물을 활용한 이벤트 등에 많은 성공 사례가 많음. 또한, 도시주민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체험 학습형 관광과 도시형 해양스포츠 등, 어업 수요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한 경우에는 도시형 어업의 활성화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어장 조건 등의 요인으로 도시의 어촌이 어획물의 대규모적인 생산기지가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즈워프’와 시애틀의 어시장이 있는 거리에서 충분한 매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도시의 다양성 혹은 매력의 일부로서 도시형 수산업의 입지는 도시의 마을조성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요소로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변두리 입지형 어항 어촌

- 이 어촌에는 낙도와 반도 등과 같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교통조건도 혜택을 받지 못한 조건불리지역의 어촌의 유형이 포함됨. 이러한 변두리 입지형 어촌에 있어서도 ‘어업특성에 근거한 유형’의 분류, 기반이 튼튼하고 균형을 갖춘 어업을 영위하며 일정한 인구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적정·견실형 어촌’, 특화형의 우량어업이 입지하여 비교적 젊은 후계자도 남아 있는 ‘특정어업 특화형(우량어업)어촌’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활기가 비교적 유지
- 그러나 변두리 입지는 유일한 기간산업인 어업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2중고를 겪고 있다. ‘특정어업 특화형(사양어업) 어촌’과 ‘어업조건불리지역형 어촌’의 경우, 내재하는 문제가 심각함. 주 수입원으로서 의존하고 있는 어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면, 보완적인 수입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지역이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어촌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서 많게는 일본 주변의 연안역 전반에 걸

쳐 어촌이 정주권역이라는 것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조건불리지역의 정주촉진을 도모

- 다행히, 변두리 입지형의 어촌은 일반적으로 자연조건이 좋아 풍부한 자연과 전통적인 어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매력을 보다 증폭시켜, 도시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조건과 편리성을 뛰어 넘는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의해 새로운 취업기회와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어업의 정체를 보완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3) 사회특성에 근거한 유형 : 어촌 지역의 사회적인 특성(주로 어촌 거주자와 세대 구성원의 속성에 착안)에 관점

(1) 고령화형 어항 어촌(세대분리 정체형)

-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조건불리지역, 즉 낙도, 반도 등 변두리 지역에 입지하고 어업 이외의 주요한 산업과 취업·소득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임
- 이 유형의 어촌에서 지역 활성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인 어업 자체의 산업 혹은 소득 기회로서의 기반이 약해지고, 특히 젊은 세대가 생활설계와 장래전망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임.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역의 젊은 계층은 어업후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취업 기회와 풍부한 장래설계를 꿈꾸어 도시부 등으로 유출되어 남은 정주자의 고령화는 필연적인 것이 됨. 이들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차세대를 담당하는 젊은 계층의 감소는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어업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과 능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영의 면에서도 혁신력과 갱신력을 잃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지역 사회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고령화형 어촌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8차 어업센서스’로부터 1988년 현재 어업취업자가 100인 이상 존재하는 시정촌 가운데 전체 어업자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15~39세의 젊은 어업취업자가 10% 이하의 32개 시정촌(어업취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정촌)을 뽑아내고, 그 특징을 정리한 것임
- 이러한 유형의 어촌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유출자를 줄이고 젊은 계층이 정주하고 싶도록 하는 산업진흥을 포함한 지역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령자에게 보람과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82>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낮은 시정촌과 그 특징

| 요 인 | 특성 개요 | 대표적 시정촌 | |
|--|--|----------|------------|
| | | 시정촌명 | 젊은계층 비율(%) |
| ① 입지의 변동성 | 어항어촌이 입지하는 시정촌 자체가 변동성이 간해 시정촌 인구 자체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도에 위치하는 시정촌과 대상 시정촌 자체가 변동성리 강하고 비교적 취업기회가 집적한 지방 중핵도시가 근접해서 입지하고 있는 경우 고령화 경향이 더욱 진행되고 있다. | 石川縣 門前町 | 4.0 |
| | | 廣島縣 三原市 | 4.4 |
| | | 富山縣 朝日町 | 3.3 |
| | | 島根縣 三隅町 | 6.3 |
| ② 다른 산업의 발달 | 상공업을 시작으로 어업 이외의 다종다양한 산업과 취업기회의 혜택이 많은 도시 및 도시근교에 입지하는 시정촌의 경우, 젊은 어업취업자의 정착률은 낮다. | 富山縣 黒部町 | 3.7 |
| | | 廣島縣 三原市 | 4.5 |
| | | 宮城縣 名取市 | 3.2 |
| | | 三重縣 四日市市 | 3.4 |
| ③ 어업특성 우량 혹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하는 양식어업 및 재배어업으로의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원수준이 낮은 상황 속에서 자연에 의존한 과거의 어업이 운영되고 있다. | ③-1 정치망어업지대 홋카이도 등의 연어·송어 정치와는 다르게 자원상황의 악화가 현저한 동해에서 운영되는 정치망어업은 어획의 감소와 고단가 어종의 감소 등에 의해 종업원 급여수준을 낮게 설정해야만 라는 상황임. 이것이 젊은 계층의 어업이탈의 요인이 되고 있음 | 石川縣 門前町 | 4.0 |
| | | 富山縣 朝日町 | 3.3 |
| | | 千葉縣 和田町 | 3.6 |
| | | 京都府 宮津市 | 8.2 |
| | ③-2 소형기선저인망·선인망지대 조업특성 상 제한된 천연자원에 대해서 많은 어획압력을 가하는 그물어법이다. 내해형의 어장이 한정되는(필연적으로 자원량도 한정) 세토나이해 연안부의 시정촌이 많다. 천연자원량이 한정되어 있어 어획량이 적다. | 山口縣 平生町 | 4.4 |
| | | 廣島縣 三原市 | 4.5 |
| | | 廣島縣 光市 | 3.6 |
| | | 長崎縣 川棚町 | 3.7 |

주 : 농림수산성, 제8차 어업센서스

(2) 활성화 특화형 어촌(세대분리형)

- 특정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의 우량한 어업에 더해서 관광업과 수산가공업 등 관련 산업도 충실하여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수입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기업경영형의 대형어선의 승선원(해당 어촌 이외의 주거자 등)을 포함한 후계자가 일정 수 확보되는 어촌 유형임

- 여기서 이 유형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의 ‘제8차 어업센서스’로부터 1998년 현재의 어업취업자 수가 100인 이상 존재하는 시정촌 가운데 전어업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15~39세의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40% 이상 혹은 같은 해의 어업취업자수가 10년 전인 1978년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26개 시정촌(어업취업자 자체가 감소하지 않은 채, 젊은 어업취업자도 많은 시정촌)을 뽑아내고, 특징을 정리한 것임
- 전체 샘플 수(시정촌 수)가 26개로 적기 때문에 일반적화하기에는 어려우나, 적어도 ‘가리비, 김, 어류 등의 대규모적이고 안정적인 양식지대’를 시작으로 하는 양식지대와 단가가 높은 어종을 대상으로 순조로운 어획 신상을 보이는 훗카이도 및 토호쿠 등의 ‘연어·송어 정치망 지대’에서 전반적으로 젊은 어업후계자의 정착률이 높은 경향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이들은 ‘어업특성에 근거한 유형’ 중의 ‘특정어업특화형(우량어업)어촌’에 해당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업취업자 수는 최근 들어서도 감소하지 않고 후계자의 정착률도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경향임
-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업자의 어업진흥에 대한 의욕이 높으며, 어업과의 경합이 명백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도입에 관해서는 신중함. 그러나 어획물과 어업 자체를 소재로 한 체험학습 혹은 참가형의 교류 관광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가리비 양식 지대의 가리비 축제, 연어·송어 정치망 지대의 연어 잡기 이벤트, 어류 양식 지대에서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식 경영자 제도 등이라는 사례가 이에 해당함
- 또한, 대규모적인 김 양식 지대인 사가현에서는 조석간만의 차로 나타난 바다에 치패를 뿌리고 조간 때에서 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주민 등이 방문하고 이들을 어선으로 환송하는 ‘갯벌’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관광어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83>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높은 시정촌과 그 특징

| 요인 | 특성 개요 | 대표적 시정촌 | |
|--------------------------|---|----------|-------------|
| | | 시정촌명 | 젊은 계층 비율(%) |
| ① 우량양식어업 특화형 | ①-1 가리비 양식지대 주로 홋카이도로 비교적 경영규모가 큰 가리비 양식업을 운영하는 지역이며, 전체 어업취업자에서 차지하는 40세 미만의 젊은 어업후계자 비율은 40~48%에 달한다. | 北海道 鹿部町 | 47.8 |
| | | 北海道 湧別町 | 47.1 |
| | | 北海道 常呂町 | 46.1 |
| | ①-2 김 양식지대 주로 사가현을 중심으로 한 아리아케 연안 지대에서 비교적 대규모 김 양식(일반적으로는 패류 채취 복합경영)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전어업자 중 40세 미만은 40~43%이다. | 佐賀縣 川副町 | 43.1 |
| | | 佐賀縣 芦刈町 | 42.9 |
| | | 佐賀縣 佐賀市 | 40.1 |
| | ①-3 양식어업+복합경영 지대 진주 및 어류 등의 양식업과 기타 어선어업 및 관련산업(가공, 관광 등)을 조합하여 성공한 지역으로 전어업자 중 40세 미만 비율은 40~57%이다. | 長崎縣 少佐ヶ町 | 57.4 |
| | | 愛媛縣 内海町 | 46.2 |
| | | 長崎縣 鹿町町 | 44.1 |
| ② 연어·송어 정치망 특화형 | 주로 홋카이도에서 이와테현에 걸쳐 비교적 단가가 높고, 어획량 자체도 안정적인 연어·송어 대상의 정치망어업이 성행하는 시정촌이다. 전체 어업취업자 중 40세 미만의 비율은 40~57%이다. | 北海道 猿拂町 | 57.1 |
| | | 北海道 斜里町 | 52.1 |
| | | 北海道 白糖町 | 47.2 |
| ③ 대규모어업기지 및 기지 근접형 | 근해 및 원양어업기지 혹은 거점어항과 항만에 근접해서 대규모어선어업의 승무원 공급처인 시정촌이다. 전체 어업취업자 중 40세 미만의 비율은 40~61%이다. | 宮城縣 川南町 | 52.7 |
| | | 北海道 根室市 | 41.3 |
| | | 青森縣 階上町 | 61.1 |

주 : 농림수산성, 제8차 어업센서스

(3) 혼주화형 어촌

- 이것은 도시기능 및 지역선택의 폭이 비교적 집적한 교통편이 좋은 장소에 입지하고 있는 지방의 중핵도시 혹은 그 근교와 관광지는 어업 이외의 취업 및 소득기회가 확보되고, 필연적으로 어업 이외의 다종다양한 직업의 주민과 세대가 혼재되어 정주하는 어촌의 유형임. 어업이 기간산업이므로 대부분의 주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업관련 일에 종사하는 ‘순수 어촌’적인 어촌에서 혼주화·시가지화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어촌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유형에 속함.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시근교형, 시가지형, 관광지 근접형이라는 어촌을 들 수 있지만, 자원상황과 어획노

력의 균형 및 어업취업자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어업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어촌은 거의 없음. 오히려 다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 성격을 가진 어촌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과거의 어업 지상주의적인 사회시스템은 혼주화 및 생산시설과 도시형 생활환경의 혼재에 의한 마찰이 발생하면서 붕괴되고 있고, 생산기능과 생활기능의 적절한 분리와 조화, 지역성으로서의 어업 아이덴티티의 확보,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등 혼주화한 주민의 바다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제임

<표 2.84> 일본 어촌유형별 활성화 방향과 레크리에이션 진흥 가능성

| 관점 | 유형 | 활성화방향과 레크리에이션 진흥 가능성 |
|--------------------|---------------------|--|
| 어업 특성 관점 | 적정·건실형 | · 기존 어업 유지와 증양식어업의 확충, 어촌다움을 살리는 연관 산업(전략 유통/가공)과 관광 진흥에 의한 지역고용기회 창출로 지역 활력 향상 필요 - 어촌다움을 살린 어업체험학습과 먹거리관광, 건전한 유어 및 어촌문화를 활용한 교류 형 이벤트, 어촌다움을 체험하는 장기 휴양형 관광 |
| | 특정어업 특화형 | · 특화어업 유지, 발전 노력과 동시에 보완 어업으로 다각적 어업경영으로 확대 필요, 특화어업에 의한 단일 대량생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의 전략적 유통·가공 진흥과 기타 비특화 어획물의 부가가치화 필요 - 특화형 어업 및 어획물을 살려 체험·먹거리·전략적 유통/가공 및 이벤트 관광 |
| | 주변 관련 산업 의존형 | · 어장정화, 해역이용조정, 증양식수면 확보, 육상양식, 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타 산업을 겸업기회로 한 '도시형/관광지형의 새로운 연안어업'을 추진, 대량소비와 해양성레크리에이션 수요의 집중을 활용한 전략적 유통과 관광 진흥이 필요 - 시민에게 열린 어항 및 어시장정비와 소비·관광 수요의 집중을 살린 해양성 스포츠 및 직판 등 |
| | 어업조건 불리형 | · 신기술 도입으로 불리한 어장조건 극복하는 어업진흥을 기본으로 하고, 바다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어업 측에 수용하는 체제, 즉 지역어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염두에 둔 '바다업'(海業)으로 전환 필요 - 유어/다이빙/기타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등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 및 도시와의 교류, 이벤트 등 종합적 진흥 |
| 지리적· 입지특성 관점 | 도시 및 도시근교 입지형 | · 어장정화, 해역이용조정, 양식수면 확보, 육상양식, 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타 산업을 겸업기회로 한 '도시형/관광지형의 새로운 연안어업'을 추진, 대량소비와 해양성레크리에이션 수요의 집중을 활용한 전략적 유통과 관광 진흥이 필요 - 시민에게 열린 어항 및 어시장정비와 소비·관광 수요의 집중을 살린 해양성 스포츠 및 직판 등 |
| | 변두리 입지형 | · 어업이 호조인 경우도 지역경제 전체 활성화에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 예도 많음. 지역 기간산업인 어업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지만, 관련 산업과 관광진흥 등의 다양한 취업·소득기회의 창출에 의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 - 어촌다움을 살린 체험학습과 이벤트, 전략적 유통과 함께 경제파급이 큰 해양 관련 스포츠·레저의 종합적 도입이 요구됨 |
| 사회 특성 관점 | 고령화형 | · 장기적으로 어업진흥, 관련 산업진흥, 생활환경 정비에 근거한 종합적 지역진흥대책을 추진, 정주자의 인구구성 균형 노력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보건·안전대책과 보람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활성화 대책 추진필요 - 고령 어업자와 은퇴한 어업인 등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활용한 학생과 가족 대상의 체험학습 관광 |
| | 활성화 특화형 | · 우수어업 및 이와 관련한 산업의 유지·발전에 노력하고, 어업마을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입각한 생활환경과 어메니티 등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역 매력을 향상시킴 - 우수어업과 어획물(단일어종으로 대량 어획하는 경우가 많음)을 살려 체험·먹거리·전략적 유통 가공 및 이벤트 관광 등 |
| | 혼주형 | · 어장정화, 해역이용조정, 양식수면 확보, 육상양식, 자원관리체제를 확립 타 산업을 겸업기회로 한 '도시형/관광지형의 새로운 연안어업'을 확립, 대량소비와 해양성레크리에이션 수요 집중을 활용한 전략적 유통과 관광 진흥이 필요 - 시민에게 열린 어항 및 어시장정비와 소비·관광 수요의 집중을 살린 해양성 스포츠 및 직판 등 |

1.4.7 국내 현실을 감안한 개발 방향

1) 일본 정책의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수산기반이 되는 어촌·어항·어장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 개발 사업은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어촌의 수산물 생산지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생활터전, 자연재해 방지, 수산물의 위생화, 자연문화의 보존, 어촌관광 활성화, 수산자원의 복원,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자원의 재활용 등에도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세움으로써 수산업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어항 배후의 어업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하나 생활환경외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2) 개발방향

- 현재 어촌관련사업에 획일성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 및 특성화 도입 추진이 필요함
- 생활환경외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의 특유의 전통문화 및 경관창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에서는 어항개발에 질적 제고를 위한 양상으로 전환하여 어항내 환경보전 및 수질 보전 등에 역점을 두고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이용에 청결 및 미화 효과를 극대화하였음. 국내 어항개발에도 질적인 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여 어항이용에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구의 유입과 노령어업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경제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1.5 어촌·어항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1.5.1 어항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설문조사는 총 70개의 유효표본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타 부처의 어항정책(사업)과 향후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시기 : 2007년 8월 16일 - 8월 24일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해양수산청 공무원, 관련전문가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방식
 - 조사기관 : (주) 아이알씨조사연구소
- 표본특성
 -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항담당 공무원 59명(84.3%), 어항개발관련업, 단체 근무자 6명(8.6%), 어항관련(해양수산)연구자 5명(7.1%)이며, 근무경력은 1~2년 미만 23.7%, 2~3년 미만 18.6%, 3~5년 미만 12.9%, 5~10년 미만 12.9%, 10~20년 미만 12.9%, 20년 이상이 17.1%로 나타남

<표 2.85> 응답자의 특성

(단위: %)

| 구 분 | | 전체 | 소 속 | | |
|-------------|-----------|-------|-------------|--------------|--------|
| | | | 어항담당 공무원 | 어항개발관 련단체 | 어항관련연구 |
| 전체 (응답자의 수) | | 100.0 | 100.0 | 100.0 | 100.0 |
| 소속 | 어항담당 공무원 | 84.3 | 100.0 | 0 | 0 |
| | 어항개발관련단체 | 8.6 | 0 | 100.0 | 0 |
| | 어항관련연구 | 7.1 | 0 | 0 | 100.0 |
| 근무기간 | 1~2년 미만 | 23.7 | 30.5 | 0.0 | 0.0 |
| | 2~3년 미만 | 18.6 | 20.3 | 16.7 | 0.0 |
| | 3~5년 미만 | 12.9 | 13.3 | 0.0 | 0.0 |
| | 5~10년 미만 | 12.9 | 11.9 | 33.3 | 0.0 |
| | 10~20년 미만 | 12.9 | 10.2 | 16.7 | 40.0 |
| | 20년 이상 | 17.1 | 11.9 | 33.3 | 60.0 |

2) 농림수산물부 어항개발 관련사업의 조사결과

(1) 어항개발사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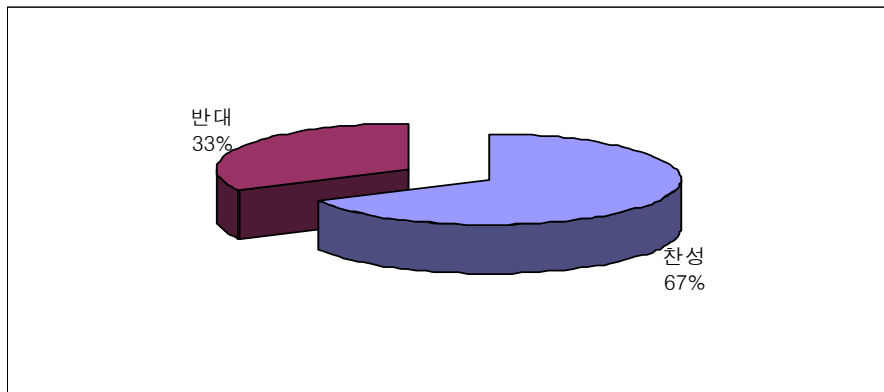
- 어항개발사업의 효과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어항개발 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수용 및 정박, 어촌지역의 어업생산여건 개선 등 어항 고유기능에 대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항개발은 어촌지역의 경제성장과 어업생산량 증가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어촌공동체 의식 고취, 해양레포츠활동 촉진, 수산관련 서비스업 발전, 배후부지 활용도 높아짐, 어업방식의 현대화 촉진,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국민해양사상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교류의 장 마련 등이 있었음

<표 2.86> 어항개발사업의 효과(5점 만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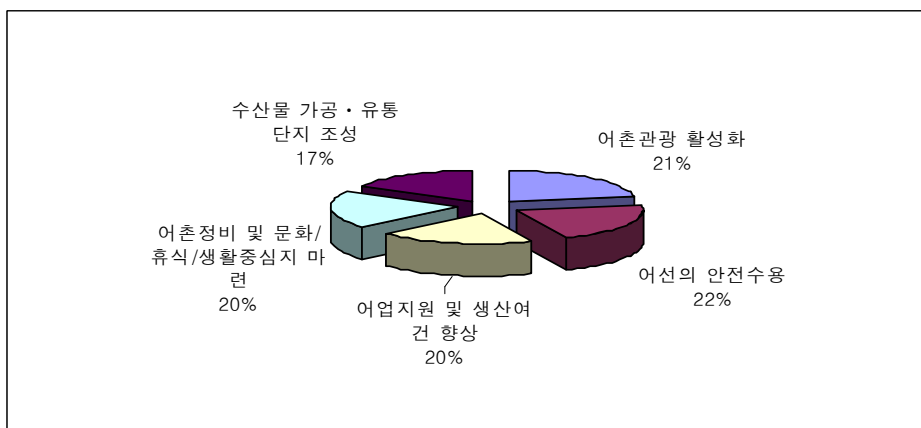
| 항 목 | 전 체 | 소 속 | | |
|------------------------|-------|-------|-------|--------|
| |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어선의 안전한 수용 및 정박에 기여하였다 | (4.6) | (4.5) | (4.7) | (4.8) |
| 어촌지역의 어업생산여건을 개선하였다 | (4.2) | (4.2) | (4.3) | (4.8) |
| 어촌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 (4.0) | (4.0) | (4.5) | (4.2) |
| 어업생산량증가에 기여하였다 | (3.8) | (3.7) | (4.3) | (4.0) |
| 어촌지역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 | (3.8) | (3.8) | (4.0) | (4.0) |
| 어항 및 연안환경이 개선되었다 | (3.8) | (3.8) | (3.7) | (3.8) |
| 어촌지역의 문화·생활편의시설이 개선되었다 | (3.7) | (3.7) | (3.7) | (4.0) |

- 국가어항 신규지정에 대해서 응답자 중 67%가 찬성하고 있으며, 33%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항관련업단체 응답자 전원이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찬성하고 있어 학계 전문가와는 대조적임
- 그러나, 학계 전문가 중에서는 찬성 40%(2명), 반대 60%(3명)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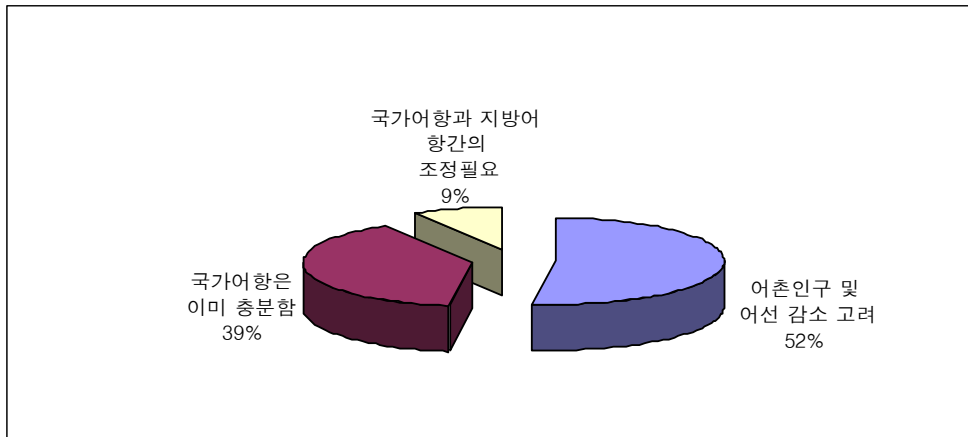
<그림 2.33> 국가어항 신규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 국가어항 신규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어항 신규지정은 어선의 안전수용(22%)과 어촌관광 활성화(21%)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업지원 및 생산여건 향상(20%), 어촌정비 및 어민의 문화, 휴식, 생활 중심지 마련(20%)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4> 국가어항 신규지정의 필요성

- 국가어항 신규지정이 분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중인 104개 국가어항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촌인구 및 어선감소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국가어항의 신규지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개발 중인 104개 어항만으로 국가어항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어항의 신규지정보다는 국가어항의 지방어항으로의 격하와 지방어항의 국가어항으로의 승격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음



<그림 2.35> 국가어항 신규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국가어항 지정기준 미달항에 대해서는 장기관찰 후 항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상 국가어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3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지정기준 미달 국가어항을 즉시 지방어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미달원인 파악 후 자원투자나 항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은 10% 미만의 것으로 나타남

<표 2.87> 국가어항 지정기준 미달항에 대한 대책

(단위: %)

| 항 목 | 비 율 |
|-----------------------------------|-------|
|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변하므로 장기관찰 후 항종 변경 고려 | 51.4 |
|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지정된 이상, 국가어항으로 개발 | 33.7 |
|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국가어항은 즉시 지방어항으로 항종 변경 | 10.0 |
| 미달원인 파악후 자원 투자나 항종변경 | 1.4 |
|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 항종 변경해야 한다 | 1.4 |
| 합 계 | 100.0 |

- 바람직한 국가어항의 투자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54.3%가 ‘우선순위에 따라 현시점부터 집중투자방법을 적용하여 개발’을, 31.4%가 ‘개발 중인 항은 분산투자, 신규 지정항은 집중투자방법 적용’을 선택하여 향후 국가어항의 개발방향으로 집중투자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88> 바람직한 국가어항의 투자방법

(단위: %)

| 항 목 | 비 율 |
|--------------------------------|-------|
| 우선순위에 따라 현시점부터 집중투자방법 적용하여 개발 | 54.3 |
| 개발중인 항은 분산투자, 신규지정항은 집중투자방법 적용 | 31.4 |
| 분산투자방법이 적합함 | 8.6 |
| 투자방법은 상관없다 | 4.3 |
| 개발중인 어항을 집중투자 | 1.4 |
| 계 | 100.0 |

- 한편,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7%가 ‘완공율이 높은 항은 분산투자를 유지하고, 완공율이 저조한 항은 우선순위별로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31.4%는 지방어항도 ‘현 시점부터 모두 집중투자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함

<표 2.89> 바람직한 지방어항의 투자방법

(단위: %)

| 항 목 | 비 율 |
|--|-------|
| 공사 진행율 높은 항은 분산투자, 공사 진행율 저조 항은 순위별 집중투자 | 53.7 |
| 모든 지방어항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중투자방법 개발 | 31.4 |
| 투자방법은 상관없다 | 7.1 |
| 현재와 같이 분산투자방법으로 개발함이 적합 | 2.9 |
| 무응답 | 2.9 |
| 계 | 100.0 |

- 지방어항 완공율 저조에 따른 수정계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1%가 수정계획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2.90> 지방어항 완공을 저조에 따른 수정계획 필요성 여부

(단위: %)

| 항목 | 비율 |
|--------------|-------|
| 네(계획수정) | 32.9 |
| 아니오(계획대로 추진) | 67.1 |
| 계 | 100.0 |

(2) 어항시설에 대한 평가

- 어항의 기능시설별 중요도와 관련하여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과 해수 인·배수 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항정화시설, 도로 주차장 등 수송시설, 어선·어구 보전시설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어업용 통신시설 및 수산자원 육성시설 등은 어항의 기능시설로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에서 특이한 점은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 어항의 고유의 기능과 관련된 수산업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주차장 등 수송시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1> 어항의 기능시설별 중요도(5점 척도)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해수 인·배수 시설 | 3.8 | 3.7 | 4.3 | 4.6 |
| 어항정화시설 | 3.6 | 3.5 | 4.2 | 4.4 |
| 도로 주차장 등 수송시설 | 3.6 | 3.4 | 4.5 | 4.2 |
| 어선·어구 보전시설 | 3.6 | 3.5 | 3.8 | 4.6 |
| 항행보조시설 | 3.5 | 3.4 | 4.2 | 4.4 |
|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설비 등 보급시설 | 3.5 | 3.4 | 3.8 | 4.4 |
| 수산물처리·가공시설 | 3.3 | 3.1 | 3.8 | 4.6 |
|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 3.2 | 3.1 | 3.5 | 3.8 |
| 어업용 통신시설 | 2.9 | 2.7 | 3.3 | 4.0 |
| 수산자원 육성시설 | 2.3 | 2.2 | 2.8 | 3.0 |

- 어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8.6%가 찬성, 40%가 반대, 1.4%가 무응답으로 조사되어 찬성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응답자 특성별로는 어항개발관련종사자그룹과 어항관련(해양수산)연구자그룹에서 80%이상이 찬성한 반면, 어항담당 공무원그룹의 찬성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54.2%인 것으로 나타남

<표 2.92> 어항개발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민자유치에 찬성한다 | 58.6 | 54.2 | 83.3 | 80.0 |
| 민자유치에 반대한다 | 40.0 | 44.1 | 16.7 | 20.0 |
| 무응답 | 1.4 | 1.7 |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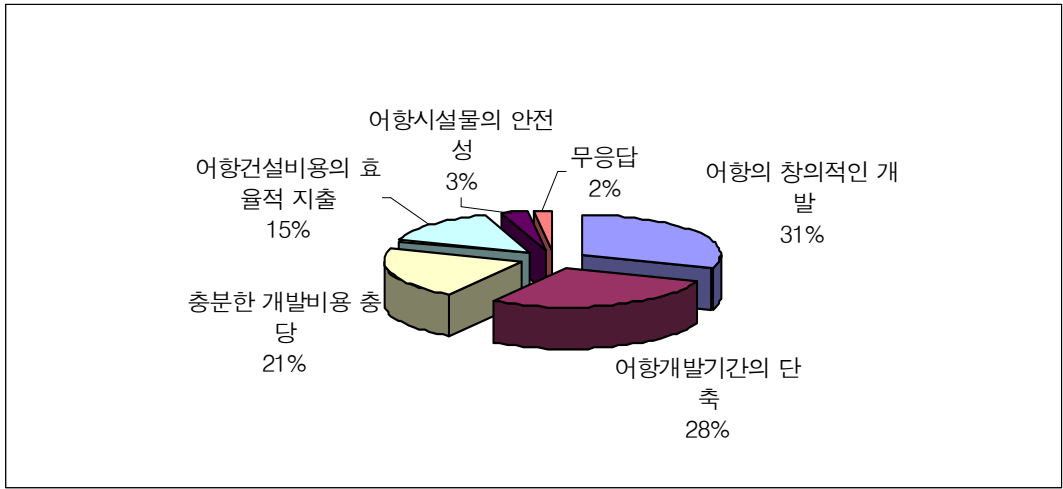
- 어항개발사업의 민자유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방파제 등 어항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기능시설과 어항 편익시설라는 응답이 전체의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민자유치 대상에 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5%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어항개발사업은 물론 어항시설정비와 어항의 운영·관리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3> 어항개발사업 민자유치의 대상범위 (찬성자만 응답)

(단위: %)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어항개발(기능시설+어항편익시설) | 56.1 | 50.0 | 80 | 75 |
| 어항개발(기본시설+기능시설+어항편익시설) | 36.6 | 40.6 | 20 | 25 |
| 어항개발+어항시설정비+어항운영·관리 | 7.3 | 9.4 | 0 | 0 |

- 어항개발사업에서의 민자유치는 어항의 창의적인 개발(31%), 어항개발기간의 단축(28%), 충분한 개발비용 총당(21%), 어항건설비용의 효율적 지출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6> 어항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의 장점

- 어항개발사업의 민자유치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80.5%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여건 조성, 어촌·어항법 개정 등의 의견이 있었음

<표 2.94>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여부(찬성자만 응답)

(단위: %)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필요함 | 80.5 | 78.1 | 80.0 | 100.0 |
| 필요없음 | 12.2 | 12.5 | 20.0 | 0 |
| 무응답 | 7.3 | 9.4 | 0 | 0 |

- 민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행정규제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여건조성, 어촌·어항법 개정, 관련부처 협의 등은 주무부서에서 일괄 처리, 수익성 있는 투자유치 모델 개발, 배후부지 용도의 탄력적 적용,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단계별 업무지원 강화, 어항기본계획 및 부지이용계획에 대한 특례규정 설정, 행정절차 이행 협조, 해양특구 지정, BTL 방법 지원, 사업계획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 등이 제시됨
- 한편, 어항개발사업의 민자유치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3.7%는 민자유치시 사

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투자비 보전 보장(수익성 악화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음

<표 2.95> 민자유치시 사업성 보장의 필요성(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단위: %)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필요함 | 53.7 | 46.9 | 80.0 | 73.0 |
| 필요없음 | 39.0 | 43.8 | 20.0 | 23.0 |
| 무응답 | 7.3 | 9.4 | 0 | 0 |

- 사업성 보장방법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이윤을 투자기관·정부·지역에 균등 배분, 수익사업 보장, 각종세제감면, 민간투자에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투자비 보전방법의 투명성 및 객관성 보장 등이 있었음
- 또한, 민자유치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68.3%는 민자유치시 어민들의 양보의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발사업 착수전에 어업권 손실에 대한 어민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추진의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어민들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계획에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마련이 제시됨

<표 2.96> 민자유치시 어민들의 양보의사 확보 필요성 (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단위: %)

| 구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필요함 | 68.3 | 73.0 | 40.0 | 50.0 |
| 필요없음 | 24.4 | 13.6 | 60.0 | 50.0 |
| 무응답 | 7.3 | 9.4 | - | - |

- 어민들의 양보의사 확보방법의 기타의견으로는 사전 어업권 등 권리 포기, 수협의 일부 양도 유도, 충분한 금전적 보상 지급, 어민의견 수렴 후 사업시행, 어민 자발적 참여를 위한 어민(단체)와 공동투자 유치, 어항은 무료이용이라는 인식에 대한 변화노력, 어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항개발 참여유도

등이 있었음

- 어항편익시설의 중요도와 관련하여서는 관광객이용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경시설, 레저기반시설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7> 어항 편익시설의 중요성(5점 척도)

| 구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관광객 이용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횃집 등) | 3.8 | 3.8 | 3.5 | 4.0 |
| 환경정비시설(광장·공원 등 조경시설) | 3.6 | 3.5 | 3.8 | 4.8 |
| 레저기반시설(마리나 등) | 3.5 | 3.6 | 3.2 | 3.8 |
| 휴게시설(숙박·목욕·오락시설 등) | 3.3 | 3.2 | 3.8 | 3.8 |
| 어민복지시설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 3.2 | 3.1 | 3.7 | 3.6 |
| 문화시설(전시관·도서관·학습장·공연장 등) | 2.8 | 2.7 | 2.8 | 4.2 |

(3) 다기능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어항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응답자의 80%가 “그렇다”고 응답함

<표 2.98> 다기능어항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그렇다 | 80.0 | 81.4 | 83.3 | 60.0 |
| 아니다 | 20.0 | 18.6 | 16.7 | 40.0 |

- 그러나,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다기능어항 개발과정에서의 어업인 소외, 어항 고유기능 훼손, 어항자체의 관광수요가 크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과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대상어항 선정방법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표 2.99> 다기능어항의 개발방향별 중요도(5점 척도)

| 항 목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어촌문화관광의 중심지 | 3.9 | 3.8 | 4.8 | 4.5 |
| 해양레저활동의 기지 | 3.7 | 3.7 | 4.0 | 4.5 |
| 수산물 유통단지 | 3.5 | 3.4 | 3.4 | 3.0 |
| 바다낚시의 중심지 | 3.3 | 3.1 | 4.4 | 4.0 |
| 수산업 클러스트 | 3.3 | 3.3 | 3.2 | 4.0 |
| 해산물 식당가 | 3.3 | 3.3 | 3.2 | 3.5 |
| 해상교통의 중심지 | 3.3 | 3.3 | 3.8 | 3.5 |
| 수산물 가공단지 | 3.0 | 2.9 | 3.2 | 4.0 |
| 양식업단지/지원기지 | 2.8 | 2.7 | 3.2 | 4.5 |

- 향후 어촌 및 어항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다기능어항의 개발방향에 대해 공무원 그룹과 업단체 그룹에서는 어촌문화관광의 중심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학계전문가 그룹에서는 수산물 유통단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다기능어항의 개발에 있어서 국제컨벤션센터 설립, 해양공원 및 문화 공간, 해양펜션단지 및 주거지역 개발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4) 어항의 관리/정비에 관한 평가

-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어항관리청에 의한 어항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응답자의 68.6%가 어항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표 2.100> 현행 어항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어항 관리에 문제가 없다 | 30.0 | 33.9 | 0 | 20.0 |
| 어항 관리에 문제가 있다 | 68.6 | 64.4 | 100 | 80.0 |
| 무응답 | 1.4 | 1.7 | 0 | 0 |

- 국가어항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한 어항관리비용 총당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8%는 국가어항에서 어항부지 임대 등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어항관리비용을 총당하는데 동의함

<표 2.101> 국가어항 수익사업 활성화로 어항관리비용에 총당하는데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예 | 70.8 | 68.4 | 83.3 | 73.0 |
| 아니오 | 27.1 | 28.9 | 16.7 | 23.0 |
| 무응답 | 2.1 | 2.6 | 0 | 0 |

※주 : 어항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 어항관리에 적합한 기관으로는 한국어촌·어항협회(29.4%), 지방자치단체장 책임(23.5%), 지방해양수산청(20.6%), 수산업협동조합(14.7%), 농림수산식품부 내 어항관리 전담부서 신설(11.8%)의 순으로 응답함

<표 2.102> 어항관리책임의 바람직한 기관

(단위: %)

| 구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한국어촌·어항협회 | 29.4 | 13.4 | 80.0 | 66.7 |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관리 | 23.5 | 26.9 | 20.0 | 0 |
| 지방해양수산청 | 20.6 | 23.1 | 0 | 33.3 |
| 수산업협동조합 | 14.7 | 19.2 | 0 | 0 |
| 농림수산물부내 어항관리 전담부서 신설 | 11.8 | 13.4 | 0 | 0 |

※주 : 수의사업 활성화를 통한 어항관리비용 총당에 동의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 완공항 정비에 대한 문제점별 인식도 조사결과, 예산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항정비계획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완공항에 대해서는 어항시설의 노후화가 보통이하의 심각한 수준이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대폭적인 정비 및 재개발이 요구되는 어항의 바람직한 정비 및 재개발방향으로 전체응답자의 38.6%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모두 부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모두 재건축(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어항은 재건축을, 지방어항은 부분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21.4%)로 나타남

<표 2.103> 완공항 정비의 문제점별 인식도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예산의 부족 | (2.1) | (2.1) | (1.8) | (2.2) |
| 어항시설의 노후화 | (2.4) | (2.4) | (2.3) | (2.2) |
| 어항정비계획의 미흡 | (2.8) | (2.7) | (3.2) | (2.6) |
| 안전점검 미흡 | (3.0) | (2.9) | (3.7) | (2.4) |

※주 :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점이 큼

<표 2.104> 어항의 바람직한 정비 및 재개발방향

(단위: %)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국가어항, 지방어항 모두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38.6 | 44.1 | 16.7 | 0 |
| 국가어항, 지방어항 모두 재건축(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 21.4 | 23.7 | 0 | 20 |
| 국가어항은 재건축을, 지방어항은 부분적 정비 적합 | 21.4 | 13.3 | 66.7 | 40 |
| 국가어항은 부분적 정비를, 지방어항은 재건축이 적합 | 3.7 | 6.8 | 0 | 0 |
| 어선세력과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비방향을 결정 | 2.9 | 1.7 | 0 | 20 |
| 어항 활용도, 어민 요구사항, 재정 등 종합적 검토후 결정 | 1.4 | 1.7 | 0 | 0 |
| 안전점검후 정비 계획수립 | 1.4 | 0 | 16.7 | 0 |
| 무응답 | 7.1 | 6.8 | 0 | 20% |

(5) 어항의 환경개선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상징건물의 건립’과 ‘항내 방치폐선의 제거’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5> 어항 환경개선과제별 중요도

| 구분 | 전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미화작업 | 4.0 | 3.9 | 4.5 | 4.5 |
| 항내 수질개선 | 3.9 | 3.7 | 4.7 | 4.8 |
| 어항부지의 오수처리 | 3.9 | 3.8 | 4.5 | 4.8 |
| 어항부지의 쓰레기처리 | 3.9 | 3.8 | 4.3 | 3.0 |
| 외부발생 쓰레기의 어항 부지내 유입 차단 | 3.7 | 3.6 | 4.3 | 4.8 |
| 항내 매몰대책 강구 | 3.6 | 3.5 | 4.7 | 4.3 |
| 상징건물의 건립 | 3.2 | 3.2 | 3.2 | 2.8 |
| 항내 방치폐선 제거 | 3.1 | 3.0 | 3.7 | 4.8 |

- 응답자 특성별로 어항관련공무원그룹은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미화작업’

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어항개발관련종사자그룹은 ‘항내수질 개선’과 ‘항내 매몰대책강구’를, 어항관련(해양수산)연구자그룹은 ‘어항부지의 쓰레기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

- 이 외에 추가되어야 할 환경개선과제로 ‘어구 등 적치물로 인한 미관저해 방지를 위한 다목적 창고 건립’, ‘이용자의 의식개혁 교육(이용매뉴얼 개발 주기적 교육)’, ‘무분별한 무단 점유시설의 철거’, ‘해수유통시설’ 등이 제시됨
-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항 환경설비 확충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1~5점(리커드 5점 척도화)의 중요도를 표시토록 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평균이 4.4로 조사되어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오·폐수 정화시설’, ‘냉장·냉동시설’, ‘해수 인·배수 시설’, ‘쓰레기처리 시설’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2.106>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항 환경설비 확충에 대한 의견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필요정도(5점 만점) | 4.4 | 4.3 | 4.7 | 4.6 |

(6) 어항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정책건의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어항개발은 3.0으로 사업이 보통의 수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항정비와 어항환경개선부분은 각각 2.5, 2.0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어항정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어항환경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어항개발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어항정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인 것으로 나타남
 - 어항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어촌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44.4%, ‘어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서’가 27.8%, ‘어민들의 휴식처 제공’이 11.7%의 순이었으며,
 - 어항개발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6.4%가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

며, 어항정비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3.5%가 ‘어항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표 2.107>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5점 척도)

| 구 분 | 전 체 | 공무원 | 업단체 | 학계 전문가 |
|--------|-----|-----|-----|--------|
| 어항개발 | 3.0 | 3.0 | 2.5 | 3.6 |
| 어항정비 | 2.5 | 2.5 | 2.3 | 2.8 |
| 어항환경개선 | 2.0 | 2.1 | 1.5 | 1.8 |



<그림 2.37> 향후 어항정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1.5.2 어촌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설문조사는 총 81개의 유효표본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타 부처의 어촌정책(사업)과 향후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시기 : 2007년 8월 16일 ~ 8월 24일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해양수산청 공무원, 관련전문가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방식
 - 조사기관 : (주) 아이알씨조사연구소
- 표본특성

<표 2.108> 표본 특성

(단위: %)

| 구 분 | | 전체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전체 (응답자의 수) | | 100.0 | 100.0 | 100.0 |
| 소속 | 공무원 | 87.7 | 100.0 | 0.0 |
| | 전문가 | 12.3 | 0.0 | 100.0 |
| 연령 | 20대 | 3.7 | 4.2 | 0.0 |
| | 30대 | 38.3 | 42.3 | 10.0 |
| | 40대 | 43.7 | 43.7 | 60.0 |
| | 50대 이상 | 12.3 | 9.9 | 30.0 |
| 성별 | 남 | 93.8 | 93.0 | 100.0 |
| | 여 | 6.2 | 7.0 | 0.0 |
| 근무기간 | 1~2년 미만 | 27.2 | 31.0 | 0.0 |
| | 2~3년 미만 | 13.6 | 13.5 | 0.0 |
| | 3~5년 미만 | 23.5 | 23.4 | 10.0 |
| | 5~10년 미만 | 11.1 | 11.3 | 10.0 |
| | 10년 이상 | 24.7 | 16.9 | 80.0 |
| | 평균 | 3.5 | 4.4 | 1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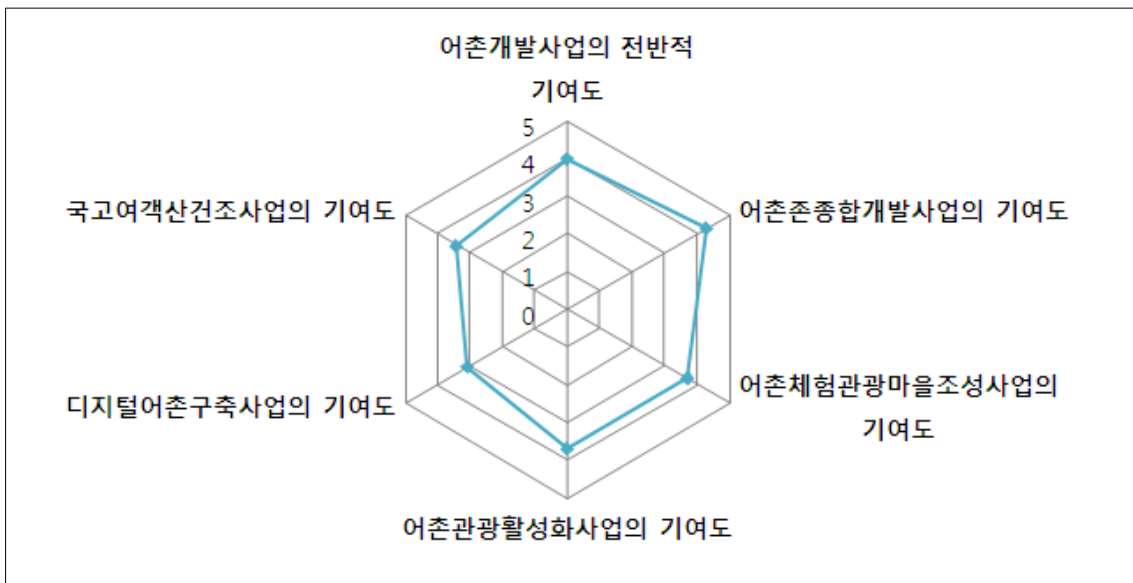
-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76명(87.7%), 전문가 10명(12.3%)이

며, 연령별로는 40대 43.7%, 30대 38.3%, 50대 이상 12.3%, 20대 3.7% 순으로 나타났음

2)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조사결과

(1) 어촌개발관련 인식부문

-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관련 개발사업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기여도가 4.0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음
- 각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여도가 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은 3.7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그 밖에 디지털어촌 구축사업의 기여도는 3.1,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기여도는 3.4 정도로 조사되었음



<그림 2.38> 어촌개발관련 인식부문

(2) 어촌개발 관련사업들이 어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개발 관련사업들이 어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지역의 정확한 실태분석 없는 획일적인 투자 44.8%, 사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사업추진 방식 37.9%, 사업의 목적에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예산지원이 31.0%,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27.6%, 직접적인 소득사업 지원 불가로 인해 실효성 상실 20.7%,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부족 17.2% 순으로 나타났음

- 동일한 질문에 대해 공무원은 사업지역의 정확한 실태분석 없는 획일투자가 43.8%로 가장 높은 반면에, 관련전문가들의 경우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이 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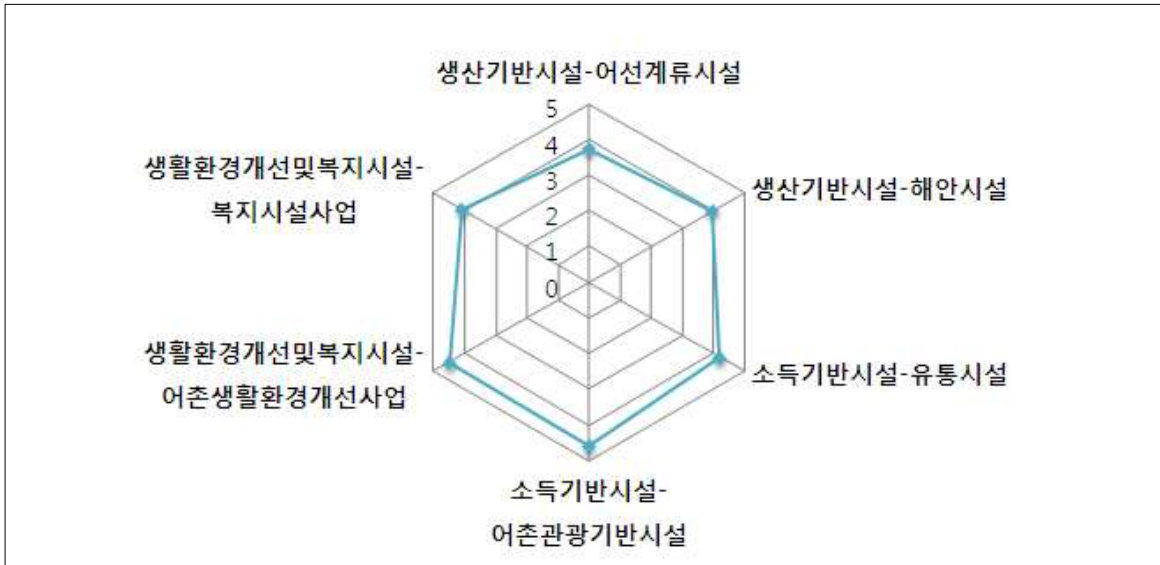
<표 2.109> 어촌개발 관련사업들이 어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사 유 | 전 체 응답자 수 | 소 속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소 계 | 100.0 | 100.0 | 100.0 |
| 사업지역의 정확한 실태분석 없는 획일적인 투자 | 44.8 | 43.8 | 40.0 |
| 사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사업추진 방식 | 37.9 | 37.5 | 40.0 |
| 사업의 목적에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예산지원 | 31.0 | 33.3 | 20.0 |
| 사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 27.6 | 20.8 | 60.0 |
| 직접적인 소득사업 지원 불가로 인해 실효성 상실 | 20.7 | 20.8 | 20.0 |
|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부족 | 17.2 | 20.8 | 0.0 |
| 생산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에 편중된 지원 | 10.3 | 8.3 | 20.0 |
|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 등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 10.3 | 4.2 | 40.0 |
|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 3.4 | 0.0 | 20.0 |
| 사업홍보 미비 | 3.4 | 4.2 | 0.0 |

(3)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개발 사업의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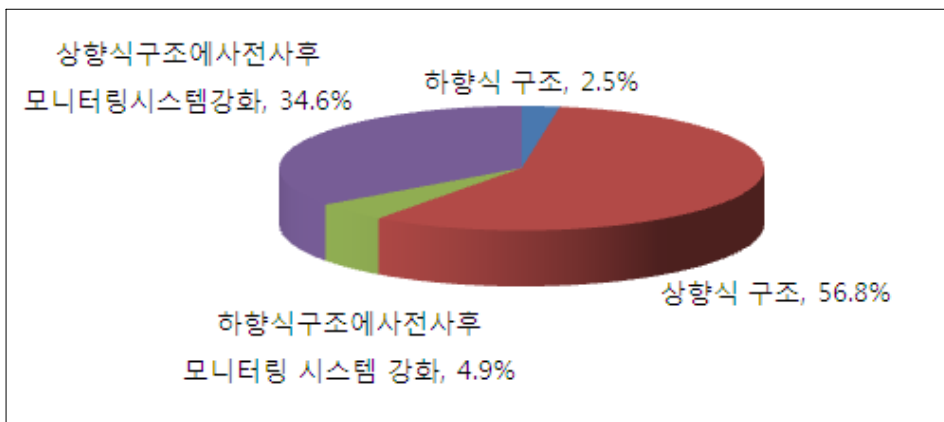
-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개발 사업의 중점사항을 물어본 결과, 어촌관광기반 시설 4.6, 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4.5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기반 시설의 유통시설 4.2, 복지시설사업과 해안시설 4.0, 어선계류시설 3.7 순으로 나타났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어촌관광기반시설과 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짐



<그림 2.39>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개발 사업의 중점사항

(4) 향후 중점 어촌개발 사업방식

- 향후 중점 어촌개발 사업방식에 대해 의견으로는 상향식 구조 56.8%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향식 구조에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34.6%, 하향식 구조에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4.9% 순으로 나타났음
- 어촌개발 사업방식에 있어서 공무원 집단과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의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났음. 즉, 공무원의 64.8%가 상향식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관련전문가들의 90%가 상향식 구조에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40> 향후 중점 어촌개발 사업방식

(5)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관련 사업들의 적정규모 및 예산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는 만족이 48.1%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27.1%, 보통이 22.2%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10>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단위: %)

| 구 | 분 | 전 체 응답자수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 (1)매우 불만족 | 1.2 | 1.4 | 0.0 |
| | (2)약간 불만족 | 23.9 | 22.5 | 50.0 |
| | (3)보통 | 22.2 | 23.9 | 10.0 |
| | (4)약간 만족 | 33.8 | 36.6 | 30.0 |
| | (5)매우 만족 | 12.3 | 14.1 | 0.0 |
| | 잘모름/무응답 | 2.5 | 1.4 | 10.0 |

-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는 50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로 가장 많았고 10~20억 미만이 31.8%순으로 나타났음

<표 2.111>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 사업비 규모

(단위: %)

| 구 | 분 | 전 체 응답자수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규모 | 10~20억 미만 | 31.8 | 29.4 | 40.0 |
| | 30~50억 미만 | 9.1 | 11.8 | 0.0 |
| | 50억 이상 | 50.0 | 47.1 | 60.0 |
| | 강액 | 4.5 | 3.9 | 0.0 |
| | 잘모름/무응답 | 4.5 | 3.9 | 0.0 |

◦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는 만족이 13.6%인 반면 불만족은 71.6%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단위: %)

| 구 | 분 | 응답비율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 (1)매우 불만족 | 21.0 | 21.1 | 20.0 |
| | (2)약간 불만족 | 50.6 | 52.1 | 40.0 |
| | (3)보통 | 13.6 | 12.7 | 20.0 |
| | (4)약간 만족 | 11.1 | 11.3 | 10.0 |
| | (5)매우 만족 | 2.5 | 2.8 | 0.0 |
| | 잘모름/무응답 | 1.2 | 0.0 | 10.0 |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는 10억~20억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로 가장 많았고 5~10억 미만이 27.6%순으로 나타났음

<표 2.11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단위: %)

| 구 | 분 | 응답비율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체험마을 사업비 규모 | 1~5억미만 | 3.2 | 3.8 | 16.7 |
| | 5~10억 미만 | 27.6 | 30.8 | 0.0 |
| | 10~20억 미만 | 50.0 | 50.0 | 50.0 |
| | 20~30억 미만 | 1.7 | 1.9 | 0.0 |
| | 30~50억 미만 | 8.6 | 9.6 | 0.0 |
| | 50억 이상 | 1.7 | 0.0 | 16.7 |
| | 감액 | 3.4 | 1.9 | 16.7 |
| | 잘모름/무응답 | 1.7 | 1.9 | 0.0 |

- 어촌관광모델사업
 - 어촌관광모델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는 만족이 46.9%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24.7%, 보통이 23.5%로 나타났음

- 어촌관광모델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에서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단지사업의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는 30억~50억 미만이라는 대답과 50억 이상이 각각 33.0%로 나타났음

<표 2.114> 어촌관광모델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단위: %)

| 구 | 분 | 전 체 응답자 수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관광모델사업 | (1)매우 불만족 | 3.7 | 4.2 | 0.0 |
| | (2)약간 불만족 | 21.0 | 18.3 | 4.0 |
| | (3)보통 | 23.5 | 23.4 | 10.0 |
| | (4)약간 만족 | 30.9 | 29.6 | 4.0 |
| | (5)매우 만족 | 16.0 | 18.3 | 0.0 |
| | 잘모름/무응답 | 4.9 | 4.2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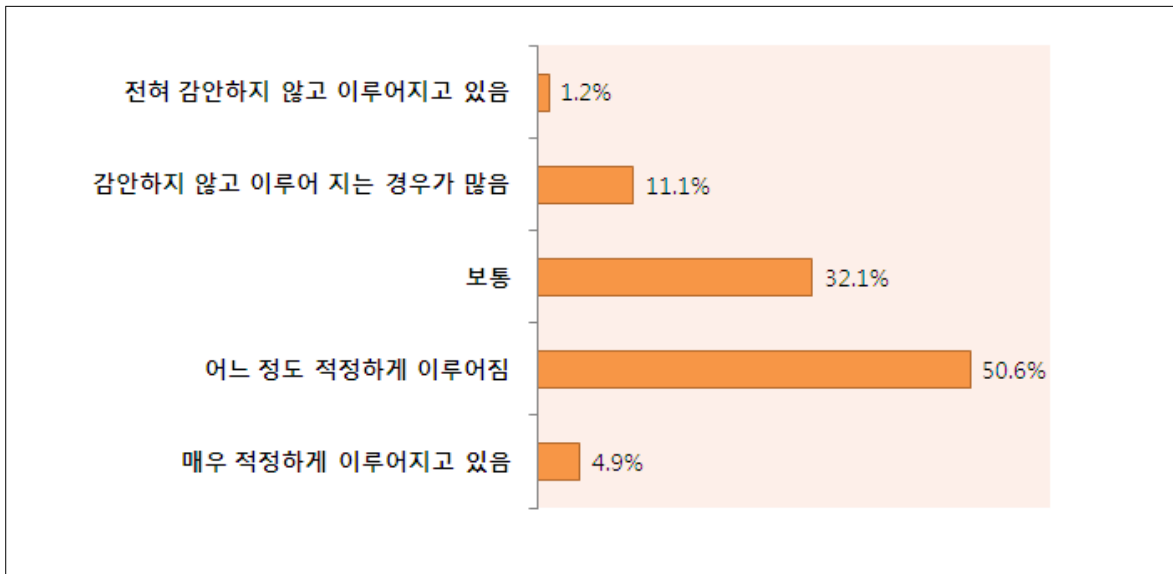
<표 2.115> 어촌관광모델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단위: %)

| 구 | 분 | 전 체 응답자 수 | 소 속 |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어촌관광모델 사업 사업비 규모 | 10~20억 미만 | 10.0 | 12.5 | 0.0 |
| | 30~50억 미만 | 33.0 | 31.3 | 50.0 |
| | 50억 이상 | 33.0 | 37.5 | 23.0 |
| | 감액 | 10.0 | 6.3 | 23.0 |
| | 잘모름/무응답 | 10.0 | 12.5 | 0.0 |

(6)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사업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사업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53.5%로 나왔고, 반면에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12.3%로 조사되었음
- 지역여건이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다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일률적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특성화 실패, 지역분산에 따른 투자효율 저하, 지원금액에 맞춘 사업시행 등의 이유가 있었음



<그림 2.41>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사업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표 2.116>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유

(단위: %)

| 구분 | 응답비율 | 소속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일률적인 기본계획수립으로 특성화된 느낌이 없어서 | 20.0 | 22.2 | 0.0 |
| 지원금액에 맞춘 사업시행 때문에 | 20.0 | 22.2 | 0.0 |
|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시 변경된 경우가 많다 | 20.0 | 22.2 | 0.0 |
| 시도별로 신청한도를 선배정하고신청을 받고 있어서 | 20.0 | 22.2 | 0.0 |
| 지역 할당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효율 저하 | 10.0 | 11.1 | 0.0 |
| 어업인 직접 소득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해서 | 10.0 | 11.1 | 0.0 |
| 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벗어나 사업집행 불가능 | 10.0 | 11.1 | 0.0 |

(7) 어촌개발 관련사업과 여타 수산사업과의 연계성

- 어촌개발 관련사업과 여타 수산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7.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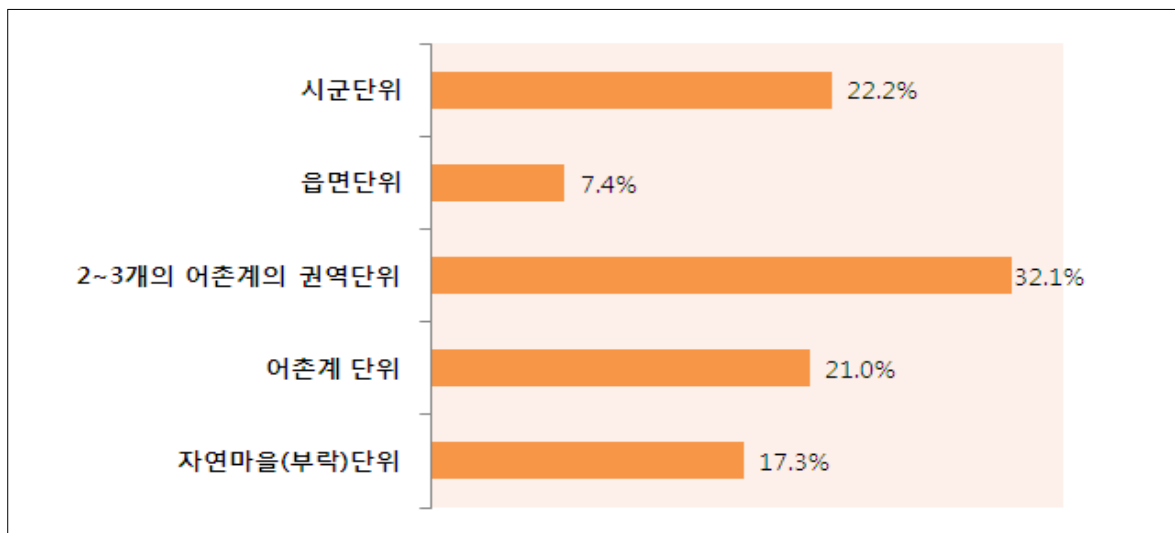
<표 2.117> 어촌개발 관련사업과 여타 수산사업과의 연계성

(단위: %)

| 구 분 | 응답비율 | 소 속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사업간 연계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4.9 | 3.6 | 0.0 |
| 사업에 따라 부분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67.9 | 66.2 | 80.0 |
|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27.2 | 28.2 | 20.0 |

(8)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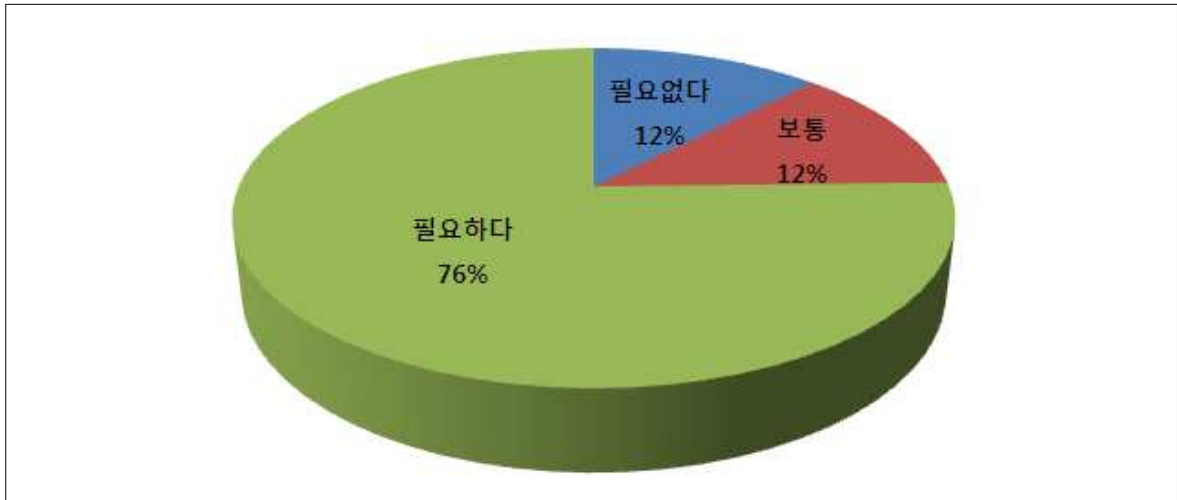
-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단위를 질의한 결과, 2,3개 어촌계 권역 단위 32.1%, 시군단위 22.2%, 어촌계 단위 21%, 자연마을 단위 17.3%, 읍면단위 7.4%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42>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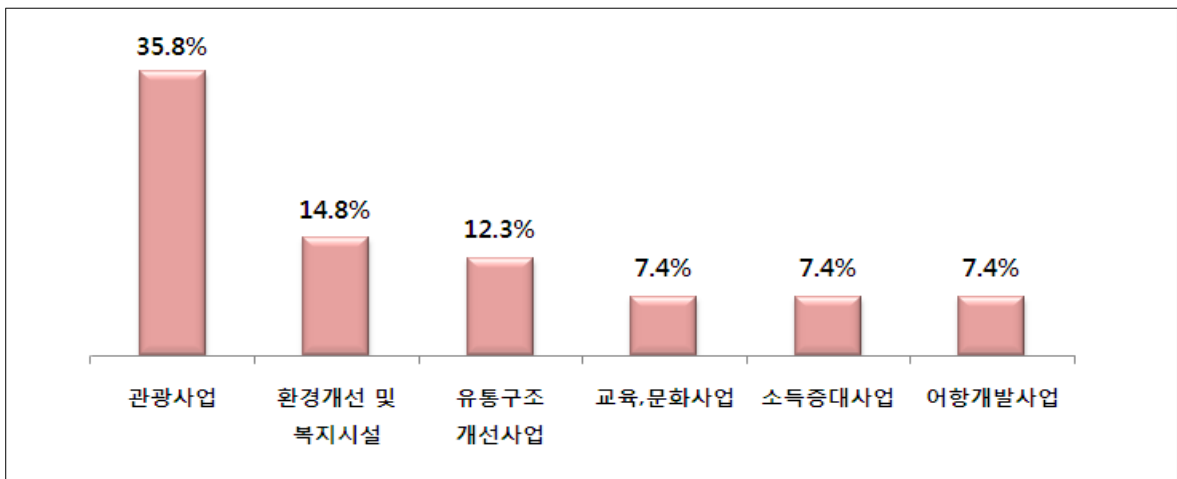
(9) 어촌계 직접 소득지원사업 필요성

- 어촌계 직접 소득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한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하지만, 어촌계 직접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소득시설 지원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전제가 있음



<그림 2.43> 어촌계 직접 소득지원사업 필요성

(10) 어촌개발을 위해 발굴해야 할 사업(복수응답)



<그림 2.44> 어촌개발을 위해 발굴해야 할 사업

- 어촌개발을 위해 발굴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광사업(시설)이 33.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14.8%, 유통구조 개선사업 12.3%, 어항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 교육·문화사업 7.4% 순으로 나타남

(11) 어촌개발 관련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어촌개발관련 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법적 규제 사항이 많고 사업지연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사업추진 책임감/열의 부족, 지역여건,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업추진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각각 11.1%로 나타났음

<표 2.118> 어촌개발 관련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 응답비율 | 소 속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법적 규제 사항이 많고 사업지연 | 18.5 | 21.1 | 0.0 |
| 사업추진 책임감/열의 부족 | 11.1 | 9.9 | 20.0 |
| 지역여건,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사업 추진 | 11.1 | 9.9 | 20.0 |
|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협의의 어려움 | 9.9 | 11.3 | 0.0 |
| 기반시설 미비 | 7.4 | 8.5 | 0.0 |
|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운영 주체 부재 | 7.4 | 3.6 | 20.0 |
| 어업인들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 | 7.4 | 7.0 | 10.0 |
| 어촌계(어민)의 운영 및 경영능력 부재 | 6.2 | 3.6 | 10.0 |
| 인력부족 | 2.5 | 2.8 | 0.0 |
| 지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 부재 | 2.5 | 0.0 | 20.0 |
| 예산 문제 | 18.5 | 19.7 | 10.0 |

(12) 향후 어촌개발 정책에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

- 향후 어촌개발 정책에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예산지원 확대 7.4%, 사업간 연계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음

<표 2.119> 향후 어촌개발 정책에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

(단위: %)

| 구 분 | 응답비율 | 소 속 | |
|----------------------------|------|------|------|
| | | 공무원 | 전문가 |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14.8 | 14.1 | 20.0 |
| 예산지원 확대 | 7.4 | 8.5 | 0.0 |
| 사업간 연계 방안 모색 | 6.2 | 2.8 | 30.0 |
| 소득증대 방안 모색 | 6.2 | 7.0 | 0.0 |
|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기초조사 선행 | 4.9 | 1.4 | 30.0 |
| 유관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3.7 | 2.8 | 10.0 |
| 전문가에 의한 사업 추진 | 3.7 | 2.8 | 10.0 |
| 어촌관련사업을 관련부처로 통폐합, 체계적인 추진 | 2.5 | 2.8 | 0.0 |
|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 2.5 | 2.8 | 0.0 |

1.6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1.6.1 관계법령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2005년 5월 어항법이 어촌·어항법으로 변경되었음

<표 2.120> 어촌·어항 관련법령

| 어촌·어항 관련법 | 목적 |
|---|--|
| 어촌·어항법 (2007.12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 수산업법 (2007.8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12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7.5 일부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
| 농어촌정비법 (2007.12 일부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대한 특별법 (2008.2 일부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
| 지방재정법 (2007.5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

1.6.2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1)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2006~2020)

① 수정계획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 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② 계획의 성격 및 특징

-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③ 계획의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살기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④ 계획의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그림 2.45> 수정계획의 기본틀

⑤ 지역계획의 발전방향

i) 수도권

- 인천광역시 : 물류중심·경제자유도시
- 경기도 : 지식산업 중심지역

ii) 강원권

- 강원도 : 생명건강 중심지역

iii) 충청권

-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중추도시
-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iv) 전북권

- 전라북도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v) 광주권

- 광주광역시 : 첨단과학·광산업·문화 중심도시
- 전라남도 : 물류·관광·미래산업 중심지역

vi) 대구권

- 대구광역시 : 과학기술·문화·교육 혁신도시
- 경상북도 :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

vii) 부산권

- 부산광역시 : 해양·물류 중심도시

- 울산광역시 : 자동차·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
- 경상남도 :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 viii) 제주권
 -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000~2019)

① 계획의 필요성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별로 상호연관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가교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
- 교통시설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체계의 운영개선 등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다가오는 동북아 중심시대에 대비 우리교통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장기 종합교통계획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동북아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비

② 계획의 성격

- 20년을 단위로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계획
- 교통관련 계획에 관한 상위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

③ 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 국가기간교통망구축 추진전략
- 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 및 종합수송체계
-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등

④ 계획의 목표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⑤ 계획의 기초

- 국가교통체계의 구조적 통합의 강화
-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의 조화
- 양질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참여와 경쟁의 확대
-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수준 교통망의 구축

⑥ 단계별 구축전략

- 전반기 계획기간(2000-2009)
 -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항만 등 국제교통시설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추진
- 후반기 계획기간(2010-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
 - 교통수요의 질적 변화에 부응하는 고속·고급 교통서비스를 확대
 -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추진

(3)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 해양한국21 연동계획 -

① 계획의 수립배경

- 새 천년을 여는 해양수산발전 비전 제시
- 21세기 국내외 해양수산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② 기본목표

-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③ 7대 추진전략

-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
-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 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4) 연안정비 기본계획 (2000~2009)

① 계획의 성격

- 연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법정계획
-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한 연안보전, 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② 연안정비 추진계획

- 연안정비의 기본방향
 - 예방위주의 연안보전으로 안전한 연안축의 구축
 - 환경복원을 전제로 한 해역개선
 -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의 조성 및 시민의 접근권 확보
- 추진전략
 - 시급한 연안방재사업의 조기정비
 - 첨단연안정비기술의 점진적 적용 확대
 - 연안정비사업의 사전·사후적 관리 강화
 -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5)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04~2013)

① 배 경

-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국가·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관광정책 추진필요

- 1998~2000년 IMF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94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해외 여행의 폭발적 증가로 관광수지 악화
- 우리나라 해양은 관광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관광수요 또한 증가 추세임
-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② 목 적

- 본 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서
- 해양관광 진흥에 대한 기본방향과 해양관광 자원의 보전·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 국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③ 계획의 성격

- 해양관광진흥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전국 연안 및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 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 해양관광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④ 계획의 목표

- 수요자인 국민은 바다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기회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
- 공급자인 지역주민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연안으로 조성되어 소득창출
-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관광을 해양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육성

⑤ 기본방향

- 기능적으로는 어촌·연안·해상 관광자원이 개발보다 지속적으로 보전·관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관광 지원·육성
- 공간적으로는 해변(연안), 해상 및 해중·해저의 입체적·효율적 활용
- 내용적으로는 개발·보전 및 해양문화의 창달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개발
- 주체별로는 연안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관련부처,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 개발

⑥ 분야별 추진계획

- 연안 친수·문화공간의 조성
- 어촌관광의 진흥
- 해상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 해양 레저·스포츠 기반조성

⑦ 권역별 해양관광 개발방향

i) 부산권

- 동북아 4개국 크루즈 관광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크루즈 전용터미널 건설 및 한·일 크루즈 취항 확대
- 부산 신항·다대포항·동삼동 등 친수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지구와 도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이 휴식공간 제공
-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교육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및 어촌민속전시관 등 건립
- 영도·가덕도 등 등대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쉼터로 조성하고 부산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용호동 이기대, 해운대 동백섬 입구 등을 친수연안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기장군 일광권역 등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관광부분 투자를 강화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

ii) 인천·경기권

- 동북아 국제관광 관문도시의 위상에 맞도록 인천갑문 친수공간, 월미도 해상파크, 인천 남항·남외항의 마리나 및 해양스포츠 시설 건설
- 인천 북항 해양생태공원, 평택항 친수공원·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항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
-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교육·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 소청도·팔미도 등 등대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 연안 및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김포시 대곶, 화성시 서산 등의 해안접근로 정비

- 화성시 서신, 안산시 대부도 등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
 - 경기도 4개 연안 시·군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관광부분 투자를 강화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해양 여가공간으로 활용기회 확대
- iii) 울산권
- 울산항 해양친수공간, 울산신항 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항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울기·간절곶·화암추 등 등대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 고래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고래관련 전시관 건립 및 축제개최
 - 울산시 주전동 등 해안접근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iv) 강원권
- 속초항, 삼척항, 묵호항에 해양공원 및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고 동해안에 산재한 해수욕장, 어항과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가지대로 조성
 - 속초·묵호·대진·주문진 등 등대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고 속초항 여객터미널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강릉·고성·속초·양양 등 4개 시·군의 해수관로·해안접근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삼척시 초곡항, 양양군 남애항을 종합다기능어항으로 시범개발하여 어업정주환경 및 해양레저 공간 확충
 - 동해안 해수욕장을 해양레포츠 클러스터로 개발, 사계절 국민 여가지대로 조성
- v) 충청권
-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도서연안 크루즈를 개발하고 도서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 보령항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대천항 여객터미널 현대화를 통한 관광객 편의도모 등
 - 태안군 생태계보전지역에 해양생태 체험시설 설치
 - 충남 서천 마서·서면 등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 활동 공간으로 제공
 - 당진군 아산만에 연계한 수제선을 친수구역으로 확보하여 항만과 자연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

vi) 전북권

- 군산 비응항을 해양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거·생산·관광 기능을
동시 수행하여 주민 소득향상
- 군산 내항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군산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고창군 해리, 심원일대 지방어항을 관광어항으로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소
득향상과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
- 군산 비응항·선유도·부안 격포 등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 개발을 통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및 여객터미널 현대화
- 부안군 공항항·식도항 등 지방어항을 관광종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지역주
민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

vii) 전남권

- 광양항 해양생태공원·관광목장, 여수 구항 호안친수공간, 목포 남항 친수문
화공간, 목포 신외항 해양문화친수시설 조성 등을 통해 향만지구와 도시지
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 제공
- 무안·진도 습지보호지역에 해양생태 체험시설 설치, 생태체험의 장으로 조성
- 남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도서연안 크루즈를 개발하고 도서 지역간 이
동 편의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및 목포항·여수항·완도항·홍도항·
녹동항 및 화흥포항 등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거문도·오동도 등 등대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여수시 화정·화양, 영광군 낙월, 완도군 신지, 장흥군 관산 등 해안접근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viii) 경북권

- 포항 신항 녹지조성을 통해 향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포항항·울릉도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
객 편의도모
- 호미곶·도동·송대말·죽변 등 등대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영덕군에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교육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 및 영덕 대게 축제 개최

- 울릉군 도동일대 해안접근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영덕군 대진·대탄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
- ix) 경남권
- 마산 서항지구를 상업·주거·문화단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 복합생활 공간지구로 조성 및 마산항·장승포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홍도·소매물도 등 등대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 거제시 사동, 마산시 합포, 사천시 송포 및 통영시 사랑, 한산 등에 해안접근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남해군 설천, 삼동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에게는 자연과 공생하는 창조적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
 -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교육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등
- x) 제주권
-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향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제주의항의 해양공원 조성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 건설 및 제주항 및 제주의항 여객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광객 편의도모
 - 해양을 주제로 하는 체험·교육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 서귀포 생태계보전지역에 해양생태 체험시설 설치하여 생태체험의 장으로 조성
 - 마라도·산지·추자도·우도 등 등대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

2) 기타관련 개발계획

(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1~2010, 2004~2024)

① 목 적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는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10년 동안의 전국 관광개발

의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전략계획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② 성 격

- 관광개발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③ 목 표

-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형 관광한국
-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④ 개발 전략

-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 개발 추진
- 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 촉진
-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 국민 생활관광 기반 확충
- 남북한 관광협력체계 구축

⑤ 관광권역별 개발전략

<표 2.121> 관광권역별 개발전략

| 권역 | 개발전략 |
|----|---|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 확충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도시관광 교통운영체계 구축 ◦ 한강 및 녹지공간 관광자원화 |
| 부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기반 확충 ◦ 영상문화 테마형 관광지구·관광시설 개발 ◦ 선진 교통·안내시스템 개발 ◦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 테마형 관광지구 개발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전통한방 관광자원 개발 ◦ 밀라노 프로젝트의 관광자원화 ◦ 내륙 동남권 관광기반 확충 |
| 인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지역 관광기반 확충 ◦ 해양관광자원 개발 ◦ 강화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테마형 도시관광자원 개발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남도 문화예술시설 정비·확충 ◦ 서남권 관광기반 확충 ◦ 지역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
| 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과학공원 관광지구 개발 ◦ 첨단과학 체험형 관광자원화 ◦ 유성관광특구 정비 및 도시관광시설 확충 ◦ 중부권 관광기반 정비·확충 |
| 울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 선사유적의 문화관광자원화 ◦ 산악생태 체험 관광자원 개발 ◦ 도시 관광기반 확충 |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화 관광개발 ◦ 내륙 산악·수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

(계속)

| 권역 | 개발전략 |
|----|---|
| 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해양자원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개발 ◦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벨트 개발 ◦ 폐광지역 관광개발 |
| 충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수변형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 중부 내륙 관광휴양지대 조성 ◦ 중원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체험 관광지구·관광시설 개발 |
| 충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 국민생활 관광지 확충 ◦ 백제문화권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 관광개발 |
| 전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예술자원 관광자원화 ◦ 생활문화 체험 관광지구 개발 ◦ 산악, 해양자원 관광자원화 ◦ 지·덕 문화관광권 개발 |
| 전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도해 해양자원 관광개발 ◦ 남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갯벌, 습지, 공룡화석지 등의 생태관광자원화 ◦ 지역 관광기반 확충 |
| 경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및 가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북부 유교문화권 국제적 관광지구 개발 ◦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시설 기반 확충 ◦ 산업관광과 연계한 청정휴양 관광지구 조성 |
| 경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한려수도 관광지역 조성 ◦ 가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지리산 산악생태 관광자원화 ◦ 지역 관광기반 확충 |
| 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관광휴양지역 개발 ◦ 섬 문화 특화 관광자원 개발 ◦ 산악·해양 관광자원화 ◦ 국제관광자유지역 지원 관광기반 확충 |

(2)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4~2008)

① 배경 및 목적

- 세계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관광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통하여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

- 관광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토대가 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분야로 급부상
- 국민의 경제소득 증가와 여가중심의 가치관 확대로 인해 여가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여가관광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급증하는 국민여가관광 수요를 선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향후 5년간(2004~2008년)의 국가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② 계획 성격

- 국정목표 실현과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 제1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 「관광비전 21」의 후속 계획으로서 관광진흥을 위한 중기 정책사업 발굴 계획
-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정책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비전」의 관광부문 중기 실행 계획

③ 계획의 목표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 내실있는 관광산업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④ 추진전략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 내실있는 관광산업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⑤ 관광진흥 정책과제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 내실있는 관광산업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1.7 SWOT 분석

1.7.1 분석의 종합

- 어촌에 대한 문헌조사, 설문조사, 어촌·어항 방문 및 어업인, 관광객 대상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음

1.7.2 어항부문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최근 어항개발에 따라 어항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되었으며, 어항은 개발여하에 따라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고, 배후어촌을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음

2) 약점(Weakness)

- 어항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현재 어항개발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음
- 또한, 어항의 기능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불편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항내 매몰로 어항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3) 기회(Opportunity)

- WTO/DDA 협상체결 이후 직접적으로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이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어항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의 확대가 용이해 질 수 있음
- 또한, 최근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어항자체를 관광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어항에 대한 기회요인이 많이 산재해 있음

4) 위협(Threat)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 어선감척, 기상변화 등은 어항 본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어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5) 종합

<표 2.122> 어항의 SWOT 분석

| 강 점 | 약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이용의 편리성 향상 ◦ 강한 지역개발 의지 ◦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 배후어촌 연계개발 가능 ◦ 해안의 특성에 맞는 개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재원의 부족 ◦ 어항개발 장기화 및 시설의 노후화 ◦ 어항관리 미흡 ◦ 어항기능시설, 편의시설 부족 ◦ 항내 매몰로 어항기능 약화 |
| 기 회 | 위 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협상체결 이후 어항개발관련 보조금의 지속적 확대 가능 ◦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 관광 등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추진 ◦ 도로·교통망 발달로 접근성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 위축 ◦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위축 ◦ 자연재해 증가 및 기상변화 ◦ 어선 감소(어선감척사업) |

1.7.3 어촌부문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우리 어촌이 갖고 있는 강점은 바다, 갯벌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한 체험관광이 가능하고 여기서 산출되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시식할 수 있다는 점임
- 또한 어촌마을은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촌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고 있는 등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

2) 약점(Weakness)

- 우리 어촌이 갖고 있는 약점은 최근까지 어촌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여전히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고, 관광객들은 이로 인해 어촌지역 관광 시 불편을 느끼고 있음
- 그리고, 여전히 어촌관광은 계절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촌관광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어촌지역은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어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3) 기회(Opportunity)

- 최근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관광의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어촌에 대한 체험형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또한 어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다원적 기능)을 통해 어촌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수산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어촌과 도시의 교류가 촉진되고 있음

4) 위협(Threat)

- 어촌에 대한 관광수요 등 기회요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지역은 도시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정주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또한 WTO/DDA, FTA로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탈어촌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위협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5) 종합

<표 2.123> 어촌의 SWOT 분석

| 강점 | 약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자연환경 ◦ 다양한 웰빙 수산먹거리 ◦ 수산업기반의 체험관광 기능 ◦ 어촌전통문화 유지·계승 ◦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인프라 구축 미비 ◦ 어촌관광 인적자원 부족 ◦ 자연재해에 취약 ◦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미흡 ◦ 고령화·공동화로 어촌활력 저하 |
| 기회 | 위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수산보조금 지원 가능 ◦ 지속적인 어촌 관광수요 증대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 제기 ◦ 어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의 양극화 심화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정주 기반약화 ◦ 정보격차 심화 ◦ WTO/DDA, FTA로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업 위축 |

1.8 어촌·어항개발의 수요 검토

1.8.1 어항의 개발 수요 검토

1) 기존 용역의 추진결과

- 2002년 시행한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수용율이 100%이하인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 국가어항 45개소, 지방어항 1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국가어항지정 및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국가어항의 신규지정을 위한 62개항중 10개항 선정을 위해 26개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2004년 “감사원 어항성과 감사”시 국가어항 62개의 추가수요는 과다하므로 국가어항의 수요에 대한 재조사 및 어항지정기준 조정을 제시
- 2005년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여건 변화 등을 감안, 어선의 안전수용율이 100% 이하인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 국가어항 37개소, 지방어항 4개소의 추가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어촌·어항법상의 어항지정기준을 강화(척수 : 60척 → 70척, 톤수 : 200톤 → 280~450톤)하였으며, 단서조항(지정기준에 미달되어도 해상교통, 관광, 유통의 중심지인 경우 지정 가능)을 삭제하였음
- 2007년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국가어항건설사업 심층평가용역」에서 국가어항 지정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
- 따라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어항지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2) 기존 용역의 비교검토

<표 2.124> 어항 추가개발수요 비교검토(지정항 완공시)

(단위 : %, 개소)

| 구 분 | 국가어항지정 및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조사 | | |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산정 | | | 비 고 |
|-------|-------------------------|-------|-------|---------------|-------|-------|-----|
| | 안전 수용율 | 국가 어항 | 지방 어항 | 안전 수용율 | 국가 어항 | 지방 어항 | |
| 전 국 | | 45 | 17 | 79.3 | 37 | 4 | |
| 부산광역시 | 60 | 6 | - | 91.9 | 1 | - | |
| 인천광역시 | 충족 | - | - | 80.1 | 2 | - | |
| 울산광역시 | 충족 | - | - | 100 | - | - | |

(계속)

(단위 : %, 개소)

| 구분 | 국가어항지정 및 다기능어항 선정 타당성조사 | | |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산정 | | | 비고 |
|------|-------------------------|------|------|---------------|------|------|----|
| | 안전수용율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안전수용율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
| 경기도 | 26 | 1 | 2 | 29.9 | 2 | - | |
| 강원도 | 총족 | - | - | 100 | - | - | |
| 충청남도 | 88 | 3 | 1 | 77.1 | 4 | - | |
| 전라북도 | 68 | 2 | 3 | 66.2 | 4 | - | |
| 전라남도 | 84 | 19 | 5 | 77.9 | 14 | 2 | |
| 경상북도 | 총족 | - | - | 100 | - | - | |
| 경상남도 | 74 | 13 | 2 | 73.4 | 9 | 1 | |
| 제주도 | 총족 | - | 4 | 87.8 | 1 | 1 | |

3) 어선 안전수용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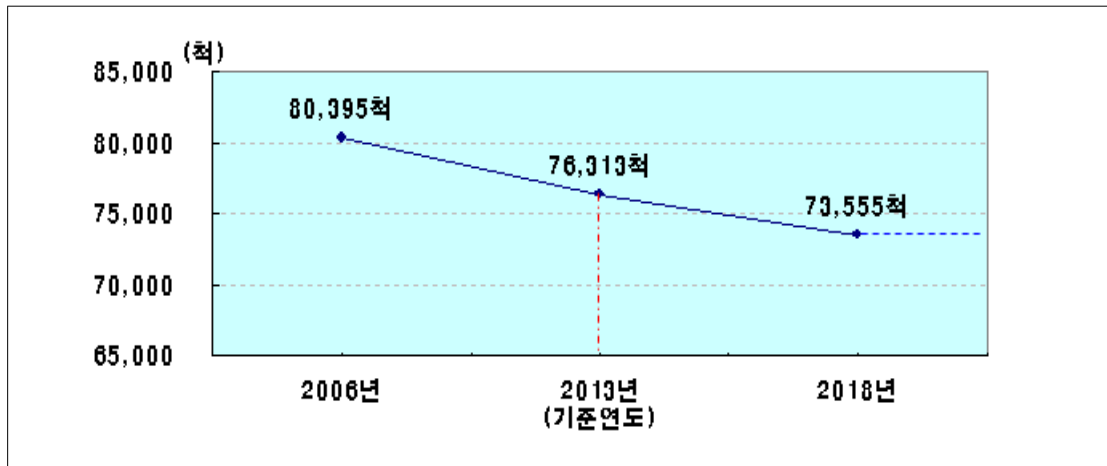
(1) 어선척수 추정

- 전국 총어선은 2006년 실적치 86,113척에서 어선감척계획을 반영하여 2013년은 기준으로 80,370척으로 2006년 대비 93.3%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 어선감척계획(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정부에서는 연근해 어업의 수산자원 감소,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등 수산업 활동 기반의 환경변화에 따라 “연근해 어선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06년까지 어선감척사업 실적은 5,114척이었으며, 2010년까지 총 10,159척을 감척할 계획임

(2) 어선 안전수용율 산정

① 수용대상 어선척수

- 수용대상 어선척수 = 총어선-(무동력선+원양어선+내수면어선)+외래어선
- 전국 총어선은 80,370척(2013년 기준)이나 충청북도와 대구시(467척)을 제외한 79,903척 중 무동력, 원양, 내수면어선을 제외하고 외래어선을 포함하면 수용대상어선은 76,313척임



<그림 2.46> 수용대상 어선척수

② 수용가능 어선척수(완공 기준)

-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접안시설을 이용한 대피어선 51,159척과 항내 해상정박에 의한 대피어선인 9,101척을 포함한 60,260척임

<표 2.125 >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

| 구분 | 계 | 국가어항 (104개) | 지방어항 (287개) | 항만 (40개) |
|---------|--------|-------------------|-------------------|-------------------|
| 계 | 60,260 | 32,541 (54.0%) | 11,628 (19.3%) | 16,091 (26.7%) |
| 접안시설 이용 | 51,106 | 27,170 | 7,845 | 16,091 |
| 동해 | 7,198 | 3,877 | 1,282 | 2,039 |
| 서해 | 14,778 | 7,798 | 2,160 | 4,820 |
| 남해 | 29,130 | 15,495 | 4,403 | 9,232 |
| 해상정박 이용 | 9,154 | 5,371 | 3,783 | - |
| 동해 | 439 | 247 | 192 | - |
| 서해 | 3,273 | 1,950 | 1,323 | - |
| 남해 | 5,442 | 3,174 | 2,268 | - |

③ 어선 안전수용율 산정

- 어선 안전수용율은 기상 악화시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어항 수역시설의 확보 규모임

$$\text{어선 안전수용율} = \frac{\text{수용가능 어선척수}}{\text{수용대상 어선척수}} \times 100(\%)$$

- 전국 총어선 80,370척 중 무동력, 원양, 내수면을 제외한 수용대상 어선인 76,313척 중 79%인 60,260척이 어항(국가, 지방) 및 항만(무역, 연안)에 수용 가능함(2013년 기준)

<표 2.126> 어선의 안전수용율

| 구분 |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 어선 안전수용율(%) | 비고 |
|-------|--------------|--------------|-------------|----|
| 전국 | 76,313 | 60,260 | 79.0 | |
| 부산광역시 | 3,847 | 2,290 | 59.5 | |
| 인천광역시 | 2,506 | 2,046 | 81.6 | |
| 울산광역시 | 796 | 425 | 53.4 | |
| 경기도 | 1,317 | 259 | 19.7 | |
| 강원도 | 3,153 | 3,153 | 100.0 | |
| 충청남도 | 5,998 | 5,200 | 86.7 | |
| 전라북도 | 5,214 | 3,394 | 80.5 | |
| 전라남도 | 30,995 | 23,132 | 74.6 | |
| 경상북도 | 4,059 | 4,059 | 100.0 | |
| 경상남도 | 16,223 | 13,097 | 80.7 | |
| 제주도 | 3,205 | 3,205 | 100.0 | |

※산정기준은 2013년 어선척수,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시설완공을 기준으로 함

③ 추가지정 필요항수 산정

- 수용대상어선 76,313척 중 수용가능어선 60,260척을 제외한 나머지 16,053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어항 30개 추가지정 필요

<표 2.127> 국가어항 개발 필요항수

| 구 분 |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 수용필요 척수(척) | 항당수용가능 척수(척) | 국가어항개발 항수(개항) |
|-------|-----------------|-----------------|---------------|-----------------|------------------|
| 전 국 | 76,313 | 60,260 | 16,053 | | 30 |
| 부산광역시 | 3,847 | 2,290 | 1,557 | 213~568 | 3 |
| 인천광역시 | 2,506 | 2,046 | 460 | 246~339 | 2 |
| 울산광역시 | 796 | 425 | 371 | 395~549 | 1 |
| 경 기 도 | 1,317 | 259 | 1,058 | 339~396 | 2 |
| 강 원 도 | 3,153 | 3,153 | - | 359~470 | - |
| 충청남도 | 5,998 | 5,200 | 798 | 339~396 | 2 |
| 전라북도 | 5,214 | 3,394 | 820 | 250~396 | 2 |
| 전라남도 | 30,995 | 23,132 | 7,863 | 246~568 | 13 |
| 경상북도 | 4,059 | 4,059 | - | 395~430 | - |
| 경상남도 | 16,223 | 13,097 | 3,126 | 409~568 | 5 |
| 제 주 도 | 3,205 | 3,205 | - | 444 | - |

- 국가어항 수요 검토결과 필요항수 30개 추가지정 시 현재 104개항에서 134개항으로 확대
 - 추가수요 30개항은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을 항종변경
- 지방어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에 따라 현재 289개에서 260개로 축소
- 어촌정주어항은 1개항을 국가어항으로 항종변경하여 현재 579개에서 578개로 축소

<표 2.128> 어항별 필요항 수

| 구분 | 필요항수 | 기지정항수 ('07년기준) | 지정 및 해제항수(개항) |
|--------|------|-------------------|---------------|
| 국가어항 | 134 | 104 | 30 |
| 지방어항 | 260 | 289 | (-)29 |
| 어촌정주어항 | 578 | 579 | (-)1 |

1.8.2 어촌의 유형화·특성화 검토

1) 소득원과 접근성에 따른 어촌의 유형화

- 어가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연계한 정책사업추진의 측면에서 어촌의 유형화
 - 주요 소득원인 경제활동과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토대로 어촌을 9개 유형으로 분류

<표 2.129> 소득원과 접근성에 따른 어촌분류

| 접근성 \ 소득원 | 수산업 중심형 (Fishery) | 관광 중심형 (Tour) | 수산업·관광 양립형 (Mixed) |
|--------------------|-------------------|---------------|--------------------|
| 도시근교형 (City) | C-F | C-T | C-M |
| 연안촌락형 (Village) | V-F | V-T | V-M |
| 낙후어촌형 (Out Island) | OI-F | OI-T | OI-M |

- 주요 소득원에 따른 어촌의 분류는 관광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이를 실제로 유형화하고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그 어촌의 주요 부존자원 특성에 따라 수산업 중심형, 관광중심형, 수산업·관광 양립형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할 수 있음

① C-F형

- 도시 및 도시근교의 수산업 중심형 어촌지역으로 입지여건상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자원경제적 특성을 가짐

② C-T형

- 도시 및 도시근교의 관광중심형 어촌지역으로 입지여건상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과 해수욕장, 유원지, 대형 횃집타운 등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자원경제적 특성을 가짐

③ C-M형

- 도시 및 도시근교의 수산업·관광이 양립하는 지역으로, C-F형 또는 C-T형의 특성화방향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짐

④ V-F형

- 수산업 중심형 연안촌락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수산업 활동이 활발한 경제적 특성을 가짐

⑤ V-T형

- 관광중심형 연안촌락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원경제적 특성을 가짐(제주도, 강화도, 안면도, 거제도, 변산반도 등 수려한 해안경관 자원과 해수욕장 부근의 어촌이 이 유형에 해당됨)

⑥ V-M형

- 연안지역의 수산업·관광 양립형 어촌으로, V-F형 및 V-T형의 특성화 방향이 모두 적용 가능함

⑦ I-F형

-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격리된 환해성, 격절성, 고립성 등의 지리적 특성과 수산업이 활발한 자원경제적 특성을 가짐

⑧ I-T형

- 관광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자원경제적 특성을 가짐

⑨ I-M형

- 수산업·관광 양립형 어촌으로 I-F형 및 I-T형의 특성화 방향이 모두 적용 가능함

2) 자원성과 접근성에 의한 어촌유형화 특성

- 각 어촌의 핵심·잠재적 자원성과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어촌마을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
- 또한, 어촌유형 분류에서 접근성과 자원성, 그리고 어촌의 소득원을 동시에 고려하면, 수산업 중심형은 수산물 유통판매형으로, 관광중심형은 어촌관광레저형

으로, 수산업과 관광양립형은 동시에 수산업과 관광을 동시에 조화할 수 있는 어촌교류형 및 어촌문화학습형으로 분류 가능

<표 2.130> 접근성과 자원을 고려한 어촌소득원 개발의 특성화 방향

| 구 분 | 어촌교류형 | 수산물유통판매형 | 어촌관광레저형 | 어촌문화학습형 |
|---------|---------------------|----------|-------------------|---------|
| 도시근교(상) | 전통어업/생태마을 어촌문화마을 | 향토특산물마을 | 해양레저마을 혼합형관광마을 | 테마교육마을 |
| 연안촌락(중) | 전통어업/생태마을 어촌문화마을 | 향토특산물마을 | 해양레저마을 혼합형관광마을 | - |
| 낙후어촌(하) | 전통어업/생태마을 어촌문화마을 | 향토특산물마을 | 해양레저마을 | 무공해마을 |

- 관광자원은 크게 관광활동에 수반되어야만 하는 필수적 편의요소와 포괄적인 관광편익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음
 - 필수적인 편의요소는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기반시설로서, 이들 시설이 없으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있다고 만족이 절대적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님
 - 포괄적인 관광편익요소는 볼거리(Spectacle), 귀속감 그리고 감정의 공유 (Belonging and Sharing), 의식(Ritual) > 의미의 변화, 인격의 전환, 놀거리, 고유성(Authenticity) 등 5가지로 분류됨
- 이들 자원성을 접근성에 비추어 다시 이해해 보면, 필수적 편의요소는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질적 수준도 고도화 되어야하는 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그 규모는 최소·최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 함
- 포괄적인 관광편익요소를 접근성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도시/도시근교(상)은 볼거리, 놀거리, 장소적 고유성과 연관지을 필요가 있음
- 연안촌락(중)은 수산업 거점의 경우 (생활상의) 볼거리와 장소적 고유성, 또한 관광거점의 경우는 (생활상 또는 경관적인) 볼거리, 놀거리, 정주형의 경우는 귀속감, 의식, 공동체의 고유성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임
- 낙후어촌(고립해안어촌 및 도서)(하)은 의식, 인문/자연 생태적 고유성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임

(1) 어촌교류형의 특성화 방향

- 바다 및 연안자원을 이용 도시·어촌 교류의 공간에 거점을 구축하고, 연안생태, 어촌문화·역사 산업에 대한 체험관광 기회 확대, 지역적인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이에 적합한 종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를 도시민에게 제공, 그 안에서 볼거리, 놀거리, 장소적 고유성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특성화

① 전통어업/생태마을

- 전통어업·어구어법은 50여 개 이상이 현존하고 있으나 이를 체험마을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전통어업·어구어법을 볼거리로 접근
- 어업체험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연에 약간의 위험성이 따르기도 하므로, 상품화 할 수 있는 특정한 이벤트의 개발, 또는 상시 시연과 재현이 가능한 간략한 프로그램 형식의 체험상품 개발
- 어업인의 전통적인 어업과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조성
- 지역의 고유 전통 문화 축제인 풍어제, 죽방렴, 독살, 개매기 등 전통어업의 지역 축제의 육성
- 예시
 - 강서 가덕도 육소장망
 - 남해 지족 죽방렴



<그림 2.47> 도시·어촌교류

② 어촌문화마을

- 방문객의 체제시간이 최소한 1일 이상이고, 테마의 소재가 자연자원체험과 생활문화자원체험으로 한정
- 표적시장이 침투형 시장이므로, 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의 내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만큼 매력적이고 고유한 것이어야 함
- 고유성과 의식(Ritual)이 방문객의 체험 속에서 극대화 되어야 하고,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활용,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류형 마을 조성(미술, 시, 작곡, 영화, 사진 등)

(2) 수산물 유통 판매형의 특성화 방향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이 연계된 생산클러스터를 관광 상품화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지로 개발
- 수산물 유통은 자체의 유통기능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와 관광객을 동시에 유인, 볼거리와 장소적 고유성의 강화를 통해 특성화
- 장소적 고유성은 이들의 ‘원형’을 온전하게 보전하거나 일부라도 반드시 보존하고, 그 주변을 원형과 친화적인 상태로 보존시키는 방식으로 유지
- 입지는 거점화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정주형 어항은 물론 도서지역에서도 가능
- 개발의 기본 컨셉은 해당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생산 및 가공시설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관광자원화
- 예시
 - 양식장을 이용한 관광
 - 건어물 및 젓갈 제조공정의 관광 상품화 및 제품판매
 - 도시근교 → 특산물판매센터, 수산물직판장, 씨프런트 아케이드, 종합쇼핑센터
 - 연안촌락/낙후어촌 → 산지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냉동·냉장 및 건조장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 부산의 자갈치, 인천의 소래포구, 여수, 통영 등의 어시장



<그림 2.48> 일본의 수산물판매센터

(3) 어촌관광·레저형의 특성화 방향

- Orams²⁵⁾같은 학자의 The spectrum of marine recreation opportunities를 어촌의 해양레저마을의 개발 및 평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25) Orams, M. (1999) *Marine tourism: Development, impacts and management*, Routledge:London/New York.

<표 2.131> 'The spectrum of marine recreation opportunities'

| 구분 | 1종 (Easily Accessible) | 2종 (Accessible) | 3종 (Less Accessible) | 4종 (Semi-remote) | 5종 (Remote) |
|------------|--|---|-----------------------------|-------------------------------------|--------------------------------------|
| 경험 | ① 사회적 관계 왕성 ②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 ③ 혼잡도 높음 | ① 타인 접촉 빈도 높음 | ① 타인 접촉 가능 | ① 평화롭고 적막하나 안전구조 가능 ②(경우에 따라) 타인 접촉 | ①적막과 고립 ②자연밀착 ③자급자족형 |
| 환경 | ① 인간의 영향과 인공적 구조물이 심다함 ② 자연환경의 질 낮음 | 인간의 영향과 인공적 구조물이 가까이 존재 | 인간의 영향과 인공적 구조물이 눈에 띄 | 인간활동의 흔적이 보임 (예: 해안선의 불빛, 계류장의 부표) | ①고립된 높은 질의 자연환경 ②인간이나 인공물이 거의 없음 |
| 입지 | ①도심 또는 도심 근접지 ② 해변과 潮間地 | 조간지와 그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 조간지로부터 100미터~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 ①고립된 해안 ② 해안에서 1~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 ①무인도 지역 ② 해안에서 1~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 |
| 활동 (예시) | 일광욕, 인파관찰, 수영, 게임, 음식 먹기, Skimboarding, 유람관광 | 수영, 스노클링, 낚시,제트스키,무동력선, 써핑, 파라세일링, 윈드써핑 | 보트 세일링, 승선낚시, 스노클/스쿠바다이빙 | 스쿠바 다이빙, 잠수함타기, 동력선, 대형세일러 보트 | 연안 세일링, 연안 승선낚시, 원거리에 있는 해안에서의 바다 카약 |

- 접근성과 함께 이용강도(Intensity of Use), 사용충격(Human impact)을 같이 고려하는데, 접근성이 높을수록, 이용강도와 사용충격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봄
- 어촌 친수공간 조성, 관광어촌·어항 개발, 어촌 경관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한 레저 관광어촌의 창조적 개발 추진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 개발



<그림 2.49> 해양레저 시설

① 해양레저마을

-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의 흐름, 어류 등 역동적인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동호인 또는 젊은 층 등이 휴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마을(공간)을 조성(해수욕장, 피서리나 등을 활용한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지, 스킨스쿠버 관련시설, 어촌낚시별장 조성 등)
- 예시
 - 도시/도시근교의 해양레저마을
 - 해수욕장, 도시 유람선 선착장을 활용한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지
 - 해양레저단지 부근의 위락시설의 개발이 필요함
 - 연안어촌 및 낙후어촌의 해양레저마을에는 해양레포츠 시설 및 부대시설, 관련 교육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함
 - 소규모 요트 계류장, 스킨스쿠버 관련시설
 - 패러세일링, 윈드서핑 관련 시설

② 혼합형 관광마을

- 어촌의 지리적 잠재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개발(체류형 어촌관광유스호스텔, 어촌체험/관광펜션단지, 해수온천탕, 야영장, 캠핑장 등)
-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를 거점으로 형성된 관광거점으로서 주로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유흥시설, 유원지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 거점의 역할
- 수산관련 시설을 이용한 해양 레크레이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로활동과 관련된 승선체험, 승선낚시, 어항의 일부를 이용한 간단한 레저스포츠용 선박의 계류시설, 정온수역을 이용한 간단한 해양레포츠 교실 등의 도입이 가능함
- 주변의 매력요소를 연계하는 Honey Pot의 역할을 하는 관광거점의 역할로 모든 어촌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난개발을 회피할 수 있고, 중복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관광에 의한 개발시너지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거점의 역할

(4) 어촌문화학습형의 특성화 방향

-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촌 지역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등의 훼손이 심각
-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가치관 변화로 도시민들의 건전한 관광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학습 마을 육성



<그림 2.50> 어촌민속전시관

① 테마교육마을

- 지리적으로 도시인접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의 경우 각종 생태자원 및 전통 문화를 테마화하여 도시민들이 학습(관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수족관, 해양생물 자연사박물관, 수산과학전시관, 어촌문화 박물관, 해군시설 견학(항정 승선체험 등)
- Attraction의 다양화는 바람직 하지만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지역의 특성과 표적시장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컨셉 도출
- 기념물과 같은 경성적면서 정적인 장치만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퍼포먼스가 상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연성적이고 동적인 환경을 제공
- 예시
 - 경기도 안산 어촌민속전시관

② 무공해마을

-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가고 싶은 섬'과 같이 자연/인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거주환경도 동시에 개선이 되는 쪽의 컨셉 설정
- 특정한 매력물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보다는 현존하는 등대섬과 같은 매력물(Attraction)을 활용
- 낙도촌락형 어촌의 경우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휴양 및 건강음식문화마을로 조성(환경친화적 생산기반시설을 조성 무공해 식품 생산지로 개발, 요양시설, 낙도 극기훈련장, 낙도 기숙학원 등)
- 예시
 - 해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 수련원
 - 매생이 특화 마을

3) 어촌개발사업 권역 특성화 예시

- 어촌개발사업의 권역 특성 분류는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2007,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72개권역 중 소권역 9개권역(인천1, 강원2, 경북1, 전남5) 및 복합생활공간 2개권역(영광 대신, 남해 지족)을 제외한 61개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유형화·특성화 방안에 따라 분류
 - 앞으로 추진될 어촌의 특성화는 당해 어촌의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특성화(테마)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화·특성화의 예시(안)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예시적인 분류는 향후 어촌의 발전상을 가능해 보는데 의미가 있음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61개 권역에 대해 유형화·특성화된 결과를 제시
 - 해양레저마을로 발전방향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낙후어촌 보다는 도시/도시근교, 연안촌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전통어업/생태체험마을, 어촌문화체험마을은 그 특성상 연안촌락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무공해 마을은 도서형 어촌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도서지역이 갖는 독특한 체험요소, 청정환경 및 먹거리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132> 선정된 연도별 시행 권역

(단위 : 억원, 개소)

| 시도 | 채택 권역수 | 2007~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합계 | 72 | 16 | 12 | 11 | 12 | 11 | 10 |
| 복합 생활 공간 | 2 | 영광 대신(50) 남해 지족(50) | | | | | |
| 부산 | 1 | | | 장안(40) | | | |
| 울산 | 1 | | | 당사(40) | | | |
| 인천 | 1 | | | | 중부(30) | | |
| 경기 | 2 | | 안산 대부 I (50) | | | | 화성 서신(40) |
| 강원 | 4 | 삼척 원덕(50) | 강원북부 내수면(50) | | 강릉 강동(30) | | 양양 강현(30) |
| 충남 | 3 | 태안 태안II(50) | | | 홍성 홍성(50) | | 서산 지곡(40) |
| 경북 | 7 | 울진 죽변(50) 영덕 삼사(50) 포항 하정(50) | 포항 대보(50) | 포항 칠포(30) | | 포항 석병(50) | 포항 양포(40) |
| 경남 | 15 | 통영 통영육지(50) 남해 남면서부(50) | 통영 용남광도(50) 마산 진동만(40) 거제 서부(50) | 통영 비진도(50) 마산 마산만(50) 남해 강진남부(40) | 통영 육지 II(40) 거제 남부(50) | 하동 광양만(50) 사천 송포(40) 고성 자란만(40) | 거제 동부(47.01) 하동 동부(50) |
| 전북 | 3 | 고창 남부(50) | | 군산 선유(50) | | 부안 위도(50) | |
| 전남 | 30 | 고흥 지족(50) 고흥 여자만(43) 완도 금일(50) 신안 장산(50) 장흥 남부(41) | 여수 군내(40) 고흥 포두(50) 완도 군외(50) 신안 비금(30) 완도 완도(50) | 해남 화산(50) 신안 도초(30) 고흥 대서(50) 완도 노화(50) | 여수 미목(50) 완도 신지(50) 고흥 금산서부(50) 강진 마량(50) 신안 신의(30) 무안 복길(50) | 신안 증도(30) 완도 고금(50) 신안 하의(30) 여수 초도(40) 고흥 여자북부(40) 해남 화원(50) | 해남 송지II(40) 고흥 오마(50) 신안 압해(50) 완도 약산II(40) |
| 제주 | 3 | 제주 구좌서부(50) | 서귀포 대정서부(50) | | 제주 한림동부(50) | | |
| 30 억원 | 9 | - | 1 | 2 | 3 | 2 | 1 |
| 40 억원 | 15 | - | 2 | 3 | 1 | 4 | 5 |
| 50 억원 | 34 (48) | 2(14) | 9 | 6 | 8 | 5 | 4* |

※ ()는 권역별 사업비임

<표 2.133> 어촌종합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분류

| 자원성 | 접근성 | 도시근교 | 연안촌락 | 낙후어촌 |
|---------------------|---------------|--|--|--|
| 어촌교류형 (28) | 전통어업/ 생태마을 | 삼척원덕 | 홍성홍성 고성자란만 하동대교동부 해남화산 고흥여자북부 해남송지 II 고흥오마 태안태안 II 장흥남부 고흥여자만 | 부안위도 통영욕지 II 군산선유 완도노화 완도고금 완도약산 II |
| | 어촌문화 마을 | 포항석병 마산진동만 | 서산지곡 남해강진남부 여수군내 고흥대서 여수미목 강진마량 해남화원 | 제주대정서부 제주한림동부 |
| 수산물유통 판매형 (9) | 향토특산물 마을 | 마산마산만 고창남부 통영욕지 | 강원북부내수면 하동광양만 완도완도 고흥금산서부 | 완도신지 완도금일 |
| 어촌관광 레저형 (20) | 해양레저 마을 | 부산장안 울산당사 안산대부 영덕삼사 울진죽변 포항대보 포항양포 포항하정 | 거제서부 거제남부 남해남면서부 사천송포 거제동부 완도군외 고흥포두 고흥지죽 무안복길 | 신안장산 |
| | 혼합형 관광마을 | 제주구좌서부 | 통영용남광도 | - |
| 어촌문화 학습형 (4) | 테마교육 마을 | 화성서신 신안압해 | - | - |
| | 무공해 마을 | - | - | 통영비진도 여수초도 |
| 계(61개 권역) | | 17개 권역 | 31개 권역 | 13개 권역 |

※ 70개소 권역 중 소권역 9개 권역을 제외한 61개 권역을 유형화

제 2 장 제도개선 방안

2.1 어항개발 관련부문

2.1.1 어항개발부문

1) 집중투자방식의 어항개발

- 전술한 바와 같이, 어항개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편익의 감소, 공사비 증가, 태풍 등 피해로 인한 중복공사비의 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 이미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104개 국가어항은 현재의 분산투자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타당함. 2008년 이후 국가어항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방법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함

2) 어항개발 사전평가제도 강화

- 법정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조사에 어항·어촌의 여건변화, 어항이용 수요조사, 경제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 및 지역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함

3) 다기능 어항의 법제화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법정 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향후 어항개발은 어항기능의 다각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고려하여 ‘다기능어항’이라는 명칭과 개발사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 등 다기능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다기능어항 개발대상에 지방어항을 포함해야 함

2.1.2 어항정비부문

1) 어항정비사업의 체계화

- 완공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어항이 23개항에 달하여 어항시설의 노후화가 진행중이므로 체계적인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항정비를 강화해야 함
- 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된 일본의 경우, 2006년 어항정비사업이 전체 수산관계사업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완공된 지방어항에도 어항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어항정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준 미달 법정 어항 지정변경 어항의 항종변경 등 제도 검토

- 어항 지정 당시에는 지정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후 어선수와 위판고가 급감하여 현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07년 현재 개발중인 104개 국가어항 중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어항은 62개항에 불과함²⁶⁾
- 어촌·어항법 부칙 제3조(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번 지정된 어항의 항종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당시와 비해 여건이 크게 변한 항의 추가개발·정비 및 항종변경의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항의 활용도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항의 기능수행정도를 분석한 후 개발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지, 또는 항종변경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어항의 항종변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6) 현지어선 척수 및 총톤수, 위판고, 여객선 운항횟수는 2006년 한국어촌·어항협회 시행조사자료 참고, 외래어선 척수는 2006년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2.1.3 어항관리부문

1) 어항관리체계의 개선

- 현재 어항관리청은 어촌·어항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 어항관리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어항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소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항관리 인센티브제 도입이 요구됨. 정기적인 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어항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항관리청의 어항관리의지 제고

2) 어항관리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마련

- 현행 어촌·어항법은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시행령 제39조) 징수액은 저조하여 어항관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어항 관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요금 징수 및 어항 배후부지 임대료 징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어항관리이 개선이 필요함
- 어항관리청의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어항시설 불법사용행위 단속·어항이용요령 지도 등의 역할 수행

3) 어항개발의 사후평가

- 어항이 완공된 후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어항이 계획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항만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은 항만건설과장이 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중간 및 사후평가에 관한 책임이 국토해양부 항만건설과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어항개발의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어촌·어항법 개정시

반영이 요구됨

4) 어항운영전산망(DB 시스템)의 활용

- 전술한 바와 같이, 어항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고자 마련된 어항대장의 기록이 부실하며, 구축된 DB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음
- 어항대장의 기록현황의 점검과 어항운영전산망의 접근권한 확대에 대한 규정의 법제화가 요구됨

2.1.4 어항환경개선부문

1) 어항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 현재 어항내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항배후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정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또한, 정기적인 항내 매물조사(수심측정 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준설토사 처리대책 없음. 항내 수질개선을 위해 어선폐유수거대책을 강화하는 등 어항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항기능시설의 확충

-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항배후부지에 어획물 양륙(하역기계), 저장(냉동·냉장 창고), 기자재 창고, 세척(해수인수시설) 및 가공(어획물 해체 및 건조장 등)을 위한 어항기능시설을 확충해야 함

3) 어항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항편익시설의 확충

- 어항어촌 관광객의 어항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여객대합실, 어항배후도로, 주차장, 화장실, 야간 조명시설, 광장·조경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어항편익시설 확충계획을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해야 함

2.2 어촌개발 부문

2.2.1 법·제도 개선방안

1) 어촌정책 대상

(1) 어촌정책의 공간적 대상

- 농림수산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촌관련 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사업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촌정책의 대상과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은 공간적 범주에서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시행한 결과 어촌의 특성을 도출하지 못함(읍면단위의 조사로는 어촌의 특성을 도출할 수 없음)
- 어촌정책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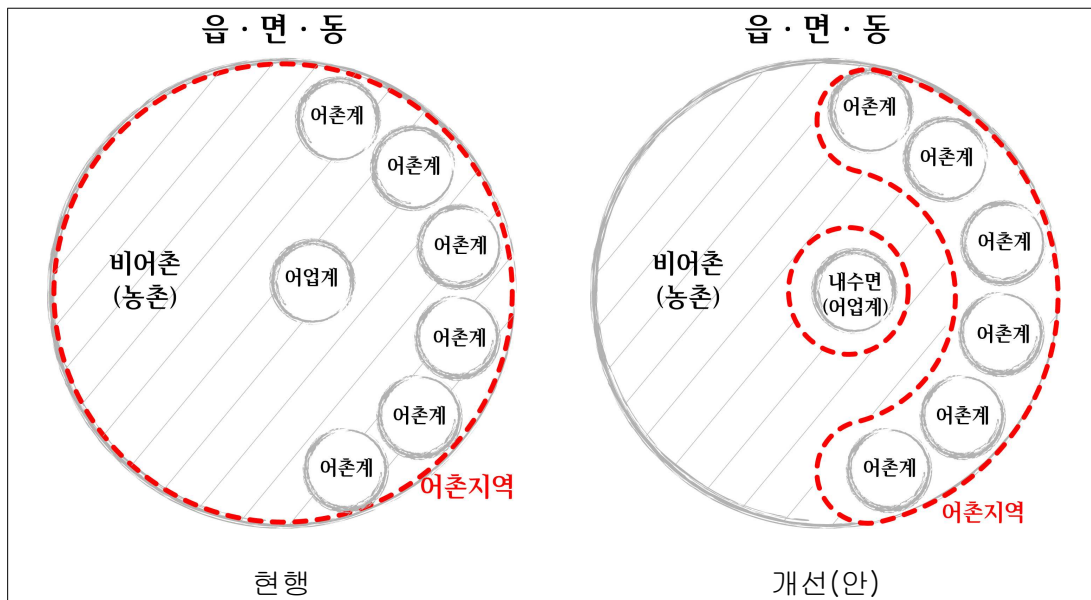
(2) 어촌·어항법 어촌의 정의

- 현행
 - 어촌·어항법 제2조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가. 읍·면의 전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선(안)
 - 어촌에 대한 정의는 동일
 - 가. 어촌계를 포함하는 법정리
 - 나. 어업계를 포함하는 법정리

(3) 어촌의 공간적 개념도

- 현행 어촌·어항법에 의한 공간적 개념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수산업 활동을 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2.52에서 나타나듯 농촌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을 포함한 비어촌지역을 배제한 어촌지역에 대한 명확한 공간적 정의가 필요함
- 현행 어촌·어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은 비어촌지역과 혼재되어 어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책대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음
- 비어촌지역을 제외한 어촌계 및 어업계 중심으로 어촌의 정의를 할 경우 어촌의 정확한 실태와 특성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반면, 행정구역상 법정리 단위의 어촌지역을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2.51> 어촌의 공간적 개념도 개선방안

2) 「어촌종합개발사업」 명칭

-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의 각 사업을 말함
 -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
 -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명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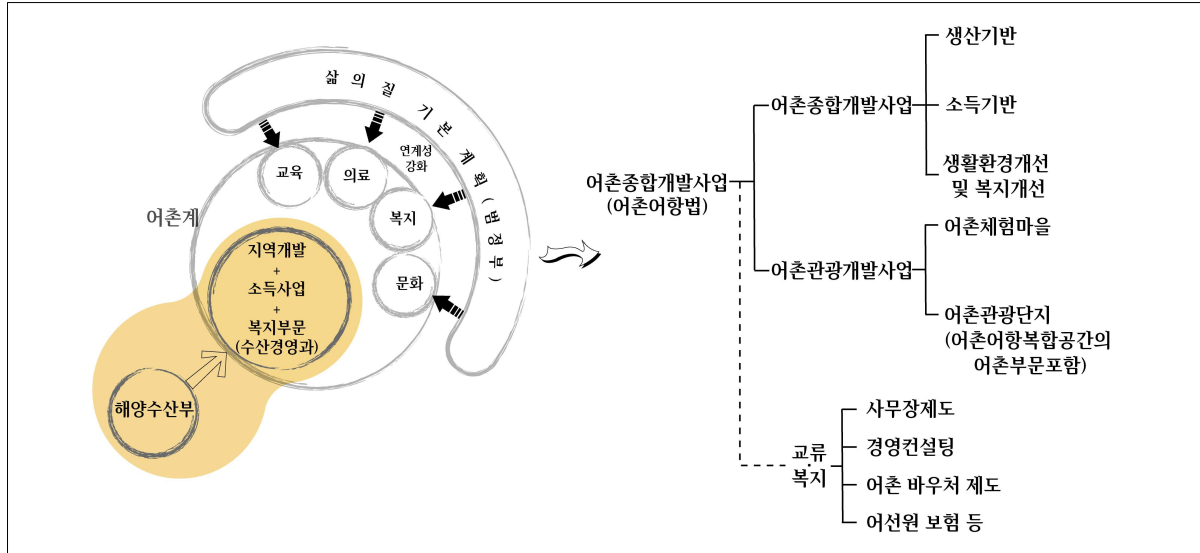
흔동의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모호함

※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럴 경우 어촌관광개발사업 또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됨

-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단위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간 명칭 중복
 -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발전사업」으로 변경
 - 단위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개발사업」으로 변경

2.2.2 사업체계 개선방안

-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관련시설 및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맞게 어촌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52> 어촌개발 사업체계

-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하드웨어의 기반시설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특징을 보임

<표 2.134> 어촌개발사업 세부 사업내용

| 사업명 | 시설분류 | | 사업내용 |
|----------|---------------|--|---|
| 어촌종합개발사업 | 생산기반시설 | 어선계류시설 | 선착장, 물양장, 외곽시설, 계류시설, 준설 및 암반제거, 부잔교, 안벽, 하역시설, 용수시설, 어선간이수리소 |
| | | 해안시설 | 선착장 진입로,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해안조명시설, 호안 |
| | 소득기반시설 | 육상수산시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산지가공처리시설, 화입건조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고, 어민대기소 및 탈의실 |
| | | 유통시설 | 산지간이위판장, 임시축양수조 |
| | | 어촌관광시설 | 해안소공원, 낚시터조성, 체험어장, 어촌전통문화시설 정비 등 |
| |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 어촌환경시설 | 급수시설, 상하수도, 관정, 공동화장실, 어선간이수리소,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폐각분쇄처리장 |
| | | 복지시설 | 어업인회관, 어업인복지회관, 경노당, 해안소공원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 | |
| 어촌관광활성화 | |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민박시설,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갯벌, 어업, 조류, 등), 낚시터(잔교),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담수생태공원, 휴양림, 해안산책로, 해안자전거도로, 주차장, 조형물 등 | |

2.2.3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 어촌개발 관련사업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계획서가 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개발사업 이후의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앞서 실현율지표에서 보듯이 기계적인 인구와 소득의 예측은 개발사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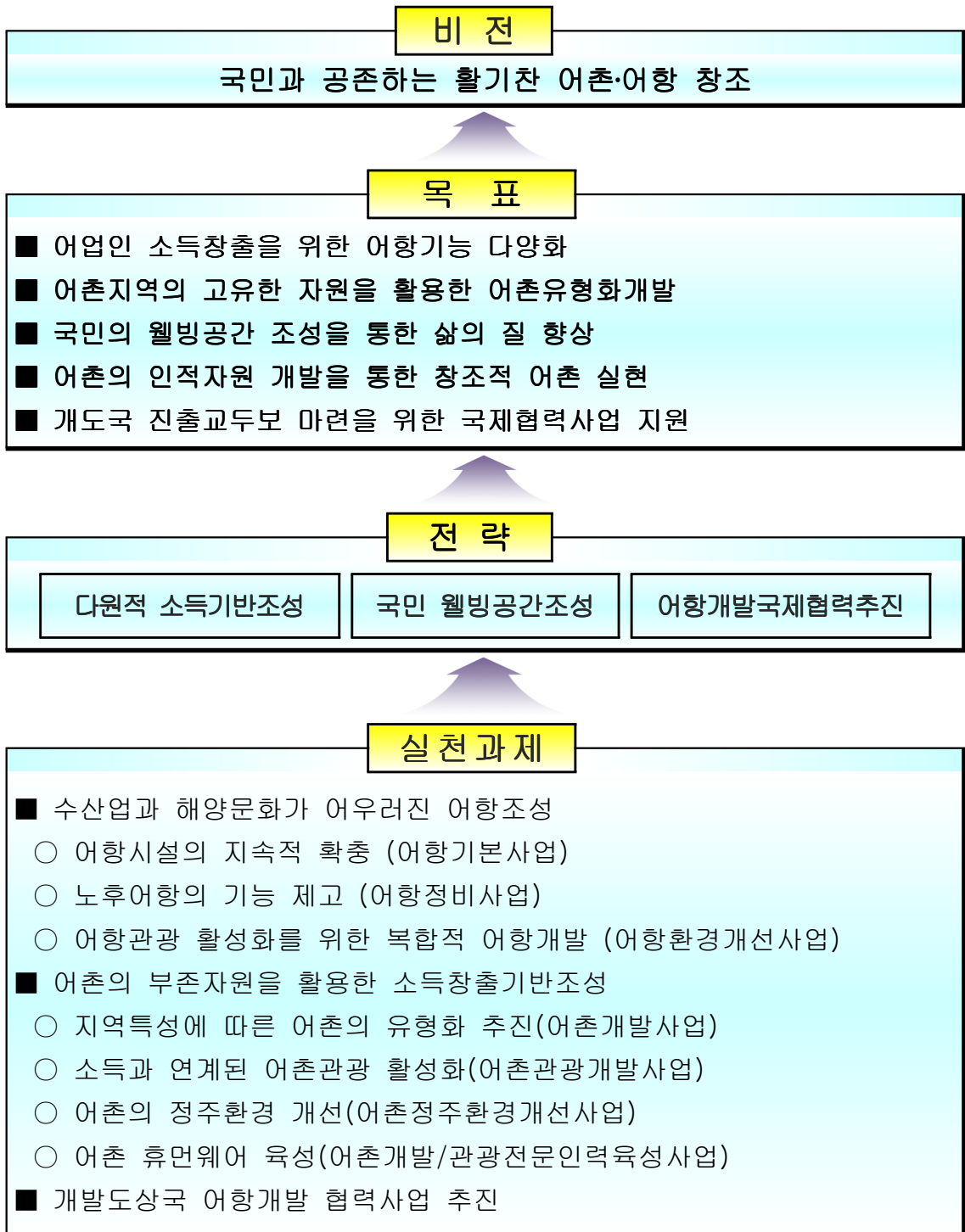
-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이후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렇게 할 때 사후에 어촌관련 개발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계측이 가능하며, 만일 어촌관련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드백을 시킬 수 있을 것임
- 일본에 있어서 수산관계공공사업의 평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특히 현재 예산당국에서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못지않게 사업의 성과여부를 중요시함
 -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2.3 정책 패러다임 부문

| 구분 | 기존정책 | 패러다임 변화 |
|----------|----------|-----------------------------|
| 수산정책 범위 | 수산업 중심 | 수산업·수산자원·가공산업·어업인·어촌의 통합 정책 |
| 지원방식 | 균형적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
| 수산업방향 | 생산중심 | 소비자 안전·품질·소비 및 수출 중심 |
| 어촌·어항 공간 | 가치중심 | 생산+정주+소비+휴양공간으로 통합 |
| 개발방향 | 어업인·어촌중심 | 어업인·소비자·국민에게 열린 어촌·어항 공간 |
| 개발범위 | 국내중심 | 개도국 어항개발 지원사업 확대 |

제 3 장 어촌·어항발전 비전과 정책방향

3.1 비전 및 정책목표



1) 정책의 비전

「국민과 공존하는 활기찬 어촌·어항의 창조」

- 고령화·공동화 등 다양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직면한 어촌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어촌을 건설 하자는 새로운 비전 설정
- 종합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을 건설하여 어업인은 물론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시설로 발전시킴으로써 어촌지역경제와 국민 후생증대에 기여
- 수산업 지원을 위한 보급, 유통 및 가공시설을 첨단화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고품질화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활로를 찾고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복지어촌 실현
- 해양과 어촌에 형성된 자연적·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어촌관광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선진국형 해양레저활동과 어촌전통문화 및 해양생태계 체험학습의 공간 창조
- 어항 및 주변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정화시설 설치, 항내 수질개선을 통해 청결한 어항으로 가꾸며 배후부지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거듭남

2) 정책의 목표

(1)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어항기능 다양화

- 국민의 어촌관광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요구됨
-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어항개발의 예산제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어항 배후부지에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확대
- 어항기본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어선의 정박 및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어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어항의 기본기능을 강화함
- 수산물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항의 위생시설을 정비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항의 수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함

- (2) 어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어촌유형화 개발
 - 획일화된 사업지침에 의해 개발된 어촌을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유형화·특성화된 어촌개발 추진
 - 어촌의 다양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복원·창조·제거 등 경관형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을 건설
 -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어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촌, 도시지역과의 격차 완화
 - 수산업 생산량 감소 및 어선감척 등으로 인한 어가소득 하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어업 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어항의 배후부지를 지역특산물 판매장, 해산물 식당가 등을 유치하여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
- (3) 국민의 웰빙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
 - 상대적으로 낙후·고령화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업인의 생활·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의 삶의 질 개선
 - 어항기본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어항정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의 투자가 미흡하였음. 어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항의 건설 추구
- (4) 어촌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창조적 어촌 실현
 - 어촌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양성 방안 도출
- (5)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지원 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

3.2 중장기 정책전략 및 실천과제

3.2.1 부문별 정책전략

1) 다원적 소득기반조성(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어항조성)

(1) 어항시설의 지속적 확충

① 어항기본시설 지속적 확충

- 2006년 말 현재 국가 전체의 어선안전수용율은 66.6%²⁷⁾ 수준이며, 현재 개발중인 104개 국가어항이 모두 완공되더라도 어선안전수용율은 79%²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어선안전수용율 제고를 위해 국가어항의 신규지정이 요구됨. 이미 개발중인 104개 국가어항의 완공율이 90%를 넘어서는 2008년까지 신규지정 대상항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이후부터 개발사업을 착수함으로써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완공율이 저조한 지방어항의 경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완공율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어항의 기본시설 확충과 더불어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포구의 기본시설 확충방안 고려

②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 확충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냉동·냉장창고, 야적장, 기자재창고, 어선건조장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과 해수인·배수시설, 하역기계 등 어항기능시설을 확충
-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장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정비

(2) 노후어항의 기능제고

① 어항시설물 정비

- 완공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어항의 정비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7년말 현재

27) 2006년 현재 총 등록 어선수는 85,613척임. 이중 수용대상 어선수는 80,395척인데, 2006년말 현재 기준으로 국가어항은 38,289척, 지방어항은 9,719척, 항만은 18,374척을 수용할 수 있어 총 66,382척의 수용능력을 확보함

28) 2013년 기준 : 동해 96%, 서해 80%, 남해 75%

완공된 국가어항 90개항의 완공후 평균경과기간은 13.5년이며, 이 중 23개항은 완공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어항시설의 노후화가 진행중임. 다기능어항개발이 진행 중인 13개 국가어항을 제외한 나머지 72개항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야 함

② 해수면 상승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태·폭풍의 발생에 따라 항만과 어항의 설계파는 상황 조정되고 있음.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파 상황에 따른 보강계획이 수립되는 2009년도 이후에는 개별 어항에 대한 어항시설물의 중요도와 피해시 영향력 등을 감안한 설계·평가기준 및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③ 항내 매물 토사(준설토) 처리 문제

- 지속적인 항내 매물현상으로 인해 준설토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준설토 처리는 항내 준설토투기장 조성 또는 공해상에 허가를 받아 투기하여 왔으나, 최근 보존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외해투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3) 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어항개발

①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속적 확대

-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의 정착으로 해양레저활동과 어촌체험관광 등 해양관광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²⁹⁾ 어촌관광수요의 변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어항의 다기능어항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어항의 경우도 관광수요가 많을 경우 다기능어항으로 개발가능함(현재 경기도와 화성시는 전곡항을 다기능테마어항으로 개발중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기능어항의 특화개발(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 확대)이 필요함. 현재 추진 중인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한 어항에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어항의 여건과 입지조건에 따라 바다낚시 특화어항, 마리나 특화어항, 어촌체험관광 특화어항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29) 농림수산식품부(2005)는 우리나라의 어촌관광 참여인구는 연평균 8.4%씩 증가하여 2004년 8,615만명에서 2013년에는 1억 6,795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함

어항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할 수 있음

② 민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 다기능어항의 개발에 있어서 국비지원의 대상이 아닌 마리나클럽하우스,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함
- 지역민은 수익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산물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유통 및 서비스업에 참여하여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

③ 현대적 생활중심지·복합공간으로 개발

- 어촌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상점가 등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의료 등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어촌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생활 및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임
- 어항의 배후부지의 상점가 조성 및 마을회관 등 지역정보센터, 공연장 등 문화시설, 공원·광장 등 조경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함

④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 유치

- 2006년 어가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3천만원으로 도시가계소득대비 약 72.6%, 농가소득대비 약 92.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³⁰⁾
- 어항구역내에 국내산 수산물판매장과 횃집 등 해산물 먹거리장터를 조성하여 어가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⑤ 어항 기능시설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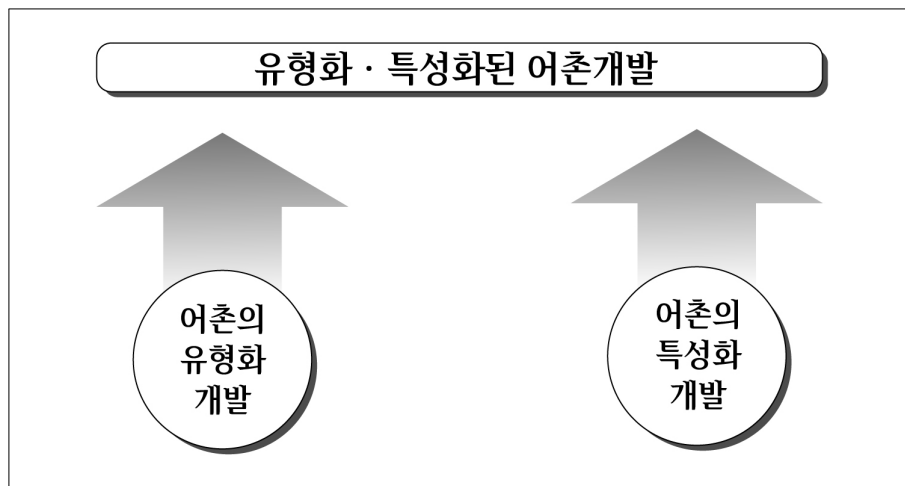
- 어항의 관광수요 증가와 더불어 어항구역내 각종 편의시설에서 해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내 수질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따라 항내 해수유통을 위해 방파제를 개조하고, 육상기인 오·폐수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을 확충해야 함

30) 통계청, 2006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2) 국민 웰빙공간 조성(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기반 조성)

(1) 지역특성에 따른 어촌의 유형화 추진

- 과거의 획일화된 하향식(Top-down) 개발을 지양하고, 어촌을 입지여건, 어촌의 부존자원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특성에 맞는 테마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어촌개발 방식과는 차별화함
 - 유형화 특화개발을 통해 개성 있는 어촌으로 개발
- 어촌을 대·중·소 권역으로 분류하고 대(중심어촌)의 경우 중심테마어촌으로 육성
 - 대(중심어촌) 이외의 중·소규모 어촌은 생산기반, 소득기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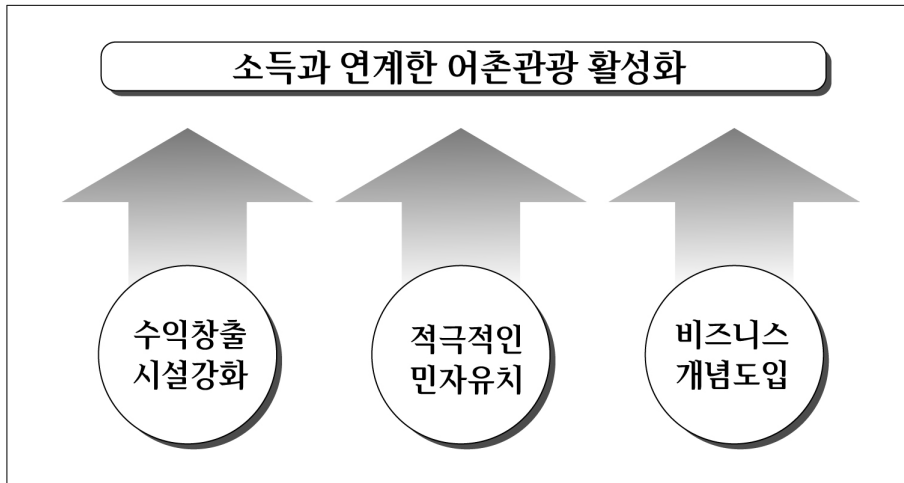


<그림 2.53> 유형화·특성화 어촌개발

(2)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 기존의 어촌관광사업은 관광기반사업 지원에 따라 직접적인 어업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이 부진한 어촌체험마을과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관광자원형, 수산·관광형 어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실질적인 어업외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함
- ① 수익창출 시설 강화
- 어촌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 도입
 -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경관,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수립

된 계획에 대해 심의절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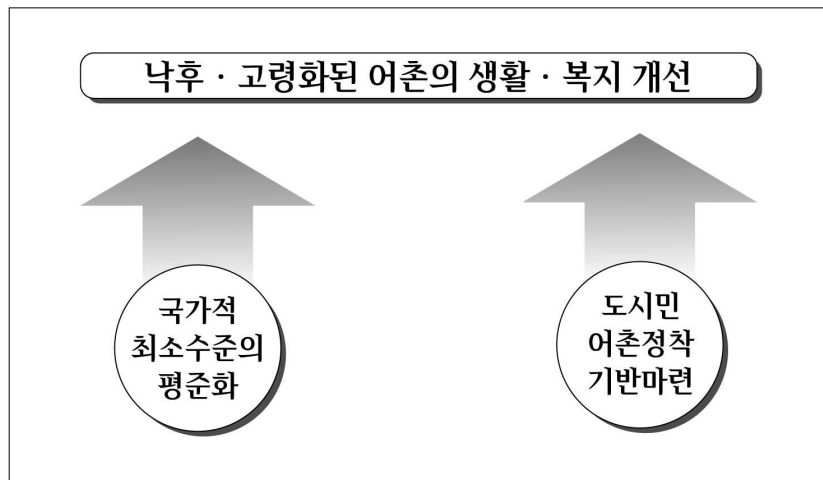


<그림 2.54> 소득과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 ② 적극적인 민자유치
 -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민자유치를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관광기반시설 지원과 민간개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민자유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 ③ 어촌(관광) 비즈니스 개념 도입
 - 시장경제의 원리 즉, 입지여건, 사업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의 타당성을 민관위원회에서 평가
- ④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고유성과 정체성 토대로 어촌다움을 보전·발굴·복원·창조
 -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 있는 자원을 다양한 경관형성 수법을 활용하여 어촌다움을 부각시켜 정주여건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열린 어촌으로 국민에게 접근
 - 어촌의 다양한 경관자원을 관리·육성하여 어촌다움 유지
 - 어촌의 다양한 경관유형 즉, 어촌촌락, 자연환경, 해수욕장, 해안도로, 어항 등을 대상으로 어촌다움 유지

(3)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

- 낙후어촌(취약지구)의 기초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을 국가적 최소수준으로 평준화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어촌지역의 생활·복지 개선
 - 낙후정도가 심화된 취약지역은 국가적 최소단위 수준의 정주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개선과 복지부문 강화
 - 고령화가 심화된 어촌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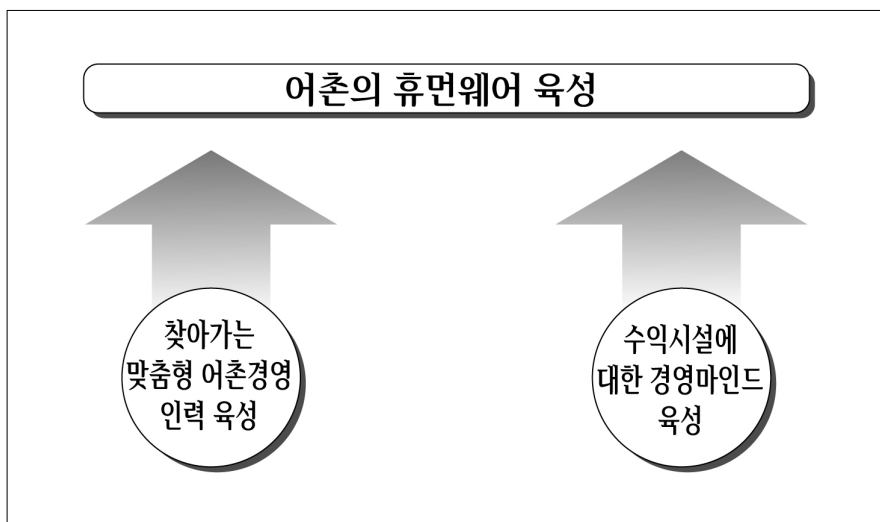
<그림 2.55> 낙후·고령화된 어촌의 생활복지 개선

- ① 낙후 및 고령화된 어촌을 국가적 평균수준으로 유지
 -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심화된 어촌은 국가적 평균수준 유지
 -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심화된 어촌 112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낙후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라는 신규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어촌발전의 형평성 제고
 - 고령화된 심화된 어촌의 어업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
- ② 어촌에 정주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기반마련
 -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주 또는 체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은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 ③ 아름답고 쾌적한 어촌의 형성
 - 몰개성의 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어촌으로 형성

- 어촌의 다양한 경관유형 자원을 관리·육성하여 어촌다움 유지
 - 어촌경관형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쾌적한 아름다운 어촌 형성

(4) 어촌 휴먼웨어 육성

- 어촌은 고령화, 공동화로 인해 어촌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하여 어촌발전의 추진력 저하
-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인력을 육성하여 어촌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 마련



<그림 2.56> 어촌의 휴먼웨어 육성

- ①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및 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참여 능력 배양 및 실효적인 사업 추진
- ② 어촌관광전문인력 육성
 - 어촌지역의 관광 및 관광어촌마을의 자립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제도³¹⁾, 사무장지원 추진
 - 대상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교육 시행

31) 1촌 1전문가 컨설팅 제도 : 지역내 대학교수, 연구원, 은퇴 공직자 등이 1어촌을 전담하여 마을경영, 개발계획수립 등 어촌마을 전체 운영에 대해 자문·컨설팅 하는 제도

③ 자율어업 전문인력 육성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어업생산관리체계를 구축에 필요한 자율공동체 컨설팅 지원(수산사무소별 매칭 컨설턴트 확보)
- 자율관리 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수산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교육 육성

3) 어항개발 국제협력추진(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추진)

- 해외개발 협력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에 대한 무상지원, 수산기반시설인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등에 대한 유상지원사업, 기술개발공유 및 인적교류활성화 등 .
- 지원대상시설은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재해방지시설, 침식방지시설, 복합어항시설, 관광어항시설 등 해외 어장확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외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EDCF)사업으로 지원 추진
 - 무상지원사업(KOICA) : 개발도상국의 전국단위-권역별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지원)
 - 유상차관사업(EDCF)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을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EDCF차관을 제공하여 시설확충에 기여(방파제, 항로준설, 접안시설 등)

3.2.2 실천과제별 기본방향

<표 2.135> 사업별 개발 기본방향

| 사 업 명 | 개발 기본방향 | 비고 |
|---------------------------------------|---|-----------|
| <p>■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어항 조성</p> | | |
| <p>어항기본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정된 104개항 중 미완공 12개항을 2012년까지 조기 완공 달성 - 국가어항 지정 필요항수 30개항 중 시·군·구별로 어선안전수용율이 100% 미만이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6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30개항 중 '08년 지정대상 6개항을 제외한 24개항에 대해서는 총수방식을 도입하여 2012년에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를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지방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어항의 경우 신규지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을 제고 - 지방어항 완공율 제고를 위해 총수방식 적용배제 ◦ 어촌정주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비지원(국비 80%, 지방비 20%) 검토 ※ 어촌정주어항의 국비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어촌정주어항을 조기개발 하도록 정책방향 유도 | <p>계속</p> |
| <p>어항정비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44개항 중 24개항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0개항은 2023년까지 완료 - 잔여 55개항(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5개항 제외)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상태 확인 관리, 정비가 시급한 어항에 대해 정비계획에 반영 ◦ 해수면 상승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5개항의 정비사업 추진(2013년까지 1개항 완료)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 항내 매몰 토사(준설토) 처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개발이 지역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준설토 처리(해상투기, 투기장 조성, 준설토 유용 등)에 따른 문제는 어항 및 공유수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어항 지정·개발 추진 - 해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은 유용, 서남해안은 항별 투기장 또는 공동 투기장 확보 | <p>계속</p> |

(계속)

| 사 업 명 | 개발 기본방향 | 비고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 까지 완료 - 다기능어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2014년부터 2차 다기능어항 개발 추진 - 2차 다기능어항 계획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항 개발 개념 도입(낙시공원형, 관광레저형, 체험여가형, 가공유통형, 자원조성형 등) - 또한 노후어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수산업 중심기능 뿐만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생활거점기능 등 다양한 기능어항으로 계획 시행 - 어촌의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민의 수익사업 참여 유도 등 민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 어항기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의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능 목적의 어항환경개선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소통구 설치 등 항내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시설 확충 ·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야적장, 기자재 창고, 어구건조장,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등) 확충 · 현대적 생활중심자·복합공간으로의 개발(공원, 광장, 체육시설 등) - 어항의 기능제고 및 환경개선으로 어항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구보관창고 등 4개 기능시설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매년 14개 공익성격의 기능시설 확충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4개 기능시설 완료 후 수익시설에 대한 지원 검토 | 계속 |

(계속)

| 사 업 명 | 개발 기본방향 | 비고 |
|--|---|-----------|
| <p>■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기반조성</p> | | |
| <p>어촌개발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사업추진체계 개편 ◦ 지역별 관광 부존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2단계 70개권역 중 61개권역(중(40억이하)·대(50억이하))에 대해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학습형 등 4개 유형으로 테마를 설정, 9개 소권역은 정주환경기반조성으로 사업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료. ◦ 어촌지역 특성화 개발을 위해 사업비도 차등 지원방식으로 개편 ◦ 1, 2단계 230개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비사업 추진 | <p>계속</p> |
| <p>어촌관광 개발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 32개소(어촌체험마을 17개소+어촌관광형 15개소)를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완료함으로써 대중이 참여·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경관감상 위주의 정적개념에서 어업·생태·해양레포츠 체험 등 동적관광개념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창출로의 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 및 향후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방안 마련 | <p>계속</p> |
| <p>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공동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낙후 및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및 건강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의 시범 사업 추진 | <p>신규</p> |

(계속)

| 사 업 명 | 개발 기본방향 | 비고 |
|-----------------------------|---|----------------|
| 어촌 휴먼웨어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어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 자율관리어업전문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 계 속 / 신규 |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추진 | |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어항개발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대상지 조사, 해외 협력사업 추진체계 분석 등 ◦ 해외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국제기구과, 원양산업과 등) 사업단 구성 ◦ 협력지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지원대상국과의 MOU 추진 ◦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 | 신규 |

3.2.3 단계별 추진계획

<표 2.13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 (2009~2013) | 중장기 (2014~2023) |
|----------------|--|--|
| 어항 기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2개항 완공 - 6개항 추가지정 및 사업착수 ◦ 지방어항 완공율 70% 달성 ◦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38% 달성 ※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2012년, 5억), 24개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항 완공 - 추가지정 24개항 사업 착수 ◦ 지방어항 : 완공율 100% 달성 ◦ 어촌정주어항 : 65% 완공 |
| 어항 정비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24개항 정비사업 완료 (리모델링 3개항 포함)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기 수립 5개항 정비사업 계속 추진 (1개항 완료) 및 정비계획 수립 (2011~2013년)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20개항 완공 · 리모델링 계속 추진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기 수립된 잔여 4개항 정비사업 완료 및 잔여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 매몰토사(준설토) 처리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 단기계획 완료 단계에서(2012년) 사후평가를 시행 ◦ 어항기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시설 완료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다기능어항사업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 9개 시설 완료 - 완료후 수익시설로 사업 확대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개 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따른 테마설정 추진 - 테마설정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 권역별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개발을 위해 차등지원(50, 40억원) ◦ 9개 소권역(정주환경기반 조성)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어촌개발사업 방안 수립(201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어촌개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권역에 대한 정비사업 (1, 2단계 230개 권역 중 14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 |

(계속)

| 사업명 | 단기 (2009~2013) | 중장기 (2014~2023) |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17개소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1개소), 강원(1개소), 충남(4개소), 전북(2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제주(4개소)를 지원 - 개소당 사업규모 : 5억원이상 ◦ 어촌관광형 15개소 사업 완료(2011년)후 신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규모 : 50~60억원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 (2010, 5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 어촌정주 환경개선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10년) ◦ 9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개 어촌계 대상 사업추진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 어촌 휴먼웨어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 - 연 60명 교육(34시간) - 매년 지원 규모 : 50백만원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 연 120명 교육(80시간)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 매년 16개 마을 지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 |

(계속)

| 사업명 | 단기 (2009~2013) | 중장기 (2014~2023) |
|---------------------------|--|---|
| 어촌 휴먼웨어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각 수산사무소마다 민간전문가 1명이 매년 5~10개 공동체를 집중 관리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워크숍, 전문가워크숍 등 소요 경비 지원 ◦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60명 교육(2박3일 3회, 1박2일 1회, 해외연수) - 매년 지원 규모 : 80백만원 | |
| 개발도상 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 사업지원 대상국 조사 및 선정 ◦ 2개소 어항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당 공사비 350억원 (설계, 감리비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준공 ◦ 4개소 신규 추진 |

제 3 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1장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2장 경제적 효과 분석

제 1 장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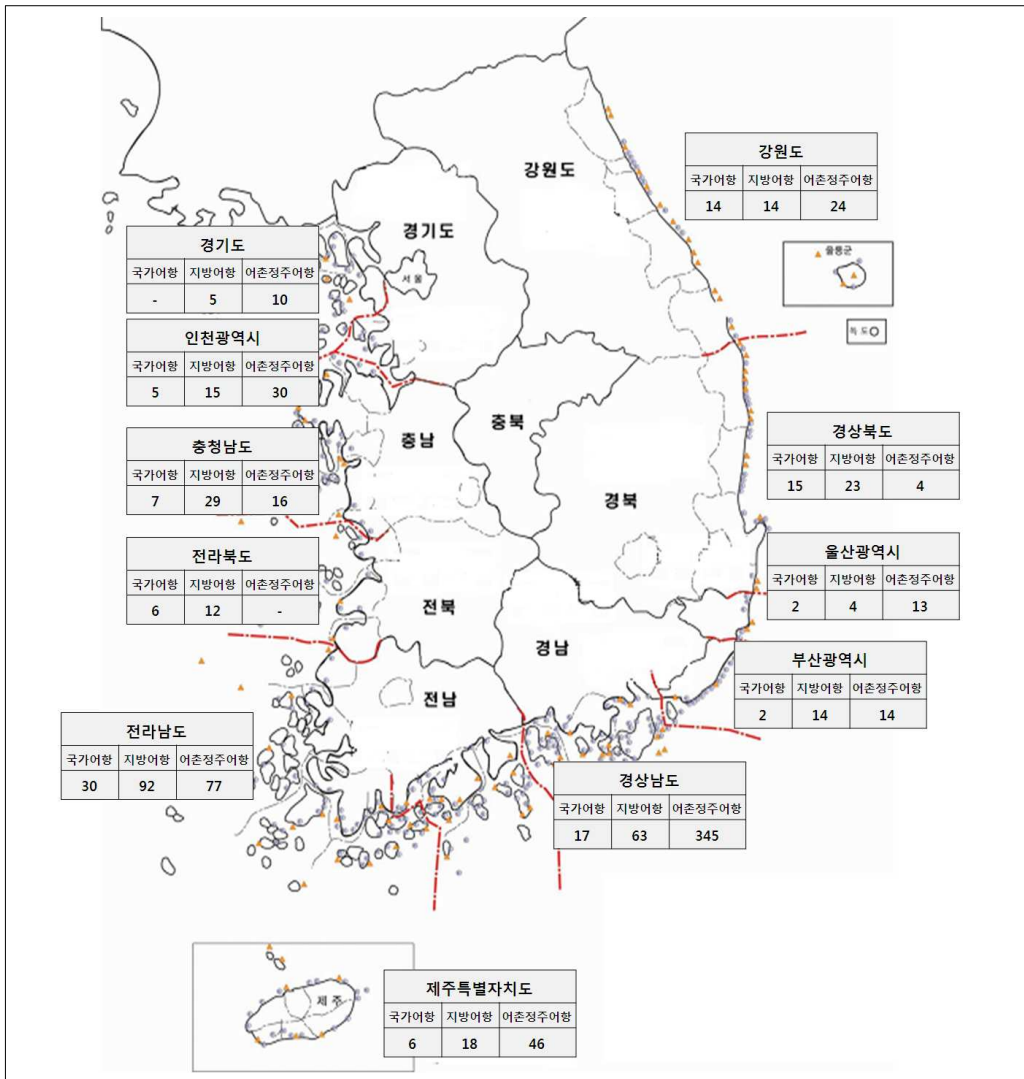
1.1 어항발전 기본계획

1.1.1 일반 현황

1) 어항의 종류 및 지정현황

- 어촌·어항법에 의거 지정된 어항은 국가어항 104개소, 지방어항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579개소 등 972개항이며, 이외에 비지정 소규모포구 1,334개소가 전국 연안에 분포

어항 지정현황



<그림 3.1> 지정어항 시도별 현황

<표 3.1> 어항의 종류 및 현황

| 구 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
| 정 의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자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
| 지정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광역시장,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 관리권자 | 광역시장, 시장·군수 | 광역시장, 시장·군수 | 시장, 군수, 구청장 |
| 지원조건 | 국고 100% | 국고 80% 지방비 20% | 지방비 100% |

2) 어항의 기능

(1) 기본적 기능

-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어업활동 지원기지
 - 산지(어항)에서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
 - ⇒ 선도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 항내 수면을 고급어류의 일시 축양장으로 활용
 - ⇒ 출하시기 조절 및 고가 판매 가능

(2) 부수적 기능

-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
 - 도서·벽지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정보의 기지
 -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기지
- 해양관광 및 문화공간 제공
 - 바다와 관련된 문화·레저활동(낚시배, 요트, 유람선 등) 및 음식점, 휴게·숙박시설, 주차공간 등 제공
- 기르는 어업 등 자원관리형 재배어항 역할
 -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장, 활어일시보관장소 등으로 어업자원 보호육성

3) 어항개발사업의 종류 및 기본방향

- 어항 개발사업은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³²⁾하여 추진
- 국가어항은 기본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재정 여건상 기본사업 위주로 추진

<표 3.2> 어항개발사업 종류<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 | |
|-----------------|---|
| 어항기본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방파제, 물양장, 호안, 정박지 등 |
| 어항정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 기존 방파제, 물양장, 호안 등 보수·보강·확장 |
| 어항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 공동작업장, 창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화장실, 해수소통구 등 어항기능시설 및 환경시설 |

3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1.1.2 어항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외해로부터 파도를 막아주는 외곽시설(방파제 등)과 어선이 항내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물양장 등) 및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등) 등의 항별 기본사업 추진

<표 3.3> 어항기본시설사업 추진 현황

| 구분 | 지정항수 | | | |
|--------|------|----------|--------|------|
| | 계 | '07까지 완공 | '08 완공 | 미완공항 |
| 국가어항 | 104 | 90(87%) | 2 | 12 |
| 지방어항 | 289 | 134(46%) | 11 | 144 |
| 어촌정주어항 | 579 | 133(23%) | 9 | 437 |

※ ()내는 완공율임

- 국가어항의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 기존 완공항 중 44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 중

<표 3.4>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

| 시·도별 | 계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13년까지 완료대상항 |
|------|------------|--|-------------------------------|
| 계 | 44 (24) | 44개항 | 24개항 |
| 부산 | 0(0) | - | - |
| 인천 | 3(2) | 어유정(강화군), 장봉(옹진군), 울도(옹진군) | 어유정(강화군), 울도(옹진군) |
| 울산 | 0(0) | - | - |
| 강원 | 4(2) | 대진(고성군), 아야진(고성군), 사천진(강릉시), 임원(삼척시) | 대진(고성군), 아야진(고성군) |
| 충남 | 5(2) | 모항(태안군), 안흥(태안군), 오천(보령시), 외연도(보령시), 홍원(서천군) | 안흥(태안군), 오천(보령시) |
| 전북 | 4(3) | 어청도(군산시), 연도(군산시), 말도(군산시), 위도(부안군) | 어청도(군산시), 말도(군산시), 위도(부안군) |

<표 3.4>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계속)

| 시·도별 | 계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13년까지 완료대상항 |
|------|-------|---|--|
| 전남 | 14(8) | 계마(영광군), 전장포(신안군), 가거도(신안군), 원평(신안군), 서거차(진도군), 어란진(해남군), 득암(완도군), 사동(완도군), 청산도(완도군), 소안(완도군), 녹동(고흥군), 풍남(고흥군), 시산(고흥군), 초도(여수시) | 가거도(신안군), 원평(신안군), 어란진(해남군), 사동(완도군), 청산도(완도군), 소안(완도군), 시산(고흥군), 초도(여수시) |
| 경북 | 8(4) | 죽변(울진군), 오산(울진군), 구산(울진군), 축산(영덕군), 강구(영덕군), 구계(영덕군), 대보(포항시), 양포(포항시) | 오산(울진군), 구산(울진군), 축산(영덕군), 강구(영덕군) |
| 경남 | 3(1) | 능포(거제시), 구조라(거제시), 욕지(통영시) | 구조라(거제시) |
| 제주 | 3(2) | 신양(제주시), 모슬포(북)(서귀포시), 위미(서귀포시) | 신양(제주시), 모슬포(북)(서귀포시) |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방지시설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한해 투자
- 1976년에서 2006년까지 31년간 38개 어항의 피해사례 분석결과 태풍 등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방파제에 집중되며, 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항이 약 70%로 반복 피해사례가 많음
- 최근 해수면 상승 및 잦은 대형 태풍내습으로 시설물 피해가 커짐에 따라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전해역 심해설계파」를 재산정한 결과 파고가 최대 3m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 발표
- 2005년 이후 재산정한 심해설계파³³⁾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항은 5개항(경북 4개항, 경남 1개항)임.

33) 2005년 12월 해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전해역 심해파 추산보고서 I, II」에서 제시한 심해설계파.

<표 3.5> 개정 설계파 적용 정비계획 수립항

| 시·도별 | 계 |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 '13년까지 완료대상항 |
|------|----------|---|--------------|
| 계 | 5 (1) | 5개항 | 1개항 |
| 경북 | 4 (1) | 감포항(경주시), 현포항(울릉군), 저동항(울릉군), 남양항(울릉군) | 남양항(울릉군) |
| 경남 | 1 | 미조(북)항(남해군) | |

<표 3.6> 최근 5년간 국가어항 피해현황

(단위 : 개항, 백만원)

| 권역 | 2001년 | | 2002년 |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
| | 피해 항수 | 피해액 (천원) | 피해 항수 | 피해액 (천원) | 피해 항수 | 피해액 (천원) | 피해 항수 | 피해액 (천원) | 피해 항수 | 피해액 (천원) |
| 부산 | - | - | 1 | 1,370 | 1 | 9,855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1 | 10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1 | 300 | 1 | 129 | - | - | 1 | 400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1 | 98 | - | - | - | - | - | - |
| 전남 | - | - | 3 | 3,172 | 1 | 377 | - | - | - | - |
| 경북 | - | - | 3 | 1,434 | 2 | 1,056 | 1 | 72 | 4 | 413 |
| 경남 | - | - | 2 | 61 | 7 | 2,674 | - | - | - | - |
| 제주 | - | - | 1 | 30 | 2 | 297 | - | - | - | - |
| 계 | - | - | 13 | 6,475 | 14 | 14,388 | 1 | 72 | 5 | 813 |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2005년 「나비」의 영향

- 해양환경관리법 상 어항건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는 해양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의 처리를 위한 공사비 증가요인 발생
- 104개 국가어항에 기 계획되어 있는 72개항에 준설토사는 약 3,128만 m³로써 2008년까지 2,805만 m³를 준설완료하고, 잔여 준설물량이 326만 m³(준설비용 390 억원)이 남아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매몰현상으로 인해 준설토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3.7> 국가어항 준설 발생량

| 시·도 | 항명 | 준설량(천 ㎡) | | | 사업비(백만원) | | |
|-----------|-----|-----------------|-----------------|----------------|---------------|---------------|---------------|
| | | 계획 | '08까지 | 잔량 | 총사업비 | '08까지 | 잔사업비 |
| 총계 | | 31,282.3 | 28,054.7 | 3,262.6 | 83,957 | 44,977 | 38,980 |
| 부산 | 다대포 | 98.1 | 98.1 | 0.0 | 383 | 383 | - |
| | 대 변 | 1식 | 0.0 | 1식 | 570 | - | 570 |
| 인천 | 어유정 | 20.0 | 0.0 | 20.0 | 485 | - | 485 |
| | 덕적도 | 79.0 | 0.0 | 79.0 | 834 | - | 834 |
| | 울 도 | 168.0 | 0.0 | 168.0 | 3,722 | 1,112 | 2,610 |
| | 선진포 | 149.0 | 149.0 | 0.0 | 2,465 | 2,465 | - |
| 울산 | 정 자 | 7.9 | 0.0 | 7.9 | 165 | - | 165 |
| 강원 | 대 진 | 74.7 | 74.7 | 0.0 | 2,690 | 2,690 | - |
| | 거 진 | 39.2 | 0.0 | 39.2 | 576 | - | 576 |
| | 공현진 | 1식 | 1식 | 0.0 | 98 | 98 | - |
| | 대 포 | 23,776.0 | 23,776.0 | 0.0 | 871 | 871 | - |
| | 수 산 | 36.2 | 0.0 | 36.2 | 746 | - | 746 |
| | 남 애 | 49.0 | 46.0 | 3.0 | 519 | 279 | 240 |
| | 사천진 | 43.4 | 0.0 | 43.4 | 655 | - | 655 |
| | 궁 촌 | 991.0 | 0.0 | 991.0 | 11 | - | 11 |
| | 덕 산 | 5.8 | 3.8 | 2.0 | 345 | 115 | 230 |
| | 장 호 | 0.2 | 0.2 | 0.0 | 13 | 13 | - |
| | 임 원 | 58.4 | 33.6 | 24.8 | 848 | 678 | 170 |
| 충남 | 삼길포 | 32.9 | 1.2 | 31.7 | 625 | 197 | 428 |
| | 모 항 | 26.8 | 26.8 | 0.0 | 1,496 | 1,496 | - |
| | 안 흥 | 114.0 | 0.0 | 114.0 | 931 | - | 931 |
| | 남 당 | 352.5 | 317.3 | 35.2 | 1,898 | 1,034 | 864 |
| | 오 천 | 11.0 | 0.0 | 11.0 | 842 | - | 842 |
| | 외연도 | 189.5 | 153.7 | 35.8 | 1,991 | 791 | 1,200 |
| | 홍 원 | 1식 | 122.0 | 1식 | 5,885 | 1,959 | 3,926 |
| 전북 | 연 도 | 34.7 | 0.0 | 34.7 | 423 | - | 423 |
| | 말 도 | 127.0 | 111.0 | 16.0 | 2,034 | 2,034 | - |
| | 격 포 | 202.7 | 176.2 | 26.5 | 4,566 | 3,515 | 1,051 |
| | 위 도 | 745.3 | 421.3 | 324.0 | 5,264 | 1,458 | 3,806 |
| 전남 | 계 마 | 205.0 | 317.0 | -112.0 | 2,625 | 2,626 | -1 |
| | 안 마 | 187.0 | 0.0 | 187.0 | 1,998 | - | 1,998 |
| | 전장포 | 93.8 | 64.1 | 29.7 | 477 | 207 | 270 |
| | 원 평 | 674.7 | 280.7 | 394.0 | 1,720 | 456 | 1,264 |
| | 가거도 | 127.0 | 127.0 | 0.0 | 2,020 | 2,020 | - |
| | 우이도 | 75.3 | 15.3 | 60.0 | 797 | 166 | 631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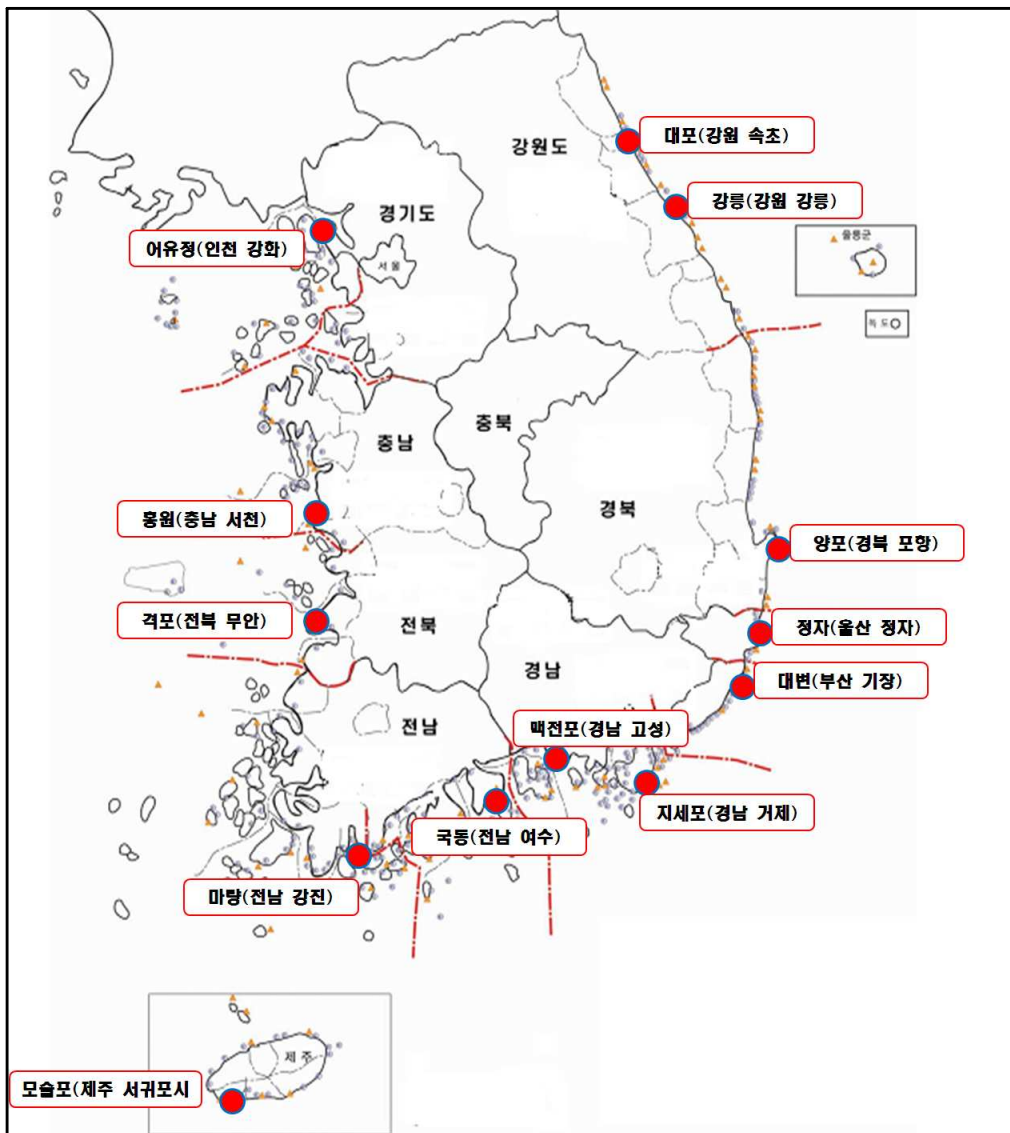
| 시·도 | 항명 | 준설량(천 ㎡) | | | 사업비(백만원) | | |
|-----|-------|----------|-------|-------|----------|-------|-------|
| | | 계획 | '08까지 | 잔량 | 총사업비 | '08까지 | 잔사업비 |
| 전남 | 수 품 | 17.0 | 17.0 | 0.0 | 404 | 404 | - |
| | 서 망 | 239.0 | 239.0 | 0.0 | 1,962 | 1,962 | - |
| | 서거차 | 20.0 | 20.0 | 0.0 | 787 | 787 | - |
| | 어란진 | 483.0 | 461.0 | 22.0 | 2,830 | 2,552 | 278 |
| | 마 량 | 16.0 | 0.0 | 16.0 | 1,194 | - | 1,194 |
| | 회 진 | 38.0 | 7.0 | 31.0 | 435 | 83 | 352 |
| | 득 암 | 68.0 | 68.0 | 0.0 | 666 | 666 | - |
| | 사 동 | 15.6 | 0.0 | 15.6 | 401 | - | 401 |
| | 도 장 | 223.0 | 33.0 | 190.0 | 2,727 | 239 | 2,488 |
| | 청산도 | 31.0 | 19.6 | 11.4 | 229 | 122 | 107 |
| | 풍 남 | 202.9 | 169.3 | 33.6 | 3,362 | 2,495 | 867 |
| | 여 호 | 80.0 | 80.0 | 0.0 | 672 | 672 | - |
| | 내 발 | 66.0 | 0.0 | 66.0 | 937 | - | 937 |
| | 시 산 | 35.1 | 35.1 | 0.0 | 396 | 396 | - |
| | 돌 산 | 85.0 | 85.0 | 0.0 | 635 | 635 | - |
| | 안 도 | 34.0 | 34.0 | 0.0 | 653 | 653 | - |
| 연 도 | 143.0 | 75.0 | 68.0 | 2,278 | 755 | 1,523 | |
| 경북 | 죽 변 | 53.0 | 22.0 | 31.0 | 804 | 290 | 514 |
| | 오 산 | 41.2 | 0.0 | 41.2 | 659 | 659 | - |
| | 사 동 | 114.5 | 27.5 | 0.0 | 354 | 354 | - |
| | 구 산 | 24.3 | 0.0 | 24.3 | 389 | - | 389 |
| | 대 진 | 19.3 | 16.0 | 3.3 | 789 | 637 | 152 |
| | 축 산 | 26.8 | 22.4 | 4.4 | 749 | 260 | 489 |
| | 강 구 | 36.8 | 0.0 | 36.8 | 1,267 | - | 1,267 |
| | 구 계 | 4.7 | 4.7 | 0.0 | 63 | 63 | - |
| | 대 보 | 0.8 | 0.8 | 0.0 | 12 | 12 | - |
| | 읍 천 | 9.7 | 6.7 | 3.0 | 1,009 | 559 | 450 |
| | 현 포 | 38.2 | 0.0 | 38.2 | 961 | - | 961 |
| | 남 양 | 2.9 | 0.0 | 2.9 | 71 | - | 71 |
| | 저 동 | 64.0 | 59.6 | 4.4 | 1,158 | 914 | 244 |
| 경남 | 외 포 | 17.0 | 17.0 | 0.0 | 122 | 122 | - |
| | 광 암 | 6.5 | | 6.5 | 293 | - | 293 |
| | 맥전포 | 19.0 | 19.0 | 0.0 | 917 | 917 | - |
| | 능 양 | 14.0 | 14.0 | 0.0 | 183 | 183 | - |
| | 신 수 | 182.0 | 182.0 | 0.0 | 759 | 759 | - |
| | 미 조 | 5.0 | 5.0 | 0.0 | 164 | 164 | - |
| 제주 | 모슬포 | 10.9 | 0.0 | 10.9 | 1,078 | - | 1,078 |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과거 어항기능이 단순 수산물 생산중심 기능에서 어촌관광, 해양레저, 해상교통 등 복합다기능어항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2004년부터 기지정된 국가어항 중 다기능어항 13개소를 선정 201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표 3.8> 다기능어항 지정항수

(단위 : 항수)

| 구분 |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다기능어항 | 항수 | 13 | 1 | 1 | 1 | 2 | 1 | 1 | 2 | 1 | 2 | 1 |
| | 항명 | | 대변 | 어유정 | 정자 | 대포강릉 | 홍원 | 격포 | 마량국동 | 양포 | 맥전포지세포 | 모슬포 |



<그림 3.2> 다기능어항 시도별 현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어항에 수산업 기능뿐 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어항을 부각시킨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설치시설 : 관광레저용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관광객편의시설, 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소득 시설,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어촌·어항법 제18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항관광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어항이용 및 활용이 어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장소, 어업인 편의시설 및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개발 필요성 제기
-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관광기능시설과 어항정화시설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항에 정의되어 있으나, 과거의 어항에 대한 관점이 단순 수산물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어항기본시설에 역점을 두고 투자
- 최근 어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관광레저, 체험활동 등 다양한 기능에 이미지를 요구함에 따라 어항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증진하고,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이 필요
- 서·남해안 지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어선의 용이한 접·이안 및 양육을 위하여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잔교 시설이 절실한 실정임
 - 어항환경개선시설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광장·조경시설, 다목적체육시설, 공연장 등

<표 3.9>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 해역 | 항수 | 부잔교 설치 항수 | 부잔교 설치어항(개수) |
|-----|----|------------|---|
| 서해안 | 28 | 7개항 (11개) | 안흥항(1), 외연도항(1), 흥원항(3), 격포항(2), 연도항(전북)(1), 위도항(2), 서망항(1), |
| 남해안 | 38 | 17개항 (22개) | 마량항(1), 득암항(1), 청산도항(1), 녹동항(2), 풍남항(1), 여호항(1), 발포항(1), 시산항(1), 국동항(1), 낭도항(1), 안도항(1), 초도항(2), 연도항(전남)(1), 구조라항(2), 원전항(3), 호두항(1), 매물도항(1) |

2) 문제점

- 국가 및 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어선안전수용율은 79%에 불과하며, 어항개발규모를 산정한 결과, 국가어항에 신규지정이 필요함
- 지방어항은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국가어항에 비해 투자가 미흡하여 완공율이 저조한 실정임
- 어촌정주어항은 현재까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완공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 국가어항의 기 시설 및 시공 중인 구조물 649개 중 '95년 이전에 시설된 구조물은 170개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항구조물의 내구년도를 20~30년³⁴⁾으로 볼 때 이들 구조물은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임

<표 3.10>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

| 시설 완료 년도 | 계 | 동해 | 남해 | 서해 | 비율 |
|------------|------------|------------|------------|------------|------------|
| 1995년 이전 | 170 | 52 | 66 | 52 | 26 |
| 1995~2005년 | 412 | 103 | 219 | 90 | 64 |
| 2005년 이후 | 67 | 14 | 31 | 22 | 10 |
| 합 계 | 649 | 169 | 316 | 164 | 100 |

- 과거 어항구조물 설계에 적용된 심해 설계파는 '88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5년 재산정 발표된 「전해역 심해설계파」 결과,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없을 경우 대형태풍 내습으로 인한 구조물 피해확산 및 어선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 여지를 내재하고 있음.
- 과거에 준설토 처리는 항내 준설토투기장 조성 또는 공해상에 허가를 받아 투기하여 왔으나, 최근 보존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외해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어항공사 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준설토사의 처리를 위한 막대한 국비투자로 국고낭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34) 근거 : 일본토목학회 및 콘크리트 공학협회에서 제시한 내구수명 규정

-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외해 투기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외부지역 준설토사 반입 금지 등),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 최근 구,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사의 유용 기준마련을 위해 「준설토사 처리 및 유효활용 기준수립(2007.6)」 용역을 추진하여, 양질의 준설토사 활용기준 및 유효활용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무산됨
- 어항기능의 다변화를 위해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선정,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어항 개발 미흡
 - 13개 다기능어항의 시설계획이 친수공간 위주의 시설로써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개발 미흡
- 2013년 기 선정된 다기능어항 완공 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어 연차적 확대개발방안 수립이 필요
- 어촌의 직접소득사업과 직결되는 회센타·숙박시설 등 소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곤란하여 민자유치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능편의시설이 미비함.
- 그 동안 어항기본시설 위주의 투자로 인해 어업인의 작업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기능시설 지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임.
- 서·남해안 지역 어항은 평균 조위차가 2m~6m로써 간조시 소형어선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부잔교 시설 미비
- 현재까지 부잔교 시설은 전체 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 어항별로 지역주민 건의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부잔교 설치 또는 이용자 단체인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음

1.1.3 어항개발 추진실적

- 어항분야의 투자액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정도로 경제성장률(5%)에 못 미치고 있음
- 국가어항은 현재까지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2005년부터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다기능어항사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음
- 지방어항은 국가어항에 비해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완공을 제고를 위하여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를 해 왔으며, 투자방식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하나 지방어항에 대한 투자규모는 연평균 약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 중심의 집중투자로 인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저조한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1> 어항개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 계 | 173,246 | 187,554 | 195,217 | 233,985 | 206,166 | 224,110 | 214,498 | 248,171 | 273,358 |
| 국 가 어 항 | 136,846 | 142,054 | 145,217 | 179,185 | 151,366 | 154,510 | 140,138 | 146,703 | 171,939 |
| 지 방 어 항 | 36,400 | 45,500 | 50,000 | 54,800 | 54,800 | 44,141 | 53,483 | 64,430 | 63,270 |
| 어촌정주어항 | | | | | | 25,459 | 20,877 | 37,038 | 38,149 |



<그림 3.3> 어항개발 투자실적 추이

1.1.4 어항개발 추진계획

1) 어항기본사업

(1) 국가어항

① 계속투자항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07년 현재 104개항중 90개항 완공, 2008년 2개항(선진포항(인천), 남당항(충남))이 완공될 예정임
- 잔여 12개항은 집중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완공 → 완공율 10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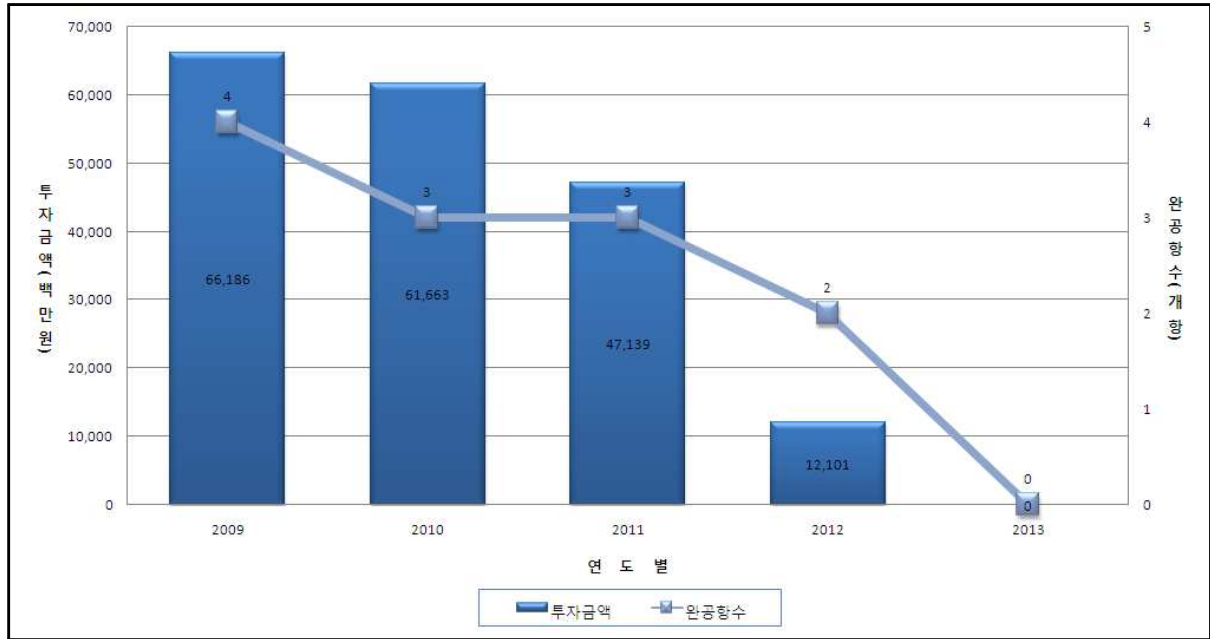
<표 3.12> 국가어항 미완공 현황

| 구분 | | 계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국가어항 | 항수 | 12 | 1 | 1 | 1 | 5 | 1 | 2 | 1 |
| | 항명 | | 공촌항 | 삼길포 | 구시포 | 우이도 도장옥진도 도보회연 | 남양 | 대포근포 호두 | 하효 |

<표 3.13> 계속투자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개항,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국 | 완공항수 | 12 | 2 | 5 | 3 | 2 | - |
| | 완공누계항수 | | 94 | 99 | 102 | 104 | - |
| | 완공율 | | 92% | 95% | 98% | 100% | - |
| | 사업비 | 187,089 | 66,186 | 61,663 | 47,139 | 12,101 | 0 |
| 부산광역시 | 0 | 0 | 0 | 0 | 0 | 0 | |
| 인천광역시 | 0 | 0 | 0 | 0 | 0 | 0 | |
| 울산광역시 | 0 | 0 | 0 | 0 | 0 | 0 | |
| 강원도 | 19,378 | 5,000 | 6,000 | 8,378 | 0 | 0 | |
| 충청남도 | 10,449 | 5,000 | 5,449 | 0 | 0 | 0 | |
| 전라북도 | 23,296 | 6,000 | 6,000 | 6,000 | 5,296 | 0 | |
| 전라남도 | 69,759 | 23,294 | 19,704 | 26,761 | 0 | 0 | |
| 경상북도 | 6,134 | 5,000 | 1,134 | 0 | 0 | 0 | |
| 경상남도 | 34,194 | 8,000 | 13,389 | 6,000 | 6,805 | 0 | |
| 제주도 | 17,028 | 7,041 | 9,987 | 0 | 0 | 0 | |



<그림 3.4> 계속투자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② 추가지정항

- 어선의 안전수용율은 현재 66.6%(2006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지정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완공될 경우에도 안전수용율은 79%로 기상악화시 여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 총어선은 86,113척(2006년 기준)에서 어선감척실적 및 계획과 무동력, 원양, 내수면어선을 제외하면 대상어선은 76,313척이며, 그 중 수용가능어선 척수는 60,260척이므로 잔여 16,053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어항 30개의 추가지정이 필요
- 추가지정항의 개발은 수산 기능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표 3.14> 안전수용율 및 시설소요규모(2013년 기준)

| 구분 | 수용대상 어선척수(척) | 수용가능 어선척수(척) | 어선의 안전수용율(%) | 수용필요척수(척) | 국가어항 개발항수 |
|----|--------------|--------------|--------------|-----------|-----------|
| 전국 | 76,313 | 60,260 | 79.0 | 16,053 | 30 |
| 동해 | 8,542 | 8,171 | 95.7 | 371 | 1 |
| 서해 | 22,506 | 18,052 | 80.2 | 4,454 | 12 |
| 남해 | 45,265 | 34,037 | 75.2 | 11,228 | 17 |

※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필요항수 30개 추가지정 시 현재 104개항에서 134개항으로 확대
 - 단기(2009년~2013년)에 6개항 지정하고, 중장기(2014~2023)에 24개항 지정
 - 추가수요 30개항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을 항종 변경

<표 3.15> 어항별 필요 항수

| 구분 | 필요항수 | 기지정항수 ('07년기준) | 지정 및 해제항수(개항) | | |
|--------|------|----------------|---------------|------|-------|
| | | | 계 | 단기 | 장기 |
| 국가어항 | 134 | 104 | 30 | 6 | 24 |
| 지방어항 | 258 | 287 | (-)29 | (-)5 | (-)24 |
| 어촌정주어항 | 578 | 579 | (-)1 | (-)1 | - |

<표 3.16> 신규지정 대상항 현황(6개항)

| 구분 | 계 | 부산 | 경기 | 충남 | 전남 | 경남 |
|--------|-----|---------|---------|---------|---------|--------------------|
| 신규 지정항 | 6개항 | 1 | 1 | 1 | 1 | 2 |
| | | 천성(강서구) | 궁평(화성시) | 장고(당진군) | 이목(완도군) | 노량(하동군) 남포(고성군) |

- 30개항 중 '08년 지정대상 6개항을 제외한 24개항에 대해서는 총수방식³⁵⁾을 도입하여 2012년에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를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표 3.17> 신규지정 24개항 선정 현황

| 시·도 | 항수 | 국가어항 지정 기준 부합항('07년말 기준) |
|-----|----|---|
| 계 | 24 | |
| 부산 | 2 | 민락(수영구), 명지(강서구) |
| 인천 | 1 | 진두(옹진군) |
| 충남 | 6 | 고대도(보령시), 호도(보령시), 삼시도(보령시), 백사장(태안군), 영목(태안군), 장고(당진군) |
| 전북 | 2 | 선유도(군산시), 개야도(군산시) |
| 전남 | 4 | 법성(영광군), 재원(신안군), 수대(신안군), 웅곡(신안군) |
| 경남 | 4 | 견유(통영시), 진촌(통영시), 장목(거제시), 단항(남해군) |
| 기타 | 5 | 추후 재산정 |

35)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항을 해제한 항수만큼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항으로 대체하여 개발하는 방식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 지정 필요항수 30개항 중 시·군·구별로 어선안전수용율이 100% 미만이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6개항을 2008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어항기본사업에 착수(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비 (6개×5억원=30억원)는 기본시설 계속사업비에 포함)
- 30개항 중 '08년 지정대상 6개항을 제외한 24개항에 대해서는 총수방식을 도입하여 2012년에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평가 시행(

<표 3.18>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 국 | 완공항수 | (6) | - | - | - | - | (6) | 0)는 진행항수임 |
| | 사업비 | 30,000 | - | - | - | - | 30,000 | |
| 부 산 광 역 시 | | 5,000 | - | - | - | - | 5,000 | |
| 인 천 광 역 시 | | 0 | - | - | - | - | - | |
| 울 산 광 역 시 | | 0 | - | - | - | - | - | |
| 경 기 도 | | 5,000 | - | - | - | - | 5,000 | |
| 강 원 도 | | 0 | - | - | - | - | - | |
| 충 청 남 도 | | 5,000 | - | - | - | - | 5,000 | |
| 전 라 북 도 | | 0 | - | - | - | - | - | |
| 전 라 남 도 | | 5,000 | - | - | - | - | 5,000 | |
| 경 상 북 도 | | 0 | - | - | - | - | - | |
| 경 상 남 도 | | 10,000 | - | - | - | - | 10,000 | |
| 제 주 도 | | 0 | - | - | - | - | - | |

■ 중·장기(2014~2023)

- 신규 기지정 6개항에 대해서는 해당 300억씩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완료 후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잔여 24개항에 대해서는 중장기내에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3.19>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신규 지정항 | 870,000 | 36,000 | 42,000 | 45,000 | 54,900 | 66,978 | 81,713 | 99,689 | 121,620 | 148,376 | 173,724 |

(2) 지방어항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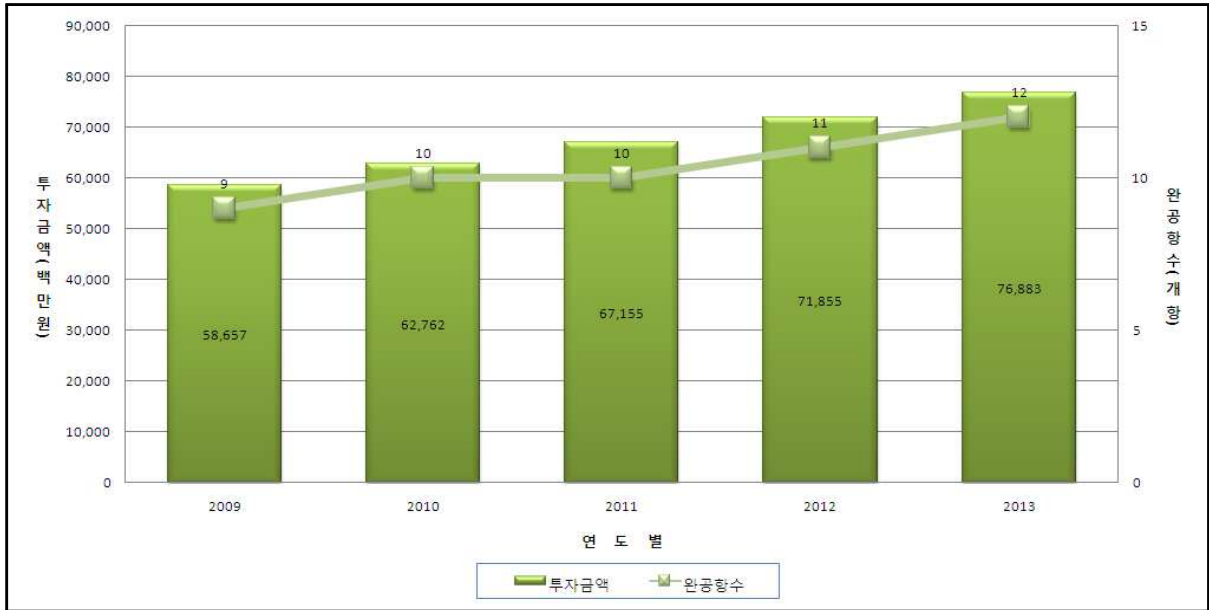
- 지방어항은 2007년 기준 완공율은 46%(134개항)로 국가어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나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해 단기계획내 52개항을 완공, 완공율 68%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표 3.20>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개항,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국 | 완공항수 | 52 | 9 | 10 | 10 | 11 | 12 | |
| | 완공누계항수 | | 152 | 162 | 172 | 183 | 195 | |
| | 완공율 | | 53% | 56% | 60% | 64% | 68% | |
| | 사업비 | 337,312 | 58,657 | 62,762 | 67,155 | 71,855 | 76,883 | |
| 부산광역시 | 12,657 | 3,750 | 4,012 | 4,895 | 0 | 0 | | |
| 인천광역시 | 7,867 | 1,250 | 1,337 | 1,430 | 1,860 | 1,990 | | |
| 울산광역시 | 1,500 | 1,500 | 0 | 0 | 0 | 0 | | |
| 경기도 | 4,876 | 0 | 1,000 | 1,125 | 1,250 | 1,501 | | |
| 강원도 | 33,208 | 5,625 | 6,018 | 6,440 | 7,307 | 7,818 | | |
| 충청남도 | 53,745 | 8,883 | 10,114 | 10,167 | 11,953 | 12,628 | | |
| 전라북도 | 37,972 | 6,437 | 6,887 | 7,368 | 8,348 | 8,932 | | |
| 전라남도 | 76,672 | 12,625 | 13,508 | 14,453 | 17,433 | 18,653 | | |
| 경상북도 | 19,349 | 3,250 | 3,477 | 3,720 | 4,301 | 4,601 | | |
| 경상남도 | 53,529 | 9,087 | 9,722 | 10,402 | 11,748 | 12,570 | | |
| 제주도 | 35,937 | 6,250 | 6,687 | 7,155 | 7,655 | 8,190 | | |

※ 지방비 포함 금액임(국비 80%, 지방비 20%)



<그림 3.5>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중·장기(2014~2023)

- 집중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모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표 3.21>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지방어항 | 945,652 | 80,682 | 84,702 | 88,923 | 90,938 | 88,050 | 92,540 | 97,258 | 102,218 | 107,431 | 112,910 |

(3) 어촌정주어항

- 현재까지 어촌정주어항은 지자체 자체예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실시되어 왔으며, 2007년 현재 완공률 25%로 매우 저조함
- 어촌정주어항의 국비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어촌정주어항을 조기개발 하도록 정책방향 유도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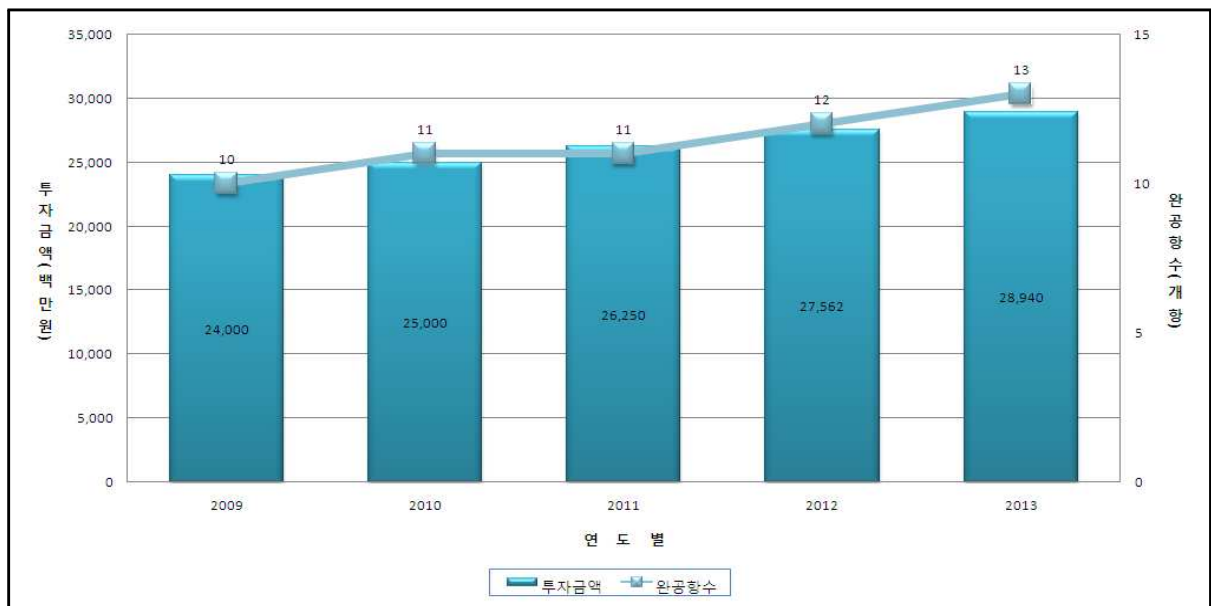
- 2013년까지 1,368억원을 투입하여 57개항을 완공, 완공률 38%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표 3.22>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개항,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 국 | 완공항수 | 57 | 10 | 11 | 11 | 12 | 13 | |
| | 완공 누계항수 | | 175 | 186 | 197 | 209 | 222 | |
| | 완공율 | | 31% | 34% | 36% | 37% | 38% | |
| | 사업비 | 131,852 | 24,100 | 25,000 | 26,250 | 27,562 | 28,940 | |
| 부 산 광 역 시 | 16,913 | 3,188 | 3,165 | 3,325 | 3,570 | 3,665 | | |
| 인 천 광 역 시 | 6,098 | 1,150 | 1,141 | 1,198 | 1,287 | 1,322 | | |
| 울 산 광 역 시 | 2,366 | 600 | 1,000 | 766 | 0 | 0 | | |
| 경 기 도 | 7,437 | 1,402 | 1,392 | 1,462 | 1,570 | 1,611 | | |
| 강 원 도 | 8,101 | 1,527 | 1,516 | 1,592 | 1,710 | 1,756 | | |
| 충 청 남 도 | 5,718 | 843 | 1,000 | 1,125 | 1,250 | 1,500 | | |
| 전 라 북 도 | 0 | 0 | 0 | 0 | 0 | 0 | | |
| 전 라 남 도 | 15,268 | 2,878 | 2,857 | 3,002 | 3,223 | 3,308 | | |
| 경 상 북 도 | 6,217 | 500 | 1,000 | 1,250 | 1,500 | 1,967 | | |
| 경 상 남 도 | 26,056 | 4,912 | 4,876 | 5,122 | 5,500 | 5,646 | | |
| 제 주 도 | 37,678 | 7,100 | 7,053 | 7,408 | 7,952 | 8,165 | | |

※ 사업비와 완공항수는 추정치임



<그림 3.6>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중·장기(2014~2023)

-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완공율 65%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

<표 3.23>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어촌정주어항 | 382,176 | 30,386 | 31,905 | 33,500 | 35,175 | 36,933 | 38,780 | 40,718 | 42,753 | 44,891 | 47,135 |

2) 어항정비사업

(1) 어항시설물 정비

- 정비계획 수립된 국가어항은 2007년 현재 44개항이 되어 있으며, 기 수립된 사업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어항기본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2010년부터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표 3.24>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대상항

(단위 : 항수)

| 시도별 | 계 | 인천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정비대상 국가어항 | 44 | 3 | 4 | 5 | 4 | 14 | 8 | 3 | 3 |

-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44개항 중 24개항은 2013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0개항은 2023년까지 완료하되, 개발잠재력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된 어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추진
- 또한 잔여 국가어항 55개항(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5개항 제외)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상태 확인 관리, 정비가 시급한 어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반영하여 예산 투입 계획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방지시설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한해 투자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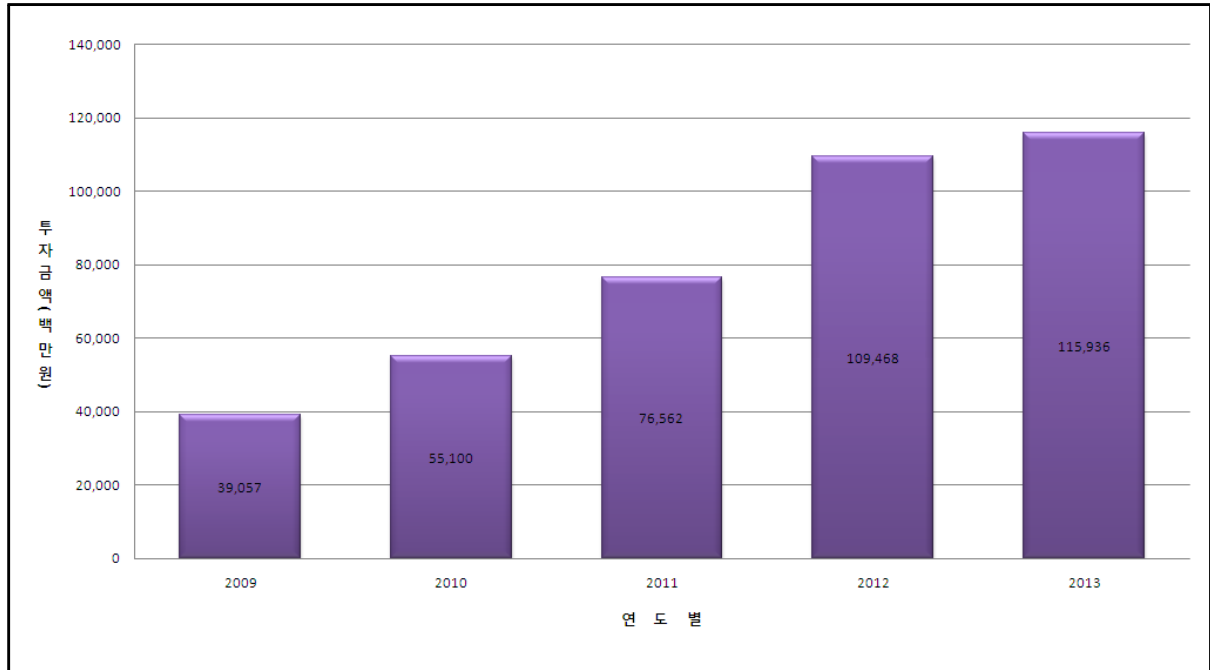
- 기 계획된 정비사업 대상항 중 2013년까지 24개항의 어항정비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정비대상어항 중 개발잠재력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된 3개어항(어유정항, 대표항,사천진항)의 리모델링을 2013년까지 완료
- 2009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여 어항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대상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항
 - 유류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태안군에 소재한 항
 - 정비계획수립연도가 오래 경과된 항 및 완공연도가 오래된 항

<표 3.25>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 국 | 완공항수 | 24 | 2 | 7 | 3 | 5 | 7 | |
| | 사업비 | 396,123 | 39,057 | 55,100 | 76,562 | 109,468 | 115,936 | |
| 부 산 광 역 시 | 0 | 0 | 0 | 0 | 0 | 0 | 0 | |
| 인 천 광 역 시 | 25,525 | 5,000 | 4,000 | 6,000 | 7,395 | 3,130 | | |
| 울 산 광 역 시 | 0 | 0 | 0 | 0 | 0 | 0 | | |
| 경 기 도 | 0 | 0 | 0 | 0 | 0 | 0 | | |
| 강 원 도 | 28,905 | 4,670 | 9,235 | 2,000 | 5,000 | 8,000 | | |
| 충 청 남 도 | 23,948 | 0 | 0 | 7,338 | 8,000 | 8,610 | | |
| 전 라 북 도 | 21,675 | 2,000 | 2,000 | 5,186 | 5,000 | 7,489 | | |
| 전 라 남 도 | 102,213 | 4,163 | 4,504 | 19,038 | 30,801 | 43,707 | | |
| 경 상 북 도 | 74,230 | 9,343 | 6,740 | 22,000 | 26,147 | 10,000 | | |
| 경 상 남 도 | 18,643 | 2,518 | 4,000 | 5,000 | 7,125 | 0 | | |
| 제 주 도 | 12,464 | 3,843 | 8,621 | 0 | 0 | 0 | | |

※ 전국 총사업비는 유지보수비 포함 금액임



<그림 3.7> 국가어항 어항정비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2) 해수면 상승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5개항의 정비사업 추진(2013년까지 1개항 완료)
- 설계파고 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설계파 상향 조정에 따른 기존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및 보강계획 기준 수립에 대한 용역(한국해양연구원, '06~'10)이 추진 중에 있음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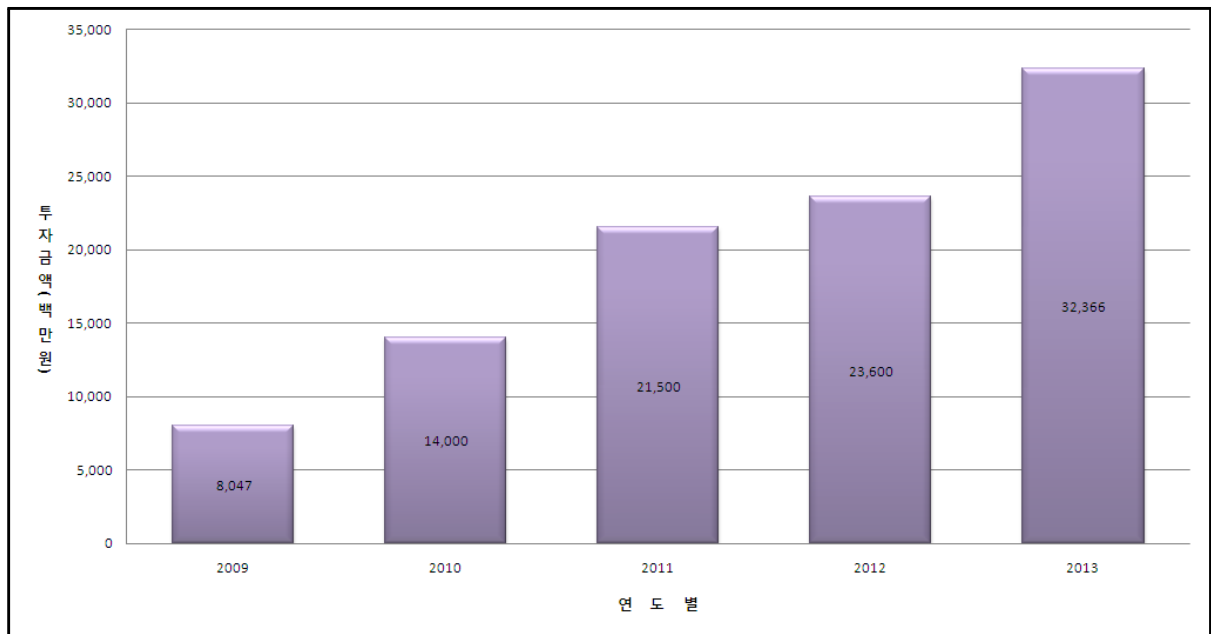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기 수립 5개항 정비사업 계속 추진, 2013년에 1개항 완료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2011~2013년)
 -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남해안(44개항)을 우선검토, 동해안(29개항), 서해안(26개항) 순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0억원)

<표 3.26> 국가어항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단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 국 | 완료항수 | 1 | (3) | (4) | (5) | (5) | 1(4) | 0)는 진행 항수임 |
| | 사업비 | 99,513 | 8,047 | 14,000 | 21,500 | 23,600 | 32,366 | |
| 부 산 광 역 시 | | 0 | 0 | 0 | 0 | 0 | 0 | |
| 인 천 광 역 시 | | 0 | 0 | 0 | 0 | 0 | 0 | |
| 울 산 광 역 시 | | 0 | 0 | 0 | 0 | 0 | 0 | |
| 경 기 도 | | 0 | 0 | 0 | 0 | 0 | 0 | |
| 강 원 도 | | 0 | 0 | 0 | 0 | 0 | 0 | |
| 충 청 남 도 | | 0 | 0 | 0 | 0 | 0 | 0 | |
| 전 라 북 도 | | 0 | 0 | 0 | 0 | 0 | 0 | |
| 전 라 남 도 | | 0 | 0 | 0 | 0 | 0 | 0 | |
| 경 상 북 도 | | 76,466 | 6000 | 10000 | 16500 | 18600 | 25366 | |
| 경 상 남 도 | | 20,047 | 2047 | 4000 | 4000 | 4000 | 6000 | |
| 제 주 도 | | 0 | 0 | 0 | 0 | 0 | 0 | |

※ 2011년~2013년은 설계파고 상향 정비계획 사업비 3,000백만원 포함금액임



<그림 3.8> 국가어항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단기 투자계획 추이

■ 중·장기(2014~2023)

-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20개항의 어항정비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기 수립된 잔여 4개항 정비사업 완료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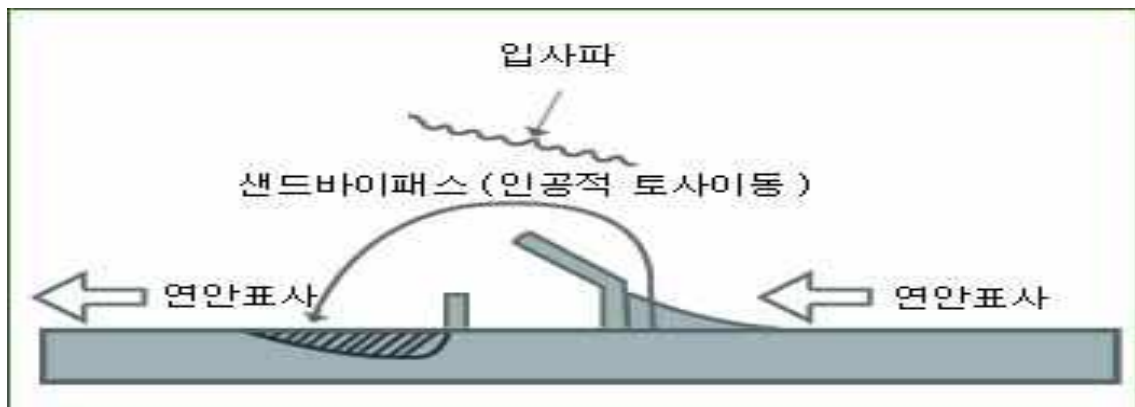
<표 3.27>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어항정비사업 | 1,503,433 | 148,998 | 149,295 | 149,593 | 149,892 | 150,191 | 150,491 | 150,791 | 151,092 | 151,394 | 151,696 |

(3) 항내 매물 토사(준설토) 처리 문제

- 어항개발이 지역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준설토 처리(해상투기, 투기장 조성, 준설토 유용 등)에 따른 문제는 어항 및 공유수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국가어항 지정·개발 추진
- 해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은 유용, 서남해안은 항별 투기장 또는 공동 투기장 확보



<그림 3.9> 준설토 유용(양빈공법)에 의한 침식·매몰대책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에 기 계획되어 있는 준설토사 중 2008년까지 준설토완료하고, 잔여 준설토물량이 326만^m³(준설토비용 390억원)에 대해서 단기 내 124만^m³(준설토비용 150억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사업비는 “(1) 어항시설물정비”에 포함)

■ 중·장기(2014~2023)

- 중장기 내에 단기 내 처리하고 남은 잔여 준설토사 202만㎡(준설비용 240억 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준설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은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항내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익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증진하고, 어업종사자들의 어로환경개선 및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1)어항환경개선사업의 종류

- 어항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다기능어항개발, 어항기능시설확충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업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8> 어항환경개선사업 종류

| 구 분 | | 주 요 시 설 | 비 고 |
|----------------------------|-------------------|-----------------|-----|
| 다 기 능 어 항 개발 | | | |
| 어 항 기 능 확 충 | 수 송 시 설 | 도 로 | |
| | | 주 차 장 | |
| | 문 화 · 복 지 시 설 | 다 목 적 체 육 시 설 | |
| | | 공 연 장 | |
| | 환 경 정 비 시 설 | 광 장 · 조 경 시 설 | |
| | | 가 로 등 | |
| | 주 민 편 의 시 설 | 여 객 대 합 실 | |
| | 기 타 시 설 | 부 잔 교 | |
| | 어 선 · 어 구 보 전 시 설 | 어 구 건 조 · 야 적 장 | |
| | | 기 자 재 창 고 | |
| | 어 항 정 화 시 설 | 공 동 화 장 실 | |
| | 보 급 시 설 | 급 수 시 설 | |
| | 인 · 배 수 시 설 | 해 수 인 수 시 설 | |
| 기 타 시 설 | 해 수 소 통 구 | | |
| 어 항 청 소 선 사 업 | | | |

◦ 수송시설(도로, 주차장)



- 도로 및 주차장은 어획물의 운송과 어민 및 관광객의 차량운행에 따른 진입로와 주차공간 확보 차원으로 항별로 차량 통행량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공간을 확보 배치(포장재료 :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 문화·복지시설(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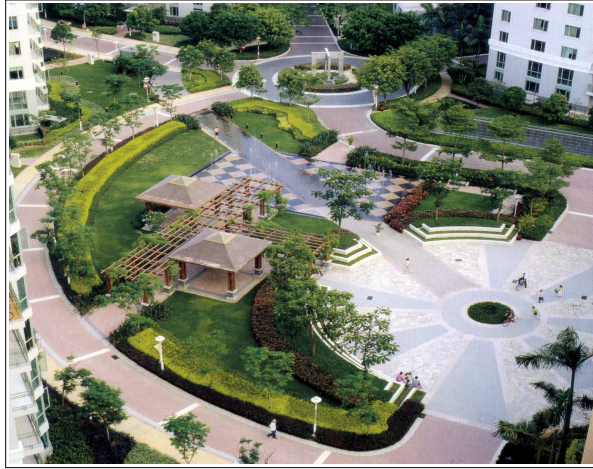


- 다목적 체육시설은 어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부지에 시설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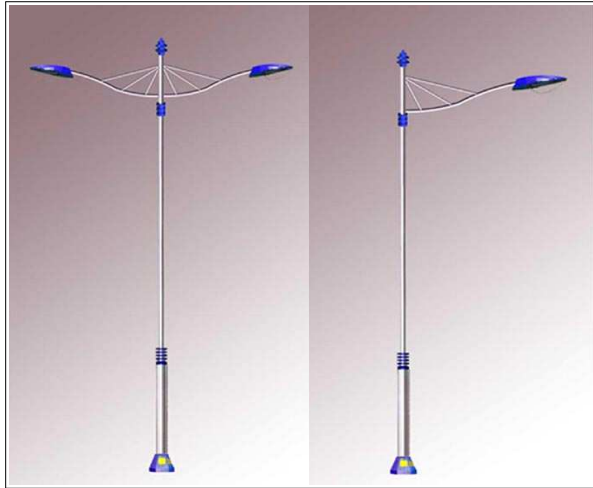


- 공연장 시설은 지역 경제활성에 도움이 되는 축제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환경정비시설(광장, 조경시설, 가로등)



- 광장 및 조경시설은 친수공간 시설로 관광객·어업종사자들의 휴식공간 및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지역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사계절 관광어항으로 조성 필요



- 가로등은 항배후부지 규모에 맞게 조도 계산을 하여 야간 어민의 어노 활동에 지장없게 설치수요를 산정하여 가로등의 단순기능뿐만 아니라 조형미를 가미하여 미향으로 변화시키는 일부분의 역할도 필요

◦ 주민편익시설(여객 대합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시설물은 단순한 구조보다는 조형미를 가미한 건물로 주변 친수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필요

◦ 기타시설(부잔교)



• 부잔교 시설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선박 접·이안에 어려움과 접안시설의 부족 또는 이용성의 불편 사항을 보완하는 시설물로 특히 서·남해 지역의 어항에 필요한 다목적 시설물이며 근래에는 다양한 재질의 부잔교가 설치됨(철재 폰톤, 경량콘크리트 폰톤, 강화PE폰톤)

◦ 어선·어구 보전시설(어구건조·야적장, 기자재 창고)

- 어구건조·야적장은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이용 어구의 일시 보관, 양육용 자재 적치, 양식자재 조립 및 일시보관 등으로 이용되며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어구건조 또는 야적물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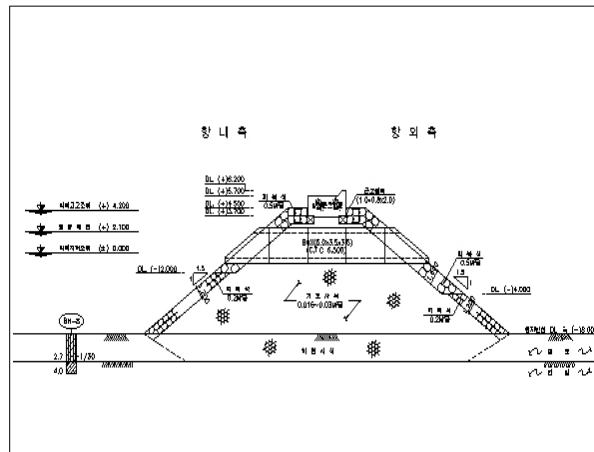
• 기자재 창고는 어구, 어망 및 어업용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업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항별 적정 규모에 맞게 설치하며 시설물의 재질이 다양화됨

◦ 어항정화시설(공동화장실)



• 항을 이용하는 어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시설로 항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형미가 가미된 화장실을 설치 청결한 관리가 필요

- 보급시설(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어선의 용수만을 고려, 대상 어선세력을 검토하여 규모를 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소화용도 겸한 저수 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
- 인·배수시설(해수 인수시설)
 - 항배후부지 인근의 횃집 등에서 개별 인수시설이 난립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항내에 공동 인수시설을 설치하여 보급하므로 어항내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음
- 기타시설(해수소통구)



• 해수소통구는 항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므로서 수질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수 소통구의 규모 및 형식은 동해안은 고파랑에 의해 해수가 교환되며 서·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수 교환을 하므로 항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다가능어항개발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가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 다가능어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2014년부터 2차 다가능어항 개발 추진
- 2차 다가능어항 계획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항 개발 개념 도입(낙시공원형, 관광레저형, 체험여가형, 가공유통형, 자원조성형 등)
- 또한 노후어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수산업 중심기능 뿐만 아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생활거점기능 등 다양한 기능어항으로 계획 시행
- 어촌의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민의 수익사업 참여 유도 등 민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 국내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영덕군 강구항의 경우 항 인근에 불거리로서

는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등 유명하며, 먹거리는 영덕대게 및 풍부한 수산물, 인근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쉴거리 제공과 동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7번 국도 교통망이 연계되어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려한 어항 풍경의 테마의 관광어항으로 개발 가능

- 국외개발사례로서는 일본 타루미어항의 경우 수산물 가공, 요리, 판매시설 등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고 별도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중요생산, 대규모의 김양식업을 통해 어장, 어항, 어촌, 관광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본 마루야마 어항은 어항 인근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어항 개발



<그림 3.10> 아울렛매장 시설 및 낚시공원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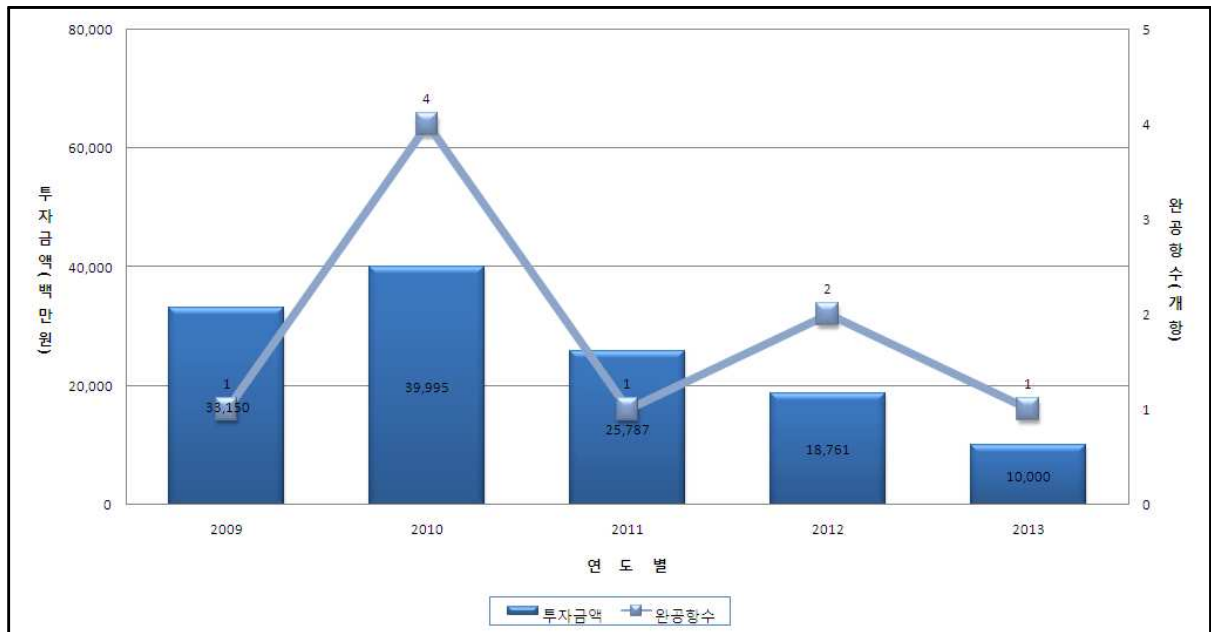
- 다기능어항은 2013년까지 기 지정된 13개항 중 2008년까지 완료된 4개항(울산 정자항, 강원 강릉항, 전남 마량항, 경북 양포항)을 제외한 9개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다기능어항에 대해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중장기 2014년부터 2차 다기능어항 개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표 3.29> 다기능어항사업 단기 투자계획

(단위 : 개항,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 국 | 완공항수 | 9 | 1 | 4 | 1 | 2 | 1 | |
| | 완 공 누계항수 | 13 | 5 | 9 | 10 | 12 | 13 | |
| | 사 업 비 | 127,393 | 33,150 | 39,995 | 25,787 | 18,761 | 10,000 | |
| 부 산 광 역 시 | 29,754 | 4,972 | 7,000 | 8,000 | 9,782 | 0 | | |
| 인 천 광 역 시 | 10,000 | 0 | 0 | 0 | 0 | 10,000 | | |
| 울 산 광 역 시 | 0 | 0 | 0 | 0 | 0 | 0 | | |
| 경 기 도 | 0 | 0 | 0 | 0 | 0 | 0 | | |
| 강 원 도 | 4,500 | 4,500 | 0 | 0 | 0 | 0 | | |
| 충 청 남 도 | 12,674 | 5,862 | 6,812 | 0 | 0 | 0 | | |
| 전 라 북 도 | 3,391 | 2,362 | 1,029 | 0 | 0 | 0 | | |
| 전 라 남 도 | 30,261 | 7,582 | 7,000 | 7,000 | 8,679 | 0 | | |
| 경 상 북 도 | 0 | 0 | 0 | 0 | 0 | 0 | | |
| 경 상 남 도 | 31,173 | 5,872 | 14,514 | 10,787 | 0 | 0 | | |
| 제 주 도 | 5,640 | 2,000 | 3,640 | 0 | 0 | 0 | | |

※ 2012년은 사후평가 사업비 300백만원 포함금액임



<그림 3.11> 다기능어항사업 단기 투자계획 추이

▣ 중·장기(2014~2023)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업모니터링(2008년) 및 사후평가(2012년)를 시행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 중장기 2014년부터 2차 다기능어항 개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 2004년 다기능어항 선정 시 개발 후보항으로 예정된 5개항(감포항, 녹동항, 미조항, 안흥항, 삼길포항)은 2차 다기능어항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3) 어항기능시설 확충

- 어항의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 차원에서 어항의 기능제고 및 환경개선으로 어항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구보관창고 등 4개 기능시설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매년 14개 공익 성격의 기능시설 확충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4개 기능시설 완료 후 수익시설에 대한 지원 검토
- 해수소통구 설치 등 항내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시설 확충
 - 해수소통구 설치현황 : 기계획 35개항, 장래계획 59개항
-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야적장, 기자재 창고, 어구건조장,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등) 확충
- 현대적 생활중심지·복합공간으로의 개발(공원, 광장, 체육시설 등)
- 2007년 4월 현재까지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어항기능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의 해역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30> 어항기능시설 현황 및 계획

| 해역 | 도로(천㎡) | | 주차장 등(천㎡) | | 다목적체육 시설(개소) | | 공연장 (개소) | | 광장조경시설(천㎡) | | 가로등 (개소) | | 여객대합실 (개소) | |
|-----|--------|-----|-----------|-----|--------------|----|----------|----|------------|-----|----------|-------|------------|----|
|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 계 | 216 | 528 | 63 | 229 | 3 | 92 | 0 | 0 | 14 | 504 | 124 | 1,293 | 16 | 20 |
| 남해안 | 56 | 176 | 13 | 95 | 1 | 33 | - | - | 3 | 132 | 38 | 516 | 8 | 7 |
| 서해안 | 127 | 280 | 20 | 84 | - | 33 | - | - | 4 | 330 | 23 | 349 | 8 | 13 |
| 동해안 | 33 | 72 | 30 | 50 | 2 | 26 | - | - | 7 | 42 | 63 | 428 | - | - |

<표 3.30> 어항기능시설 현황 및 계획(계속)

| 해역 | 부잔교(기) | | 어선건조야적장(천㎡) | | 기자재창고(천㎡) | | 공동화장실(개소) | | 급수시설(식) | | 해수인수시설(식) | | 해수소통구 | |
|-----|--------|----|-------------|-----|-----------|----|-----------|----|---------|----|-----------|----|-------|----|
|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기설 | 계획 |
| 계 | 33 | 33 | 36 | 471 | 28 | 31 | 31 | 45 | 8 | 87 | 20 | 43 | 35 | 59 |
| 남해안 | 22 | 13 | 1 | 170 | 20 | 11 | 5 | 18 | 3 | 32 | 1 | 22 | 12 | 22 |
| 서해안 | 11 | 20 | 2 | 214 | 6 | 12 | 8 | 11 | 3 | 30 | 2 | 10 | 16 | 14 |
| 동해안 | - | - | 33 | 87 | 2 | 8 | 18 | 16 | 2 | 25 | 17 | 11 | 7 | 23 |

- 2009년부터 부잔교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부잔교 시설 설치
 - 2007년 현재 부잔교 설치 대상항으로 조사된 남해안 13개항, 서해안 20개항에 시설 계획 반영
- 서·남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정비계획 수립시 부잔교 등 소형어선 접·이안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반영
- 어항기능 활성화사업은 공익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 14개 시설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지역 특성 및 어항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표 3.31> 어항기능시설 종류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 부잔교, 기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 | 공공 및 지역민 이용 |
|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조경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 | 문화시설 |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13개항 및 기 수립된 정비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은 어항기능시설 이용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후순위로 배정
- 1단계 사업에서는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며, 향후 14개 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 도서에 소재한 어항은 지역의 여건(해수의 청정성, 관광객 방문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해수인수시설 및 공연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설정
- 여객대합실은 여객선의 운항이 있는 항을 대상으로 하며, 여객인원이 많으나, 여객대합실이 취약한 도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여객운항수가 많은 육지 지역을 다음 순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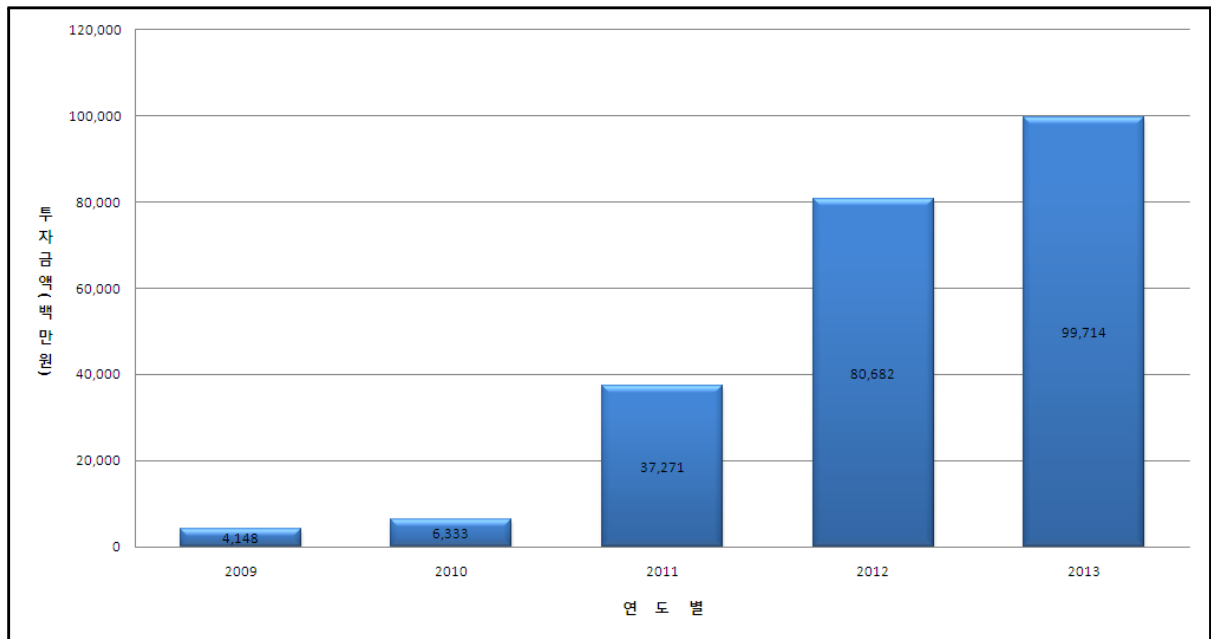
■ 단기(2009~2013)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2009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5개 시설 완료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자재창고)

<표 3.32> 어항정화시설 확충 단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국 | 228,148 | 4,148 | 6,333 | 37,271 | 80,682 | 99,714 | |
| 부산광역시 | 2,504 | 45 | 69 | 409 | 886 | 1,095 | |
| 인천광역시 | 10,027 | 182 | 278 | 1,638 | 3,546 | 4,383 | |
| 울산광역시 | 2,504 | 45 | 69 | 409 | 886 | 1,095 | |
| 강원도 | 30,080 | 546 | 834 | 4,914 | 10,638 | 13,148 | |
| 충청남도 | 15,034 | 272 | 416 | 2,456 | 5,318 | 6,572 | |
| 전라북도 | 12,526 | 226 | 346 | 2,046 | 4,431 | 5,477 | |
| 전라남도 | 70,179 | 1,272 | 1,944 | 11,464 | 24,822 | 30,677 | |
| 경상북도 | 35,089 | 636 | 972 | 5,732 | 12,410 | 15,339 | |
| 경상남도 | 37,594 | 681 | 1,041 | 6,141 | 13,298 | 16,433 | |
| 제주도 | 12,611 | 243 | 364 | 2,062 | 4,447 | 5,495 | |



<그림 3.12> 어항정화시설 확충 단기 투자계획 추이

▣ 중·장기(2014~2023)

-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단계 잔여 9개 시설을 완료한 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함

<표 3.33> 어항정화시설 확충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사 업 비 | 1,461,049 | 117,877 | 127,147 | 140,216 | 147,226 | 152,942 | 156,930 | 158,655 | 157,452 | 152,504 | 150,100 |

1.1.5 어항개발 투자계획 총괄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단기(2009~2013) 추진방향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투자항 1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6개항 추가지정 및 개발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 의거 어항정비사업 추진 → 24개항 완료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정비계획 기 수립 5개항 정비사업 계속 추진(1개항 완료) 및 정비계획 수립(2011~2013년) 매물토사(준설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 13개항을 2013년까지 완료 단기계획 완료 단계에서(2012년) 사후평가를 시행 어항기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시설 완료 (여객대합실, 공동회장실,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저채장고)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율 68% 달성 | -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정주어항 완공율 38% 달성 | - | - |

◦ 중·장기(2014~2023) 추진방향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추가지정항 완공 추가 24개항에 대한 개발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 20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리모델링 3개항 포함)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기 수립된 잔여 4개항 정비사업 완료 및 잔여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매물토사(준설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다기능어항사업 확대 추진 어항기능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 9개 시설 완료 완료후 수익시설로 사업 확대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 완공율 100% 달성 | -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정주어항 : 65% 완공 | - | - |

2) 투자 우선순위

-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어항개발 투자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3.34> 어항정비사업 우선순위

| 구분 | 어항정비사업 |
|------|---|
| 우선순위 | 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항 ② 충남 태안군 지역에 위치한 항(기름유출복구 지원) ※ 잔류기름찌꺼기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③ 상항된 설계파고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된 항 ④ 정비계획수립년도가 오래 경과된 항 ⑤ 완공연도가 오래 경과된 항 ※ 2008년 현재 장기계속중인 항은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

- 어항환경개선사업 중 어항기능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3.35> 어항기능시설 투자우선순위

| 구분 | 어항정비사업 |
|------|--|
| 우선순위 | ① 여객대합실, 공동화장실,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해수소통구, 부잔교, 기 자재창고, 어구건조·야적장, 해수인수시설, 급수시설의 공공 및 지역민 이용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 ② 광장·조경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장의 문화시설에 대해 투자 ※ 고려사항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13개항 및 기 수립된 정비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은 어항기능시설 이용여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후순위로 배정 - 1단계 사업에서는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며, 향후 14개 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 도서에 소재한 어항은 지역의 여건(해수의 청정성, 관광객 방문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해수인수시설 및 공연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설정 - 여객대합실은 여객선의 운항이 있는 항을 대상으로 하며, 여객인원이 많으나, 여객대합실이 취약한 도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 으로 하며, 그 외 여객운항수가 많은 육지 지역을 다음 순위로 함. |

3) 투자 계획

- 어항의 투자규모는 우리나라의 '08년 경제성장률에 맞춰 연 증가율을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편성("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구)기획예산처(2007.4))

<표 3.36> 어항개발 단기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국 | 어항기본사업 | 6,864 | 1,489 | 1,495 | 1,406 | 1,116 | 1,358 | |
| | 국가어항 | 2,171 | 662 | 617 | 471 | 121 | 300 | |
| | 지방어항 | 3,375 | 587 | 628 | 672 | 719 | 769 | |
| | 어촌정주어항 | 1,318 | 240 | 250 | 263 | 276 | 289 | |
| | 어항정비사업 | 4,957 | 471 | 691 | 981 | 1,331 | 1,483 | |
| | 환경개선사업 | 3,559 | 373 | 463 | 631 | 995 | 1,097 | |
| 부산광역시 | 668 | 120 | 142 | 166 | 142 | 98 | | |
| 인천광역시 | 596 | 76 | 68 | 103 | 141 | 208 | | |
| 울산광역시 | 63 | 20 | 11 | 12 | 9 | 11 | | |
| 경기도 | 173 | 14 | 24 | 26 | 28 | 81 | | |
| 강원도 | 1,242 | 219 | 236 | 233 | 247 | 307 | | |
| 충청남도 | 1,266 | 209 | 238 | 211 | 265 | 343 | | |
| 전라북도 | 989 | 170 | 163 | 206 | 231 | 219 | | |
| 전라남도 | 3,693 | 518 | 495 | 817 | 850 | 1,013 | | |
| 경상북도 | 2,274 | 247 | 333 | 492 | 630 | 572 | | |
| 경상남도 | 2,312 | 331 | 515 | 475 | 485 | 506 | | |
| 제주도 | 1,214 | 265 | 364 | 166 | 201 | 21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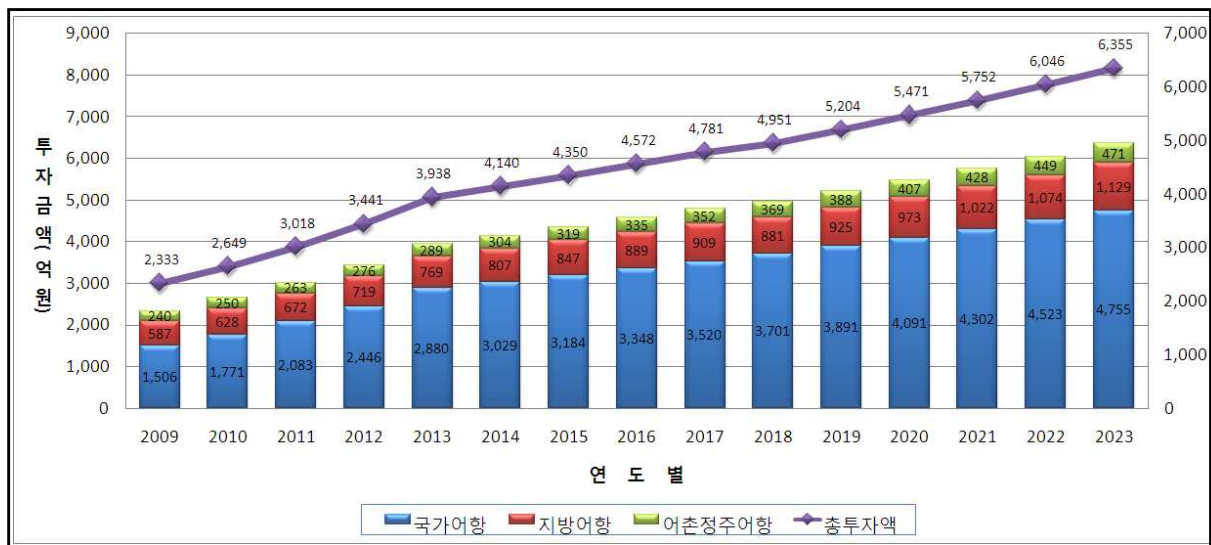
※ 1. 지방어항은 국비, 지방비 합계 금액임

2. 어촌정주어항은 2009년 순수지방비이며, 2010년부터 국비, 지방비 합계 금액임

<표 3.37> 어항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 비고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11 | 2012 | 2013 | | |
| 전 국 | 어항기본사업 | 21,978 | 1,470 | 1,586 | 1,674 | 1,810 | 1,920 | 2,130 | 2,377 | 2,666 | 3,007 | 3,338 | |
| | 국가어항 | 8,700 | 360 | 420 | 450 | 549 | 670 | 817 | 997 | 1,216 | 1,484 | 1,737 | |
| | 지방어항 | 9,456 | 807 | 847 | 889 | 909 | 881 | 925 | 973 | 1,022 | 1,074 | 1,129 | |
| | 어촌정주어항 | 3,822 | 304 | 319 | 335 | 352 | 369 | 388 | 407 | 428 | 449 | 471 | |
| | 어항정비사업 | 15,035 | 1,490 | 1,493 | 1,496 | 1,499 | 1,502 | 1,505 | 1,508 | 1,511 | 1,514 | 1,517 | |
| | 환경개선사업 | 14,610 | 1,179 | 1,271 | 1,402 | 1,472 | 1,529 | 1,569 | 1,587 | 1,575 | 1,525 | 1,501 | |
| 부 산 광 역 시 | 2,155 | 150 | 164 | 173 | 170 | 161 | 219 | 239 | 262 | 288 | 329 | | |
| 인 천 광 역 시 | 2,720 | 168 | 196 | 206 | 237 | 277 | 289 | 308 | 330 | 354 | 355 | | |
| 울 산 광 역 시 | 941 | 51 | 53 | 56 | 69 | 86 | 106 | 115 | 124 | 135 | 146 | | |
| 경 기 도 | 918 | 102 | 94 | 100 | 83 | 56 | 80 | 89 | 101 | 114 | 99 | | |
| 강 원 도 | 4,978 | 466 | 484 | 508 | 524 | 538 | 491 | 498 | 501 | 499 | 469 | | |
| 충 청 남 도 | 3,924 | 391 | 415 | 437 | 432 | 416 | 356 | 359 | 359 | 372 | 387 | | |
| 전 라 북 도 | 3,047 | 248 | 258 | 271 | 303 | 345 | 285 | 303 | 323 | 344 | 367 | | |
| 전 라 남 도 | 15,556 | 1,057 | 1,106 | 1,162 | 1,305 | 1,485 | 1,636 | 1,749 | 1,874 | 2,014 | 2,168 | | |
| 경 상 북 도 | 4,956 | 433 | 449 | 471 | 484 | 496 | 518 | 525 | 528 | 525 | 527 | | |
| 경 상 남 도 | 8,896 | 747 | 793 | 835 | 832 | 812 | 879 | 931 | 972 | 1,014 | 1,081 | | |
| 제 주 도 | 3,530 | 325 | 338 | 354 | 342 | 279 | 346 | 355 | 378 | 385 | 42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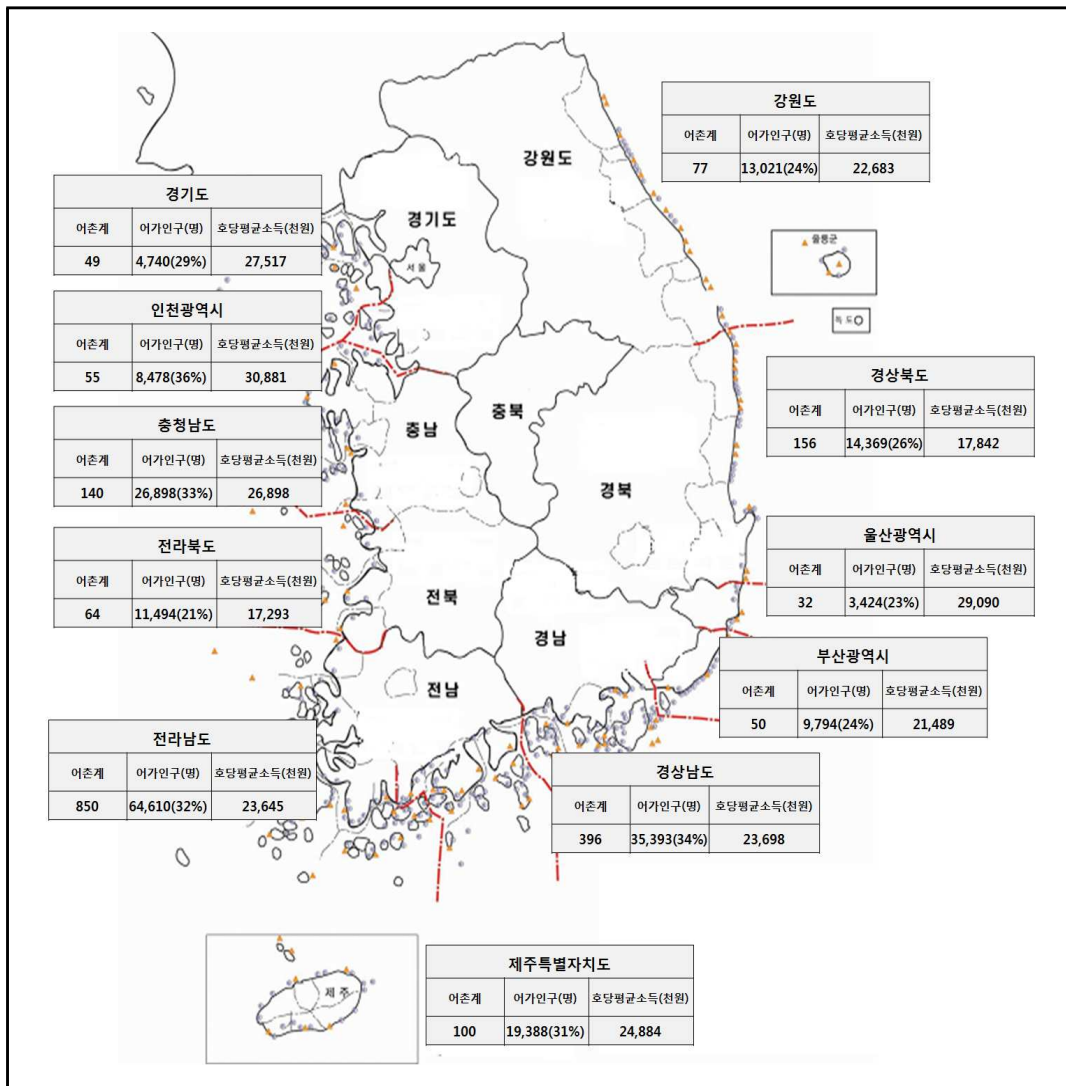


<그림 3.13> 어항개발 투자계획 추이

1.2 어촌발전 기본계획

1.2.1 일반 현황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어촌계는 1,969개(이하, '06년 기준), 어가수는 163,747호, 어가인구는 211,610명이며,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은 약 30백만원이고, 전국 어가인구 중 60세이상 인구는 30.3%를 차지



※ 어가인구 ()는 60세이상 어가인구 비율임.

<그림 3.14> 전국 어촌계 현황

- 사업내용은 어촌·어항법제6조에 의거 어업인의 정주환경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어촌의 부족한 생산/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등을 지원함.

| |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소득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어촌체험마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 및 휴식·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고유한 특성, 자연경관, 어업자원 등을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개발하여 어업외 소득을 증진코자하는 사업 |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촌개발사업 232권역[(1단계:160개권역 ('94~'06년), 2단계:72개권역('07~'13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112개소('01~'13년), 어촌관광개발사업 18개소('04~'13년)임.

<표 3.38>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 구분 | 어촌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 | 어촌관광개발사업 |
|------|------------------------------------|-----------------------------------|-----------------------|
| 사업목적 | 수산업 소득기반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체험 중심의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 증대 |
| 사업기간 | '94~'13 | '01~'13 | '04~'13 |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사업규모 | 총 230개권역 | 112개소 | 총 18개소 |
| 재원 | 균특회계 | 균특회계 | 균특회계 |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 국고 50% 지방비 50% |
| 총사업비 | 8,795억원 | 723억원 | 1,018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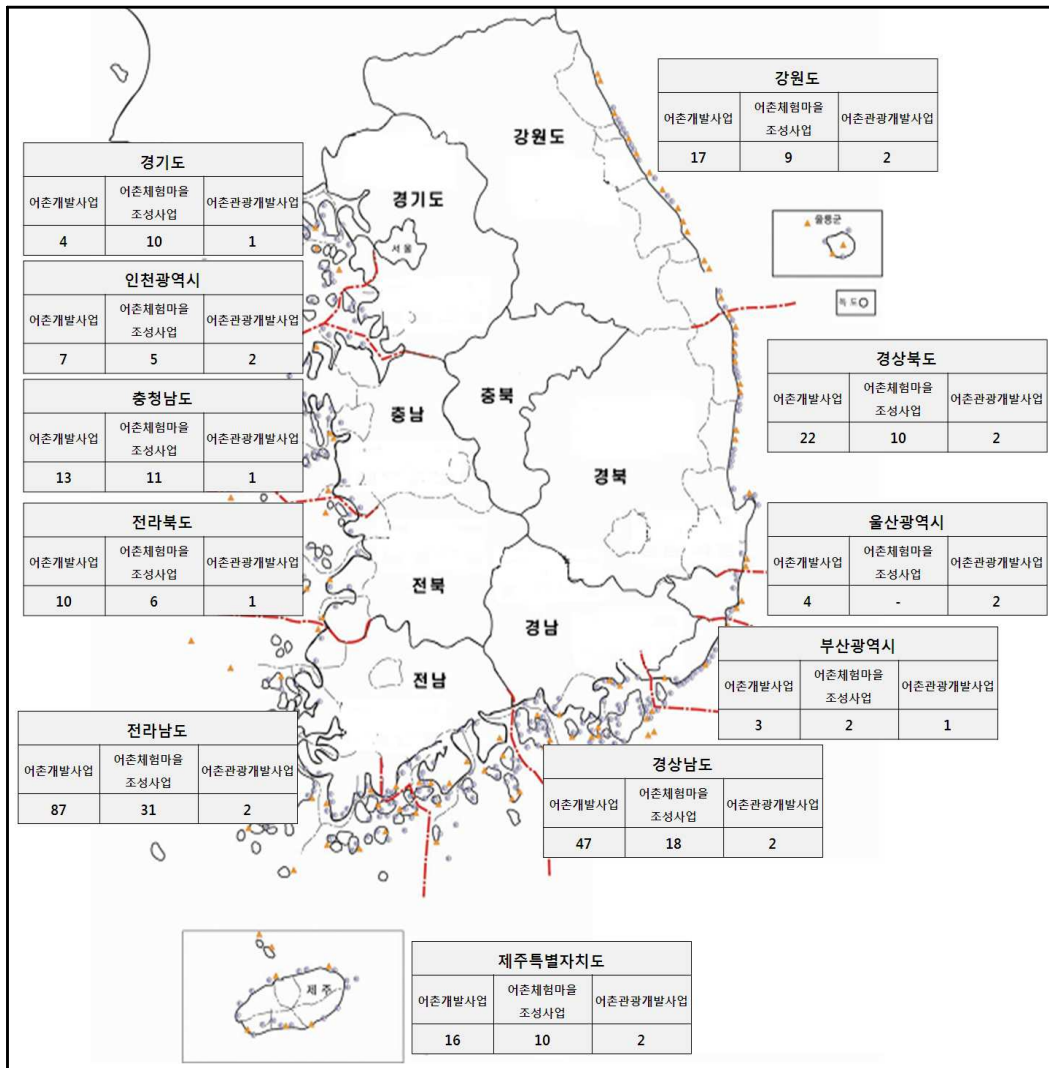
※ 어촌개발사업 230개소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2개소(영광대신, 남해지족)는 미포함

◦ 어촌관련개발사업은 3개사업에 대한 시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39> 어촌관련개발사업 시도별 현황

(단위 : 항수)

| 구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어촌개발사업 | 230 | 3 | 7 | 4 | 4 | 17 | 13 | 10 | 87 | 22 | 47 | 16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112 | 2 | 5 | - | 10 | 9 | 11 | 6 | 31 | 10 | 18 | 10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8 | 1 | 2 | 2 | 1 | 2 | 1 | 1 | 2 | 2 | 2 | 2 |



<그림 3.15> 어촌관련개발사업 시도별 분포 현황

1.2.2 어촌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어촌개발사업

① 목 적

-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정주환경조성 및 소득증대 도모
- 어촌부존자원의 특산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② 시책 및 추진방향

-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지원
- 선정된 권역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
- 권역별로 타 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 선정된 권역은 미리 권역의 적정규모, 합리적인 투자방향등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지원

③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제49조(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개선)

④ 어촌개발사업의 내용

- 어촌개발사업은 1970년대 (농어촌)새마을 사업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88~'92년도에는 어촌(계)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
- 그 후 농특세에 의해 지원예산이 마련되어 '94년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개념으로 발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 '95년에 확정된 투자계획은 '96년부터 권역별 사업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
- 기간/재원 : 1994 - 2013년 / 농어촌특별세(8,795억원)

- 총사업비 : 8,795억원
 - 1단계('94~'08) : 160권역 5,545억원
 - 2단계('08~'13) : 70권역 3,250억원
- 사업규모 : 총 230권역
 - 1단계 권역당 35억원(160권역, '94~'08)
 - 1단계 160개 권역(5,545억원)은 당초 '06년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08년 완료할 계획임.
 - 2단계 권역당 30, 40, 50억원(70권역, '07~'13)
- 지원조건
 - '03년 이전사업(3개년사업) :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 '04년 이후사업(2개년사업) :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 '04년까지 농특예산 → '05년 균특회계로 이관
 - '09년 이후사업(이월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25%, 자담 5%
- 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사업 :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 어촌환경, 소득기반시설 등

<표 3.40> 어촌개발사업 현황

(단위 : 권역수(완공권역수))

| 구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어촌개발사업 | 230 (160) | 3 (2) | 7 (6) | 4 (3) | 4 (2) | 17 (13) | 13 (10) | 10 (7) | 87 (57) | 22 (15) | 47 (32) | 16 (13) |

※ 160개 완공권역에는 '08완공예정 8개권역 포함

(2) 어촌관광개발사업

①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어촌체험마을형)

(i) 목적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ii)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
-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 단기계획 단계 '09년부터 어촌관광개발사업에 어촌체험마을형으로 포함시켜 사업의 효율성 제고 향상 도모

(iii)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제2항

(iv) 사업개요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1990년에 시작한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토대로 이루어짐.
- 1994년부터 시작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1997년 시작된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도 뿌리를 두고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2005년에는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업기간 : 2001 ~ 2013(13년간)
- 총사업비 : 708억원('06년까지 기투자액 : 497억원, 국비248억원)
- 사업규모 : 112개소('07년까지 87개소 지원)
- 사업내용 : 개소당 5억원 규모로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 지원형태/지원대상 : 지자체보조 / 어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

② 어촌관광모델사업(어촌관광형)

(i) 목적

- 어촌지역의 체험관광시설 도입과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
-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외 소득 창출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확산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 유도

(ii)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고품격 어촌관광단지 개발
- 관광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어항 또는 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해 관광 어촌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관광 잠재력이 있는 어촌지역의 집중 개발로 특성화된 해양관광 서비스 제공
 -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2004.5)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사업 지속 추진

(iii)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2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iv)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11년
- 총사업비 : 1,010억원('07년까지 248억원)
- 사업규모 : 18개소('07년까지 10개소 시행중)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50%보조,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민박시설,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갯벌, 어업, 조류, 등), 낚시터(잔교),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담수생태공원, 휴양림, 해안산책로, 해안자전거도로, 주차장, 조형물 등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표 3.41> 어촌관광형 내용

| 구 분 | 어촌관광형 |
|-------|--|
| 개 념 | 기존어항·어촌+관광기능 |
|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
| 사업규모 | 18개소 1,775억원 (개소당 어촌 50~60억원) |
| 사업기간 | '04~'11 |
| 주요내용 | 어촌관광 중심의 복합공간 창출 및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 개발 |
| 사업대상지 | 대항(부산시 강서구), 어유정(인천시 강화군), 초지(인천시 강화군), 일산(울산시 동구),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강릉(강원도 강릉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방축(전남 신안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전촌(경북 경주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학림(경남 통영시), 모슬포항(제주도 서귀포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

2) 문제점

(1) 어촌개발사업

- 그 동안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 및 지역안배 분산투자로 사업효과 미흡
 - 정주·생산기반시설에 집중됨으로써, 지역특화 개발 미흡
 - 광범위한 지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권역내 사업비(35억)를 일률적으로 분산투자함에 따라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특화개발 곤란
-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미흡
 - 정형화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별 창의

적인 어촌개발 미흡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절차 사전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2)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종합안내소, 안내판, 소공원, 진입로 등 관광기반시설에 소규모로 집중되면서 사업효과 극대화가 곤란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시연(試演), 운영기법, 홍보 등 소프트웨어 지원보다는 하드웨어 지원중심에 치중되어 추진되어 왔음.
- 어업인들의 관리운영능력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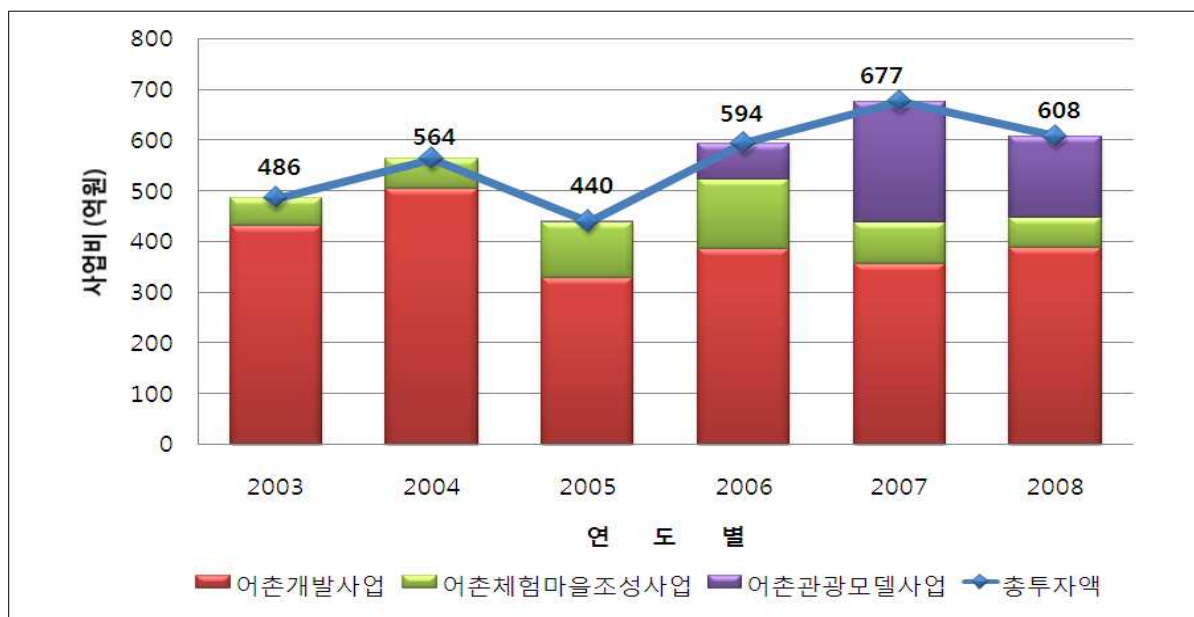
1.2.3 어촌개발 추진실적

- 어촌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인 어촌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들은 어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특히 생산기반 SOC 확충과 관광기반시설에 꾸준한 투자가 진행 중임
- 2005년 이후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 전체 투자비는 2007년 현재 677억원으로 최근 6년동안 140% 증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그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표 3.42> 최근 6년간 어촌개발(총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계 | 486 | 564 | 440 | 594 | 677 | 608 |
| 어촌개발사업 | 431 | 504 | 328 | 386 | 357 | 388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55 | 60 | 110 | 138 | 81 | 60 |
| 어촌관광모델 사업 | - | - | 2 | 70 | 239 | 160 |



<그림 3.16> 최근 5년간 어촌개발(총괄) 투자실적 추이

1) 어촌개발사업

- 총 225개 권역 중 '06년말 기준으로 1단계 152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까지 1단계 잔여 8개 권역 완료 및 2단계 16개 권역(영광대신, 남해지족 어촌복합 생활공간 포함) 추진 중임
- 총사업비 879,531백만원 중 2006년말까지 526,531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 35,750백만원, 2008년 38,789백만원이 투자 예정임
- 시도별 사업실적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부산(1개소), 인천(6개소), 울산(3개소), 경기(2개소), 강원(13개소), 충남(10개소), 전북(7개소), 전남(53개소), 경북(15개소), 경남(29개소), 제주(13개소) 등 총 152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1단계 잔여사업은 2007년~2008년 까지 부산(1개소), 전남(4개소), 경남(3개소)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강원(1개소), 충남(1개소), 전남(6개소), 경남(3개소), 제주(1개소)를 2007년 현재 추진 중임

<표 3.43> 어촌개발사업 년차별 투자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합계 | 2005년 까지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사업량(권역) | 232 | 176 | 152 | (17) | 24 | (20) |
| 사업비 | 879,531 | 601,070 | 487,885 | 38,646 | 35,750 | 38,789 |
| - 국고 | 540,408 | 345,485 | 254,937 | 30,917 | 28,600 | 31,031 |
| - 지방비 | 300,444 | 230,829 | 209,901 | 7,315 | 6,718 | 6,895 |
| - 자담 | 38,679 | 24,756 | 23,047 | 414 | 432 | 863 |

※ 주1)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주2) 2007년도 24권역 중 1단계 미착수권역은 8개소임

<표 3.44> 어촌개발사업 시도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94~2006) | | | | '07 | | '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어촌 계수 | 사업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계 | 176 | 601,070 | 152 | 996 | 2,466 | 526,531 | 24 | 35,750 | (20) | 38,789 |
| 부 산 | 2 | 7,000 | 1 | 6 | 29 | 4,028 | 1 | 1,750 | (1) | 1,750 |
| 인 천 | 6 | 20,018 | 6 | 30 | 134 | 19,417 | - | - | - | - |
| 울 산 | 3 | 10,577 | 3 | 19 | 43 | 10,577 | - | - | - | - |
| 경 기 | 2 | 9,270 | 2 | 9 | 66 | 9,270 | - | - | - | - |
| 강 원 | 14 | 43,710 | 13 | 56 | 198 | 44,972 | 1 | 1,375 | - | 2,000 |
| 충 남 | 11 | 34,005 | 10 | 57 | 149 | 35,257 | 1 | 1,375 | - | 2,125 |
| 전 북 | 8 | 23,648 | 7 | 44 | 76 | 23,487 | 1 | 1,375 | - | 2,125 |
| 전 남 | 63 | 190,460 | 53 | 342 | 730 | 183,804 | 10 | 15,000 | (4) | 17,655 |
| 경 북 | 18 | 51,320 | 15 | 102 | 261 | 50,573 | 3 | 4,125 | - | 2,125 |
| 경 남 | 35 | 110,902 | 29 | 244 | 558 | 100,698 | 6 | 9,375 | (3) | 9,500 |
| 제 주 | 14 | 42,260 | 13 | 87 | 222 | 44,448 | 1 | 1,375 | (1) | 1,509 |

<표 3.45> 어촌개발사업 완공 권역의 지원 현황

| 시·도 | 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계 | 160 (16) | 10 | 11 | 17 | 23 | 16 | 8 | 8 | 16 | 6 | 15 | 4 | 18 | 8 (16) |
| 부 산 | 2 | | | | | | | 기장 일광 | | | | | | 기장 기장東 |
| 인 천 | 6 | 웅진덕 적 | | 웅진백령 | 웅진 연평 | | | 강화 삼산 | 강화 길상 | | | | 웅진 북도 ·영흥 | |
| 울 산 | 3 | | | 울산강동 | | 울산서생 1 | | | 울산서 생2 | | | | | |
| 경 기 | 2 | | 화성서 신 | 화성우정 | | | | | | | | | | |
| 강 원 | 13 (1) | 삼척근 덕 | 양양현 북 고성도 성 | 강릉강동 육계, 속초속초 | 동해 동해, 고성 죽왕 | 양양강현 | 강릉연곡 사천 | 고성거진 현내 | 삼척삼 척東 | | 양양 현남 | | 강릉 강릉東 | 삼척 원덕 |
| 충 남 | 10 (1) | 보령오 천 | 태안안 면 | 보령관당 | 태안 근소, 당진 당진 | 보령외연 | 태안태원 이 | | 홍성 홍성 | | 서산가 로림 | | 서천 서천 | 태안 태안2 |
| 전 북 | 7 (1) | 고창고 창 | 부안변 산 | | 부안 위도, 고창 고창2 | 군산옥도 | | | 군산 염성 | | 군산 선유 | | | 고창 남부 |
| 경 북 | 15 (3) | 포항영 일만 | 울진 후포 | 영덕축산 · 울릉울릉 西 | 포항 모포, 경주 감포 | 울진오산 · 영덕강구 | 경주양남 | 울릉을릉 北 | 포항 방석 | 울진 구산 | 영덕 대진 | 울릉 울릉 | 포항 월포 | 울진 죽변 포항 하정 영덕 삼사 |
| 경 남 | 32 (3) | 사천사 천, 남해영 강만 | 거제지 구만,통 영한산 만 | 고성거류 동해, 통영 산양, 사천사천 도서 | 거제 장목만, 마산 구산만, 남해 남미조, 사천 사천3, 고성 자란만 | 통영사량 · 통영용남 · 남해설천 東, 고성당항 | 거제사등 | 남해 상동 | 통영 육지 진해진 해안 하동대 교東 | 남해 서면 | 통영 도산 거제 학동 통영 노대 | 통영 산양2 계제 거제만 남해 고현 | 통영 한산2 | 마산진동 만 남해강진 만 사천사천 해안 통영 통영육지 남해 남면서부 남해 지족 |
| 제 주 | 13 (1) | 북군구 좌 | 남군모 슬포 | 북군 한경, 북군 추자 | 남군 성산東, 남군 남원西 | 북군애월 | 남군성산 서 | 남군남원 동 | 북군 조천 | 남군 표선 | 북군 우도 | | 북군한림 西 | 제주 구좌서부 |

* 2007년도의 [] 는 2단계 사업지구임.

2) 어촌관광개발사업

(1) 어촌체험마을형(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마을형은 총 112개소 가운데 2006년까지 76개소 497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 11개소 81억원, 2008년 8개소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 년도별로 개소당 사업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01년 시범사업 : 개소당 9억원
 - '02-'04 : 개소당 5억원
 - '05년이후 :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규모 탄력적 운용

<표 3.46> 어촌체험마을형 년차별 투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기 시행 | | | | | | | '07 | '08 | |
|-----|------|-------------|-------|-------|-------|-------|--------|-----------|--------|-------|-------|
| | | '01시 범사업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6 까지 | | | |
| 사업량 | 112 | 9 | 8 | 11 | 12 | 18 | 17 | 76 | 11 | 8 | |
| 사업비 | 계 | 70,822 | 9,422 | 4,000 | 5,500 | 6,000 | 11,000 | 13,800 | 49,722 | 8,100 | 5,988 |
| | 국비 | 35,411 | 4,711 | 2,000 | 2,750 | 3,000 | 5,500 | 6,900 | 24,861 | 4,050 | 2,994 |
| | 지방비 | 31,870 | 4,240 | 1,800 | 2,475 | 2,700 | 4,950 | 6,210 | 22,375 | 3,645 | 2,695 |
| | 자담 | 3,541 | 471 | 200 | 275 | 300 | 550 | 690 | 2,486 | 405 | 299 |

- 시도별로는 2006년까지 부산(2개소), 인천(4개소), 경기(8개소), 강원(6개소), 충남(11개소), 전북(4개소), 전남(20개소), 경북(7개소), 경남(12개소), 제주(6개소) 등 총 76개소를 완료하였고, 08년까지 인천(1개소), 경기(2개소), 강원(2개소), 전남(9개소), 경남(6개소)을 지원하여 112개소 중 95개소 84.8%를 완료 예정

<표 3.47>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수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합 계 | 112 | 2 | 5 | 0 | 10 | 9 | 11 | 6 | 31 | 10 | 18 | 10 |
| 2006까지 | 76 | 2 | 4 | 0 | 8 | 6 | 7 | 4 | 20 | 7 | 12 | 6 |
| 2007년 | 11 | | | | | 1 | | | 6 | | 4 | |
| 2008년 | 8 | | 1 | | 1 | 1 | | | 3 | | 2 | |
| 장래조성계획 | 17 | - | - | - | 1 | 1 | 4 | 2 | 2 | 3 | - | 4 |

<표 3.48> 어촌체험마을 시도별 투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시·도 | 총 계 획 | | 실 적 ('2001~2006) | | '07 | | '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계 | 112 | 70,322 | 76 | 49,722 | 11 | 8,100 | 8 | 5,988 |
| 부 산 | 2 | 1,750 | 2 | 1,750 | - | - | - | - |
| 인 천 | 5 | 2,500 | 4 | 2,000 | - | - | 1 | 500 |
| 울 산 | - | - | - | - | - | - | - | - |
| 경 기 | 10 | 6,270 | 8 | 5,270 | - | - | 1 | 1,000 |
| 강 원 | 9 | 6,000 | 6 | 4,500 | 1 | 500 | 1 | 500 |
| 충 남 | 11 | 6,330 | 7 | 4,330 | - | - | | |
| 전 북 | 6 | 3,000 | 4 | 2,000 | - | - | | |
| 전 남 | 31 | 25,650 | 20 | 17,050 | 6 | 5,600 | 3 | 2,988 |
| 경 북 | 10 | 4,850 | 7 | 3,350 | - | - | | |
| 경 남 | 18 | 9,230 | 12 | 6,230 | 4 | 2,000 | 2 | 1,000 |
| 제 주 | 10 | 5,242 | 6 | 3,242 | - | - | | |

(2) 어촌관광형(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18개소
총사업비 1,016억원 중 2008년까지 468억원을 투자
- 2008년까지 3개소(경북 대진항, 충남 무창포항, 강원 대진항)를 완료
- 어촌관광형은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표 3.49> 어촌관광형 년도별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 사업비 | '06년 | '07 | '08 | '09이후 |
|-------------|-----|---------|-------|--------|--------|--------|
| 시설수 | | 18 | 4 | 6(4) | 6(6) | 2(13) |
| 시설비 (억원) | 계 | 101,650 | 7,000 | 23,944 | 15,964 | 54,742 |
| | 국비 | 50,825 | 3,500 | 11,972 | 7,982 | 27,371 |
| | 지방비 | 50,825 | 3,500 | 11,972 | 7,982 | 27,371 |

<표 3.50> 어촌관광형 시도별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 시도 | 항명 | 총사업비 | 2006 | 2007 | 2008 | 2009 이후 |
|----|-----|---------|-------|--------|--------|------------|
| 합계 | | 101,890 | 7,000 | 23,944 | 15,964 | 54,742 |
| 소계 | | 35,000 | 1,000 | 7,144 | 7,886 | 18,970 |
| 부산 | 대항 | 6,000 | | | 1,942 | 4,058 |
| 인천 | 어유정 | 5,000 | | | | 5,000 |
| | 초지 | 6,000 | | | 1,910 | 4,090 |
| 울산 | 일산 | 5,000 | | 3,160 | 920 | 920 |
| | 대송 | 6,000 | 1,000 | 3,000 | 1,000 | 1,000 |
| 경기 | 전곡 | 6,000 | | | - | 6,000 |
| 강원 | 강릉 | 5,000 | | | 2,000 | 3,000 |
| | 대진 | 6,000 | 2,000 | 4,000 | - | - |
| 충남 | 무창포 | 6,240 | | 6,000 | - | - |
| 전북 | 야미도 | 6,000 | | | 800 | 5,200 |
| 전남 | 마량 | 5,000 | 1,000 | 1,000 | 500 | 2,500 |
| | 방축 | 6,000 | 3,000 | 1,000 | 500 | 1,500 |
| 경북 | 대진 | 5,000 | | 1,734 | 3,266 | - |
| | 전촌 | 6,000 | | 2,200 | 726 | 3,074 |
| 경남 | 맥전포 | 5,000 | | | 1,200 | 3,800 |
| | 학림 | 6,000 | | | 1,200 | 4,800 |
| 제주 | 모슬포 | 5,000 | | 1,250 | - | 3,750 |
| | 법환 | 6,650 | | 600 | - | 6,050 |

※ 정확한 사업규모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에 따라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1.2.4 어촌개발 추진계획

1) 어촌개발사업

(1) 추진방향

- 기존의 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신규로 어촌복합생활공간권역을 설정하여 이원적으로 수행
 - 사업은 주로 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새로이 어촌복합생활공간권역을 지정하여 병행하여 시행함.
- 어촌개발사업(기존)
 - 어촌의 생산기반, 소득원 개발, 정주여건 개선, 어촌관광기반 조성(추가) 등의 목적으로 시행
 - 권역당 투자 금액 규모 : 50억원 이내
 - 미시행 권역, 재정비 권역으로 구분 실시
 - 중심테마어촌마을 집중 투자
- 미시행권역과 재정비 권역의 시행
 - 기존의 미시행 권역(약 60개 권역)에 대해서는 중심테마어촌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시행 권역이 없거나 적은 시도에 대하여는 중심테마어촌이 있는 권역을 수 개소씩 선정하여 수행
 - 미시행 권역은 기존의 권역을 존중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중심테마어촌의 존재 여부와 그 숫자, 어촌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나누어 권역을 구분하여 추진
 - 미시행 권역 사업이 거의 없는 시도 지역은 집중 투자방식을 고려한 어촌 재정비 권역을 선정하여 중심테마어촌을 위주로 권역을 형성하여 시행함
 - 2단계 총 투자권역 수 : 약 61여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투자(70개소권역 중 소권역 9개권역(정주환경기반)을 제외한 61개권역을 유형화)
 - 지자체에서 권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사업추진체계 개편
 - 지역별 관광 부존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2단계 70개권역중 61개권역(중(40억이하)·대(50억이하))에 대해 어촌교류형, 수산물유통판매형, 어촌관광레저형, 어촌문화학습형 등 4개 유형으로 테마를 설정, 2013년까지 완료
 - ⇒ 자연·경관자원, 생태·어업자원, 지역특산물·먹거리자원, 역사·문화자원

- 중 특성화가 가능한 유형(테마)을 설정, 고소득 어촌공간으로 조성
- 어촌지역 특성화 개발을 위해 사업비도 차등 지원방식으로 개편
- ⇒ 일률적 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지역 특성화에 따른 차등지원

<표 3.51> 권역분류 기준 및 사업비 규모

| 구분 | 대권역 | 중권역 | 소권역 |
|--------|-------------------------|---------------------------|-------------------------|
| 분류기준 | 어촌계 7개이상 어촌계원 420명이상 | 어촌계 5~6개 어촌계원 200~420명 | 어촌계 4개이하 어촌계원 200명이하 |
| 사업비 규모 | 50억이하 | 40억이하 | 30억이하 |
| 권역 규모 | 46개권역 | 15개권역 | 9개권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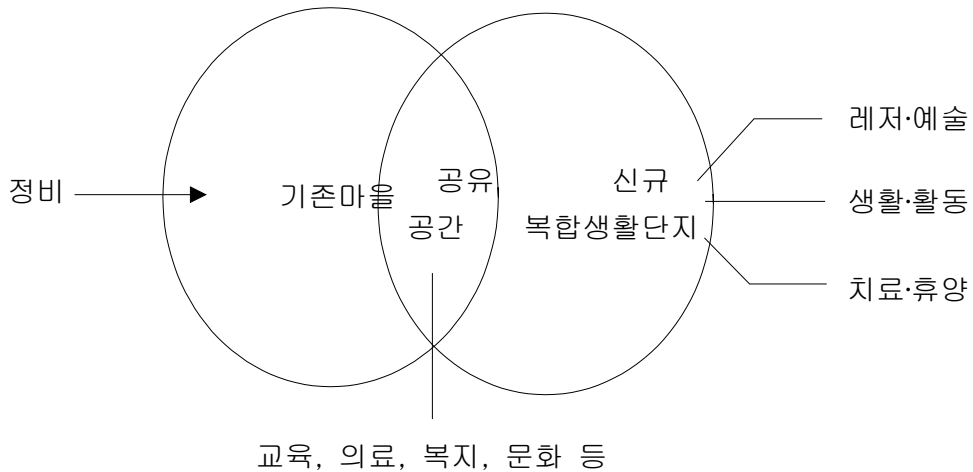
<표 3.52> 어촌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 자원성 | 접근성 | | | |
|---------------------|---------------|-----------------|-------------------|------------------|
| | 도시근교 | 연안촌락 | 낙후어촌 | |
| 어촌교류형 (28) | 전통어업/ 생태마을 | 삼척원덕 | 홍성홍성 외 9개권역 | 부안위도 외 5개권역 |
| | 어촌문화 마을 | 포항칠포 외 1개권역 | 서산지곡 외 6개권역 | 제주대정서부 외 1개권역 |
| 수산물유통 판매형 (9) | 향토특산물 마을 | 마산마산만 외 2개권역 | 강원북부내수면 외 3개권역 | 완도신지 외 1개권역 |
| 어촌관광 레저형 (20) | 해양레저 마을 | 부산장안 외 7개권역 | 거제서부 외 8개권역 | 신안장산 |
| | 혼합형 관광마을 | 제주구좌서부 | 통영용남광도 | - |
| 어촌문화 학습형 (4) | 테마교육 마을 | 화성서신 외 1개권역 | - | - |
| | 무공해 마을 | - | - | 통영비진도 외 1개권역 |
| 계 | | 17개권역 | 31개권역 | 13개권역 |

※ 70개소권역 중 소권역 9개권역을 제외한 61개권역을 유형화

※ 9개 소권역(인천(1) 중부권역, 강원(2) 강동권역, 강현권역, 경북(1) 칠포권역, 전남(4) 비금권역, 도초권역, 신의권역, 중도권역, 하의권역)

- 1, 2단계 230개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비사업 추진
 - ⇒ 1단계 160개권역에 대해 선정 우선 배정하되, 어촌계의 사업 추진력 및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2012년 : 3단계 어촌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시행(140개권역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 : 용역비 3억원
 - 3단계 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2014~)
- 어촌복합생활공간권역
- 개념
 - 교통이 편리하고 기존 마을의 편의시설과 문화교육시설 등이 갖추어지고 레저 등 활동에 적합한 경관 좋은 어촌마을 연결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민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이나 예술적 활동, 기타 활동이 가능한 신규 이주단지를 조성
 - 목적
 - 도시의 주택난, 레저 기회 상실 등을 고려하여 어촌에의 정착을 촉진케 하는 계기 조성하고 어촌 인구 유입으로 국토 균형 발전 도모
 - 방법
 - 토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생활환경 및 레저 등의 환경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어촌정주 공간으로 조성.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 연계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킴
 - 조성 마을의 개념(테마) : 지역마다 차별화 가능
 - 전통역사문화마을 : 역사적 향취를 중심으로 신규 어촌단지 조성
 - 해양예술마을 : 바닷가에서의 예술적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인 마을
 - 해양레저마을 : 해양레저를 즐기는 애호가들의 마을
 - 해양치료마을 : 해양의 치료 자원을 중심으로 요양·휴양하는 마을 조성
 - 기타 : 해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애호가들의 마을단지 조성 등



- 대상 지구 : 기선정된 지역
 - 전라남도 영광군 대신 지구
 - 경상남도 남해군 지족

(2)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13년까지 2단계 진행 중인 16개권역(어촌복합생활공간 남해지족, 영광대신포함)과 시행예정인 56개권역 등 총 72개권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 대중소에 따른 사업비 차별지원 (중심테마어촌마을 집중 투자)
 - 61개 권역 사업추진
 - 지역특성에 따른 테마설정 추진
 - 테마설정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 권역별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개발을 위해 차등지원(50, 40억원)
 - 9개 소권역(정주환경기반조성) 사업추진
- 어촌복합생활공간권역을 시범사업(2007년 신규권역 : 전남 영광군(대신), 경남 남해군(지족) 이상 2개소) 결과 평과 후 추진 방안 마련
- 1, 2단계 232개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 마련
 - 1단계 160개권역에 대해 선정 우선 배정하되, 어촌계의 사업 추진력 및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3단계 어촌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시행(140개권역 선정 및 우선순위 결

정) : 용역비 3억원(2012년)

<표 3.53> 어촌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원권역수 | 70 | 26(14) | 11(10) | 12(12) | 11(15) | 10(20) | |
| 계 | 278,461 | 25,754 | 39,640 | 45,300 | 47,504 | 120,563 | |
| 부산광역시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인천광역시 | 3,000 | | | 500 | 2,500 | | |
| 울산광역시 | 4,000 | | 750 | 1,000 | 2,250 | | |
| 경 기 도 | 9,000 | | 1,500 | 1,780 | 1,720 | 4,000 | |
| 충 청 남 도 | 10,500 | | 1,500 | 500 | 1,000 | 7,500 | |
| 전 라 북 도 | 11,500 | 1,500 | 1,500 | 1,500 | 2,400 | 4,600 | |
| 전 라 남 도 | 119,644 | 9,499 | 14,085 | 20,720 | 15,798 | 59,542 | |
| 경 상 남 도 | 66,326 | 6,623 | 8,250 | 10,750 | 10,602 | 30,101 | |
| 경 상 북 도 | 25,750 | 4,642 | 6,711 | 2,000 | 3,797 | 8,600 | |
| 강 원 도 | 12,625 | 2,205 | 2,000 | 2,920 | 2,500 | 3,000 | |
| 제 주 도 | 12,116 | 1,285 | 2,594 | 2,630 | 2,387 | 3,220 | |

※ 지방비 및 자담 포함 금액임(국비 70%, 지방비 25%, 자담 5%)

■ 중·장기(2014~2023)

- 어촌개발사업은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 1, 2단계 232개 권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역 특성화 개발이 미흡한 140여개 권역을 선정 3단계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 마련

<표 3.54> 어촌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중장기계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계 | 700,000 | 55,000 | 58,000 | 60,900 | 64,000 | 68,000 | 71,000 | 75,000 | 78,700 | 82,600 | 86,800 |
| 부산광역시 | 20,000 | 1,571 | 1,657 | 1,740 | 1,828 | 1,943 | 2,029 | 2,143 | 2,249 | 2,360 | 2,480 |
| 인천광역시 | 30,000 | 2,357 | 2,486 | 2,610 | 2,743 | 2,914 | 3,043 | 3,214 | 3,373 | 3,540 | 3,720 |
| 울산광역시 | 20,000 | 1,571 | 1,657 | 1,740 | 1,828 | 1,943 | 2,029 | 2,143 | 2,249 | 2,360 | 2,480 |
| 경기도 | 25,000 | 1,964 | 2,071 | 2,175 | 2,286 | 2,428 | 2,536 | 2,679 | 2,811 | 2,950 | 3,100 |
| 충청남도 | 50,000 | 3,930 | 4,144 | 4,350 | 4,571 | 4,857 | 5,070 | 5,357 | 5,621 | 5,900 | 6,200 |
| 전라북도 | 30,000 | 2,357 | 2,486 | 2,610 | 2,743 | 2,914 | 3,043 | 3,214 | 3,373 | 3,540 | 3,720 |
| 전라남도 | 240,000 | 18,857 | 19,886 | 20,880 | 21,943 | 23,314 | 24,343 | 25,714 | 26,983 | 28,320 | 29,760 |
| 경상남도 | 130,000 | 10,215 | 10,771 | 11,310 | 11,886 | 12,629 | 13,185 | 13,928 | 14,616 | 15,340 | 16,120 |
| 경상북도 | 60,000 | 4,714 | 4,971 | 5,220 | 5,486 | 5,829 | 6,086 | 6,429 | 6,745 | 7,080 | 7,440 |
| 강원도 | 55,000 | 4,321 | 4,557 | 4,785 | 5,029 | 5,343 | 5,579 | 5,893 | 6,183 | 6,490 | 6,820 |
| 제주도 | 40,000 | 3,143 | 3,314 | 3,480 | 3,657 | 3,886 | 4,057 | 4,286 | 4,497 | 4,720 | 4,960 |

※지방비 및 자담 포함 금액임(국비 70%, 지방비 25%, 자담 5%)

(3) 유형별 어촌개발 세부 추진사항

① 어촌교류형

(i) 개발목표

- 바다 및 연안자원을 이용 도시/어촌 교류공간 거점 형성
- 연안생태, 어촌문화·역사, 산업에 대한 체험관광 기회 확대
- 어촌관광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종합프로그램화 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제공

(ii) 사업내용

- 어업인들의 전통적인 어업과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조성(전통어업/어촌생활 → 죽방렴, 독살, 개매기 등 전통어업, 풍어제 등 지역축제)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활용,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류형 특화마을 조성(특화마을 → 미술, 시, 작곡, 영화, 사진 등)

(iii) 기대효과

- 도시민에게 어촌 체험기회를 통해 건강한 휴식과 여가문화 조성
- 도시/어촌간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어업인과의 소통기회 확대

(iv) 투자계획

<표 3.55> 어촌교류형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원권역수 | 28 | 7 | 5 | 5 | 6 | 5 | |
| 계 | 105,406 | 5,307 | 9,612 | 15,880 | 14,045 | 60,562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 - | - | |
| 충 청 남 도 | - | - | - | - | - | - | |
| 전 라 북 도 | 10,000 | - | 1,500 | 1,500 | 2,400 | 4,600 | |
| 전 라 남 도 | 57,781 | 2,361 | 4,920 | 7,500 | 5,958 | 37,042 | |
| 경 상 남 도 | 21,000 | 750 | 2,000 | 4,250 | 2,900 | 11,100 | |
| 경 상 북 도 | 5,000 | - | - | - | 400 | 4,600 | |
| 강 원 도 | 1,625 | 1,625 | - | - | - | - | |
| 제 주 도 | 10,000 | 571 | 1,192 | 2,630 | 2,387 | 3,220 |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② 수산물 유통·판매형

(i) 개발목표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이 연계된 생산클러스터를 관광 상품화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선상에서 관련 산업과의 공동발전 추구

(ii)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지로 개발

- 도시근교 → 특산물판매센터, 수산물직판장, 씨프런트 아케이드, 종합쇼핑센터
- 연안촌락/낙후어촌 → 산지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냉동·냉장 및 건조장 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iii) 기대효과

- 향토특산물을 어촌마을의 대표적 브랜드로 개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어촌에 벤처기업 유치로 어업인들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득증대 기여
- 방문객과 현지인, 방문객과 방문객 사이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가능
- 단순 생산판매를 2·3차 산업과 연계함에 따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가능

(iv) 투자계획

<표 3.56> 수산물 유통·판매형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원권역수 | 9 | 5 | 1 | 2 | 1 | (4) | |
| 계 | 35,246 | 6,406 | 4,000 | 7,420 | 4,720 | 12,700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경 기 도 | - | - | - | - | - | - | |
| 충 청 남 도 | - | - | - | - | - | - | |
| 전 라 북 도 | 1,500 | 1,500 | - | - | - | - | |
| 전 라 남 도 | 17,246 | 2,826 | 1,500 | 3,000 | 3,320 | 6,600 | |
| 경 상 남 도 | 11,500 | 1,500 | 500 | 2,000 | 1,400 | 6,100 | |
| 경 상 북 도 | - | - | - | - | - | - | |
| 강 원 도 | 5,000 | 580 | 2,000 | 2,420 | - | - | |
| 제 주 도 | - | - |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③ 어촌관광·레저형

(i) 개발목표

- 어촌 친수공간 조성, 관광어촌·어항 개발, 어촌 경관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을 통한 레저 관광어촌의 창조적 개발 추진
- 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 개발

(ii) 사업내용

- 해상공간에서 바람, 파도, 해류의 흐름, 어류 등 역동적인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동호인 또는 젊은 층 등이 휴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마을(공간)을 조성(해양레저마을 → 해수욕장, 피서리나 등을 활용한 해양레크리에이션 단지, 스킨스쿠버 관련시설, 어촌낚시별장 조성 등)
- 어촌의 지리적 잠재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혼합형관광마을 → 체류형 어촌관광유스호스텔, 어촌체험/관광펜션단지, 해수온천탕, 야영장, 캠핑장 등)

(iii) 기대효과

- 어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간 공존으로 상호 상충관계 최소화(스킨스쿠버/마을어장 간 상충, 낚시와 가두리양식장 상충 등)
- 어촌관광과 해양스포츠를 접목한 탐방객 유치로 지역개발 및 소득 증대 기여
- 젊은 층에게 해양레포츠를 통해 어촌이 휴식, 여가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 마련

(iv) 투자계획

<표 3.57> 어촌관광·레저형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원권역수 | 20 | 13 | 2 | 2 | 1 | 2 | |
| 계 | 75,059 | 11,506 | 16,960 | 12,000 | 16,592 | 18,001 | |
| 부산광역시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경기도 | 5,000 | - | 1,500 | 1,780 | 1,720 | - |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16,992 | 3,152 | 3,700 | 4,720 | 3,320 | 2,100 | |
| 경상남도 | 25,201 | 2,998 | 3,000 | 2,500 | 4,802 | 11,901 | |
| 경상북도 | 17,750 | 4,642 | 5,858 | 1,000 | 2,250 | 4,000 | |
| 강원도 | - | - | - | - | - | - | |
| 제주도 | 2,116 | 714 | 1,402 | - | - | - | |

④ 어촌문화학습형

(i) 개발목표

- 전통문화보전 및 가치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촌지역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등의 훼손이 심각
-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가치관 변화로 도시민들의 건전한 관광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촌의 전통문화유산 학습 마을 육성

(ii) 사업내용

- 지리적으로 도시인접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의 경우 각종 생태자원 및 전통문화를 테마화하여 도시민들이 학습(관람)할 수 있는 기반 마련(테마교육마을 → 수족관, 해양생물 자연사박물관, 수산과학전시관, 어촌문화 박물관, 해군시설 견학(함정 승선체험 등))
- 낙도촌락형 어촌의 경우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휴양 및 건강음식문화마을로 조성 (무공해 건강음식문화마을 →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시설을 조성 무공해 식품 생산지로 개발, 요양시설, 낙도 극기훈련장, 낙도 기숙학원 등)

(iii)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민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동질감 고취
- 도시민에게 일상을 탈피, 어촌의 전통문화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촌(섬)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건강장수 식품 공급 가능
-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이용한 학습장소, 요양시설로서 역할

(iv) 투자계획

<표 3.58> 어촌문화학습형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원권역수 | 4 | - | 1 | (1) | 1 | 2 | |
| 계 | 18,000 | - | 500 | 2,000 | 1,900 | 13,600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경 기 도 | 4,000 | - | - | - | - | 4,000 | |
| 충 청 남 도 | - | - | - | - | - | - | |
| 전 라 북 도 | - | - | - | - | - | - | |
| 전 라 남 도 | 9,000 | - | - | - | 400 | 8,600 | |
| 경 상 남 도 | 5,000 | - | 500 | 2,000 | 1,500 | 1,000 | |
| 경 상 북 도 | - | - | - | - | - | - | |
| 강 원 도 | - | - | - | - | - | - | |
| 제 주 도 | - | - |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2) 어촌관광개발사업

(1) 추진방향

-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유사사업인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어촌체험마을형으로,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어촌관광형으로 개칭,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어촌관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
- 계획 중인 어촌관광개발사업 32개소(어촌체험형 17개소, 어촌관광형 15개소)를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완료함으로써 대중이 참여·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 경관감상 위주의 정적개념에서 어업·생태·해양레포츠 체험 등 동적관광개념 도입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창출로의 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하여 고용효과 제고를 꾀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촌체험 및 어촌관광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 및 향후 어촌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방안 마련(2010년, 5억)

(2)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체험마을형 17개소 사업 추진하여 '13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함
 - 경기(1개소), 강원(1개소), 충남(4개소), 전북(2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제주(4개소)를 지원
 - 개소당 사업규모 : 5억원이상
- 어촌관광형 15개소 시범사업 완료(2011년)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0, 5억원)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 개소당 사업규모 : 50~60억원

<표 3.59> 어촌관광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사업개소 | 32 | 10(8) | 9(10) | 5(4) | 4(5) | 4(4) | |
| 사업비 | 133,768 | 18,568 | 26,800 | 29,100 | 29,200 | 30,100 | |
| 부산광역시 | 어촌체험마을형 | - | - | - | - | - | |
| | 어촌관광형 | 4,058 | - | 2,058 | 2,000 | - | 대항항 |
| 인천광역시 | 어촌체험마을형 | - | - | - | - | - | |
| | 어촌관광형 | 9,090 | 2,510 | 3,370 | 3,210 | - | 어유정항 초지항 |
| 울산광역시 | 어촌체험마을형 | - | - | - | - | - | |
| | 어촌관광형 | 1,920 | 1,920 | - | - | - | 일산항 대송항 |
| 경기도 | 어촌체험마을형 | 500 | - | 500 | - | - | 화성1 |
| | 어촌관광형 | 6,000 | - | 2,000 | 4,000 | - | 전곡항 |
| 충청남도 | 어촌체험마을형 | 2,000 | 500 | 500 | 1,000 | - | 태안3 서천1 |
| | 어촌관광형 | - | - | - | - | - | |
| 전라북도 | 어촌체험마을형 | 1,000 | - | 500 | 500 | - | 군산1 고창1 |
| | 어촌관광형 | 5,200 | 1,300 | 2,510 | 1,390 | - | 야미도항 |
| 전라남도 | 어촌체험마을형 | 1,800 | 1,800 | - | - | - | 무안1 진도1 |
| | 어촌관광형 | 4,000 | 1,712 | 2,288 | - | - | 마량항 방축항 |
| 경상남도 | 어촌체험마을형 | - | - | - | - | - | |
| | 어촌관광형 | 8,600 | 3,600 | 4,400 | 600 | - | 맥전포항 학림항 |
| 경상북도 | 어촌체험마을형 | 1,500 | - | 500 | 1,000 | - | 울진1 포항2 |
| | 어촌관광형 | 3,074 | 1,226 | 1,848 | - | - | 전촌항 |
| 강원도 | 어촌체험마을형 | 500 | 500 | - | - | - | 속초 |
| | 어촌관광형 | 3,000 | 2,000 | 1,000 | - | - | 강릉항 |
| 제주도 | 어촌체험마을형 | 2,002 | 1,500 | 500 | - | - | 제주2 서귀포2 |
| | 어촌관광형 | 9,800 | - | 4,326 | 2,250 | 3,224 | 모슬포항 법환항 |

※ ()는 계속사업 권역임

※ 2010년에 사후평가비 5억원 포함

※ 2011년~2013년까지 신규사업비 포함.

■ 중·장기(2014~2023)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단위로 사업 추진
 - 1개 사업비규모 : 60억원, 총소요예산 4,560억원
 - 시군별 사업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하되,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표 3.60> 어촌관광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계 | 456,000 | 34,600 | 36,700 | 38,900 | 41,200 | 43,700 | 46,300 | 49,000 | 52,000 | 55,200 | 58,400 |
| 부산광역시 | 6,000 | 455 | 482 | 512 | 543 | 575 | 610 | 645 | 684 | 726 | 768 |
| 인천광역시 | 12,000 | 910 | 966 | 1,024 | 1,084 | 1,150 | 1,218 | 1,290 | 1,368 | 1,453 | 1,537 |
| 울산광역시 | 6,000 | 455 | 483 | 512 | 542 | 575 | 609 | 646 | 684 | 726 | 768 |
| 경기도 | 12,000 | 911 | 966 | 1,023 | 1,084 | 1,150 | 1,218 | 1,289 | 1,368 | 1,453 | 1,538 |
| 충청남도 | 36,000 | 2,732 | 2,897 | 3,071 | 3,253 | 3,450 | 3,655 | 3,868 | 4,106 | 4,358 | 4,610 |
| 전라북도 | 18,000 | 1,366 | 1,449 | 1,535 | 1,626 | 1,725 | 1,828 | 1,934 | 2,053 | 2,179 | 2,305 |
| 전라남도 | 198,000 | 15,024 | 15,936 | 16,891 | 17,889 | 18,975 | 20,104 | 21,276 | 22,579 | 23,968 | 25,358 |
| 경상남도 | 90,000 | 6,829 | 7,243 | 7,678 | 8,132 | 8,625 | 9,138 | 9,671 | 10,263 | 10,895 | 11,526 |
| 경상북도 | 36,000 | 2,732 | 2,897 | 3,071 | 3,253 | 3,450 | 3,655 | 3,868 | 4,105 | 4,358 | 4,611 |
| 강원도 | 18,000 | 1,365 | 1,449 | 1,536 | 1,626 | 1,725 | 1,828 | 1,934 | 2,053 | 2,179 | 2,305 |
| 제주도 | 24,000 | 1,821 | 1,932 | 2,047 | 2,168 | 2,300 | 2,437 | 2,579 | 2,737 | 2,905 | 3,074 |

3)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1) 추진방향

- 고령화·공동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 낙후 및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및 건강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의 시범 사업 추진
 -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10년, 3억원)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실시 (2012~2013)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하여 계속여부 결정 (2013년, 3억원)

<표 3.61>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

| 사업 부문 | 사 업 내 용 |
|--------------|--|
| 소프트 웨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거리, 마을의 자랑거리 주제화 발굴 ▷ 지역특산물 제품의 다양화, 차별화, 고품질화 - 포장/디자인 개선 등 ▷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 마을 이미지, 로고활용 ▷ 건강검진 - 보건소 협조 등 (마을 내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 ▷ 마을간 건강프로그램 교류행사 개최 ▷ 노인회 활동 활성화 - 도·어촌 교류, 지역문화 전승활동, 어린이 체험활동 강사로 활동 |
| 하드 웨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 환경조성 - 산책로, 휴식공간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주택의 신축 및 개량 등 ▷ 빈집철거 및 정비, 담장정비, 마을 진입로 정비, 색채사업 등 |

※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추진방향은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방안 마련

(2)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 3억원)
- 시도에서 선정된 고령화·공동화가 심화가 예상된 총 9개 마을 시범사업 실시
 - 1개 사업비 규모 : 30억원, 총소요예산 : 270억원
 - 선정사유 :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도별 해당시군을 선정함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3, 3억원)

<표 3.62> 시도별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

| 시도 | 해당시군 | 65세이상 고령자 비율 | 우선순위 |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12.3% | 10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21.2% | 6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8.9% | 11 |
| 경기도 | 연천군(내수면) | 15.5% | 8 |
| 충청남도 | 서천군 | 21.2% | 5 |
| 전라북도 | 고창군 | 23.5% | 3 |
| 전라남도 | 고흥군 | 26.3% | 1 |
| 경상북도 | 영덕군 | 23.3% | 4 |
| 경상남도 | 남해군 | 25.8% (1) | 2 |
| 강원도 | 양양군 | 16.5% | 7 |
| 제주도 | 서귀포시 | 12.3% | 9 |

※ 동 순위에서 도시권 및 수도권 인접지역은 차순위로 배정

<표 3.63> 정주환경개선사업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계 | 27,600 | - | 300 | 9,000 | 9,000 | 9,300 | |
| 부산광역시 | 0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울산광역시 | 0 | - | - | - | - | - | |
| 경기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충청남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전라북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전라남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경상남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경상북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강원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제주도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 2010년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3억원 포함

※ 2013년에 사후평가 비용 3억원 포함

■ 중·장기(2014~2023)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은 10년간 103개 어촌계 대상 사업 실시
 - 1개 사업비 규모 : 30억원, 총 소요예산 : 3,090억원
 - 사업예정지는 향후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하여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3.64> 정주환경개선사업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계 | 309,000 | 17,600 | 25,400 | 26,900 | 28,500 | 30,200 | 32,000 | 33,900 | 36,000 | 38,100 | 40,400 |
| 부산광역시 | 6,000 | 342 | 493 | 523 | 553 | 586 | 621 | 659 | 699 | 740 | 784 |
| 인천광역시 | 9,000 | 513 | 740 | 784 | 830 | 880 | 932 | 987 | 1,048 | 1,109 | 1,177 |
| 울산광역시 | 6,000 | 342 | 493 | 522 | 553 | 586 | 621 | 659 | 699 | 740 | 785 |
| 경기도 | 9,000 | 513 | 740 | 783 | 830 | 880 | 932 | 987 | 1,048 | 1,110 | 1,177 |
| 충청남도 | 21,000 | 1,196 | 1,726 | 1,828 | 1,937 | 2,052 | 2,175 | 2,304 | 2,447 | 2,589 | 2,746 |
| 전라북도 | 9,000 | 513 | 740 | 783 | 830 | 880 | 932 | 987 | 1,049 | 1,109 | 1,177 |
| 전라남도 | 132,000 | 7,518 | 10,850 | 11,491 | 12,175 | 12,901 | 13,670 | 14,482 | 15,379 | 16,276 | 17,258 |
| 경상남도 | 60,000 | 3,417 | 4,933 | 5,223 | 5,534 | 5,864 | 6,214 | 6,582 | 6,990 | 7,398 | 7,845 |
| 경상북도 | 30,000 | 1,709 | 2,466 | 2,612 | 2,767 | 2,932 | 3,107 | 3,291 | 3,495 | 3,699 | 3,922 |
| 강원도 | 12,000 | 683 | 986 | 1,045 | 1,107 | 1,173 | 1,243 | 1,316 | 1,398 | 1,480 | 1,569 |
| 제주도 | 15,000 | 854 | 1,233 | 1,306 | 1,384 | 1,466 | 1,553 | 1,646 | 1,748 | 1,850 | 1,960 |

4) 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1) 추진방향

- 어촌관광활성화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함으로써 어촌을 기초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성
 - 지역개발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운영효율성을 위해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 어촌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전문인력(어촌관광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육성
 -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

(2) 추진사업 세부사항

①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i) 사업 목적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계획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구축 및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
-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효적인 사업추진 가능

(ii)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250백만원 (매년 50백만원) : 국고보조 100%
-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추천한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
- 교육은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어촌개발정책, 해양수산일반, 관련법률, 서비스관리, 정보화 교육)등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회 3박 4일에 걸쳐 34시간 집중교육 실시
- 대상인원 : 300여명

(iii) 기대 효과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② 어촌관광전문인력 육성

(i) 사업 목적

- 어촌지역 고유의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광어촌마을 운영 자립능력 향상
- 외부전문가 컨설팅, 사무장지원 등을 통해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ii)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650백만원 (국고보조 100%)
- 주요세부사업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대상 : 600명) : 대상마을 지역주민 및 지역거주 은퇴자
- 체험마을 컨설팅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 체험마을 사무장지원(대상 : 112개 마을) : 1촌 1사무장 지원

(iii) 기대 효과

- 지역별 특화된 어촌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어촌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어촌인력 일자리 창출
- 전문적인 관광 마인드가 부족하여 어촌이 가지고 있는 미개발 관광자원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컨설팅)을 받아 상품화함에 따라 도시민들에게 체험 공간 제공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③ 자율관리어업 전문인력 육성

(i) 사업 목적

-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을 유발하여 자원 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발생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해 어촌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관리체계 구축 도모

(ii)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750백만원 (국고보조 100%)
- 주요세부사업
 -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지원(대상 : 30명) : 수산사무소별 매칭 컨설턴트 확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및 민간전문가 육성(대상 : 1,300개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수산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iii) 기대 효과

-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어업인의 인식개혁 확산에 따른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사회 발전 도모
- 법규준수 등 수동적 자원보호에서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관리와 불법어

업 감소로 어가소득 증대 도모

④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i) 사업 목적

- 어촌지역단위의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리더에게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켜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ii)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 (매년 80백만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주요세부내용
 - 교육대상자는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마을이장 대상(대상인원 : 160여명)
 - 어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육성 교육과정을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어촌지역개발리더 리더십육성과정은 총 4개 학습단위별 세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 동기화 : 어촌환경 분석, 리더의 역할 등· 실천리더 양성 : 성공사례 분석, 어촌발전 이해· 혁신리더 양성 : 교육자의 어촌 분석, 미래 비전 구상· 워크숍 : 토론 및 어촌개발 비전 발표 |
|--|

(iii) 기대 효과

- 지역주민 스스로 정책 대안을 기획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여 어촌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갈등을 해소

(3)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인력 육성
 -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

- 연 60명 교육(34시간)
- 매년 지원 규모 : 50백만원, 총소요예산 : 250백만원
- 어촌관광전문인력 육성
 - 총 소요예산 : 4,650백만원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 연 120명 교육(80시간), 소요예산 : 85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 매년 16개 마을 지원,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소요예산 : 2,400백만원
- 자율관리어업전문 인력육성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
 - 신규참여·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각 수산사무소마다 민간전문가 1명이 매년 5~10개 공동체를 집중 관리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광역워크숍, 전문가워크숍 등 소요경비 지원
 - 소요예산 : 1,750백만원
-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
 -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 연 160명 교육(2박3일 3회, 1박2일 1회, 해외연수)
 - 매년 지원 규모 : 80백만원 , 총소요예산 : 400백만원

<표 3.65> 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 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계 | 7,050 | 1,210 | 1,280 | 1,330 | 1,580 | 1,650 | |

1.2.5 어촌개발 추진계획 총괄

1) 어촌개발 추진 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3.6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명 | 단기 (2009~2013) | 중장기 (2014~20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개 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따른 테마설정 추진 - 테마설정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 권역별 사업비는 지역 특성화개발을 위해 차등지원(50, 40억원) ◦ 3단계 어촌개발사업 방안 수립(201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어촌개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권역에 대한 정비사업 (1, 2단계 230개 권역 중 140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17개소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1개소), 강원(1개소), 충남(4개소), 전북(2개소), 전남(2개소), 경북(3개소), 제주(4개소)를 지원 - 개소당 사업규모 : 5억원이상 ◦ 어촌관광형 15개소 사업 완료(2011년)후 신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규모 : 50~60억원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 (2010, 5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9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계획완료 단계에서 사후평가 시행(201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개 어촌계 대상 사업추진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 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표 3.67>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계속)

| 사업명 | 단기 (2009~2013) | 중장기 (2014~2023) |
|--------------------|--|-----------------|
| 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 - 연 60명 교육(34시간) - 매년 지원 규모 : 50백만원 ◦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대상 해설, 지역어촌관광자료 개발 등 지역의 어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 - 연 120명 교육(80시간)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촌 1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 매년 16개 마을 지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참여·활동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각 수산사무소마다 민간전문가 1명이 매년 5~10개 공동체를 집중 관리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함양 및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워크숍, 전문가워크숍 등 소요 경비 지원 ◦ 어촌지역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60명 교육(2박3일 3회, 1박2일 1회, 해외연수) - 매년 지원 규모 : 80백만원 | |

2)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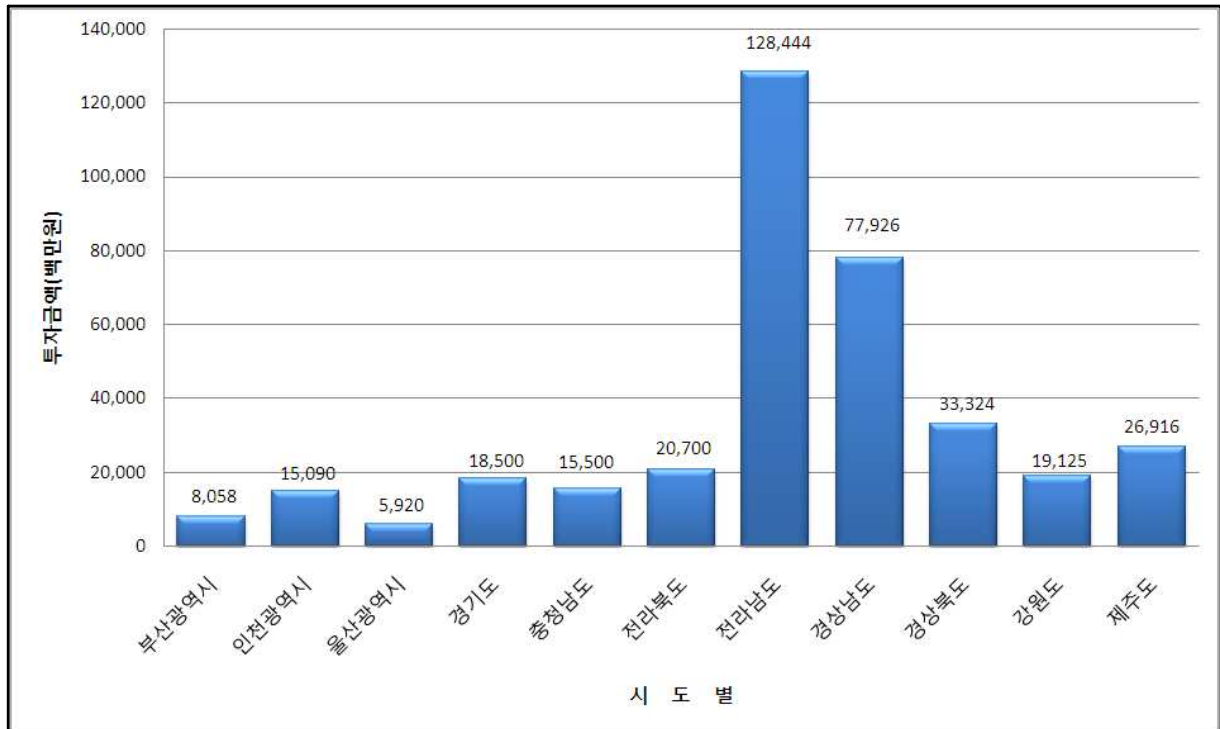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70개역에 총 2,7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현재 시행중인 어촌체험마을형에 2011년 까지 17개소에 총 93억원, 어촌관광형은 15개소에 2012년까지 총 5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신규사업에 추가로 6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은 시범적으로 전국 시도 9개소 총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인력육성사업으로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사업관련 수요조사 및 사후평가의 사업계획은 어촌개발사업 3억원(2012년), 어촌관광개발사업 5억원(2010년),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6억원(2010년, 2013년)에 시행할 계획임.

<표 3.6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전국 | 합계 | 4,472 | 456 | 680 | 847 | 873 | 1,616 |
| | 어촌개발사업 | 2,788 | 258 | 396 | 453 | 475 | 1,206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338 | 186 | 268 | 291 | 292 | 301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276 | - | 3 | 90 | 90 | 93 |
| | 어촌인력육성사업 | 70 | 12 | 13 | 13 | 16 | 16 |
| 부산광역시 | 81 | 0 | 28 | 30 | 23 | 0 | |
| 인천광역시 | 151 | 25 | 34 | 47 | 35 | 10 | |
| 울산광역시 | 60 | 19 | 8 | 10 | 23 | 0 | |
| 경기도 | 185 | 0 | 40 | 68 | 27 | 50 | |
| 충청남도 | 155 | 5 | 20 | 25 | 20 | 85 | |
| 전라북도 | 207 | 28 | 45 | 44 | 34 | 56 | |
| 전라남도 | 1,284 | 130 | 164 | 217 | 168 | 605 | |
| 경상남도 | 780 | 102 | 127 | 124 | 116 | 311 | |
| 경상북도 | 334 | 59 | 91 | 40 | 48 | 96 | |
| 강원도 | 191 | 47 | 30 | 39 | 35 | 40 | |
| 제주도 | 269 | 28 | 69 | 59 | 71 | 42 | |
| 어촌관광개발사업(신규사업) | | 693 | - | - | 132 | 260 | 301 |

※어촌관광개발사업(신규사업)은 2010년 수요조사 용역 후 시도 사업비 배분



<그림 3.17> 시도별 단기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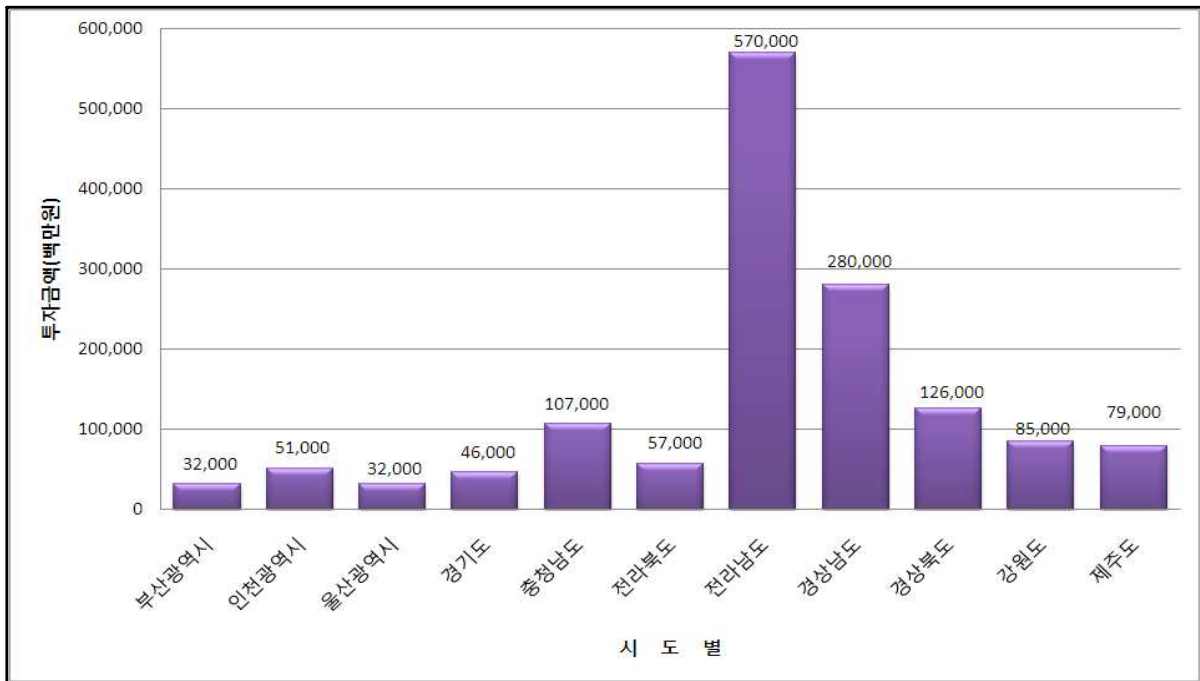
■ 중·장기(2014~2023)

- 어촌개발사업은 3단계 어촌개발 사업추진(1, 2단계 230개 권역 중 140개 권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140개권역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연안시군구 각 1개 마을 대상 총 76개 마을(개소당 60억원)대상으로 총 4,5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은 시범적으로 전국 시도 9개소 총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인력육성사업은 향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영 계획임

<표 3.6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 국 | 합 계 | 14,650 | 1,072 | 1,201 | 1,267 | 1,337 | 1,419 | 1,493 | 1,579 | 1,667 | 1,759 | 1,856 |
| | 어촌개발사업 | 7,000 | 550 | 580 | 609 | 640 | 680 | 710 | 750 | 787 | 826 | 868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560 | 346 | 367 | 389 | 412 | 437 | 463 | 490 | 520 | 552 | 584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90 | 176 | 254 | 269 | 285 | 302 | 320 | 339 | 360 | 381 | 404 |
| | 어촌인력육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319 | 24 | 26 | 28 | 29 | 31 | 33 | 34 | 36 | 38 | 40 | |
| 인천광역시 | 510 | 38 | 42 | 44 | 47 | 49 | 52 | 55 | 58 | 61 | 64 | |
| 울산광역시 | 319 | 24 | 26 | 28 | 29 | 31 | 33 | 34 | 36 | 38 | 40 | |
| 경기도 | 461 | 34 | 38 | 40 | 42 | 45 | 47 | 50 | 52 | 55 | 58 | |
| 충청남도 | 1,071 | 79 | 88 | 92 | 98 | 104 | 109 | 115 | 122 | 128 | 136 | |
| 전라북도 | 569 | 42 | 47 | 49 | 52 | 55 | 58 | 61 | 65 | 68 | 72 | |
| 전라남도 | 5,701 | 414 | 467 | 493 | 520 | 552 | 581 | 615 | 649 | 686 | 724 | |
| 경상남도 | 2,800 | 205 | 229 | 242 | 256 | 271 | 285 | 302 | 319 | 336 | 355 | |
| 경상북도 | 1,259 | 92 | 103 | 109 | 115 | 122 | 128 | 136 | 143 | 151 | 160 | |
| 강원도 | 849 | 64 | 70 | 74 | 78 | 82 | 86 | 91 | 96 | 101 | 107 | |
| 제주도 | 790 | 58 | 65 | 68 | 72 | 77 | 80 | 85 | 90 | 95 | 100 | |



<그림 3.18> 시도별 중장기 투자액

1.3 해외 어항사업 기본계획

1.3.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1) 현황

-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 및 해외 진출 원양어선의 어장확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해외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이퐁신항과 아프리카 앙골라에 어업항구개발 협력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해역별 조업 동향을 보면 태평양 226척, 대서양 129척, 인도양 32척이 조업 중에 있음.
- 해외개발 협력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에 대한 무상지원, 수산기반시설인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등에 대한 유상지원사업, 기술개발공유 및 인적교류활성화 등이 이에 속함.
- 지원대상시설은 외곽시설, 접안시설, 배후교통시설, 재해방지시설, 침식방지시설, 복합어항시설, 관광어항시설 등임.
- 사업지원방식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으로 구별되며 무상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협력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단계에 대한 지원이며, 유상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지원임.
 - 무상지원사업 : KOICA
 - 개발도상국의 전국단위-권역별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지원
 - 유상차관사업 : EDCF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을 위해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EDCF차관을 제공하여 시설확충에 기여
 - 방파제, 항로준설, 접안시설 등에 대한 EDCF 차관사업

<표 3.69>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

| 구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
| 개요 | ◦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재난구호사업 등 무상원조 추진 | ◦ 통신, SOC,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위생 사업 등에 대해 유상원조(차관) 형태로 추진 |

<표 3.70>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계속)

| 구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국(지원희망국) 정부 중점 추진사업 기술력이 우위에 있고,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EDCF 차관사업 등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효과가 큰 지역·국가·분야를 집중 지원 SOC시설은 구축성 원조지원이 가능한 비수익성 사업을 선별하여 적극지원 → 장래수익성사업에 국내기업 진출여건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절차 |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비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별부처 </td> </tr> </table> | 절차 | 비고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 개별부처 |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절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비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 </td> </tr> </table> | 절차 | 비고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 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 |
| 절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KOICA (외교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협력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KOICA 사업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력사업 추진</div>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절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발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 개별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선정 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개발도상국, 개별부처 → 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차관사업 확정</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 기금운용위원회 (현지 실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차관사업 추진</div> | 개발도상국 ↔ 수출입은행 |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도상국 어항개발지원

(1) 사업 목적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하는데 있음.

(2) 사업 내용

-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
 - 해외 어항개발 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대상지 조사, 해외 협력사업 추진체계 분석 등
- 해외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단 구성·운영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부서(국제기구과, 원양산업과 등) 사업단 구성
- 협력지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지원대상국과의 MOU 추진
-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

(3)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어항개발지원을 통한 상생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어항개발 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
- 어항시설은 경제성장기반의 인프라 시설로서 개발도상국의 협력의지가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사업 참여 추진

3)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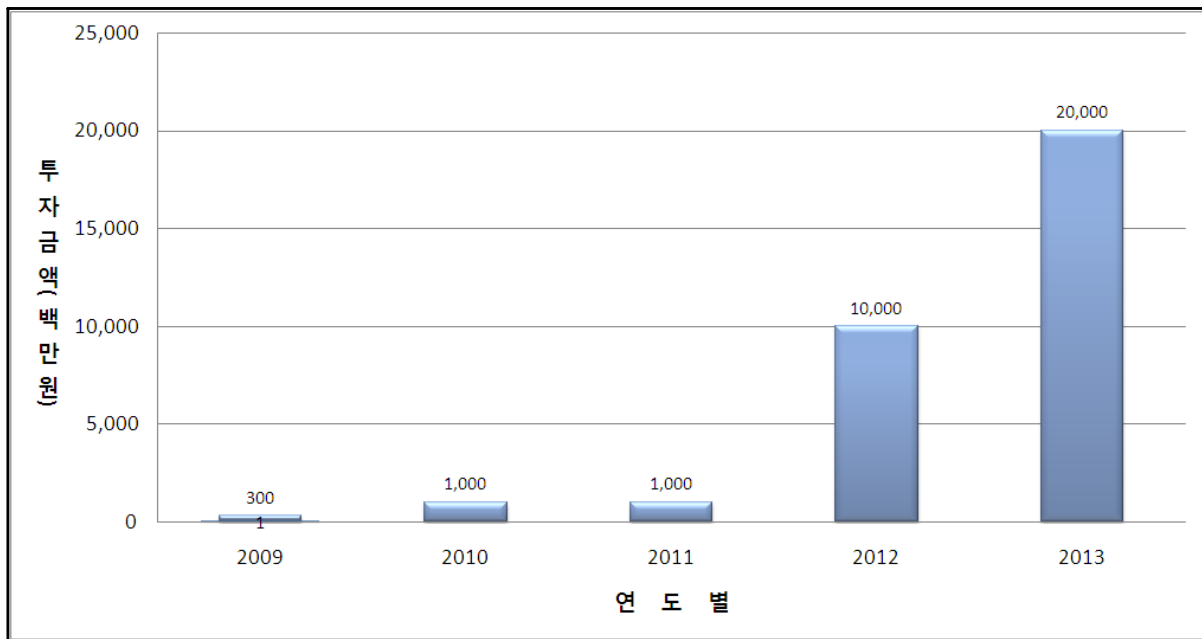
-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2009년)
- 해외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단 구성·운영(2009년)
- 협력지원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2010년)
- 지원대상국과의 MOU 추진(2011년)
-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2012년)
 - 2개소 어항개발 추진(항당 공사비 350억원(설계, 감리비 포함))

<표 3.70>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단기투자계획

(단위 : 개항,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완공수 | (2) | - | - | - | (2) | (2) | |
| 사업비 | 32,300 | 300 | 1,000 | 1,000 | 10,000 | 20,000 | |

※ ()는 계속 투자 항수임.



<그림 3.19>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단기 투자액

■ 중장기(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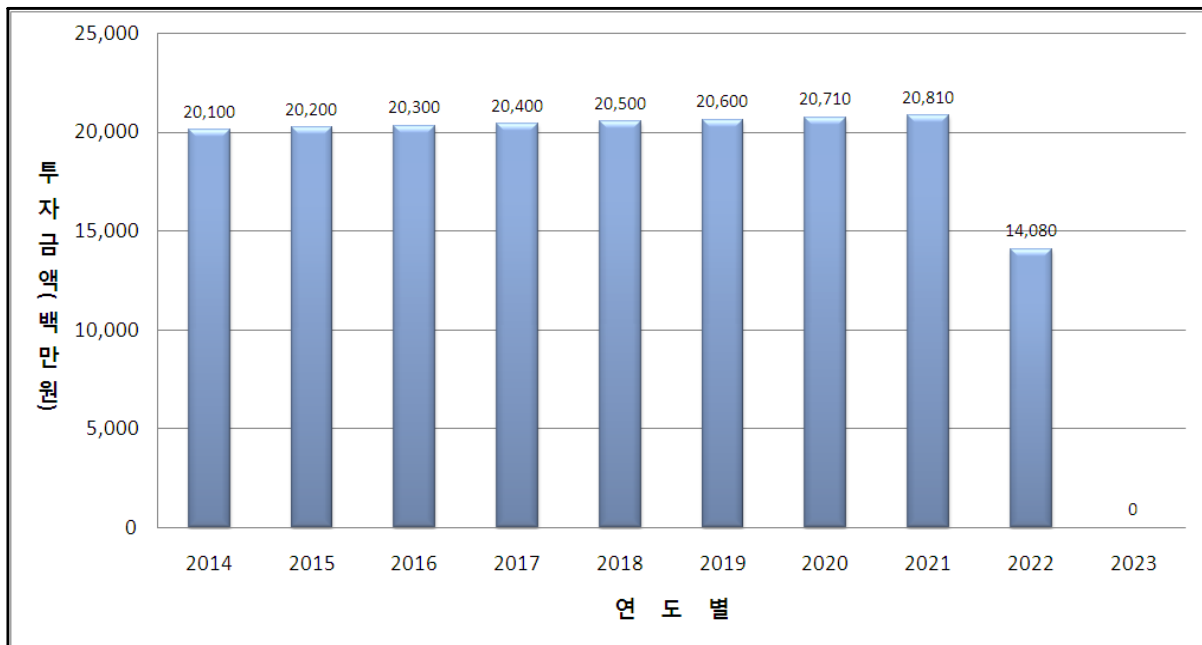
- 개도국 어항개발 사업 계속 추진
 - 2개소 어항개발 추진 완료(2015년 완료 예정)
 - 4개소 신규 지정 및 착수(2022년 완료 예정)

<표 3.7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완공수 | 6 | (2) | 2 | (4) | (4) | (4) | (4) | (4) | (4) | 4 | |
| 사업비 | 177,700 | 20,100 | 20,200 | 20,300 | 20,400 | 20,500 | 20,600 | 20,710 | 20,810 | 14,080 | - |

※ ()는 계속 투자 항수임.



<그림 3.20>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액

제 4 편 효과분석 및 결론

1장 경제적 효과 분석

2장 종합평가 및 건의

제 1 장 경제적 효과 분석

1.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1.1.1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
 - 산업연관모형이란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함
 - 1936년 미국의 경제학자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가 「미국경제체제에서의 수량적 산업연관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음
-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
 - 산업연관모형을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됨
 - 한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되는 특징이 있음
-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
 - 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산출방식에 따라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으로 구분됨
 -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경우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각종 기관에서는 간접적 추정 방식인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을 이용함.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의 경우 비조사방식으로 기술계수 및 교역계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하는 모형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수년간 직접 조사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를 분석대상으로 함

1.1.2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의 구성

1) 모형의 구조

-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를 분석하는 방법은 한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동일함
 - 즉, 행(가로)방향은 상품의 중간재로의 투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R지역의 제1산업은 R지역 제1산업과 제2산업, 그리고 S지역의 제1산업과 제2산업에 각각 중간재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R지역과 S지역의 최종수요로 판매되는 것을 나타냄
 - 열(세로)방향은 산업의 투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R지역의 제1산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R지역 제1산업과 제2산업 뿐 아니라 S지역의 제1산업과 제2산업도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음을 나타냄
 - 중요한 점은 동일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다르면 별개의 산업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임

<표 4.1> 2지역 2산업 모델의 IRIO 구조의 예시

| 구분 | | R지역 | | S지역 | | 최종수요 | | 총산출 |
|------|------|---------------|---------------|---------------|---------------|------------|------------|---------|
| | | 제1산업 | 제2산업 | 제1산업 | 제2산업 | R국 | S국 | |
| R지역 | 제1산업 | Z^{RR}_{11} | Z^{RR}_{12} | Z^{RS}_{11} | Z^{RS}_{12} | f^{RR}_1 | f^{RS}_1 | X^R_1 |
| | 제2산업 | Z^{RR}_{21} | Z^{RR}_{22} | Z^{RS}_{21} | Z^{RS}_{22} | f^{RR}_2 | f^{RS}_2 | X^R_2 |
| S지역 | 제1산업 | Z^{SR}_{11} | Z^{SR}_{12} | Z^{SS}_{11} | Z^{SS}_{12} | f^{SR}_1 | f^{SS}_1 | X^S_1 |
| | 제2산업 | Z^{SR}_{21} | Z^{SR}_{22} | Z^{SS}_{21} | Z^{SS}_{22} | f^{SR}_2 | f^{SS}_2 | X^S_2 |
| 부가가치 | | V^R_1 | V^R_2 | V^S_1 | V^S_2 | | | |
| 총투입 | | X^R_1 | X^R_2 | X^S_1 | X^S_2 | | | |

주1) 열방향의 산업별 수입은 생략함.

주2) Z^{RR}_{11} 의 경우, 위첨자의 왼쪽은 생산(공급)지역, 위첨자의 오른쪽은 수요지역, 아래첨자의 왼쪽은 공급부문, 아래첨자는 오른쪽은 수요부문을 나타냄.

2) 수식적 구성

- 1국의 산업연관모델과 동일하게 행방향은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성립

$$z_{11}^{RR} + z_{12}^{RR} + z_{11}^{RS} + z_{12}^{RS} + f_1^{RR} + f_1^{RS} = X_1^R \quad (1)$$

$$z_{21}^{RR} + z_{22}^{RR} + z_{21}^{RS} + z_{22}^{RS} + f_2^{RR} + f_2^{RS} = X_2^R$$

$$z_{11}^{SR} + z_{12}^{SR} + z_{11}^{SS} + z_{12}^{SS} + f_1^{SR} + f_1^{SS} = X_1^S$$

$$z_{21}^{SR} + z_{22}^{SR} + z_{21}^{SS} + z_{22}^{SS} + f_2^{SR} + f_2^{SS} = X_2^S$$

- 위의 식에서 각 지역의 투입계수를 구하여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2)식과 같음

$$\begin{bmatrix} a_{11}^{RR} & a_{12}^{RR} & a_{11}^{RS} & a_{12}^{RS} \\ a_{21}^{RR} & a_{22}^{RR} & a_{21}^{RS} & a_{22}^{RS} \\ a_{11}^{SR} & a_{12}^{SR} & a_{11}^{SS} & a_{12}^{SS} \\ a_{21}^{SR} & a_{22}^{SR} & a_{21}^{SS} & a_{22}^{SS} \end{bmatrix} \begin{bmatrix} X_1^R \\ X_2^R \\ X_1^S \\ X_2^S \end{bmatrix} + \begin{bmatrix} f_1^{RR} + f_1^{RS} \\ f_2^{RR} + f_2^{RS} \\ f_1^{SR} + f_1^{SS} \\ f_2^{SR} + f_2^{SS} \end{bmatrix} = \begin{bmatrix} X_1^R \\ X_2^R \\ X_1^S \\ X_2^S \end{bmatrix} \quad (2)$$

- 위 행렬식을 각국으로 나누어 분할행렬식으로 표시가능하며, 이를 나타낸 것이 (3)의 식임

$$\begin{bmatrix} A^{RR} & A^{RS} \\ A^{SR} & A^{SS} \end{bmatrix} \begin{bmatrix} X^R \\ X^S \end{bmatrix} + \begin{bmatrix} F^{RR} + F^{RS} \\ F^{SR} + F^{SS} \end{bmatrix} = \begin{bmatrix} X^R \\ X^S \end{bmatrix} \quad (3)$$

- 이를 총산출로 계산하면 (4)식과 같은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이 도출됨

$$\begin{bmatrix} X^R \\ X^S \end{bmatrix} = \begin{bmatrix} I - A^{RR} & -A^{RS} \\ -A^{SR} & I - A^{SS} \end{bmatrix}^{-1} \begin{bmatrix} F^{RR} + F^{RS} \\ F^{SR} + F^{SS} \end{bmatrix} \quad (4)$$

- (4)식에서 역행렬부분을 레온티에프역행렬이라 부르며, 이것을 B로 풀어보면 다 지역산업연관모형은 다음과 같이 1국의 산업연관표처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음

$$\begin{bmatrix} X^R \\ X^S \end{bmatrix} = \begin{bmatrix} B^{RR} & B^{RS} \\ B^{SR} & B^{SS} \end{bmatrix} \begin{bmatrix} F^R \\ F^S \end{bmatrix} \quad (5)$$

1.1.3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지역 및 산업분류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간의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작성되며, 포괄하는 지역의 수에 따라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수입 및 이입의 처리방법에 따라 경쟁형 산업연관표와 비경쟁형 산업연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산업연관표이며, 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한 비경쟁이(수)입형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로 작성됨

1) 지역의 구분

- 한국은행의 2003년 기준 지역간산업연관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작성함

<표 4.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 작성대상 지역 구분

| 지역권 | 행정구역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강원권 | 강원도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전라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2) 산업 분류

-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산업 분류는 전국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2003년 전국산업연관표와 공동으로 작성
- 6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36개의 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기초자료의 사정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산업연관 통합소분류 기준인 168 부문으로 작성

1.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1.2.1 어촌·어항기본산업을 위한 산업분류

- 어촌·어항기본계획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168개 부문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29개 부문 지역산업연관표로 재작성함
 - 수산과 건설, 관광, 복지 부분을 중심으로 재작성

<표 4.3> 어촌·어항기본사업의 지역간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 분류번호 | 분류 산업 | 분류번호 | 분류 산업 |
|------|--------|------|---------|
| 1 | 농림수산업 | 16 | 가구및기타제조 |
| 2 | 광산품 | 17 | 전력가스수도 |
| 3 | 음식료품 | 18 | 건축및보수 |
| 4 | 섬유가죽제품 | 19 | 토목건설 |
| 5 | 목재및종이 | 20 | 도소매 |
| 6 | 인쇄출판 | 21 | 음식점및숙박 |
| 7 | 석유및석탄 | 22 | 운수및보관 |
| 8 | 화학제품 | 23 | 통신및방송 |
| 9 | 비금속광물 | 24 | 금융및보험 |
| 10 | 제1차금속 | 25 | 부동산및서비스 |
| 11 | 금속제품 | 26 | 공공행정국방 |
| 12 | 일반기계 | 27 | 교육및연구 |
| 13 | 전기및전자 | 28 | 복지 |
| 14 | 정밀기기 | 29 | 기타 |
| 15 | 수송장비 | | |

1.2.2 분석 모형

-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임
-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됨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1)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계수
 -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단위를 나타내는 계수
 - 여기에서는 어촌·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 계수를 의미함
- 생산유발효과의 도출

$$X=(I-A^d)^{-1}A_h^dX_h$$

- $(I-A^d)$: 어촌·어항개발사업이 제거된 국산투입계수의 역행렬
- A_h^d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국산투입계수
- X_h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액

2) 부가가치유발효과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파급효과를 통하여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증가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계수
 -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도출

$$A^v(I-A^d)^{-1}A_h^dX_h+A_h^vX_h$$

- A^v : 어촌·어항개발사업이 제거된 부가가치유발계수
- A_h^d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3) 고용유발효과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파급효과를 통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이러한 생산활동에 따라 고용이 창출됨
- 고용유발효과의 도출
 -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량(L)을 산출액(X)으로 나눈 취업계수(l)의 대각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1.3 단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3.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자비는 1조 8,177억 62백만원³⁶⁾으로 전라권역에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1.8%, 경북권역 14.4%의 순임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7,647억 63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3,962억 91백만원, 경북권역이 2,608억 54백만원 등의 순임

<표 4.4> 권역별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110,433 | 143,335 | 142,086 | 764,763 | 260,854 | 396,291 | 1,817,762 |
| 비율(%) | 6.1 | 7.9 | 7.8 | 42.1 | 14.4 | 21.8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은 1조 8,177억 62백만원의 투자로 3조 5,952억 2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따른 권역별 생산유발액은 전라권역이 1조 1,753억 75백만원으로 생산유발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권역이 7,806억 28백만원, 수도권역이 5,607억 66백만원 등의 순임
- 권역별 생산유발액의 경우 사업비가 높은 지역이 생산유발액 규모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생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유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 다만 수도권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어촌·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소 낮은 편이나 간접생산유발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유발액이 사업비가 다소 높은 타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36) 어촌·어항개발 투자비 중 사후평가 등 용역비, 교육관련 투자비, 국제협력사업 및 향후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제외되었음

<표 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산업 |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 | | | | | 계 |
|---------|------------|---------|---------|-----------|---------|---------|-----------|
|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
| 농업임업 | 1,530 | 796 | 2,289 | 7,276 | 1,645 | 2,118 | 15,654 |
| 수산업 | 45 | 47 | 79 | 739 | 102 | 852 | 1,863 |
| 광산품 | 2,462 | 9,437 | 8,125 | 7,467 | 4,575 | 4,992 | 37,058 |
| 음식료품 | 6,193 | 1,252 | 4,306 | 7,570 | 2,355 | 4,795 | 26,470 |
| 섬유가죽제품 | 3,400 | 29 | 937 | 517 | 1,298 | 1,294 | 7,475 |
| 목재및종이 | 12,140 | 518 | 4,509 | 6,688 | 3,130 | 6,823 | 33,807 |
| 인쇄출판 | 8,991 | 91 | 454 | 817 | 1,033 | 854 | 12,240 |
| 석유및석탄 | 3,283 | 175 | 8,975 | 23,849 | 2,191 | 37,910 | 76,384 |
| 화학제품 | 21,273 | 653 | 14,762 | 19,716 | 6,477 | 20,393 | 83,275 |
| 비금속광물 | 20,118 | 24,903 | 44,914 | 86,569 | 34,793 | 47,348 | 258,645 |
| 제1차금속 | 33,347 | 511 | 15,140 | 67,886 | 80,655 | 47,453 | 244,992 |
| 금속제품 | 34,992 | 2,085 | 19,519 | 17,472 | 22,919 | 49,128 | 146,114 |
| 일반기계 | 21,324 | 409 | 4,752 | 2,617 | 4,483 | 28,556 | 62,142 |
| 전기및전자 | 29,732 | 1,197 | 10,050 | 5,413 | 14,757 | 11,054 | 72,204 |
| 정밀기기 | 1,985 | 121 | 1,043 | 138 | 543 | 670 | 4,500 |
| 수송장비 | 2,821 | 1,462 | 2,663 | 1,262 | 3,460 | 4,263 | 15,931 |
| 가구및기타제조 | 2,591 | 101 | 468 | 661 | 340 | 593 | 4,753 |
| 전력가스수도 | 8,028 | 1,452 | 6,609 | 9,136 | 7,105 | 13,010 | 45,340 |
| 건축및보수 | 18,383 | 13,481 | 11,219 | 146,533 | 27,173 | 76,534 | 293,323 |
| 토목건설 | 76,843 | 124,210 | 126,586 | 588,703 | 227,530 | 304,387 | 1,448,259 |
| 도소매 | 29,798 | 1,364 | 3,840 | 8,690 | 5,349 | 10,654 | 59,694 |
| 음식점및숙박 | 21,464 | 4,675 | 3,860 | 28,013 | 6,567 | 18,146 | 82,726 |
| 운수및보관 | 20,734 | 7,109 | 7,145 | 20,659 | 8,767 | 18,760 | 83,173 |
| 통신및방송 | 11,834 | 1,604 | 1,900 | 6,448 | 2,489 | 3,641 | 27,916 |
| 금융및보험 | 34,422 | 3,772 | 5,206 | 17,289 | 9,363 | 11,290 | 81,342 |
| 부동산및서비스 | 94,643 | 13,601 | 17,002 | 59,825 | 23,901 | 35,166 | 244,138 |
| 공공행정국방 | 82 | 24 | 46 | 170 | 70 | 112 | 504 |
| 교육및연구 | 15,722 | 381 | 2,924 | 3,618 | 2,587 | 2,502 | 27,733 |
| 복지 | 8,857 | 3,523 | 3,876 | 11,858 | 4,134 | 5,324 | 37,573 |
| 기타 | 13,728 | 3,581 | 5,469 | 17,778 | 7,438 | 12,006 | 60,001 |
| 산업별 지역계 | 560,766 | 222,564 | 338,666 | 1,175,375 | 517,230 | 780,628 | 3,595,229 |

<표 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450,333 | 79,229 | 196,580 | 410,612 | 256,376 | 384,337 | 1,777,467 |
| 직접생산유발 | 110,433 | 143,335 | 142,086 | 764,763 | 260,854 | 396,291 | 1,817,762 |
| 계 | 560,766 | 222,564 | 338,666 | 1,175,375 | 517,230 | 780,628 | 3,595,229 |

<표 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단위 : %)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25.3 | 4.5 | 11.1 | 23.1 | 14.4 | 21.6 | 100.0 |
| 직접생산유발 | 6.1 | 7.9 | 7.8 | 42.1 | 14.4 | 21.8 | 100.0 |
| 계 | 15.6 | 6.2 | 9.4 | 32.7 | 14.4 | 21.7 | 100.0 |

<표 4.8>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477 | 0.0436 | 0.1081 | 0.2259 | 0.1410 | 0.2114 | 0.9778 |
| 직접생산유발 | 0.0608 | 0.0789 | 0.0782 | 0.4207 | 0.1435 | 0.2180 | 1.0000 |
| 계 | 0.3085 | 0.1224 | 0.1863 | 0.6466 | 0.2845 | 0.4294 | 1.9778 |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역에 32.7%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은 직접유발효과는 높으나 간접유발효과는 2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수도권역의 경우 투자비는 1,104억 33백만원으로 전국대비 6.1%에 불과하지만 간접생산유발액은 4,503억 33백만원으로 전국의 25.3%에 해당해 가장 높은 수준임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778에 달해 어촌·어항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778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32,547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가 많은 전라권역이 34.5%로 11,240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권역이 21.0%로 6,832명, 수도권역로 16.2%로 5,2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560,766 | 15.6 | 5,279 | 16.2 |
| 강원권 | 222,564 | 6.2 | 2,111 | 6.5 |
| 충청권 | 338,666 | 9.4 | 2,776 | 8.5 |
| 전라권 | 1,175,375 | 32.7 | 11,240 | 34.5 |
| 경북권 | 517,230 | 14.4 | 4,309 | 13.2 |
| 경남권 | 780,628 | 21.7 | 6,832 | 21.0 |
| 전국 계 | 3,595,229 | 100.0 | 32,547 | 100.0 |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1조 5,515억 82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5.4%를 나타냄
 - 이 가운데 51.0%인 7,910억 14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투입 예산에 따라 순수하게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창출 효과로 파악 가능함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과 부가가치의 합은 2조 5,064억 54백만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1.3789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53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1,777,467 | 1,817,762 | 3,595,229 | 1.9778 |
| 부가가치유발액 | 728,986 | 822,595 | 1,551,582 | 0.8536 |
| 계 | 2,506,454 | 2,640,357 | 5,146,811 | 2.8314 |
| 투입예산대비 | 1.3789 | 1.4525 | 2.8314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1812에 해당함
- 즉, 어촌·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1812%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1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DP(B) | 활성화지수(A/B) |
|-----------|-----------|-------------|------------|
| 1,817,762 | 1,551,582 | 856,191,884 | 0.1812 |

1.3.2 단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항개발사업의 투자비는 1조 4,482억 59백만원으로 전라권역에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1.0%, 경북권역 15.7%의 순임
- 권역별 어항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5,887억 3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3,043억 87백만원, 경북권역이 2,275억 30백만원 등의 순임

<표 4.12> 권역별 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76,843 | 124,210 | 126,586 | 588,703 | 227,530 | 304,387 | 1,448,259 |
| 비율(%) | 5.3 | 8.6 | 8.7 | 40.6 | 15.7 | 21.0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항개발사업은 1조 4,482억 59백만원의 투자로 2조 8,862억 3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권역별 생산유발액은 전라권역이 9,162억 76백만원으로 생산유발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권역이 6,128억 84백만원, 수도권역이 4,439억 38백만원 등의 순임
- 권역별 생산유발액의 경우 사업비가 높은 지역이 생산유발액 규모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생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유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 다만 수도권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소 간접생산유발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3> 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산업 |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 | | | | | 계 |
|---------|------------|---------|---------|---------|---------|---------|-----------|
|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
| 농업임업 | 709 | 406 | 969 | 3,122 | 591 | 991 | 6,787 |
| 수산업 | 13 | 12 | 24 | 157 | 27 | 210 | 442 |
| 광산품 | 2,233 | 8,607 | 7,514 | 6,737 | 4,246 | 4,542 | 33,879 |
| 음식료품 | 1,865 | 357 | 1,272 | 1,762 | 733 | 1,241 | 7,230 |
| 섬유가죽제품 | 2,644 | 23 | 725 | 390 | 980 | 975 | 5,736 |
| 목재및종이 | 8,700 | 433 | 3,295 | 4,747 | 2,219 | 5,003 | 24,398 |
| 인쇄출판 | 7,234 | 76 | 374 | 656 | 866 | 694 | 9,900 |
| 석유및석탄 | 2,804 | 159 | 7,564 | 19,830 | 1,849 | 31,834 | 64,040 |
| 화학제품 | 12,856 | 455 | 9,198 | 12,872 | 4,300 | 13,468 | 53,149 |
| 비금속광물 | 17,877 | 23,259 | 41,654 | 76,275 | 31,988 | 42,135 | 233,187 |
| 제1차금속 | 27,812 | 433 | 12,264 | 58,100 | 68,033 | 38,055 | 204,697 |
| 금속제품 | 27,988 | 1,857 | 17,285 | 13,224 | 20,190 | 42,091 | 122,636 |
| 일반기계 | 15,705 | 317 | 3,545 | 1,763 | 3,538 | 22,498 | 47,366 |
| 전기및전자 | 24,399 | 1,056 | 8,315 | 3,885 | 12,262 | 8,424 | 58,341 |
| 정밀기기 | 1,590 | 102 | 848 | 111 | 459 | 550 | 3,660 |
| 수송장비 | 2,415 | 1,290 | 2,277 | 1,066 | 2,958 | 3,666 | 13,672 |
| 가구및기타제조 | 995 | 55 | 245 | 270 | 169 | 226 | 1,960 |
| 전력가스수도 | 6,040 | 1,250 | 5,275 | 7,000 | 5,883 | 10,052 | 35,500 |
| 건축및보수 | 5,139 | 771 | 613 | 2,936 | 1,258 | 1,937 | 12,654 |
| 토목건설 | 76,843 | 124,210 | 126,586 | 588,703 | 227,530 | 304,387 | 1,448,259 |
| 도소매 | 22,153 | 1,078 | 2,911 | 6,085 | 4,188 | 7,910 | 44,324 |
| 음식점및숙박 | 4,765 | 995 | 1,556 | 3,433 | 1,691 | 2,925 | 15,365 |
| 운수및보관 | 16,704 | 6,445 | 6,252 | 16,661 | 7,452 | 15,275 | 68,789 |
| 통신및방송 | 9,253 | 1,363 | 1,605 | 4,988 | 2,105 | 2,847 | 22,162 |
| 금융및보험 | 27,598 | 3,381 | 4,543 | 13,890 | 8,197 | 9,100 | 66,708 |
| 부동산및서비스 | 77,034 | 12,091 | 14,597 | 48,028 | 20,614 | 28,195 | 200,560 |
| 공공행정국방 | 65 | 21 | 39 | 134 | 60 | 90 | 409 |
| 교육및연구 | 13,238 | 337 | 2,493 | 3,056 | 2,228 | 2,068 | 23,421 |
| 복지 | 2,141 | 398 | 738 | 2,225 | 960 | 1,795 | 8,257 |
| 기타 | 10,831 | 3,042 | 4,642 | 14,169 | 6,365 | 9,698 | 48,747 |
| 산업별 지역계 | 429,642 | 194,278 | 289,218 | 916,276 | 443,938 | 612,884 | 2,886,235 |

<표 4.14>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352,799 | 70,068 | 162,632 | 327,573 | 216,408 | 308,497 | 1,437,976 |
| 직접생산유발 | 76,843 | 124,210 | 126,586 | 588,703 | 227,530 | 304,387 | 1,448,259 |
| 계 | 429,642 | 194,278 | 289,218 | 916,276 | 443,938 | 612,884 | 2,886,235 |

<표 4.15>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단위 : %)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24.5 | 4.9 | 11.3 | 22.8 | 15.0 | 21.5 | 100.0 |
| 직접생산유발 | 5.3 | 8.6 | 8.7 | 40.6 | 15.7 | 21.0 | 100.0 |
| 계 | 14.9 | 6.7 | 10.0 | 31.7 | 15.4 | 21.2 | 100.0 |

<표 4.16>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436 | 0.0484 | 0.1123 | 0.2262 | 0.1494 | 0.2130 | 0.9929 |
| 직접생산유발 | 0.0531 | 0.0858 | 0.0874 | 0.4065 | 0.1571 | 0.2102 | 1.0000 |
| 계 | 0.2967 | 0.1341 | 0.1997 | 0.6327 | 0.3065 | 0.4232 | 1.9929 |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이 31.7%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은 직접유발효과는 40.6% 간접유발효과는 22.8%로 간접유발효과가 비교적 낮음
- 수도권역의 경우 투자비는 768억 43백만원으로 전국대비 5.3%에 불과하지만 간접생산유발액은 3,527억 99백만원으로 전국의 24.5%에 해당해 가장 높은 수준임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929에 달해 어항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929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항개발사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23,562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이 32.4%로 7,642명, 경남권역이 20.3%으로 4,791명, 수도권역이 15.9%인 3,741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표 4.17>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429,642 | 14.9 | 3,741 | 15.9 |
| 강원권 | 194,278 | 6.7 | 1,697 | 7.2 |
| 충청권 | 289,218 | 10.0 | 2,248 | 9.5 |
| 전라권 | 916,276 | 31.7 | 7,642 | 32.4 |
| 경북권 | 443,938 | 15.4 | 3,443 | 14.6 |
| 경남권 | 612,884 | 21.2 | 4,791 | 20.3 |
| 전국 계 | 2,886,235 | 100.0 | 23,562 | 100.0 |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1조 2,438억 38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5.9%를 나타냄
 - 이 가운데 51.3%인 6,375억 47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투입 예산에 따라 순수하게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창출 효과로 파악 가능함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과 부가가치의 합은 2조 283억 52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4005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58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1,437,976 | 1,448,259 | 2,886,235 | 1.9929 |
| 부가가치유발액 | 590,376 | 653,461 | 1,243,838 | 0.8589 |
| 계 | 2,028,352 | 2,101,720 | 4,130,073 | 2.8517 |
| 투입예산대비 | 1.4005 | 1.4512 | 2.8517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1453에 해당함
- 즉, 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1453%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19>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DP(B) | 활성화지수(A/B) |
|-----------|-----------|-------------|------------|
| 1,448,259 | 1,243,838 | 856,191,884 | 0.1453 |

1.3.3 단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자비는 3,695억 3백만원으로 전라권역에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4.9%, 수도권역 9.1%의 순임
- 권역별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1,760억 60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919억 4백만원, 수도권역이 335억 90백만원 등의 순임

<표 4.20> 권역별 어촌관련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33,590 | 19,125 | 15,500 | 176,060 | 33,324 | 91,904 | 369,503 |
| 비율(%) | 9.1 | 5.2 | 4.2 | 47.6 | 9.0 | 24.9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은 3,695억 3백만원의 투자로 7,089억 94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관련개발사업에 따른 권역별 생산유발액은 전라권역이 2,590억 99백만원으로 생산유발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권역이 1,677억 44백만원, 수도권역이 1,311억 25백만원 등의 순임
- 권역별 생산유발액의 경우 사업비가 높은 지역이 생산유발액 규모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생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유발액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표 4.21> 어촌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산업 |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 | | | | | 계 |
|---------|------------|--------|--------|---------|--------|---------|---------|
|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
| 농업임업 | 820 | 390 | 1,320 | 4,154 | 1,054 | 1,127 | 8,866 |
| 수산업 | 32 | 35 | 55 | 581 | 75 | 642 | 1,420 |
| 광산품 | 229 | 830 | 611 | 730 | 330 | 450 | 3,179 |
| 음식료품 | 4,328 | 894 | 3,034 | 5,808 | 1,622 | 3,553 | 19,240 |
| 섬유가죽제품 | 756 | 6 | 212 | 127 | 318 | 319 | 1,739 |
| 목재및종이 | 3,439 | 84 | 1,214 | 1,941 | 912 | 1,820 | 9,410 |
| 인쇄출판 | 1,757 | 15 | 80 | 161 | 167 | 160 | 2,339 |
| 석유및석탄 | 480 | 16 | 1,411 | 4,020 | 341 | 6,076 | 12,344 |
| 화학제품 | 8,417 | 198 | 5,564 | 6,844 | 2,177 | 6,925 | 30,126 |
| 비금속광물 | 2,242 | 1,644 | 3,260 | 10,294 | 2,805 | 5,213 | 25,459 |
| 제1차금속 | 5,535 | 79 | 2,875 | 9,785 | 12,623 | 9,398 | 40,296 |
| 금속제품 | 7,004 | 227 | 2,234 | 4,248 | 2,728 | 7,037 | 23,478 |
| 일반기계 | 5,619 | 92 | 1,207 | 853 | 946 | 6,058 | 14,775 |
| 전기및전자 | 5,333 | 141 | 1,736 | 1,528 | 2,495 | 2,630 | 13,863 |
| 정밀기기 | 395 | 19 | 195 | 27 | 84 | 120 | 840 |
| 수송장비 | 406 | 172 | 386 | 196 | 502 | 597 | 2,259 |
| 가구및기타제조 | 1,596 | 45 | 223 | 391 | 171 | 367 | 2,793 |
| 전력가스수도 | 1,988 | 203 | 1,333 | 2,136 | 1,222 | 2,958 | 9,840 |
| 건축및보수 | 13,244 | 12,710 | 10,606 | 143,597 | 25,915 | 74,597 | 280,670 |
| 토목건설 | 0 | 0 | 0 | 0 | 0 | 0 | 0 |
| 도소매 | 7,645 | 286 | 928 | 2,605 | 1,161 | 2,744 | 15,370 |
| 음식점및숙박 | 16,699 | 3,680 | 2,304 | 24,580 | 4,877 | 15,221 | 67,360 |
| 운수및보관 | 4,030 | 664 | 893 | 3,997 | 1,315 | 3,485 | 14,385 |
| 통신및방송 | 2,581 | 240 | 295 | 1,460 | 384 | 794 | 5,754 |
| 금융및보험 | 6,825 | 391 | 663 | 3,399 | 1,166 | 2,190 | 14,634 |
| 부동산및서비스 | 17,609 | 1,510 | 2,405 | 11,796 | 3,287 | 6,971 | 43,578 |
| 공공행정국방 | 17 | 4 | 7 | 35 | 10 | 22 | 95 |
| 교육및연구 | 2,483 | 44 | 430 | 562 | 359 | 434 | 4,313 |
| 복지 | 6,716 | 3,126 | 3,138 | 9,633 | 3,174 | 3,529 | 29,316 |
| 기타 | 2,898 | 539 | 827 | 3,609 | 1,074 | 2,308 | 11,254 |
| 산업별 지역계 | 131,125 | 28,286 | 49,448 | 259,099 | 73,292 | 167,744 | 708,994 |

<표 4.2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97,535 | 9,161 | 33,948 | 83,039 | 39,968 | 75,840 | 339,491 |
| 직접생산유발 | 33,590 | 19,125 | 15,500 | 176,060 | 33,324 | 91,904 | 369,503 |
| 계 | 131,125 | 28,286 | 49,448 | 259,099 | 73,292 | 167,744 | 708,994 |

<표 4.23>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단위 : %)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28.7 | 2.7 | 10.0 | 24.5 | 11.8 | 22.3 | 100.0 |
| 직접생산유발 | 9.1 | 5.2 | 4.2 | 47.6 | 9.0 | 24.9 | 100.0 |
| 계 | 18.5 | 4.0 | 7.0 | 36.5 | 10.3 | 23.7 | 100.0 |

<표 4.24>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640 | 0.0248 | 0.0919 | 0.2247 | 0.1082 | 0.2052 | 0.9188 |
| 직접생산유발 | 0.0909 | 0.0518 | 0.0419 | 0.4765 | 0.0902 | 0.2487 | 1.0000 |
| 계 | 0.3549 | 0.0766 | 0.1338 | 0.7012 | 0.1984 | 0.4540 | 1.9188 |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이 36.5%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역의 경우 투자비는 335억 90백만원, 간접생산유발액은 975억 35백만원으로 전국의 28.7%에 해당해 가장 높은 수준임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188에 달해 어촌관련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188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1,635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가 많은 전라권역은 30.8%인 503명, 다음으로 수도권이 28.2%인 461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표 4.25>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131,125 | 18.5 | 1,537 | 17.1 |
| 강원권 | 28,286 | 4.0 | 414 | 4.6 |
| 충청권 | 49,448 | 7.0 | 528 | 5.9 |
| 전라권 | 259,099 | 36.5 | 3,598 | 40.0 |
| 경북권 | 73,292 | 10.3 | 866 | 9.6 |
| 경남권 | 167,744 | 23.7 | 2,041 | 22.7 |
| 전국 계 | 708,994 | 100.0 | 8,984 | 100.0 |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077억 44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3.3%를 나타냄
 - 이 가운데 49.9%인 1,534억 67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투입 예산에 따라 순수하게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창출 효과로 파악 가능함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과 부가가치의 합은 4,781억 1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2939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32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339,491 | 369,503 | 708,994 | 1.9188 |
| 부가가치유발액 | 138,610 | 169,134 | 307,744 | 0.8329 |
| 계 | 478,101 | 538,637 | 1,016,738 | 2.7516 |
| 투입예산대비 | 1.2939 | 1.4577 | 2.7516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0359에 해당함
- 즉, 어촌관련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0359%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27>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DP(B) | 활성화지수(A/B) |
|---------|---------|-------------|------------|
| 369,503 | 307,744 | 856,191,884 | 0.0359 |

1.4 중장기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4.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014년부터 2023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자비는 6조 6,273억 10백만원³⁷⁾으로 전라권역에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3.3%, 경북권역 9.4% 등의 순임
- 권역별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2조 9,193억 59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1조 5,430억 30백만원 등의 순임

<표 4.2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460,719 | 582,850 | 499,605 | 2,919,359 | 621,747 | 1,543,030 | 6,627,310 |
| 비율(%) | 7.0 | 8.8 | 7.5 | 44.1 | 9.4 | 23.3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6조 6,273억 10백만원의 투자로 13조 542억 58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에 34.3%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 생산유발액은 4조 4802억 84백만원으로 나타남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698에 달해 어촌·어항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698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37) 어촌·어항개발 투자비 중 사후평가 등 용역비, 교육관련 투자비, 국제협력사업 및 향후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제외되었음

<표 4.2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513 | 0.0463 | 0.1079 | 0.2355 | 0.1191 | 0.2095 | 0.9698 |
| 직접생산유발 | 0.0695 | 0.0879 | 0.0754 | 0.4405 | 0.0938 | 0.2328 | 1.0000 |
| 계 | 0.3209 | 0.1343 | 0.1833 | 0.6760 | 0.2129 | 0.4424 | 1.9698 |

<표 4.3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2,126,468 | 16.3 | 19,422 | 15.5 |
| 강원권 | 889,873 | 6.8 | 8,567 | 6.9 |
| 충청권 | 1,214,742 | 9.3 | 10,824 | 8.7 |
| 전라권 | 4,480,284 | 34.3 | 46,891 | 37.5 |
| 경북권 | 1,411,110 | 10.8 | 12,421 | 9.9 |
| 경남권 | 2,931,781 | 22.5 | 26,890 | 21.5 |
| 전국 계 | 13,054,258 | 100.0 | 125,016 | 100.0 |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25,016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이 37.5%인 46,891명, 경남권역이 21.5%인 26,890명, 수도권역이 15.5%인 19,422명, 등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5조 6,603억 73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5.4%를 나타냄
 - 이 가운데 50.8%인 2조 8,740억 77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합은 9조 776억 2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3697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54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6,426,948 | 6,627,310 | 13,054,258 | 1.9698 |
| 부가가치유발액 | 2,650,654 | 3,009,720 | 5,660,373 | 0.8541 |
| 계 | 9,077,602 | 9,637,030 | 18,714,632 | 2.8239 |
| 투입예산대비 | 1.3697 | 1.4541 | 2.8239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6611에 해당함
- 즉, 어촌·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6611%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3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RDP(B) | 활성화지수(A/B) |
|-----------|-----------|-------------|------------|
| 6,627,310 | 5,660,373 | 856,191,884 | 0.6611 |

1.4.2 중장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014년부터 2023년까지 어항개발사업의 투자비는 5조 1,623억 10백만원으로 전라권역에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3.2%, 강원권역 9.6% 등의 순임
- 권역별 어항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2조 2,133억 59백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1조 1,990억 30백만원 등의 순임

<표 4.33>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363,719 | 497,850 | 392,605 | 2,213,359 | 495,747 | 1,199,030 | 5,162,310 |
| 비율(%) | 7.0 | 9.6 | 7.6 | 42.9 | 9.6 | 23.2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5조 1,623억 10백만원의 투자로 10조 2,874억 54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에 33.3%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 생산유발액은 3조 4,264억 65백만원으로 나타남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928에 달해 어항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928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4>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519 | 0.0525 | 0.1093 | 0.2350 | 0.1270 | 0.2171 | 0.9928 |
| 직접생산유발 | 0.0705 | 0.0964 | 0.0761 | 0.4288 | 0.0960 | 0.2323 | 1.0000 |
| 계 | 0.3224 | 0.1489 | 0.1854 | 0.6637 | 0.2230 | 0.4494 | 1.9928 |

<표 4.35>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1,664,074 | 16.2 | 14,395 | 17.2 |
| 강원권 | 768,748 | 7.5 | 6,714 | 8.0 |
| 충청권 | 957,083 | 9.3 | 7,362 | 8.8 |
| 전라권 | 3,426,465 | 33.3 | 28,596 | 34.1 |
| 경북권 | 1,151,385 | 11.2 | 8,560 | 10.2 |
| 경남권 | 2,319,704 | 22.5 | 18,271 | 21.8 |
| 전국 계 | 10,287,458 | 100.0 | 83,899 | 100.0 |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83,899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이 34.1%로 28,596명, 경남권역이 21.8%로 18,271명, 수도권역이 17.2%로 14,395명 등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4조 4,316억 18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5.8%를 나타냄
- 이 가운데 51.3%인 2조 2,733억 41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합은 7조 2,258억 41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3997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5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6>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5,125,148 | 5,162,310 | 10,287,458 | 1.9928 |
| 부가가치유발액 | 2,100,693 | 2,330,926 | 4,431,618 | 0.8585 |
| 계 | 7,225,841 | 7,493,236 | 14,719,076 | 2.8513 |
| 투입예산대비 | 1.3997 | 1.4515 | 2.8513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5176에 해당함
- 즉, 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5176%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37>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RDP(B) | 활성화지수(A/B) |
|-----------|-----------|-------------|------------|
| 5,162,310 | 4,431,618 | 856,191,884 | 0.5176 |

1.4.3 중장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자비는 1조 4,650억원으로 전라권역에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3.5%, 경북권역 6.6% 등의 순임
- 권역별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전라권역(전남·전북·제주지역)이 7,06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이 3,440억원 등의 순임

<표 4.3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97,000 | 85,000 | 107,000 | 706,000 | 126,000 | 344,000 | 1,465,000 |
| 비율(%) | 6.6 | 5.8 | 7.3 | 48.2 | 8.6 | 23.5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에 1조 4,650억원의 투자로 2조 7,66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라권에 38.1%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 생산유발액은 1조 538억 19백만원으로 나타남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8886에 달해 어촌관련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8,886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9>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494 | 0.0247 | 0.1028 | 0.2374 | 0.0913 | 0.1830 | 0.8886 |
| 직접생산유발 | 0.0662 | 0.0580 | 0.0730 | 0.4819 | 0.0860 | 0.2348 | 1.0000 |
| 계 | 0.3156 | 0.0827 | 0.1759 | 0.7193 | 0.1773 | 0.4178 | 1.8886 |

<표 4.40>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462,395 | 16.7 | 5,028 | 12.2 |
| 강원권 | 121,125 | 4.4 | 1,854 | 4.5 |
| 충청권 | 257,659 | 9.3 | 3,462 | 8.4 |
| 전라권 | 1,053,819 | 38.1 | 18,295 | 44.5 |
| 경북권 | 259,725 | 9.4 | 3,861 | 9.4 |
| 경남권 | 612,077 | 22.1 | 8,619 | 21.0 |
| 전국 계 | 2,766,800 | 100.0 | 41,117 | 100.0 |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0,208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이 31.7%인 3,239명, 수도권역이 27.6%인 2,820명, 경남권역이 18.8%인 1,918명 등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1조 2,287억 55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3.9%를 나타냄
- 이 가운데 48.9%인 6,007억 36백만원이 전국 노동자의 보수로 지불됨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합은 1조 8,517억 61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2640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38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1> 어촌관련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1,301,800 | 1,465,000 | 2,766,800 | 1.8886 |
| 부가가치유발액 | 549,961 | 678,794 | 1,228,755 | 0.8387 |
| 계 | 1,851,761 | 2,143,794 | 3,995,555 | 2.7273 |
| 투입예산대비 | 1.2640 | 1.4633 | 2.7273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으로 본 사업의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1435에 해당함
- 즉, 어촌관련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GDP의 0.1435%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4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RDP(B) | 활성화지수(A/B) |
|-----------|-----------|-------------|------------|
| 1,465,000 | 1,228,755 | 856,191,884 | 0.1435 |

1.5 2008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1.5.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투자 내역

- 과거부터 2008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자비는 5조 1,598억원을 투자함으로 전라권역에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권역 22.8%, 경북권역 13.6% 등의 순임

<표 4.43> 권역별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투자금액 | 338,250 | 588,400 | 382,600 | 1,975,850 | 700,300 | 1,174,500 | 5,159,800 |
| 비율(%) | 6.6 | 11.4 | 7.4 | 38.3 | 13.6 | 22.8 | 100.0 |

2) 생산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에 5조 1,598억원의 투자로 10조 2,465억 83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간접생산유발계수는 0.9858에 달해 어촌·어항개발사업에 10,000원의 투자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9,858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 구 분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북권 | 경남권 | 계 |
|--------|--------|--------|--------|--------|--------|--------|--------|
| 간접생산유발 | 0.2545 | 0.0561 | 0.1062 | 0.2113 | 0.1410 | 0.2167 | 0.9858 |
| 직접생산유발 | 0.0656 | 0.1140 | 0.0741 | 0.3829 | 0.1357 | 0.2276 | 1.0000 |
| 계 | 0.3200 | 0.1702 | 0.1803 | 0.5943 | 0.2767 | 0.4443 | 1.9858 |

<표 4.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 지역별 | 생산유발효과 | | 고용유발효과 | |
|------|------------|-------|---------|-------|
| | 유발액(백만원) | 비율(%) | 고용자수(명) | 비율(%) |
| 수도권 | 1,651,384 | 16.1 | 14,967 | 16.2 |
| 강원권 | 877,978 | 8.6 | 6,005 | 6.5 |
| 충청권 | 930,511 | 9.1 | 7,853 | 8.5 |
| 전라권 | 3,066,314 | 29.9 | 31,874 | 34.5 |
| 경북권 | 1,427,672 | 13.9 | 12,195 | 13.2 |
| 경남권 | 2,292,723 | 22.4 | 19,494 | 21.1 |
| 전국 계 | 10,246,583 | 100.0 | 92,388 | 100 |

3) 지역파급효과

◦ 고용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92,388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권역이 34.5%인 31,874명, 경남권역이 21.1%인 19,494명, 수도권역이 16.2%인 14,967 명, 등의 신규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남

4) 경제적 총 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4조 4,079억 70백만원으로 투자금액대비 85.4%를 나타냄

◦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합은 7조 1,621억 3백만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3880배의 신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이 타 산업에 신규 유발하는 경제적 가치는 투입비용 대비 0.854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간접적 | 직접적 | 계 | 투입예산대비 |
|---------|-----------|-----------|------------|--------|
| 생산유발액 | 5,086,683 | 5,159,900 | 10,246,583 | 1.9858 |
| 부가가치유발액 | 2,075,420 | 2,332,550 | 4,407,970 | 0.8543 |
| 계 | 7,162,103 | 7,492,450 | 14,654,552 | 2.8401 |
| 투입예산대비 | 1.3880 | 1.4521 | 2.8401 | |

◦ 경제활성화 효과 지수

-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을 해당지역의 G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를 경제활성화 효과지수라 함
- 2006년 우리나라 GDP는 856조 1,918억 84백만원이며, 2008년도까지 투입된 사업투자비를 대입하여 산출한 부가가치가 4조 4,079억 70백만원의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이를 2006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약 0.51%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함

<표 4.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단위 : 백만원, %)

| 투입액 | 부가가치(A) | GRDP(B) | 활성화지수(A/B) |
|-----------|-----------|-------------|------------|
| 5,159,900 | 4,407,970 | 856,191,884 | 0.5148 |

제 2 장 종합 평가 및 건의

2.1 어촌·어항개발 투자계획

2.1.1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8조 8,2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4.4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8,822,119 | 2,017,109 | 6,805,010 | |
| 어항개발 | 6,909,940 | 1,569,930 | 5,340,010 | 개도국어항개발 협력사업 포함 |
| 어촌개발 | 1,912,179 | 447,179 | 1,465,000 | |

2.1.2 어항개발 투자계획

- 어항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 단기 1조 5,376억원, 중장기 총 5조 1,6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에는 단기내 323억원, 중장기 1,77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국가어항에 포함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어항기본시설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이 단기, 중장기에 계속적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지방어항은 어항기본시설사업을 단기 및 중장기에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어촌정주어항은 저조한 완공률을 고려하여 어항기본시설사업의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은 단기에 해외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실시하여 개도국 대상 2개소 어항개발 사업착수 및 기술지원, 중장기에는 단기 사업의 완료 및 4개소 신규 지정 및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4.49> 어항개발 단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년도 | 총사업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개도국 어항개발협력 |
|------|-----------|-----------|---------|---------|---------------|
| 총 계 | 1,569,930 | 1,068,566 | 337,312 | 131,752 | 32,300 |
| 2009 | 233,545 | 150,588 | 58,657 | 24,000 | 300 |
| 2010 | 265,853 | 177,091 | 62,762 | 25,000 | 1,000 |
| 2011 | 302,664 | 208,259 | 67,155 | 26,250 | 1,000 |
| 2012 | 354,029 | 244,612 | 71,855 | 27,562 | 10,000 |
| 2013 | 413,839 | 288,016 | 76,883 | 28,940 | 20,000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은 어항개발에 포함

<표 4.50> 어항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년도 | 총사업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개도국 어항개발협력 | |
|-----|-----------|-----------|-----------|---------|---------------|---------|
| 총 계 | 5,340,010 | 3,834,482 | 945,652 | 382,176 | 177,700 | |
| 중기 | 소 계 | 2,380,949 | 1,678,255 | 433,295 | 167,899 | 101,500 |
| | 2014 | 434,043 | 302,875 | 80,682 | 30,386 | 20,100 |
| | 2015 | 455,249 | 318,442 | 84,702 | 31,905 | 20,200 |
| | 2016 | 477,532 | 334,809 | 88,923 | 33,500 | 20,300 |
| | 2017 | 498,531 | 352,018 | 90,938 | 35,175 | 20,400 |
| | 2018 | 515,594 | 370,111 | 88,050 | 36,933 | 20,500 |
| 장기 | 소 계 | 2,959,061 | 2,156,227 | 512,357 | 214,277 | 76,200 |
| | 2019 | 541,054 | 389,134 | 92,540 | 38,780 | 20,600 |
| | 2020 | 567,821 | 409,135 | 97,258 | 40,718 | 20,710 |
| | 2021 | 595,945 | 430,164 | 102,218 | 42,753 | 20,810 |
| | 2022 | 618,676 | 452,274 | 107,431 | 44,891 | 14,080 |
| | 2023 | 635,565 | 475,520 | 112,910 | 47,135 | - |

※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은 어항개발에 포함

2.1.3 어촌개발 투자계획

- 어촌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4,472억원, 중장기 총 1조 4,6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4.51> 어촌개발 단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년도 | 총사업비 | 어촌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어촌인력육성 | 비고 |
|-----------|----------------|----------------|----------------|---------------|--------------|----|
| 총계 | 447,179 | 278,761 | 133,768 | 27,600 | 7,050 | |
| 2009 | 45,532 | 25,754 | 18,568 | - | 1,210 | |
| 2010 | 68,020 | 39,640 | 26,800 | 300 | 1,280 | |
| 2011 | 84,730 | 45,300 | 29,100 | 9,000 | 1,330 | |
| 2012 | 87,284 | 47,504 | 29,200 | 9,000 | 1,580 | |
| 2013 | 161,613 | 120,563 | 30,100 | 9,300 | 1,650 | |

<표 4.52> 어촌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년도 | 총사업비 | 어촌개발사업 | 어촌관광개발사업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어촌인력육성 | 비고 |
|-----------|------------------|----------------|----------------|----------------|----------------|----|
| 총계 | 1,465,000 | 700,000 | 456,000 | 309,000 | - | |
| 중기 | 소계 | 629,600 | 305,900 | 195,100 | 128,600 | - |
| | 2014 | 107,200 | 55,000 | 34,600 | 17,600 | - |
| | 2015 | 120,100 | 58,000 | 36,700 | 25,400 | - |
| | 2016 | 126,700 | 60,900 | 38,900 | 26,900 | - |
| | 2017 | 133,700 | 64,000 | 41,200 | 28,500 | - |
| | 2018 | 141,900 | 68,000 | 43,700 | 30,200 | - |
| 장기 | 소계 | 835,400 | 394,100 | 260,900 | 180,400 | - |
| | 2019 | 149,300 | 71,000 | 46,300 | 32,000 | - |
| | 2020 | 157,900 | 75,000 | 49,000 | 33,900 | - |
| | 2021 | 166,700 | 78,700 | 52,000 | 36,000 | - |
| | 2022 | 175,900 | 82,600 | 55,200 | 38,100 | - |
| | 2023 | 185,600 | 86,800 | 58,400 | 40,400 | - |

2.2 경제적 효과 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5조 1,468억원, 중장기 14조 7,191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84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32,550, 중장기 125,000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3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의 향후 전망

- 어가인구는 2006년 기준으로 211천명이었으나, 수산자원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어가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2023년에는 106천명으로 50% 정도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 전망되었음.
 - 211,610명('06년) → 160,061명('13년) → 106,119명('23년)
- 어가소득은 어가인구가 감소되는 반면에 국가차원에서 어촌·어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2023년에는 어가소득이 65백만원으로 2006년에 비해 약 216%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전망되었음.
 - 30백만원('06년) → 42백만원('13년) → 65백만원('23년)

2.4 제도개선 건의

2.4.1 「어촌종합개발사업」 명칭의 개선

-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의 각 사업을 말함
 -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
 -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명칭과 혼동의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어촌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모호함
 -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럴 경우 어촌관광개발사업 또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됨
-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단위사업인 「어촌종합개발사업」 간 명칭 중복
 -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발전사업」으로 변경
 - 단위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개발사업」으로 변경

2.4.2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 어촌개발 관련사업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계획서가 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개발사업 이후의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앞서 실현율지표에서 보듯이 기계적인 인구와 소득의 예측은 개발사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이후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렇게 할 때 사후에 어촌관련 개발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며, 만일 어촌관련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드백을 시킬 수 있을 것임
- 일본에 있어서 수산관계공공사업의 평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특히 현재 예산당국에서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못지않게 사업의 성과여부를 중요시함
 -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 5 편 시도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요약)

- 1장 부산광역시
- 2장 인천광역시
- 3장 울산광역시
- 4장 경 기 도
- 5장 강 원 도
- 6장 충 청 남 도
- 7장 전 라 북 도
- 8장 전 라 남 도
- 9장 경 상 북 도
- 10장 경 상 남 도
- 11장 제 주 도

제 1 장 부산광역시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9구 1군의 연안구군과 내수면의 2구를 개획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구 지역 (11구) :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사상구(내수면), 북구(내수면)
- 군 지역 (1군) : 기장군

(단위 : 개소)

| 구 분 | 구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부산광역시 | 11 | 1 | 50 | 2 | 14 | 14 | 22 |



<그림 5.1>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부산에는 전국 어촌계의 2.5%에 해당하는 50개의 어촌계가 위치하고, 전국 어가구 163,747가구 중 3.1%인 5,112가구가 있으며, 전국 어업인구 299,416명 중 2.6%인 7,751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기장군이 속한 어업인구는 3,429명으로 이는 부산지역 어업인구의 44.2%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강서구, 중구, 해운대구순이며 가장 적은 어촌계원수가 속해 있는 사상구(내수면)의 어업인구는 32명으로 이는 부산 어업인구의 0.4%에 해당함
- 부산시의 연간어획량은 92.104M/T로 전국어획량의 8%를 차지하며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로 22,185M/T(26,821백만원)임.
- 부산의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2,380천원이며 부산지역 중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수영구(24,749천원)로 조사됨

<표 5.1>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M/T) | 어획금액(백만원) | 호당평균소득(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부산(B) | 207,294 | 5,112 | 571,084 | 7,751 | 50 | 5,470 | 92,104 | 94,436 | 22,380 |
| 서구 | 16,489 | 133 | 41,514 | 157 | 2 | 106 | 3,513 | 3,594 | 21,913 |
| 영도구 | 11,518 | 235 | 31,665 | 314 | 2 | 226 | 8,197 | 8,550 | 24,470 |
| 남구 | 9,279 | 117 | 21,619 | 164 | 1 | 77 | 2,642 | 2,553 | 21,120 |
| 북구 | 26,575 | 76 | 78,019 | 92 | 1 | 74 | 1,584 | 1,645 | 19,910 |
| 해운대 | 29,333 | 308 | 76,108 | 382 | 4 | 238 | 7,242 | 8,077 | 24,676 |
| 사하구 | 69,639 | 977 | 202,058 | 1,160 | 5 | 648 | 19,500 | 21,091 | 22,670 |
| 강서구 | 14,277 | 1,296 | 34,867 | 1,822 | 13 | 2,374 | 22,185 | 26,821 | 20,298 |
| 수영구 | 13,959 | 160 | 37,576 | 199 | 2 | 149 | 5,225 | 5,449 | 24,749 |
| 사상구 | 10,279 | 27 | 32,760 | 32 | 1 | 27 | 647 | 623 | 19,864 |
| 기장군 | 5,946 | 1,783 | 14,898 | 3,429 | 19 | 1,551 | 21,369 | 16,033 | 24,132 |
| B/A(%) | 16.8 | 3.1 | 16.9 | 2.6 | 2.5 | 3.6 | 8.06 | 5.88 | 103.21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는 전무하였으며, 자립형 어촌계가 2%, 성장형 어촌계는 98%로 발전수준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어선어업형이 5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합어업형 46%, 양식어업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역, 다시마, 해태, 장어 및 패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입지유형별로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가 88%인 44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안촌락형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은 대도시 지역으로 주말 및 사시사철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며 특히 부산에는 유명한 동백섬, 태종대,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지가 분포하고 있고 또한 해상 낚시터도 산재하고 있어 많은 낚시꾼이나 가족단위에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먹거리 및 볼거리를 즐기고 있음. 하지만 이런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경영실적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표 5.2>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락지구 | 연안촌락 |
| 전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부산 | 50 | - | 1 | 49 | 27 | - | 23 | 44 | - | 6 |
| | 100% | 0% | 2% | 98% | 54% | 0% | 46% | 88% | 0% | 12% |
| 서 구 | 2 | - | - | 2 | 2 | - | - | 2 | - | - |
| 영도구 | 2 | - | - | 2 | 2 | - | - | 2 | - | - |
| 남구 | 1 | - | - | 1 | 1 | - | - | 1 | - | - |
| 해운대 | 4 | - | - | 4 | 1 | - | 3 | 4 | - | - |
| 사하구 | 5 | - | - | 5 | 5 | - | - | 5 | - | - |
| 강서구 | 13 | - | - | 13 | 10 | - | 3 | 7 | - | 6 |
| 수영구 | 2 | - | - | 2 | 2 | - | - | 2 | - | - |
| 기장군 | 19 | - | 1 | 18 | 2 | - | 17 | 19 | - | - |
| 사상구 | 1 | - | - | 1 | 1 | - | - | 1 | - | - |
| 북 구 | 1 | - | - | 1 | 1 | - | - | 1 | -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2004년말 부산의 총 어선수는 5,521척으로 전국 91,608척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375,037톤으로 척당 67.9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2,030척으로 36.8%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2,106척으로 38.1%에 해당하고, 10톤 이상의 어선은 1,121척으로 20.3%이며 그 중에서도 100톤 이상의 어선이 799척으로 14.5%를 차지하며 대형어선에 의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3>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부산(B) | 5,412 | 374,950 | 109 | 87 | 2,030 | 2,106 | 264 | 1,121 |
| 연안(C) | 5,410 | 374,927 | 108 | 84 | 2,030 | 2,105 | 262 | 1,121 |
| 연안시군구 | 시청 | 4 | 584 | - | - | - | - | 4 |
| | 중구 | 503 | 256,323 | - | - | - | 2 | 500 |
| | 서구 | 375 | 51,013 | 10 | 12 | 14 | 65 | 260 |
| | 동구 | - | - | - | - | - | - | - |
| | 영도구 | 288 | 33,275 | 3 | 1 | 18 | 81 | 149 |
| | 남구 | 117 | 7,086 | 8 | 5 | 15 | 75 | 25 |
| | 해운대구 | 261 | 2,247 | 5 | 3 | 88 | 159 | 13 |
| | 사하구 | 941 | 15,063 | 52 | 37 | 290 | 513 | 113 |
| | 강서구 | 2,024 | 3,119 | 14 | 17 | 1348 | 674 | 9 |
| | 수영구 | 222 | 1,532 | 11 | 6 | 34 | 151 | 15 |
| | 기장군 | 570 | 4,588 | 2 | 1 | 143 | 357 | 33 |
| | 사상구 | 43 | 46 | 3 | 2 | 30 | 16 | - |
| 북구 | 62 | 51 | - | - | 50 | 12 | - | |
| 내륙시군 | 2 | 19 | 1 | 3 | - | 1 | 2 | - |
| 내륙시군구 | 부산진구 | - | - | - | - | - |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 |
| | 금정구 | - | - | - | - | - | - | - |
| | 연제구 | 2 | 19 | 1 | 3 | - | 1 | - |
| B/A(%) | 6.12 | 50.25 | 3.42 | 2.95 | 6.78 | 4.49 | 3.01 | 15.44 |
| C/B(%) | 100.0 | 100.0 | 99.1 | 96.6 | 100.0 | 100.0 | 99.2 | 100.0 |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부산광역시는 2개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2개항 모두 완공되었음

<표 5.4>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부산광역시 | 2 | 2 | | - | | |
| 사 하 구 | 1 | 1 | 다대포항 | - | | |
| 기 장 군 | 1 | 1 | 대변항 | - | | |

- 부산광역시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600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4.4%가 투자되었으며, 기장군의 대변항에 투자되었음

<표 5.5>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부산광역시 | 88,399 | 32,854 | 6,174 | 6,068 | 21,739 | 6,989 | 5,000 | 5,575 | - | 4,000 |
| 사 하 구 | 5,053 | 5,053 | - | - | - | - | - | - | - | - |
| 기 장 군 | 83,346 | 27,801 | 6,174 | 6,068 | 21,739 | 6,989 | 5,000 | 5,575 | - | 4,000 |

(2) 지방어항

- 부산광역시는 14개항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0개소로 약 71%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6>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부산광역시 | 14 | 10 | | 4 | | |
| 남 구 | 1 | 1 | 민락항 | - | - | |

<표 5.6> 지방어항 현황(계속)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부산광역시 | 14 | 10 | | 4 | | |
| 해운대구 | 3 | 3 | 우동항, 송정항, 청사포항 | - | - | |
| 강 서 구 | 3 | - | - | 3 | 대항항, 천성항, 놀이항 | |
| 기 장 군 | 7 | 6 | 두호항, 칠암항, 학리항, 월내항, 동백항, 이동항 | 1 | 신암항 | |

- 부산광역시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194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4.2%가 투자되었으며, 해운대구가 청사포항에 75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기장군, 강서구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7>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부산광역시 | 19,466 | 2,520 | 2,840 | 2,978 | 2,996 | 2,632 | 1,625 | 1,625 | 1,125 | 1,125 |
| 해운대구 | | | | | | | | | | |
| 청사포 | 7,506 | - | - | - | 2,996 | 1,260 | 1,625 | 1,625 | - | - |
| 강서구 | | | | | | | | | | |
| 대항 | 3,650 | - | - | 2,278 | - | 1,372 | - | - | - | - |
| 기장군 | | | | | | | | | | |
| 월내 | - | - | - | - | - | - | - | - | - | - |
| 이동 | 912 | 564 | 348 | - | - | - | - | - | - | - |
| 학리 | - | - | - | - | - | - | - | - | - | - |
| 동백 | 1,956 | 1,956 | - | - | - | - | - | - | - | - |
| 두호 | 3,192 | - | 2,492 | 700 | - | - | - | - | - | - |
| 칠암 | 1,125 | - | - | - | - | - | - | - | 1,125 | - |

(3) 어촌정주어항

- 부산광역시는 14개항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개소로 완공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 5.8>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부산광역시 | 14 | 1 | | 13 | | |
| 강 서 구 | 12 | 1 | 신호항 | 11 | 순아항, 명지항, 동리항, 신전항, 녹산항, 동선항, 정거항, 선장항, 두문항, 외양포항, 대항새바지항 | |
| 기 장 군 | 2 | - | | 2 | 중동항, 동암항 | |

<표 5.9>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부산광역시 | 2,199 | - | - | - | - | - | 600 | 933 | 666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06년말 기준으로 1단계 1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까지 1단계 미시행 1개 권역 완료할 계획임
- 총 사업비 11,528백만원 중 2005년말까지 4,02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1단계 사업인 기장동부권역에 2007~2008년까지 총 3,500백만원이 투자할 계획임

<표 5.10>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사·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부 산 | 2 | 7,528 | 1 | 4,028 | 1 | 1,750 | (1) | 1,750 |
| 기장군 | 2 | 7,528 | 1 | 4,028 | 1 | 1,750 | (1) | 1,750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부산광역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총 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01년 시범사업으로 기장군 공수마을에 12.5억원, 2003년 강서구 대항마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총 17.5억원을 투자

<표 5.11>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부 산 | 2 | 1,750 | 1 | 1,750 | - | - | - | - |
| 강서구 | 1 | 500 | 1 | 500 | - | - | - | - |
| 기장군 | 1 | 1,250 | 1 | 1,25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강서구 대항항 60억원을 2008년부터 투자

<표 5.12>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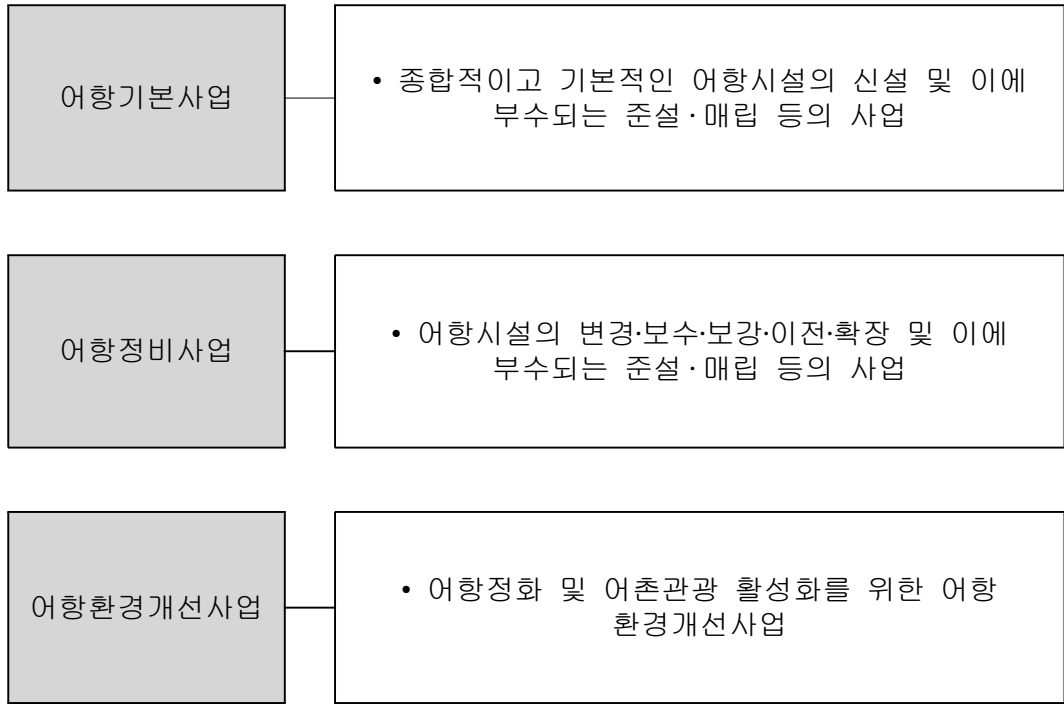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부 산 | | | 6,000 | 1,942 | - | - | 1,942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강서구 | 대항항 | 6,000 | 1,942 | - | - | 1,20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부산광역시는 계속투자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대변항이 다기능어항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단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중장기 계획시 2개항에 대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3>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지정항 사업 착수 | - | • 대변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집중투자로 완공률 100%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30개항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며, 2008년 우선 지정되는 6개항중 강서구에 소재한 천성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부산광역시의 2007년말 현재 완공항은 10개소로 71%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5개년 동안 강서구, 기장군의 2개 시·군에 12,653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항을 완공,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현재까지 어촌정주어항은 지자체 자체예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실시되어 왔으며, 부산광역시는 14개항중 완공항은 1개항으로 완공율이 매우 저조함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대변항은 2012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단기계획에서 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중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4>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부 산 | 총 계 | 66,828 | 11,955 | 14,246 | 16,629 | 14,238 | 9,760 | |
| | 어항기본사업 | 34,570 | 6,938 | 7,177 | 8,220 | 3,570 | 6,885 | |
| | 어항정비사업 | - | - | - |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32,258 | 5,017 | 7,069 | 8,409 | 10,668 | 1,095 | |

■ 중장기(2014~2023)

- 강서구에 소재한 천성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계속 추진
- 부산광역시의 어항분야 장기투자계획은 지방어항 잔여 2개항을 완공함으로써 기본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기본사업은 계속 투자하여 완공율을 제고할 계획
- 어항정비사업에 2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어항환경개선사업으로는 281억원을 투입하여 다기능어항사업을 확대, 1차 사업 완료 및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표 5.15>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부 산 | 총 계 | 215,287 | 14,979 | 16,354 | 17,313 | 16,990 | 16,084 | 21,862 | 23,860 | 26,155 | 28,804 | 32,886 |
| | 어항기본사업 | 158,278 | 9,847 | 11,038 | 11,740 | 11,276 | 10,255 | 15,950 | 17,909 | 20,221 | 22,960 | 27,082 |
| | 어항정비사업 | 28,912 | 2,865 | 2,871 | 2,877 | 2,883 | 2,888 | 2,894 | 2,900 | 2,906 | 2,911 | 2,917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8,097 | 2,267 | 2,445 | 2,696 | 2,831 | 2,941 | 3,018 | 3,051 | 3,028 | 2,933 | 2,887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계획수립시 구체적인 경관지침 마련(색채, 형태, 테마 등)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없음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단지(대항항) 사업 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1개 사업비 규모 : 60억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부산지역 어촌개발 단기투자계획은 어촌개발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에 총 8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사업으로 2010년부터 기장군 장안권역에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의 단기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강서구 대항항(어촌관광단지)에 4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까지 완료할 예정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임

<표 5.1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부산광역시 | 합 계 | 8,058 | - | 2,808 | 3,000 | 2,250 | - |
| | 어촌개발사업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058 | - | 2,058 | 2,00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 | - | - | - | - | - |

■ 중·장기(2014~2023)

- 부산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260억원, 신규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부산광역시 | 합 계 | 32,000 | 2,368 | 2,632 | 2,775 | 2,925 | 3,103 | 3,260 | 3,447 | 3,632 | 3,826 | 4,032 |
| | 어촌개발사업 | 20,000 | 1,571 | 1,657 | 1,740 | 1,829 | 1,942 | 2,029 | 2,143 | 2,249 | 2,360 | 2,48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000 | 455 | 482 | 512 | 543 | 575 | 610 | 645 | 684 | 726 | 768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6,000 | 342 | 493 | 523 | 553 | 586 | 621 | 659 | 699 | 740 | 784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3,22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9>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322,173 | 74,886 | 247,287 | |
| 어항개발 | 282,115 | 66,828 | 215,287 | |
| 어촌개발 | 40,058 | 8,058 | 32,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2,129억원, 중장기 7,019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1,334명, 중장기 4,284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2〉 부산광역시 계획 현황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4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1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2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13 |
| ■ | 사업완료 | 4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1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74,886 | 11,955 | 17,054 | 19,629 | 16,488 | 9,760 | |
| 어항 | 소계 | 66,828 | 11,955 | 14,246 | 16,629 | 14,238 | 9,760 |
| | 어항기본사업 | 34,570 | 6,938 | 7,177 | 8,220 | 3,570 | 8,665 |
| | 어항정비사업 | - | - | - | - | - | - |
| 어촌 | 소계 | 8,058 | 0 | 2,808 | 3,000 | 2,250 | 0 |
| | 어촌개발사업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058 | - | 2,058 | 2,000 | - | - |

제 2 장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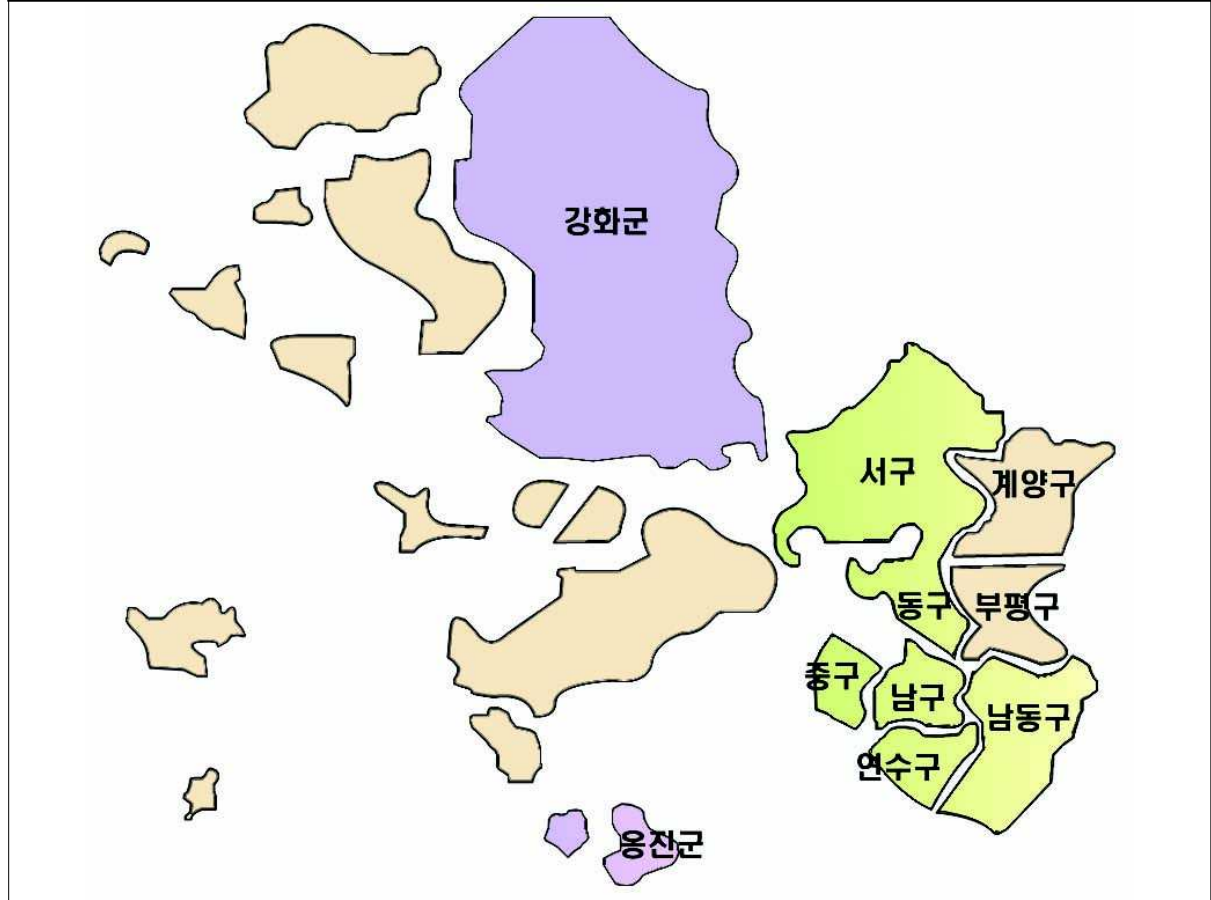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6구 2군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구 지역(6시) : 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남구
 - 군 지역(2군) : 강화군, 옹진군

(단위 : 개소)

| 구 | 분 | 구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인천광역시 | | 6 | 2 | 55 | 5 | 15 | 30 | 35 |



<그림 5.3>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인천에는 전국 어촌계의 2.8%에 해당하는 55개의 어촌계가 위치하고, 전국 어가구 163,747가구 중 3.6%인 5,850가구가 있으며, 전국 어업인구 299,416명 중 2.6%인 9,600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옹진군의 어업인구 4,261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다음은 중구, 강화군순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연간어획량은 10,654M/T로 이는 전국 연간 어획량 1,142,492M/T의 0.9%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33,063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금액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인천광역시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3,324M/T을 생산하는 중구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서구로 연간 350M/T을 생산하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44,800천원)로 조사됨

<표 5.20>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인천(B) | 38,068 | 5,850 | 172,860 | 9,600 | 55 | 5,725 | 10,654 | 33,063 | 29,340 |
| 중 구 | 4,939 | 1,550 | 12,391 | 3,149 | 12 | 1,250 | 3,324 | 4,812 | 29,811 |
| 동 구 | 2,169 | 166 | 5,439 | 528 | 1 | 86 | 869 | 985 | 27,800 |
| 서 구 | 25 | 23 | 40 | 25 | 1 | 23 | 350 | 390 | 30,000 |
| 남 동 구 | 1,450 | 259 | 5,580 | 406 | 1 | 239 | 1,570 | 9,446 | 44,800 |
| 연 수 구 | 19,770 | 253 | 124,238 | 380 | 2 | 253 | 1,080 | 998 | 32,873 |
| 강 화 군 | 3,707 | 825 | 10,790 | 851 | 12 | 640 | 1,490 | 10,945 | 23,667 |
| 옹 진 군 | 6,008 | 2,774 | 14,382 | 4,261 | 26 | 3,234 | 1,971 | 5,487 | 16,433 |
| B/A(%) | 3.1 | 3.6 | 5.1 | 3.2 | 2.8 | 3.8 | 0.9 | 2.1 | 135.3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는 11%, 자립형 어촌계가 47%, 성장형 어촌계는 42%로 발전수준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띠으나 자립형 어촌계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은 양식어업형이 5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 수산물은 꽃

계, 젓새우 및 패류 등임.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49%, 연안촌락형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은 도서지역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어 수도권과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형이 많은 형태를 지니고 있음.

<표 5.21>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인 천 | 55 | 6 | 26 | 23 | 14 | 29 | 12 | 10 | 27 | 18 |
| | 100% | 11% | 47% | 42% | 25% | 53% | 22% | 18% | 49% | 33% |
| 중 구 | 12 | - | 12 | - | - | 9 | 3 | - | 4 | 8 |
| 동 구 | 1 | 1 | - | - | - | - | 1 | 1 | - | - |
| 서 구 | 2 | 2 | - | - | - | 2 | - | 2 | - | - |
| 남 동구 | 1 | 1 | - | - | 1 | - | - | 1 | - | - |
| 연 수구 | 1 | - | 1 | - | - | - | 1 | - | - | 1 |
| 강 화군 | 12 | 2 | 8 | 2 | 8 | 2 | 2 | - | 3 | 9 |
| 웅 진군 | 26 | - | 5 | 21 | 5 | 16 | 5 | 6 | 20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인천광역시의 총 어선수는 2,004척으로 전국 91,609척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23,726.25톤으로 척당 11.8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214척으로 전체어선 2,004척의 10.7%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929척으로 46.3%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861척으로 42.9%로 조사됨
- 수산업의 위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력선이 늘고 무동력선이 감소하는 어선

의 현대화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동력선이라 하더라도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9.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웅진군 동력선의 척수가 31.1%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강화군이 25.28%, 중구가 14.7%임

<표 5.22>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전 국 (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인 천 (B) | 1,970 | 23,634.27 | 34 | 91.98 | 214 | 929 | 652 | 209 |
| 중 구 | 290 | 9,864.60 | 1 | 3.13 | 35 | 102 | 85 | 69 |
| 동 구 | 91 | 786.00 | - | - | 2 | 37 | 43 | 9 |
| 남 구 | 151 | 4,037.93 | - | - | 2 | 33 | 54 | 62 |
| 연 수 구 | 49 | 1,170.27 | - | - | 1 | 13 | 19 | 16 |
| 남 동 구 | 256 | 2,356.38 | 2 | 4.63 | 21 | 86 | 125 | 26 |
| 서 구 | 23 | 446.86 | - | - | 7 | 8 | 4 | 4 |
| 강 화 군 | 498 | 1,808.30 | 29 | 81.56 | 91 | 319 | 111 | 6 |
| 웅 진 군 | 612 | 3,163.93 | 2 | 2.66 | 55 | 331 | 211 | 17 |
| B/A(%) | 2.2 | 3.2 | 1.1 | 3.1 | 0.7 | 2.0 | 7.4 | 2.9 |

※ 자료 : 인천,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인천광역시는 5개항으로 전체의 약 5%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4개소로 인천광역시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80%임
- 인천광역시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665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4.8%가 투자되었으며, 옹진군이 618억원, 강화군이 46억원이 투자됨

<표 5.23> 국가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인천광역시 | 5 | 4 | | 1 | | |
| 강화군 | 1 | 1 | 어유정항 | - | - | |
| 옹진군 | 4 | 3 | 장봉항, 덕적도항, 울도항 | 1 | 선진포항 | |

<표 5.24>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인천광역시 | 75,226 | 12,985 | 2,926 | 5,721 | 7,140 | 6,623 | 3,057 | 11,628 | 9,500 | 15,646 |
| 강화군 | 어유정 | 5,140 | 540 | - | - | - | - | - | 1,000 | 3,600 |
| 옹진군 | 장봉 | 17 | 17 | - | - | - | - | - | - | - |
| | 덕적 | 8,047 | 2,718 | 1,000 | 3,500 | 589 | 240 | - | - | - |
| | 울도 | 29,811 | 9,407 | 1,926 | 1,221 | 3,551 | 2,383 | 2,395 | 5,628 | 1,500 |
| | 선진포 | 32,211 | 303 | - | 1,000 | 3,000 | 4,000 | 662 | 6,000 | 7,000 |

(2) 지방어항

- 인천광역시는 15개항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9개소로 약 60%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25>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인천광역시 | 15 | 9 | | 6 | | |
| 중 구 | 2 | 1 | 대무의항 | 1 | 광명항 | |
| 강 화 군 | 6 | 4 | 선두항, 정포항, 주문항, 후포항 | 2 | 창후항, 장곶항 | |
| 웅 진 군 | 7 | 4 | 옥죽포항, 소연평항, 답동항, 진두항 | 3 | 진리항, 두무진항, 자월1리항 | |

- 인천광역시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179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3.8%가 투자되었으며, 웅진군, 강화군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표 5.26>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인천광역시 | 17,873 | 2,500 | 2,760 | 2,930 | 3,000 | 2,768 | 1,812 | 603 | 750 | 750 |
| 강 화 군 | 선 두 | - | - | - | - | - | - | - | - | - |
| | 주 문 | - | - | - | - | - | - | - | - | - |
| | 초 지 | - | - | - | - | - | - | - | - | - |
| | 후 포 | 2,768 | - | - | - | 2,768 | - | - | - | - |
| | 정 포 | 603 | - | - | - | - | - | 603 | - | - |
| 웅 진 군 | 옥죽포 | - | - | - | - | - | - | - | - | - |
| | 장 촌 | - | - | - | - | - | - | - | - | - |
| | 답 동 | 2,500 | 2,500 | - | - | - | - | - | - | - |
| | 소연평도 | 7,990 | - | 2,760 | 2,930 | 2,300 | - | - | - | - |
| | 진 두 | 700 | - | - | - | 700 | - | - | - | - |
| | 진 리 | 2,562 | - | - | - | - | - | 1,812 | - | 750 |

(3) 어촌정주어항

- 인천광역시 28개항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4개소로 약 14%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27>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인천광역시 | 30 | 10 | | 20 | | |
| 중 구 | 4 | 3 | 영종항, 덕교항, 소무의항 | 1 | 예단포항 | |
| 서 구 | 1 | - | - | 1 | 세어도항 | |
| 강 화 군 | 7 | 6 | 황산도항, 선두4리항, 분오리항, 건평항, 서두물항, 초지항 | 1 | 더러미항, | |
| 용 진 군 | 18 | 1 | 선재항 | 17 | 뱃말항, 장촌항, 중화동항, 학교항, 서포리항, 지도항, 신도2리항, 옹암항, 고봉포항, 도우항, 소야리항, 문갑항, 부대항, 달바위항, 승봉항, 대이작항, 소이작항 | |

<표 5.28>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인천광역시 | 2,100 | - | - | - | - | - | 600 | - | 1,500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7개 권역 사업비 224억원 중 '06년말까지 1단계 6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94억원을 투자하였음
- 시군별 사업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강화군에 2개소, 용진군 4개소 사업완료

<표 5.2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인 천 | 6 | 19,417 | 6 | 19,417 | - | - | - | - |
| 강화군 | 2 | 6,399 | 2 | 6,399 | - | - | - | - |
| 용진군 | 4 | 13,018 | 4 | 13,018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25억원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5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008년 1개소(중구)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3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전 국 | 95 | 63,810 | 76 | 49,722 | 11 | 8,100 | 8 | 5,988 |
| 인 천 | 5 | 2,500 | 4 | 2,000 | - | - | 1 | 500 |
| 중 구 | 2 | 1,000 | 1 | 500 | - | - | 1 | 500 |
| 서 구 | 1 | 500 | 1 | 500 | - | - | - | - |
| 강화군 | 1 | 500 | 1 | 500 | - | - | - | - |
| 용진군 | 1 | 500 | 1 | 50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강화군 어유정항 총 50억원, 강화군 초지항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초지항(어촌관광단지)에 2008년 19억원을 우선 투자
- 강화군 어유정항은 2009년부터 투자될 예정임

<표 5.31>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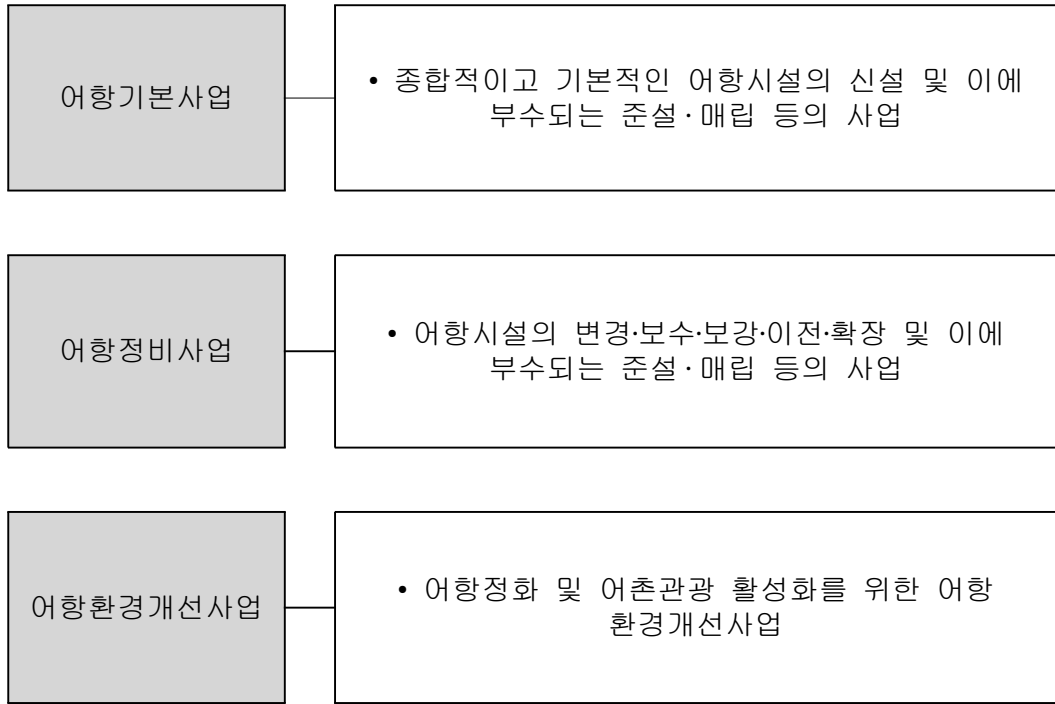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인천광역시 | | | 11,000 | 1,910 | - | - | 1,910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강화 | 어유정 | 5,000 | - | - | - | - |
| | 강화 | 초지 | 6,000 | 1,910 | - | - | 1,91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어항기본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울도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은 2010년 까지 완료하고 향후 중장기계획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3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 • 울도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 어유정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집중투자로 완공률 65% 이상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 · 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어항정비사업 추진 | •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은 완료
- 지방어항은 현재 완공 9개소로 60%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5개년 동안 7,867백만원을 투자하여 1개항을 완공, 완공율 65%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기본사업에 계속 투자하여 완공율을 제고할 계획
- 현재 웅진군의 장봉항, 울도항과 강화군의 어유정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울도항과 어유정항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울도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은 2012년에 걸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어유정항은 단기계획인 5년에 걸쳐 201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어유정항은 2013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3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인 천 | 총 계 | 59,517 | 7,582 | 6,756 | 10,266 | 14,088 | 20,825 | |
| | 어항기본사업 | 13,965 | 2,400 | 2,478 | 2,628 | 3,147 | 3,312 | |
| | 어항정비사업 | 25,525 | 5,000 | 4,000 | 6,000 | 7,395 | 3,130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0,027 | 182 | 278 | 1,638 | 3,546 | 14,383 | |

■ 중장기(2014~2023)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5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기본사업에 계속 투자하여 완공율을 제고할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장봉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설계파고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 환경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표 5.3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인 천 | 총 계 | 271,902 | 16,975 | 19,555 | 20,588 | 23,678 | 27,665 | 28,868 | 30,832 | 33,003 | 35,417 | 35,501 |
| | 어항기본사업 | 129,378 | 3,965 | 6,264 | 6,655 | 9,394 | 13,091 | 14,088 | 15,954 | 18,169 | 20,806 | 20,992 |
| | 어항정비사업 | 72,281 | 7,163 | 7,178 | 7,192 | 7,206 | 7,221 | 7,235 | 7,250 | 7,264 | 7,279 | 7,293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70,243 | 5,667 | 6,113 | 6,741 | 7,078 | 7,353 | 7,545 | 7,628 | 7,570 | 7,332 | 7,216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3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없음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형 어유정향, 초지향 사업 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인천지역 단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120억원, 신규시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총 1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1개소 강화군 중부권역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의 단기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강화군 어유정향에 50억원, 초지향에 40

억원으로 총 90억원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3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인천광역시 | 합 계 | 15,090 | 2,510 | 3,370 | 4,710 | 3,500 | 1,000 |
| | 어촌개발사업 | 3,000 | - | - | 500 | 2,500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9,090 | 2,510 | 3,370 | 3,210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인천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420억원, 신규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총 5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3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인천광역시 | 합 계 | 51,000 | 3,780 | 4,192 | 4,418 | 4,657 | 4,944 | 5,193 | 5,491 | 5,789 | 6,102 | 6,434 |
| | 어촌개발사업 | 30,000 | 2,357 | 2,486 | 2,610 | 2,743 | 2,914 | 3,043 | 3,214 | 3,373 | 3,540 | 3,7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2,000 | 910 | 966 | 1,024 | 1,084 | 1,150 | 1,218 | 1,290 | 1,368 | 1,453 | 1,537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9,000 | 513 | 740 | 784 | 830 | 880 | 932 | 987 | 1,048 | 1,109 | 1,177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3,97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3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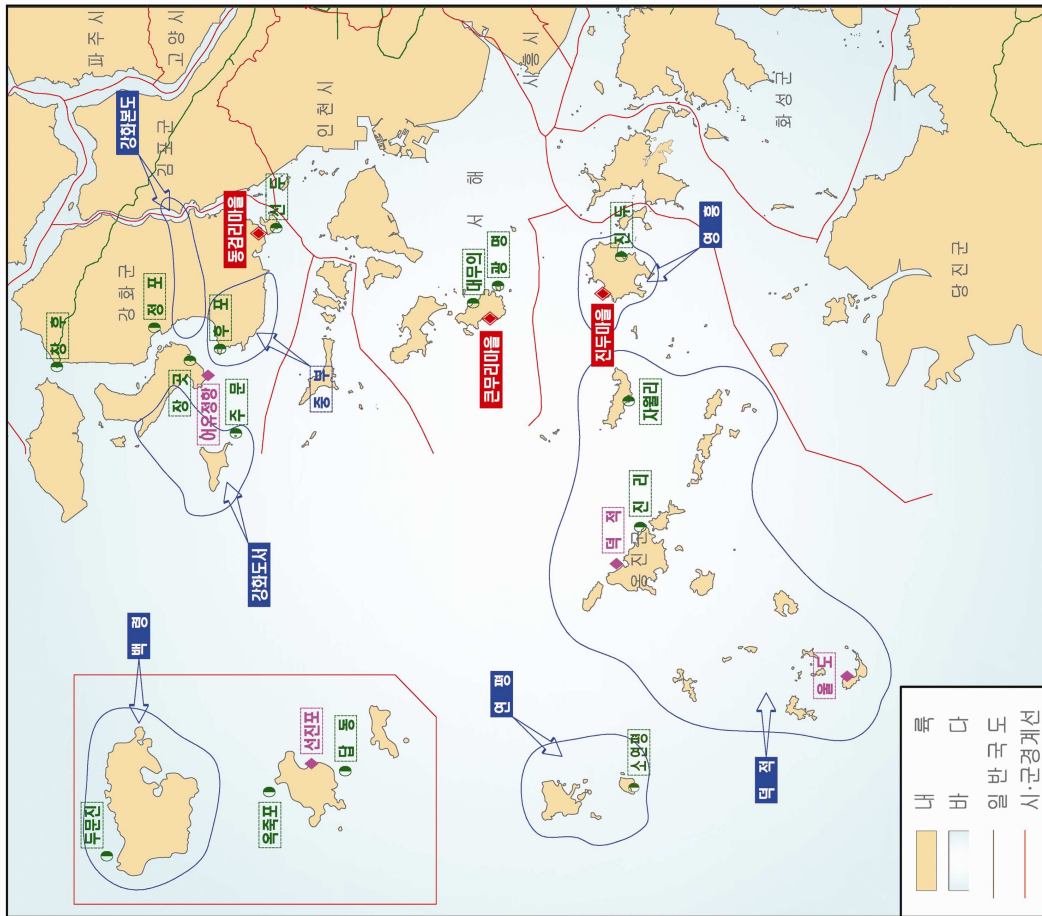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397,509 | 74,607 | 322,902 | |
| 어항개발 | 331,419 | 59,517 | 271,902 | |
| 어촌개발 | 66,090 | 15,090 | 51,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2,110억원, 중장기 9,163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1,399명, 중장기 5,530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림 5.4> 인천광역시 계획 현황도

| [인천광역시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 | |
|--------------------------|----------------|----|--|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4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2 |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 |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3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9 | |
| ■ | 사업완료 | 6 | |
| □ | 사업진행 | - | |
| --- | 사업계획 | - | |

[어촌어항개발 단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계 | 91,634 | 10,274 | 10,404 | 15,614 | 20,134 | 35,208 | |
| 어항 | 79,544 | 7,764 | 7,034 | 11,904 | 17,634 | 35,208 | |
| 어항기본사업 | 33,992 | 2,582 | 2,756 | 4,266 | 6,693 | 17,695 | |
| 어항정비사업 | 25,525 | 5,000 | 4,000 | 6,000 | 7,395 | 3,130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0,027 | 182 | 278 | 1,638 | 3,546 | 14,383 | |
| 어촌 | 12,090 | 2,510 | 3,370 | 3,710 | 2,500 | - | |
| 어촌개발사업 | 3,000 | - | - | 500 | 2,500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9,090 | 2,510 | 3,370 | 3,210 | - | - | |

제 3 장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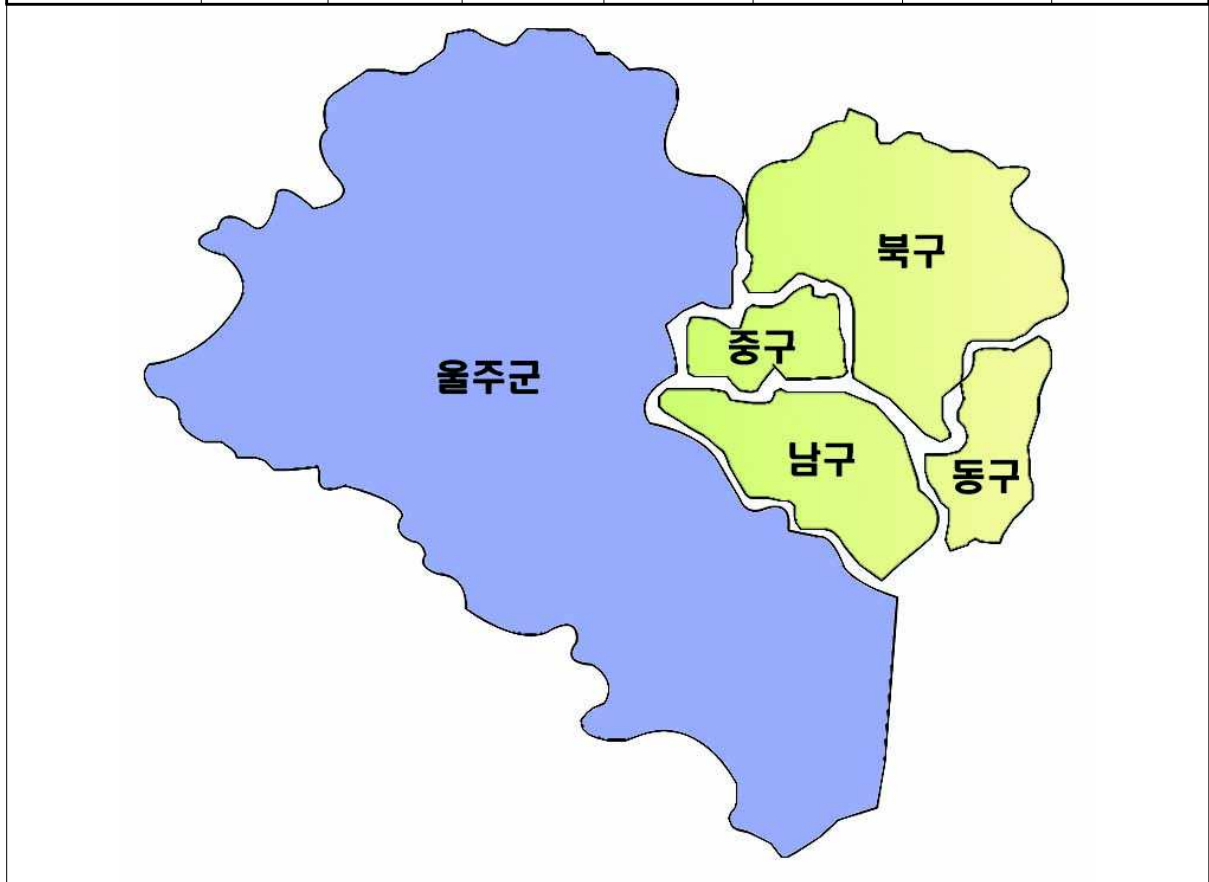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의 4구 1군의 연안시군을 개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구 지역 (4구) : 북구, 동구, 남구, 중구
 - 군 지역(1군) : 울주군

(단위 : 개소)

| 구 | 분 | 구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울산광역시 | | 4 | 1 | 32 | 2 | 4 | 13 | 9 |



<그림 5.5>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울산광역시에는 전국 어가구 163,747가구 중 2.9%인 4,779가구가 있으며, 전국 어업인구 299,416명중 3.2%인 9,643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전국 어촌계의 1.6%에 해당하는 32개의 어촌계가 위치하며 울주군에 14개 어촌계로 가장 많고, 북구 8개, 동구 5개 순으로 나타남
- 연간어획량은 47,844M/T, 어획금액은 86,911백만원으로 전국 연간 어획량의 4.2%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86,911백만원으로 전체 어획금액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23,589M/T을 생산하는 울주군이며,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연간 220M/T을 생산함
- 또한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1,467천원이며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북구(25,000천원)로 조사됨

<표 5.39>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울산(B) | 21,731 | 4,779 | 65,209 | 9,643 | 32 | 3,264 | 47,844 | 86,911 | 21,467 |
| 동 구 | 11,283 | 1,043 | 33,849 | 2,091 | 5 | 751 | 13,815 | 36,165 | 23,400 |
| 남 구 | 341 | 192 | 1,023 | 384 | 3 | 127 | 530 | 665 | 18,667 |
| 북 구 | 4,199 | 1,170 | 12,603 | 2,355 | 8 | 723 | 9,690 | 19,027 | 25,000 |
| 울 주 군 | 5,758 | 2,274 | 17,284 | 4,613 | 14 | 1,573 | 23,589 | 30,769 | 22,269 |
| 중 구 | 150 | 100 | 450 | 200 | 2 | 90 | 220 | 285 | 18,000 |
| B/A(%) | 1.8 | 2.9 | 1.9 | 3.2 | 1.6 | 2.2 | 4.2 | 5.4 | 99.0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는 28%, 자립형 어촌계가 31%, 성장형 어촌계는 41%로 발전수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울산에 소재 어촌계의 경영기반이 나름대로 활성화된 것으로 보임.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어선어업형이 69%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합어업형 31%의 어업형태를 보였고, 양식어업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 수산물은 어류, 전복, 성게 및 미역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 및 연안촌락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0>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울 산 | 32 | 9 | 10 | 13 | 22 | - | 10 | 32 | - | - |
| | 100% | 28% | 31% | 41% | 69% | 0% | 31% | 100% | 0% | 0% |
| 남 구 | 3 | - | - | 3 | 3 | - | - | 3 | - | - |
| 동 구 | 5 | 3 | - | 2 | 3 | - | 2 | 5 | - | - |
| 북 구 | 8 | 2 | 6 | - | 5 | - | 3 | 8 | - | - |
| 울주군 | 14 | 4 | 4 | 6 | 9 | - | 5 | 14 | - | - |
| 중 구 | 2 | - | - | 2 | 2 | - | - | 2 | -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울산광역시의 총 어선수는 1,337척으로 전국 91,609척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4,680톤으로 척당 3.5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406척으로 전체어선 1,337척의 30.37%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807척으로 60.36%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124척으로 9.3%로 조사됨
- 수산업의 위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력선이 늘고 무동력선이 감소하는 어선의 현대화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동력선이라 하더라도 10톤

- 미만의 소형어선이 95.9%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로 울주군 동력선의 척수가 453척(48.6%)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동구가 227척(24.4%), 북구가 172척(8.5%)로 나타남

<표 5.41>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어선세력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전 국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울 산 | 932 | 4,076 | 405 | 604 | 406 | 807 | 70 | 54 |
| 남 구 | 80 | 334 | 98 | 138 | 128 | 33 | 9 | 8 |
| 동 구 | 227 | 2,456 | 6 | 4 | 73 | 99 | 22 | 39 |
| 북 구 | 172 | 445 | 20 | 30 | 90 | 80 | 17 | 5 |
| 울 주 군 | 453 | 841 | 281 | 432 | 115 | 595 | 22 | 2 |
| B/A(%) | 1.1 | 0.5 | 12.7 | 20.5 | 1.4 | 1.7 | 0.8 | 0.7 |

※자료 : 울산, 「울산광역시 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울산광역시에는 2개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2개항 모두 완공되었음

<표 5.42>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울산광역시 | 2 | 2 | | - | | |
| 동 구 | 1 | 1 | 방어진항 | - | - | |
| 북 구 | 1 | 1 | 정자항 | - | - | |

- 울산광역시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233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7%가 투자되었음

<표 5.43>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울산광역시 | 49,620 | 27,895 | 985 | 5,277 | 3,148 | 2,083 | 886 | 2,986 | 3,500 | 2,860 |
| 방어진 | 22,539 | 18,678 | 68 | 2010 | 1283 | - | - | - | 500 | - |
| 정 자 | 27,081 | 9,217 | 917 | 3,267 | 1,865 | 2,083 | 886 | 2,986 | 3,000 | 2,860 |

(2) 지방어항

- 울산광역시에는 4개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개소로 75%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44>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울산광역시 | 4 | 3 | | 1 | | |
| 동 구 | 1 | 1 | 주전항 | - | - | |
| 북 구 | 1 | - | - | 1 | 당사항 | |
| 울 주 군 | 2 | 2 | 나사항, 신암항 | - | | |

- 울산광역시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101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2.2%가 투자되었으며, 울주군이 3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동구, 북구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45>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울산광역시 | 10,110 | - | 1,080 | 1,152 | 1,300 | 1,324 | 1,250 | 1,250 | 1,254 | 1,500 |
| 북구 | 주 전 | 2,538 | - | - | 200 | 330 | 625 | 625 | 758 | |
| | 당 사 | 2,276 | - | - | 200 | 330 | 625 | 625 | 496 | |
| 울주군 | 나 사 | 1,898 | - | 540 | 576 | 450 | - | - | - | |
| | 신 암 | 1,898 | - | 540 | 576 | 450 | - | - | - | |

(3) 어촌정주어항

- 울산광역시는 13개항으로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개소로 완공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표 5.46>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울산광역시 | 13 | 3 | | 10 | | |
| 북 구 | 8 | - | - | 8 | 금바우항, 신명항, 화암항, 판지항, 제전항, 윗우가항, 우가항, 어물항 | |
| 울 주 군 | 5 | 3 | 진하항, 신리항, 평동항 | 2 | 송정항, 대송항 | |

<표 5.4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울산광역시 | 1,050 | - | - | - | - | - | 100 | 450 | 500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4개권역 14,577백만원 중 '06년말까지 1단계 3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0,577백만원을 투자하였음
- 시군별로는 북구에 1개권역 35억원, 울주군 2개권역 70억원이 투자되었음

<표 5.4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울 산 | 3 | 10,577 | 3 | 10,577 | - | - | - | - |
| 북 구 | 1 | 3,500 | 1 | 3,500 | - | - | - | - |
| 울주군 | 2 | 7,077 | 2 | 7,077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투자실적은 없는 상태임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동구 일산항 총 50억원, 울주군 대송항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일산항에 40억, 대송항에 50억을 투자할 예정임

<표 5.49>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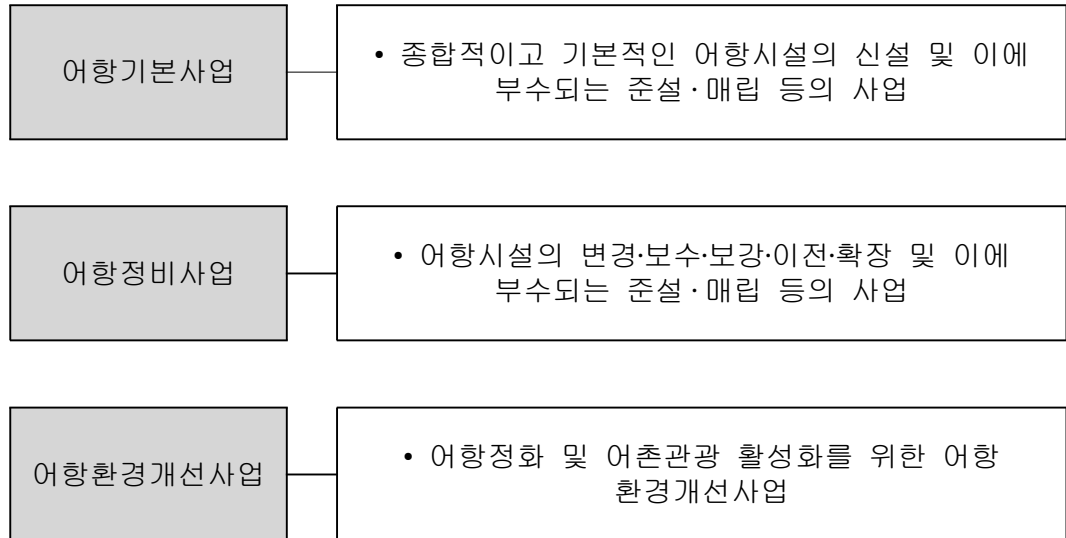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구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울산광역시 | | | 11,000 | 9,080 | 1,000 | 6,160 | 1,920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동구 | 일산 | 5,000 | 4,080 | - | 3,160 | 920 |
| | 울주군 | 대송 | 6,000 | 5,000 | 1,000 | 3,000 | 1,00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울산광역시는 계속투자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정자항이 다기능어항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단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중장기 계획시 2개항에 대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5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자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방어항은 2009년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기본사업에 계속 투자하여 완공율을 제고할 계획
- 어항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정자항은 2008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5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물 산 | 총 계 | 6,270 | 2,045 | 1,069 | 1,175 | 886 | 1,095 | |
| | 어항기본사업 | 3,766 | 2,000 | 1,000 | 766 | - | - | |
| | 어항정비사업 | - | - | - |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504 | 45 | 69 | 409 | 886 | 1,095 | |

■ 중장기(2014~2023)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 어항환경개선사업은 다기능어항사업을 확대, 1차 사업 완료 및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표 5.5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물 산 | 총 계 | 94,221 | 5,132 | 5,316 | 5,573 | 6,877 | 8,620 | 10,619 | 11,473 | 12,440 | 13,538 | 14,633 |
| | 어항기본사업 | 37,212 | - | - | - | 1,163 | 2,791 | 4,707 | 5,522 | 6,506 | 7,694 | 8,829 |
| | 어항정비사업 | 28,912 | 2,865 | 2,871 | 2,877 | 2,883 | 2,888 | 2,894 | 2,900 | 2,906 | 2,911 | 2,917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8,097 | 2,267 | 2,445 | 2,696 | 2,831 | 2,941 | 3,018 | 3,051 | 3,028 | 2,933 | 2,887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5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없음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형 일산항, 대송항 사업 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울산지역 단기투자계획은 어촌개발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에 총 59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2단계 어촌개발사업은 북구 당사권역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의 단기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동구 일산항에 9억원, 울주군 대송항에 10억원으로 총 19억원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임

<표 5.5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울 산 광 역 시 | 합 계 | 5,920 | 1,920 | 750 | 1,000 | 2,250 | - |
| | 어촌개발사업 | 4,000 | - | 750 | 1,000 | 2,250 |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920 | 1,920 | - | -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 | - | - | - | - | - |

■ 중·장기(2014~2023)

- 울산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260억원, 신규사업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임

<표 5.5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울 산 광 역 시 | 합 계 | 32,000 | 2,368 | 2,633 | 2,775 | 2,924 | 3,104 | 3,258 | 3,448 | 3,632 | 3,826 | 4,032 |
| | 어촌개발사업 | 20,000 | 1,571 | 1,657 | 1,740 | 1,829 | 1,943 | 2,028 | 2,143 | 2,249 | 2,360 | 2,48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000 | 455 | 483 | 512 | 542 | 575 | 609 | 646 | 684 | 726 | 768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6,000 | 342 | 493 | 523 | 553 | 586 | 621 | 659 | 699 | 740 | 784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1,38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5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138,411 | 12,190 | 126,221 | |
| 어항개발 | 100,491 | 6,270 | 94,221 | |
| 어촌개발 | 37,920 | 5,920 | 32,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342억원, 중장기 3,563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263명, 중장기 2,319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 4 장 경 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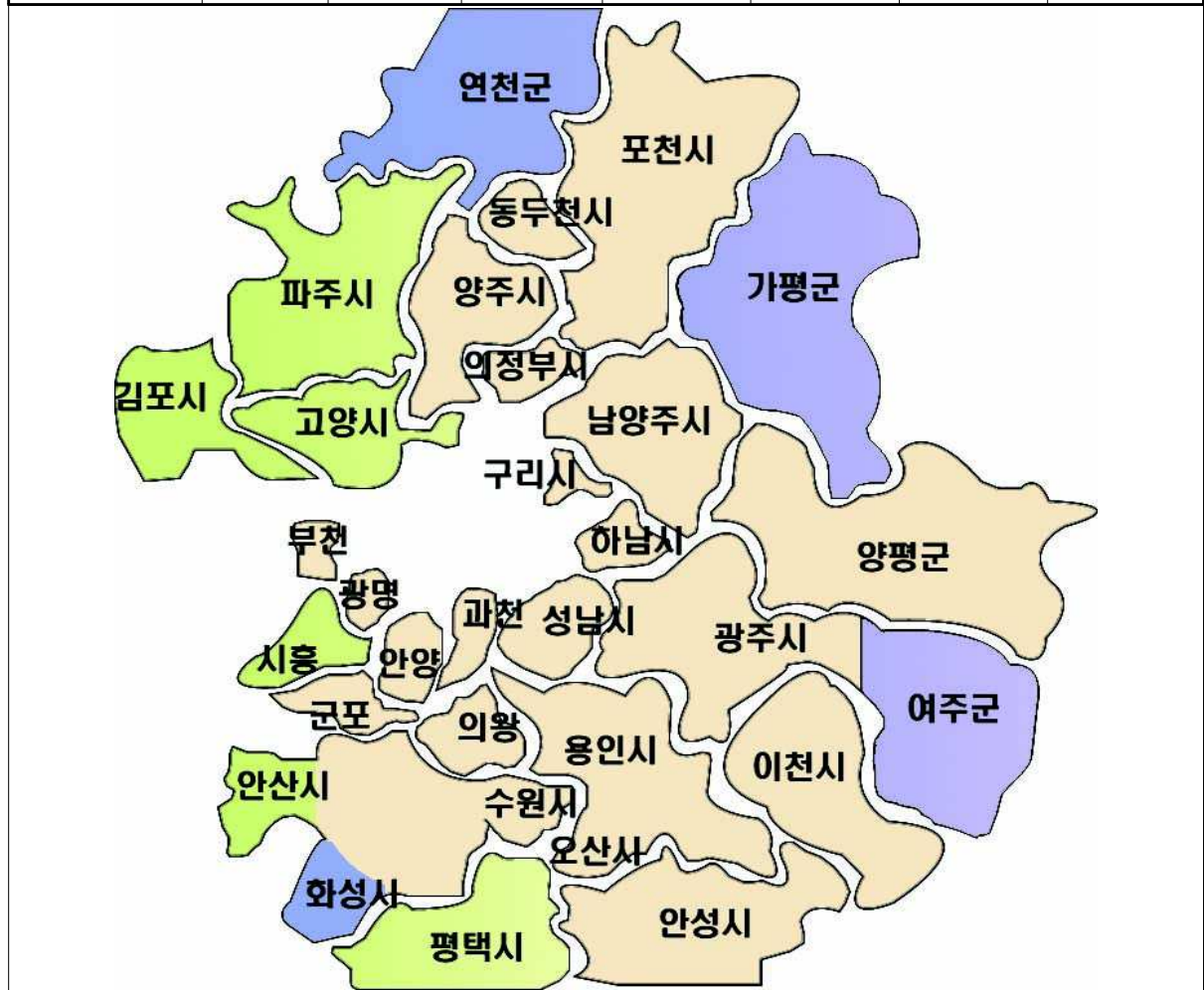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내수면을 포함하여 6시 4개군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6시)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 군 지역(4군) : 화성군, 가평군, 연천군, 여주군

(단위 : 개소)

| 구 | 분 | 구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 경 | 기 | 도 | 6 | 4 | 49 | - | 5 | 10 | 18 |



<그림 5.7>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경기도에서 어촌계내 가구수는 총 221,385천호이며 그중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5,216호로 2.4%에 해당하며 전국 어가수 163,747호의 3.2%임
- 어업인구는 9,397명으로 전국 어업인구의 3.1%에 해당하며, 시군별로는 안산시(4,817명)와 화성시(3,090명)의 어업인구가 가장 많고, 고양시 어업인구는 34명으로 가장 적음
- 연간어획량은 12,949M/T로 이는 전국 연간 어획량 1,142,492M/T의 1.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곳은 연간 6,536M/T을 생산하는 화성시임. 경기도의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7,517천원임

<표 5.57>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 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경 기 도(B) | 221,385 | 5,216 | 564,785 | 9,397 | 49 | 8,145 | 12,949 | 73,320 | 27,517 |
| 평 택 시 | 157,024 | 384 | 403,466 | 373 | 5 | 575 | 358 | 4,330 | 30,680 |
| 안 산 시 | 11,371 | 1,505 | 19,311 | 4,817 | 15 | 1,763 | 3,458 | 5,154 | 19,333 |
| 시 흥 시 | 2,999 | 360 | 10,410 | 418 | 2 | 472 | 255 | 635 | 17,800 |
| 김 포 시 | 1,850 | 220 | 5,000 | 230 | 2 | 114 | 520 | 3,250 | 35,000 |
| 화 성 시 | 8,068 | 2,318 | 18,640 | 3,090 | 20 | 5,022 | 6,563 | 43,620 | 26,353 |
| 고 양 시 | 250 | 34 | 750 | 34 | 1 | 28 | 50 | 720 | 25,000 |
| 파 주 시 | 430 | 130 | 1,150 | 160 | 1 | 69 | 80 | 1,300 | 30,000 |
| 여 주 군 | 38,653 | 38 | 103,758 | 38 | 1 | 42 | 25 | 533 | 31,000 |
| 연 천 군 | 290 | 37 | 750 | 37 | 1 | 28 | 45 | 450 | 30,000 |
| 가 평 군 | 450 | 190 | 1,550 | 200 | 1 | 32 | 80 | 1,850 | 30,000 |
| B/A(%) | 18.0 | 3.2 | 16.7 | 3.1 | 2.5 | 5.4 | 1.13 | 4.56 | 2.66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16%, 자립형 어촌계가 14%, 성장형 어촌계는 69%로 발전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어업형이 45%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선어업형 33%, 양식어업형이 22%로 다양한 어업형태를 보이고 있음. 주 수산물은 패류 및 꽃게이며, 또한 경기도는 내수면 시군이 있어 송어, 메기 등 민물어류도 양식 및 어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6%, 연안촌락형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58>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경기 | 49 | 8 | 7 | 34 | 16 | 11 | 12 | 18 | 3 | 28 |
| | 100% | 16% | 14% | 69% | 33% | 22% | 45% | 37% | 6% | 57% |
| 평택시 | 5 | - | 1 | 4 | 3 | 1 | 1 | - | - | 5 |
| 안산시 | 15 | - | 4 | 11 | 3 | 9 | 3 | 14 | 1 | - |
| 시흥시 | 2 | 1 | - | 1 | - | - | 2 | 2 | - | - |
| 김포시 | 2 | 1 | - | 1 | 2 | - | - | 2 | - | - |
| 화성시 | 20 | 6 | 2 | 12 | 3 | 1 | 16 | - | 2 | 18 |
| 고양시 | 1 | - | - | 1 | 1 | - | - | - | - | 1 |
| 파주시 | 1 | - | - | 1 | 1 | - | - | - | - | 1 |
| 여주시 | 1 | - | - | 1 | 1 | - | - | - | - | 1 |
| 연천군 | 1 | - | - | 1 | 1 | - | - | - | - | 1 |
| 가평군 | 1 | - | - | 1 | 1 | - | - | - | - | 1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경기도의 총 어선수는 2,170척으로 전국 91,609척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276척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음

<표 5.59>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 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경 기(B) | 1,751 | 4,050.71 | 419 | 143.51 | 1,276 | 704 | 173 | 17 | |
| 연 안(C) | 1,931 | 4,121.97 | 505 | 174.43 | 1,538 | 708 | 173 | 17 | |
| 연 안 시 군 | 평택시 | 131 | 134.2 | 64 | 12.65 | 146 | 48 | 1 | - |
| | 안산시 | 203 | 1,006.39 | 2 | 0.35 | 33 | 101 | 67 | 4 |
| | 시흥시 | 178 | 440.9 | 7 | 1.14 | 59 | 119 | 6 | 1 |
| | 김포시 | 164 | 452.46 | 12 | 37.62 | 92 | 43 | - | 5 |
| | 화성시 | 626 | 1,848.97 | 16 | 2.53 | 188 | 384 | - | 7 |
| | 고양시 | 40 | 26.54 | 1 | 0.62 | 37 | 4 | - | - |
| | 파주시 | 29 | 12 | 69 | 27.07 | 98 | - | - | - |
| | 여주시 | 81 | 23.5 | 11 | 2.19 | 92 | - | - | - |
| | 연천군 | 30 | 10.07 | 5 | 1.04 | 35 | - | - | - |
| 가평군 | 60 | 20.94 | - | - | 58 | 2 | - | - | |
| 내륙시군 | 209 | 73.89 | 232 | 58.3 | 438 | 3 | 99 | - | |
| 내 륙 시 군 | 수원시 | 2 | 3.97 | 1 | 0.14 | 2 | 1 | - | - |
| | 성남시 | 4 | 1.16 | 2 | 0.4 | 4 | 2 | - | - |
| | 의정부시 | 1 | 0.3 | - | - | 1 | - | - | - |
| | 안양시 | - | - | - | - | - | - | - | - |
| | 부천시 | - | - | - | - | - | - | - | - |
| | 광명시 | - | - | - | - | - | - | - | - |
| | 동두천시 | - | - | - | - | - | - | - | - |
| | 과천시 | - | - | - | - | - | - | - | - |
| | 구리시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시 | 27 | 10.57 | 37 | 9.87 | 64 | - | - | - |
| | 오산시 | 4 | 1.02 | 4 | 0.55 | 8 | - | - | - |
| | 군포시 | 1 | 0.32 | - | - | 1 | - | 63 | - |
| | 의왕시 | - | - | - | - | - | - | - | - |
| | 하남시 | - | - | 2 | 0.32 | 2 | - | - | - |
| | 용인시 | 37 | 11.48 | 30 | 6.78 | 67 | - | - | - |
| | 이천시 | - | - | 8 | 1.68 | 8 | - | 36 | - |
| | 안성시 | 12 | 4.30 | 52 | 9.54 | 64 | - | - | - |
| | 광주시 | - | - | 10 | 2.29 | 10 | - | - | - |
| | 양주시 | 5 | 1.86 | 8 | 1.39 | 13 | - | - | - |
| 포천시 | 3 | 0.79 | 49 | 20.13 | 52 | - | - | - | |
| 양평군 | 113 | 42.42 | 29 | 5.21 | 142 | - | - | - | |
| B/A(%) | 1.98 | 0.54 | 13.14 | 4.86 | 4.26 | 1.52 | 1.97 | 0.23 | |
| C/B(%) | 74.36 | 95.86 | 24.11 | 37.83 | 40.60 | 98.72 | 42.77 | 100.0 | |

※ 자료 :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지방어항

- 경기도는 5개항으로 전체의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개소임
- 경기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305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6.5%가 투자되었으며, 화성시의 전곡항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김포시, 안산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60> 지방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경기도 | 5 | 3 | | 2 | | |
| 안산시 | 2 | 1 | 풍도항 | 1 | 탄도항 | |
| 김포시 | 1 | 1 | 대명항 | - | - | |
| 화성시 | 2 | 1 | 제부항 | 1 | 전곡항 | |

<표 5.61>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기도 | 30,549 | 640 | 1,020 | 1,546 | 1,990 | 2,462 | 4,656 | 5,555 | 9,600 | 3,080 |
| 안산시 | 풍도 | 640 | - | - | - | - | - | - | - | - |
| | 탄도 | 5,064 | - | - | 772 | - | 850 | 1,817 | 1,625 | - |
| 김포시 | 대명 | 5,910 | - | 320 | 774 | 1,990 | 1,612 | 1,214 | - | - |
| 화성시 | 전곡 | 15,855 | - | 700 | - | - | - | 1,625 | 3,930 | 9,600 |

(3) 어촌정주어항

- 경기도는 8개항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4개소로 약 50%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62>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 기 도 | 10 | 4 | | 6 | | |
| 김 포 시 | 2 | 2 | 고양항, 신안항 | - | - | |
| 화 성 시 | 8 | 2 | 백미항, 송교항 | 6 | 궁평항, 매항2항, 국화항, 입파항, 고온항, 도리도항 | |

<표 5.63>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경 기 도 | 3,050 | - | - | - | - | - | 1,200 | 150 | 1,700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4개권역 사업비 18,270백만원 중 '05년말까지 1단계 2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9,270백만원을 투자하였음
- 시군별 사업권역은 화성시에 2개소 9,270백만원을 투자하였음

<표 5.6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기도 | 2 | 9,270 | 2 | 9,270 | - | - | - | - |
| 화 성 | 2 | 9,270 | 2 | 9,270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67.7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52.7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마을 중 8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2008년 1개소(화성시)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65>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기도 | 9 | 6,270 | 8 | 5,270 | - | - | 1 | 1,000 |
| 안산시 | 2 | 1,270 | 2 | 1,270 | - | - | - | - |
| 시흥시 | 1 | 500 | 1 | 500 | - | - | - | - |
| 화성시 | 6 | 4,500 | 5 | 3,500 | - | - | 1 | 1,000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화성시 전곡항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실적은 없는 상태임
- 화성시 전곡항은 2009년부터 투자될 예정임

<표 5.66>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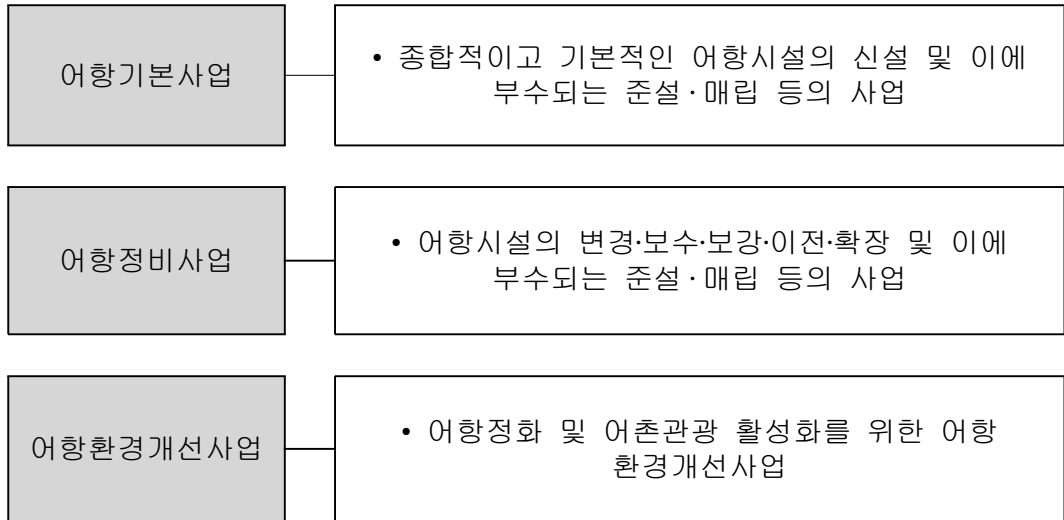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경기도 | | | 6,000 | - | - | - | -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화성시 | 전곡 | 6,000 | - | - | - | -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경기도는 국가어항이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항환경개선사업은 계획하지 않음
- 지방어항은 미완공 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67>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지정항 사업 착수 | - | - |
| 지방 어항 | • 완공률 60%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표 5.64>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계속)

◦ 중 · 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 - |
| 지방 어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2008년 우선 지정되는 6개항중 화성시에 소재한 궁평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어항개발시 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하여 개발
- 지방어항은 2007년말 현재 완공항은 3개소로 60%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완공항에 대해 4,87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 어촌정주어항의 현재 완공항은 4개항으로 40%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 계획

<표 5.68>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경기 | 총계 | 17,313 | 1,402 | 2,392 | 2,587 | 2,820 | 8,112 | |
| | 어항기본사업 | 17,313 | 1,402 | 2,392 | 2,587 | 2,820 | 8,112 | |
| | 어항정비사업 | - | - | - |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 | - | - | - | - | |

■ 중장기(2014~2023)

- 화성시에 소재한 공평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계속 추진 완료
- 지방어항은 잔여 2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표 5.69>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경 기 | 총 계 | 91,817 | 10,214 | 9,402 | 10,022 | 8,310 | 5,569 | 7,950 | 8,927 | 10,081 | 11,449 | 9,893 |
| | 어 항 기본사업 | 91,817 | 10,214 | 9,402 | 10,022 | 8,310 | 5,569 | 7,950 | 8,927 | 10,081 | 11,449 | 9,893 |
| | 어 항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70>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대부, 화성서신권역 사업추진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 1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 어촌관광형 안산 전곡항 사업 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경기지역 단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155억원, 신규시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총 185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2개권역(안산 대부II, 화성 서신)에 총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화성시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화성시 전곡항(어촌관광단지)에 60억원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71>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경 기 도 | 합 계 | 18,500 | - | 4,000 | 6,780 | 2,720 | 5,000 |
| | 어촌개발사업 | 9,000 | - | 1,500 | 1,780 | 1,720 | 4,0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500 | - | 2,500 | 4,00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경기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370억원, 신규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총 46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72>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경 기 도 | 합 계 | 46,000 | 3,388 | 3,777 | 3,982 | 4,200 | 4,459 | 4,685 | 4,955 | 5,227 | 5,512 | 5,815 |
| | 어촌개발사업 | 25,000 | 1,964 | 2,071 | 2,175 | 2,286 | 2,429 | 2,535 | 2,679 | 2,811 | 2,950 | 3,1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2,000 | 911 | 966 | 1,023 | 1,084 | 1,150 | 1,218 | 1,289 | 1,368 | 1,453 | 1,538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9,000 | 513 | 740 | 784 | 830 | 880 | 932 | 987 | 1,048 | 1,109 | 1,177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1,73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73>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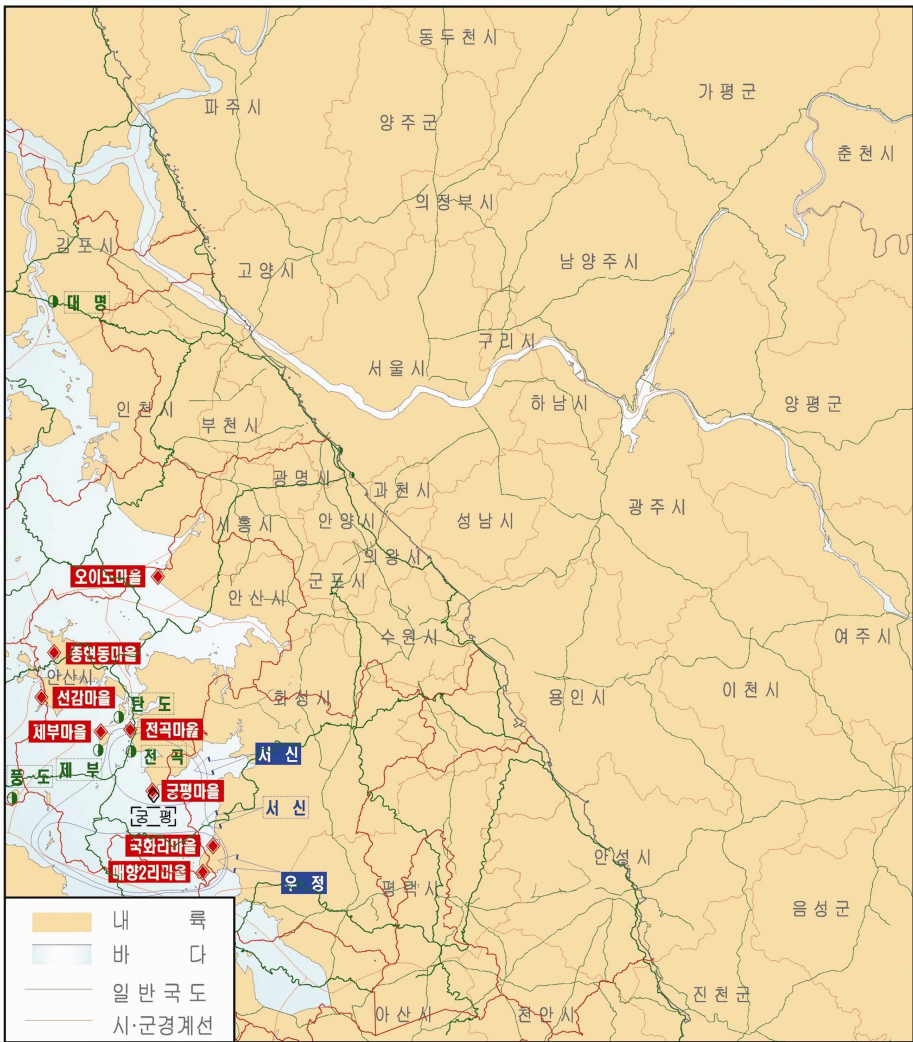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173,630 | 35,813 | 137,817 | |
| 어항개발 | 109,130 | 17,313 | 91,817 | |
| 어촌개발 | 64,500 | 18,500 | 46,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999억원, 중장기 3,876억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759명, 중장기 2,586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기도)



<그림 5.8> 경기도 계획 현황도

[경기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3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8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1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5 |
| ■ | 사업완료 | 9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1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50,126 | 2,804 | 8,785 | 10,954 | 7,360 | 20,223 | |
| 어항 | 소계 | 34,626 | 2,804 | 4,785 | 5,174 | 5,640 | 16,223 |
| | 어항기본사업 | 34,626 | 2,804 | 4,785 | 5,174 | 5,640 | 16,223 |
| | 어항정비사업 | - | - | -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 | - | - | - | - |
| 어촌 | 소계 | 15,500 | - | 4,000 | 5,780 | 1,720 | 4,000 |
| | 어촌개발사업 | 9,000 | - | 1,500 | 1,780 | 1,720 | 4,0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500 | - | 2,500 | 4,000 | - | - |

제 5 장 강 원 도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의 4시 2개군을 개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2시) :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 군 지역(2군) : 양양군, 고성군

(단위 : 개소)

| 구 | 분 | 시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 강 | 원 | 도 | 4 | 2 | 77 | 14 | 14 | 24 | 7 |



<그림 5.9>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강원도 내에는 77개 어촌계가 속해있으며, 어촌계지역 시군의 인구 191,827명 중 9.3%에 해당하는 17,778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연간어획량은 49,951M/T로 전국 연간 어획량의 4.4%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146,29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금액의 9.1%에 해당함
-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1,750M/T을 생산하는 고성군이며, 가장 적은 곳은 양양군으로 연간 384M/T을 생산함.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2,438천원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 25,727천원으로 조사됨

<표 5.74>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강원(B) | 76,812 | 7,777 | 191,827 | 17,778 | 77 | 5,750 | 49,951 | 146,299 | 22,438 |
| 삼척시 | 11,853 | 1,383 | 21,522 | 5,309 | 15 | 1,109 | 11,772 | 36,915 | 25,176 |
| 동해시 | 15,459 | 1,100 | 40,455 | 1,765 | 5 | 570 | 7,553 | 20,924 | 19,701 |
| 강릉시 | 33,856 | 1,628 | 84,340 | 4,390 | 8 | 956 | 11,147 | 29,681 | 24,486 |
| 속초시 | 6,619 | 1,084 | 22,704 | 1,793 | 21 | 981 | 8,248 | 17,988 | 19,804 |
| 양양군 | 6,995 | 2,029 | 17,967 | 3,605 | 15 | 1,750 | 8,028 | 29,949 | 19,735 |
| 고성군 | 2,030 | 553 | 4,839 | 916 | 13 | 384 | 3,203 | 10,842 | 25,727 |
| B/A(%) | 6.2 | 4.7 | 5.7 | 5.9 | 3.9 | 3.8 | 4.4 | 9.1 | 103.5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는 27%, 자립형 어촌계가 30%, 성장형 어촌계는 43%로 복지형 어촌계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등 발전정도가 전국 평균 발전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원 관할 76개 어촌계에 대한 어촌계의 유형을 어업별 유형과 어촌계 소재지의 입지여건으로 분석한 유형에서 어업별 유형은 어선어업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별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어촌계는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상 도서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는 전혀 없으며, 교통 및 통신이 불편하여 도시민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75>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강원 | 77 | 21 | 23 | 33 | 69 | - | 8 | 29 | - | 48 |
| | 삼척시 | 27% | 30% | 43% | 90% | 0% | 10% | 37% | 0% | 63% |
| 강릉시 | 5 | 3 | 2 | - | 4 | - | 1 | 4 | - | 1 |
| 동해시 | 21 | 9 | 2 | 10 | 17 | - | 4 | 5 | - | 16 |
| 속초시 | 15 | 1 | 2 | 126 | 14 | - | 1 | 11 | - | 4 |
| 양양군 | 8 | - | 2 | 6 | 7 | - | 1 | 8 | - | - |
| 고성군 | 13 | 2 | 7 | 4 | 13 | - | 0 | - | - | 13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강원도의 총 어선수는 3,969척으로 전국 91,609척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24,296톤으로 척당 6.1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064척으로 26.8%, 1~5톤미만 어선이 2,020척으로 가장 많은 50.8%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885척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음
- 시군별로 고성군 동력선의 척수가 22.4%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강릉시가 19.6%, 삼척시가 15.8%임

<표 5.76>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강원(B) | 3,827 | 24,189.86 | 142 | 106.73 | 1,064 | 2,020 | 497 | 388 | |
| 연안(C) | 3780 | 24044.5 | 96 | 97.09 | 704 | 2014 | 497 | 388 | |
| 연안 시군 | 강릉시 | 749 | 5,378.15 | 21 | 21.44 | 179 | 425 | 83 | 83 |
| | 동해시 | 636 | 3,788.20 | 3 | 0.9 | 34 | 209 | 53 | 70 |
| | 속초시 | 567 | 7,616.31 | 10 | 6.07 | 35 | 292 | 129 | 121 |
| | 삼척시 | 604 | 2,517.50 | 30 | 33.56 | 186 | 327 | 85 | 36 |
| | 고성군 | 859 | 3,605.89 | 16 | 15.55 | 171 | 530 | 116 | 58 |
| | 양양군 | 365 | 1,138.45 | 16 | 19.57 | 99 | 231 | 31 | 20 |
| | 내륙시군 | 320 | 145.36 | 46 | 9.64 | 360 | 6 | - | - |
| 내륙 시군 | 춘천시 | 132 | 55.6 | 5 | 1.41 | 134 | 3 | - | - |
| | 원주시 | 13 | 4.6 | 2 | 0.45 | 15 | - | - | - |
| | 태백시 | - | - | - | - | - | - | - | - |
| | 홍천군 | 21 | 5.7 | 4 | 0.71 | 25 | - | - | - |
| | 횡성군 | - | - | - | - | - | - | - | - |
| | 영원군 | - | - | 17 | 4.62 | 17 | - | - | - |
| | 평창군 | - | - | 5 | 0.41 | 5 | - | - | - |
| | 정선군 | - | - | 8 | 1.65 | 8 | - | - | - |
| | 철원군 | 2 | 0.69 | 5 | 0.39 | 7 | - | - | - |
| | 화천군 | 44 | 23.35 | - | - | 43 | 1 | - | - |
| | 양구군 | 42 | 21.59 | - | - | 41 | 1 | - | - |
| | 인제군 | 66 | 33.83 | - | - | 65 | 1 | - | - |
| B/A(%) | 4.3 | 3.2 | 4.5 | 3.6 | 3.6 | 4.3 | 5.7 | 5.3 | |
| C/B(%) | 98.8 | 99.4 | 67.6 | 91.0 | 66.2 | 99.7 | 100.0 | 100.0 | |

※ 자료 : 강원도, 「강원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강원도는 14개항으로 전체의 약 13%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3개소로 경상남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93%임
- 강원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2,853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1.3%가 투자되었으며, 강릉시가 885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 속초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77> 국가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강원도 | 14 | 13 | | 1 | | |
| 강릉시 | 3 | 3 | 사천진항, 금진항, 안목항 | - | - | |
| 속초시 | 1 | 1 | 대포항 | - | - | |
| 삼척시 | 4 | 3 | 덕산항, 장호항, 임원항 | 1 | 궁촌항 | |
| 고성군 | 4 | 4 | 대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공현진항 | - | - | |
| 양양군 | 2 | 2 | 남애항, 수산항 | - | - | |

<표 5.78>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강원도 | 285,284 | 125,970 | 18,493 | 19,201 | 13,396 | 12,087 | 15,350 | 27,222 | 24,871 | 28,694 |
| 강릉시 | 사천진 | 6,988 | 5,839 | - | - | - | 1,149 | - | - | - |
| | 안목 | 74,132 | 30,132 | 6,381 | 6,105 | 2,725 | 5,396 | 5,989 | 7,610 | 3,000 |
| | 금진 | 7,368 | 7,203 | - | - | 165 | - | - | - | - |
| 속초시 | 대포 | 26,180 | 981 | 199 | - | - | - | 8,000 | 8,500 | 8,500 |
| 삼척시 | 덕산 | 5,947 | 5,548 | 81 | - | 266 | 52 | - | - | - |
| | 궁촌 | 8,493 | - | - | - | - | - | 1,993 | 2,000 | 4,500 |
| | 장호 | 9,432 | 9,432 | - | - | - | - | - | - | - |
| 고성군 | 임원 | 17,903 | 4,008 | 2,632 | 3,157 | 3,195 | 1,316 | 3,043 | 552 | - |
| | 대진 | 13,972 | 7,700 | 174 | - | - | - | 898 | - | 3,000 |
| | 거진 | 13,877 | 10,336 | 1,205 | 1,000 | 1,076 | - | 260 | - | - |
| 양양군 | 공현진 | 22,682 | - | 750 | 996 | 5,969 | 4,000 | 2,998 | 3,098 | 4,871 |
| | 아야진 | 16,667 | 8,011 | - | 19 | - | - | 946 | 2,991 | 2,000 |
| | 수산 | 46,457 | 31,203 | 6,125 | 7,139 | - | 174 | 216 | - | - |
| 남애 | 15,186 | 5,577 | 946 | 785 | - | - | 1,000 | 2,978 | 1,500 | 2,400 |

(2) 지방어항

- 강원도는 14개항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4개소로 약 29%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 강원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424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9.1%가 투자되었으며, 삼척시가 147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양양군, 고성군, 강릉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79>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강 원 도 | 14 | 4 | | 10 | | |
| 강 릉 시 | 2 | - | - | 2 | 우암진항, 영진항 | |
| 삼 척 시 | 3 | 2 | 호산항, 신남항 | 1 | 초곡항 | |
| 고 성 군 | 7 | 1 | 봉포항 | 6 | 가진항, 문암1리항, 문암2리항, 천진항, 오호항, 교암항 | |
| 양 양 군 | 2 | 1 | 물치항 | 1 | 동산항 | |

<표 5.80>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강 원 도 | 42,442 | 3,640 | 4,400 | 4,660 | 5,130 | 5,838 | 4,399 | 4,375 | 5,000 | 5,000 |
| 강 릉 시 | 우암진 | - | - | - | - | - | - | - | - | - |
| | 영진 | 1,000 | - | - | - | - | - | - | 1,000 | - |
| 삼 척 시 | 초곡 | 7,168 | 710 | 811 | 932 | 1,026 | 959 | 880 | 850 | 1,000 |
| | 호산 | 1,625 | 710 | 915 | - | - | - | - | - | - |
| 고 성 군 | 신남 | 5,881 | - | 234 | 932 | 1,026 | 959 | 880 | 850 | 1,000 |
| | 봉포 | 6,300 | 720 | 807 | 932 | 1,026 | 960 | 880 | 975 | - |
| 양 양 군 | 가진 | 2,729 | - | - | - | - | 879 | 850 | 1,000 | - |
| | 물치 | 5,473 | 720 | 795 | 932 | 1,026 | 2,000 | - | - | - |
| 동 산 | 7,266 | 780 | 838 | 932 | 1,026 | 960 | 880 | 850 | 1,000 | |

(3) 어촌정주어항

- 강원도는 19개항으로 전체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2개소로 약 10%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81>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강 원 도 | 24 | 6 | | 18 | | |
| 강 릉 시 | 3 | 2 | 안인진항, 심곡항 | 1 | 정동항 | |
| 동 해 시 | 3 | 1 | 어달항 | 2 | 대진항, 천곡항 | |
| 속 초 시 | 2 | - | - | 2 | 사진항, 내물치항 | |
| 삼 척 시 | 9 | - | - | 9 | 대진항, 갈남항, 노곡항, 작진항, 후진항, 광진항, 용화항, 비화항, 월전항 | |
| 고 성 군 | 2 | 1 | 반암항 | 1 | 초도항 | |

<표 5.82>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강 원 도 | 25,694 | - | - | - | - | - | 6,393 | 5,634 | 13,667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17개권역 사업비 609억원 중 '06년말까지 1단계 13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49억원을 투자하였음
- '08년말까지 2단계 1개권역을 계속추진하고 사업비는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사업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강릉시 3개소, 동해시 1개소, 속초시 1개소, 삼척시 2개소, 고성군 3개소, 양양군 3개소를 시행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삼척시 원덕권역을 추진중임

<표 5.83>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강원도 | 14 | 48,347 | 13 | 44,972 | 1 | 1,375 | (1) | 2,000 |
| 강릉시 | 3 | 10,500 | 3 | 10,500 | | | | |
| 동해시 | 1 | 3,500 | 1 | 3,500 | | | | |
| 속초시 | 1 | 3,500 | 1 | 3,500 | | | | |
| 삼척시 | 3 | 10,744 | 2 | 7,399 | 1 | 1,375 | (1) | 2,000 |
| 고성군 | 3 | 9,548 | 3 | 9,548 | | | | |
| 양양군 | 3 | 10,525 | 3 | 10,525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45억원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9개 마을 중 6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2008년 까지 2개소 추가 완료 예정임
- 시군별로는 강릉시 2개소, 동해시 1개소, 속초시 1개소, 삼척시 1개소, 고성군 1개소, 양양군 1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였고 고성군 1개소는 2008년 시행예정임

<표 5.8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강원도 | 8 | 4,000 | 6 | 4,000 | 1 | 500 | 1 | 500 |
| 강릉시 | 2 | 1,000 | 1 | 500 | 1 | 500 | - | - |
| 동해시 | 1 | 500 | 1 | 500 | - | - | - | - |
| 속초시 | 1 | 500 | 1 | 500 | - | - | - | - |
| 삼척시 | 1 | 1,500 | 1 | 1,500 | - | - | - | - |
| 고성군 | 2 | 1,000 | 1 | 500 | - | - | 1 | 500 |
| 양양군 | 1 | 500 | 1 | 50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강릉시 강릉항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08년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동해시 대진항은 총사업비 60억원이며 2007년 사업완료 하였음

<표 5.85>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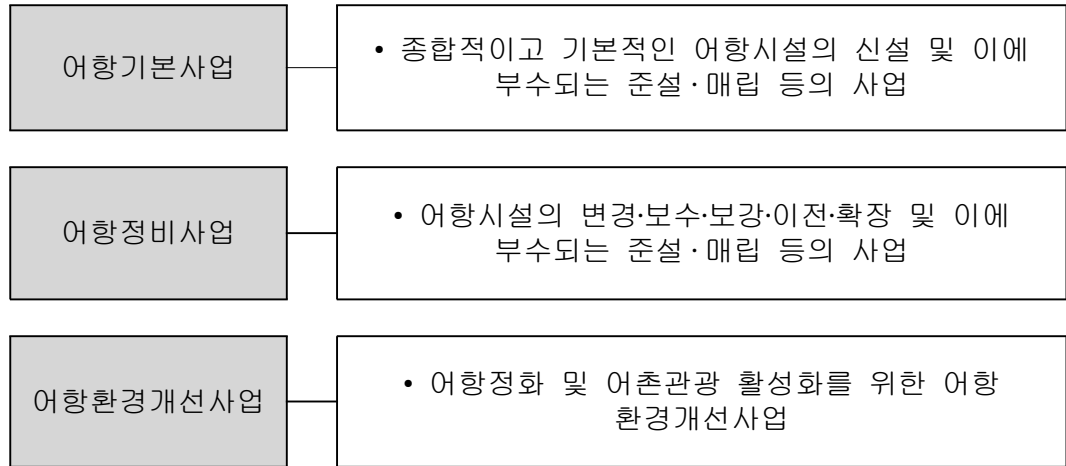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강원 | | | 11,000 | 6,000 | 2,000 | 4,000 | -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강릉시 | 강릉항 | 5,000 | - | - | - | 2,000 |
| | 동해시 | 대진항 | 6,000 | 6,000 | 2,000 | 4,000 | -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1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4개항)은 2013년까지 모두 완료, 향후 중장기계획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86>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공촌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 • 대진항, 아야진항 어항 정비사업 완료 | • 대포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집중투자로 완공률 43% 이상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3년 계속투자항에 대한 완공률 100%를 목표로 하였으며, 강원도는 2012년 삼척시의 공촌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33,208백만원을 투자하여 2개항을 완공, 완공을 43%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어촌정주어항은 계속 투자하여 완공을 제고
- 현재 6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고성군의 대진항, 아야진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안목항은 2008년 완공 예정이며, 속초시의 대포항은 2009년 다기능어항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87>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강 원 | 총 계 | 124,172 | 21,868 | 23,603 | 23,324 | 24,655 | 30,722 | |
| | 어항기본사업 | 60,687 | 12,152 | 13,534 | 16,410 | 9,017 | 9,574 | |
| | 어항정비사업 | 28,905 | 4,670 | 9,235 | 2,000 | 5,000 | 8,000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34,580 | 5,046 | 834 | 4,914 | 10,638 | 13,148 | |

■ 중장기(2014~2023)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항을 완공, 완공을 100% 목표
- 중·장기 계획에서는 설계파고 상황조정 등을 반영한 국가어항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표 5.88>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강 원 | 총 계 | 497,850 | 46,626 | 48,448 | 50,808 | 52,380 | 53,808 | 49,122 | 49,786 | 50,075 | 49,882 | 46,915 |
| | 어항기본사업 | 98,787 | 10,701 | 11,235 | 11,795 | 12,383 | 13,002 | 7,739 | 8,130 | 8,541 | 8,973 | 6,288 |
| | 어항정비사업 | 202,385 | 20,057 | 20,097 | 20,138 | 20,178 | 20,218 | 20,258 | 20,299 | 20,339 | 20,380 | 20,421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196,678 | 15,868 | 17,116 | 18,875 | 19,819 | 20,588 | 21,125 | 21,357 | 21,195 | 20,529 | 20,206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89>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형 강릉 안목항 사업 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4개권역에 총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시행권역 : 삼척 원덕(50억), 강원북부 내수면(50억), 강릉 강동(30억), 양양 강현(30억) 총 4개권역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속초시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강릉시 안목항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90>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강 원 도 | 합 계 | 19,125 | 4,705 | 3,000 | 3,920 | 3,500 | 4,000 |
| | 어촌개발사업 | 12,625 | 2,205 | 2,000 | 2,920 | 2,500 | 3,0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3,500 | 2,500 | 1,000 | -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강원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730억원, 신규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하여 총 85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임

<표 5.91>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강 원 도 | 합 계 | 85,000 | 6,369 | 6,993 | 7,366 | 7,761 | 8,241 | 8,650 | 9,143 | 9,634 | 10,149 | 10,694 |
| | 어촌개발사업 | 55,000 | 4,321 | 4,558 | 4,785 | 5,028 | 5,343 | 5,579 | 5,893 | 6,183 | 6,490 | 6,8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8,000 | 1,365 | 1,449 | 1,536 | 1,626 | 1,725 | 1,828 | 1,934 | 2,053 | 2,179 | 2,305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12,000 | 683 | 986 | 1,045 | 1,107 | 1,173 | 1,243 | 1,316 | 1,398 | 1,480 | 1,569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7,26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92>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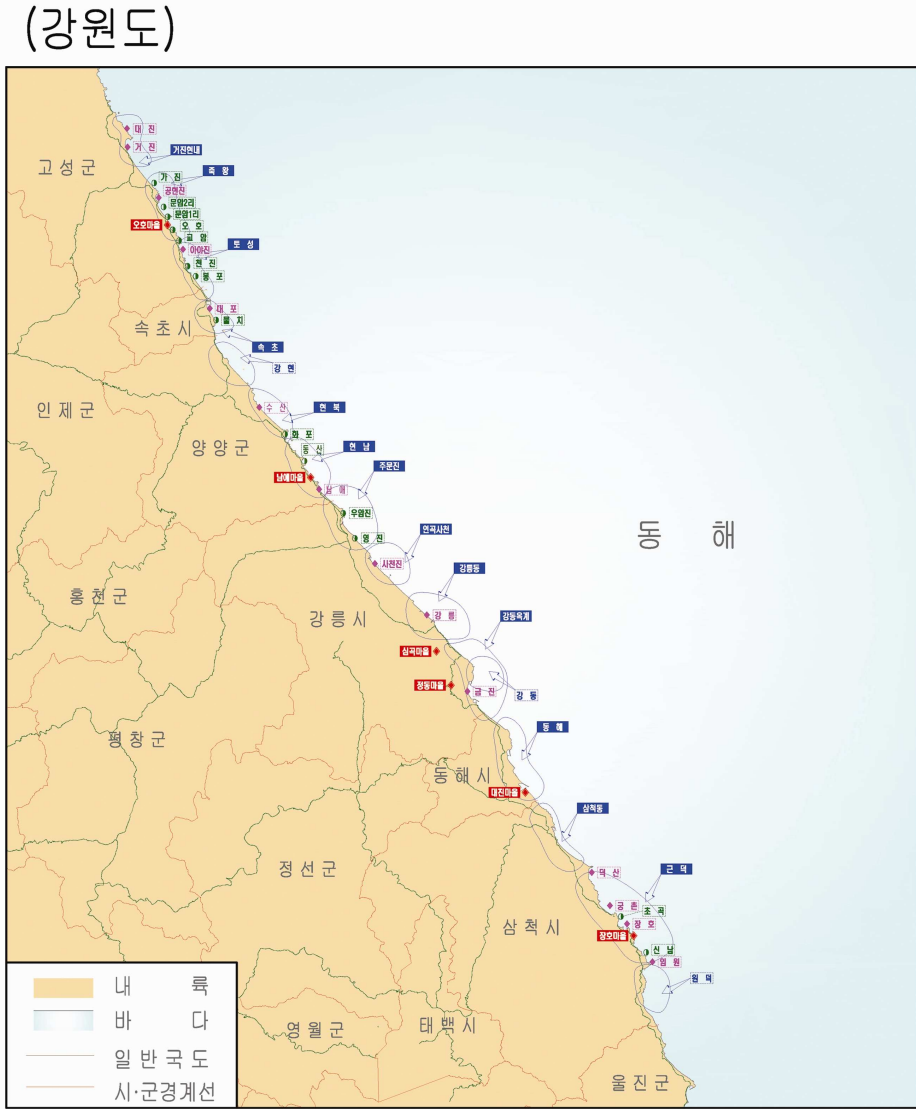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726,147 | 143,297 | 582,850 | |
| 어항개발 | 622,022 | 124,172 | 497,850 | |
| 어촌개발 | 104,125 | 19,125 | 85,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4,068억원, 중장기 1조 6,532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2,501명, 중장기 10,280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10> 강원도 계획 현황도



[강원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16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14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14 |
| ■ | 사업완료 | 17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3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200,984 | 28,725 | 40,137 | 42,654 | 36,172 | 43,296 | |
| 어항 | 소계 | 184,859 | 34,020 | 37,137 | 39,734 | 33,672 | 40,296 |
| | 어항기본사업 | 121,374 | 24,304 | 27,068 | 32,820 | 18,034 | 19,148 |
| | 어항정비사업 | 28,905 | 4,670 | 9,235 | 2,000 | 5,000 | 8,000 |
| 어촌 | 소계 | 16,125 | 4,705 | 3,000 | 2,920 | 2,500 | 3,000 |
| | 어촌개발사업 | 12,625 | 2,205 | 2,000 | 2,920 | 2,500 | 3,0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3,500 | 2,500 | 1,000 | - | - | - |

제 6 장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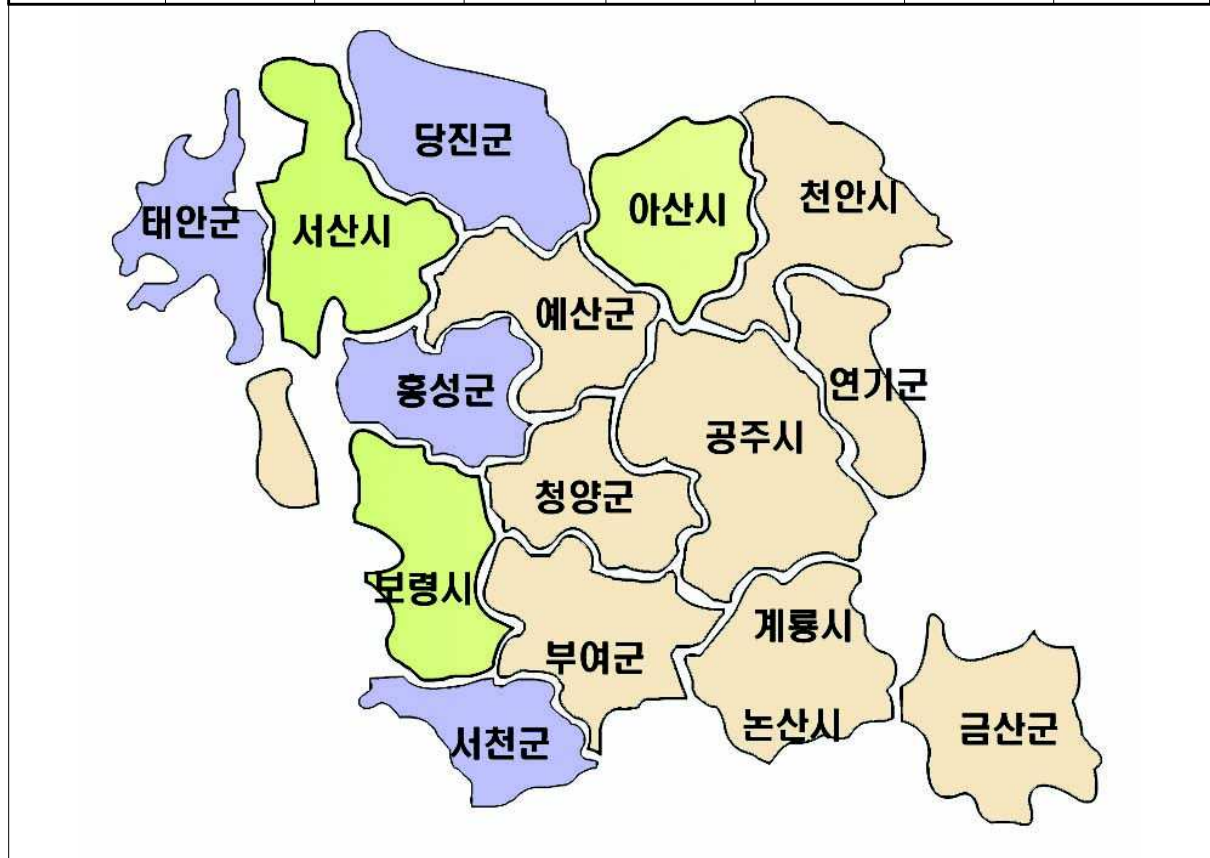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의 3시 4군을 개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 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3시) :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 군 지역(4군) : 당진군,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단위 : 개소)

| 구분 | 구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충청남도 | 3 | 4 | 140 | 7 | 29 | 16 | 42 |



<그림 5.11>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2006년말 기준 충청남도의 전체 어가수는 14,098호로 전국어가수의 8.6%에 해당하며, 충남에서 어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태안군으로 총 7,940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충남의 어촌계수는 총 140개로 태안군에 속한 어촌계수가 75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보령시(20개), 서천군(16개소)임
- 연간 어획량은 27,544M/T, 어획금액은 190,58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2.4%, 어획금액의 11.9%에 해당하는 비율임
- 충청남도지역 중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9,765M/T을 생산한 서천군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보령시(25,964천원)로 조사됨

<표 5.93>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충남(B) | 44,646 | 14,098 | 94,723 | 23,494 | 140 | 12,070 | 27,544 | 190,589 | 23,004 |
| 보령시 | 14,006 | 3,841 | 26,356 | 7,180 | 20 | 2,485 | 6,064 | 24,469 | 25,964 |
| 서산시 | 1,766 | 1,478 | 4,053 | 1,384 | 15 | 905 | 2,252 | 8,357 | 15,143 |
| 서천군 | 9,679 | 1,922 | 20,945 | 3,289 | 16 | 1,477 | 9,765 | 116,880 | 23,278 |
| 홍성군 | 1,139 | 591 | 2,863 | 1,619 | 6 | 555 | 2 | 14 | 23,675 |
| 태안군 | 10,881 | 5,497 | 22,939 | 7,940 | 75 | 5,018 | 8,454 | 36,746 | 24,103 |
| 당진군 | 5,882 | 716 | 14,322 | 1,937 | 7 | 1,621 | 1,007 | 4,123 | 25,864 |
| 아산시 | 1,293 | 53 | 3,245 | 145 | 1 | 9 | - | - | - |
| B/A(%) | 3.6 | 8.6 | 2.8 | 7.8 | 7.1 | 8.0 | 2.4 | 11.9 | 106.1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11%, 자립형 어촌계가 30%, 성장형 어촌계는 59%로 대부분의 어촌계가 경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양식어업형이 51%로 과반수이상이며, 양식종으로는 주로 굴, 가무락 등임. 그 외 복합어업형 29%, 어선어업형 19% 순으

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불과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11%였고, 그 외 연안촌락형은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94>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락지구 | 연안촌락 |
| 전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총남 | 140 | 16 | 42 | 82 | 27 | 72 | 41 | 7 | 16 | 117 |
| | 100% | 11% | 30% | 59% | 19% | 51% | 29% | 5% | 11% | 84% |
| 보령시 | 20 | 2 | 11 | 7 | - | 9 | 11 | 3 | 10 | 7 |
| 서산시 | 15 | 2 | 5 | 8 | 2 | 11 | 2 | - | 2 | 13 |
| 서천군 | 16 | 5 | 3 | 8 | 9 | - | 7 | 4 | - | 12 |
| 홍성군 | 6 | - | 2 | 4 | 0 | 4 | 2 | - | 1 | 5 |
| 태안군 | 75 | 6 | 18 | 51 | 12 | 44 | 19 | - | 2 | 73 |
| 당진군 | 7 | 1 | 3 | 3 | 3 | 4 | - | - | 1 | 6 |
| 아산시 | 1 | - | - | 1 | 1 | - | - | - | - | 1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충청남도의 총 어선수는 6,517척으로 전국 91,609척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22,230톤으로 척당 3.4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943척으로 29.8%를 차지하고 1~5톤 미만의 어선이 3,409척으로 52.3%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1,165척으로 17.8%임
-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에 있는 태안군의 동력선의 척수가 1,792척(27.9%)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서천군이 23.1%, 보령시 21.2%의 비

중을 보임

<표 5.95> 어선세력 현황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충남(B) | 6,420 | 22,174.98 | 97 | 55.93 | 1,943 | 3,409 | 973 | 192 | |
| 연안(C) | 6,327 | 15,990.23 | 64 | 49.13 | 1,831 | 3,396 | 972 | 192 | |
| 연안 시 군 | 보령시 | 1,361 | 6,807.27 | 27 | 19.05 | 279 | 723 | 306 | 80 |
| | 서산시 | 648 | 1,506.08 | 2 | 6.79 | 229 | 366 | 48 | 7 |
| | 서천군 | 1,486 | 4,077.67 | 5 | 1.98 | 513 | 767 | 174 | 37 |
| | 홍성군 | 207 | 444.80 | 2 | 0.45 | 66 | 125 | 18 | - |
| | 태안군 | 1,792 | 7,537.56 | 26 | 16.82 | 412 | 959 | 382 | 65 |
| | 당진군 | 731 | 1,702.26 | 2 | 4.04 | 233 | 453 | 44 | 3 |
| | 아산시 | 102 | 41.59 | - | - | 99 | 3 | - | - |
| 내륙시군 | 93 | 57.75 | 33 | 6.8 | 112 | 13 | 1 | - | |
| 내륙 시 군 | 천안시 | - | - | - | - | - | - | - | - |
| | 공주시 | 6 | 2.41 | - | - | 6 | | | |
| | 논산시 | 3 | 3.67 | 27 | 5.41 | 29 | 1 | | |
| | 계룡시 | - | - | - | - | - | - | - | - |
| | 금산군 | 6 | 1.26 | - | - | 6 | | | |
| | 연기군 | - | - | - | - | - | - | - | - |
| | 부여군 | 31 | 32.79 | - | - | 18 | 12 | 1 | - |
| | 청양군 | - | - | - | - | - | - | - | - |
| | 예산군 | 47 | 17.62 | 6 | 1.39 | 53 | - | - | - |
| B/A(%) | 7.26 | 33.65 | 3.04 | 1.89 | 6.49 | 7.27 | 11.08 | 2.64 | |
| C/B(%) | 98.6 | 99.7 | 66.0 | 87.8 | 94.2 | 99.6 | 99.9 | 100.0 | |

※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충청남도는 7개항으로 전체의 약 7%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5개소로 충청남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71%임
- 충청남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1,309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9.6%가 투자되었으며, 태안군이 394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순으로 투자됨

<표 5.96> 국가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충청남도 | 7 | 5 | | 2 | | |
| 보령시 | 2 | 2 | 오천항, 외연도항 | - | - | |
| 서산시 | 1 | - | - | 1 | 삼길포항 | |
| 서천군 | 1 | 1 | 홍원항 | - | - | |
| 홍성군 | 1 | - | - | 1 | 남당항 | |
| 태안군 | 2 | 2 | 안흥항, 모항항 | - | - | |

<표 5.97>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충청남도 | 197,925 | 76,799 | 10,399 | 11,496 | 15,887 | 16,405 | 15,336 | 16,359 | 15,888 | 19,356 | |
| 보령시 | 오천 | 20,047 | 6,957 | 2,800 | 2,000 | 1,890 | 1,500 | 1,700 | 1,700 | 1,500 | - |
| | 외연도 | 14,025 | 7,420 | - | 1,000 | 1,500 | 1,405 | 1,000 | 1,700 | - | - |
| 서산시 | 삼길포 | 16,631 | - | - | - | 998 | 2,000 | 3,000 | 3,500 | 4,000 | 3,133 |
| 서천군 | 홍원 | 32,500 | 14,900 | - | 1,000 | 1,500 | 2,000 | 1,500 | 1,500 | 4,000 | 6,100 |
| 홍성군 | 남당 | 32,148 | 37 | 1,000 | 1,500 | 4,000 | 3,000 | 3,000 | 3,500 | 6,388 | 9,723 |
| 태안군 | 모항 | 44,345 | 22,396 | 5,000 | 4,996 | 4,999 | 3,000 | 1,977 | 1,977 | - | - |
| | 안흥 | 38,229 | 25,089 | 1,599 | 1,000 | 1,000 | 3,500 | 3,159 | 2,482 | - | 400 |

(2) 지방어항

- 충청남도는 29개항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7개소로 약 58%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98>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충청남도 | 29 | 17 | | 12 | | |
| 당진군 | 3 | - | | 3 | 성구미항, 난지도항, 장고항 | |
| 보령시 | 8 | 7 | 고대도항, 무창포항, 효자도항, 장고도항, 호도항, 삼시도항, 원산도항 | 1 | 녹도항 | |
| 서산시 | 1 | - | - | 1 | 간월도항 | |
| 서천군 | 2 | - | - | 2 | 월하성항, 송석항 | |
| 태안군 | 12 | 7 | 몽산포항, 만리포항, 천리포항, 백사장항, 여은돌항, 영목항, 학암포항 | 5 | 방포항, 마검포항, 통개항, 가의도항, 채석포항 | |
| 홍성군 | 3 | 3 | 판교항, 어사항, 궁리항 | - | - | |

- 충청남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559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1.9%가 투자되었으며, 보령시가 238억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되었으며, 태안군, 당진군, 서산시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홍성군은 3개항이 모두 완공되어 2000이후 투자실적 없음

<표 5.99>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충청남도 | 55,872 | 3,240 | 3,920 | 4,630 | 5,000 | 5,356 | 3,750 | 8,000 | 9,200 | 12,776 |
| 보령시 | 장고도 | - | - | - | - | - | - | - | - | - |
| | 호도 | 5,000 | - | - | 770 | 950 | 1,000 | 1,000 | - | 1,280 |
| | 삼시도 | 6,575 | 1,022 | 700 | 772 | 800 | 848 | 563 | 1,000 | 870 |
| | 녹도 | 7,247 | - | 700 | 772 | 800 | 838 | 437 | 1,900 | 1,800 |
| | 원산도 | 4,997 | - | - | 772 | 950 | 1,000 | 875 | 1,400 | - |
| 서산시 | 간월도 | 2,030 | - | - | - | - | - | - | 1,030 | 1,000 |
| 홍성군 | 판교 | - | - | - | - | - | - | - | - | - |
| | 어사 | - | - | - | - | - | - | - | - | - |
| | 궁리 | - | - | - | - | - | - | - | - | - |
| 태안군 | 천리포 | - | - | - | - | - | - | - | - | - |
| | 백사장 | 1,345 | 740 | 605 | - | - | - | - | - | - |
| | 학암포 | 5,002 | 738 | 700 | 772 | 750 | 835 | 437 | 770 | - |
| | 영목 | 515 | - | 515 | - | - | - | - | - | - |
| | 여은돌 | 1,550 | - | - | - | - | - | - | - | 1,550 |
| | 통개 | 1,600 | - | - | - | - | - | - | - | 1,600 |
| 당진군 | 장고 | 7,235 | 740 | 700 | 772 | 750 | 835 | 438 | 1,900 | 1,100 |

(3) 어촌정주어항

- 충청남도는 16개항으로 전체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없음

<표 5.100>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충청남도 | 16 | - | | 16 | | |
| 보령시 | 2 | - | - | 2 | 죽도항, 학성항 | |
| 태안군 | 14 | - | - | 14 | 개목항, 당암항, 만대항, 연포항, 정산포항, 청산항, 황도항, 황포항, 황골항, 의점포항, 가경주항, 탄개포항, 고남항, 대야도항 | |

<표 5.101>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충청남도 | 4,930 | - | - | - | - | - | 960 | 1,070 | 2,900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06년말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사업 권역이 총 13개이며, 이 중 1단계 10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 3개 권역은 2013년까지 완료 예정
- 총 사업비는 49,257백만원 중 2006년말까지 35,257백만원이 투자되었음
- 시군별 투자실적으로 1단계 사업은 보령, 태안이 각 3개소이고 서산, 서천, 홍성, 당진이 각 1개소로 총 10개권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태안 태안 II 권역은 2007년부터 2009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임

<표 5.102>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계 | | 실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총 남 | 11 | 38,757 | 10 | 35,257 | 1 | 1,375 | (1) | 2,125 |
| 보령 | 3 | 9,582 | 3 | 9,582 | - | - | - | - |
| 서산 | 1 | 3,453 | 1 | 3,453 | - | - | - | - |
| 서천 | 1 | 4,156 | 1 | 4,156 | - | - | - | - |
| 홍성 | 1 | 4,528 | 1 | 4,528 | - | - | - | - |
| 태안 | 3 | 13,538 | 3 | 10,038 | 1 | 1,375 | (1) | 2,125 |
| 당진 | 1 | 3,500 | 1 | 3,500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63.3억원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43.3억원을 투자하여 11개 마을 중 7개 마을 지원하였고 잔여 4개소는 2009년 이후 시행예정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 시군별로는 서천시 4개소, 태안군 3개소로 총 7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잔여 4개소는 태안에 3개소, 서천에 1개소로 2009년 이후 사업 시행예정

<표 5.10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시·군 | 합계 | | 실적 (2001~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총 남 | 7 | 4,330 | 7 | 4,330 | - | - | - | - |
| 보령 | - | - | - | - | - | - | - | - |
| 서산 | - | - | - | - | - | - | - | - |
| 서천 | 4 | 2,830 | 4 | 2,830 | - | - | - | - |
| 홍성 | - | - | - | - | - | - | - | - |
| 태안 | 3 | 1,500 | 3 | 1,500 | - | - | - | - |
| 당진 | - | - | - | -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보령시 무창포항에 2007년 60억이 투자되었음

<표 5.104>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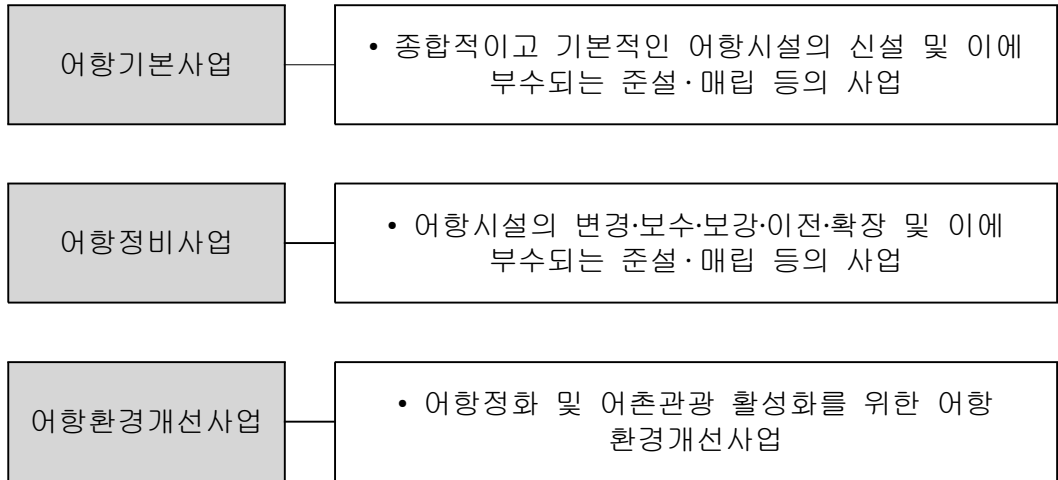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총 남 | | | 6,000 | 6,000 | - | 6,000 | -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보령시 | 무창포항 | 6,000 | 6,000 | - | 6,000 | -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삼길포항의 어항기본사업 2009년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5개항)은 2013년까지 1개항을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05>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길포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추가지정항 사업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흥항, 오천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원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투자로 완공률 80% 이상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충청남도는 2010년 서산시의 삼길포항을 완공, 어항기본사업 완료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2008년 우선 지정되는 6개항중 당진군에 소재한 장

- 고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53,745백만원을 투자하여 6개항을 완공, 완공율 82%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어촌정주어항은 계속 투자하여 완공을 제고
- 현재 5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안흥항, 오천항은 단기계획 내에 어항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흥원항은 2010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06>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총 남 | 총 계 | 126,568 | 20,860 | 23,791 | 21,086 | 26,521 | 34,310 | |
| | 어항기본사업 | 74,912 | 14,726 | 16,563 | 11,292 | 13,203 | 19,128 | |
| | 어항정비사업 | 23,948 | - | - | 7,338 | 8,000 | 8,610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7,708 | 6,134 | 7,228 | 2,456 | 5,318 | 6,572 | |

■ 중장기(2014~2023)

- 당진군에 소재한 장고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추진 완료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5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잔여 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의 완료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에 따른 어항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 확충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107>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총 남 | 총 계 | 392,605 | 39,126 | 41,528 | 43,723 | 43,212 | 41,621 | 35,649 | 35,922 | 35,913 | 37,228 | 38,683 |
| | 어항 기본사업 | 193,071 | 21,163 | 22,921 | 24,216 | 23,214 | 21,218 | 14,957 | 15,094 | 15,145 | 16,773 | 18,370 |
| | 어항 정비사업 | 101,193 | 10,029 | 10,049 | 10,069 | 10,089 | 10,109 | 10,129 | 10,149 | 10,170 | 10,190 | 10,210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98,341 | 7,934 | 8,558 | 9,438 | 9,909 | 10,294 | 10,563 | 10,679 | 10,598 | 10,265 | 10,103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08>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마을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현황 없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태안 태안II 권역(15억), 홍성 홍성권역(50억), 서산 지곡권역(40억)에 총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마을사업은 태안 3개소, 서천 1개소에 시행하며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109>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총청년도 | 합계 | 15,500 | 500 | 2,000 | 2,500 | 2,000 | 8,500 |
| | 어촌개발사업 | 10,500 | - | 1,500 | 500 | 1,000 | 7,5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2,000 | 500 | 500 | 1,00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충남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860억원, 신규사업에 210억원을 투자하여 총 1,07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10>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중장기계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총청년도 | 합계 | 107,000 | 7,859 | 8,766 | 9,249 | 9,761 | 10,359 | 10,901 | 11,528 | 12,174 | 12,847 | 13,556 |
| | 어촌개발사업 | 50,000 | 3,931 | 4,143 | 4,350 | 4,571 | 4,857 | 5,071 | 5,356 | 5,621 | 5,900 | 6,2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36,000 | 2,732 | 2,897 | 3,071 | 3,253 | 3,450 | 3,655 | 3,868 | 4,106 | 4,358 | 4,610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21,000 | 1,196 | 1,726 | 1,828 | 1,937 | 2,052 | 2,175 | 2,304 | 2,447 | 2,589 | 2,746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6,41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11>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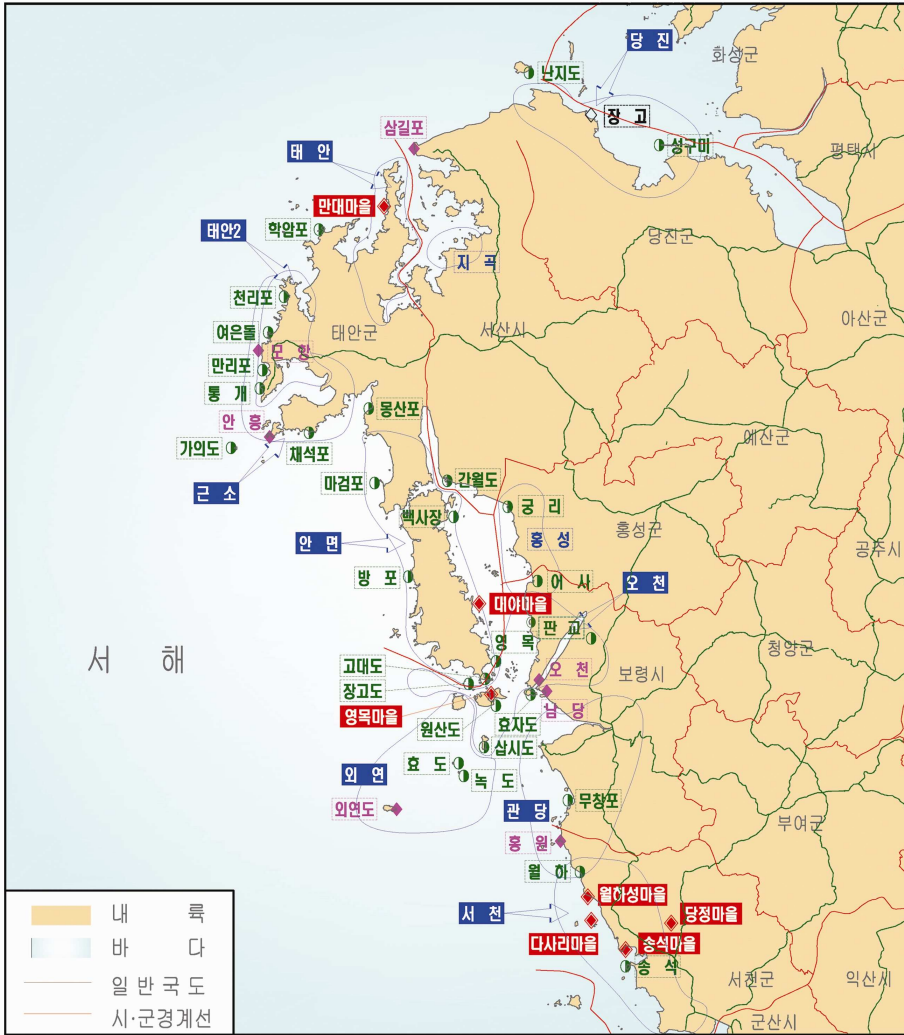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641,673 | 142,068 | 499,605 | |
| 어항개발 | 519,173 | 126,568 | 392,605 | |
| 어촌개발 | 122,500 | 15,500 | 107,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4,066억원, 중장기 1조 4,215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2,425명, 중장기 9,388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11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7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1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7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27 |
| ■ | 사업완료 | 16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2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213,980 | 36,086 | 42,354 | 33,878 | 40,724 | 60,938 | |
| 어항 | 소계 | 201,480 | 35,586 | 40,354 | 32,378 | 39,724 | 53,438 |
| | 어항기본사업 | 149,824 | 29,452 | 33,126 | 22,584 | 26,406 | 38,256 |
| | 어항정비사업 | 23,948 | - | - | 7,338 | 8,000 | 8,610 |
| 어촌 | 소계 | 12,500 | 500 | 2,000 | 1,500 | 1,000 | 7,500 |
| | 어촌개발사업 | 10,500 | - | 1,500 | 500 | 1,000 | 7,5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2,000 | 500 | 500 | 1,000 | - | - |

<그림 5.12> 충청남도 계획 현황도

제 7 장 전라북도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의 내수면을 포함한 2시 2개군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2시) : 군산시, 김제시
 - 군 지역(2군) : 부안군, 고창군

(단위 : 개소)

| 구 분 | 시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전라북도 | 2 | 2 | 64 | 6 | 12 | - | 24 |



<그림 5.13>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전북의 어촌계지역에는 전국 어가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8,141호의 어가가 있으며, 어업인구는 17,818명으로 전국 어업인구의 6%에 해당함
- 시군별로는 군산시에 어업인구가 7,467명으로 전북 어업인구의 41.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어업인구가 많은 시군이 부안군, 고창군 순임
- 연간어획량은 90,894M/T로 이는 전국 연간 어획량 1,142,492M/T의 7.9%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126,792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83,652M/T을 생산하는 군산시이며, 가장 적은 곳은 부안군으로 연간 446M/T을 생산함.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18,761천원이며 이는 전국 평균 21,684천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북지역 중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시(20,442천원)로 조사됨

<표 5.112>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전북(B) | 68,020 | 8,141 | 182,934 | 17,818 | 64 | 6,575 | 90,894 | 126,792 | 18,761 |
| 군산시 | 10,405 | 2,939 | 27,651 | 7,467 | 20 | 2,671 | 83,652 | 102,291 | 20,442 |
| 김제시 | 33,752 | 1,255 | 102,826 | 1,858 | 12 | 900 | 558 | 2,469 | 17,837 |
| 부안군 | 9,037 | 2,653 | 16,732 | 4,598 | 19 | 2,273 | 446 | 1,567 | 18,384 |
| 고창군 | 14,826 | 1,294 | 35,725 | 3,895 | 13 | 731 | 6,238 | 20,465 | 17,289 |
| B/A(%) | 5.5 | 5.0 | 5.4 | 6.0 | 3.3 | 4.2 | 8.0 | 7.9 | 86.5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는 11%, 자립형 어촌계가 47%, 성장형 어촌계는 42%로 발전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에서 도서지역이 많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발전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어선어업형이 55%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식어업형 17%, 복합어업형 28%의 어업형태를 보이고 있음. 주 수산물은 꽃게, 쭈구미 및 패류 등임. 고창군은 어선어업이 전무하며, 양식어업과 복합어업

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33%, 연안촌락형은 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5.113>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전 북 | 64 | 1 | 17 | 46 | 35 | 11 | 18 | 5 | 21 | 38 |
| | 100% | 2% | 27% | 72% | 55% | 17% | 28% | 8% | 33% | 59% |
| 군산시 | 20 | - | 12 | 8 | 6 | 3 | 11 | 3 | 13 | 4 |
| 김제시 | 12 | - | - | 12 | 12 | - | - | 1 | - | 11 |
| 고창군 | 13 | - | 2 | 11 | - | 8 | 5 | 1 | 2 | 10 |
| 부안군 | 19 | 1 | 3 | 15 | 17 | - | 2 | - | 6 | 13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전북의 총 어선수는 4,667척으로 전국 91,609척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16,460톤으로 척당 3.5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351척으로 28.9%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2,509척으로 53.8%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807척으로 17.2%임
- 지역별로 부안군 동력선의 척수가 50.9%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

으로 군산시가 38.1%, 고창군이 10.9%임

- 수산업의 위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력선이 늘고 무동력선이 감소하는 어선의 현대화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동력선이라 하더라도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96.9%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5.114> 어선세력 현황

(단위: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전북(B) | 4,557 | 16,354 | 110 | 106 | 1,351 | 2,509 | 663 | 144 |
| 군 산 시 | 2,001 | 10,972 | 5 | 6 | 505 | 966 | 408 | 127 |
| 김 제 시 | 3 | 7 | - | - | 2 | - | 1 | - |
| 고 창 군 | 384 | 487 | 62 | 19 | 142 | 22 | 3 | - |
| 부 안 군 | 2,169 | 4,888 | 43 | 81 | 565 | 1,401 | 232 | 14 |
| B/A(%) | 5.2 | 2.2 | 3.5 | 3.6 | 4.5 | 5.4 | 7.5 | 2.0 |

※ 자료 : 전북, 「전라북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전라북도는 6개항으로 전체의 약 6%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5개소로 전라북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83%임
- 전라북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715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5.2%가 투자되었으며, 군산시가 274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부안군, 고창군 순으로 투자

<표 5.115>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전라북도 | 6 | 5 | | 1 | | |
| 군 산 시 | 3 | 3 | 연도항, 말도항, 어청도항 | - | | |
| 고 창 군 | 1 | - | | 1 | 구시포항 | |
| 부 안 군 | 2 | 2 | 격포항, 위도항 | - | | |

<표 5.116> 국가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라북도 | 162,616 | 95,935 | 10,741 | 7,392 | 8,846 | 3,519 | 4,570 | 4,213 | 18,700 | 8,700 |
| 군산시 | 어청도 | 60,815 | 39,091 | 8,865 | 5,915 | 3,901 | 1,278 | 1,765 | - | - |
| | 연도 | 7,394 | 7,195 | - | - | 199 | - | - | - | - |
| | 말도 | 15,356 | 14,654 | 702 | - | - | - | - | - | - |
| 고창면 | 구시포 | 21,667 | 60 | - | 450 | 3,482 | 2,241 | 2,805 | 3,229 | 6,700 |
| 부안면 | 격포 | 48,076 | 26,678 | 1,174 | 960 | 1,264 | - | - | - | 12,000 |
| | 위도 | 9,308 | 8,257 | - | 67 | - | - | - | 984 | - |

(2) 지방어항

- 전라북도는 12개항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개소로 약 25%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260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5.5%가 투자되었으며, 군산시 114억원, 부안군 107억원이 투자되었음

<표 5.117> 지방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전라북도 | 12 | 3 | | 9 | | |
| 군산시 | 5 | 1 | 비안도항 | 4 | 선유도항, 개야도항, 방축도항, 무녀도항 | |
| 고창군 | 1 | 1 | 동호항 | - | | |
| 부안군 | 6 | 1 | 곰소항 | 5 | 상왕등도항, 공항항, 식도항, 송포항, 성천항 | |

<표 5.118> 지방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국 | 467,899 | 36,400 | 45,500 | 50,000 | 54,800 | 54,800 | 44,141 | 53,483 | 64,430 | 64,346 |
| 전라북도 | 25,960 | 2,260 | 2,720 | 2,922 | 2,922 | 2,824 | 1,973 | 2,575 | 3,951 | 3,813 |
| 군산시 | 비안도 | - | - | - | - | - | - | - | - | - |
| | 선유도 | 10,415 | 1,130 | - | 1,492 | 2,022 | 1,807 | 1,125 | 1,700 | 1,139 |
| | 방축도 | 1,000 | - | - | - | - | - | - | - | 1,000 |
| 고창군 | 동호 | - | - | - | - | - | - | - | - | - |
| 부안군 | 상왕등도 | 2,100 | - | 1,400 | 700 | - | - | - | - | - |
| | 곰소 | 5,945 | 1,130 | 1,320 | 730 | 900 | 1,017 | 848 | - | - |
| | 공항 | 2,687 | - | - | - | - | - | - | 875 | 1,812 |

(3) 어촌정주어항

- 전라북도는 현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항이 없음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10개 권역 385억원 중 '04년말까지 1단계 7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약235억원을 투자하였음
- 2007년 현재 2단계 1개 권역을 총 50억규모로 추진중이며 2008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사업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군산시 3개소, 고창군 2개소, 부안군 2개소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고창 남부권역에 2007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표 5.11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전 북 | 8 | 26,987 | 7 | 23,487 | 1 | 1,375 | (1) | 2,125 |
| 군산시 | 3 | 10,339 | 3 | 10,339 | - | - | - | - |
| 고창군 | 3 | 9,648 | 2 | 6,148 | 1 | 1,375 | (1) | 2,125 |
| 부안군 | 2 | 7,000 | 2 | 7,000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30억원중 '01년부터 '05년말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2개 마을은 2009년 이후 시행할 계획임
- 시군별 투자실적은 군산시 1개마을에 5억원, 고창군 2개마을에 10억원, 부안군 1개마을에 5억원을 투자

<표 5.12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계 | | 실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전북 | 4 | 2,000 | 4 | 2,000 | - | - | - | - |
| 군산시 | 1 | 500 | 1 | 500 | - | - | - | - |
| 고창군 | 2 | 1,000 | 2 | 1,000 | - | - | - | - |
| 부안군 | 1 | 500 | 1 | 50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군산시 야미도항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2008년까지 8억원 투자

<표 5.121>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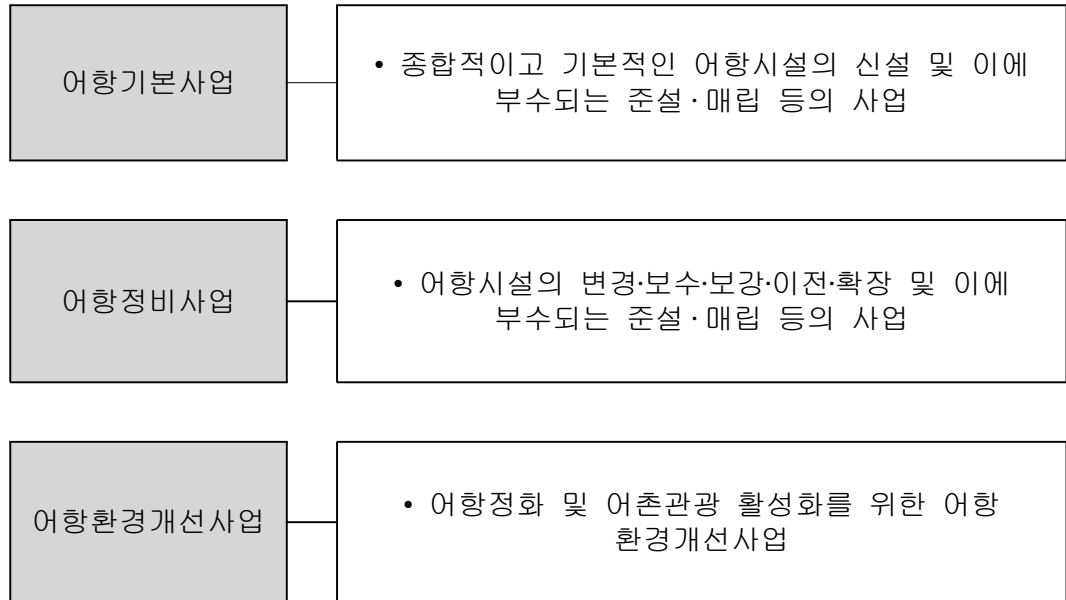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전북 | | | 6,000 | 2,926 | - | 2,200 | 726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군산시 | 야미도 | 6,000 | 800 | - | - | 80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1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4개항)은 2013년까지 모두 완료, 향후 중장기계획시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표 5.12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포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청도항, 말도항, 위도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포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투자로 완공률 50% 이상 달성 | - | - |
| 어촌정주 어항 | -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여 1개항 완공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정주 어항 | -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2년 고창군의 구시포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37,972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항을 완공, 완공

을 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은 현재 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군산시의 어청도항, 말도항, 부안군 위도항 등 3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격포항은 2010년 다기능어항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2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 북 | 총 계 | 98,860 | 17,025 | 16,262 | 20,600 | 23,075 | 21,898 | |
| | 어항기본사업 | 61,268 | 12,437 | 12,887 | 13,368 | 13,644 | 8,932 | |
| | 어항정비사업 | 21,675 | 2,000 | 2,000 | 5,186 | 5,000 | 7,489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15,917 | 2,588 | 1,375 | 2,046 | 4,431 | 5,477 | |

■ 중장기(2014~2023)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6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잔여 1개항 완공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 어항기능시설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12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 북 | 총 계 | 242,671 | 21,708 | 22,556 | 24,492 | 25,411 | 27,117 | 22,752 | 23,504 | 24,267 | 25,039 | 25,825 |
| | 어항기본사업 | 120,016 | 11,875 | 12,182 | 13,577 | 13,956 | 15,122 | 10,217 | 10,428 | 10,650 | 10,882 | 11,127 |
| | 어항정비사업 | 92,753 | 8,091 | 8,334 | 8,584 | 8,841 | 9,106 | 9,379 | 9,661 | 9,951 | 10,249 | 10,557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29,902 | 1,742 | 2,040 | 2,331 | 2,614 | 2,889 | 3,156 | 3,415 | 3,666 | 3,908 | 4,141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2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권역 사업추진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형 조성 - 2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 군산 야미도항 사업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3개권역에 총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군산시 1개소, 고창군 1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군산시 야미도항에 5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예정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임

<표 5.12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전라북도 | 합 계 | 20,700 | 2,800 | 4,510 | 4,390 | 3,400 | 5,600 |
| | 어촌개발사업 | 11,500 | 1,500 | 1,500 | 1,500 | 2,400 | 4,6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200 | 1,300 | 3,010 | 1,89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전라북도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480억원, 신규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하여 총 5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2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전라북도 | 합 계 | 57,000 | 4,236 | 4,675 | 4,929 | 5,199 | 5,519 | 5,803 | 6,135 | 6,474 | 6,828 | 7,202 |
| | 어촌개발사업 | 30,000 | 2,357 | 2,486 | 2,610 | 2,743 | 2,914 | 3,043 | 3,214 | 3,373 | 3,540 | 3,7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8,000 | 1,366 | 1,449 | 1,535 | 1,626 | 1,725 | 1,828 | 1,934 | 2,053 | 2,179 | 2,305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9,000 | 513 | 740 | 784 | 830 | 880 | 932 | 987 | 1,048 | 1,109 | 1,177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4,19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2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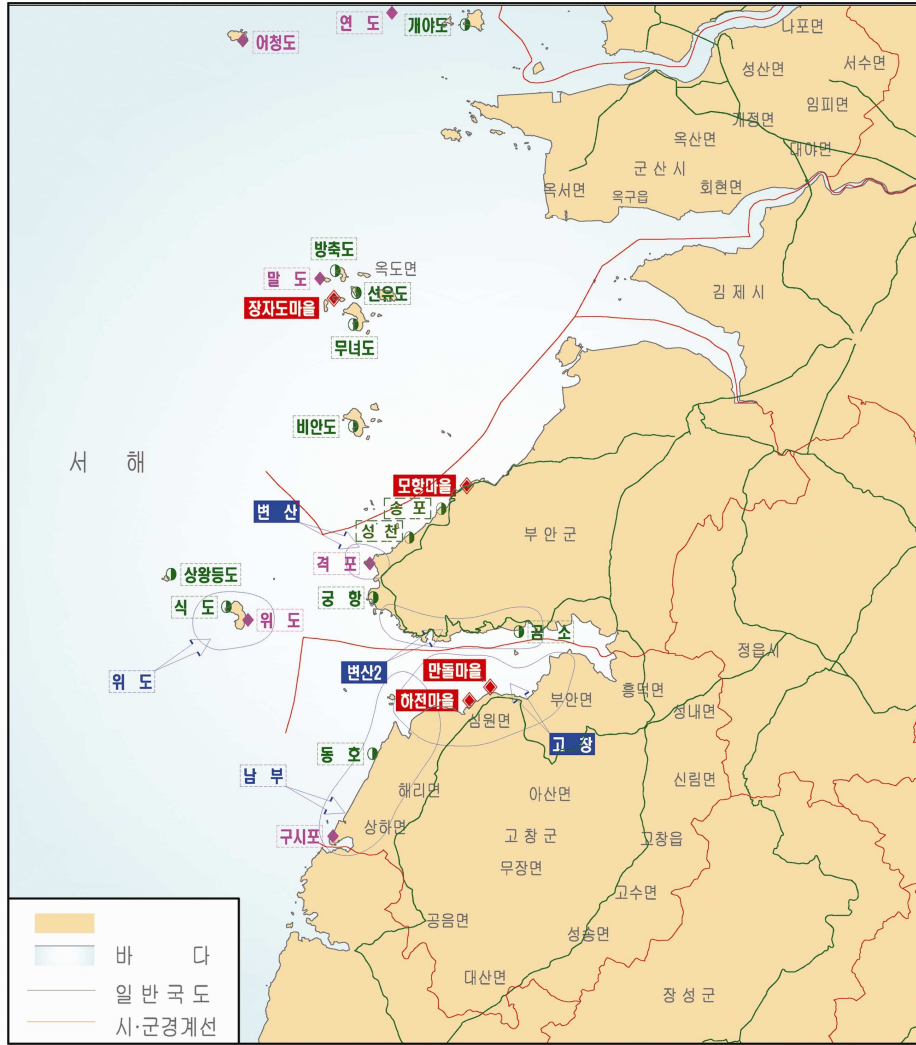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419,231 | 119,560 | 299,671 | |
| 어항개발 | 341,531 | 98,860 | 242,671 | |
| 어촌개발 | 77,700 | 20,700 | 57,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3,377억원, 중장기 1조 215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2,192명, 중장기 6,583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14> 전라북도 계획 현황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5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6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12 |
| ■ | 사업완료 | 7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2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177,828 | 32,262 | 33,659 | 37,358 | 41,150 | 35,430 | |
| 어항 | 소계 | 160,128 | 29,462 | 29,149 | 33,968 | 36,719 | 30,830 |
| | 어항기본사업 | 122,536 | 24,874 | 25,774 | 26,736 | 27,288 | 17,864 |
| | 어항정비사업 | 21,675 | 2,000 | 2,000 | 5,186 | 5,000 | 7,489 |
| 어촌 | 소계 | 17,700 | 2,800 | 4,510 | 3,390 | 2,400 | 4,600 |
| | 어촌개발사업 | 11,500 | 1,500 | 1,500 | 1,500 | 2,400 | 4,6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200 | 1,300 | 3,010 | 1,890 | - | - |

제 8 장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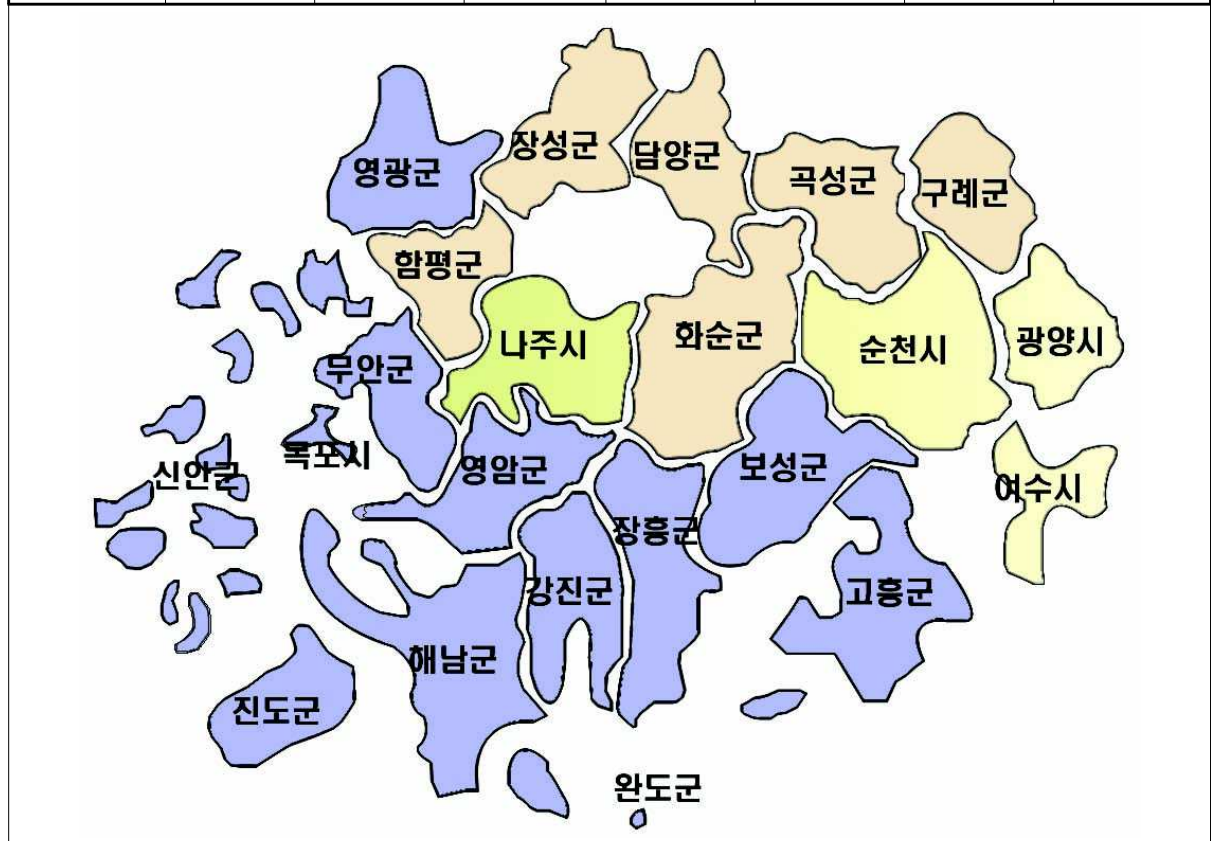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의 4시 11개군의 연안시군과 내수면의 1개시를 계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5시)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내수면)
 - 군 지역(11군) :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보성군

(단위 : 개소)

| 구분 | 시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전라남도 | 5 | 11 | 850 | 30 | 92 | 77 | 912 |



<그림 5.15>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전남에는 전국 어촌계의 43%에 해당하는 850개의 어촌계가 있고, 전남지역의 어촌계지역 가구 수 201,731가구 중 약 30%인 59,729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전국 최대임
- 전남의 836개 어촌계중 완도군에 가장 많은 201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다음으로 고흥군 151개, 여수시 122개 순이며 소속 어촌계가 가장 적은 시군은 내수면에 위치한 나주시로 2개의 어촌계가 있음
- 전남지역의 연간어획량은 662,778M/T, 어획금액은 596,163백만원이며, 어획량과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영광군(236,022M/T, 116,070백만원)임
- 또한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2,911천원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영광군(28,955천원)으로 조사됨

<표 5.129>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M/T) | 어획금액(백만원) | 호당평균소득(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 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전 남(B) | 201,731 | 59,729 | 569,450 | 111,186 | 850 | 63,853 | 662,778 | 596,163 | 22,911 |
| 목포시 | 15,971 | 1,557 | 55,145 | 1,858 | 8 | 1,494 | 39,751 | 56,976 | 26,250 |
| 여수시 | 51,209 | 13,345 | 165,797 | 28,030 | 122 | 11,559 | 7,064 | 109,607 | 42,175 |
| 순천시 | 13,503 | 1,022 | 45,212 | 1,945 | 14 | 872 | 23,865 | 7,320 | 20,100 |
| 광양시 | 1,114 | 248 | 3,465 | 248 | 13 | 568 | 67 | 885 | 14,512 |
| 나주시 | 160 | 20 | 493 | 22 | 2 | 19 | 32,226 | 102,258 | 50,080 |
| 고흥군 | 19,531 | 6,344 | 47,918 | 13,420 | 151 | 12,426 | 21,515 | 35,123 | 21,062 |
| 장흥군 | 4,056 | 1,897 | 7,374 | 2,740 | 27 | 1,263 | 6,831 | 11,912 | 26,780 |
| 강진군 | 4,881 | 2,858 | 11,030 | 3,622 | 42 | 3,295 | 183,090 | 60,012 | 25,092 |
| 해남군 | 3,869 | 1,932 | 9,165 | 3,836 | 29 | 1,932 | 313 | 788 | 24,600 |
| 영암군 | 8,478 | 3,760 | 22,128 | 8,216 | 70 | 3,685 | 8,550 | 25,840 | 21,205 |
| 무안군 | 16,083 | 2,605 | 45,166 | 5,330 | 29 | 2,045 | 1,770 | 8,353 | 21,840 |
| 합평균 | 637 | 475 | 2,522 | 934 | 5 | 517 | 2,610 | 11,389 | 28,955 |
| 영광군 | 8,980 | 2,954 | 20,749 | 2,404 | 13 | 1,729 | 236,022 | 116,070 | 65,660 |
| 완도군 | 24,314 | 12,409 | 57,412 | 24,651 | 201 | 14,775 | 52,069 | 51,819 | 18,804 |
| 진도군 | 5,872 | 3,526 | 14,811 | 7,434 | 47 | 3,286 | 25,061 | 38,343 | 45,739 |
| 신안군 | 15,239 | 4,398 | 33,561 | 6,095 | 72 | 4,043 | 5 | 110 | 23,500 |
| B/A(%) | 16.4 | 36.5 | 16.8 | 37.1 | 43.2 | 42.4 | 58.0 | 37.1 | 105.7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10%, 자립형 어촌계가 26%, 성장형 어촌계는 64%로 대부분의 어촌계가 경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양식어업형이 68%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식 종으로는 주로 굴, 새조개, 바지락 등 패류 등임. 그 외 복합어업형 24%, 어선어업형 8% 순으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불과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20%였고, 그 외 연안촌락형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30>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전 남 | 850 | 81 | 225 | 544 | 67 | 579 | 204 | 76 | 166 | 608 |
| | 100% | 10% | 26% | 64% | 8% | 68% | 24% | 9% | 20% | 72% |
| 목포시 | 8 | - | 1 | 7 | 5 | - | 3 | 6 | 2 | - |
| 여수시 | 122 | 1 | 17 | 104 | 19 | 75 | 28 | 12 | 33 | 77 |
| 순천시 | 14 | - | 1 | 13 | - | 14 | - | 1 | - | 13 |
| 광양시 | 13 | - | - | 13 | 6 | 7 | - | 12 | - | 1 |
| 고흥군 | 151 | 11 | 38 | 102 | 3 | 111 | 37 | 12 | 3 | 136 |
| 보성군 | 27 | - | 9 | 18 | 2 | 17 | 8 | 12 | 5 | 10 |
| 장흥군 | 42 | 5 | 12 | 25 | - | 37 | 5 | 1 | - | 41 |
| 강진군 | 29 | 1 | 2 | 26 | 3 | 26 | - | 2 | - | 27 |
| 해남군 | 70 | 13 | 49 | 8 | 2 | 66 | 2 | - | 2 | 68 |
| 영암군 | 5 | - | - | 5 | - | 2 | 3 | 1 | - | 4 |
| 무안군 | 29 | 2 | 11 | 16 | 4 | 12 | 13 | - | 1 | 28 |
| 함평군 | 5 | - | - | 5 | - | - | 5 | - | - | 5 |
| 영광군 | 13 | 1 | 4 | 8 | 6 | 2 | 5 | 1 | 4 | 8 |
| 완도군 | 201 | 29 | 45 | 127 | 2 | 123 | 76 | 8 | 85 | 108 |
| 진도군 | 47 | 12 | 27 | 8 | - | 35 | 12 | 1 | - | 46 |
| 신안군 | 72 | 6 | 9 | 57 | 15 | 50 | 7 | 7 | 31 | 34 |
| 나주시 | 2 | - | - | 2 | - | 2 | - | - | - | 2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2004년말 전남의 총 어선수는 36,898척으로 전국 91,609척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105,937톤으로 척당 2.9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5,088척(40.9%), 1~5톤미만의 어선이 19,070척(51.7%), 그리고 5톤 이상의 어선이 2,119척(7.4%)에 불과한 실정임

<표 5.131>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전남(B) | 35,804 | 104,834 | 1,094 | 1,103 | 15,088 | 19,070 | 2,119 | 621 | |
| 연안(C) | 35,796 | 104,831 | 1,094 | 1,103 | 15,080 | 19,070 | 2,119 | 621 | |
| 연안시군 | 목포시 | 1,209 | 16,956 | 1 | 1 | 409 | 421 | 216 | 164 |
| | 여수시 | 6,648 | 35,919 | 322 | 303 | 1,486 | 4,425 | 764 | 295 |
| | 순천시 | 220 | 482 | 66 | 49 | 165 | 85 | 35 | 1 |
| | 광양시 | 349 | 456 | 25 | 31 | 131 | 241 | 2 | - |
| | 고흥군 | 3,844 | 8,690 | 320 | 350 | 1,473 | 2,513 | 168 | 10 |
| | 보성군 | 508 | 1,347 | 45 | 36 | 211 | 261 | 79 | 2 |
| | 장흥군 | 1,269 | 1,591 | 20 | 22 | 801 | 465 | 23 | - |
| | 강진군 | 638 | 852 | - | - | 371 | 252 | 15 | - |
| | 해남군 | 2,254 | 3,732 | 104 | 130 | 1,030 | 1,306 | 20 | 2 |
| | 영암군 | 201 | 583 | - | - | 66 | 108 | 26 | 1 |
| | 무안군 | 1,114 | 1,207 | 4 | 2 | 838 | 262 | 18 | - |
| | 함평군 | 163 | 299 | 11 | 6 | 93 | 72 | 9 | - |
| | 영광군 | 832 | 2,755 | 73 | 30 | 368 | 354 | 162 | 21 |
| | 완도군 | 10,169 | 16,787 | - | - | 4,206 | 5,761 | 178 | 24 |
| | 진도군 | 2,443 | 4,305 | 37 | 48 | 1,290 | 1,118 | 64 | 8 |
| | 신안군 | 3,873 | 8,835 | 66 | 95 | 2,083 | 1,423 | 340 | 93 |
| 나주시 | 62 | 35 | - | - | 59 | 3 | - | - | |
| 내륙시군 | 8 | 3 | - | - | 8 | - | - | - | |
| B/A(%) | 40.49 | 14.05 | 34.32 | 37.36 | 50.38 | 40.66 | 24.12 | 8.55 | |
| C/B(%) | 99.98 | 100.00 | 100.00 | 100.00 | 99.95 | 100.00 | 100.00 | 100.00 | |

※ 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전라남도는 30개항으로 전체의 약 29%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25개소로 전라남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71%임
- 전라남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4,291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31.5%가 투자되었으며, 완도군이 1,20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여수시, 신안군, 고흥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영광군, 해남군 순으로 투자됨

<표 5.132> 국가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전라남도 | 30 | 25 | | 5 | | |
| 여수시 | 6 | 5 | 국동항, 낭도항, 돌산항, 안도항, 초도항 | 1 | 연도항 | |
| 고흥군 | 5 | 5 | 녹동항, 풍남항, 여호항, 발포항, 시산항 | - | - | |
| 장흥군 | 1 | - | - | 1 | 회진항 | |
| 강진군 | 1 | 1 | 마량항 | - | - | |
| 해남군 | 1 | 1 | 어란진항 | - | - | |
| 영광군 | 2 | 2 | 계마항, 안마항 | - | - | |
| 완도군 | 7 | 5 | 득암항, 사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여서항 | 2 | 도장항, 보옥항 | |
| 진도군 | 3 | 3 | 수품항, 서망항, 서거차항 | - | - | |
| 신안군 | 4 | 3 | 전장포항, 원평항, 소흑산도항 | 1 | 우이도항 | |

<표 5.133>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 전라남도 | 795,380 | 414,821 | 51,192 | 48,819 | 56,179 | 54,181 | 65,416 | 44,666 | 31,306 | 28,800 | |
| 여수시 | 국 동 | 37,992 | 17,717 | 2,319 | 2,134 | 2,829 | 2,270 | 1,487 | 2,236 | 1,000 | 6,000 |
| | 남 도 | 32,955 | 15,615 | 3,281 | 3,319 | 3,710 | 3,309 | 3,721 | - | - | - |
| | 돌 산 | 4,059 | 3,534 | - | - | 174 | 351 | - | - | - | - |
| | 안 도 | 11,183 | 8,840 | 890 | 1,453 | - | - | - | - | - | - |
| | 연 도 | 22,439 | 261 | - | - | 1,000 | 3,000 | 6,000 | 4,978 | 4,000 | 3,200 |
| | 초 도 | 42,296 | 18,575 | 3,878 | 3,474 | 3,685 | 3,782 | 1,436 | 2,766 | 2,000 | 2,700 |
| 고흥군 | 녹 동 | 32,591 | 23,151 | 1,861 | 1,870 | 1,693 | 1,284 | 1,359 | 1,373 | - | - |
| | 풍 남 | 26,968 | 14,850 | 3,245 | 3,275 | 1,844 | 3,754 | - | - | - | - |
| | 발 포 | 15,678 | 9,376 | 25 | 2,000 | 1,500 | 2,422 | - | 355 | - | - |
| | 여 호 | 23,272 | - | 750 | 1,000 | 5,936 | 2,978 | 5,002 | 4,000 | 3,606 | - |
| | 시 산 | 44,664 | 22,607 | 926 | 2,432 | 3,861 | 1,839 | 4,499 | 4,500 | 2,000 | 2,000 |
| 장흥군 | 회 진 | 14,084 | - | 999 | 988 | 597 | - | 3,300 | 2,500 | 3,000 | 2,700 |
| 장흥군 | 마 량 | 25,746 | 8,457 | - | - | 1,307 | 1,694 | 12,709 | 1,579 | - | - |
| 해남군 | 어란진 | 10,426 | 7,555 | 228 | - | 189 | 472 | 1,260 | 722 | - | - |
| 영광군 | 계 마 | 14,060 | 11,634 | 2,023 | 193 | - | - | - | 210 | - | - |
| | 안 마 | 16,663 | 15,367 | - | - | - | - | - | 1,296 | - | - |
| 완도군 | 특 암 | 35,098 | 14,799 | 4,108 | 3,435 | 3,430 | 4,254 | 5,072 | - | - | - |
| | 사 동 | 13,105 | 10,754 | 175 | - | 960 | 562 | 654 | - | - | - |
| | 도 장 | 10,509 | 18 | 129 | - | 1,427 | 1,350 | 985 | 1,000 | 2,000 | 3,600 |
| | 청산도 | 9,346 | 3,544 | 1,476 | 1,343 | 1,338 | 1,320 | 325 | - | - | - |
| | 소 안 | 11,199 | 10,991 | - | 208 | - | - | - | - | - | - |
| | 보 옥 | 56,552 | 15,785 | 4,376 | 4,401 | 6,889 | 5,454 | 6,000 | 4,647 | 4,000 | 5,000 |
| | 여 서 | 57,112 | 31,269 | 5,919 | 10,605 | 4,787 | 4,532 | - | - | - | - |
| 진남면 | 수 품 | 22,845 | 22,100 | 745 | - | - | - | - | - | - | - |
| | 서 망 | 15,442 | 12,145 | - | 2,741 | - | 556 | - | - | - | - |
| | 서거차 | 13,670 | 11,854 | 934 | - | 882 | - | - | - | - | - |
| 신안면 | 전장포 | 6,785 | 6,215 | 31 | 539 | - | - | - | - | - | - |
| | 원 평 | 4,581 | 4,581 | - | - | - | - | - | - | - | - |
| | 우이도 | 14,765 | - | - | - | 165 | 1,000 | 3,000 | 4,000 | 3,000 | 3,600 |
| | 소흑산도 | 149,295 | 93,227 | 12,874 | 3,409 | 7,976 | 7,998 | 8,607 | 8,504 | 6,700 | - |

(2) 지방어항

- 전라남도는 92개항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2개소로 약 35%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134>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전라남도 | 92 | 32 | | 60 | | |
| 여 수 시 | 12 | 3 | 계동항, 의성항, 죽포항 | 9 | 소율항, 성두항, 횡간항, 우학항, 함구미항, 손죽항, 서도항, 호령항, 세포항 | |
| 순 천 시 | 1 | - | - | 1 | 화포항 | |
| 고 흥 군 | 17 | 6 | 동봉항, 명천항, 덕흥항, 죽도항, 장수항, 하동항 | 11 | 잠두항, 금진항, 연소항, 오천항, 남성항, 용동항, 대통항, 염포항, 봉남항, 대영항, 금사항 | |
| 보 성 군 | 3 | - | - | 3 | 금능항, 울포항, 상진항 | |
| 장 흥 군 | 5 | 3 | 장환항, 이진목항, 수문항 | 2 | 덕촌항, 응암항 | |
| 강 진 군 | 1 | - | - | 1 | 사초항 | |
| 해 남 군 | 9 | 4 | 어불항, 내동항, 송평항, 징의항 | 5 | 송호항, 영전항, 사구미항, 학가항, 우수영항 | |
| 무 안 군 | 2 | 1 | 도리포항 | 1 | 톱머리항 | |
| 영 광 군 | 2 | 1 | 법성포항 | 1 | 설도항 | |
| 완 도 군 | 20 | 8 | 원동항, 화전항, 해동항, 우두항, 울포항, 방축항, 미라항, 동백항 | 12 | 망석항, 월양항, 동고항, 가교항, 장용항, 서성항, 총도항, 덕우항, 모서항, 신흥항, 진산항, 이목항 | |
| 진 도 군 | 7 | 2 | 성등포항, 굴포항 | 5 | 벌포항, 용호항, 초평항, 관호항, 장유항 | |
| 신 안 군 | 13 | 4 | 화도항, 영산항, 검산항, 재원항 | 9 | 하태항, 심리항, 사리항, 만재항, 다수항, 소우이항, 수대항, 송도항, 주포항 | |

- 전라남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1,147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24.5%가 투자되었으며, 완도군이 176억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고흥군,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무안군, 보성군, 영광군, 장흥군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135>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라남도 | 114,699 | 8,500 | 10,440 | 11,384 | 13,080 | 11,776 | 9,656 | 13,250 | 18,300 | 18,313 |
| 여수시 | 횡간 | - | - | - | - | - | - | - | - | - |
| | 심포 | - | - | - | - | - | - | - | - | - |
| | 호령 | - | - | - | - | - | - | - | - | - |
| | 계동 | 5,200 | 700 | 700 | 700 | 700 | 700 | 700 | - | 1,000 |
| | 우학 | 2,800 | 700 | 700 | 700 | 700 | - | - | - | - |
| | 죽포 | 4,692 | - | 700 | 700 | 700 | 892 | 700 | 1,000 | - |
| 고흥군 | 의성 | 4,200 | - | - | - | 700 | 700 | 700 | 1,000 | 1,100 |
| | 오천 | 700 | - | 700 | - | - | - | - | - | - |
| | 명천 | - | - | - | - | - | - | - | - | - |
| | 죽도 | 700 | 700 | - | - | - | - | - | - | - |
| | 덕흥 | - | - | - | - | - | - | - | - | - |
| | 동봉 | - | - | - | - | - | - | - | - | - |
| | 하동 | 6,200 | 700 | 700 | 700 | 700 | 700 | 700 | 1,000 | 1,000 |
| | 장수 | 3,500 | - | 700 | 700 | 700 | 700 | 700 | - | - |
| | 금진 | 4,984 | - | - | 884 | 700 | 700 | 700 | 1,000 | 1,000 |
| | 대통 | 1,000 | - | - | - | - | - | - | - | 1,000 |
| 보성군 | 율포 | 700 | 700 | - | - | - | - | - | - | - |
| | 상진 | 1,800 | - | - | - | - | - | 700 | 1,100 | - |
| 장흥군 | 장환 | - | - | - | - | - | - | - | - | - |
| | 이진목 | 700 | 700 | - | - | - | - | - | - | - |
| | 수문 | 4,500 | - | 700 | 700 | 700 | 700 | - | 1,000 | 700 |
| 강진군 | 사초 | 1,000 | - | - | - | - | - | - | - | 1,000 |
| 해남군 | 어불 | - | - | - | - | - | - | - | - | - |
| | 내동 | 1,400 | 700 | 700 | - | - | - | - | - | - |
| | 송평 | 3,500 | - | - | 700 | 700 | 700 | 700 | 700 | - |
| | 징의 | 1,000 | - | - | - | - | - | - | - | 1,000 |

(계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전라남도 | 114,699 | 8,500 | 10,440 | 11,384 | 13,080 | 11,776 | 9,656 | 13,250 | 18,300 | 18,313 |
| 무안군 | 도리포 | 5,596 | - | 640 | 700 | 700 | 700 | 556 | 1,000 | 1,300 |
| 영광군 | 법 성 | - | - | - | - | - | - | - | - | - |
| | 설 도 | 1,700 | - | - | - | - | - | 700 | 1,000 | |
| 완 도 | 화 전 | - | - | - | - | - | - | - | - | - |
| | 해 동 | - | - | - | - | - | - | - | - | - |
| | 울 포 | 400 | 400 | - | - | - | - | - | - | - |
| | 우 두 | 400 | 400 | - | - | - | - | - | - | - |
| | 이 목 | - | - | - | - | - | - | - | - | - |
| | 덕 우 | - | - | - | - | - | - | - | - | - |
| | 월 양 | 4,100 | 700 | 700 | - | 700 | - | - | 1,000 | 1,000 |
| | 서 성 | 3,529 | - | 700 | 700 | 700 | 729 | 700 | - | - |
| | 방 축 | 1,400 | - | 700 | 700 | - | - | - | - | - |
| | 미 라 | 2,963 | - | - | 700 | 700 | 863 | 700 | - | - |
| 군 | 동 백 | 2,100 | - | - | - | 700 | 700 | 700 | - | - |
| | 장 용 | 1,700 | - | - | - | - | - | 700 | 1,000 | |
| | 동 고 | 1,000 | - | - | - | - | - | - | 1,000 | |
| 진 도 | 굴 포 | - | - | - | - | - | - | - | - | - |
| | 성 등포 | - | - | - | - | - | - | - | - | - |
| 군 | 용 호 | 4,900 | 700 | 700 | 700 | 700 | - | - | 1,000 | 1,100 |
| | 가 학 | 700 | - | - | 700 | - | - | - | - | - |
| | 관 호 | 1,592 | - | - | - | 700 | 892 | - | - | - |
| 신 안 군 | 화 도 | - | - | - | - | - | - | - | - | - |
| | 영 산 | 4,200 | 700 | 700 | 700 | 700 | 700 | - | - | - |
| | 하 태 | - | - | - | - | - | - | - | - | - |
| | 재 원 | 2,400 | 700 | 700 | - | - | - | 1,000 | - | - |
| | 검 산 | 2,800 | - | - | 700 | 700 | 700 | 700 | - | - |
| | 사 리 | 3,880 | - | - | - | 480 | 700 | 700 | 1,000 | 1,000 |
| 군 | 소우이도 | 1,450 | - | - | - | - | - | 450 | 1,000 | |
| | 심 리 | 1,000 | - | - | - | - | - | - | 1,000 | |

(3) 어촌정주어항

- 전라남도에는 77개항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개항임

<표 5.136>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전라남도 | 77 | 1 | | 76 | | |
| 순 천 시 | 4 | - | | 4 | 용두항, 거차항, 와온항, 대대항 | |
| 보 성 군 | 11 | - | | 11 | 장양항, 대포항, 예당항, 해평항, 청암항, 선소항, 객산항, 서당항, 군농항, 동울항, 군학항 | |
| 무 안 군 | 10 | - | | 10 | 마동항, 복길항, 구로항, 장재항, 송현항, 신월항, 남촌항, 월두항, 흥통항, 닭머리항 | |
| 함 평 군 | 1 | - | | 1 | 함평항 | |
| 여 수 시 | 51 | 1 | 소경항 | 50 | 신기항, 서외항, 임포항, 작금큰항, 금천항, 향대항, 모장항, 평사항, 두룡개항, 월전포항, 상동항, 진목항, 골전항, 독정항, 송고항, 대유항, 장지항, 안도항, 심포항, 역포항, 대두라항, 월호항, 화산항, 여석항, 제도항, 적금항, 대동항, 송여자항, 모전항, 백야항, 유촌항, 죽촌항, 진막항, 외동항, 내동항, 오복항, 소경항, 섬달천항, 진목항, 봉전항, 감도항, 이목항, 가정항, 호두항, 고내항, 집앞개항, 오천항, 만흥항, 소치항, 신덕항, 송도동편항 | |

<표 5.13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라남도 | 550 | - | - | - | - | - | - | 550 | -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06년말 기준으로 1단계 53개권역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부터 1단계 잔여 4개권역 및 2단계 5개권역, 어촌복합생활공간(영광 대신권역)을 추진중임
- 총 사업비는 336,103백만원중 2006년말까지 183,804백만원이 투자되었음
- 2008년까지 1단계 4개 권역 완료 및 2단계 5개 권역 계속 추진

<표 5.13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군 | 합계 | | 실적 ('94~2006) | | '07계획 | | '08계획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전남 | 63 | 216,459 | 53 | 183,804 | 10 | 15,000 | (10) | 17,655 |
| 목포 | 1 | 3,500 | 1 | 3,500 | - | - | - | - |
| 여수 | 7 | 24,421 | 6 | 20,921 | 1 | 1,750 | (1) | 1,750 |
| 순천 | 1 | 3,500 | 1 | 3,500 | - | - | - | - |
| 고흥 | 9 | 30,281 | 7 | 23,893 | 2 | 2,750 | (2) | 3,638 |
| 보성 | 3 | 11,026 | 3 | 11,026 | - | - | - | - |
| 장흥 | 4 | 13,663 | 3 | 10,288 | 1 | 1,375 | (1) | 2,000 |
| 강진 | 2 | 6,772 | 2 | 6,772 | - | - | - | - |
| 해남 | 5 | 17,281 | 5 | 17,281 | - | - | - | - |
| 무안 | 3 | 10,200 | 3 | 10,200 | - | - | - | - |
| 함평 | 1 | 3,213 | 1 | 3,213 | - | - | - | - |
| 영광 | 3 | 7,715 | 2 | 6,340 | 1 | 1,375 | (1) | - |
| 완도 | 9 | 30,763 | 7 | 24,513 | 2 | 3,125 | (2) | 3,125 |
| 진도 | 7 | 24,838 | 6 | 21,338 | 1 | 1,750 | (1) | 1,750 |
| 신안 | 8 | 29,286 | 6 | 21,019 | 2 | 2,875 | (2) | 5,392 |

※ ()는 계속사업 권역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261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175.5억원을 투자하여 31개 마을 중 20개 마을 지원하였고 2007년 6개마을, 2008년 3개마을 지원 예정임
-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통합

<표 5.139> 어촌체험마을 투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 사군 | 합 계 | | 실 적 ('01~06) | | '07계획 | | '08계획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전 남 | 29 | 26,138 | 20 | 17,550 | 6 | 5,600 | 3 | 2,988 |
| 여 수 | 4 | 4,000 | 2 | 2,000 | 1 | 1,000 | 1 | 1,000 |
| 순 천 | 1 | 500 | 1 | 500 | - | -- | - | - |
| 고 흥 | 4 | 3,320 | 2 | 2,000 | 1 | 600 | 1 | 720 |
| 보 성 | 3 | 3,350 | 2 | 1,750 | 1 | 1,600 | - | - |
| 장 흥 | 3 | 3,400 | 3 | 3,400 | - | - | - | - |
| 강 진 | 3 | 2,500 | 2 | 1,500 | 1 | 1,000 | - | - |
| 해 남 | 2 | 2,400 | 2 | 2,400 | - | - | - | - |
| 무 안 | 1 | 500 | 1 | 500 | - | - | - | - |
| 함 평 | 1 | 500 | 1 | 500 | - | - | - | - |
| 영 광 | 1 | 500 | 1 | 500 | - | - | - | - |
| 진 도 | 2 | 1,100 | 1 | 500 | 1 | 600 | - | - |
| 신 안 | 4 | 4,068 | 2 | 2,000 | 1 | 800 | 1 | 1,268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강진군 마량항에 총 50억원, 신안군 방축항에 총 60억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점차 확대 추진 계획임

<표 5.140>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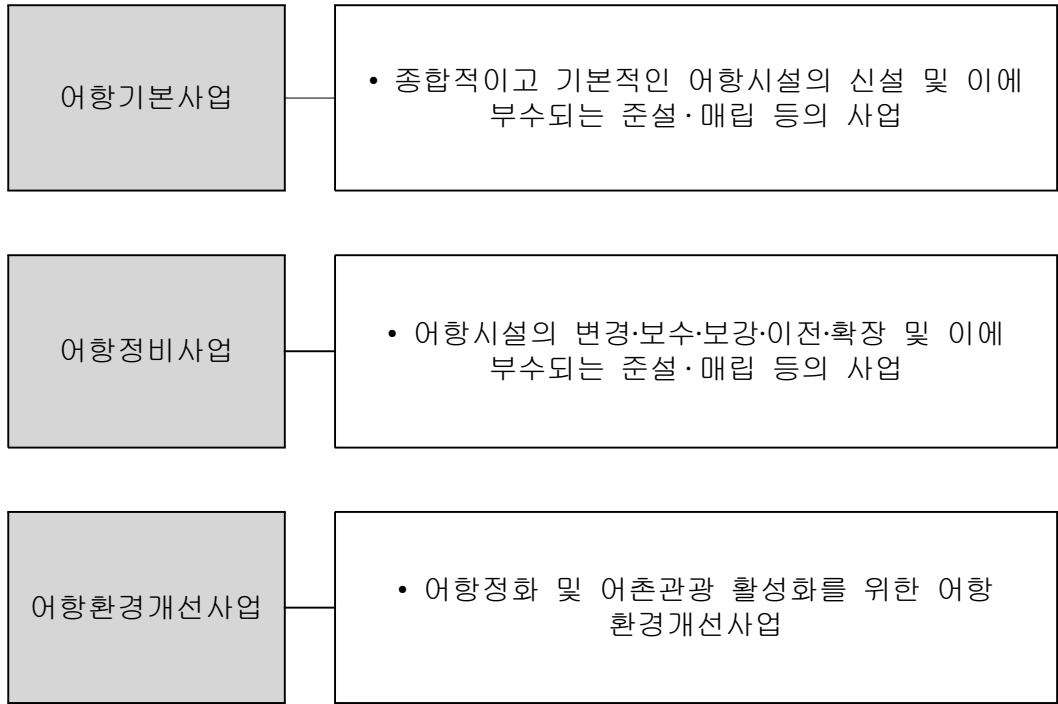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전 남 | | | 11,000 | 7,000 | 4,000 | 2,000 | 1,000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강진 | 마량 | 5,000 | 2,500 | 1,000 | 1,000 | 500 |
| | 신안 | 방축 | 6,000 | 4,500 | 3,000 | 1,000 | 50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5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13개항)은 2013년까지 6개항을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장기까지 7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41>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이도항, 도장항, 보옥항, 회진항, 연도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률 100% 달성 추가지정항 사업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흑산도항, 원평항, 어란진항, 사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시산항, 초도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계마항, 전장포항, 녹동항, 풍남항 어항정비사업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동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투자로 완공률 48% 이상 달성 | -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3년 계속투자항에 대한 완공률 100%를 목표, 우이도항, 보옥항, 회진항, 도장항, 연도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2008년 우선 지정되는 6개항중 완도군에 소재한 이목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76,672백만원을 투자하여 12개항을 완공, 완공율 48%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은 현재 1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소흑산도항, 원평항, 어란진항, 사동항, 청산도항, 소안항, 시산항, 초도항 등 8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계마항, 전장포항, 녹동항, 풍남항 등 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착수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국동항은 2012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 확충 1차 사업 중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42>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전남 | 총계 | 369,352 | 51,814 | 49,517 | 81,718 | 84,958 | 101,345 | |
| | 어항기본사업 | 166,699 | 38,797 | 36,069 | 44,216 | 20,656 | 26,961 | |
| | 어항정비사업 | 102,213 | 4,163 | 4,504 | 19,038 | 30,801 | 43,707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8,854 | 8,944 | 8,944 | 18,464 | 33,501 | 30,677 | |

■ 중장기(2014~2023)

- 완도군에 소재한 이목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추진 완료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47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어촌정주어항의 완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비지원 검토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143>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 남 | 총 계 | 1,555,784 | 105,736 | 110,628 | 116,174 | 130,485 | 148,573 | 163,614 | 174,923 | 187,443 | 201,399 | 216,809 |
| | 어항 기본사업 | 700,648 | 28,752 | 30,884 | 32,577 | 44,778 | 61,132 | 74,936 | 85,658 | 98,442 | 113,736 | 129,753 |
| | 어항 정비사업 | 433,679 | 42,981 | 43,067 | 43,150 | 43,238 | 43,323 | 43,410 | 43,499 | 43,582 | 43,671 | 43,758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421,457 | 34,003 | 36,677 | 40,447 | 42,469 | 44,118 | 45,268 | 45,766 | 45,419 | 43,992 | 43,298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44>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량항, 방축항 사업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추진중인 2단계 6개권역(어촌복합생활공간포함)과 시행예정 25개 권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196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무안군, 진도군에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각 5억원씩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강진군 마량항, 신안군 방축항에 4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145>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라남도 | 합 계 | 128,444 | 13,011 | 16,373 | 21,720 | 16,798 | 60,542 |
| | 어촌개발사업 | 119,644 | 9,499 | 14,085 | 20,720 | 15,798 | 59,542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5,800 | 3,512 | 2,288 | -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전남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4,380억원, 신규사업에 1,320억원을 투자하여 총 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46>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라남도 | 합 계 | 570,000 | 41,399 | 46,672 | 49,262 | 52,007 | 55,190 | 58,117 | 61,472 | 64,941 | 68,564 | 72,376 |
| | 어촌개발사업 | 240,000 | 18,857 | 19,886 | 20,880 | 21,943 | 23,314 | 24,343 | 25,714 | 26,983 | 28,320 | 29,76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98,000 | 15,024 | 15,936 | 16,891 | 17,889 | 18,975 | 20,104 | 21,276 | 22,579 | 23,968 | 25,358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132,000 | 7,518 | 10,850 | 11,491 | 12,175 | 12,901 | 13,670 | 14,482 | 15,379 | 16,276 | 17,258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2조 6,23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47>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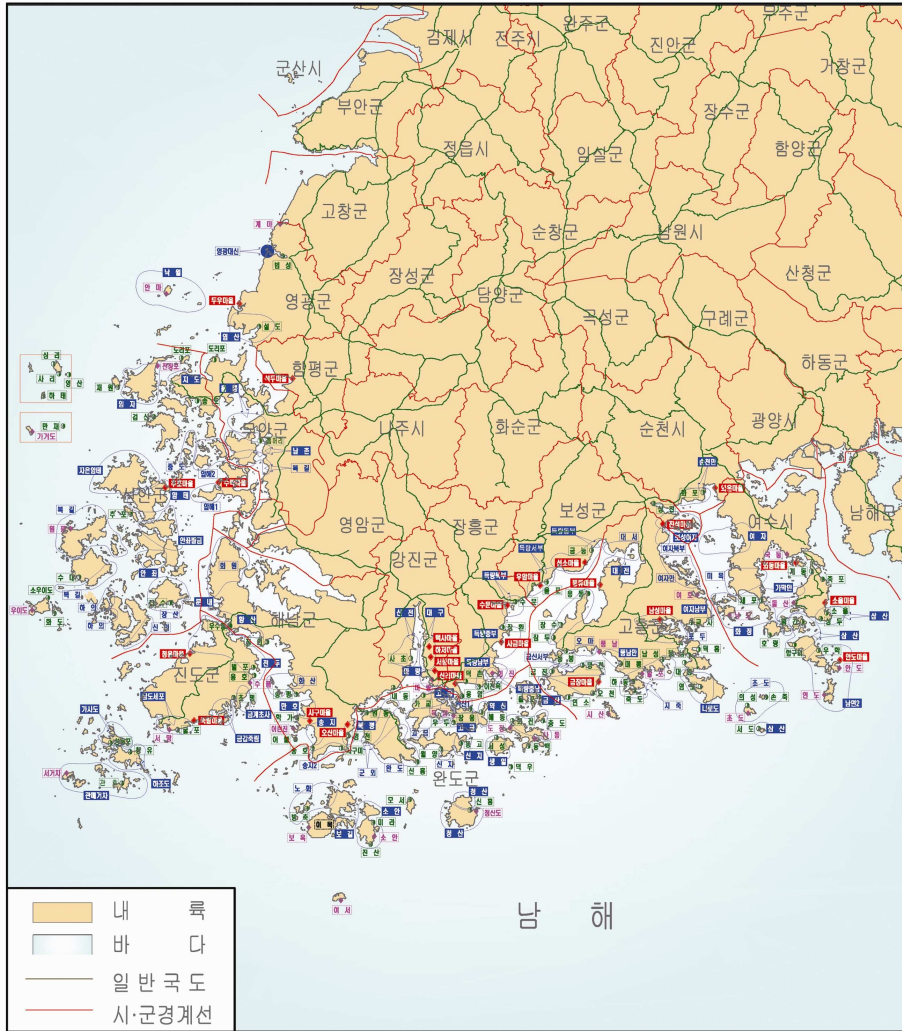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2,623,580 | 497,796 | 2,125,784 | |
| 어항개발 | 1,925,136 | 369,352 | 1,555,784 | |
| 어촌개발 | 698,444 | 128,444 | 570,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1조 4,014억원, 중장기 5조 9,765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8,767명, 중장기 42,139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16> 전라남도 계획 현황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87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25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1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29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91 |
| ■ | 사업완료 | 79 |
| □ | 사업진행 | - |
| --- | 사업계획 | 33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661,495 | 103,622 | 101,959 | 146,654 | 121,412 | 187,848 | |
| 어항 | 소계 | 536,051 | 90,611 | 85,586 | 125,934 | 105,614 | 128,306 |
| | 어항기본사업 | 333,398 | 77,594 | 72,138 | 88,432 | 41,312 | 53,922 |
| | 어항정비사업 | 102,213 | 4,163 | 4,504 | 19,038 | 30,801 | 43,707 |
| 어촌 | 소계 | 125,444 | 13,011 | 16,373 | 20,720 | 15,798 | 59,542 |
| | 어촌개발사업 | 119,644 | 9,499 | 14,085 | 20,720 | 15,798 | 59,542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5,800 | 3,512 | 2,288 | - | - | - |

2) 어촌계 현황

- 경상북도 5개 어촌계지역의 거주가구는 69,920호이며 이중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0,754호로 15.3%에 해당함. 시군별로는 포항시 어업인구가 9,177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군 5,456명, 울진군 3,139명 순으로 있음
- 경북에는 전국 어촌계의 7.9%에 해당하는 156개의 어촌계가 존재하며, 포항시 어촌계가 65개로 가장 많음
- 경상북도 연간어획량은 13,001M/T로 이는 전국 연간 어획량 1,142,492M/T의 1.13%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17,876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비율임
-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연간 9,030M/T을 생산하는 울진군이며,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연간 37M/T을 생산함.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3,512천원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진군(33,865천원)으로 조사됨

<표 5.148>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경북(B) | 69,920 | 10,754 | 184,611 | 20,295 | 156 | 8,586 | 13,001 | 17,876 | 23,512 |
| 포항시 | 45,355 | 4,219 | 126,308 | 9,177 | 65 | 3,469 | 563 | 2,494 | 31,131 |
| 경주시 | 4,968 | 990 | 12,096 | 1,532 | 17 | 895 | 2,346 | 8,140 | 22,382 |
| 영덕군 | 6,320 | 2,244 | 14,325 | 5,456 | 30 | 1,997 | 1,025 | 1,705 | 16,096 |
| 울진군 | 9,190 | 2,477 | 22,302 | 3,139 | 33 | 1,542 | 9,030 | 5,199 | 33,865 |
| 울릉군 | 4,087 | 824 | 9,580 | 991 | 11 | 683 | 37 | 338 | 14,090 |
| B/A(%) | 5.7 | 6.6 | 5.5 | 6.8 | 7.9 | 5.5 | 1.13 | 1.11 | 108.43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8%, 자립형 어촌계가 56%, 성장형 어촌계는 39%로 발전수준이 중간정도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복지형 어촌계 6개소, 자립형 24개소로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발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어선어업형이 57%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합어업형 37%, 양식어업형이 6%의 어업형태를 보이고 있음. 주 수산물은 전복, 오징어 및 미역임. 그리고 전복 등은 어촌계 마을어장에 종자를 살포하여 양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149>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경 북 | 156 | 12 | 88 | 56 | 89 | 9 | 58 | 20 | 6 | 130 |
| | 100% | 8% | 56% | 36% | 57% | 6% | 37% | 13% | 4% | 83% |
| 포항시 | 65 | - | 37 | 28 | 41 | - | 24 | 9 | 4 | 52 |
| 경주시 | 17 | 1 | 9 | 7 | 0 | - | 17 | 1 | - | 16 |
| 영덕군 | 30 | 6 | 24 | - | 29 | - | 1 | 2 | - | 28 |
| 울진군 | 33 | 3 | 11 | 19 | 10 | 8 | 15 | 4 | 1 | 28 |
| 울릉군 | 11 | 2 | 7 | 2 | 9 | 1 | 1 | 4 | 1 | 6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경북의 총 어선수는 4,649척으로 전국 91,609척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34,136톤으로 척당 7.3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1,373척으로 29.5%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2,205척으로 47.4%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1,071척으로 23.0%임
-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가장 큰 해안도시인 포항시에 동력선의 척수가 45.2%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영덕군이 19.8%, 울진군이 14.9%임

<표 5.150>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 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경북(B) | 4,364 | 33,930.88 | 285 | 205.66 | 1,373 | 2,205 | 594 | 477 | |
| 연안(C) | 4,271 | 33,874.47 | 273 | 201.97 | 1,271 | 2,202 | 594 | 459 | |
| 연안시군 | 포항시 | 2,085 | 18,221.91 | 16 | 8.30 | 537 | 1,182 | 178 | 189 |
| | 경주시 | 458 | 2,722.41 | 25 | 19.42 | 252 | 162 | 19 | 50 |
| | 영덕군 | 748 | 4,389.26 | 172 | 140.35 | 311 | 407 | 140 | 62 |
| | 울진군 | 643 | 5,154.20 | 53 | 31.39 | 151 | 315 | 137 | 92 |
| | 울릉군 | 337 | 3,386.69 | 7 | 2.51 | 20 | 136 | 120 | 66 |
| 내륙시군 | 93 | 56.41 | 12 | 33.69 | 102 | 3 | - | - | |
| 내륙시군 | 안동시 | 62 | 42.93 | - | - | 59 | 3 | - | - |
| | 구미시 | 7 | 2.14 | - | - | 7 | - | - | - |
| | 상주시 | 7 | 2.96 | - | - | 7 | - | - | - |
| | 문경시 | 1 | 0.67 | - | - | 1 | - | - | - |
| | 의성군 | 4 | 1.69 | 1 | 0.19 | 5 | - | - | - |
| | 청도군 | - | - | 10 | 33.18 | 10 | - | - | - |
| | 성주군 | 5 | 2.69 | - | - | 5 | - | - | - |
| | 칠곡군 | 7 | 3.33 | - | - | 7 | - | - | - |
| | 예천군 | - | - | 1 | 0.32 | 1 | - | - | - |
| B/A(%) | 4.94 | 4.55 | 8.94 | 6.97 | 4.58 | 4.70 | 6.76 | 6.57 | |
| C/B(%) | 97.87 | 99.83 | 95.79 | 98.21 | 92.57 | 99.86 | 100.00 | 96.23 | |

※자료 : 경상북도, 「경상북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경상북도는 15개항으로 전체의 약 14%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4개소로 경상북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93%임
- 경상북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1,986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4.5%가 투자되었으며, 울진군이 675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울릉군, 포항시, 영덕군, 경주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151>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북도 | 15 | 14 | | 1 | | |
| 포항시 | 2 | 2 | 대보항, 양포항 | - | - | |
| 경주시 | 2 | 2 | 감포항, 읍천항 | - | - | |
| 영덕군 | 4 | 4 | 대진항, 강구항, 구계항, 축산항 | - | - | |
| 울진군 | 4 | 4 | 죽변항, 사동항, 오산항, 구산항 | - | - | |
| 울릉군 | 3 | 2 | 저동항, 현포항 | 1 | 남양항 | |

<표 5.152>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북도 | 391,803 | 222,530 | 22,843 | 24,166 | 23,231 | 24,463 | 18,914 | 12,856 | 21,300 | 21,500 |
| 포항시 | 대 보 | 14,834 | 5,900 | 1,886 | 1,770 | 1,789 | 1,739 | 1,750 | - | - |
| | 양 포 | 37,747 | 18,189 | 893 | 1,797 | 3,285 | 1,794 | 1,789 | 3,000 | 7,000 |
| 경주시 | 감 포 | 31,124 | 14,619 | 3,146 | 3,990 | 2,484 | 4,087 | 798 | - | 2,000 |
| | 읍 천 | 8,633 | 8,633 | - | - | - | - | - | - | - |
| 영덕군 | 대 진 | 16,634 | 12,121 | - | - | 1,961 | 2,552 | - | - | - |
| | 축 산 | 26,847 | 21,093 | 1,700 | - | 955 | 1,694 | 1,175 | 230 | - |
| | 강 구 | 16,081 | 3,121 | - | 276 | 1,489 | 497 | 2,000 | 1,998 | 4,000 |
| | 구 계 | 7,180 | 6,687 | - | - | 246 | 231 | 16 | - | - |
| 울진군 | 죽 변 | 19,063 | 10,390 | 1,813 | - | 721 | - | 800 | 1,139 | 1,500 |
| | 오 산 | 37,690 | 14,967 | 3,075 | 3,470 | 2,160 | 5,757 | 3,761 | - | 1,500 |
| | 사 동 | 20,081 | 19,774 | - | - | - | 27 | 280 | - | - |
| 울릉군 | 구 산 | 40,311 | 13,620 | 3,075 | 3,499 | 3,991 | 2,692 | 3,545 | 3,489 | 4,300 |
| | 현 포 | 59,612 | 44,330 | 5,390 | 8,291 | 1,601 | - | - | - | - |
| 울릉군 | 저 동 | 37,480 | 29,086 | 1,865 | 1,073 | 549 | 407 | - | - | 4,500 |
| | 남양 | 18,486 | - | - | - | 2,000 | 2,986 | 3,000 | 3,000 | 3,000 |

(2) 지방어항

- 경상북도는 23개항으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9개소로 약 39%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340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7.3%가 투자되었으며, 포항시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경주시, 영덕군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153> 지방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북도 | 23 | 9 | | 14 | | |
| 포항시 | 8 | 2 | 발산항, 모포항 | 6 | 삼정항, 대보항, 방석항, 지경항, 죽천항, 이가리항 | |
| 경주시 | 3 | 2 | 전촌항, 가곡항 | 1 | 나정항 | |
| 영덕군 | 6 | 2 | 경정항, 백석항 | 4 | 병곡항, 부경항, 노물항, 창포항 | |
| 울진군 | 3 | 1 | 직산항 | 2 | 골장항, 기성항 | |
| 울릉군 | 3 | 2 | 통구미항, 천부항 | 1 | 태하항 | |

<표 5.154>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북도 | 34,026 | 3,260 | 3,960 | 4,232 | 4,742 | 4,832 | 3,250 | 3,250 | 3,250 | 3,250 |
| 포항시 | 발산 | 2,454 | 815 | 792 | 847 | - | - | - | - | - |
| | 모포 | 3,544 | 815 | 792 | 846 | 1,091 | - | - | - | - |
| | 지경 | 5,517 | - | - | - | 761 | 1,276 | 730 | 1,200 | 1,550 |
| 경주시 | 전촌 | 3,621 | 815 | 792 | 846 | 1,168 | - | - | - | - |
| | 가곡 | 7,557 | - | 792 | 846 | 961 | 1,278 | 730 | 1,600 | 1,350 |
| 영덕군 | 경정 | 2,454 | 815 | 792 | 847 | - | - | - | - | - |
| | 노물 | 3,569 | - | - | - | 761 | 1,278 | 730 | 450 | 350 |
| | 백석 | 2,060 | - | - | - | - | 1,000 | 1,060 | - | - |

(3) 어촌정주어항

- 경상북도는 4개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없음

<표 5.155>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북도 | 4 | - | | 4 | | |
| 울진군 | 4 | - | | 4 | 석호항, 죽진항, 동정항, 금음항 | |

<표 5.156>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경상북도 | 5,233 | - | - | - | - | - | 2,043 | 1,790 | 1,400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22개권역, 사업비 825억원중 '06년말까지 1단계 15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총 506억원을 투자하였음
- '07년 현재 2단계사업 3개소를 추진중이며 '08년까지 사업비는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사업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포항시 4개소, 경주시 2개소, 영덕군 3개소, 울진군 3개소, 울릉군 3개소 등 총 15개권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포항 하정권역(2007~2010년), 영덕 삼사권역(2007~2010년), 울진 죽변권역(2007~2009년)을 현재 추진중임

<표 5.157>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 북 | 18 | 56,823 | 15 | 50,573 | 3 | 4,125 | (1) | 2,125 |
| 포항시 | 5 | 13,907 | 4 | 12,532 | 1 | 1,375 | - | - |
| 경주시 | 2 | 7,850 | 2 | 7,850 | - | - | - | - |
| 영덕군 | 4 | 11,821 | 3 | 10,446 | 1 | 1,375 | - | - |
| 울진군 | 4 | 13,808 | 3 | 10,308 | 1 | 1,375 | (1) | 2,125 |
| 울릉군 | 3 | 9,437 | 3 | 9,437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53.5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38.5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마을 중 7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3개 마을은 2009년 이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투자실적은 영덕군 4개마을에 23.5억원, 울진군 3개마을에 15억원을 투자하였음

<표 5.15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 북 | 7 | 3,850 | 7 | 3,850 | - | - | - | - |
| 영덕군 | 4 | 2,350 | 4 | 2,350 | - | - | - | - |
| 울진군 | 3 | 1,500 | 3 | 1,50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영덕군 대진항은 총사업비 50억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완료할 예정이며, 경주시 전촌항 2008년까지 29억원을 투자

<표 5.159>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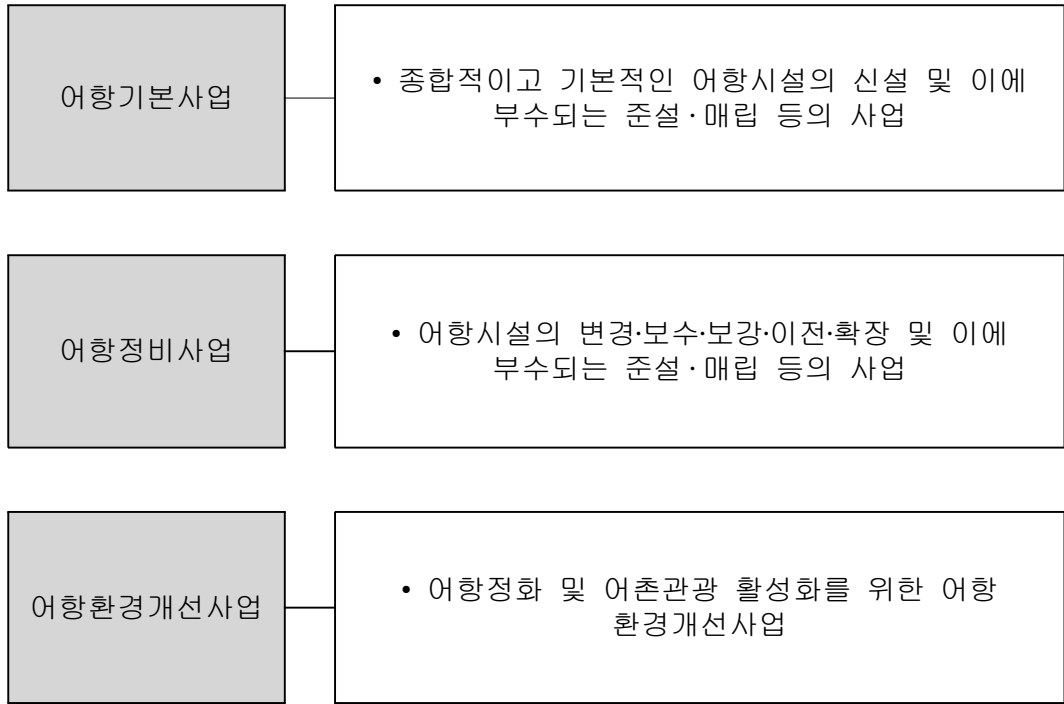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경 북 | | | 11,000 | 7,926 | - | 3,934 | 3,992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영덕군 | 대진 | 5,000 | 5,000 | - | 1,734 | 3,266 |
| | 경주시 | 전촌 | 6,000 | 2,926 | - | 2,200 | 726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8개항)은 2013년까지 7개항을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중장기계획시 잔여 1개항 완료 및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6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남양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 • 오산항, 구산항, 축산항, 강구항, 남양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집중투자로 완공률 48% 이상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잔여 7개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3년 계속투자항에 대한 완공률 100%를 목표로 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09년 울릉군의 남양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19,349백만원을 투자하여 2개항을 완공, 완공율 48%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은 현재 12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울진군의 오산항, 사동항, 영덕군의 축산항, 강구항, 울릉군의 남양항 등 5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의 단기계획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어항기능시설은 단기계획에서 1차 사업 중 현지어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6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경 북 | 총 계 | 227,485 | 24,729 | 33,323 | 49,202 | 62,958 | 57,273 | |
| | 어항기본사업 | 31,700 | 8,750 | 5,611 | 4,970 | 5,801 | 6,568 | |
| | 어항정비사업 | 160,696 | 15,343 | 26,740 | 38,500 | 44,747 | 35,366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35,089 | 636 | 972 | 5,732 | 12,410 | 15,339 | |

■ 중장기(2014~2023)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12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어촌정주어항의 완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16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경북 | 총 계 | 495,747 | 43,322 | 44,944 | 47,124 | 48,445 | 49,591 | 51,832 | 52,508 | 52,778 | 52,532 | 52,671 |
| | 어항 기본사업 | 68,178 | 4,831 | 5,072 | 5,325 | 5,591 | 5,870 | 7,493 | 7,876 | 8,277 | 8,700 | 9,143 |
| | 어항 정비사업 | 216,841 | 21,490 | 21,533 | 21,576 | 21,619 | 21,662 | 21,705 | 21,749 | 21,792 | 21,836 | 21,879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210,728 | 17,001 | 18,339 | 20,223 | 21,235 | 22,059 | 22,634 | 22,883 | 22,709 | 21,996 | 21,649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6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촌항 사업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7개권역에 총 2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시행권역 : 포항시 하정(2007년, 50억), 대부(2009년, 50억) 칠포(2009년, 30억), 석병(2012년, 50억), 양포권역(2013년, 40억), 영덕군 삼사권역(2007년 50억), 울진군 죽변권역(2007년, 50억) 총 7개권역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포항시 2개소, 울진군 1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경주시 전촌항(어촌관광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16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경상북도 | 합계 | 33,324 | 5,868 | 9,059 | 4,000 | 4,797 | 9,600 |
| | 어촌개발사업 | 25,750 | 4,642 | 6,711 | 2,000 | 3,797 | 8,60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574 | 1,226 | 2,348 | 1,00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경북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960억원, 신규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총 1,26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6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계 | 126,000 | 9,155 | 10,335 | 10,903 | 11,505 | 12,211 | 12,848 | 13,588 | 14,345 | 15,137 | 15,973 | |
| 경상남도 | 어촌개발사업 | 60,000 | 4,714 | 4,972 | 5,220 | 5,485 | 5,829 | 6,086 | 6,429 | 6,745 | 7,080 | 7,44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36,000 | 2,732 | 2,897 | 3,071 | 3,253 | 3,450 | 3,655 | 3,868 | 4,105 | 4,358 | 4,611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0 | 1,709 | 2,466 | 2,612 | 2,767 | 2,932 | 3,107 | 3,291 | 3,495 | 3,699 | 3,922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8,82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6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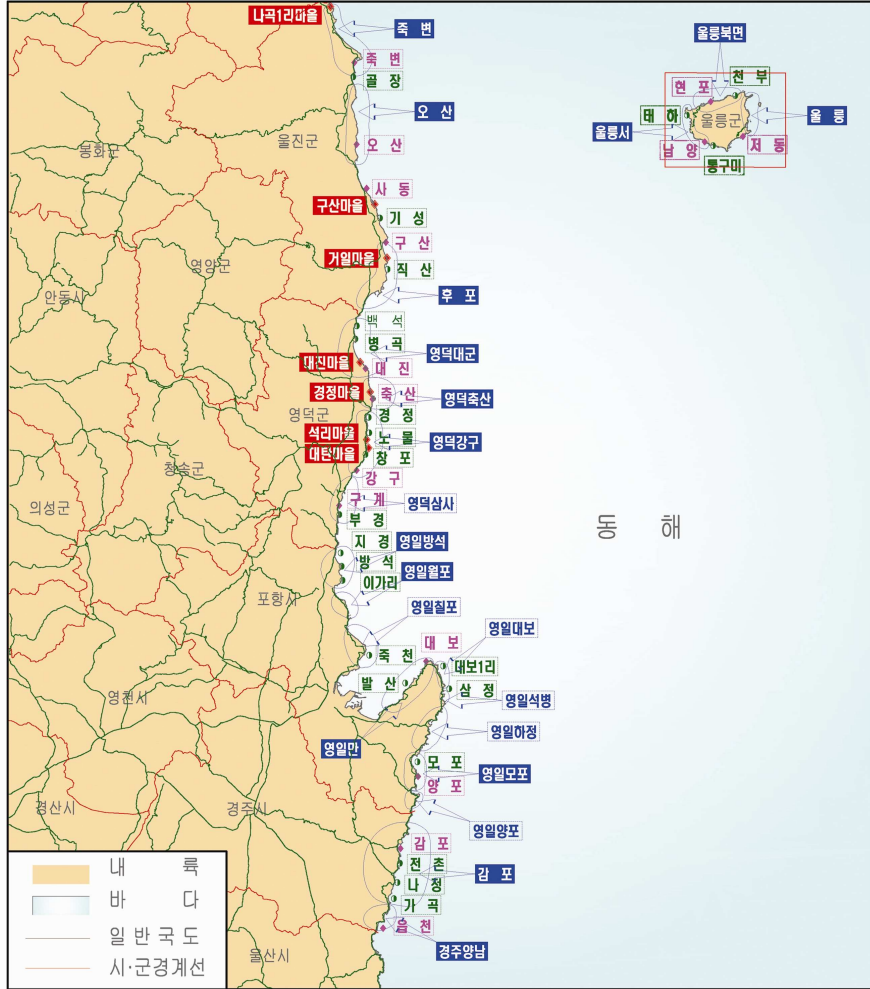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882,556 | 260,809 | 621,747 | |
| 어항개발 | 723,232 | 227,485 | 495,747 | |
| 어촌개발 | 159,324 | 33,324 | 126,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7,416억원, 중장기 1조 7,596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4,546명, 중장기 11,776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상북도)



<그림 5.18> 경상북도 계획 현황도

[경상북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21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7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15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23 |
| ■ | 사업완료 | 22 |
| □ | 사업진행 | 1 |
| □ | 사업계획 | 5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257,809 | 30,597 | 42,382 | 52,202 | 66,755 | 65,873 | |
| 어항 | 소계 | 227,485 | 24,729 | 33,323 | 49,202 | 62,958 | 57,273 |
| | 어항기본사업 | 31,700 | 8,750 | 5,611 | 4,970 | 5,801 | 6,568 |
| | 어항정비사업 | 160,696 | 15,343 | 26,740 | 38,500 | 44,747 | 35,366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35,089 | 636 | 972 | 5,732 | 12,410 | 15,339 |
| 어촌 | 소계 | 30,324 | 5,868 | 9,059 | 3,000 | 3,797 | 8,600 |
| | 어촌개발사업 | 25,750 | 4,642 | 6,711 | 2,000 | 3,797 | 8,600 |
| 어촌관광개발사업 | 4,574 | 1,226 | 2,348 | 1,000 | - | - | |

제 10 장 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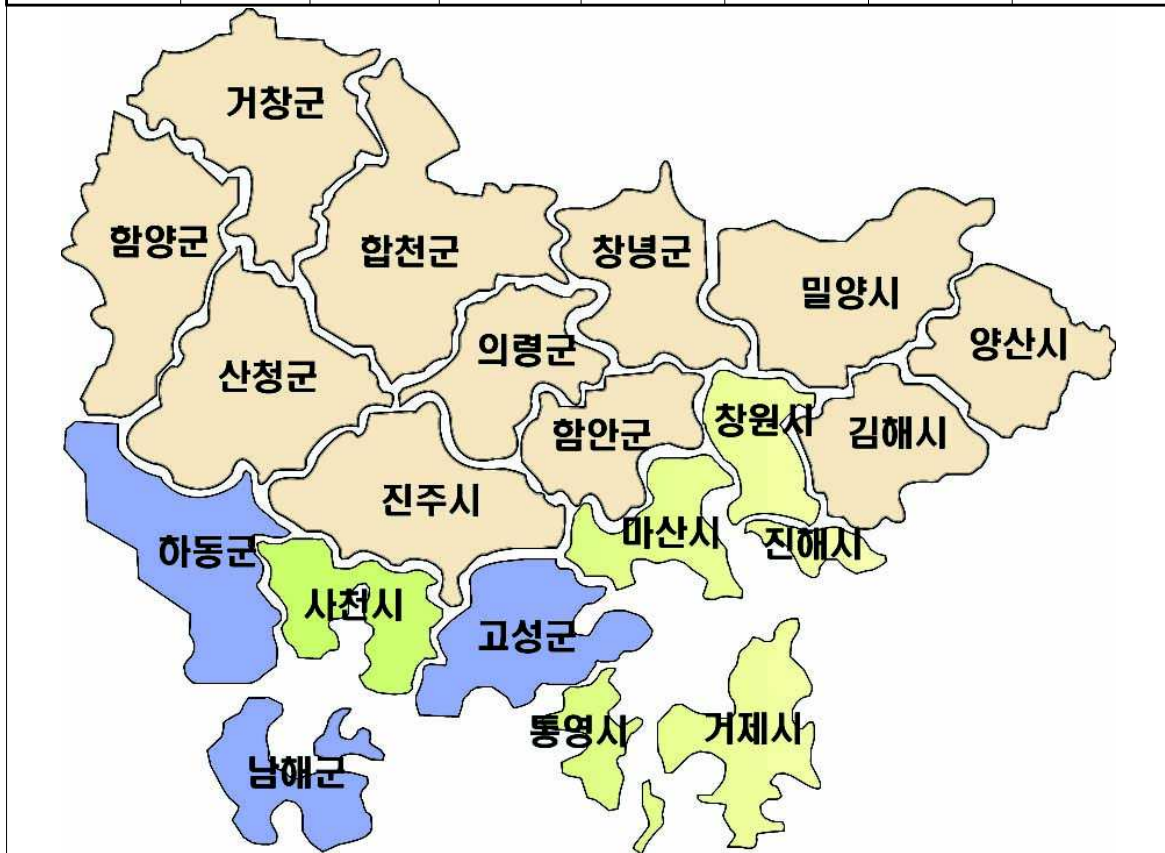
1.1 지역의 현황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의 6시 3개군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6시) : 진해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 군 지역(3군) :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단위 : 개소))

| 구 | 분 | 시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경상남도 | | 6 | 3 | 396 | 17 | 63 | 345 | 145 |



<그림 5.19>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경상남도 어업인구는 52,334명이며, 시군별로 어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통영시로 10,231명이 어업에 종사함
- 연간어획량은 662,778M/T, 어획금액은 596,163백만원임. 연간어획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해군으로 연간 50,132M/T을 생산함
-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2,911천원으로 전국의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인 21,684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마산시로 (28,762천원) 조사됨

<표 5.167>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M/T) | 어획금액(백만원) | 호당평균소득(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경남(B) | 187,521 | 28,122 | 500,292 | 52,334 | 396 | 24,026 | 125,869 | 222,332 | 22,911 |
| 창원시 | 270 | 88 | 760 | 110 | 1 | 84 | 602 | 589 | 21,000 |
| 마산시 | 40,522 | 2,645 | 159,304 | 3,094 | 27 | 1,732 | 23,492 | 42,560 | 28,762 |
| 진해시 | 57,221 | 2,113 | 121,872 | 4,391 | 18 | 1,993 | 533 | 5,975 | 20,788 |
| 통영시 | 34,354 | 6,144 | 85,548 | 10,231 | 110 | 5,730 | 25,808 | 42,620 | 20,714 |
| 사천시 | 8,421 | 3,871 | 16,042 | 6,319 | 32 | 2,969 | 10,826 | 20,369 | 23,844 |
| 거제시 | 22,190 | 3,102 | 54,547 | 4,405 | 67 | 3,048 | 9,865 | 29,607 | 18,483 |
| 고성군 | 7,383 | 2,332 | 19,294 | 7,635 | 25 | 1,695 | 1,974 | 12,274 | 27,992 |
| 남해군 | 10,871 | 5,458 | 26,778 | 10,251 | 90 | 4,641 | 50,132 | 56,722 | 18,822 |
| 하동군 | 6,039 | 2,309 | 15,697 | 5,836 | 25 | 2,052 | 2,629 | 11,316 | 22,936 |
| 김해시 | 250 | 60 | 450 | 62 | 1 | 82 | 8 | 300 | 18,639 |
| B/A(%) | 15.2 | 17.2 | 14.8 | 17.5 | 20.1 | 16.0 | 11.0 | 13.8 | 105.6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8%, 자립형 어촌계가 33%, 성장형 어촌계는 58%로 대부분의 어촌계가 경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어업형 46%, 어선어업형 36%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산물로는 홍합, 굴, 바지락 등임. 그 외 양식어업형 17%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불과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16%였고, 그 외 연안촌락형은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68>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경 남 | 396 | 33 | 131 | 232 | 146 | 68 | 182 | 70 | 65 | 261 |
| | 100% | 8% | 33% | 58% | 37% | 17% | 46% | 18% | 16% | 66% |
| 창원시 | 1 | - | 1 | - | - | - | 1 | 1 | - | - |
| 마산시 | 27 | 13 | 7 | 7 | 10 | 4 | 13 | 5 | 1 | 21 |
| 진해시 | 18 | - | 17 | 1 | 5 | - | 13 | 15 | 3 | - |
| 통영시 | 110 | - | 17 | 93 | 48 | 35 | 27 | 28 | 49 | 33 |
| 사천시 | 32 | 4 | 9 | 19 | 8 | 1 | 23 | 4 | 2 | 26 |
| 거제시 | 67 | - | - | 67 | 27 | 3 | 37 | 6 | 6 | 55 |
| 고성군 | 25 | - | 3 | 22 | 9 | 9 | 6 | 5 | 1 | 19 |
| 남해군 | 90 | 15 | 75 | - | 37 | 5 | 48 | 0 | 2 | 88 |
| 하동군 | 25 | 1 | 1 | 23 | 0 | 11 | 14 | 5 | 1 | 19 |
| 김해시 | 1 | 0 | 1 | - | 1 | - | - | 1 | - | -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2006. 12)

3) 어선세력 현황

- 2004년말 경남의 총 어선수는 20,378척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톤수는 82,175톤으로 척당 평균 2.9톤임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6,568척(32.2%), 1~5톤미만

11,660척(57.2%) 그리고 5톤 이상의 어선 2,150척(5.3%)에 불과한 실정임

<표 5.169>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 경남(B) | 19,095 | 81,492 | 1,283 | 683 | 6,568 | 11,660 | 1,194 | 956 | |
| 연안(C) | 18,973 | 81,427 | 1,215 | 671 | 6,385 | 11,653 | 1,194 | 689 | |
| 연안시군 | 창원시 | 150 | 578 | 28 | 16 | 116 | 59 | 1 | 2 |
| | 마산시 | 2,157 | 7,720 | 383 | 181 | 1,207 | 1,165 | 46 | 122 |
| | 진해시 | 963 | 2,051 | 54 | 24 | 393 | 551 | 66 | 7 |
| | 통영시 | 5,119 | 34,322 | 224 | 152 | 873 | 3,552 | 508 | 233 |
| | 사천시 | 1,923 | 14,006 | 95 | 48 | 669 | 942 | 171 | 236 |
| | 거제시 | 3,202 | 9,142 | 80 | 32 | 941 | 2,142 | 133 | 22 |
| | 고성군 | 1,441 | 4,386 | 78 | 64 | 413 | 987 | 70 | 49 |
| | 남해군 | 3,001 | 7,864 | 179 | 120 | 1,168 | 1,761 | 187 | 18 |
| | 하동군 | 937 | 1,316 | 94 | 34 | 530 | 489 | 12 | - |
| | 김해시 | 80 | 42 | - | - | 75 | 5 | - | - |
| 내륙시군 | 122 | 65 | 67 | 12 | 182 | 7 | - | - | |
| 내륙시군 | 진주시 | - | - | 1 | - | 1 | - | - | - |
| | 밀양시 | 71 | 39 | 17 | 3 | 83 | 5 | - | - |
| | 양산시 | 20 | 12 | - | - | 19 | 1 | - | - |
| | 의령군 | 9 | 3 | 2 | 1 | 11 | - | - | - |
| | 함안군 | 3 | 1 | 9 | 3 | 12 | - | - | - |
| | 창녕군 | 14 | 7 | 30 | 3 | 43 | 1 | - | - |
| | 산청군 | 1 | 1 | - | - | 1 | - | - | - |
| | 함양군 | - | - | - | - | - | - | - | - |
| | 거창군 | - | - | - | - | - | - | - | - |
| | 합천군 | 4 | 2 | 9 | 2 | 13 | - | - | - |
| B/A(%) | 21.60 | 10.92 | 40.24 | 23.14 | 21.93 | 24.86 | 13.59 | 13.17 | |
| C/B(%) | 99.36 | 99.92 | 94.70 | 98.24 | 97.21 | 99.94 | 100.00 | 72.07 | |

※ 자료 : 경상남도, 「경상남도통계연보」, 2005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경상남도는 17개항으로 전체의 약 29%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5개소로 경상남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88%임

<표 5.170>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남도 | 17 | 15 | | 2 | | |
| 마 산 시 | 2 | 2 | 광암항, 원전항 | - | | |
| 통 영 시 | 5 | 4 | 능양항, 삼덕항, 옥지항, 매물도항 | 1 | 호두항 | |
| 사 천 시 | 1 | 1 | 신수항 | - | - | |
| 거 제 시 | 6 | 5 | 외포항, 능포항, 다대다포항, 지세포항, 구조라항 | 1 | 대포항 | |
| 고 성 군 | 1 | 1 | 맥전포항 | - | - | |
| 남 해 군 | 2 | 2 | 미조항, 물건항 | - | - | |

- 경상남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1,419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0.4%가 투자되었으며, 통영시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거제시, 마산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171>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남도 | 317,186 | 190,107 | 15,819 | 13,733 | 21,593 | 17,012 | 22,019 | 11,003 | 14,000 | 11,900 |
| 마 산 시 | 광 암 | 13,084 | 6,815 | 1,631 | 2,550 | 1,727 | 361 | - | - | - |
| | 원 전 | 23,931 | - | - | 417 | 1,014 | 4,000 | 5,000 | 5,000 | 8,500 |
| 통 영 시 | 삼 덕 | 19,899 | 13,651 | 2,153 | 1,275 | 2,820 | - | - | - | - |
| | 호 두 | 13,194 | - | - | 9 | - | 998 | 2,987 | 3,000 | 3,200 |
| | 능 양 | 5,754 | 5,754 | - | - | - | - | - | - | - |
| | 옥 지 | 24,602 | 24,602 | - | - | - | - | - | - | - |
| | 매 물 도 | 34,340 | 16,701 | 3,930 | 2,992 | 4,334 | 3,415 | 2,968 | - | - |

<표 5.172> 국가어항 투자실적(계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남도 | 317,186 | 190,107 | 15,819 | 13,733 | 21,593 | 17,012 | 22,019 | 11,003 | 14,000 | 11,900 |
| 사천시 | 신수 | 7,113 | 6,547 | 217 | - | - | 349 | - | - | - |
| | 외포 | 10,605 | 10,115 | 354 | - | - | - | - | 136 | - |
| 거제시 | 능포 | 8,831 | 8,831 | - | - | - | - | - | - | - |
| | 지세포 | 46,595 | 27,841 | 3,539 | 3,076 | 3,056 | 3,580 | 3,503 | - | 2,000 |
| 고성군 | 구조라 | 13,764 | 6,600 | 1,801 | 899 | 2,315 | 1,340 | 442 | 367 | - |
| | 대포 | 9,983 | 9,707 | - | - | 276 | - | - | - | - |
| | 대포 | 11,271 | - | - | - | 1,008 | 543 | 2,020 | 2,500 | 2,500 |
| 남해군 | 맥전포 | 21,488 | 6,169 | 1,840 | 1,756 | 2,853 | 2,426 | 2,444 | - | 4,000 |
| | 물건 | 36,634 | 35,720 | - | 8 | 906 | - | - | - | - |
| 남해군 | 미조 | 16,098 | 11,054 | 354 | 751 | 1,284 | - | 2,655 | - | - |

(2) 지방어항

- 경상남도는 63개항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33개소로 약 52%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172> 지방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경상남도 | 63 | 34 | | 29 | | |
| 마산시 | 3 | 2 | 옥계항, 진동항 | 1 | 시락항 | |
| 진해시 | 1 | - | - | 1 | 수치항 | |
| 통영시 | 16 | 8 | 내항항, 돈지항, 견유항, 장작지항, 학림항, 이운항, 하포항, 연화항 | 8 | 평림항, 진촌항, 연대항, 곤리항, 연명항, 수월항, 예포항, 곡용포항 | |
| 사천시 | 4 | 3 | 대포항, 중항항, 늑도항 | 1 | 낙지포항 | |

(계속)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남도 | 63 | 34 | | 29 | | |
| 거 제 시 | 18 | 9 | 죽림항, 성포항, 시방항, 이수도항, 하청항, 송포항, 유교항, 쌍근항, 유호항 | 9 | 울포항, 도장포항, 동호항, 한내항, 거제항, 관포항, 물안항, 농소항, 장목항 | |
| 고 성 군 | 4 | 4 | 남포항, 포교항, 당동항, 당항항 | - | - | |
| 남 해 군 | 14 | 7 | 서상항, 선소항, 장포항, 적량항, 은점항, 냉천항, 당저항 | 7 | 지족항, 원천항, 유포항, 향촌항, 동갈화항, 향도항, 광천항 | |
| 하 동 군 | 3 | 1 | 노량항 | 2 | 중평항, 술상항 | |

- 경상남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673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4.4%가 투자되었으며, 거제시가 17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통영시, 남해군, 마산시, 하동군, 고성군, 사천시 순으로 투자되었음

<표 5.173>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남도 | 67,348 | 6,640 | 8,260 | 8,812 | 9,440 | 9,676 | 6,270 | 6,250 | 6,000 | 6,000 |
| 마 산 시 | 진 동 | 2,420 | 700 | 800 | 540 | 380 | - | - | - | - |
| | 육 계 | 3,350 | - | - | - | 700 | 1,000 | 700 | 950 | - |
| 통 영 | 돈 지 | - | - | - | - | - | - | - | - | - |
| | 장작지 | - | - | - | - | - | - | - | - | - |
| | 견 유 | - | - | - | - | - | - | - | - | - |
| | 이 운 | 2,700 | 700 | 700 | 700 | 600 | - | - | - | - |
| 사 천 시 | 하 포 | 2,471 | 700 | 571 | 700 | 500 | - | - | - | - |
| | 학 림 | 1,991 | - | 700 | 700 | 591 | - | - | - | - |
| | 연 화 | 3,550 | - | - | - | 700 | 1,000 | 700 | 700 | 450 |
| | 연 명 | 3,100 | - | - | - | - | 1,000 | 700 | 700 | 700 |
| | 평 림 | 1,400 | - | - | - | - | - | - | 400 | 1,000 |

<표 5.174> 지방어항 투자실적(계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 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상남도 | 67,348 | 6,640 | 8,260 | 8,812 | 9,440 | 9,676 | 6,270 | 6,250 | 6,000 | 6,000 |
| 사천시 | 늑도 | 2,750 | - | - | - | 1,000 | 700 | 700 | 350 | |
| | 성포 | - | - | - | - | - | - | - | - | |
| 거제시 | 이수도 | 1,479 | 700 | 779 | - | - | - | - | - | |
| | 죽림 | - | - | - | - | - | - | - | - | |
| | 유교 | 4,140 | - | 340 | 700 | 700 | 1,000 | 700 | 700 | - |
| | 쌍근 | 4,850 | - | - | 700 | 700 | 1,000 | 700 | 700 | 1,050 |
| | 유호 | 4,068 | - | - | - | 718 | 1,000 | 700 | 700 | 950 |
| | 울포 | 3,216 | - | - | - | - | 816 | 700 | 700 | 1,000 |
| | 남포 | - | - | - | - | - | - | - | - | - |
| 고성군 | 포교 | 2,900 | 700 | 800 | 700 | 700 | - | - | - | - |
| | 당동 | 1,569 | - | - | 700 | 869 | - | - | - | - |
| | 장포 | 1,620 | 520 | 1100 | - | - | - | - | - | - |
| 남해군 | 적량 | 3,010 | 785 | 728 | 1,272 | 225 | - | - | - | - |
| | 선소 | - | - | - | - | - | - | - | - | - |
| | 은점 | 3,534 | 1,135 | 1,042 | 700 | 657 | - | - | - | - |
| | 냉천 | 2,260 | - | - | 700 | 700 | 860 | - | - | - |
| | 항촌 | 500 | - | - | - | - | - | - | - | 500 |
| | 노량 | 4,470 | 700 | 700 | 700 | 700 | 1,000 | 670 | - | - |

(3) 어촌정주어항

- 경상남도는 63개항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28개소로 약 44%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표 5.174>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남도 | 345 | 105 | | 240 | | |
| 진 해 시 | 6 | 4 | 죽곡항, 명동항, 삼포항, 우도항 | 2 | 행암항, 잠도항 | |
| 통 영 시 | 49 | 19 | 중화항, 수월항, 고다골항, 대항항, 미조항, 동암항, 오촌항, 내포항, 대방포항, 삼화항, 상리항, 용초항, 여차항, 관암항, 서좌항, 대항항, 답포항, 수우항, 덕동항 | 30 | 궁항항, 모상항, 양화항, 연기항, 적촌항, 신리항, 대안항, 기호항, 어의항, 수도항, 동부항, 거망항, 서부항, 내촌항, 구집항, 창포항, 손덕항, 조암항, 봉암항, 소고포항, 동좌항, 옥동항, 내지항, 먹방항, 읍포항, 외지항, 민양항, 소포항, 당동항, 미수항 | |
| 사 천 시 | 40 | 22 | 실안항, 산분령항, 광포항, 송포항, 금문항, 종포항, 검정항, 안도항, 내구항, 다맥항, 신선항, 선전항, 중방항, 구포항, 장천항, 환포항, 조도항, 송도항, 하봉항, 초양항, 월등도항, 진도항 | 18 | 미룡항, 선진항, 주문항, 점복개항, 갯섬항, 신소항, 중촌항, 구우진항, 구랑항, 검도항, 비토항, 상촌항, 중봉항, 하부포항, 마도항, 저도항, 대구항, 신도항 | |
| 거 제 시 | 83 | 7 | 여차항, 저구항, 학동항, 광리항, 계도항, 와현항, 구영항 | 76 | 내간항, 고당항, 법동항, 산전항, 산후항, 실리항, 소량항, 오수항, 명사항, 갈곶항, 탑포항, 가배항, 쪽박항, 함박항, 양지말항, 영북항, 영월항, 오송항, 수산항, 녹산항, 내평항, 술역항, 호곡항, 면포항, 미포항, 발포항, 송포항, 염막포항 | |

(계속)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경상남도 | 345 | 105 | | 240 | | |
| 거제시 | 83 | 7 | | 76 | 왜선포항, 어구항, 아사항, 학산항, 견내량, 고개도항, 사곡항, 금포항, 성내항, 향도항, 후포항, 지석항, 군령포항, 신교항, 신전항, 실전항, 진두항, 창외항, 장촌항, 청곡항, 청포항, 한내항, 덕포항, 망치항, 양화항, 옥림항, 예구항, 내도항, 지심도항, 두모항, 황포항, 대금항, 궁농항, 송진포항, 흥남항, 대계항, 소계항, 곡촌항, 대곡항, 황덕항, 덕곡항, 석포항, 어온항, 장곶항, 금곡항, 연구항, 옥계항, 유계항 | |
| 고성군 | 61 | 11 | 마리개항, 두모항, 용호항, 덕명항, 어신항, 전포항, 북촌항, 용흥항, 장기항, 입암항, 오장동항 | 50 | 거운항, 곡용항, 구선청항, 신부항, 병산항, 장지항, 군령포항, 모래치항, 매화항, 던재항, 대포항, 배암목항, 하촌항, 솔섬항, 장백항, 하중촌항, 가룡항, 임포항, 지포항, 평촌항, 대구막항, 동문항, 발막개항, 용암포항, 입암항, 제전항, 봉화골항, 동촌항, 검포항, 대천항, 돈막항, 좌부천항, 대막포항, 내신항, 전도항, 덕곡항, 동해항, 매정항, | |

(계속)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경상남도 | 345 | 105 | | 240 | | |
| 고 성 군 | 61 | 11 | | 50 | 세포항, 대가룡항, 망일포항, 소가룡항, 우두포항, 하장항, 구학포항, 소구학포항, 큰구학포항, 장항항, 봉곡항, 화당항 | |
| 남 해 군 | 95 | 43 | 소벽항, 화계항, 전도항, 노루목항, 평산항, 화전항, 곤유항, 지족2항, 금포항, 차면항, 봉우항, 남상항, 구미항, 장항항, 천포항, 광두항, 금평항, 금송항, 고순항, 작장항, 보천항, 가인항, 대곡항, 후리망골항, 이어항, 도마항, 예계항, 당항항, 북섬항, 와현항, 고잔항, 송남항, 숙호항, 덕월항, 두곡항, 대량항, 고모항, 초양항, 토촌항, 섬호항, 심천항, 노도항, 호도항 | 52 | 신흥항, 사포항, 구도항, 대벽항, 설리항, 염해항, 동대항, 지족항, 월곡항, 감암항, 문항항, 유구항, 용소항, 초전항, 금전항, 벽련항, 두모항, 동흥항, 노량항, 옥동항, 노구항, 상주항, 답하항, 선구항, 흥현항, 사촌항, 울도항, 단항항, 정포항, 노구항, 양화금항, 월포항, 평산2항, 수원늘항, 왕지항, 고현항, 가인포항, 소량항, 북병항, 언포항, 진목항, 서갈화항, 상남항, 동비항, 고사항, 고두항, 서대항, 식포항, 모천항, 대지포항, 가천항, 조도항 | |
| 하동군 | 11 | 2 | 명덕항, 내도항 | 9 | 대치항, 구노량항, 송문항, 연막항, 나팔항, 서근항, 고포항, 양포항, 대도항 | |

<표 5.175>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경상남도 | 27,766 | - | - | - | - | - | 11,963 | 7,500 | 8,303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48개권역 중 '06년말 기준으로 1단계 29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까지 1단계 잔여 3개권역 완료 및 2단계 3개권역(남해지족 어촌복합생활공간 포함) 계속 추진
- 총사업비 1,858억원 중 2006년말까지 1,006억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 93억원, 2008년 95억원을 투자 예정임
- 시군별 사업실적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마산(1개소), 진해(1개소), 통영(9개소), 사천(3개소), 거제(5개소), 고성(3개소), 남해(6개소), 하동(1개소)을 완료하였고 1단계 잔여사업은 2007년~2008년까지 마산 진동만, 남해 강진만, 사천 사천해안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통영육지, 남해(남해서부, 지족) 등 3개권역을 2007년부터 추진중임

<표 5.176>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 남 | 35 | 119,573 | 29 | 100,698 | 6 | 9,375 | (5) | 9,500 |
| 창 원 | - | - | - | - | - | - | - | - |
| 마 산 | 2 | 7,000 | 1 | 3,500 | 1 | 1,750 | (1) | 1,750 |
| 진 해 | 1 | 3,198 | 1 | 3,198 | - | - | - | - |
| 통 영 | 10 | 35,000 | 9 | 31,500 | 1 | 1,375 | (1) | 2,125 |
| 사 천 | 4 | 13,576 | 3 | 10,076 | 1 | 1,750 | (1) | 1,750 |
| 거 제 | 5 | 17,722 | 5 | 17,722 | - | - | - | - |
| 고 성 | 3 | 10,500 | 3 | 10,500 | - | - | - | - |
| 남 해 | 9 | 29,379 | 6 | 21,004 | 3 | 4,500 | (2) | 3,875 |
| 하 동 | 1 | 3,198 | 1 | 3,198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92.4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62.3억원을 투자하여 18개 마을 중 12개 마을 지원
- 2007년 4개소 20억원, 2008년 2개소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로는 마산시 1개소, 통영시 3개소, 사천시 2개소, 거제시 4개소, 고성군 1개소, 남해군 1개소, 하동군 1개소를 완료하였거나 2008년까지 완료예정임

<표 5.17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경 남 | 18 | 9,252 | 12 | 6,238 | 4 | 2,014 | 2 | 1,000 |
| 창 원 | - | - | - | - | - | - | - | - |
| 마 산 | 1 | 508 | 1 | 508 | - | - | - | - |
| 진 해 | - | - | - | - | - | - | - | - |
| 통 영 | 3 | 1,500 | 2 | 1,000 | 1 | 500 | - | - |
| 사 천 | 2 | 1,014 | 1 | 500 | 1 | 514 | - | - |
| 거 제 | 4 | 2,000 | 2 | 1,000 | 1 | 500 | 1 | 500 |
| 고 성 | 1 | 500 | 1 | 500 | - | - | - | - |
| 남 해 | 6 | 3,230 | 4 | 2,230 | 1 | 500 | 1 | 500 |
| 하 동 | 1 | 500 | 1 | 500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이며, 1단계사업(1994~2006) 기준임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고성군 맥전포항(어촌·어항복합공간) 50억원, 통영시 학림항(어촌관광단지) 60억원 등 총 사업비는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시군별로는 어촌·어항복합공간인 고성군 맥전포항에 2008년 12억원, 어촌관광단지 통영 학림항 2008년에 12억원을 투자

<표 5.178>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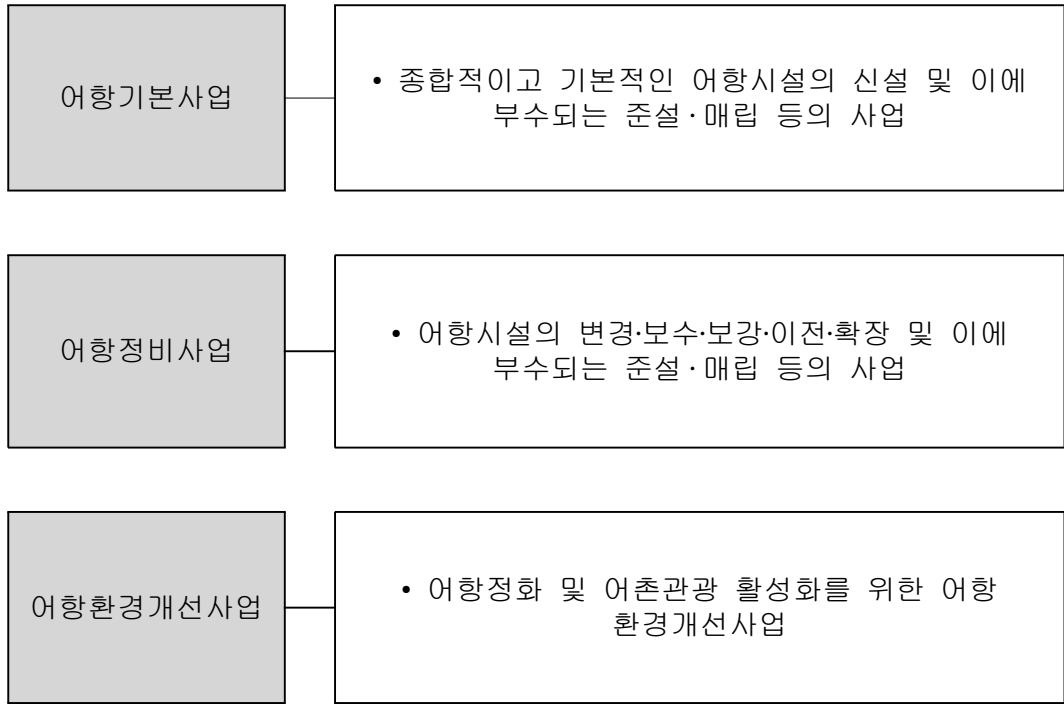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 경 남 | | 11,000 | 2,400 | - | - | 2,400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고성군 | 맥전포 | 5,000 | 1,200 | - | - | 1,200 |
| | 통영시 | 학림 | 6,000 | 1,200 | - | - | 1,200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여 완공율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4개항)은 2013년까지 모두 완료 향후 중장기계획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79>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포근포항, 호두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추가지정항 사업 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라항 어항정비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세포항, 맥전포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투자항로 완공률 72% 이상 달성 | -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지정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 완료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정주어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3년 계속투자항에 대한 완공률 100%를 목표로 하였으며, 통영시의 호두항, 거제시의 대포근포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국가어항 수요검토 결과 2008년 우선 지정되는 6개항중 하동군에 소재한 노량항, 고성군에 소재한 남포항 등 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3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53,529백만원을 투자하여 11개항을 완공, 완공율 72%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은 현재 4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거제시의 구조라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남해군에 소재한 미조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맥전포항은 2009년, 지세포항은 2011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단기계획에서 어항기능시설 1차 사업 중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80>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경남 | 총 계 | 231,236 | 33,117 | 51,542 | 47,452 | 48,476 | 50,649 | |
| | 어항기본사업 | 123,779 | 21,999 | 27,987 | 21,524 | 24,053 | 28,216 | |
| | 어항정비사업 | 38,690 | 4,565 | 8,000 | 9,000 | 11,125 | 6,000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68,767 | 6,553 | 15,555 | 16,928 | 13,298 | 16,433 | |

■ 중장기(2014~2023)

- 하동군에 소재한 노량항, 고성군에 소재한 남포항 등 2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추진 완료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17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계획 어촌정주어항의 완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181>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경 구 | 총 계 | 889,522 | 74,747 | 79,267 | 83,454 | 83,191 | 81,162 | 87,903 | 93,078 | 97,191 | 101,375 | 108,154 |
| | 어 항 기본사업 | 404,943 | 31,124 | 34,079 | 36,081 | 34,623 | 31,612 | 37,652 | 42,495 | 46,756 | 51,699 | 58,822 |
| | 어 항 정비사업 | 245,753 | 24,355 | 24,404 | 24,453 | 24,502 | 24,550 | 24,599 | 24,649 | 24,698 | 24,747 | 24,796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238,826 | 19,268 | 20,784 | 22,920 | 24,066 | 25,000 | 25,652 | 25,934 | 25,737 | 24,929 | 24,536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182>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없음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전포항, 학림항 사업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16개권역(어촌복합생활공간 포함)에 총 6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진행권역 : 통영(통영육지), 남해(남면서부), 남해(지족) 3개권역 2007년 현재 시행 중
 - 시행예정권역 : 마산(2개소), 통영(3개소), 사천(1개소), 거제(3개소), 고성(1개소), 남해(1개소), 하동(2개소) : 총 13개소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의 단기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고성군 맥전포항에 38억원, 통영시 학림항에 48억원으로 총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183>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경상남도 | 합 계 | 77,926 | 10,223 | 12,650 | 12,350 | 11,602 | 31,101 |
| | 어촌개발사업 | 66,326 | 6,623 | 8,250 | 10,750 | 10,602 | 30,101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8,600 | 3,600 | 4,400 | 600 | -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경남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2,200억원, 신규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총 2,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

<표 5.184>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경상남도 | 합 계 | 280,000 | 20,460 | 22,946 | 24,211 | 25,552 | 27,118 | 28,538 | 30,182 | 31,869 | 33,633 | 35,491 |
| | 어촌개발사업 | 130,000 | 10,214 | 10,770 | 11,310 | 11,886 | 12,629 | 13,186 | 13,929 | 14,616 | 15,340 | 16,1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90,000 | 6,829 | 7,243 | 7,678 | 8,132 | 8,625 | 9,138 | 9,671 | 10,263 | 10,895 | 11,526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60,000 | 3,417 | 4,933 | 5,223 | 5,534 | 5,864 | 6,214 | 6,582 | 6,990 | 7,398 | 7,845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1조 4,78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185>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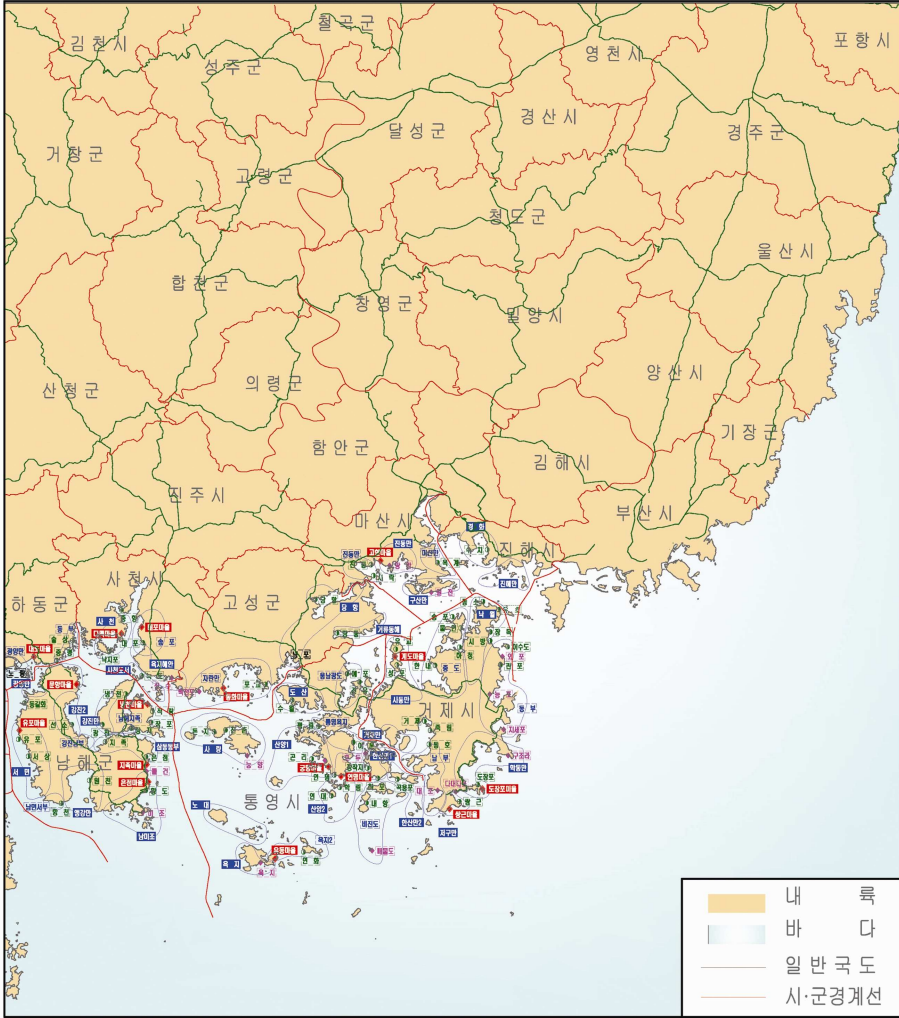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1,478,684 | 309,162 | 1,169,522 | |
| 어항개발 | 1,120,758 | 231,236 | 889,522 | |
| 어촌개발 | 357,926 | 77,926 | 280,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8,753억원, 중장기 3조 3,003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5,533명, 중장기 22,148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경상남도)



<그림 5.20> 경상남도 계획 현황도

[경상남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례 | 사업명 | 개소 |
|----|----------------|----|
| ○ | 어촌개발사업 | 44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6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2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16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61 |
| ■ | 사업완료 | 46 |
| □ | 사업진행 | 1 |
| □ | 사업계획 | 14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고 |
|----|----------|---------|--------|--------|--------|---------|--------|
| 총계 | 429,941 | 65,339 | 92,179 | 80,326 | 83,131 | 108,966 | |
| 어항 | 소계 | 355,015 | 55,116 | 79,529 | 68,976 | 72,529 | 78,865 |
| | 어항기본사업 | 247,558 | 43,998 | 55,974 | 43,048 | 48,106 | 56,432 |
| | 어항정비사업 | 38,690 | 4,565 | 8,000 | 9,000 | 11,125 | 6,000 |
| 어촌 | 어항환경개선사업 | 68,767 | 6,553 | 15,555 | 16,928 | 13,298 | 16,433 |
| | 소계 | 74,926 | 10,223 | 12,650 | 11,350 | 10,602 | 30,101 |
| 전 | 어촌개발사업 | 66,326 | 6,623 | 8,250 | 10,750 | 10,602 | 30,101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8,600 | 3,600 | 4,400 | 600 | - | - |

제 11 장 제 주 도

1.1 지역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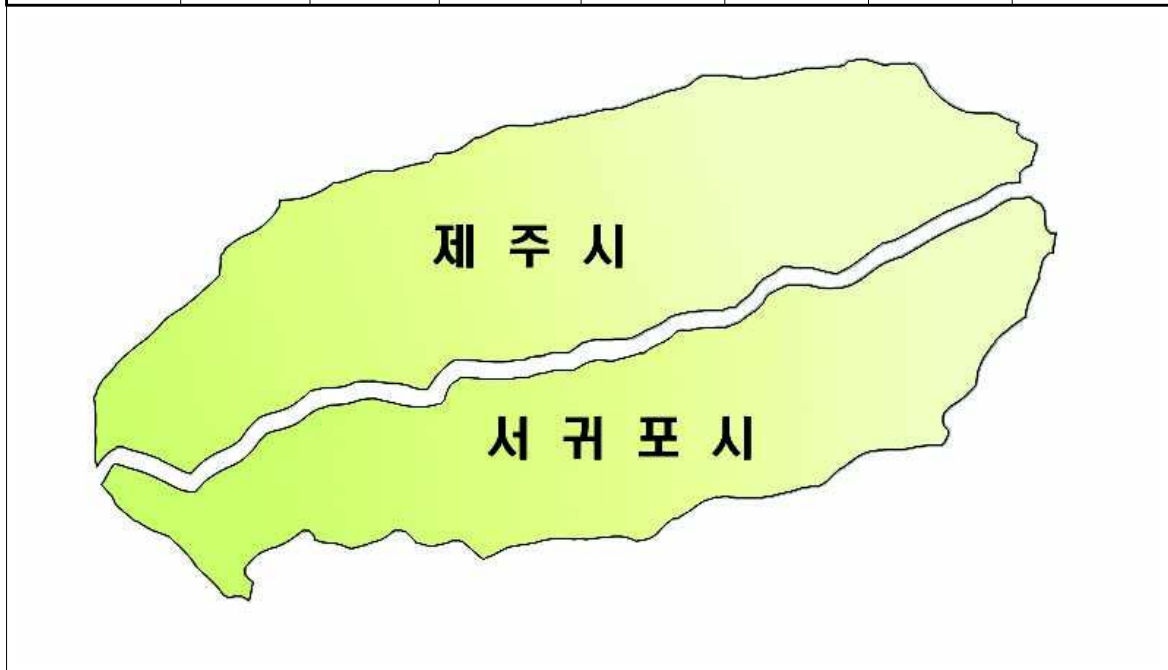
1)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시를 개획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접 시·도지역을 포함함

- 시 지역(2시) :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 : 개소))

| 구 분 | 시 | 군 | 어촌계수 | 어항수 | | | |
|-------|---|---|------|------|------|--------|-------|
| | | |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포구 |
| 제 주 도 | 2 | - | 100 | 6 | 18 | 46 | 29 |



<그림 5.21> 공간적 범위

2) 어촌계 현황

◦ 제주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국 인구 299,416명의 6.7%인 20,120명이며,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어촌계수가 더 많음

◦ 연간어획량은 2,626M/T로 이는 전국 연간 어획량 1,142,492M/T의 0.2%를 차지하며 어획금액은 11,76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금액의 0.7%에 해당

하는 비율임

- 지역별 연간어획량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1,675M/T, 서귀포시가 951M/T로 조사되었음
- 또한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0,155천원이며 이는 전국 평균 21,684천원에 9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86> 어촌계 현황

| 구분 | 가구(호) | | 인구(명) | | 어촌계 | | 연간어획량 (M/T) | 어획금액 (백만원) | 호당평균 소득 (천원) |
|--------|-----------|---------|-----------|---------|-------|---------|----------------|---------------|-----------------|
| | 전체 | 어가 | 전체 | 어업 | 어촌계수 | 어촌계원수 | | | |
| 전국(A) | 1,231,165 | 163,747 | 3,386,727 | 299,416 | 1,969 | 150,735 | 1,142,492 | 1,606,769 | 21,684 |
| 제주도(B) | 94,037 | 14,169 | 288,952 | 20,120 | 100 | 13,653 | 2,626 | 11,769 | 20,155 |
| 제주시 | 57,364 | 7,410 | 158,789 | 11,139 | 56 | 7,586 | 1,675 | 6,722 | 19,621 |
| 서귀포시 | 36,673 | 6,759 | 130,163 | 8,981 | 44 | 6,067 | 951 | 5,047 | 20,690 |
| B/A(%) | 7.6 | 8.7 | 8.5 | 6.7 | 5.1 | 8.7 | 0.2 | 0.7 | 93.0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발전 수준별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지형 어촌계가 27%, 자립형 어촌계가 61%, 성장형 어촌계는 12%로 대부분의 어촌계가 경영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87> 유형별 어촌계 현황

(단위 : 어촌계수)

| 구분 | 계 | 발전수준별 | | | 어업종사유형별 | | | 입지유형별 | | |
|------|-------|-------|-----|-------|---------|------|------|-------|------|-------|
| | | 복지 | 자립 | 성장 | 어선어업 | 양식어업 | 복합어업 | 도시근교 | 취약지구 | 연안촌락 |
| 전 국 | 1,969 | 207 | 632 | 1,130 | 530 | 837 | 602 | 341 | 310 | 1,318 |
| | 100% | 11% | 32% | 57% | 27% | 42% | 31% | 17% | 16% | 67% |
| 제 주 | 100 | 27 | 61 | 12 | 3 | 61 | 36 | 36 | 6 | 58 |
| | 100% | 27% | 61% | 12% | 3% | 61% | 36% | 36% | 6% | 58% |
| 제주시 | 56 | 6 | 38 | 12 | 3 | 32 | 21 | 33 | 5 | 18 |
| 서귀포시 | 44 | 21 | 23 | 0 | - | 29 | 15 | 3 | 1 | 40 |

※자료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06. 12)

- 어업 종사별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양식어업형 61%, 복합어업형 36%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산물로는 소라, 전복, 해삼 등임. 그 외 어선어업형 3%로 나타났음
- 입지유형으로 어촌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도시근교형 어촌계는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서벽지 및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이 곤란한 어촌계는 6%였고, 그 외 연안촌락형은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도는 해안도로가 발달되어 있으며, 또한 해안지대에 관광지가 발달되어 있어 어촌에 접근성이 탁월해 도시근교형이 타 지역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어선세력 현황

- 제주도의 총 어선수는 3,303척으로 전국 88,420척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어선수에 대한 총톤수는 21,668톤으로 척당 6.6톤을 보이고 있음
- 톤급별 어선수를 살펴보면 1톤 미만의 어선이 515척으로 15.6%를 차지하고 1~5톤미만의 어선이 1,593척으로 48.2%에 해당하고, 5톤 이상의 어선이 1,195척으로 36.2%에 불과함

<표 5.188> 어선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 구분 | 총계 | | | | 1톤미만 | 1~5미만 | 5~10미만 | 10톤이상 |
|--------|--------|---------|-------|-------|--------|--------|--------|-------|
| | 동력 | | 무동력 | | | | |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전국(A) | 88,420 | 746,195 | 3,188 | 2,952 | 29,949 | 46,896 | 8,784 | 7,261 |
| 제주(B) | 3,294 | 21,660 | 9 | 8 | 515 | 1,593 | 895 | 300 |
| 제주시 | 1,729 | 11,966 | 7 | 7 | 227 | 838 | 540 | 131 |
| 서귀포시 | 1,565 | 9,694 | 2 | 1 | 288 | 755 | 355 | 169 |
| B/A(%) | 3.73 | 2.90 | 0.28 | 0.27 | 1.72 | 3.40 | 10.19 | 4.13 |

※자료 :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2005

- 수산업의 위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력선이 늘고 무동력선이 감소하는 어선의 현대화가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동력선이라 하더라도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90.9%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1.2 어촌·어항개발 추진실적

1) 어항개발 추진실적

(1) 국가어항

- 제주도는 6개항으로 전체의 약 6%가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5개소로 제주도의 국가어항 완공율은 약 83%임
- 제주도 지역의 최근('00~'08) 국가어항 투자실적은 총 649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4.7%가 투자되었으며, 서귀포시가 52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제주시는 122억원이 투자되었음

<표 5.189> 국가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제 주 도 | 6 | 5 | | 1 | | |
| 제 주 시 | 3 | 3 | 신양항, 도두항, 김녕항 | - | - | |
| 서귀포시 | 3 | 2 | 모슬포항, 위미항 | 1 | 하효항 | |

<표 5.190> 국가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00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제 주 도 | 163,107 | 103,003 | 2,932 | 3,344 | 8,026 | 8,004 | 3,962 | 3,630 | 5,000 | 25,206 |
| 제 주 시 | 김녕 | 17,267 | 16,730 | 377 | - | - | 160 | - | - | - |
| | 도두 | 19,055 | 18,909 | - | 50 | - | 96 | - | - | - |
| | 신양 | 27,985 | 19,177 | 603 | - | 783 | 218 | 204 | - | 2,000 |
| 서귀포시 | 모슬포 | 47,380 | 19,796 | 1,952 | 2,387 | 3,694 | 3,312 | 1,758 | 1,630 | - |
| | 위미 | 31,040 | 28,366 | - | 907 | 1,549 | 218 | - | - | - |
| | 하효 | 20,380 | 25 | - | - | 2,000 | 4,000 | 2,000 | 2,000 | 3,000 |

(2) 지방어항

- 제주도는 18개항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10개소로 약 56%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음
- 제주도 지역의 최근('00~'08) 지방어항 투자실적은 총 496억원으로 전국 대비 약 10.6%가 투자되었으며, 서귀포시가 253억원, 제주시가 153억원이 투자되었음

<표 5.191> 지방어항 현황

| 구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고 |
|------|----|-----|-------------------------|------|------------------------|----|
| | | 개소 | 항명 | 개소 | 항명 | |
| 제주도 | 18 | 10 | | 8 | | |
| 제주시 | 9 | 5 | 세화항, 조천항, 우도항, 신창항, 종달항 | 4 | 화북항, 하귀1리항, 귀덕1리항, 고산항 | |
| 서귀포시 | 9 | 5 | 대포항, 신양항, 가파항, 표선항, 사계항 | 4 | 강정항, 법환항, 태흥2리항, 신천항 | |

<표 5.192> 지방어항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제주도 | 49,556 | 3,200 | 4,100 | 4,754 | 5,200 | 5,312 | 5,500 | 6,750 | 6,000 | 8,740 |
| 제주시 | 조천 | - | - | - | - | - | - | - | - | - |
| | 신창 | 1,700 | - | - | - | 1,000 | 700 | - | - | - |
| | 종달 | 6,822 | 1,000 | 722 | 800 | 1,500 | 1,100 | - | - | - |
| | 우도 | - | - | - | - | - | - | - | - | - |
| | 화북 | 2,950 | - | - | - | - | 700 | 1,250 | 1,000 | - |
| | 고산 | 2,000 | - | - | - | - | - | - | 1,000 | 1,000 |
| | 귀덕1리 | 2,000 | - | - | - | - | - | - | 1,000 | 1,000 |
| 서귀포시 | 대포 | - | - | - | - | - | - | - | - | - |
| | 사계 | 2,712 | - | - | - | 1,000 | 912 | 800 | - | - |
| | 신양 | 2,144 | 700 | 644 | 800 | - | - | - | - | - |
| | 표선 | 3,280 | 700 | 880 | 800 | 900 | - | - | - | - |
| | 가파 | 2,426 | 800 | 676 | 950 | - | - | - | - | - |
| | 강정 | 9,832 | - | 1,178 | 1,404 | 1,600 | 1,900 | 1,500 | 1,250 | 1,000 |
| | 신천 | 2,950 | - | - | - | - | - | 700 | 1,250 | 1,000 |
| 태흥2리 | 2,000 | - | - | - | - | - | - | 1,000 | 1,000 | |

(3) 어촌정주어항

- 제주도는 46개항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 완공항은 없음

<표 5.193> 어촌정주어항 현황

| 구 분 | 총계 | 완공항 | | 미완공항 | | 비 고 |
|-------|----|-----|-----|------|---|-----|
| | | 개소 | 항 명 | 개소 | 항 명 | |
| 제 주 도 | 46 | - | | 46 | | |
| 제 주 시 | 36 | - | - | 36 | 귀덕2항, 용운동항, 옹포항, 협재항, 금능항, 월령항, 미수동항, 가문동항, 구엄항, 신엄항, 고내항, 광지항, 금성항, 하도항, 평대항, 한동항, 행원항, 월정항, 동김녕항, 동북항, 북촌항, 함덕항, 신촌항, 신흥항, 판포항, 두모항, 용당항, 용수항, 삼양1동항, 삼양3동항, 용담3동항, 도두사수항, 이호1동항, 이호현사항, 내도항, 외도연대항 | |
| 서귀포시 | 10 | - | - | 10 | 신도항, 산이수동항, 남원항, 신흥항, 태흥3항, 신산항, 온평항, 대평항, 세화항, 하천항 | |

<표 5.194> 어촌정주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제 주 도 | 7,307 | - | - | - | - | - | 1,600 | 2,800 | 2,907 |

2) 어촌개발 추진실적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총 10개권역 594억원 중 '05년말까지 1단계 13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44억원을 투자하였음
- 2007년 현재 2단계 1개권역을 총 50억규모로 추진`중이며 2008년까지 28.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사업권역은 1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5개소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제주시 구좌서부권역에 2007년 현재 추진중임

<표 5.195>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제주도 | 14 | 47,332 | 13 | 44,448 | 1 | 1,375 | (1) | 1,509 |
| 제주시 | 9 | 30,204 | 8 | 27,320 | 1 | 1,375 | (1) | 1,509 |
| 서귀포시 | 5 | 17,128 | 5 | 17,128 | - | - | - | - |

※ ()는 계속사업 권역수, 북제주군→제주시로 통합, 남제주군→서귀포시로 통합

(2)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총사업비 52.4억원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32.4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마을 중 6개 마을을 완료하였음
- 시군별로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였고 잔여 4개소는 2009년 이후 시행예정임

<표 5.196>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시·도 | 합 계 | | 실 적 ('94~2006) | | 2007 | | 2008 | |
|------|-----|-------|----------------|-------|------|-----|------|-----|
|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물량 | 사업비 |
| 제주도 | 6 | 3,242 | 6 | 3,242 | - | - | - | - |
| 제주시 | 1 | 742 | 1 | 742 | - | - | - | - |
| 서귀포시 | 5 | 2,500 | 5 | 2,500 | - | - | - | - |

(3) 어촌관광개발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모델사업으로 서귀포시 모슬포항은 총사업비 50 억원으로 2007년 12.5억을 투자하였으며, 서귀포시 법환항은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07년 6억원을 투자하였음

<표 5.197>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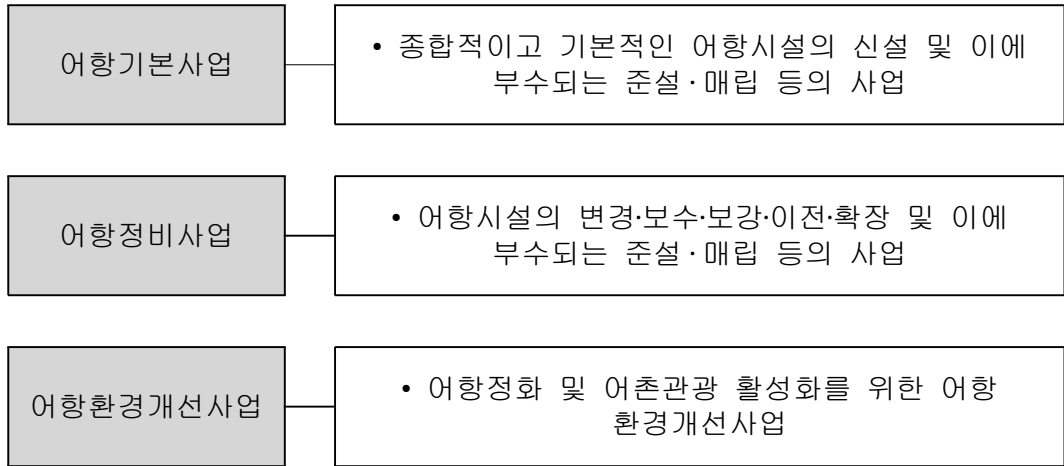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 시군 | 항명 | 총사업비 | 합계 | 2006 | 2007 | 2008 |
|--------------|------|-----|--------|-------|------|-------|------|
| 제 주 | | | 11,650 | 1,850 | - | 1,850 | - |
| 어촌관광 모델사업 | 서귀포시 | 모슬포 | 5,000 | 1,250 | - | 1,250 | - |
| | 서귀포시 | 법환 | 6,650 | 600 | - | 600 | - |

1.3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발전 기본계획

(1) 어항개발 추진방향



- 국가어항은 계속투자항의 어항기본사업 완료, 어항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어항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1개항에 대한 어항기본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여 완공률 100% 달성
 - 기수립된 어항정비사업(3개항)은 2013년까지 2개항을 완료하고, 향후 1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완료 및 중장기계획시 설계파고 조정 등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실시
 - 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어항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수익시설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
- 지방어항은 완공률 제고를 위해 어항기본사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어항정비사업 추진 검토
- 어촌정주어항은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국비지원을 통해 어촌정주어항 개발 활성화 도모

<표 5.198>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단기(2009~201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하효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완공율 100% 달성 | • 신양항, 모슬포항 어항 정비사업 완료 | • 모슬포항 다기능어항 사업 완료 •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집중투자로 완공률 72% 이상 달성 | - | - |
| 어촌 정주 어항 | •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 도달시 국비 지원 검토 | - | - |

◦ 중·장기(2014~2023) 목표

| 구분 | 어항기본사업 | 어항정비사업 | 어항환경개선사업 |
|----------|----------------------|--|---|
| 국가 어항 | • 추가 지정에 대한 검토 | • 잔여 1개항 사업 완료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추진 | • 다기능어항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검토 • 기 수립된 1차 어항환경개선사업 완료 • 어항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검토 및 2차 사업 착수 |
| 지방 어항 | •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완료 | •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시 완공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 검토 및 추진 | - |
| 어촌 정주 어항 | • 어항기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추진 | - | - |

(2) 어항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국가어항은 2010년 서귀포시의 하효항을 완공하여 어항기본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지방어항은 단기 5개년 동안 35,937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항을 완공, 완공율 72%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

- 정비사업은 현재 3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제주시의 신양항, 서귀포시의 모슬포항 등 2개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다기능어항으로 지정된 모슬포항은 2010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
- 어항기본사업과 어항정비사업 투자규모를 고려, 단기계획에서 어항기능시설 1차 사업 중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완료

<표 5.199>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단 기 계 획 | | | | | 비고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제주도 | 총 계 | 121,358 | 26,477 | 36,352 | 16,625 | 20,054 | 21,850 | |
| | 어항기본사업 | 90,643 | 20,391 | 23,727 | 14,563 | 15,607 | 16,355 | |
| | 어항정비사업 | 12,464 | 3,843 | 8,621 |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18,251 | 2,243 | 4,004 | 2,062 | 4,447 | 5,495 | |

■ 중장기(2014~2023)

- 지방어항은 중·장기계획 완료시까지 잔여 5개항을 완공, 완공율 100%를 목표로 계획
- 중장기 계획에서는 위미항에 대한 어항정비사업의 완료 및 설계파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어항정비사업을 추진 계획, 어촌정주어항의 완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어항 완공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 추진된 다기능어항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의 확대 추진
- 어항기능시설은 중·장기계획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1차 사업 완료, 1차 사업 완료후, 수익시설 및 추가 수요에 대한 검토를 실시, 2차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

<표 5.200>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중 장 기 계 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제 주 도 | 총 계 | 353,088 | 32,491 | 33,812 | 35,396 | 34,241 | 27,933 | 34,580 | 35,535 | 37,802 | 38,537 | 42,761 |
| | 어항 기본사업 | 182,057 | 17,093 | 17,865 | 18,674 | 17,101 | 10,442 | 16,842 | 17,685 | 20,000 | 21,005 | 25,350 |
| | 어항 정비사업 | 86,741 | 8,597 | 8,612 | 8,631 | 8,646 | 8,667 | 8,685 | 8,697 | 8,718 | 8,735 | 8,753 |
| | 어항환경 개선사업 | 84,290 | 6,801 | 7,335 | 8,091 | 8,494 | 8,824 | 9,053 | 9,153 | 9,084 | 8,797 | 8,658 |

2) 어촌발전 기본계획

(1) 어촌개발 추진방향

- 어선의 감척 등 어업여건의 변화와 FTA 협상 등에 따라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계속사업의 집중투자, 어촌관광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신규사업 시행 등에 중점 두어 투자계획 마련

<표 5.201>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 사 업 명 | 단기('09~'13) | 중장기('14~'23) |
|----------------|--|--|
| 어촌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에 따른 테마별 사업 - 사업비 차별 지원 - 어촌경관형성 개념 도입 - 어촌정비방안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선정권역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중심테마별 사업비 차별 - 어촌정비사업포함 |
| 어촌관광 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체험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사업추진 ◦ 어촌관광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슬포항, 법환항 사업완료 * 사후 평가 후 시행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개발사업 계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시군구 마을 대상 - 개소당 사업 규모 : 60억원 |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방안 수립 용역 시행(2010년) ◦ 1개소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환경조성: 산책로 등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사업 규모 : 30억원 ◦ 단기사업평가 후 시행여부 결정 |

(2) 어촌개발 투자계획

■ 단기(2009~2013)

- 어촌개발사업은 2단계 3개권역에 총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시군별 시행권역 : 제주 구좌서부(2007년 현재 시행중임, 50억)
서귀포 대정서부(2009년, 50억), 제주 한림동부(2011년, 50억) 총 3개권역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체험형은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관광개발사업 중 어촌관광형은 서귀포시 모슬포항, 법환항에 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선정지에 시범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5.202>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 총사업비 | 단기계획 |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제주도 | 합계 | 26,916 | 2,785 | 7,420 | 5,880 | 6,611 | 4,220 |
| | 어촌개발사업 | 12,116 | 1,285 | 2,594 | 2,630 | 2,387 | 3,2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1,800 | 1,500 | 4,826 | 2,250 | 3,224 | -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3,000 | - | - | 1,000 | 1,000 | 1,000 |

■ 중·장기(2014~2023)

- 제주지역 중장기투자계획은 계속사업에 640억원, 신규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총 790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각 사업별 사업예정지는 향후 전국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예정임

<표 5.203>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 총사업비 | 중장기계획 |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제주도 | 합계 | 79,000 | 5,818 | 6,479 | 6,833 | 7,209 | 7,652 | 8,047 | 8,511 | 8,982 | 9,475 | 9,994 |
| | 어촌개발사업 | 40,000 | 3,143 | 3,314 | 3,480 | 3,657 | 3,886 | 4,057 | 4,286 | 4,497 | 4,720 | 4,96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24,000 | 1,821 | 1,932 | 2,047 | 2,168 | 2,300 | 2,437 | 2,579 | 2,737 | 2,905 | 3,074 |
| |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 15,000 | 854 | 1,233 | 1,306 | 1,384 | 1,466 | 1,553 | 1,646 | 1,748 | 1,850 | 1,960 |

1.4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 어촌·어항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단기 및 중장기에 총 5,80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5.204>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단기계획 (2009~2013) | 중장기계획 (2014~2023) | 비고 |
|------|---------|---------------------|----------------------|----|
| 총사업비 | 580,362 | 148,274 | 432,088 | |
| 어항개발 | 474,446 | 121,358 | 353,088 | |
| 어촌개발 | 105,916 | 26,916 | 79,000 | |

1.5 경제적 효과분석

- 단기 5년 및 중장기 10년에 어촌·어항 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산효과는 단기 4,191억원, 중장기 1조 2,195원으로 투자비 대비 2.8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신규고용효과로서는 단기 2,827명, 중장기 7,983명에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주도)



<그림 5.22> 제주도 계획 현황도

[제주도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 범 례 | 사 업 명 | 개 소 |
|-----|----------------|-----|
| ○ | 어촌개발사업 | 16 |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6 |
| ◇ | 어항기본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정비사업(국가어항) | 6 |
| ▲ | 어항환경개선사업(국가어항) | - |
| ◐ | 어항기본사업(지방어항) | 18 |
| ■ | 사 업 완 료 | 19 |
| □ | 사 업 진 행 | - |
| --- | 사 업 계 획 | 3 |

[어촌어항개발 단기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 고 |
|-----|----------|---------|--------|--------|--------|--------|--------|
| 총 계 | 235,917 | 49,653 | 67,499 | 36,068 | 41,272 | 41,425 | |
| 어 항 | 소 계 | 212,001 | 46,868 | 60,079 | 31,188 | 35,661 | 38,205 |
| | 어항기본사업 | 181,286 | 40,782 | 47,454 | 29,126 | 31,214 | 32,710 |
| | 어항정비사업 | 12,464 | 3,843 | 8,621 | - | - | - |
| | 어항환경개선사업 | 18,251 | 2,243 | 4,004 | 2,062 | 4,447 | 5,495 |
| 어 촌 | 소 계 | 23,916 | 2,785 | 7,420 | 4,880 | 5,611 | 3,220 |
| | 어촌개발사업 | 12,116 | 1,285 | 2,594 | 2,630 | 2,387 | 3,220 |
| | 어촌관광개발사업 | 11,800 | 1,500 | 4,826 | 2,250 | 3,224 | - |

과업 참여자 명단

◎ 용역명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 용역기간 : 2006년 3월 9일 ~ 2006년 12월 29일(1차년도)

2007년 2월 1일 ~ 2008년 3월 31일(2차년도)

|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비고 |
|------|-----|---------|-------|-----------|
| 사업총괄 | 최재학 | 기술본부 | 본부장 | 한국어촌어항협회 |
| 총괄분야 | 성상봉 | " | 차장 | " |
| | 강현상 | " | 과장 | " |
| | 남광훈 | " | 과장 | " |
| | 최효정 | " | 사원 | " |
| 자료조사 | 이서구 | " | 과장 | " |
| | 장병상 | " | 과장 | " |
| | 김국주 | " | 대리 | " |
| | 박경국 | " | 주임 | " |
| | 김홍식 | " | 사원 | " |
| | 최규철 | " | 사원 | " |
| | 최원규 | " | 사원 | " |
| 정책분야 | 최성애 | 수산정책연구부 | 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한광석 | 해양물류연구부 | 부연구위원 | " |
| | 박상우 | 수산정책연구부 | 책임연구원 | " |
| | 채동렬 | " | 연구원 | " |
| 경제분야 | 신승식 | 경제학부 | 조교수 | 전남대 |
| 기술분야 | 유흥수 | 항만부 | 전무 | (주)제이스기술단 |
| | 안동렬 | " | 이사 | " |
| | 류원복 | " | 이사 | " |
| | 전대현 | " | 대리 | " |
| | 신원석 | " | 대리 | " |
| | 이건태 | " | 대리 | " |
| | 신영효 | " | 사원 | " |
| | 오은성 | " | 사원 | " |

